한국민속사회사전

Encyclopedia of Korean Folk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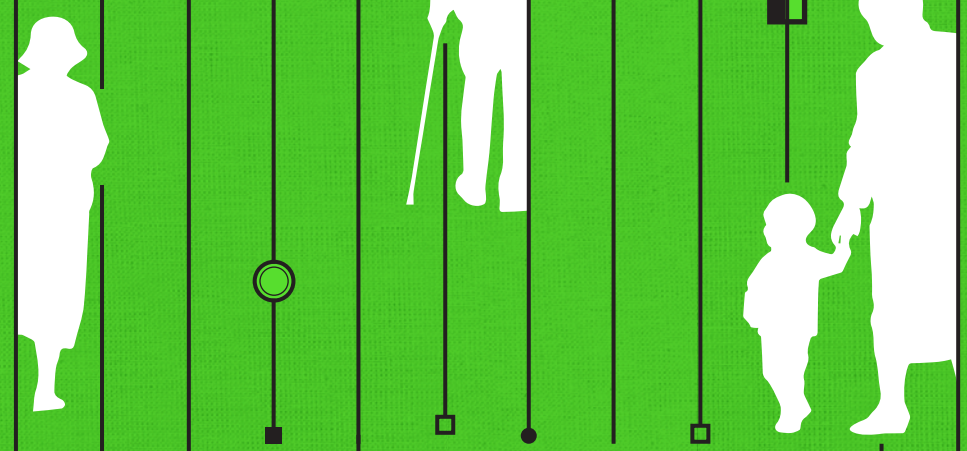

Family and Kinship 1 ㄱ-ㅅ

가족과 친족

국립민속박물관

Encyclopedia of
Korean Folk Society
Family and Kinship

한국 민속 사회 사전

가족과 친족

1

ㄱ ㄴ ㄷ
ㅁ ㅂ ㅅ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한국민속사회사전

가족과 친족 ❶

Encyclopedia of
Korean Folk Society

Family and Kinship

발행일
2023년 12월 20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전화 02. 3704. 3225

발행인
김종대

총괄
권태효

기획
백민영

편수원
강중휘, 백지연, 신다혜, 장윤정, 정채린, 천재은

윤문·교열
엄민용, 김병동, 김용준, 장성은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인트로 서성규, 김은정, 나아현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449-01

ISBN
978-89-289-0393-1: 비매품
978-89-289-0392-4(세트)

94380
9 788928 903931

Encyclopedia of
Korean Folk Society
Family and Kinship

한국 민속 사회 사전

가족과 친족

1

ㄱ ㄴ ㄷ
ㅁ ㅂ ㅅ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발간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 민속문화의 집대성과 지식체계 구축 그리고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여덟 번째 주제인 『한국민속사회사전』의 '가족과 친족' 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사회의 출발점으로 확대된 형태가 친족입니다. 현재 가족과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연 및 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 울타리를 넘어 가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개념 및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민속사회사전』은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과 친족'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전통사회부터 현대사회까지 '가족과 친족'의 개념과 유형, 혼인체계, 의례, 상속, 제도, 규범, 설화 등의 자료를 집대성하여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살펴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속현장 사진 및 풍속화, 포스터, 삽화, 도표 등의 시각 자료도 제공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세시풍속사전〉, 〈한국민속신앙사전〉, 〈한국민속문학사전〉, 〈한국일생의례사전〉, 〈한국민속예술사전〉, 〈한국의식주생활사전〉, 〈한국생업기술사전〉을 발간하여 한국민속을 집대성한 《한국민속대백과사전》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앞으로도 민속문화 연구를 지속하고 축적하여 다양한 주제의 사전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사전이 발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집필자, 자문, 감수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협조해주신 관계 기관의 배려와 사전이 나오기까지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준 민속연구과 직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립민속박물관장 **김종대**

발간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의《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민속을 주제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1주제인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 봄, 여름, 가을, 겨울 전5권을 2004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발간하였다. 2009년부터 제2주제인 〈한국민속신앙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에 '무속신앙 편', 2010년에 '마을신앙 편', 2011년에 '가정신앙 편'을 발간하였다. 2012년에 제3주제인 〈한국민속문학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에 '설화 편', 2013년에 '민요 편'과 '판소리 편'을 발간하였다. 2014년에는 제4주제인 〈한국일생의례사전〉을 발간하였다. 2015년에는 제5주제인 〈한국민속예술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에 '민속극 편'과 '민속놀이 편', 2016년에는 '음악·농악·무용·민화 편'을 발간하였다. 2017년에는 제6주제인 〈한국의식주생활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에 '의생활 편', 2018년에 '식생활 편', 2019년에는 '주생활 편'을 발간하였다. 2020년에는 제7주제인 〈한국생업기술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농업 편'을 발간하였고, 2021년에 '어업 편', 2022년에는 '상공업 편'을 발간하였다. 올해는 제8주제인 〈한국민속사회사전〉의 '가족과 친족 편'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한『한국민속사회사전』'가족과 친족 편'은 표제어 488항목, 원고 5,000여 매, 사진 400여 장으로 구성하였다.

이 사전의 표제어는 사전편찬팀에서 정리한 표제어를 기초로 관내외의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편찬 방향 및 표제어, 집필자 적합성을 통해 선정하였다. 선정된 표제어의 원고는 75명의 해당 분야 연구자가 집필하였다. 집필진은 민속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인류학, 역사학, 사회학, 국문학, 법학 등 인접 학문 필자들이 참여해 이해의 폭을 넓혔다.

원고는 사전편찬팀의 적합성 검수와 전문가의 교정·교열·윤문을 거쳐 각 분야 전문 연구자의 감수를 받았으며, 감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수정·보완하여 사전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사전은 가족과 친족의 개념 및 유형, 혼인체계, 관습 및 규범, 상속제도, 호적, 가족법률 및 정책, 가정신앙, 일생의례, 설화, 가족 구성원, 용어, 자료로 나누어 정리·해설하였다.

사전은 발간개요, 일러두기와 목차, 그리고 본문과 색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제어 배열은 한글 자모순 목차로 하였으며 필자별 목차, 색인 등을 추가하여 사전 본연의 찾기 기능을 유지하되, 이용자가 다각적으로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일러두기

사전의 전체 구성

〈한국민속사회사전: 가족과 친족〉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어 선정 및 범주

1. 표제어는 〈한국민속사회사전: 가족과 친족〉에 독립항목으로 배열되는 단어를 말한다.
2. 표제어는 가족, 친족, 혼인체계, 관습 및 규범, 상속, 호적, 가족법 및 정책, 가정신앙, 일생의례, 설화, 구성원, 자료, 용어의 범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3. 표제어는 관내외 자문회의를 통해 그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여 선정하였다.
4. 이 사전에서 사용되는 표제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따랐다.

표제어 배열 및 목차

1. 본문에서의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목차는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가표제어

1. 주표제어와 거의 대등하게 불리는 이칭을 가표제어로 선정하여 목차에 같이 제시하였다. 가표제어와 관련된 주표제어 쪽수를 제시하여 사전 이용자의 검색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2. 앞서 발간한 사전에 수록된 표제어 중 관련한 표제어는 해당 사전의 쪽수를 제시하였다.

표기 방법

맞춤법과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교육과학기술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2008년 10월 발간)을 따랐다.

자료 출처

사진, 도표, 삽화 등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제공처) 등을 밝혔다. 현지조사자료는 제보자가 익명을 요청한 경우 '○○○' 등으로 표기하였다.

호칭 및 관계도

호칭 및 관계도를 수록해 친족원의 관계와 친족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도판

1. 평생도, 문자도 등 도판을 구성해 가족의 일상 및 무병장수, 부귀다남, 입신양명, 효제 등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가족과 친족 간 주고받은 한글 손편지를 수록해 가족애와 집안 풍속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색인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해당 쪽수를 기재하여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필자

필자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집필한 표제어와 해당 쪽 번호를 기재하여 필자란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제공

간송미술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국가기록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농촌진흥청, 대전시립박물관, 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 문화재청,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아카이브, 수원화성박물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대학교 박물관, 제주문화원, 제주학연구센터,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학봉기념관, 화성시역사박물관,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문위원과 감수위원

1. 자문위원은 김미영(한국국학진흥원), 김일권(한국학중앙연구원), 김창민(전주대학교), 박성용(전 영남대학교), 손병규(성균관대학교), 오세길(동아대학교), 이대화(한국학중앙연구원), 이창식(전 세명대학교), 이해준(전 공주대학교), 함인희(이화여자대학교), 함한희(무형문화연구원), 허남춘(전 제주대학교)이 맡았다.
2. 감수위원은 김명자(전 안동대학교), 이창기(전 영남대학교), 이해준(전 공주대학교), 함한희(무형문화연구원)가 맡았다.

가나다순

차례

한국민속사회사전
가족과 친족

기역 ㄱ

1인가구 020
가가례 한국일생의례사전: (p.22)
가계 021
가계도 022
가계부 025
가구 026
가례 한국일생의례사전: (p.24)
가문 028
가문잔치 029
가부장제 030
가사노동 032
가신신앙 가정신앙 045
가업 035
가장 037
가정 039
가정교육 041
가정법원 044
가정신앙 045
가정위탁제도 048
가정의례준칙 049
가정주부 050
가족 051
가족계획사업 054
가족관계등록법 058
가족법 059
가족법개정운동 061
가족사진 062
가족주의 064
가첩 065

가통 067

가풍 068

가훈 070

감실 한국일생의례사전: (p.35)

강복 한국일생의례사전: (p.38)

개가하지 않은 며느리 도운 호랑이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39)

개가해서 유복자 키운 열녀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40)

건강가정기본법 072

건넌방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47)

건전가정의례준칙 073

결손가정 074

결혼기념일 한국일생의례사전: (p.44)

겹사돈 075

계녀서 076

계례 한국일생의례사전: (p.46)

계모담 077

계자 079

계후등록 080

계후입안 082

계후자 계자 079

고모 083

고부 084

고사당 한국일생의례사전: (p.52)

과객 제사 차려준 며느리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0)

과부 087

관례 한국일생의례사전: (p.63)

관향 본관 194

교환혼 088

국불천위 089

국제결혼 091

국조오례의 093

권당 권당 093

궨당 093

귀신종이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72)

규방가사 095

균분상속 097

그릇 깬 며느리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87)

근친 100

근친혼 101

글 잘 하는 황정승 딸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95)

금시발복 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01)

기일비망기 102

기자의례 102

기제사 105

기휘 109

김수로왕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16)

김알지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18)

꼬댁 각시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106)

꾀로 얻은 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32)

니은 ㄴ

남귀여가혼 110

남녀칠세부동석 112

남매 114

남매혼설화 115

남아선호사상 116

남원진씨시조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46)

남편 118

남편 대신 옥살이 한 열녀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49)

남편 따라 죽은 열녀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50)

남편 병 고친 열녀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51)

남평문씨시조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52)
납골당 120
내룡 122
내방가사 규방가사 095
내외 123
내외담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118)
노인의 날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116)
누나 124
누명쓰고 자결한 며느리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148)

디귿

다문화가족 126
달래강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70)
달성배씨시조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71)
당내 127
당내친 128
당호 129
대 130
대동보 132
대문중 133
대종가 134
대주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131)
덕 쌓아 얻은 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79)
데릴사위제 136
도둑맞은 유골과 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89)
도미의 처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92)
독거 137
독신 138
동거 139
동생 140
동서 141
동성동본 143
동성동본불혼 144
동성촌 146
동자삼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04)
둥지양자 149
딩크족 150
딸 150

미음

막내 153
만성보 154
맏이 155
말자상속 157
망부석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25)
맞벌이 158
며느리 160
며느리고개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34)
며느리밥풀꽃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35)
명당 빼앗아간 딸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36)
명당 한국일생의례사전: (p.153)
명당설화 162
모계 165
모성애 166
모자보건법 168
묘제 169
무복친 172
문둥이 남편과 이부열녀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49)
문벌 173
문장 174

문중 175
문중계 족계 518
문회 177
물레혼 178
미추왕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54)
민며느리제 179
민적법 180

비읍 ㅂ

박혁거세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76)
반보기 181
방계가족 183
방귀 뀐 며느리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235)
백골양자 184
백년손님 185
벌초 186
벙어리 행세한 며느리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254)
벙어리로 삼 년 지내려 한 며느리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89)
별급문기 187
보쌈 189
보종 190
복인 191
복합가족 193
본관 194
본적 196
봉사대수 한국일생의례사전: (p.197)
봉사혼 197
봉안 한국일생의례사전: (p.201)
봉제사접빈객 197
부거제 부처제 206
부계 199
부루단지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221)
부모 200
부부 202
부부의 날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259)
부성애 204
부처제 206
분가 207
분거가족 208
분재기 210
불천위 212
불천위제사 214
비혼 217
빈둥지가족 218
뻐꾸기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310)

시옷 ㅅ

사당 219
사대봉사 221
사돈 223
사랑방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419)
사랑채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421)
사례편람 224
사불천위 225
사실혼 226
사위 227
사진신부 229
사촌 231
사후양자 234
산함일구강토이주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326)

살림살이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430)
살림집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433)
삼 형제 죽고 삼 정승 날 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327)
삼강행실효자도 235
삼년상 236
삼불거 238
삼신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254)
삼우제 한국일생의례사전: (p.271)
삼종지도 239
삼촌 240
삼춘 242
상객 244
상달고사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71)
상례 245
상속 248
상식 한국일생의례사전: (p.288)
상장례 한국일생의례사전: (p.298)
상주 252
상피제 254
새벽문안 한국일생의례사전: (p.303)
생신제 한국일생의례사전: (p.304)
서양자 255
서얼 256
서옥제 258
석탈해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361)
선계 259
선산 260
선영 선산 260
선원보첩 262
성년식 262
성년의 날 한국일생의례사전: (p.316)
성묘 265
성씨 266
성주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307)
세 대 130
세대 대 130
세배 269
세습 270
소목 272
소문중 274
손 없는 색시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392)
손자녀 손주 275
손주 275
수양자 277
수연례 한국일생의례사전: (p.333)
수정가족 279
승중 280
시묘살이 281
시아버지 283
시어머니 285
시제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75)
시조신화 286
시집 288
시집살이 289
시집살이 노래 291
시집살이담 292
식게 295
식구 296
신랑다루기 한국일생의례사전: (p.356)
신방엿보기 한국일생의례사전: (p.358)
신부대 한국일생의례사전: (p.360)
신줏단지 한국일생의례사전: (p.364)

신혼여행 한국일생의례사전: (p.368)
쌍둥이 298
씨받이 299
씨족 300

ㅇ

아가씨 396
아내 398
아들 400
아들의 간 먹는 계모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495)
아랫목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478)
아명 402
아버지 403
아빠 아버지 403
아이고 답답 감장사야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333)
아저씨 405
아주머니 406
악형선제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02)
안거리·밖거리 408
안방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495)
안방물림 410
안채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499)
안택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500)
약혼 한국일생의례사전: (p.439)
양계 411
양아록 412
양육비 413
양자 414
양자문기 416
어린이날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263)
어머니 417
어머니 병 고친 효자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10)
어머니 애인 찾아나선 효자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10)
어버이날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264)
언니 418
엄마 어머니 417
엄부자모 420
업둥이 421
여름에 흥시 구한 효자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16)
여우혈 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21)
연애혼 422
연이와 버들도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26)
연좌제 423
열녀담 424
영혼결혼식 427
예기 428
오복제도 429
오빠 431
온조비류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48)
올벼심리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504)
외가 432
외동 434
외손봉사 435
우물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64)
우애담 436
우연히 잡은 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66)
움딸 438
위자료 438
위토 440
위패 한국일생의례사전: (p.476)
윗목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545)

유복친 441
유언 442
유월장 한국일생의례사전: (p.483)
유훈 443
윤회봉사 445
의례 447
의례경전통해 447
의례준칙 448
의좋은 동서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94)
의좋은 형제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95)
의혼 한국일생의례사전: (p.497)
이름 448
이모 451
이산가족 453
이혼 457
인척 459
일부다처제 461
일부일처제 462
일생의례 463
입양 467
입향시조 471

지읒 ㅈ

자 472
자녀 473
자매 475
자손 476
자식 묻다 돌종 얻은 효자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635)
작명 한국일생의례사전: (p.517)
장례 477
장모 481
장인 482
장자봉사 483
재산상속 485
재행 487
재혼 489
적장자우대상속 490
전실 자식 눈 뺀 계모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656)
절충혼 492
접동새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661)
정략결혼 493
정려 494
정상가족 496
정침 한국일생의례사전: (p.548)
제례 497
제사분할 500
제사상속 501
제사설화 502
조매 한국일생의례사전: (p.570)
조상 504
조상단지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592)
조상모시기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594)
조상숭배 507
조상신 509
조선호적령 511
조손가족 512
조카 514
조혼 517
족계 518
족내혼 519
족보 520

족외혼 523
종가 524
종계 족계 518
종법 527
종부 529
종손 531
종안 534
종택 535
종회 538
주독 한국일생의례사전: (p.587)
주몽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673)
주민등록법 540
준호구 542
중매혼 543
중시조 544
중이 된 며느리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435)
중자봉사 546
증여 547
지렁이 삶아 봉양한 효자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686)
직계가족 548
진주 낭군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443)
집성촌 동성촌 146
집안 가문 028

치읓 大

차례 한국일생의례사전: (p.615)
참례 한국일생의례사전: (p.618)
창녕조씨시조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07)
창씨개명 549
처가 552
처가살이 553
천도복숭아 따온 효자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14)
천신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650)
천인천자문 554
천자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17)
첩 555
첩자봉사 556
초국적가족 558
초분 한국일생의례사전: (p.639)
촌수 559
추도식 561
출가외인 563
출계 564
출생의례 566
충주어씨시조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34)
친가 569
친권 571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39)
친영 572
친정 574
친정 모친 죽은 소식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466)
친족 575
친척 친족 575
칠거지악 579
칠출 칠거지악 579
콩쥐팥쥐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44)

티읕 E

태교신기 580
태명 581

택호 582
통과의례 582
통혼권 587

피읖 ㅍ

파보 대동보 132
파시조 589
파양 590
파종가 592
파평윤씨시조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59)
팔고조도 594
평강채씨시조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62)
피휘 기휘 109

히흫 ㅎ

하음봉씨시조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70)
한부모가족 595
할머니 597
할아버지 598
합장 한국일생의례사전: (p.711)
항렬 600
해동속소학 601
해외입양 603
핵가족 605
행실도 607
허여문기 610
허황옥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91)
현구고례 611
현모양처 615
혈연 616
혈족 618
혈통 619
형 620
형님 622
형님 형님 사촌 형님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500)
형망제급 624
형사취수제 625
형제 626
형제투금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95)
호 627
호구단자 629
호구조사규칙 631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800)
호적 632
호적법 636
호적부 637
호적표 639
호주상속 641
호주제 642
혼례 644
혼례식 한국일생의례사전: (p.739)
혼반 649
혼사계 한국일생의례사전: (p.746)
혼외자 651
혼인 652
혼인신고 656
혼주 658
흘어미산성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808)
흥수설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808)
화수회 종회 538

화회문기 659
확대가족 660
회갑 662
회갑상 한국일생의례사전: (p.766)
회혼례 한국일생의례사전: (p.771)
효 한국일생의례사전: (p.775)
효녀 664
효녀 지은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816)
효부 665
효부와 호랑이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816)
효불효다리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817)
효자 666
효자도 668
효자동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818)
효제 671
효행담 673
희생효설화 675

1인가구
一人家口

정의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

내용 1인가구一人家口는 가구 유형 중 하나로, 다른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혼자 취사·취침을 하는 가구이다. 통상적으로 단독單獨가구·독거獨居가구·독신獨身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이 용어들은 모두 혼자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독거노인'은 고립감과 취약함 등 부정적 어감을 담고 있고, '독신주의'는 결혼과의 관련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중립적이면서도 결혼 여부나 상태와 상관없는 용어인 1인가구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1960년대부터 농어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공업단지나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청년들이 도시나 산업단지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인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는 기숙사나 친척집에서 살거나, 입주형 가사도우미로 지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1인가구의 생활양식이 일시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1975년에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4.2%에 불과하였고, 1985년까지도 6.9%에 머물렀다. 그러나 1인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 1995년 12.7%, 2005년 20.0%, 2015년 27.2%로 빠르게 증가하더니 2021년에는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였다. 이 수치는 가구원 수별 가구 구성 비율을 볼 때 가장 높다. 다만 가구 통계와 인구 통계는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1인가구로 사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뜻은 아니다. 2021년 기준 1인가구는 총 716만 5,788가구로, 다시 말해 혼자 사는 사람이 총 716만 5,788명이라는 의미이다. 다인 가구는 한 가구 안에 여러 가구원이 있으므로 가구 비율이 낮아도 인구 비율은 더 높다.

특징 및 의의 1인가구 비율 증가 현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각국의 1인가구 비율을 보면 미국 28.4%(2019년), 영국 29.0%(2019년), 프랑스 36.0%(2016년), 독일 41.9%(2018년), 스웨덴 56.6%(2018년), 일본 27.7%(2015년)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더 높다. 전 세계적으로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개인화된 삶을 선호하는 문화적 추세와 이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물리적·정책적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즉 결혼이나 가족에게 매이지 않고 개인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이 퍼졌으며, TV와 인터넷 발달로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 환경이 갖춰졌다. 또한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노년기가 확대되고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개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시장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1인가구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인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1인가구의 다양성도 커지고 있다. 2020년 기준 1인가구는 20~30대 35.9%, 40~50대 29.2%, 60대 이상 33.7%로 모든 연령대에서 골고루 존재한다. 이 비율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성은 60대 이상 고령층(45.1%) 비중이 높고, 남성은 30~50대(56.9%) 비중이 높다.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 1인가구는 본인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혼자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70.65%), 40~50대 1인가구는 본인의 이혼으로 혼자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27.77%), 60대 이상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자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53.64%). 연령대별로 50대까지는 남성 1인가구가 더 많고, 60대 이후에는 여성 1인가구가 더 많다.

1인가구 증가가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 되면서 1인가구를 지원하는 정책도 늘고 있다. 1인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평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아서 경제·주거·건강·안전 측면에서 많이 취약하다. 또한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커서 고독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8~2020년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며, 2020년 정부에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여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장 영역에서도 1인가구 생활을 지원하는 소포장 제품, 간편 가정식, 플랫폼 기반 배달 서비스, 온라인 판매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 서비스의 발전으로 연령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더 편리하게 1인가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향후 1인가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1(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2020),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연구(여성가족부, 2021),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Eric Klinenberg, 안진이 역, 길벗, 2013).

필자 진미정(陳美靜)

가계
家系

정의 성과 제사를 승계하는 한 집안.

개관 가계家系는 성姓과 조상제사를 이어 가는 부계父系 혈통을 말한다. 가계의 핵심은 선조제사가 영속적으로 계승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제사 봉사자가 끊어진 경우 입양[立後] 등의 방법을 통해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내용 영생과 사후세계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인간은 종교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영속시킬 방법을 찾곤 하였다. 전근대 한반도에서 이러한 욕망을 구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후손을 통해 기氣를 전하고 제사를 통해 존재를 기억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선조로부터 전해진 기의 흐름과 제사를 이어 가는 혈연집단을 가계라 한다.

전근대 사람들은 사망 후 자손이 끊겨 제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絶祀]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가계 계승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제사와 선조 위패를 모시는 가묘家廟를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가 큰 관심사였다. 더구나 제사 승계는 제사를 위한 재산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에 후손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한반도 역사상 가계 계승은 크게 두 가지 원리를 따라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적계嫡系주의 원리에 따른 계승이다. 이 경우 가계가 장남에게 그리고 장남의 장남, 즉 장손에게 계승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두 번째는 배항輩行주의에 따른 가계 계승이다. 이는 가계가 형제에게로 이어지는 것이 기본이며, 한 세대의 형제가 다하면 다음 세대가 형제에 따라 가계를 계승하는 방식이었다. 고려 초기 태조 왕건王建의 아들 사이에서 왕위가 계승되는 경우가 배항주의에 따른 가계 계승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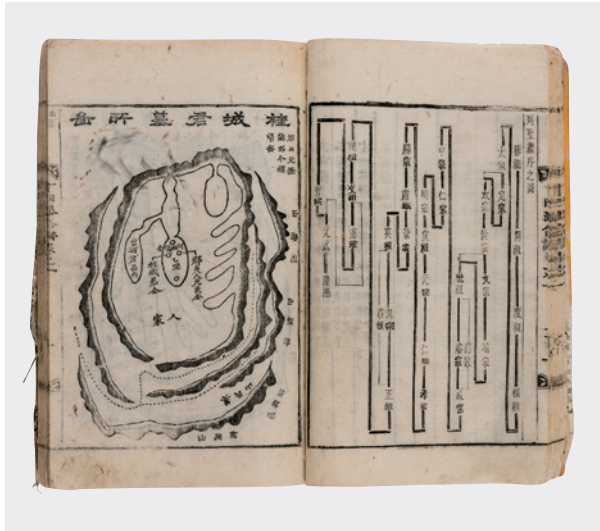

전주이씨족보 | 가로22 세로34 |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적계주의가 일반적인 왕위 계승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제사 승계에 있어서는 배항주의 성격이 더 늦게까지 이어졌다. 17세기까지도 양반들은 자녀가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는 일명 윤회봉사輪回奉祀 방식을 고수하였으며, 제사가 장남에게 집중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다. 조선시대 양반들에게는 고조부까지의 제사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윗대 선조의 위패는 가묘에서 나와 땅에 묻히곤 하였다. 따라서 제사를 지내 줄 현손玄孫 세대의 마지막 인물이 사망할 때까지 고조부제사는 해당 항렬에서 배항주의에 따라 계승되었다.

전근대 사회에서 가계는 부계남성 중심으로 계승되었다. 따라서 외손을 통해 제사가 이어지는 외손봉사外孫奉祀와 같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면 대부분 부계남성 후손, 즉 아들과 손자들을 통해 이어졌다. 아들이 없어 가계가 끊어질 상황이면 계승자를 입양, 즉 입후立後하는 방식으로 가계의 단절을 피하곤 하였다. 이렇게 입양된 계승자를 계자繼子라 불렀으며, 친자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렸다. 이렇게 들어오는 계승자들은 반드시 동성同姓, 즉 같은 부계혈연집단에서 선택되는 것이 조선시대 입양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전통 한국사회의 가계 계승에서 부계혈통이 가장

종묘제례 | 2009 | 국립민속박물관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19세기 말까지 신분제가 존속하였던 한반도에서 신분은 가계 계승자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만약 적자 없이 서자庶子만 있는 경우 대부분의 양반 가족은 서자에게 가계를 계승시키기보다 따로 계승자를 입후하여 가계를 잇게 하였다. 이는 조선이 건국 직후부터 서자의 과거 응시와 관직 진출을 제한하였기에 서자에게 가계를 계승시킬 경우 과거 급제자와 관료 배출이 제한되어 가계의 사회적 위상이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는 전근대 가계 계승의 특징이 많이 퇴색하였다. 이는 가계 계승의 중요한 이유였던 사후세계와 조상제사에 대한 인식 변화에 원인이 있다. 또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친의 성을 물려받는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게 되면서 영속성을 추구하는 가계 자체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전통시대 한국의 가계는 부계남성을 중심으로 이어졌으며, 혈통과 신분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한반도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특수한 형태의 가계 계승 방식을 발전시켰고, 이는 전근대 가족과 친족 문화의 특징과도 연결되었다. 부계친족집단의 발달과 빈번한 입후, 족보와 가계도 유행 등은 이와 같은 한국 가계 계승의 특징이 만들어 낸 산물이다.

참고문헌 입양 조선시대 양반의 아들 교환(한상우, 세창출판사, 2023), 조선과 명청(岸本美緒·宮嶋博史, 김현영·문순실 역, 너머북스, 2014),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정긍식, 흐름, 2019),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필자 한상우(韓相祐)

가계도
家系圖

정의 가계의 뿌리와 영속성을 보여 주기 위해 편찬한 계보도로, 친족 구성원들을 혈연 및 혼인 관계를 통해 연결하여 나타내는 도식.

개관 가계도家系圖는 가계家系의 계보系譜 정보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기록이다. 가계도는 작성 목적에 따라 양식이 달라지곤 한다. 시조始祖로부터 갈려져 나온 후손들의 선조先祖,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보여 주기 위해 작성하는 가계도가 있다. 한 사람의 부계父系뿐만 아니라 외가와 진외가陳外家 선조들을 나열하여 해당 개인의 신분적 우위를 혈통적으로 증명하려는 계보도系譜圖도 있다.

내용 가계도는 한 가계의 뿌리와 그 후손들의 관계망을 보여 주는 계보 기록으로, 대부분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기록 형태이다. 특히 신분제 사회였던 전근대 한반도에서 가계도는 한 개인의 신분적 우위, 특히 혈통의 순수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신분적 우위를 드러내거나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그 외에 후손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도 사용되었다.

가계도는 작성 방식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정보와 관계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따라 그 양식이 크게 달라진다. 가계도의 중심을 특정 선조에 두고 그 후손들을 기록하는 방식의 가계도를 작성할 것인지, 특정 후손을 중심으로 그 선조들의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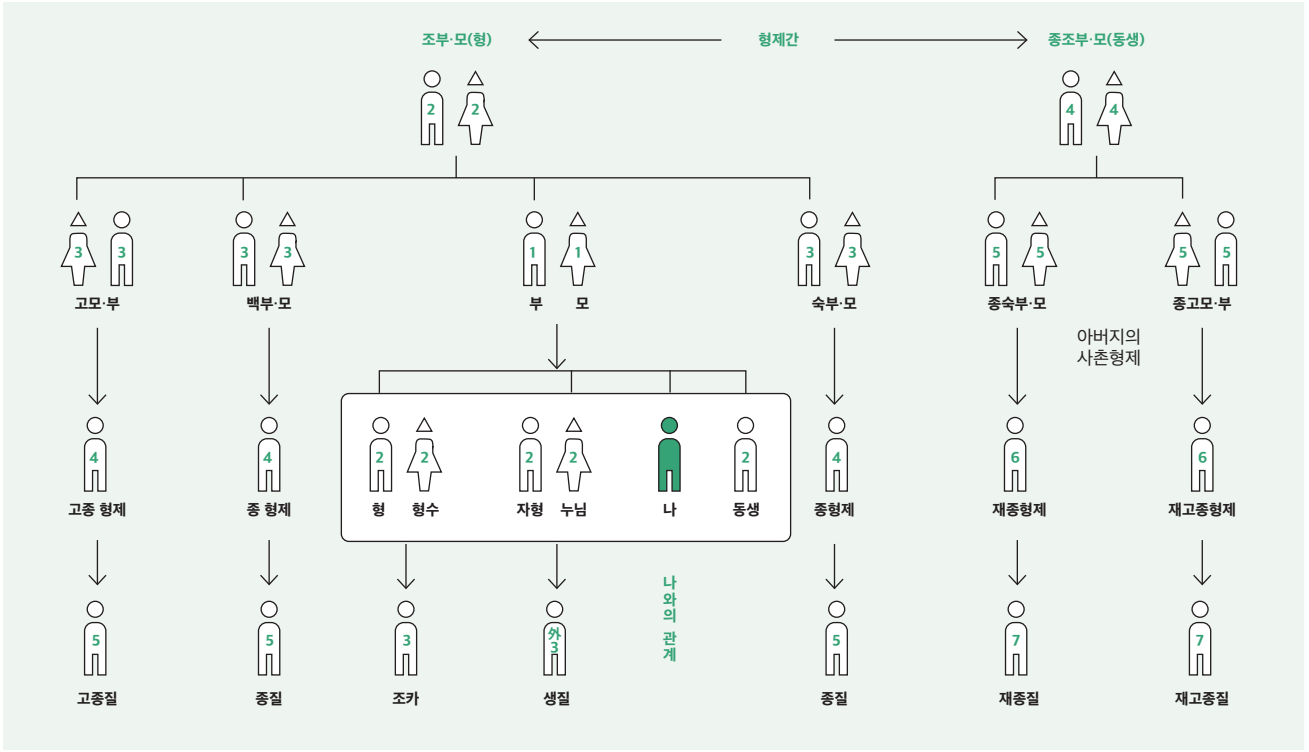

가계도

를 수집할 것인지에 따라 가계도의 양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특정 선조를 중심으로 그 후손들을 망라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족보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한국에서는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의 가계도이다. 하지만 작성자를 중심으로 그 선조들을 망라하는 방식의 가계도 역시 세계적으로 흔히 보이는 양식이다.

조선 후기에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는 일반적인 형태의 족보는 특정 선조를 중심으로 그 후손들을 망라하며, 어떤 후손들을 기록하느냐에 따라 내보內譜·외보外譜·내외보內外譜로 구분된다. 내보는 부계후손들을 중심으로 그 배우자 가족과 일부 외손外孫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외보는 외손들 또는 모계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계보 기록을 편성한다. 내외보는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고 선조를 기록하거나 특정 선조의 내외손을 모두 기록하는 방식이다.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가계도는 특정 선조의 부계후손들을 망라하는 대동보大同譜이지만 전근대에는 간단한 가계 정보만을 담은 가승家乘 또는 족도族圖가 가장 흔한 형태의 가계도였다. 가승이란 후손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직계 부계선조와 그 배우자만을 기록한 가계도이다. 직계선조만을 담고 있기에 기록된 정보량이 많지 않아 필사본으로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가계 정보를 기억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기에 여성을 위한 언문諺文 가계도 역시 다수 발견된다.

후손을 기록하는 형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조를 망라하는 형태의 가계도는 팔고조도八高祖圖가 대표적이다. 팔고조도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고조부까지 4대에 걸쳐 부계와 모계의 모든 선조와 그 배우자를 기록한 가계도이다. 팔고조도는 전근대 한반도에서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도 개인의 신분과 혈통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을 말해 준다. 부계의 성분만 중요할 뿐 모친이나 모계의 신분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던 중국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부계와 같은 수준으로 모계의 신분적 우월성을 입증해야 할 사회적 필요가 있었음을 말해 주는 가계도이다. 그 결과 팔고조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왕실과 정부 차원에서도 신분을 증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부계와 모계선조를 망라하는 가계도 유형은 십세보十世譜라는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이익李瀷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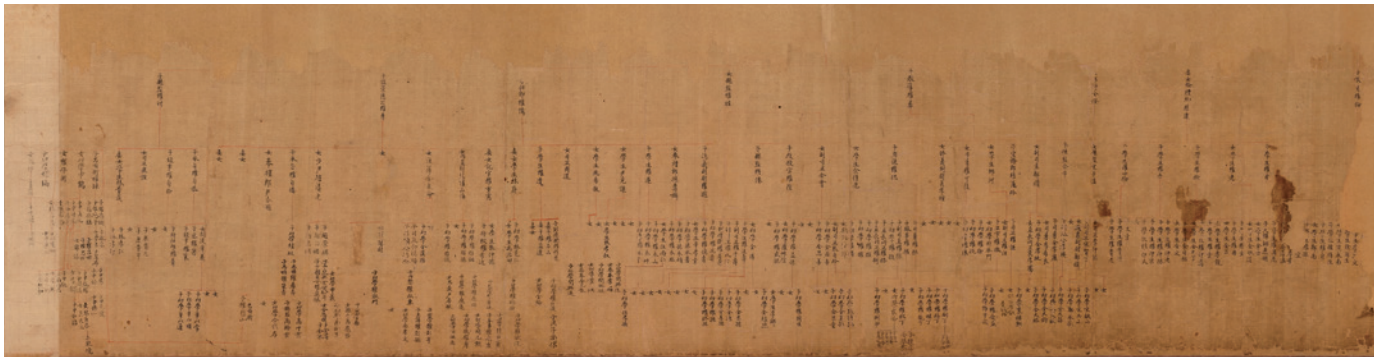

안동권씨족도 | 가로191 세로62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권여온을 기점으로 현손과 내외 후손들을 수록한 족도.

신의 7촌 조카 이관휴李觀休가 작성한 십세보의 서문을 작성하였다. 이익은 '십세보서十世譜序'에서 당대에 보학譜學, 즉 가계 정보에 대한 지식이 융성하지만 막상 후손[下系]과 부계 정보는 상세한 데 비해 선조[上系]와 비부계 정보는 소략한 것을 한탄하였다. 그는 자식이 효를 다할 때 부모에게 똑같이 행하듯이 선조의 계보를 적는 데에도 양쪽을 모두 자세히 적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으로부터 10세조에 이르면 모두 512명의 선조가 있는데, 이들이 모두 자신의 조상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가계도는 이렇듯 여러 형태로 발전하였지만 실생활에서는 간단한 형태로 사용되었다. 고려나 조선 초에 사용된 팔조호구八祖戶口나 호적대장의 사조四祖 정보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개인의 신분 증명 정보이자 가계도라 할 수 있다. 특히 호적의 사조 정보에는 각 호의 세대주인 주호主戶와 그 배우자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외조外祖 정보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신분 증명 방법은 20세기 초 대한제국기에 작성된 광무호적에도 남아 있었다.

전근대 관료 사회에서는 문음門蔭, 가자加資 등이 내외자손을 대상으로 주어질 때 자신들의 계보를 증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계도가 발달하고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었다. 고려시대 공신의 경우 내외內外 8~9세 후손 전체가 음서蔭敍 대상이 되므로 가계도를 통해 혈통과 신분을 증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또 조선시대 관료들은 정안政案 또는 정적政籍이라는 자신의 기본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정에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도 사조 정보가 들어가 있었다. 과거 응시자 역시 호구단자를 제출하고 사조 정보를 답안에 기록하여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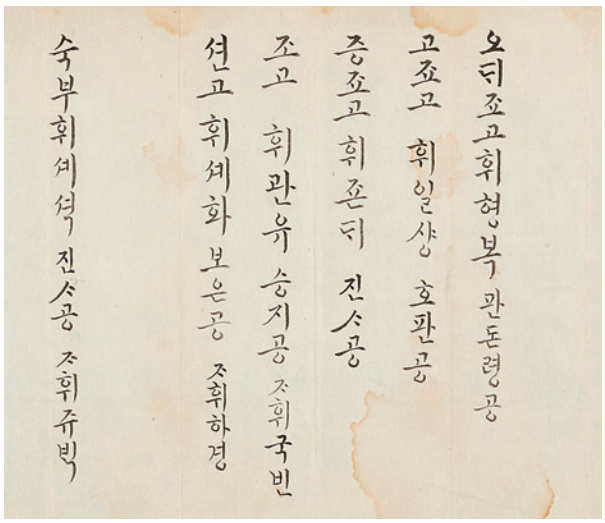

오대조 세계 | 가로28 세로21 | 조선 | 국립한글박물관

특징 및 의의 가계도는 그 내부에 기록된 구성원들의 성격이나 관계에 따라서도 그 양식과 성격이 달라진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계도인 족보는 일반적으로 부계남성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으로, 조선 후기에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족보 가운데 부계에 국한하지 않고 모계 또는 외손을 충실히 기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부계가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중국사회와 달리 전근대 한반도사회에서는 모계의 역할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계 구성원을 중심으로 작성한 가계도와 부계는 물론 모계 구성원들의 정보까지 수록한 가계도는 그 작성 방식과 형식이 크게 달랐다.

참고문헌 고려시대의 친족조직(노명호, 국사관논총3, 국사편찬위원회, 1989), 한국 족보 발달사(최양규, 혜안, 2011), 한국의 성씨와 족보(이수건, 서울대학교출판부, 2011), 호적(손병규, 휴머니스트, 2007).

필자 한상우(韓相祐)

가계부
家計簿

정의 가구 구성원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수입 액수와 사용한 지출 액수를 기록한 장부.

내용 우리나라에서 가계부家計簿란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미 조선시대 가정에서는 장부를 사용하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 부여군 몽도면 분대리(현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의 황씨 양반가에는 1723~1744년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수취량과 지대地代 등을 기록한 장부가 있다. 이 반가班家에서는 병작幷作을 준 토지가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면 작인作人을 선정한다든가 지대수취 방식이나 수취량을 결정한다든가 지대가 제대로 수취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수기秋收記를 작성하였다. 이는 병작을 준 토지의 위치·면적·작인 그리고 지대수취량 등을 기록한 장부로, 문서 이름은 일정치 않아 추감기秋監記 또는 타작기打作記·도지기賭地記 등으로 불린다. 박문수 종가의 『양입제출量入制出』은 그 기록 방식이 오늘날의 가계부와 비슷하다. 여기에는 논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생산량,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선물, 농경지의 경작료 등을 수입으로 합산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매달 지출하는 액수가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일부 가정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가계부를 통해 매년 경제상황을 파악하였다. 오늘날 가정에서 기술한 가계부는 분화된 항목별 수입과 소비 정도, 매년 국가 경제와 관련된 물가 흐름 등을 알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생산·소비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회계 장부라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비공식적 경제를 매개로 개별 가족원의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활동이나 생애별로 야기된 사건·행사 등이 부기付記되어 있어 한 가정의 생활사를 기억할 수 있는 기록물 역할도 한다.

가계부 | 가로21 세로28 두께2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지역사례 1974~1989년 경상남도 울주군 온산면 삼평리(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구 온산읍 삼평리)의 한 농가에서 가정주부가 기록한 가계부에는 매일·월말·연말의 수지收支와 당시 수입 및 지출 규모, 집약적 농업활동, 농사정보, 정기시장에서의 농산물 판매 금액 등이 제시되어 있다. 가계부에 기록된 수입 항목은 5일 정기시장에 판매한 계절별 농산물과 가축 대금이 주를 이룬다. 판매한 농산물은 쌀, 참깨, 호박, 부추, 밤, 감자, 고구마, 양파, 파, 무, 배추, 오이, 토마토, 당근, 콩, 시금치, 상추, 고추, 마늘 등이다. 판매한 가축은 강아지, 닭, 송아지, 소 등이다. 지출 항목은 크게 교육비, 가정비, 농비, 의료비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비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등록금, 책 대금, 교복비 등이다. 가정을 단위로 지출한 비용은 주민세, 상가 문상비, 제수비祭需費, 적십자회비, 이발비, 찬값, 계금契金, 차비, 생활용품 구입비와 함께 술이나 과자 등 기호품비 등이다. 의료비로는 약값, 병원비 등이 있다. 농비는 비료 및 농약비, 종자씨 대금, 농기구 구입 및 수리비, 모심기 품, 일꾼 품삯, 가마니 구입비로 되어 있다.

1980년대 중후반으로 오면 이 가계부의 기록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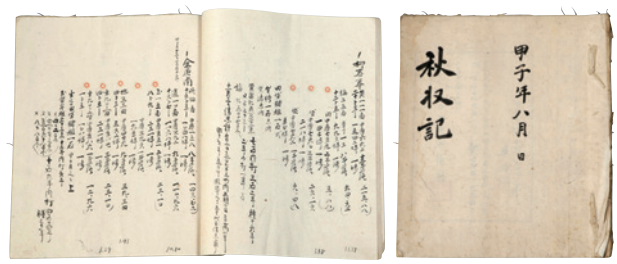

추수기 | 가로27 세로32 |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1924년 강화군의 토지 소출 및 사용, 곡식을 사들인 상황 등을 정리한 문서.

도 정세화되어 현금소득, 현물소득(자가작물 소비, 선물, 현금 답례품), 세금공과금, 부식비, 주거광열비, 보건위생비, 교통통신비, 문화교제비(신문대금, TV 시청료, 손님 접대비 등), 특별비(냉장고 등 고가 가구 구입비, 장례비 등), 차입상환금(월부금 등 채무 상환금), 저축, 총수입, 총지출로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특히 월중행사로 혼·상례 일자, 채소 및 구근·과수작물의 시비施肥·모내기 및 추곡 수매收買 일자와 관련된 지출·수입이 기재되어 있다.

가계부의 명세에서는 과소농적 농업생산 체계 하에서 농가의 비공식적 경제활동이 생계유지를 위한 식량 생산과 일부 환금작물(배추·무·상추·마늘·당근·고추)이나 가축을 마을에서 반경 4㎞ 이내에 있는 정기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 등으로 행하여졌음을 보여 준다. 월평균 1~2회 정기시장에 가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생필품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농업생산의 사회관계에서 20세 이상 자식들은 급료 없는 가족노동을 행하는 주체였고, 그들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결혼할 때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지체된 보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가족 중 누가 심각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 지출이 수입보다 엄청나게 증가하여 가계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는 연차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지출 항목 가운데 상위를 차지하였다. 음식비, 의복비, 주거비, 여가 활동비 등은 해를 지나면서 약간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사례는 농민 가족의 생계유지와 경제·사회적 재생산 전략에 기반을 둔 가계경제의 특징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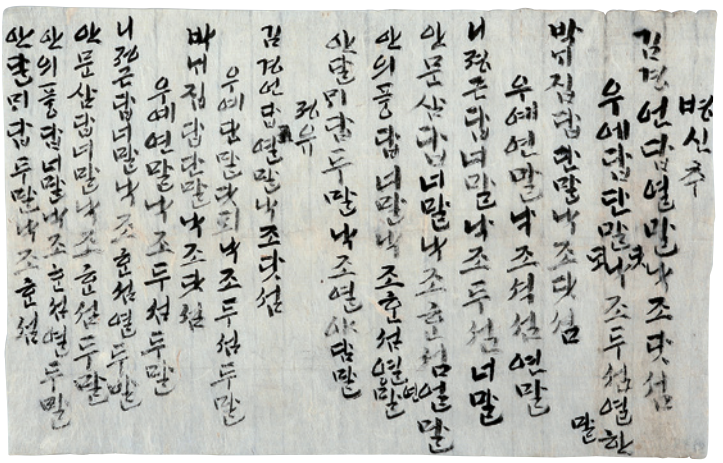

병신년·정유년 추수기 | 가로37 세로23 | 조선 | 국립한글박물관

특징 및 의의 농가 가계부는 농업생산을 위해 투자한 자본, 농작물 경작방식, 상업활동과 농산물 소비방식, 부업 종류, 경작지 면적 등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 준다. 그리고 연령·성별에 따른 경제 수입과 지출 명세를 담고 있어 가구의 개별 구성원이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행한 전략적 경제활동을 보여 준다. 가계부는 연령별·성별·가족유형별 생산지수와 소비지수 도출에 필요한 가계경제 자료이다.

참고문헌 경제교환과 사회관계(박성용, 영남대학교출판부, 2003), 농업 경제(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2006), 현지조사자료(김용화, 울산광역시 울주군, 1974~19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성용(朴晟慵)

가구
家口

정의 실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그런 집단을 세는 단위.

내용 가구家口는 같은 집에 살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가구와 가족家族을 혼용하기도 하는데 가구와 가족은 다른 개념이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에 따르면 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이다. 하나의 주거지를 공유하면서 취사나 취침을 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경우와 여러 명이 같이 사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하나의 가구를 형성한 사람들을 가구원家口員이라고 한다.

가구와 가족이 종종 혼동되는 이유는 가구원 모두가 가족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족은 혈연·혼인·입양 등의 방식으로 친족 관계를 이루고,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공유하며, 실제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구와 가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구분된다. 첫째, 가구원은 친족 관계일 필요가 없다. 친구 세 명이 같은 집에서 생활할 경우 3인의 다인 가구이지만 가족은 아

니다. 친족 관계가 아닌 가구는 비친족 가구라고 한다. 둘째, 가구는 주거지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정의하기 때문에 독립해서 주거지를 떠나면 더는 가구원이 아니지만 가족은 같이 살다가 독립해도 가족원 자격이 사라지지 않는다. 셋째, 가구는 주거지를 기준으로 정의하므로 1인가구를 정의할 수 있지만 가족은 관계를 중심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1인가족을 정의할 수 없다. 넷째, 가족은 누구를 기준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가족원의 범위가 다르다. 예를 들어 남편은 자기 형제를 가족원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아내는 남편의 형제를 가족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가구는 누구를 기준으로 파악하느냐에 관계없이 가구원 범위가 같다.

특징 및 의의 가구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통계를 생산하는 단위가 가구이기 때문이다. 가족 범위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통계의 관찰 단위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가구는 같이 사는지 아닌지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므로 통계 생산 단위가 된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정의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기르는 여성 또는 남성, 한 부모로 이뤄진 가족을 한부모가족이라 한다. 한부모가족의 실제 가구 유형을 보면 조부모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만 함께 사는 2세대 가구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사는 1세대 가구일 수도 있다. 그런데 통계청이 생산하는 '한부모가구 통계'는 부父 또는 모母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가구를 포함하고(예를 들어 60대 모와 30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반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가 자기 부모와 함께 3세대 가구를 이루는 경우는 한부모가구 통계에서 빠지게 된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에도 가구 통계는 한 사회의 가족제도와 가족생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사회 가족을 연구한 김두헌과 최재석의 자료를 보면 19세기 말 조선의 가구 중 부부가족형 가구 65.2%, 직계가족형 가구 26.8%, 방계가족형 가구 3.5%, 과도형 가구 0.6%, 단독 가구 3.9%로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부계직계가족 이념이 통용되던 조선시대에도 직계가족형 가구는 30%에 미치지 못한다. 이 자료를 기초로 장형섭은 부계직계가족 이념이 강하게 존재하던 조선사회에도 핵가족형 가구가 보편적이었다고 말한다. 실질적으로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직계가족형 가구와 나머지 자녀들이 분가하여 형성하는 핵가족형 가구를 비교하면 후자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가족의 규범적·이념적 특성을 밝힌 중요한 연구로, 가족과 가구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가구 통계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조사 자료는 가구를 집단가구와 일반가구로 구분한다. 집단가구는 비혈연 관계의 6인 이상 가구나 집단시설 가구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가구 통계를 제시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가구는 친족 관계인 가구원으로 구성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혈연가구와 비혈연 5인 이하 가구로 구분되고, 1인가구도 일반가구에 포함된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는 2021년 기준 약 2,144만 8,000가구로 1970년의 약 557만 6,000가구에서 3.8배 이상 증가하였다. 1970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는 약 3,224만 1,000명에서 약 5,173만 8,000명으로 1.6배가량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가구 수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였다. 인구 증가보다 가구 증가가 더 빠르다는 것은 가구 규모가 작아지고 가구 분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 가구원 수를 보면 1970년 5.2명에서 2021년 2.3명으로 감소하여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가구를 세대별로 보면 2021년 기준 1세대 가구는 약 405만 4,000가구로 18.9%, 2세대 가구 42.19%, 3세대 가구 3.27%, 4세대 이상 가구 0.02%, 1인가구 33.4%, 비친족 가구 2.2%이다. 여러 유형의 가구 중 3세대 이상 가구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1인가구, 비친족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구 추세를 보면 한국 사회는 하나의 전형적 가구 구성이 우세한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가구 구성이 공존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 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장현섭,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문학과 지성사, 1993),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한국의 사회동향 2022(통계개발원, 2022), 국가지표체계(index.go.kr), 국제통계포털(kosis.kr).

필자 진미정(陳美靜)

가문
家門

정의 부계혈연을 기반으로 도덕적 규범과 생활양식 등을 공유하는 집단.

내용 가문家門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는 부계혈연이다. 즉 같은 조상을 두는 부계혈연집단을 가문이라고 지칭한다. 다만 그 범주는 명확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가문은 실제적 개념이 아니라 관념적 범주라 할 수 있다. 가문의 최소 범위는 같은 고조부를 둔 당내堂內 집단이고, 다음은 파시조派始祖를 중심으로 형성된 파문중派門中이며, 이어 동성동본同姓同本의 부계혈연집단인 대문중大門中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사용되는 가문이라는 용어에는 부계혈연을 비롯해 외가, 처가 등과 같이 모계(어머니)와 처가 집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가문은 상황에 따라 범주를 달리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가문은 도덕적 규범과 생활양식 등을 공유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소속 성원들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가문은 가치판단적 기준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문이 좋다" "뼈대 있는 가문이다" "가문이 미천하다" 등의 표현이 있다. 이런 점에서 가문은 집의 위상, 즉 가격家格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전통사회에서 가문은 개인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되었다. 개인의 역량보다도 출신 가문을 잣대로 능력을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가문 중시 경향은 개인을 집단 구성원으로만 간주하는 탓에 독립적 개체로서 개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평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전통사회에서는 높은 벼슬에 오르거나 뚜렷한 학문적 업적을 남긴 인물을 다수 배출한 가문일수록 사회적 위상이 높았다. 따라서 좁게는 집안 중심으로, 넓게는 문중 중심으로 가문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대과大科 급제자 배출에 전력을 다하였다. 이를 통해 가문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혼인이다. 좋은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주로 상류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가문의 위상이 비슷한 집안과의 혼인이 대대로 반복되는 것을 혼반婚班이라고 한다.

가문의식은 현대사회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시대가 달라진 만큼 크게 변화된 양상을 보일 뿐이다. 특히 친족 관념과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면서 가문 범주가 좁아졌는데 전통사회의 최소 범위였던 당내의 8촌보다도 더 협소해지는 추세이다. 또 가문의 위상을 판단하는 기준도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해졌다. 전통사회에서는 양반이라는 신분을 갖춘 후 높은 관직과 학문적 업적 등의 요건이 추가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학력, 직업, 경제력 등이 가문의 위상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었다.

특징 및 의의 현대사회에서 가문의 위상은 유동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신분제가 확고하였던 전통사회에서는 가문의 위상을 쉽게 바꿀 수 없었지만 신분제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즉 학력·직업·경제력은 태생적 요건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가문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통사회의 가문은 고착적 속성을 갖는 반면에 현대사회에서의 가문은 획득적 속성이 강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가문의식은 시대를 막론하고 개인을 평가할 때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가문의 전통이 개인의 사회화 및 학습화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전통적 관념이 자리하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양반사회연구(이성무, 일조각, 1995),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김성우, 역사비평사, 2001), 풍산홍씨문중의 가문의식(이군선, 한문교육논집 43, 한국한문교육학회, 2014).

필자 김미영(金美榮)

가문잔치

정의 혼례식 전날 돼지를 잡으며 일가친척과 하객들을 대접하는 잔치.

내용 제주도의 혼인의례 과정에서 잔치라는 이름이 붙은 행사로는 잔치 전날 양가의 '가문잔치', 혼례식 당일 양가에서 각각 치르는 '잔치', 잔치 이튿날 신붓집의 '사돈잔치', 그다음 날 신랑집의 '사돈잔치'가 있다.

가문잔치는 대개 신랑·신부 양가에서 혼례식 전날 치러졌다. 이날 돼지를 잡았고, 친족들은 잔칫날 자기 역할을 배정받기 위해 모여들었다. 사돈집에 우시(상객)로 갈 사람, 사돈집에서 오는 상객을 상대할 사람(대반), 상객을 따라오는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 등 역할을 확인하는 모임이 이루어졌다. 가문의 결속과 한 가족임을 강조하는 날이다.

가문 사람만 모여 하던 가문잔치는 축하객이 늘게 되면서 그야말로 북적이는 잔치가 되었으며, 돼지를 잡는 것도 혼례식 전전날로 앞당겨지게 되었다. 혼례식 전전날은 '돗(돼지) 잡는 날'이라 하여 궨당(친족), 즉 성펜궨당(친가)과 외펜궨당(외가)이 모여 남자들은 돼지를 잡고 여자들은 물을 길어 나르고 두부를 만드는 등 음식 준비를 한다. 돼지고기는 예나 지금이나 제주에서 큰일을 치를 때 반드시 장만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다. 돗 잡는 날은 일을 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 날이어서 일꾼을 대접하는 성격이 강하다. 제주도

고깃반과 가문잔치 음식 | 제주 제주시 | 2013 | 허남춘

솔문 | 제주 제주시 | 1967 | 제주문화원

에서는 돗 잡는 날에 참석하여 술을 한 잔씩 나누는 것을 혼사를 치르는 집에 대한 일종의 부조로 여긴다. 가까운 친척이거나 평소 친근한 사이라면 당연히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참여하지 못하면 섭섭하게 여기기도 했다.

혼례식 전날 양가에서는 혼례식에 쓰일 하객상을 준비하고 혼례를 치르기 위한 제반 절차를 준비하고 논의한다. 올레(큰길로 나가는 좁은 골목길)에 솔문을 세워 동백꽃과 색종이로 치장해 여기가 잔칫집임을 온 동네에 고한다. 이렇게 일과를 마무리할 즈음, 저녁에 돼지고기 부산물과 술을 곁들여 전야제 성격의 향연을 베푸는데 이를 '가문잔치'라 한다. 모든 준비가 끝난 혼례식 전날 저녁에 친척들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신랑·신부의 부모 입장에서는 혼인 준비에 도움을 준 친족들을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것이며, 친족들 입장에서는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친족들은 대부분 이날 부조를 한다. 여자의 경우 곡물(쌀 1말 혹은 보리쌀 1말 반)을, 남자는 계란(짝수로 20개 내외)이나 닭(1~2마리)을 가져왔다. 가문잔치에 쓰이는 음식은 잡곡밥, 돗국물, 고깃반(가문반) 등이다. 잡곡밥은 보리쌀과 팥으로 만든 밥이며, 돗국물은 돼지고기 삶은 국물에 몸(모자반)과 고사리 등을 넣어 만든다. 고깃반은 돗배설(내장)과 고기와 돗쉬웨(순대)를 개인당 반으로 제공한다. 제주도에서 '반'은 돼지고기 석 점과 순대, 떡 등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나눠 주는 것을 의미한다.

혼례식 당일의 '초불잔치'는 하객들에게 아침을 접

혼례 앞에 드리는 문전제 | 제주 제주시 | 1981 | 제주문화원

사돈끼리 인사하는 사돈열명 | 제주 제주시 | 1981 | 제주문화원

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때 준비하는 밥을 '초불밥'이라 한다. 신랑이 문전제門前祭를 지낸 후 신붓집에 가면 신붓집에서는 신랑을 접대하고 신붓집 잔치는 마무리된다. 이후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오면 이때부터 신랑집 잔치가 시작되는데 이를 '두불잔치'라고 한다. 동네 하객들은 대부분 이때부터 신랑집에 부조하기 위해 모여든다. 혼례식을 치르고 2~3일 뒤에 사돈끼리 모여 관계를 다지는 자리를 갖는데 이를 '사돈잔치' 혹은 '사돈열명'이라 하기도 한다. 잔치 준비를 위하는 돗 잡는 날부터 잔치가 끝난 후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남은 음식을 대접하는 날과 사돈끼리 인사하는 사돈잔치까지 모든 잔치를 진행하는 데는 여러 날(3~7일)이 걸렸다.

특징 및 의의 가문잔치는 혼례식 전전날 돼지를 잡고 혼례식 전날 혼례를 함께 준비하는 가문 친척을 대접하는 잔치다. 신랑·신부 각각의 집에서 따로 치렀으며, 잔치를 위해 집안에서는 1~2년 전부터 어린 돼지인 '자릿도새기'를 키우며 미리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 돼지를 잡고 가문 사람들과 하객이 음식을 나눠 먹는 의례는 혼례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흥겨운 일이었다.

과거 육지에서도 가문잔치가 행해졌으나 비교적 일찍 사라져 흔적만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제주도 사람들 사이에서 가문잔치 비중이 높아 이를 소홀히 하면 잔치도 아니라고 흉보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예식장에서 하객의 식사를 대접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집에서 돼지를 키우거나 잡는 일이 없어졌고, 따로 일가친척만 모여 가문잔치를 벌이는 경우도 드물다.

참고문헌 제주결혼풍속의 변천(김순이, 가문잔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2022), 제주도 가족과 궨당(김혜숙, 제주대학교출판부, 1999), 제주음식생활문화사(오영주, 제주특별자치도, 2017), 디지털제주문화대전(jeju.grandculture.net).

필자 허남춘(許南春)

가부장제
家父長制

정의 가족 내 남성 연장자가 강력한 권한으로 아내와 자녀를 포함한 모든 식솔들을 소유하고 다스리며 보호하는 가족 형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체계.

역사 동양에서 가부장제家父長制 역사는 짧지 않다. 가부장제란 인격과 모든 생활 영역에서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는 믿음 아래 가부장家父長이 아내와 아들·딸 및 노비 등에 대한 권리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풍습風習과 법 역시 남존여비男尊女卑 원칙 아래 제도화하였다. 중국에서 축첩蓄妾이나 전족纏足을 허용한 것, 일본 및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여성들이 남편보다 몇 걸음 뒤처져서 걷도록 한 것 역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와 맥을 같이한다.

한반도의 가부장제 역사는 금속문화 및 고대국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부장권家父長權이 강력하였던 것은 아니며, 유교의 전래 및 정착과 함께 점차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삼국시대 신라에서는 3명의 여왕이 나라를 통치하였으나 통일신라 이후 여성의 정치권 및 대표성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초기까지는 여성들이 말을 타고 다니며, 상업에 종사하여 재산을 축적하고, 자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부터 여성들은 집 안에 머무르면서 공식적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으로부터 제외되고, 가사와 양육 및 부양에 한정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재산상속 및 봉제사奉祭祀에서 딸과 아들 혹은 장자張子와 차자次子 간 위계를 두지 않고 균분하였고, 혼인 후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흔하였으나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이 통치 이념으로 확립됨에 따라 강력한 가부장권이 자리를 잡았다.

조선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던 사회였으므로 토지는 가부장이 가족 구성원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었다. 그리고 유교적 윤리는 성과 연령에 따른 위계를 기초로 한 가부장제 사회를 뒷받침하는 규범적 토대였다. 이들을 근거로 한 조선시대의 가부장적 질서는 가족 테두리를 넘어 가족 밖의 공동체 질서를 정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가치로 확대되었다. 즉 가족 안에서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는 성별에 따른 수직적 위계와 더불어 부자父子간·형제간 수직적 위계가 가족 밖에서의 연령에 따른 위계 및 임금과 신하 간 복종관계로 확대되었다.

또한 혼인한 딸은 친정의 족보에서는 삭제되어 상속권과 봉제사 자격을 상실하고 시가의 일원으로서 남편 쪽 친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부거제父居制, 시가의 자손을 낳아 대를 잇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부계제父系制가 강화되었다.

삼종지도三從之道, 칠거지악七去之惡, 열녀관烈女觀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다. 삼종지도란 '혼인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혼인하면 남편을 따르며, 남편 사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규율로, 여성은 일생에 걸쳐 남성의 가치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칠거지악은 조강지처糟糠之妻 자리에서 내쳐짐을 당할 정도의 일곱 가지 악덕으로, 시부모를 섬기지 않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음란하거나 질투가 심하거나 나쁜 질병을 가졌거나 말이 많거나 도둑질을 하는 것 등이다. 즉 가부장인 남편이 아내를 내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열녀관은 여성에게 혼인관계는 사별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남편 외의 존재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음을 가시화한 것이다. 즉 남편 사후 아내는 평생에 걸쳐 수절하는 것이 당연하고, 혹여 불가항력이라 해도 정조를 잃을 위기에 처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라도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모든 규율이 여성에게만 강요된 것은 여성으로 하여 순결을 지키다가 남편의 친자를 생산하여 양육하게 함으로써 부계혈통의 순수성을 이어 가기 위함이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식민지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황국신민 및 내선일체 등의 기치旗幟를 내걸고 일본 왕을 가부장으로 하는 일본식 가부장제 구조에 한국인을 편입시켰다. 그리고 일본의 '이에家 제도'에 호주제戶主制라는 이름을 붙여 한국에 적용하였다. 호주제는 거주지 중심으로 집안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남자를 호주戶主로 삼고, 호주에게 가족 구성원의 혼인·입양·입적·제적 등의 신분 행위와 재산 취득·이전에 대한 동의 및 허가권 등을 갖게 함으로써 강력한 가부장권을 행사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는 한국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한 분할통치의 일환일 뿐 한국의 전통적 친족 중심의 집단주의적 가부장권과는 다르다. 그러나 호주제 역시 여성과 식솔들의 삶을 옭아매는 강력한 가부장제도였음에는 틀림이 없다. 호주제는 이후 50년 가까이 가부장권을 옹호하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하다가 2005년에 이르러서야 폐지되었다.

1960~1970년대의 압축적 산업화 과정에서 남성 노동력이 생산 활동에 집약되는 동안 가사와 양육·부양 등의 재생산 활동은 아내의 무임 노동에 의해 전담되었다. 즉 1인 경제부양자와 전업주부 간 성별 분업에 토대를 두었던 가부장권은 남편의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 전담과 가사, 양육, 내조 등에 진력하는 아내의 감정노동으로 구분한 서구의 근대식 가족 모델과 맥을 같이한다.

오늘날 여성교육 확대와 결혼의 불안정성, 성평등 의식 확산, 평생고용의 의미 퇴색과 함께 양 배우자의 역할을 성별에 따라 경제부양자와 재생산 담당자로 이분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맞벌이 보편화로 부부가 경제적 부양 역할을 공유하게 된 상황에서 남편이 가부장권을 점유할 근거는 사라졌고, 법과 제도 내의 가부장적 분위기 역시 약화되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사회 구성원들에게 익숙해져 온 가부장제는 세대별로 내면화된 정도와 색깔이 다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다.

내용 가부장제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양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권력관계이다. 가부장제로 인해 피해를 감내해 온 대표적 존재가 여성이므로 여성계가 중심이 되어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 중 하나는 여성의 몸이 지닌 특성으로 인한 역할, 즉 임신과 출산 및 모유 수유 등이 가부장권을 강화하고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즉 여성의 역할을 단지 임신과 출산 및 양육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가내 권력을 남성에게 집중하게 하고 여성을 부계 및 부권 질서를 뒷받침하는 존재로만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상호작용하여 여성문제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부연하면 가정에서의 가부장적 사고로 인하여 여성은 가사와 양육 등 무임의 재생산노동에 에너지와 시간을 우선적으로 소모하다 보니 자본주의 노동시장 경쟁에서 불리하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화폐로 환산되어 벌어들이는 경제력 차이로 가정에서도 양 배우자 간 권력 차이가 발생하고, 순차적으로 가사 및 양육 역할의 아내 편중이 유발된다. 반면 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은 벌어먹여야 할 피부양 가족이 있으니 우선적으로 남자를 채용하고 승진시켜야 한다."는 식의 가부장적 사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능력이 같아도 남성에 비해 취업과 승진에서 불리하다.

이처럼 가정과 노동시장이라는 양 영역에서의 가부장적 사고 및 자본주의 경쟁에서의 차별은 상호 순환하면서 양성 간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성별 불평등의 고리를 끊는 방안으로 가사 및 양육과 부양 역할에서 가부장성家父長性이 해체되어야 하고, 양육과 부양의 상품화 및 사회화가 질적·양적 다양성을 갖춰서 활성화되어야 하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가부장성이 해소되어 직종 및 업종에서의 성별분업 체계가 해체되어야 함이 지적된다.

특징 및 의의 '가부장제'라는 용어가 보편화되면서 가족 안에서 당연한 듯 수용되고 실천되어 온 많은 부분에 여성 억압이 존재해 왔음에 대한 대중의 깨달음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제가 가족이라는 사적 공간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체계와 국가기구 안에도 존재해 왔으며, 여전히 다양한 비합리성을 노정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되었다.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탐색 및 토론이 단기적 시점에서는 양성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성 불평등 개선, 부단한 성 평등의 필요성 홍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양성 간 대등한 어울림으로 유도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21세기 여성과 남성(이여봉, 신정, 2010), 21세기 한국가족과 문화(이여봉, 박영사, 2022), 가족 안의 사회 사회 안의 가족(이여봉, 양서원, 2017), 일제 식민지하의 여성정책(유해정,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여봉(李麗峰)

가사노동
家事勞動

정의 가족의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수행되는 노동.

내용 가사노동家事勞動은 인류가 가정을 이루어 온 이래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노동의 한 형태이다. 경제체제 변화에 따라 노동의 목적과 종류, 수행방법, 수행자, 수

행조건이 변화해 온 것처럼 가사노동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거치면서 변화하였다.

농경사회에서 집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자급자족하는 생산과 소비의 장소였다. 고대로부터 집에서 행해지던 대표적인 가사노동에는 농사짓기와 직조織造가 있었다. 신라의 생활상을 기록한 『신당서新唐書』에 "남자는 경작하며, 여자는 길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의 덕흥리德興里 고분벽화古墳壁畵와 대안리 1호분大安里一號墳 벽화에서도 소를 모는 견우와 베를 짜는 직녀를 볼 수 있다.

가사노동에 분업은 있었지만 가족들은 공동생활을 위해 협업하였다. 부인은 새참을 나르고 밭을 매며, 남편과 더불어 농사를 지었다.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일은 부인이 하였지만 남편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일을 하였다. 고구려의 안악3호분安岳三號墳 벽화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우물에서 물을 길으며 방아 찧는 여성을 볼 수 있고, 덕흥리 고분벽화에서는 사냥하는 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일 외에 여성은 바느질, 빨래, 가축 기르기, 장보기도 하였다.

가사노동은 가족을 위해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조세租稅납부나 시장교환과 같은 공적公的 목적을 위해 수행되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경우 부세賦稅와 인세人稅로 직조물과 곡물을 징수하였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춘추공春秋公 시대에 베 한 필은 벼 30~50석과 교환되는 가치를 갖고 있었다.

가사노동은 신분에 따라 하는 일에 차이가 있었다. 노비를 소유한 상류계층의 여성은 밥 짓는 일은 하지 않았다. 안악3호분 벽화의 부엌에서 일하는 여성은 아비阿婢라는 노비였다. 『삼국유사』에 계집종에게 곡식을 빻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직조는 신분과 관계없이 행해졌는데, 신라에서는 왕녀로 하여금 육부六部의 부녀들과 길쌈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농경사회의 특징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조선시대에도 가사노동은 가족이 공동으로 하는 일이었다. 부인은 식사 준비와 빨래, 직조 등을 하면서 밭일을 하고 농사도 지었다. 남편과 함께 방아를 찧기도 하였다. 남편은 사냥과 낚시 등으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장작을 마련하는 일, 농사짓는 일을 하였다. 자녀들도 직조와 바느질, 빨래, 물 긷기, 동생 돌보기, 나무하기를 하였다. 동거하는 조모는 밥 짓기와 손주 돌보기를 하였다.

밥 짓는 여성 | 안악3호분 | 고구려 | 동북아역사재단

직조는 조선시대에도 신분과 관계없이 행해졌다. 왕실의 후비后妃와 양반가의 부녀도 누에를 기르고 직조를 하였다. 신분에 따라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종류가 다른 것도 이어졌다. 찬모饌母, 세비洗婢, 유모乳母가 있는 상류층에서는 이들 노비가 밥 짓기, 빨래, 육아를 수행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시집가지 않은 누이에게 종이 없다면 누가 장가들려고 하겠는가, 한평생 제 손으로 물도 긷고 방아도 찧고 하겠으니 참으로 불쌍하다."며 여종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도 직조물은 조세납부와 시장교환에 사용되었다. 국가에서는 양역세良役稅 등으로 직조물을 징수하였고, 직물을 화폐로 공인하였다. 가난한 여성들은 직조하여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다. 특히 빈곤한 양반가의 부녀는 글공부하는 남편을 대신해 직조 등으로 가족을 부양하였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일직부녀승삼농부一織婦女勝三農夫'라 하여 직조하는 부녀 1인이 농부 3인보다 낫다고 부녀의 노동 가치를 평가하였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계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가치가 분명하였던 직조노동은 공장에서 하는 일이 되어 가내에서 사라졌다. 이후 식사 준비, 빨래, 양육 등

맷돌갈고 | 김준근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의 일이 가사노동으로 남게 되었다. 일터와 가정이 분리됨에 따라 임금노동에 포함되지 못한 가사노동은 무급노동이 되어 경제적 가치가 불분명해졌다. 가족이 공동으로 하던 가사노동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원이 감소하고 자녀는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가정에 남겨진 주부의 일이 되었다.

한편 산업화는 가사노동 수행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농경사회에서 가사노동은 노동력에 의존하는 고된 작업이었다. 밥을 하려면 농사지은 곡물을 방아로 찧고 나무를 구해서 불을 피우고 물도 길어 와야 하였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가공된 식재료가 공급되고, 연료는 나무에서 연탄·석유·가스·전기로 바뀌었다. 수도가 각 가정에 설치되었고, 전기밥솥 등 가정 기기가 생산·보급되었다. 보육시설, 분유와 종이 기저귀, 기성복, 외식산업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져 가사노동은 감소하고 주부는 이전보다 편리하게 가정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기계화가 증가하며 가사노동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취사 기기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음식에 대한 가족의 요구도 증가하였다. 세탁기로 인해 손빨래는 사라졌지만 의복 수가 증가하고, 청결 표준이 높아져 세탁 빈도는 증가하였다. 차를 운전해서 가족의 이동을 돕는 일이나 가족 캠핑처럼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일도 나타났다.

정보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기계화를 더욱 급속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로봇으로 청소를 해결하고,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필요한 의복과 배달식을 주문하며, 주택을 관리하고, 영아도 종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게 되었다. 가사노동의 편리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의복을 세탁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편리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건강을 고려해서 개별가정의 고유성을 유지하려 한다. 요리를 취미로 하는 것처럼 가사노동을 즐기기도 하고, 제한된 가계소득 때문에 가계생산을 선택하기도 한다. 사회가 무한경쟁으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가족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사노동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재택근무가 늘어나 농경사회처럼 다시 가정이 소비와 생산의 장소가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가사노동 수행의 조건과 수행 목적, 일의 종류와 수행 방식, 수행자는 바뀌고 있어도 가사노동은 초역사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산업사회 이후 가사노동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로 사적私的으로 수행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조세납부를 위해 직조를 하는 것과 같은 공적公的 성격을 갖는 가사노동은 사라졌다. 가사노동은 시장 상품과 서비스로 대체되고 기계화되어 감소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이는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은 GNP(국민총생산)에 산정되며, 외식이나 세탁소·보육시설 같은 시장 상품과 서비스로 가사노동을 대체할 경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가시화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가사노동 시간을 조사하고 무급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 산정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행하는 정서노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계청에서 계상計上하는 것 이상으로 가사노동은 가계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수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통계청, 2018), 가사노동시간 측

정 및 행동평가 기준의 젠더불평등성 개선방안(김영란·선보영·김필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조선시대 가사노동의 성별분업(김성희·이기영, 가족자원경영과 정책11-3,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7),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김성희, 학지사, 2002), 동북아역사넷(contents.nahf.or.kr).

필자 김성희(金聖姬)

가업
家業

정의 한 집안에서 전승해 오는 생계 활동 또는 직업.

역사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기에 양천 구별이 뚜렷하였다. 양반과 중인, 상민과 천민으로 신분을 구별하였다. 이에 따른 직분 세습도 있었다. 양반은 고위직이나 유학자, 중인은 하위관리직, 상민은 농민·상인·수공업자들이었다. 천민에는 백정, 노비 등이 포함된다. 양반들은 과거科擧나 음직蔭職을 통해 관직에 나아갔고, 조정에서는 세습을 용인하고 있어서 가업家業으로 이어갔다. 중인이었던 역관譯官·의관議官·산관散官·율관律官·화원畫員 및 지방의 향리鄕吏·서리書吏·역리驛吏도 가업 계승 구조가 마련되어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속대전續大典』 등에 공장工匠의 직업 계승을 규정하는 조목이 있으며, 이는 이들의 세습이 국법으로 정해져 있었음을 보여 준다. 사장私匠은 국법에 따르지는 않았지만 민간수공업 규모가 작아서 가족들이 동원되어야 하였기에 자연스럽게 가업으로 계승되었다. 천민으로 취급받던 무격巫覡도 가업이 된 세습무가 있었다.

내용 가업은 그 생계 활동이나 직업이 후대로 계승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생계 활동은 살아가기 위한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직업이란 생계를 위하여 자기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 종사하는 일을 말한다. 우선 업業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후손들이 의무감 또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업으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업이 계승되는 부문은 상업, 기술, 전문직 및 그 밖의 특수직에서 나타난다.

함께 작업하는 탕건장 삼대 | 제주 제주시 | 2000 | 국립무형유산원

근대 시기부터 부를 축적하여 자본 형성에 성공한 상인들이 거상巨商 반열에 들면서 가업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개성상인들 가운데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개성상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당대에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들이 특별한 경영 방법을 배워서 가계家系를 계승하였고, 이후 거상으로 이름을 올린 예가 적지 않다. 6·25전쟁 이후 월남한 개성상인들이 남한에 정착한 후 가업을 이어서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례도 있다.

한약업사와 같은 전문직도 가계를 계승하는 집안이 많다. 전문지식, 기술, 비방秘方 및 장기간의 학습과 수련이 필요한 직종이어서 자손들에 의한 세습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또한 한약업은 구한말에는 한약주부韓藥主簿(종6품의 의관직), 봉사奉事(종8품의 약재관리) 등과 같은 유사관직類似官職에 진출할 수 있어서 민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아 가업으로 삼기에 유리하였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한약업사는 직·방계로 5대를 잇는 가업을 유지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점차 한약방 가문에도 단절이 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제도적 장치 때문이라고 한다.

장인匠人이나 예인藝人들도 가업을 계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예·도예·인쇄·부채·칠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인과 예능인들은 선대에서 개척한 분야를 세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부자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속설이 있다. 여러 대에 걸쳐서 부富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집안 선조들이

함께 작업하는 낙죽장 부자 | 전남 순천 | 2007 | 국립무형유산원

일군 업과 부를 유지하려면 후손들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하다. 소유권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도 승계하여야만 가업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조들이 개척하여 일으킨 사업이 후대로 잘 이어질 경우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이미 개발된 기술이나 지식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고, 이미 투자된 기반 시설을 활용하게 되므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업이 확대되면서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효과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상업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가업을 계승하고자 할 때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가 대두된다.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 승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가업 승계는 자칫 상속세 문제, 경영권 남용 등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가업 정의에서부터 상속세 관련 조항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업 승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당 법령은 아버지가 일군 사업을 자녀가 물려받을 경우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이어야 하며,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그 사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상공업 분야에서는 가업이 점차 축소·단절되는 경향이 농후하지만 반대로 가업을 되살리는 예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모들이 지켜 온 농·축산업에 새로운 기술과 경영 방식을 도입해 가업으로 일으킨 자녀 세대가 있다. 축산, 양계, 특수 작물 재배를 가업으로 해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청년 사업가들의 사례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상인계급을 천시하던 전통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인 가문의 성장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저조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상업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거상으로 거듭나면서 이들은 상인 가문을 탄생시켰다. 이들 가운데는 오늘날 대기업이 된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전문직, 기술직, 예술 부문에서도 세습 제도가 있어서 가업으로 계승된 예가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가업 계승은 사회 전체로 보면 바람직한 면들이 많다. 그러나 소유권과 경영권이 직계

후손에게 넘어가면서 후손들의 방만한 경영과 상속을 둘러싼 대내외적 갈등이 사회문제로 주목받기도 한다. 마침내는 도산한 기업도 적지 않다. 또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고 가업으로 유지하는 재벌이 많아지면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다. 소유경영자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나 의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가족 내 승계를 고집하는 경우는 더욱 문제가 된다. 소유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물화私物化 내지 사금고화私金庫化하는 태도는 가업을 잇는 정신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근현대 개성상인의 경제조직 시론(양정필, 역사문제연구12-2, 역사문제연구소, 2008), 일제초 개성 시가지의 변화와 개성상인의 경제 기반(왕현종, 동방학지19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조선 후기 개성 김씨 화원 연구(박수희, 미술사학연구256, 한국미술사학회, 2007), 조선시대의 역관 등 중인 활동을 찾아서(김양수, 역사와 실학39, 역사실학회, 2009), 조선후기 산원집안의 연구(황정하, 한국사연구66, 한국사연구회, 1989), 한국기업의 발달(김원수, 경영논집32-4,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1998), 한약전통의 계승과 단절(박경용, 민족문화논총3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

필자 함한희(咸翰姬)

논갈이 | 김홍도 | 가로24 세로28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가장
家長

정의 집(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내용 가장家長 습속은 유교의 종법 제도에서 유래되었다. 종법의 궁극적 목표는 부계혈통 중심의 피라미드형 위계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다. 절대적 존재인 하늘을 정점으로 그 아래에 백성을 다스리는 제왕이 자리하고, 그 아래에는 혈통집단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종자(종손)가 놓이는 체계이다. 마지막으로 종법의 기본 단위를 이루는 가족에서는 가장이 중심에 놓이면서 가족 구성원을 관리·통솔하였다.

조선시대의 '가장'은 법전에 등장하는 법적(제도적) 개념이었다. 조선시대의 집은 모든 정책의 최소 단위였으며, 그 집을 관리하는 가장은 국가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책임자였다. 그래서 집의 책임자인 가장에게 가족 구성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는 가장의 권한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음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된 가장은 자녀와 처첩, 노비와 그 배우자 등을 포함하는 집[家]의 존장尊長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가장과 집에 소속된 구성원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아들·손자·처첩·노비 등이 부모나 가장을 고소·고발하면 모반과 반역의 죄를 제외하고는 교수絞首하고, 노처奴妻나 비부婢夫가 가장을 고소·고발하면 장杖 100, 유流 3000리里에 처한다. 노비나 고공이 이전에 소속된 집의 가장을 구타·욕설·고소·고발할 경우에는 현재의 가장을 구타·욕설·고소·고발하는 형률에서 2등급을 감減하여 벌을 내린다.
>
> 『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 고존장조告尊長條

위의 내용에서 보이듯이 가장은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위치에 있었다. 즉 가장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역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벌하는 일이 없었으며, 오히려 가장의 행위를 고발한 가족 구성원을 엄격히 다스렸다. 그만큼 가장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가장은 집안의 어른이기도 하면서 제도적 차원에서 부여된 권위와 책임을 갖는 연장자를

의미하였다. 가족관계에서 이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였으며, 노비와 토지 등 재산을 관리하는 통치자였다.

『가정야담家政野談』의 첫 구절은 "일가의 흥쇠는 전적으로 가장에게 달려 있으니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집안의 수많은 일을 반드시 순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가장은 단순히 연장자에게 부여되는 형식적 지위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원만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해 일정 규범을 체득하고 부여된 역할을 하는 책임자였다.

가장의 역할은 일상 영역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부모를 편히 모시고, 형제자매를 비롯해 친족 간에 화합을 이루고, 이웃 간에 친목을 다지는 등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책무 등이 부여되었다. 또 농사와 곡식 관리, 지출과 수납의 재정 관리 등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자녀교육을 통해 가문의 가학적 전통을 수립하며, 관혼상제 등 집안의 각종 의례를 주관하면서 의례적 전통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역할을 하였다.

조형여묘 |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중 부분 | 조선 후기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시대는 임금을 정점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체제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가족을 기본단위로 삼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가장이 집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평안을 도모하는 것이었고, 가장을 섬기는 것은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가장이 가족 구성원에게 통솔권·관리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다.

가족문화에서 유교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가장은 집안의 어른인 존장尊長을 의미하였고, 이에 수반되는 가장권家長權도 가족 보호자로서의 책무가 대부분이었다. 즉 당시의 가장은 실질적 역할보다 연장자로서의 권위를 가진 가족의 상징적 존재였던 것이다. 이후 유교적 친족이념이 정착·보급되면서 가장은 절대적·지배적 권한을 지니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유교의 종법 제도에 따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가부장권이란 가장권과 부권父權을 말하며, 가장권에는 권력이 부여되고 부권에는 권위가 주어진다. 즉 가장권이 실제적인 권한이라면 부권은 형식적 권한이다. 가장권에는 대표권, 재산권, 결정권, 제사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권은 집을 대표하는 권한으로, 친족과 이웃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 가장이 집안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며, 부조 봉투에는 가장의 이름을 적는다. 문중회의나 마을회의 등에도 가족 구성원을 대표해 가장이 참석한다. 그런데 대표권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실책에 대해서도 일정 책임을 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자녀들이 일탈행위 등을 하였을 때 가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 대응하는 것이다.

가장이 집을 대표한다는 관념은 성주신앙 습속에서도 드러난다. 성주城主는 가장의 안녕을 관장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신이기에 가신신앙에서 으뜸이 되는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가옥을 신축하거나 이사를 할 때 성주신을 가장 먼저 들이고, 특히 가옥을 지탱하는 대들보에 모신다.

그런데 남성 중심의 수직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였던 전통사회와 달리 오늘날의 가족관계는 수평적인 까닭에 대표권 역시 시대 상황에 맞춰 크게 달라졌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웃 간 교류나 마을 운영에 주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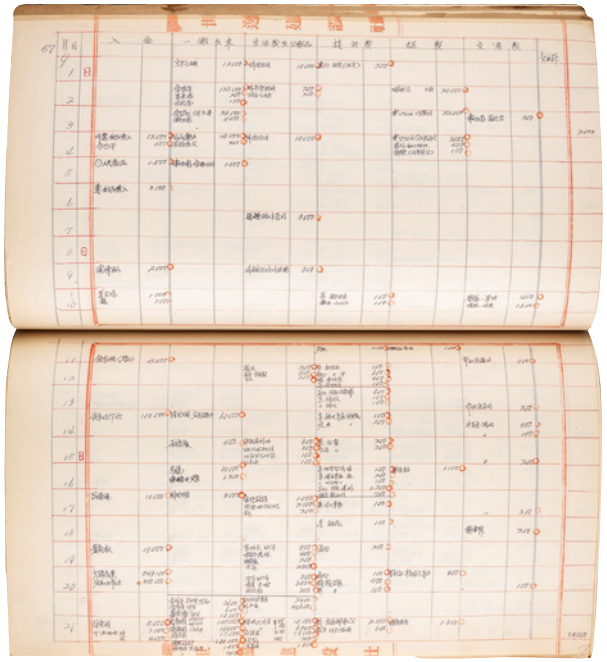

생활금전일기 | 가로27 세로20 두께3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하고 있으며, 또 자녀의 학교생활을 비롯한 일상적 교류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도 대부분 주부이다.

재산권은 집의 경제적 운영을 관리·책임지는 권한이다. 가옥과 토지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산문서 명의는 가장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재산을 구입하거나 처분하는 권한과 책임도 가장에게 있었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 오늘날의 가정에서는 주부의 재정관리권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급여통장과 생활비를 관리하고, 가전제품과 생필품 등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역할을 주부가 수행하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모든 재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듯이 가정의 재산권을 가장이 독점하는 경향은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결정권이란 집안의 크고 작은 사안을 결정할 때 가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가족 구성원의 행동(삶)을 지시하거나 제지하는 권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자녀들의 혼인이나 학교와 직업 등을 선택할 때 가장의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 내 주부(여성)의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결정권 역시 가장에게 집중되지 않고 부부가 협의하거나 영역별로 역할 분담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제사권은 집(가계)을 물려받는 계승권인데 조상제사를 주관하는 자격을 말한다. 유교에서 조상제사는 집의 혈통을 상징하는 의식儀式으로, 장남 중심 계승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조상제사를 물려받은 장남은 초헌관初獻官 역할을 하면서 집을 대표하는 가장으로서의 정통성을 재확인·가시화한다.

특징 및 의의 가장권은 가족구성원을 통솔하는 권한으로, 주로 직계가족(혹은 대가족)에서 성립되는 습속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부모와 도시의 자녀가 별거 생활을 하는 등 핵가족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은 현실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지휘·통솔하기가 어렵다. 이와 더불어 여성(주부)의 사회 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 증가도 가장권 습속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여성의 경제 활동은 의식적 독립으로 이어지고, 이로써 전통사회의 종속적 부부관계는 평등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의 가장은 가부장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갖는 지위가 아니라 '남편'이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가족과 친족의 민속학(김미영, 민속원, 2008), 조선시대 가장의 지위와 책임(정지영, 가족과 문화25-1, 한국가족학회, 2013),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박병호, 한국학보2-1, 일지사, 1976).

필자 김미영(金美榮)

가정
家庭

정의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한 가족의 생활공동체를 말하며, 일상적인 가족생활이 영위되는 곳.

역사 용어의 변화는 개념의 변화를 초래한다. 조선시대의 가家는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가족이나 가정家庭과는 다른 개념의 집단이었다. 현대의 가족과 가정은 혼인을 통해 탄생한 부부가 중심이 되지만 가家는 한 조상 아래에서 만들어진 혈연공동체를 의미한다. '가정'

은 조상과 자손들의 생활공동체라는 뜻이 내포되지 않은 채 20세기 초에 탄생한 새로운 용어이다.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 '가家'나 '호戶'로 인식되었다. 조선의 가家는 일반적으로 한 집안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집안의 범위는 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었다. 일족一族을 가리킬 때도 있고, 당내堂內의 범위만 포괄할 때도 있고, 더 좁은 의미의 집안을 일컬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가家는 같은 조상의 자손들이 사는 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내용 가정은 종종 가족과 유사어로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가정은 가족과는 개념적 정의나 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서는 가정을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또는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공동체'로 규정한다. 그리고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로 뜻풀이하고 있다.

즉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혈연집단에, 가정은 그들이 생활하는 집 또는 생활하는 공동체에 각각 방점이 찍힌다. 이 구별을 다시 설명하면 가족은 혼인과 출계出系로 조직되는 구조적 관계성에 초점이 두어져 있고, 가정은 생활·주거·삶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가정은 가족의 존재를 전제로 이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가정이라는 용어는 20세기 초 근대 시기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영어의 'home'이 비영어권인 동아시아로 유입되었을 때 일본 메이지시대의 번역가들은 이를 '가정家庭'이라는 말로 번역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신여성·신가정 담론이 등장하였다. 신가정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던 당대 지식인들은 조선의 구가정을 타파 대상으로 보았다. 비위생적이고 비합리적인 재래의 가정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신가정』이라는 여성잡지가 출간되어 새로운 가정생활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신가정 잡지 | 가로15 세로22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일제강점기 신동아사에서 발행한 가족 관련 정보를 수록한 잡지.

가정의 벗 잡지 | 가로19 세로53 | 1971 | 국립민속박물관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발행한 가족 관련 정보를 수록한 잡지.

조선시대에는 원래 가족이나 가정을 한자어로 가家·가내家內·일가一家 등으로 썼고, 구어체에서는 집 또는 집안이라고도 하였다. 집안의 범위는 부모·부부·자녀·형제자매가 포함된 확대가족이었고, 같은 조상을 모시고 사는 가까운 핏줄들의 집단을 말하였다. 한 조상의 자손이라는 개념이 가家·가내인 데 비해 근대 시기에 사용되기 시작한 가족이나 가정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찾아볼 수 없다.

근대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핵가족이 모델이었다. 남녀가 만나 혼인을 하고 남편은 가장으로, 아내는 현모양처로, 자녀는 근대국가의 국민으로 키우는 전형적 가족상을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은 핵가족 중심 생활, 가족 구성, 가족 이념 그리고 거주 공간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임을 강조하였다.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가정과 농촌가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가족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마침내 결손가정·한부모가정과 같은 용어

도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에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가정을 이르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겼다. 최근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도 나오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가정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주로 합성어로 사용되는 용례가 많다. 〈건강가정기본법〉〈가정의례준칙〉, 가정주부, 가정교육, 가정문제, 가정폭력, 다문화가정, 가정용 제품(산업용과 대비), 가정법원, 가정과, 저소득 가정 등이 그 예이다. 앞뒤로 붙인 명사가 '가정'의 의미를 강조하며, 또 '가정'의 범위를 한정한다. 예를 들면 가정주부의 경우 주부만으로도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 꾸려 가는 안주인이라는 뜻이 충분히 전달됨에도 '가정'을 붙여서 뜻을 강조한다. '가정교육'이나 '가정폭력'의 경우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교육이나 폭력을 의미하면서 범위를 한정한다.

가정은 가족들이 모여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다. 따라서 가정을 통해 개인들은 성장하면서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가정 속에서 한 개인의 지위·역할에 따른 의무와 책임, 사랑과 배려를 배우게 된다. 따라서 가정이야말로 그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도덕·전통·관행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참고문헌 1920~30년대 가정탐방기를 통해 본 신가정(전미경, 가족과 문화 19-4, 한국가족학회, 2007),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김경일, 푸른역사, 2012), 번역과 일본의 근대(丸山眞男·加藤周一, 임성모 역, 이산, 2009), 조선시대 가족의 등장과 성리학(박미선, 민족문화연구8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필자 함한희(咸翰姬)

가정교육
家庭教育

정의 가정에서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교육.

내용 가정은 가족이 함께 삶을 영위하는 물리적·정서적 생활공동체이다. 집, 가家, 집안이란 말들과도 유사하지만 근대 이후로는 가정이란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가정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만나게 되는 최초의 생활공간이자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다.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삶은 그 가족의 의식주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단위의 생산과 경제, 가족 간의 사랑과 친밀성의 정서, 가족공동체적 삶의 가치와 규범 등을 공유한다. 그러한 가정의 삶 속에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 본을 보이고 받는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家庭教育을 통해 자녀들은 인성과 지식을 연마하여 장차 사회에 기여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가정교육은 근대이행기에 나타난 용어이지만 전대의 문헌에서도 유사한 의미의 가훈家訓, 가계家誡, 가정지훈家庭之訓, 가정유훈家庭遺訓 등의 말들이 보이고 있어 그 오랜 역사를 짐작할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3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제1에는 황룡국왕이 보내온 칼을 꺾는 등의 무례를 범한 해명태자를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불효자'라 꾸짖고 칼을 보내 결국 자결하게 한 유리왕에 관한 기사가 전한다. 그리고 『삼국사기』 권43 「열전列傳」 제3에는 신라의 김유신이 적진에서 비겁하게 살아 돌아온 아들 원술을, '왕명을 욕되게 하고 가훈을 저버렸다.'며 죽이고자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가훈, 자식의 도리, 효불효 관념이 확인되는 일화들로, 그것을 저버린 데 대해서는 혹독한 징벌이 따르고 있다. 왕의 용서로 살아남은 원술이 김유신 사후에 어머니를 뵙고자 하였더니 "삼종三從의 의리로는 이제 마땅히 아들을 따라야겠지만, 선군에게 아들 노릇을 다하지 못한 아들의 어미가 될 수 없다."며 아들과 절별하는 원술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진다. 이미 삼종지도의 윤리로 여성을 가르쳤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삼국사기』에는 이 밖에도 정절, 내외, 남녀유별과 같은 유교윤리로 여성들을 가르쳤음을 말해주는 기록들이 전한다.

『고려사高麗史』 「열전」을 참고하면 고려시대에도 남자에게는 독서(학업)와 더불어 인의와 충효, 우애와 신의의 덕행이 권장된 반면 아녀자에게는 내조와 정절, 유순과 현명함의 미덕이 장려된 것을 알 수 있다. 『예기禮記』 등의 예서가 이미 유입된 만큼 왕실과 상류층에서는 이렇듯 성차별적 유교윤리가 가정교육의 준거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조는 유교윤리가 평민층으로까지 확장된 시대이다. 조선왕조는 부계종법 사상을 사회와 국가 질서를 바로잡는 원리로 확립하고 법제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교화와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계종법에 입각한 효열孝烈 윤리가 가정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남성 가부장은 집안의 조상숭배, 가족 부양, 자녀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존재로 부상하게 된다. 할아버지가 쓴 최초의 육아일기, 이문건의 『양아록養兒錄』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 시대에 남아男兒 교육의 이상은 효제孝悌의 정신으로 가문과 가학을 계승하고 빛낼 인재를 기르는 것이었다. 따라서 가정교육은 경학經學을 중심으로 집안의 관혼상제례, 가정경제 및 경영에 관한 지식과 실천을 망라한 것이 되었다. 경학 공부는 대체로 『소학小學』『효경孝經』『동몽선습童蒙先習』『격몽요결擊蒙要訣』 등을 읽은 후 경서經書로 넘어가는 단계로 이루어졌다. 경학을 통한 가학家學의 계승을 최우선으로 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이 목표이지만 나아가서는 그것이 입신양명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적 유배나 거주관행의 문제로 자녀와 동거하지 못하게 된 가장들은 서신을 통해 자녀들을 가르쳤다. 조선조 성리학의 대가인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은 함께 살지 않는 종자宗子·아들·손자에게 부단히 공부할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애와 효도, 공경과 겸손의 태도를 잃지 말 것을 경계하는 편지를 끊임없이 써 보냈다. 편지글 가운데는 손자의 수유와 양육을 위해 출산한 지 서너 달 된 집안 여종을 서울로 불러올 것이란 소식을 듣고 남의 자식을 죽이면서 자기 자식을 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니 서울에서 젖먹이 종을 찾아보든지 5~6개월을 더 기다려서 여종과 아기를 함께 오게 하라고 시키는 내용도 있다. 엄정한 가르침 한편으로 집안 권속眷屬 모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퇴계의 인간적인 면모가 여실히 드러난다.

하피첩 | 가로16 세로25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다산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경계의 말을 적어 보낸다는 내용이 적힌 서문.

자녀의 성장기를 고스란히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던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도 누구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움과 걱정과 가르침을 담은 편지들을 학연과 학유 두 아들에게 보냈다. 다산은 아들들에게 늘 공부를 놓지 말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당부와 함께 필독서 및 사숙할 선생을 추천하는가 하면, 경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베껴 책으로 만들어서 읽고 새기는 공부 방법까지 일러주면서 성리학 탐구를 독려한다. 유배된 처지로 자식을 가까이에서 가르칠 수 없게 된 다산의 노심초사가 묻어난다. 편지에서 다산은 자신이 언젠가 귀향하게 되면 5~6명의 종형제들을 모아 직접 가르치고 훈계해서 효제를 근본으로 경사와 예악, 병농과 의약의 이치를 꿰뚫게 하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가정교육의 범주가 가정에서 가문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부계친족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17~18세기를 즈음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가班家의 남자아이들은 대체로 6~8세가 되면 조부가 계신 사랑채로 옮겨 생활하면서 글공부와 생활예절을 배우고 익혔다. 원촌리라는, 안동 도산의 진성이씨眞城李氏 동성촌에서 생장한 이육사李陸史(1904~1944)는 수필 〈은하수〉와 〈계절의 오행〉에서 집안 소년들이 모여 한시漢詩 짓기를 한 후 장원을 뽑고 그 포상으로 마을 잔치를 열었던 일이며, 집안 할아버지들 앞에서 있을 경서 외우기 시험 준비로 새벽까지 공부하였던 일 등을 들려주고 있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 육사는 6세 때 『소학』을 떼고, 10세를 전후해서는 경서들을 죄다 읽었다고 한다. 또 볕이 좋은 날에는 마당의 꽃밭에서 갖가지 꽃들을 같이 심은 후 흙이 낀 손톱을 다듬게 하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별자리를 가리키며 갖가지 전설을 들려주는 등으로, 글공부 틈틈이 정서적인 면을 챙겨주셨던 자신의 할아버지를 그리운 마음으로 추억한다. 문중 또는 마을 단위로 이루어진 가학의 계승과 조손간 격대隔代 교육의 전통이 20세기 초까지도 동성촌 공동체에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이다. 육사는 이러한 정경을 회고하면서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닌 무서운 규모'가 자신을 길러주었다고 표현하였다.

어제내훈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종의 어머니인 소혜왕후가 부녀자의 훈육을 위해 만든 것을 다시 언해하여 간행한 책.

조선조는 가정교육에서 성차가 엄격한 사회이기도 하였다. 가부장제 사회가 확립되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항상 가부장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했으며, 이는 성인 여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삼종지도야말로 유교사회가 여성을 타자화해 온 가부장적 논리이다. 성 역할이 준별峻別된 사회에서 여아들은 주로 집안 어른들에 의해 문 안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훈육되었다. 시집간 딸의 처신이 고스란히 친정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된 사회에서 친정 부모들은 딸들에게 오로지 부도婦道를 가르치는 데 전념해야 했다. 『내훈內訓』『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계녀서戒女書』와 같은 여성교육서가 있었지만 반가의 가장들은 딸을 위해 직접 여훈서女訓書류나 계녀가誡女歌를 지었고, 시집갈 때도 들려 보내서 평생의 지침으로 삼게 하였다. 딸들에게 경학 공부는 일절 금지되었다. '친정에 편지 쓸 만큼만 가르치라'고 하였을 정도로 여아 교육에는 제약과 금기가 따랐다. 여아들은 언문(한글)을 배워 편지나 가사 등을 읽고 쓰는 것으로 만족하는 대신, 부공婦功으로서 살림살이에 필요한 길쌈, 침선, 음식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필수로 익혔다. 근대적 변화의 바람이 비껴간 변방에서는 이러한 성차별적 교육 전통이 근대 이후까지도 지속되었다.

한국의 근대기는 서양 신문화에 대한 경도와 일제 식민정치의 영향으로 전통적 가치관이 크게 위축되었던 시기이다. 우리 사회를 미개와 몽매로 규정하고 계몽 대상으로 전략화한 식민 이데올로기로 인해 우리는 오랫동안 중심축으로 삼아왔던 유교윤리와 가족주의 전통에 대한 자긍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국권을 상실한 탓에 근대적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관을 주체적으로 정립할 동력도 담보할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근대적인 학교들이 생겨나 민주적이고 성차별 없는 교육의 장이 열린 듯 보이지만 그 내실은 일제 군국주의의 국민화 전략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그래서 근대적 가정교육에 관한 담론들이 오히려 일본의 '현모양처'론을 받아들여 여성의 가정 내 역할 전통을 그대로 추수하는 기현상도 나타난다. 당시 근대적 여성교육서로 알려진 남궁억의 『가정교육家庭教育』의 내용도 전통사회에서 이루어진 여성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도교육의 장이 확대된 오늘날에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비해 가정교육의 가치와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식 및 기능 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전담하는 대신 인성교육이 가정교육의 몫이 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근현대사의 변화와 질곡 속에서 한국의 가정교육은 자녀의 '사람됨'보다는 사회적 출세와 성공에 더 가치를 두게 된, 아주 부정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

특징 및 의의 한국의 가정교육은 오랫동안 유교윤리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특히 조선조 사회에서는 자녀의 성장과 입신에서 유교윤리에 입각한 가정교육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긍·부정의 양가적兩價的 시선과 함께 그 잔재가 남아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두된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가정폭력의 비극이 빈발하는 것은 가정교육 부재에도 원인이 있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라는 불안한 시대를 겪으면서 유교윤리와 가족주의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하였고, 대체할 만한 근대적인 가족윤리나 교육관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탓이다. 인생의 성공에 대한 시각이 오늘날에는 출세나 경제적인 성취 쪽으로 옮겨지면서 기능성 중시의 학교교육에 절대적인 관심이 몰린 탓도 있다. 근대 이후로 가정교육의 역할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어온 현상에 대해서도 반성적 성찰이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家와 가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인본주의적 자녀교육, 퇴계와 다산이 보여준 아버

지들의 자상한 가정교육 전통이 중요한 시사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가정교육론의 저변과 주변(박균섭, 인격교육8-3, 한국인격교육학회, 2014), 가정교육의 범주와 지향(박균섭, 교육철학41, 한국교육철학회, 2010), 이육사의 문학(손병희 편저, 이육사문학관, 2017), 이퇴계의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조남욱, 퇴계학논총27,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016), 조선 전기 부형의 위상과 교육적 책무(송수진, 민족문화연구9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3).

필자 천혜숙(千惠淑)

가정법원
家庭法院

정의 가사사건 및 소년보호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문법원.

역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서울가정법원은 1963년 7월 31일의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1963년 10월 1일 신설되었으며, 가정법원家庭法院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같은 날 시행된 〈가사심판법〉에 규정되었다. 그렇지만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이라는 가정법원 업무 범위 관점에서 보면 〈미군정청 임명사령〉 제12호에 의하여 경성소년심판소가 설치된 1945년 10월 11일을 가정법원의 시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1947년 1월 1일 군정청 사법부 명령에 따라 서울소년심리원이 설치되었으며, 1948년 6월 1일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192호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소년부지원이 설치됨으로써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만들어졌고, 대한민국 수립 후 법률 제51호인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소년부지원이 설치되었다. 이후 1963년 7월 1일 서울지방법원이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됨에 따라 소년부지원 소속이 서울형사지방법원 소년부지원으로 변경되었다가 1963년 10월 1일 서울가정법원이 설립됨으로써 소년부지원은 서울가정법원으로 통합되었다.

1991년에 이르러 가정법원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가사심판법〉이 〈가사소송법〉으로 개정되었고, 2001년에는 서울가정법원 외 부산가정지원·대구가정지원·광주가정지원이, 2007년에는 대전가정지원이 설치되었다가 2012년에 각각 가정법원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인천가정법원, 2018년에는 울산가정법원, 2019년에는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됨으로써 현재는 8개의 가정법원이 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민사법원에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들어 가사사건을 처리한다.

내용 가정법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소년보호에 관한 재판업무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감독이다. 가정법원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사재판이다. 가사재판은 당사자의 분쟁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혼인무효, 이혼과 위자료 청구,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등 친족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가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 등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에 앞서 조정을 우선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입양의 허가,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에 관한 사건 등 상대방이 없는 비송사건과 이혼 시의 재산분할 및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의 결정,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건 등 상대방이 있는 비송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상속에 관한 사건이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에 속한다.

한편 가정법원은 소년사건과 가정폭력 및 아동보호사건을 처리한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바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적절한 소년보호처분을 하기 위하여 소년조사관에게 소년의 환경이나 범죄 경위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된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므로 가정보호조사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해결에 필요한 보호처분을 행함으

로써 가정의 평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비하여 아동보호재판은 보호자의 학대를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 재판에서는 학대자를 처벌하거나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끝으로 가정법원은 대법원장이 관장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를 감독한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있지만 가정법원장이 그 업무를 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하여 개명이나 등록부의 기록 사항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도 가정법원이 담당한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의 이혼 사건처럼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가정법원의 사건처리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가사조사관의 활동이다. 가사조사관은 가사사건 등의 재판에 앞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당사자의 의사 등을 조사하여 재판부에 보고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관제도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재판에 앞서 가사조정을 하였으나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재판하는 경우 조정장이나 조정담당 판사는 조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사사건의 경우와 비교하면 이것도 가사사건의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가정법원은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원이다. 가사사건은 가족 간의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다른 민사사건과 성격을 달리하며, 소년사건은 처벌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이러한 사건처리 방법을 취하는 이유는 법원의 판결 또는 심판이라는 엄격한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사건을 유연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의 설치를 통하여 모든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이 따스하고 건강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가정법원 50년사(서울가정법원, 2013),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안문희, 사법정책연구원, 2018),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현황(김상훈, 법학연구18-4,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필자 전경근(田慶根)

가정신앙
家庭信仰

정의 집의 요소마다 신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집안의 일을 보살펴 준다고 믿고 이 신에게 정기적인 의례를 행하는 신앙.

개관 가신신앙家神信仰, 가택신앙家宅信仰이라고도 하는 가정신앙家庭信仰은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속신앙의 하나이다. 집안의 신앙을 일컫기에 '가정신앙'이라는 용어가 정착하기 전부터 사용하던 '가신신앙'이라는 용어 이외에 새롭게 '집안신앙'이라는 용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집안신앙이라는 용어는 집안에서 섬기는 신앙 형태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가신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하는 불교, 기독교, 유교까지 두루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가신家神은 '집안신' '집신', 그 신앙행위는 '집안신신앙' 또는 '집신신앙'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가족을 아우르는 '가정신앙'이라

성주 | 경북 안동 | 1985 | 김명자

조왕고사 | 세종 | 2006 | 국립민속박물관

는 용어가 자리 잡게 되었다.

가정신앙은 가신을 대상으로 신앙하는 민속신앙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집 안에 자리 잡는 가신만 모시는 것이 아니다. 집 안이 아닌 곳에 존재하는 신격일지라도 한 집안에서 개별적으로 신앙하는 양상은 가정신앙의 범주에서 논의된다. 예컨대 음력 2월 초하루 영등할머니 모시기, 객구물리기[객귀물리기], 삼잡기, 가정 단위로 서낭당에 빌기와 산신신앙山神信仰 등도 포함된다. 또한 음력 정월 대보름 새벽에 그해의 액막이나 발원의 뜻으로 밥을 강물에 던져 고기가 먹게 하는 '어부슴'도 가정신앙 의례이다. 이 밖에도 생업과 관련된 인삼고사人蔘告祀에 이르기까지 가정신앙의 범주는 무척 넓다.

이처럼 가정신앙은 집 안의 신을 모시는 일뿐만 아니라 가내 평안과 관련 있는 집 바깥의 신에게도 정성을 베풀고 제액초복除厄招福을 비는 신앙이다. 가신은 아니지만 집안의 무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액除厄하기 위하여 해마다 음력 정초 또는 열나흗날에 간단한 치성을 올린다. 거리신, 용왕, 서낭신을 대상으로 치르는 거리제, 용왕제, 서낭제가 대표적인 의례이다. 특히 용왕과 서낭에 대해서는 제액의 뜻이 강조된 용왕치기, 서낭치기라는 용어도 함께 쓰인다. '치기'라는 말에는 제액 개념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내용 가정에서 섬기는 가신은 대주를 상징하는 가내 최고의 신인 대청의 성주를 비롯하여 안방에는 임신·출산·육아를 관장하는 삼신, 부엌에는 불과 음식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있다. 그 밖에도 자손의 무병장수를 돕는 칠성이 있는가 하면 집터를 지켜주는 터주, 재신財神인 업신, 농경신인 용단지가 있다. 또한 앞마당에는 마당신, 장독대에는 철륭, 우물에는 정신井神, 마구에는 우마신, 방앗간에는 방앗간신[방아지신], 농기구신이 거주한다. 측간에는 측신, 담장에는 성주신을 보호하는 사신四神, 대문에는 성주신을 지켜주는 수문신守門神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신의 자리는 성주나 조왕, 삼신, 사신, 수문신처럼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중부지방에는 말명과 왕신王神이라는 가신이 있다. 말명은 조상신 계통의 가신이다. 왕신은 처녀로 죽은 넋을 모신 가신이며, 사나운 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조상신은 일반 유교제례에서 모시는 조상이 있고, 가정신앙에서 모시는 비운의 조상인 왕신·대감·웃줄할아버지 등도 있다.

삼신 | 경북 안동 | 1991 | 김명자

많은 가신이 있지만 이들 신을 모두 모시는 것은 아니다. 가정마다 선택적으로 모신다. 또 신체神體 없이 '건궁'으로 모시기도 한다. 고사를 지낼 때 시루째 놓는 가신도 있고, 접시에 떡을 떼어(담아) 놓는 가신이 있는가 하면 변소의 측신이나 담벼락의 신처럼 한 덩어리를 조금 던져 놓는 경우도 있다. 성주와 터주·조왕 같은 주요 가신에는 떡을 시루째 놓기도 하는데, 이는 지역 또는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정신앙은 기본적으로 주부가 주관하므로 주부가 '사제司祭'로 의례를 행한다. 지역에 따라 성주에 대한 의례는 대주大主인 가장이 의관을 갖추고 직접 참여한다. 그러나 이때도 주부는 의례를 보좌하기 때문에 주관자 못지않은 역할을 한다.

음력 10월에 곡식을 거둘 때면 크게 고사를 지내어 가신을 위하고, 그 밖에도 해마다 일정 시간이 되면 가신을 크게 위한다. 예컨대 정월 초하루 명절차례, 정초의 안택, 대보름, 유월 유두, 칠월 칠석, 팔월 추석, 시월 상달의 안택, 동짓달의 팥죽고사, 섣달 그믐날이 그것이다. 어업을 하는 가정에서는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며 뱃고사를 올린다. 배에는 집처럼 배를 관장하는 배성주가 있어서 이를 위해 주어야 한다.

평소 주부와 가깝게 접하는 가신은 부엌의 조왕신이다. 이른 새벽마다 조왕중발에 정화수를 떠 올리며 가족의 무탈을 빈다. 더욱이 가족 가운데 객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부의 정성은 한층 고조된다. 그 밖에도 칠성신에게 가족의 수명장수를 빈다. 이처럼

터주고사 | 경기 양평 | 2006 | 국립민속박물관

매일 새벽 조왕이나 장독대의 칠성에게 정화수를 올려 간단히 비손하는 일부터 각 명절에 격식을 갖추어 가신을 위하는 일, 정초에 올리는 거리제·서낭제·용왕제에 이르기까지 주부는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한다. 정월에는 무당을 불러 액막이를, 시월 상달에는 크게 굿을 하거나 상달고사를 지낸다.

한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고 보장하기 위한 종교적 방편은 집 안에 가신을 좌정시키고 위하는 일이다. 집터를 장만하여 새집을 짓고 식구들이 입주한 후에는 집안 곳곳에 가신이 거처할 자리, 즉 신체를 놓을 만한 자리를 잡는다. 가족들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집 자체와 가족을 보살피는 신들도 함께 사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집은 가족과 신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기에 성역聖域이자 신역神域이 된다.

가족은 가신들과 함께 살기에 기본적으로 삶이 평안하다는 전제가 있다. 물론 이러한 평안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신의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가족들이 제대로 위하지 않는 등 신을 서운하게 하거나 화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각종 고사告祀, 비손, 굿 등을 통해 이들 가신을 잘 위해 주어야 한다. 가정신앙에서 가신에게 의례를 행하는 것을 '모신다' 혹은 '위한다'고 한다. 이는 민속신앙에서 신에 대한 태도나 대우를 말할 때 흔히 쓰이는 용어이다. 특히 '위한다'는 표현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며, 이는 극진히 공경하거나 섬기는 일을 표현하는 말이다. 곧 인간이 신을 소중하게 여겨 그들에게 최선의 예우와 정성을 바치고 신을 흡족하게 한다는 뜻이다.

민속신앙의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겠으나 특히 가신은 가족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위해 주어야 그 실체가 분명해지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가족이 인정하지 않는 가신은 존재하기 어렵다. 가신의 신역神域이기도 한 집으로부터 나타나는 '가신의 보호를 받는 가정'이라는 종교적 신념은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인문 환경에 적응하여 만들어 낸 상징적 세계이다.

특징 및 의의 주거공간은 가족이 필요로 하는 생활공간이다. 이들 공간마다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신앙이 전승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집은 가족의 성화聖化된 영역이자 신역이며, 가정신앙은 제액초복하여 한 가족의 평안과 건강·풍요 등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이다.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이지만 집 안뿐만이 아니라 바깥까지 이어진다.

대부분의 민속문화가 그렇듯이 가정신앙은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가신을 상징하는 신체는 주로 옹기항아리·바가지·고리 등인데, 그 안에 곡식을 넣거나 목화 농사에서 얻은 무명을 넣어 둔다. 그러나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니다. 집의 형태는 물론 생활공간과 생활양식도 달라져 가신의 자리도 모호해졌으며, 가정신앙에 대한 의식도 약화되어 가는 실정이다. 하지만 가족이 거주하는 집은 가정신앙이 전승되는 신성공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가신(김명자, 한국의식주사전-주생활, 국립민속박물관, 2019), 가신신앙 이렇게 변화하면서 전승된다(김명자, 민속문화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가, 집문당, 2001), 가신신앙의 성격과 여성상(김명자, 여성문제연구13,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4), 가신신앙의 역사(김명자, 한국민속사입문, 지식산업사, 1996), 가을떡과 안택(이필영, 한국문화연구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1), 집과 가족을 일체화하는 가정신앙(김명자, 비교민속학32, 비교민속학회, 2006), 집의 사회사(강영환, 웅진출판, 1992), 충남 민속의 이해(이필영, 집문당, 2019),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필자 김명자(金明子)

가정위탁제도
家庭委託制度

정의 부모가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부적절하여 친부모 이외의 친척 또는 친척 관계에 있지 않은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는 제도.

역사 부모의 사망·이혼·실직·가출·학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친권자 혹은 양육책임이 있는 보호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양육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게 된 아동을 과거에는 집단시설보호 혹은 입양 형태로 양육·보호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에 해외 입양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입양 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가정에서 위탁해 양육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 면에서 집단시설보호보다는 대체의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1990년에 가정위탁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1995년 1월 개정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입양 대상 아동이 입양되기 전 잠시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1999년 아동건전육성 방안으로 가정위탁제도家庭委託制度가 논의되었다.

2000년에는 국제연합UN의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2003년에 16개 시·도에 총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2004년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2005년 7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요건, 절차, 직원의 자격기준, 설치 기준, 업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가정위탁 아동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였고, 2010년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치료비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고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용 가정위탁은 친권자 혹은 양육책임이 있는 보호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양육 및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친부모 외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고 양육한 후 친부모와 재결합시키거나 입양을 통해 좋은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정위탁을 통한 보호 및 양육이 필요한 아동의 발생원인 중에는 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정위탁 유형은 연고가 없는 일반가정 혹은 친인척이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일반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과 장애아동 및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및 양육하는 '전문가정위탁', 보호 대상 아동을 최대 6개월까지 보호 및 양육하는 '일시가정위탁'으로 구분된다. 이 중 대리양육이나 친인척 가정위탁이 가장 많다. 위탁 아동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UN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 입소 비율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위탁의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보호법〉이다. 이 중 〈아동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호조치,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퇴소 조치, 사후관리, 가정위탁센터의 설치와 업무 등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위탁이 이루어진 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급여의 기준과 유형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에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위탁을 희망하는 자는 시·군·구(읍·면·동)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보호 및 양육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신청자 자격 확인 및 가정조사를 거친 후 위탁부모 양성 교육 이수 및 자격인정을 받아 가정위탁을 하게 된다. 가정위탁은 위탁 아동이나 위탁 부모의 사망, 위탁 아동의 친가정 복귀, 시설·그룹 홈 입소, 18세 이상 연령의 도래, 위탁가정의 위탁해지, 입양 종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종결된다. 다만 종결 사유가 발생하여도 여전히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는 아동의 재배치를 통해 가정위탁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

담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생활 안정을 위해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비를 30만~50만 원 이상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비와 의료비·교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대상 상해 의료비 및 보험료 지원, 심리검사와 치료비 지원을 한다. 18세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 종결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과 대학 진학자금, 자립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리고 양육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인 경우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그 외 전문 아동 보호비와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앙정부 권고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정위탁 자녀의 복리를 위한 위탁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후견인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아 위탁 아동의 응급수술이나 사고, 전학, 복수여권 발급 등 양육 관련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 친권자가 아동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거나 연락 두절 혹은 소재 불명인 경우, 장기간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동을 방임하는 경우 등 친권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 상실 선고를 요청하고 미성년후견인 선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판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친권자가 존재함으로 인해 실행력이 낮다. 또 자녀의 이익과 복리 손상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대응이라는 제한적 측면과 가족 재결합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가정위탁이 이루어지는 동안 아동 양육과 보호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부모에게 일상 양육 대리권을 부여하고 가정위탁 부모확인서나 인증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가정위탁을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도 시급하다.

특징 및 의의 가정위탁은 집단시설의 심리적·환경적 한계점을 극복하고 가정과 유사한 안정적인 보호의 울타리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유사한 대인관계를 맺고 관계를 확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친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었던 과거의 친권 인식과 달리 가정위탁은 자녀의 이익을 원칙으로 하는 현대 친자법의 이념과 〈민법〉 제912조에서 친권행사 기준으로서 자녀의 복리 기준을 명확히 담고 있다. 또 부모의 이혼, 가출, 재혼, 사망, 경제적 이유와 학대 등 중대한 사유로 가정위탁이 이루어져도 그 사유가 해소되면 원가정으로 복귀하도록 한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위탁 중에도 자녀의 면접 교섭 허용 의무를 부과하여 부모—자녀 관계의 개선 및 유지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목적이다. 그러나 일정 기간 위탁부모와 아동 간에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어도 친부모가 있고 또 국가에 의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다면적인 법률문제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가정위탁 지원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박건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17,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21), 가정위탁에서 후견제도 활용의 한계(윤우일, 서울법학28-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가정위탁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김민지, 가족법연구24-2, 한국가족법학회, 2010), 요보호아동의 복리 관점에서 본 가정위탁제도 일고(정현수, 법학논총33-1,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김봉수·김도우·이은주, 한국공안행정학회보32-2, 한국공안행정학회, 2023), 위탁 아동을 위한 미성년후견 제도 개선 방안(현소혜, 인권과 정의509, 대한변호사협회, 2022),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

필자 성정현(成晶鉉)

가정의례준칙

家庭儀禮準則

정의 전통적인 관혼상제冠婚喪祭의 번잡성과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지양하고 의례의 간소화를 위하여 제정·공표한 의례에 관한 규칙.

내용 〈가정의례준칙〉은 허례허식을 일소一掃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관혼상제의 의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제시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1957년 국민재건운동본부의 〈표준의례〉와 1961년 보건사회부의 〈표준의례〉를 모태로 하여, 1969년 1월 16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반포되면서 시행되었다. 이 당시의 법률은

가정의례준칙 홍보물 | 가로9 세로19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법령으로 공포는 되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규제하거나 강제하는 내용이 없는 권고적·훈시적인 법률이었다.

그러나 1973년 6월 1일에 〈가정의례준칙〉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제10조에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법적으로 가정의례를 강제하고자 하였다. 이 법령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다가, 1999년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이 법령의 대표적인 특징은 추석에 지내는 차례를 '절사節祀', 양력 1월 1일에 지내는 차례를 '연시제年始祭'라고 구별하여 규정한 것이다. 연시제를 별도로 구별한 것은 당시 양력설을 권장하였던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기제忌祭'를 지내는 시간에 대해서도 '사망한 날 해진 뒤'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이 또한 당시에 있었던 통행금지라는 정책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법령은 정부에서 관혼상제의 가정의례를 국가적으로 간소화하여 규제하고자 한 것이나, 실제로는 전통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의식으로 관혼상제가 거행됨으로써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필자 도민재(都民宰)

가정주부
家庭主婦

정의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꾸려 가는 아내 또는 남편.

개관 주부란 전통사회에서는 제사를 비롯해 집안일을 주관하는 남성의 아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가정주부家庭主婦 개념은 산업화 초기에 남편은 일터로 나가고 아내가 집안의 살림살이를 맡게 되는 과정에서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며 형성되었다. 1970년대 말에 취업주부가 증가하면서 가사노동만을 전문으로 하는 가정주부를 전업주부라 하였다. 2000년대 무렵에는 남성 전업주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내용 산업화 시기에 일터와 분리된 가정은 안식처로 강조되었다. 가정주부인 아내는 일터에서 일하는 남편을 내조하며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전념하는 현모양처賢母良妻가 되어야 하였다. 가정주부는 가정부나 가정기기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지만 하루 24시간 동안 수많은 가사노동을 핵가족화된 가정에서 고립된 채 수행하였다. 보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상해 등 피해를 보거나 이혼할 경우 적절한 보상과 기여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경제력이 없는 가정주부는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였다.

농경사회에서 주부의 지위는 절대 낮지 않았다. 19세기 말 선교사 조지 길모어George William Gilmore는 서울에서 본 부인에 대해 "남편도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고, 아이들도 부녀자한테는 복종하고 존경한다."고 『서울 풍물지Korea from its Capital』에 기록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남존여비男尊女卑의 규범이 존재하였지만 남편들이 오히려 부인을 두려워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서거정徐居正(1420~1488)의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과 유몽인柳夢寅(1559~1623)의 『어우야담於于野談』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직조織造 등 경제적 가치가 분명한 일로 가계家計와 국가경제에 기여한 농경사회의 부인과 달리 산업사회의 가정주부는 무급의 가사노동을 하며 지위가 하락하였다. 가정주부는 '하는 일 없는 사람' 또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었다. 가사노동 가치 규명의 필요성이 1970

년대 말부터 제기되어 2018년부터는 공식적으로 통계청에서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산정하기 시작하였다.

정서적 가치를 포함하지 못해 평가절하된 면이 있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시화함으로써 전업주부도 일하고 있다는 정체성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전업주부로 사는 여성은 감소하고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이 맞벌이로 전업주부 역할을 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경제활동 대신 육아나 가사를 수행하는 남성이 증가하였다.

특징 및 의의 가정주부는 가족에게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을 제공하고, 가족에게 사랑과 위안으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 중에는 시장에서 구매하는 가사노동 상품과 서비스 또는 가정기기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는 역할은 대체하기 어렵다. 특히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취업주부에게도 위안을 주고 내조해 주는 배우자가 필요하다.

취업한 부인을 대신해 전업주부 역할을 하는 남편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주부는 아내를 지칭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부인이나 남편 누구라도 적성과 선호에 따라 가정주부가 될 수 있도록 가정주부의 정의를 확대하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라(Steve Biddulph, 이승희 역, 북섬, 2007),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분석과 시사점(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2021), 아내 가뭄(Annabel Crabb, 황금진 역, 동양북스, 2016), 전업주부 남성의 경험사례(성평등연구소, 성평등연구10,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2006),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김성희, 학지사, 2002),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김성희(金聖姬)

가족
家族

정의 혼인, 혈연, 입양 등의 관계를 기반으로 구성된 집단 혹은 생활공동체.

내용 가족家族이란 용어는 family, famille, Familie의 번역어이다. 이와 유사한 뜻을 가진 우리말로 '식구食口'와 '식솔食率'이 있는데 '밥을 먹는 입', 곧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한솥밥을 먹기 위해서는 한 지붕 아래에서 거주하는 동거생활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로 볼 때 식구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 되는 셈이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혈연관계일 필요는 없다. 즉 "우리 집에는 식구가 적다." 혹은 "세 식구가 먹기에 음식이 너무 많다." 등의 문장에서 가리키는 식구는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곧 '동거인'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식구는 '세대世帶, household' 혹은 '가구家口'라는 말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세대의 사전적 정의는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대체로 이들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동거인 등도 포함된다.

가족은 남녀 한 쌍의 부부로부터 자녀들이 태어나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면서 시작되는 집단이다. 이에 따르면 가족이란 '혼인관계로 맺어진 부부와 이들과 혈연관계를 갖는 자녀'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세부적으로는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살면서 생활공동체

나들이 | 김홍도 | 가로24 세로29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가족 | 가로39 세로27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를 구성하는 집단이 바로 가족이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은 일상적 삶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까닭에 정서적으로 강한 결속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족은 '근친관계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정서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갖는 집단'이라고 최종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전통적 가족 개념을 현대사회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농경사회와 달리 도시 중심의 산업사회에서는 학업과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별거 가족은 일상적 삶을 공유하지 않을 뿐 경제적·정서적으로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기에 가족으로서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의 가족은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와 그 자녀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생 두 종류의 가족에 소속된다. 첫 번째는 개인이 태어난 가족이다. 이를 출생가족 혹은 방위가족方位家族, family of orientat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출생가족에 속해 있던 자녀가 혼인해서 자녀를 낳으면 새로운 가족이 창출되는데 이를 생식가족生殖家族, family of procreation이라고 한다. 출생가족은 자녀 입장에서, 생식가족은 부모 입장에서 규정하는 가족 형태이다. 출생가족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자녀 관계이고, 생식가족에서는 부부관계가 중심이 된다.

한국사회에서는 생식가족보다 출생가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출생가족은 한국의 전통적 '집家'과 유사한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즉 조상숭배 관념이 강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개인이 창출한 생식가족보다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출생가족, 곧 '집'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또 출생가족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탄생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소속되고, 생식가족은 혼인과 출산이라는 개인의 선택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출생가족에는 기혼 자녀들이 창출한 생식가족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생식가족은 거주방식에 따라 부부가족, 직계가족, 대가족 등으로 분류된다.

부부가족

부부가족conjugal family은 핵가족nuclear family이라고도 한다.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고, 부부관계가 핵심을 이룬다. 부부가족에서는 자녀가 혼인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별도의 거주(생활) 단위를 형성한다. 이런 이유로 부부가족은 한 쌍의 부부로만 구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 부부가족은 거주 형태뿐만 아니라 관념적으로도 부부 중심적 성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의 유대감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족에서는 노후에도 자녀들의 경제적 부양 및 지원을 기대하지 않고 독립적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며, 자녀들 역시 성인이 되는 순간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부부가족은 집을 물려주고 계승한다는 계보의식이 미약한 까닭에 부모의 재산도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

이러한 부부가족은 높은 소득 수준과 사회보장제도 등이 잘 구비되어 있는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주로 서구사회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도 경제 수준의 향상 및 서구화된 가치관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전통적 직계가족이 부부가

가족 | 가로109 세로87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족으로 점점 이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직계가족

직계가족直系家族, stem family은 부부와 장차 집을 계승할 아들(장남)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족 유형이다. 직계가족은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세대 제한이 없는 까닭에 고조부모—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녀 등과 같이 5대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직계가족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수평적 확산에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세대마다 한 쌍의 부부만이 동거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어 집을 이어받는 후계자 외의 아들은 모두 분가시킴으로써 독립된 가족을 창출하도록 한다. 이를 방계가족傍系家族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집을 계승한 장남은 조상제사를 지내고 부모를 봉양하는 책임을 지면서 직계가족을 형성해 간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장남이 후계자가 되기 때문에 직계 계통의 장남 집을 '큰집'이라 하고, 방계 계통의 차남 이하 집을 '작은집'이라고 한다.

직계가족은 하나의 혈통 계승만을 인정하는 단계사회單系社會에서 주로 나타나는 가족 유형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 혈통인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직계가족을 형성하는 사회에서는 가장家長에게 지위와 권력이 집중되는데 이때 가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혈통·지위·권력을 장남에게 물려준다. 이런 이유로 장남은 재산상속 등에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 차등적 대우를 받기도 한다.

대가족과 복합가족

대가족은 확대가족extended family이라고도 한다.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세대 제한이 없다는 점은 직계가족과 유사하지만 대가족은 수평적 확산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즉 직계가족에서는 후계자(장남) 외의 아들은 혼인과 동시에 분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가족 형태에서는 모든 자녀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동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가족은 종적縱的·횡적橫的으로 무한정 확산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대가족은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가족 형태는 제도적으로 정착·보급된 경우는 거의 없고, 외부 상황이나 일시적 필요에 의해 대가족 형태를 취하였다가 다시 직계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대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혼인과 출산 등에 의해 확산되는 가족 구성원을 수용하기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일정 기간 대가족 형태를 유지하다가 여건이 충족되면 분가하는 등 유동적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사회에서도 대가족 형태가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다만 이들 사례는 분가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없는 탓에 10년이나 20년을 본가에서 함께 사는 경우이다. 이는 경제적 기반의 미약, 노동력 확보의 필

초도관희 | 평생도 중 부분 | 가로37 세로72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요성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 제도적으로 정착된 가족 형태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즉 이들 대가족은 영구적이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분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가족주기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가족과 유사한 것으로 합동가족joint family(혹은 복합가족)이 있다. 합동가족은 차남 이하의 아들이 혼인한 뒤 분가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한다는 점에서는 대가족과 유사하지만 아버지의 사망을 계기로 형제들이 재산을 균등하게 나눈 뒤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독립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면서 합동가족을 이루고 사는 동안에 획득한 모든 재화는 공동으로 관리·소비한다. 이러한 가족 유형은 주로 중국과 인도에서 발견된다.

수정가족

수정가족修正家族, modified family은 해당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 가족 형태 유지에 필요한 외적 상황과 내적 상황이 수반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변형적 가족 형태'이다. 외적 상황이란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 조건 등과 같은 외부의 환경요인을 말한다. 내적 상황은 가족에 대한 관념, 즉 가족이념적 요인이다.

가족연구에서는 가족 형태와 가족 유형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가족 형태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고, 가족 유형은 관념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가족이다. 즉 가족 형태를 실제적 형태real type라고 한다면 가족 유형은 이상적 형태ideal type가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한국사회의 핵가족 비율은 직계가족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타지에 거주하는 장남과 농촌에 살고 있는 부모와의 별거 생활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드러난 형태만을 보고 한국사회의 가족 유형을 핵가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형태상으로는 핵가족 비율이 우세하지만 관념적으로는 여전히 직계가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별거 생활을 하는 장남과 부모는 향후 동거를 희망하고 있으며, 또 장남을 비롯한 자녀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빈번한 연락과 왕래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형태상의 핵가족화에도 경제적·정서적·규범적으로는 여전히 직계가족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노후에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는 서구의 핵가족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수정직계가족modified stem family', 즉 '변형된 직계가족'이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직계가족을 유지해 왔다. 즉 부계의 직계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족 이념에 따라 장남이 부모를 봉양하면서 대代를 이어 갔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직계가족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장남이 직장 등의 이유로 타지에 거주하는 까닭에 부모와 별거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직계가족에 대한 관념 자체가 약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또 재산상속법이 개정되어 모든 자녀가 균등하게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장남이 부모를 봉양하고 조상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의식도 점차 사라지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가족과 친족의 민속학(김미영, 민속원, 2008), 유교공동체와 의례문화(김미영, 민속원, 2018),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최인학 외, 민속원, 2001),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필자 김미영(金美榮)

가족계획사업
家族計劃事業

정의 경제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규정된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여성의 출산을 감소시키고자 1961년부터 1995년까지 실시된 전방위적 국책사업.

개관 가족계획사업家族計劃事業은 인구증가 억제를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여성의 출산을 감소시키고자 한 고도성장기 한국 인구정책의 핵심 사업이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된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의해 국가적 추진 과제로 선포되었으며,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오개년계획과 통합되어

가족계획 리플릿 | 가로10 세로21 | 광복 이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되었다.

정부가 매년 인구증가율 감소 목표치를 설정하고 가족계획사업이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한국 여성의 출산은 빠르게 감소하였다. 1980년대 초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을 밑돌게 되고,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지만 가족계획사업은 여전히 추진되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소자녀 지향의 보편화로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이 적어졌다는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1996년,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가족계획사업은 이전부터 출산 조절 욕구가 있던 한국 여성들에게 근대적 피임 수단과 정당화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빠른 출산율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가족계획의 이념과 실천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정착시키고 근대적인 핵가족적 삶을 추구하게 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억제를 위한 사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조국 근대화에 자발적으로 동원하는 일종의 가족 통치 기제機制로도 작동하였다.

내용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증가 억제를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여성의 출산을 감소시키고자 한 고도성장기 한국 인구정책의 핵심 사업이었다. 국책사업으로서 가족계획사업은 1958년 미국 국제개발처의 원조로 수립된 지역사회개발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처음 등장하였고,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된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의해 국가 추진 과제로 선포됨으로써 시작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당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조국 근대화를 빠르게 실현할 수단으로 인구억제정책을 채택하였으며, 가족계획사업은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오개년계획과 통합 운영되었다.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미국 인구협회, 국제가족계획연맹IPPF,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처SIDA, 유엔인구기금UNFPA 등 국제기구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실시될 수 있었다. 냉전이 강화되던 1950~1960년대 국제사회에서는 제3세계의 인구증가가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가난한 나라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경제발전이 필요한데 이 지역의 급증하는 인구가 장애가 되므로 이들 국가의 인구통제 활동을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한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이어 세 번째로 가족계획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선언한 국가였으며, 또한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하락한 성공사례였다.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유입된 외원外援은 비단 피임법 보급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전국 설치 등 현대적 보건의료 체계의 초기적 정비, 사업의 추진·관리를 위한 행정 체계와 기술 발전, 인구학적 지식 생산 및 관련 사회조사 축적 등 다양한 면에서 한국의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에 기여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국가가 매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실시된 강력한 국책사업이었지만 추진 체계상으로는 정부와 준정부기관인 가족계획협회를 축으로 하는 민·관 협동 형태를 띠었다. 가족계획사업은 이전부터 출산조절 욕구가 있던 한국 여

가족계획 시범마을 표지판 | 가로91 세로50 두께0.1 | 광복 이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들에게 근대적 피임 수단과 정당화 논리를 제공하였으며, 전국에 파견된 가족계획요원과 가족계획어머니회 조직 및 각종 홍보·교육을 통해 가족계획의 이념과 실천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시켰다. 전통적인 출산 관행을 무계획·무질서로 규정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근대적 태도를 갖고 근대적인 핵가족적 삶을 추구하도록 권유하는 국민계몽 담론 성격도 가졌던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가족계획사업은 국가가 국민을 조국 근대화에 자발적으로 동원하는 일종의 가족 통치 기제로도 작동하였다.

국제사회에서 '가족계획family planning'은 부부가 가족의 생활 여건이나 건강을 고려해 자녀 출산의 횟수와 간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정의되었고, 한국 가족계획사업 역시 이 정의를 따라 '어머니의 건강과 한 가정의 경제력을 고려해서 결혼 후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터울을 두고 적당한 수효의 자녀를 낳음으로써 이상적인 가정을 갖자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계획사업이 집중한 것은 산아제한産兒制限이었다.

산아제한이란 1914년 미국의 마거릿 생어Margaret Sanger가 만든 'birth control'이라는 말을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이 번역한 것이다. 생어는 여성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임신·출산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피임법 보급이 필요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 말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대 한국에서는 산아제한을 단순히 피임이나 낙태를 통해 인위적으로 출산을 피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실제로 가족계획사업이 문제 삼은 것은 다산多産뿐이었다. 많은 수의 자녀는 자녀의 교육과 건강을 저해하고 가족경제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규정되었고, 출산을 줄이는 것만이 개인과 가족의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산아제한에 대한 관심은 가족계획사업 이전에도 있었다. 여성들이 자신의 출산을 조절하고자 하는 개별적 시도는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으나 효과적인 피임법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과 도덕적 비난을 무릅쓰고 독초 복용이나 추락 등 위험한 방법을 통해 임신이 중단되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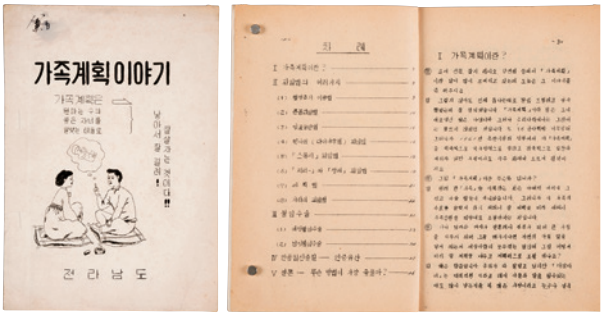

가족계획이야기 | 가로13 세로19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근대 국민국가 초기에는 인구가 국력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산장려가 국가 입장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우생학優生學 보급과 1922년 마거릿 생어의 동아시아 방문을 계기로 산아제한이 사회적 관심사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에는 몇몇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국지적으로 산아제한 관련 계몽활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일제강점기 말기 전시체제 아래에서 인구증가정책이 취해지면서 일제에 의해 저지되었고, 광복 후 이승만 정부도 남북대결에서 승리하려면 많은 인구가 필요하다며 출산장려 정책을 견지하였다.

피임법 보급을 위한 활동이 다시 시작된 것은 민간 차원에서였다. 1954년에 내한한 미국인 선교사 오천혜George Clarkson Worth는 모자보건 측면에서 산아제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58년에 창립된 여성단체 대한어머니회는 자체 사업으로 산아제한 계몽교육을 선정하여 강연회를 여는 등 활동을 시작하여 1960년 서울에 16개 가족계획 상담소를 설치·운영하였다. 미국 유학 시 신맬서스주의 인구담론을 접하고 귀국한 사회학박사 고황경과 의사 강주심이 중심이 된 대한어머니회의 활동은 여성들에 의해 펼쳐진 자발적인 출산조절 보급운동으로서 의의가 있다.

1960년에 국제가족계획연맹의 특별사절이 내한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양재모와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이었던 이종진 등을 만나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할 민간단체 수립을 권유하였고, 연간 3,000달러 내외의 운영자금을 약속하였다. 이에 1961년 4월 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었으나 5·16군사정변으로 다른 사회단체와 함께 해체되었다가 같은 해 9월 재건되었다. 이후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1999년 대한가족보

건복지협회, 2005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 변경)는 정부와 협력하여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측 사업 주체로 기능하였다.

재건국민운동본부의 가족계획사업 추진 발표는 1961년 7월이었고, 같은 해 11월 가족계획사업을 경제개발오개년계획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의 결정이 나왔으며, 12월 최고회의의 의장 명의로 가족계획의 국책사업화를 천명하는 담화문이 발표됨과 동시에 피임약제 수입과 국내생산에 대한 금지 조처가 해제됨으로써 가족계획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1962년에 수립한 가족계획사업 10개년 계획은 1961년 3.1%에 달하던 인구증가율을 '제1차 경제개발오개년계획(1962~1966)'이 끝날 때까지 2.5%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목표량만 정해졌을 뿐 실제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나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제1기는 사업실시를 위한 준비 단계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족계획 계몽을 펼칠 상담소가 각지에 있어야 하였으므로 먼저 보건소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여기에 가족계획상담소를 두었다. 민·관 협동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면面마다 1명 이상의 가족계획 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기반도 만들었다. 당시 대표적인 가족계획 표어로는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가 있다.

제2기(1967~1971)에는 '3·3·35 운동'이 펼쳐졌다.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어머니의 나이가 35세가 되기 전에 단산하자는 뜻이다. 피임 보급을 위해 차량을 동원한 이동시술반을 운영하여 훈련받은 간호사가 마을로 찾아가 자궁내장치 시술 등을 제공하는 한편 먹는 피임약의 임상연구와 보급이 시작되었다. 또한 시·군에 가족계획협회 군 간사가 배치되고 리·동 단위별로 가족계획어머니회가 조직되어 가족계획 계몽활동과 자발적 실천을 고무하였다. 이 시기의 가족계획사업은 주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제3기(1972~1981)의 대표적인 가족계획 구호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가족계획사업의 피임 시술과 계몽활동이 도시지역에까지 확대되어 병원 가족계획사업, 도시영세민 가족계획사업, 사업장 가족계획사업 등이 펼쳐졌다. 피임에 비협조적이던 남성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정관수술 시술까지 제공한 군인 및 예비군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였다. 1973년 〈모자보건법〉을 제정하고 남아선호사상 타파를 모색하는 등 가족계획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노력도 이루어졌다. 여성단체인 주부클럽연합회는 1974년을 '임신 안 하는 해'로,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여성의 해인 1975년을 '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로 선포하여 범국민적 계몽 사업을 전개하였다.

제4기(1982~1988)는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로 대표되는 한 자녀 갖기 운동의 시기였다. 의료보험 급여 대상에 피임시술을 포함시키고, 불임시술을 받은 영세민에게는 특별생계비를 지급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추가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이 사회지원시책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또 인구교육 강화와 대대적 홍보사업 전개가 이루어졌다. 1988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1명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가 이미 1980년대 초반에 조기 달성되었지만 이 시기 가족계획사업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제5기(1989~1995)가 되어서야 가족계획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1989년 경제기획원은 그간 조성된 피임 및 출산 행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가족계획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하였다. 일각에서 인구감소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피임시술

1980년대 성비균형 포스터 | 보건복지부

과 약제가 자비 부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1996년 신인구정책 선언과 함께 가족계획사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특징 및 의의 절대빈곤 속에서 인공유산을 해서라도 자녀수를 줄이려고 하였던 한국 여성들은 가족계획사업 시기 산아제한에 적극 호응하였다. 그러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려는 가족계획사업의 돌진적 추진으로 인해 불필요하거나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남발되었고, 낙태가 실질적으로 용인되는 등 부작용이 컸다. 남성의 피임 기피로 인해 신체적 부담이 훨씬 큰 먹는 피임약이나 난관수술이 여성에게 강요되기도 하였다. 한국 여성들은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자신의 출산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성의 자율성이나 재생산적 권리의 보장은 요원한 일이었다.

참고문헌 가족과 통치(조은주, 창비, 2018), 한국가족계획십년사(대한가족계획협회, 1975), 한국인구정책 50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보건복지부, 2016),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배은경, 시간여행, 2012).

필자 배은경(裵恩慶)

가족관계등록법
家族關係謄錄法

정의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

역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은 종전에 〈호적법〉이 담당하고 있던 가족관계에 대한 공시公示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도록 하는 호주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적법〉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1960년 1월 1일 〈민법〉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남계男系 중심의 호주 상속으로 인하여 가족구성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래서 1990년 1월 3일 개정된 〈민법〉에서는 호주제를 존치하되 호주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변경하고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며, 호주의 지위를 약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호주제에 대한 비판은 지속되었다. 그 결과 헌재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등의 결정에서는 헌법불합치라는 결론을 채택함으로써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2005년 3월 31일 마침내 호주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이루어져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개정된 〈민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에 따른 가족관계의 공시를 위하여 제정된 법이 〈가족관계등록법〉이다.

내용 2008년에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호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종전의 방식을 버리고 개인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를 공시하도록 하였다는 점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 기록 형태로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개인별로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록된다. 그렇지만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개인에 관한 기록인 호적초본戶籍抄本 외 호적등본戶籍謄本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사례 | 2008 | 대한민국법원

기본증명서 사례 | 2008 | 대한민국법원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종전의 방식을 버리고 개인에 관한 기록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분리하였으며, 나아가 혼인관계와 입양관계에 대해 독립한 증명서를 통하여 상세한 가족관계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직계혈족을 1촌까지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외에 부모와 자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가족관계 중 일부만을 기록한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다. 이들 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특정증명서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시·읍·면의 장이 담당하던 것을 대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의 처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의 관리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방식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내용과 이를 담당할 기관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공시할 것인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중 많은 부분은 당사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신고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과 출생신고, 인지신고, 입양신고·친생자입양신고·파양신고, 혼인신고·이혼신고, 친권 및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 사망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하여 작성되므로 국적의 취득과 회복, 가족관계등록의 창설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그리고 기존에 작성된 기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개명신고 등과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도 있다. 성전환자의 성변경性變更이 대표적이다. 성변경이 문제되었던 3건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찬반이 대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성전환자가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대법원 2022. 11. 24. 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현재 혼인 중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징 및 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민법〉에서 가족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종전의 〈호적법〉에 비하여 가족관계의 공시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친족관계 파악에 어려움은 있지만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개선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가족관계등록 관련 디지털화에 관한 법제연구(박광동, 비교사법 20-4,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혜정, 사법정책연구원, 20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송효진·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필자 전경근(田慶根)

가족법
家族法

정의 가족 간 법률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말함.

역사 가족법家族法은 1958년에 제정되었고, 196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그 후 1990년에는 남녀평등 이념을 반영한 개정이 있었고, 2005년에는 호주제 폐지로 인한 개정이 있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입양과 친권 및 후견에 관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이처럼 가족법의 규정에서 현대사회의 이념과 맞지 않는 부분이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속해서 지적됨으로써 이에 관한 부분적인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내용 〈민법〉 친족 편에서는 친족에 관한 규정을 시작으로 가족 범위, 약혼과 혼인, 부모와 자녀 관계, 후견, 부양에 관하여 규정한다. 그리고 상속 편에서는 상속과 유언 및 유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이 가운데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가족이다. 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가족이 된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부父를 따르지만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약혼과 혼인은 혼인 의사를 가진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면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친혼과 중혼은 금지되며,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혼인이 성립하면 부부간의 의무가 발생하며,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본다. 그리고 부부의 재산에 관해서는 혼인 전에 약정할 수 있고,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혼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 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친권행사와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 및 면접교섭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이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태아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성립일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면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친생부인親生否認을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허가 또는 인지의 허가에 따라 친생을 부인할 수 있다. 혼외자는 인지를 통하여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친생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인정된다. 한편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데 이때 입양 당사자 본인과 그의 부모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입양하였음을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친양자입양을 하면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일방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행사한다. 그러나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친권자는 자녀를 교양敎養할 수 있고, 법률행위에 동의하거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친권 행사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일시적인 정지 또는 일부의 제한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 등이 개시되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의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피후견인이 후견계약을 통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법원이 후견인을 정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권한의 행사가 적절한지는 후견감독인 또는 가정법원이 관리한다. 그리고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된다.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 순서로 상속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거나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한다. 다만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들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한다.

한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특별수익을 한 상속인은 특별수익이 자신의 상속분보다 적은 때에만 상속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사람은 법정상속분 외에 기여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

속재산이 연고자에게 분여分與되거나 국가에 귀속된다. 피상속인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상속재산의 승계에 관한 유언을 할 수 있지만 상속인 또는 제삼자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이 과다하여 어떤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면 그 상속인이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가족법은 총론과 각론 체계를 가지는 〈민법〉의 일부이지만 재산관계에 관한 부분과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취급되었다. 한편 가족법은 관습과 양성평등 등 현대적 이념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영역이며, 그 결과 최근 들어 개정되는 부분이 많다.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족 간 법률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가족법의 개정과 입법(이진기, 가족법연구31-2, 한국가족법학회, 2017), 친족·상속법(김주수·김상용, 법문사, 2022), 친족상속법(박동섭·양경승, 박영사, 2020), 친족상속법(송덕수, 박영사, 2022), 친족상속법 강의(윤진수, 박영사, 2022).

필자 전경근(田慶根)

가족법개정운동
家族法改正運動

정의 대한민국 민법전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여성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사회운동.

내용 1958년 2월 22일 공포된 민법전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민법전이 점진적 개혁론에 따라 입법되면서 친족 편과 상속 편에는 여성 차별적인 요소가 적잖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친족 편과 상속 편을 개정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계속되는데, 여성계 중심으로 〈친족상속법〉 대신 〈가족법〉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면서 '가족법개정운동家族法改正運動'으로 명명된다.

〈가족법〉은 민법전 제정 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는데, 1977년 개정은 당시 벌어졌던 가족법개정운동의 결과였다. 1973년 6월 28일 전국 61개 여성단체가 모여 결성한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는 〈가족법〉 개정 요강 10개 항을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74년 8월 〈가족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은 1975년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호주제 및 동성동본금혼 규정 폐지 등의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성동본불혼제도 개정촉진회 총회 | 1977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아카이브

가족법 개정을 위한 가두캠페인 서명 | 서울 종로구 | 1984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아카이브

1984년 7월에는 78개 단체가 가입한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가 결성되었고, 1989년 10월에는 호주제 폐지를 비롯하여 〈가족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990년 개정은 김장숙金長淑 의원 등의 발의로 제출되었던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호주제도 폐지, 동성동본금혼 규정의 삭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의결된 대안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원안의 내용을 받아들여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동성동본금혼법〉

서울시 인권현장 인권 표지석 | 서울 영등포구 | 2016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아카이브

개정을 위한 당사자 모임과 함께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였고, 동성동본금혼 조항은 1997년 7월 16일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다. 2000년 9월에는 총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호폐연)'가 발족한다. 호폐연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범사회시민단체 연대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 활동의 일환으로 연대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노력에 정부도 호응하여 2003년 5월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특별기획단'을 발족하였고, 2004년 6월 법무부는 17대 국회에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호주제 폐지 및 〈민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 개최, 국회의원 1:1 면담 릴레이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 끝에 드디어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뒤이어 2월 28일에는 국회에서 동성동본금혼 규정과 호주제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05년 개정은 〈민법〉 제정 후 가장 큰 폭의 것으로, 〈친족법〉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었다.

이후에도 〈가족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현재도 부부재산제 개선, 양육비선급제도 도입, 부성주의父姓主義 수정 등 가족법개정운동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민법이 제정된 이래 〈가족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그 밑바탕에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법개정운동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가족법〉 개정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동성동본금혼 규정과 호주제가 폐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가족법개정운동의 공이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2016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정구태, 법학논총24-1,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2),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이화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 주해친족법1(윤진수, 박영사, 2015),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구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8-3,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구태(鄭求兌)

가족사진
家族寫眞

정의 가족 구성원이 모여 함께 찍은 사진.

내용 가족사진家族寫眞은 가족 구성원의 일체성과 통합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한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미지로 재현하는 행위를 통해 가족집단의 연속성과 강한 단결력이 발휘된다. 오늘날 사진은 대중에게 익숙한 매체이지만 조선 말기에는 신분을 막론하고 서양 문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였기 때문에 사진을 바라보던 민중의 인식은 매우 배타적이었다. 특히 갑신정변甲申政變 당시 외국 과학기술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일본인이 운영하던 사진관이 피습되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열강들의 세력다툼 각축장이었던 19세기 후반 한반도에서 사진 기술과 사진관이라는 장소는 조선 민중의 표적이 되기도 하였다.

사진에 대한 민중의 인식이 변화된 여러 원인 중 하나로 대한제국大韓帝國 황실 가족의 사진 촬영을 들 수 있다. 1900년대 촬영된 고종高宗의 황실 가족사진은 피사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가족사진이다. 초창기 고종과 순종純宗의 사진은 어진御眞 형

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구도였으며, 황실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역시 경직된 상태의 피사체가 등장하는 초상화肖像畵 형태와 다름없었다. 이후 사진은 점차 일반 민중의 삶에도 스며들었는데 그들의 가족사진 초기 형태도 마치 황실의 가족사진을 모방하듯이 인물 초상화와 비슷한 구도를 띠었다.

광복 이후 국내에서도 사진술 발달과 함께 사진을 수용하고자 하는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직업 사진사는 사진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들은 사진관을 기반으로 민중의 가족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러한 사진관 사진은 많은 이들이 찾는 소비재가 되었다. 초창기 사진관에서 취급한 것은 주로 초상사진이었으나 사람들은 점차 삶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하는 사진 촬영이 대부분이었으며 백일사진을 시작으로 돌사진, 결혼사진, 회갑연 기념사진 등 인생의 통과의례와 관련한 가족 일원의 생애사를 담은 사진이 꾸준히 생산되었다.

특징 및 의의 오늘날 가족사진은 주로 사진관 스튜디오 혹은 사진사가 미리 정해 둔 야외 장소에서 촬영된다. 사진관을 통해 생산된 가족사진은 사진을 촬영한 지역과 사진사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틀에 박힌 양상으로 재현되어 왔다. 20세기 후반까지도 가족사진은 대부분 엄숙하고 경직된 분위기로 기록되었으나 점차 구도나 표현 방식이 자연스러워졌다. 특히 카메라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70년대 무렵부터는 카메라를 소유한 가족 일원이나 지인에 의해 사진관 외의 장소에서도 촬영이 이루어지게 되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사진이 등장하였다.

이길영 가족사진 | 가로8 세로11 |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가족사진

가족사진에는 가족에 대한 당대의 사회적 정의가 재현되어 있다. 가족은 사전적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을 일컫는데 가족의 구성과 의미체계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됨에 따라 가족사진의 형태와 구도 또한 변화해 왔다. 가족 범위는 시대마다 달라진다. 산업사회 이전 어느 농촌의 집성촌 가족사진에는 집안의 일원이 모두 등장한다. 농촌에서 가족의 수는 곧 생산력과 직결되었으므로 여러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그들이 이룬 일가를 과시하듯 사진 촬영에 임하게 된 것이다. 가족사진 속에서 집안 내 위계질서와 친밀감의 정도, 성별 등이 구분되기도 한다. 보통 가운데 위치하는 이가 가족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고, 그 인물로부터의 거리를 통해 서열과 친밀감의 정도가 가늠된다.

대가족 체계가 점차 사라져 감에 따라 핵가족 위주 사진이 등장하게 되었고, 부부가 가족의 중심이 되어 가족사진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가족 형태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사진의 범주와 구도

및 의미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가족사진에 등장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사진사의 삶과 사진관의 사회문화적 의미(조성실, 지방사와 지방문화10-2, 역사문화학회, 2007), 중간 예술(Pierre Bourdieu, 주형일 역, 현실문화연구, 2004), 한국사진사 1631~1945(최인진, 눈빛, 1999).

필자 조성실(趙聖實)

가족주의
家族主義

정의 가족을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로 중시하여 개인은 가족과 친족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우리'로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가족은 개인을 대표하는 단위로 간주하는 이념.

내용 한국 등 동양 문화는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집단 안의 협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다. 특히 사적 집단으로서의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집단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가족주의家族主義가 강한 사회에서는 가족家族과 가문家門 구성원들이 '우리'로 하나로 엮여서 자신들을 울타리 밖의 타인들과 구별하여 거리를 두는 반면에 '우리' 안에 속한 타자와 개인으로서의 '자아' 간 경계는 뚜렷하지 않아서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의지한다. 또한 가족 및 가문이 개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기므로 가족 구성원들 중 한 사람이 이룬 성취는 그 자체로서 가족 단위의 계층 상승을 의미하고, 그 성취로 인한 보상은 가족 안의 모두가 공유하는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논리 아래 가족 중 한 사람의 성취를 위해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현재의 희생을 감수한다. 즉 가족 안의 평등이나 개인의 권리보다는 단결과 응집성을 중시하는 것이 가족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 '나'와 '너'를 분리하지 않고 '너의 것'과 '나의 것'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은 채 공유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가족주의 정서의 이면에는 '가족이니까'를 핑계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으로 인한 가학加虐과 '나만 참으면 모두가 편안하다.'는 식으로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잊은 채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피학被虐이 공존한다. 가족 안에서 드물지 않은 폭력과 학대 역시 '나'와 '너'를 분리하지 않고 뭉뚱그리는 데서 비롯된다.

개인주의가 급격히 확산되고 개인 단위의 성취를 중시하는 오늘날에도 개인의 지위 매김에서 여전히 그 또는 그녀의 가족이 지닌 사회경제적 지위에 준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부모 형제의 직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중시되는 것은 가족주의 사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젊은 층에서도 친인척 관계를 표현하는 호칭들(아버님, 어머님, 이모님, 언니 등)을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 역시 서로를 가족인 듯 표현함으로써 사적 친근감을 공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가족주의적 문화가 잔존함을 방증한다.

가족주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은 세대적 경험에 따라 상이하다. 우선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 정서를 유교적 가족주의, 도구적 가족주의, 서정적 가족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교적 가족주의는 조선 중기 이후 유교를 중심으로 가족 및 친족 내의 수직적 위계질서와 부양 윤리,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앞세워 성별과 연령 및 지위에 따른 수직적 위계를 당연시한 가치관으로 대표된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획일적인 효 규범과 관혼상제를 들 수 있다. 산업화 시기에 효 윤리에 기초하여 노부모에 대한 가족 부양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을 메울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우리 사회가 유교적 가족주의 이념을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맞벌이 및 소가족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전통적 방식의 효와 가족 부양이 원활하게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병시중으로 인한 경제적·도구적 부담 과중으로 몸살을 앓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설 부양을 택한 가족들의 죄책감이 만만치 않다. 이는 유교적 가족주의에 기초한 부양 기대치와 이를 실천하기 어려운 가족 현실 간 괴리 때문이다.

둘째, 도구적 가족주의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6·25 전쟁 및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가족관계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생존과 성공을 추구하려는 과정에서 생겨

난 이념이다. 사회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믿을 것은 가족뿐'이라는 정서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가족 및 친족들 간 상호 유대와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게 되었다.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동안 농촌의 가족들은 자녀들을 도시로 보내고 농촌에 남은 자원들 역시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도시로 보내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족 전체가 도시화 대열에 점진적으로 합류하는 전략을 썼다. 그런데 후발주자가 도시로 와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먼저 도시에서 자리 잡은 가족과 친지의 도움을 활용하였고, 일단 자신이 자리를 잡고 나면 또 다음에 오는 가족과 친지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자본이 부족한 가족에서 한 명의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교육시키고 추후 그 자녀의 성공에 편승하여 가족 단위의 계층 상승을 이루며 성공한 자녀로 하여금 형제자매들의 삶을 지원하게 하는 것은 드물지 않았다. 오늘날 자녀의 교육과 취업 및 혼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세대 간 계층 상승을 이루려는 가족 전략 역시 도구적 가족주의 이념에서 출발한다.

셋째, 서정적 가족주의는 유럽의 근대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남녀 간의 낭만적 사랑과 핵가족 정서 및 모성애 이념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이는 서구문화 유입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도 상륙하였는데 남편의 생계 부양과 아내의 가사 및 양육에 대한 헌신을 이상화하였으므로 한국의 가부장적 규범의 틀과 맥을 같이하면서 무리 없이 정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있는 오늘날 서정적 가족주의는 전업주부에게 기대되는 바를 충족할 수 없는 맞벌이 아내로 하여금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하고, 남편과 자녀들로 하여금 애정성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내이자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청년층은 서정적 가족주의에 기대어 부모의 무제한적인 애정과 돌봄을 당연시하면서 성인기로의 이행을 지체하고, 부모는 또한 이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색깔의 가족주의 정서가 세대에 따라 각각 다른 비중으로 내면화된 채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유교적 가족주의 및 도구적 가족주의를 내면화한 노년 세대의 기대와 개인주의 및 평등주의에 익숙하고 서정적 가족주의를 내면화한 젊은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몰이해와 갈등이 충돌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가족주의적 사고는 사회 구성원이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를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이어졌다. 국가는 가족에게 사회보장 책임을 전가하고, 가족은 사회적 경쟁의 기본 단위가 되어 가족 밖의 공공성에 무관심한 가족이기주의를 강화하였다. 한편으로 사회적 지위와 금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의 특혜를 자기 자식에게 제공하려는 편법이 난무하고, 다른 한편에선 불공평한 사회에 대한 불만과 좌절이 자리한다.

또한 노인 부양을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효' 중심의 유교적 가족주의 사고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맞물리면서 가족에게 주어지는 과부담이 극심한 가족 피로를 유발하고 있다. 게다가 집단주의의 일종인 가족주의 사고에는 '우리'에 속하지 않은 타 집단에 대한 배타성이 개인주의보다 훨씬 강해서 범사회적 결속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가족주의적 전통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가족이기주의로 빠지지 않고 '다름'의 가치를 포용하여 어울림을 추구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를 위한 새로운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21세기 한국가족과 문화(이여봉, 박영사, 2022),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신용하·장경섭, 지식산업사, 1996), 가족·생애·정치경제(장경섭, 창비, 2009), 환장할 우리가족(홍주현, 문예출판사, 2019).

필자 이여봉(李麗峰)

가첩
家牒

정의 작성자에 이르기까지 부계직계 선조들을 세대 순으로 기재한 단선 계보.

내용 가첩家牒은 인지되는 시조始祖로부터 작성자의 자

식에 이르기까지 부계직계 선조들을 세대 순의 단선으로 기재한 계보를 말한다. 직계 선조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족보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자字, 생몰연대, 과거급제 여부, 경임更任 관직, 배우자, 배우자가 낳은 자녀 수, 묘지 위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가첩을 가승家乘이라고도 하는데, 가승은 계보도만이 아니라 가까운 시기의 몇몇 직계 선조의 사적事績과 사회활동, 거주지 이동 등 집안의 내력을 기록한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단독으로 가계를 계승하여 단선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가보家譜'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가첩은 족보처럼 윗대의 선조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계보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작성자로부터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작성 원리를 가지고 있다. 형제간에 계보가 분화될 때는 형제의 가첩에 기재된 직계 선조의 정보를 옮겨 적어서 자신의 가첩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을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의향은 있으나, 부계친족의 계파적 분화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가첩에는 부계직계 선조의 단선 계보만이 아니라 여러 성씨의 모측母側 선조들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가첩의 연원이 호적의 계보 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직계 선조의 단선 계보 말미에 부父·조부의 외조와 모母·조모 각각의 사조四祖, 즉 부·조·증조·외조를 기재하고, 여기에 더해 '사증조四曾祖' '팔고조八高祖' 등 성씨가 다른 여러 선조를 별도로 기록하기도 한다. 역시 호적의 사조 정보를 여러 대에 걸쳐 확보해야 가능한 기록이다.

선조 계보를 증빙하기 위해 족보의 부록으로 호적이 부기된 경우가 있다. 그 가운데 『용인이씨족보龍仁李氏族譜』에 별록別錄으로 기재된 이광시李光時의 호적은 이광시의 사조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증조 위로 증조의 사조 그리고 증조의 증조보다 윗대의 부계직계 선조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광시를 중심으로 계보 형태를 보면, 부계직계 선조들을 단선으로 기록하고 말미에 기타 여러 성씨의 모측 선조들을 기록하는 가첩의 양식과 흡사하다. 그러나 이 호적이 해당 작성 연도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이광시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물려받은 여러 호적에서 자신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부계직계 선조의 정보를 모아 기록한 것이다.

사성강목 | 가로19 세로3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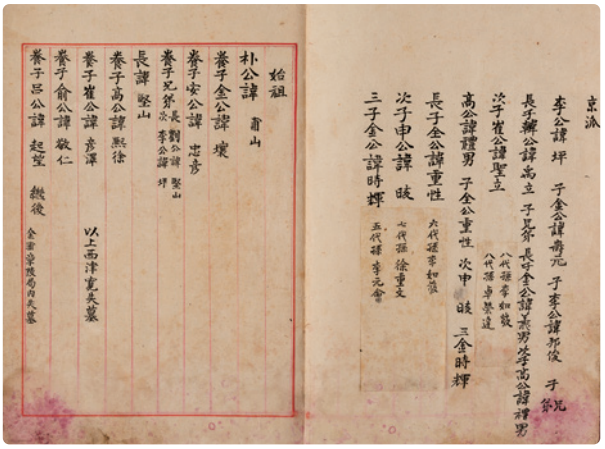

가승 | 가로22 세로31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이러한 부계직계 선조 단선의 계보는 가첩을 작성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족보의 별록에 실어 계보를 증빙하는 자료가 되었다. 가첩은 방계傍系의 부계친족들이 모여 족보를 편찬할 때 하나의 지선으로 제시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대가 끊어져서 후손을 잇지 못하는 선조는 가첩에 나타날 수 없으므로 족보에서도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가첩 작성자가 가첩 말미에 자신과 자식을 기재한 다음 사망한 동생을 기재한 경우도 있다. 후대에도 잊히지 않기를 바란 것이 아닐까 한다.

계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 최초의 족보는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이다. 이 족보는 아들과 사위 양쪽으로 계보가 이어지는 '자녀보子女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안동권씨 인물은 소수에 그치고 다른 여러 성씨의 인물들이 등재되었다. 이 족보의 계보 정보도 호적의 사조 정보를 축적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단지 가

첩과 같이 계보 정보를 부계직계 선조로 특화하지 않고 모계 혹은 모측의 여러 선조 계보를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녀보'는 이후 17세기까지 족보의 일반적인 계보 형태였다. 이 가운데 1590년대 편찬된 『사성강목四姓綱目』은 '사성四姓', 즉 편찬자 부모의 사조에 해당하는 네 가계로 나뉘어 자녀보가 기록되어 있다. 부계인 고성이씨固城李氏와 조모의 창녕성씨昌寧成氏, 모친의 남평문씨南平文氏, 외조모의 안악이씨安岳李氏로 나누어 각각 선조로부터의 자녀보를 수집하여 기재한 것이다. 고성이씨 부분에는 작성자의 부계직계 계보를 근간으로 형제·자매의 방계 계보가 5~6세대로 간략하게 기재된다. 자녀보라 하더라도 『안동권씨성화보』처럼 계보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 족보의 기록이 이전의 자녀보와 다른 점은 부계남성마다 처妻의 사조나 처부妻父의 정보를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선조의 혼인관계에 근거한 이러한 족보는 '내외보內外譜'로 별칭되기도 한다.

1606년에 편찬된 『진양하씨세보晉陽河氏世譜』는 편찬자가 자신의 직계 선조와 사조들을 기록한 가첩에 골격을 두고, 이들 선조가 작성한 자녀보를 두루 수집하여 편찬하였다. 우선 직계 선조들의 자녀보는 부계남성의 자녀보를 '자파子派', 부계여성의 자녀보를 '여파女派'로 구분하여 수집하였다. 그리고 '외보外譜'라 하여 편찬자의 고조高祖에 이르는 직계 선조들의 외가外家 계보를 별도로 수합하였다. 이 족보는 자녀보를 두루 모으더라도 작성자로부터의 부계직계 선조의 계보를 뚜렷한 기준으로 삼으며, 말미에 작성자의 여러 다른 성씨의 선조 가계를 제시한다는 점이 족보를 작성할 때 가첩의 기재 양식을 기준으로 삼았음을 말해 준다. 또한 부계남성의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부계남성의 '처부妻父'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조선 후기 족보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진양하씨세보 | 가로24 세로36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특징 및 의의 가첩의 부계직계 단선 계보는 해당 가계에 대대로 내려오던 선조 정보이거나 대대로 보관해 오던 호적의 사조 정보에서 취해진 것이다. 가첩의 말미에 작성자 사조의 사조와 기타 여러 성씨의 모측 선조들이 기재되는 것은 호적의 계보에서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다. 족보가 부계의 방계 형제·자매 계보를 광범위하게 수합한 것임에 반해, 가첩은 한 가족의 계보적 연원이 부계직계로 한정되고 작성자 가족이 형성되기까지 혼인관계를 맺은 가까운 선조들의 가족을 기재하는 데 그친다. 가첩의 작성자가 생존하는 동안의 사회활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첩의 계보 형태는 족보 편찬을 주도하는 자의 편찬 방법으로도 활용되었다. 이러한 족보는 친족집단의 조직화와도 거리감이 있다.

참고문헌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한국의 성씨와 족보(이수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의 족보(정승모,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손병규(孫炳圭)

가통
家統

정의 오랜 기간 대대로 축적되어 온 가문의 문화적 전통.

내용 가통家統은 가풍家風과 유사한 뜻으로,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온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말한다. 다만 가풍과 달리 가통에서는 역사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다르다. 즉 가풍은 고유의 정체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에 가통은 역사적 정통성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단어로 왕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왕통王統, 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종통宗統, 학문적 연원을 나타내는 학통學統 등이 있다. 이처럼 가통은 가문의 정통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혈통적 정통성, 학문적 우월성, 대과大科 급제자 배출(고위직 관료),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기반을 둔 예법, 도덕적 규범에 바탕을 둔 생활양식 등이 포함된다.

이런 까닭에 각 가문에서는 자신들의 가통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활동을 펼치는데, 혈통적 정통성은 주로 족보를 통해 구현된다. 즉 시조 이래 훌륭한 조상들의 행적을 기재해 둔 족보를 발간함으로써 혈통적 정통성을 수립하는 것이다. 학문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큰 성취를 이룬 조상의 문집을 간행하는 등 가문의 학통을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데 힘을 기울인다. 대과 급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종의 자격증으로, 배출 인원이 많을수록 명문가로 평가받았다. 문집 발간이 사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대과 급제는 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문 선양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주자가례』를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가문의 의례적 전통을 확고히 세우는 것도 중요하였다. 이를 위해 『주자가례』에 근거해 관혼상제례를 거행하고, 또 『주자가례』에는 명시되지 않은 세세한 절목을 중심으로 의례규범서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도덕적 규범에 바탕을 둔 생활양식이란 유교의 윤리이념인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실천적 행위를 말한다. 그중 충효忠孝 실천을 으뜸으로 여겼으며, 사람과의 신의信義 역시 주요 덕목이었다. 즉 나라에 충성하고 향촌사회의 규율을 바로 세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히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가족공동체의 기강을 수립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는 곧 지식인층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였다.

그 외 일상의 생활범절 역시 가통 형성에 필요한 요소였다. 이를 위해 유년 시절부터 『동몽선습童蒙先習』이나 『소학小學』 등 기본예절서를 가르쳤으며, 성장해서는 친족호칭 등 보학적譜學的 지식을 익히도록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통統'의 원래 의미는 '실뭉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실마리'이다. 그런데 실뭉치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실을 뽑을 수 있기에 '통'은 실마리를 찾는다는 점에서 '시작'에 해당하고, 실을 뽑는 행위는 '근본'에 속한다. 이처럼 시작과 근본의 뜻을 가진 '통'이라는 단어에는 시간적 속성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는 곧 '역사'를 말한다. 그리고 이 '역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계승됨으로써 본래적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가통은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계승적) 관점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가례의 수용과 조선 사대부의 집안 다스리기(김미영, 민속원, 2022), 조선시대 사대부 가풍의 계승 양상 연구(김학수, 국학연구31, 한국국학진흥원, 2016),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필자 김미영(金美榮)

가풍
家風

정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한 생활양식 및 도덕적 규범.

내용 가풍家風은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한 생활양식과 도덕적 규범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학문적 전통과 의례적 전통을 비롯해 가족생활을 규율하는 도덕적 규범과 일상의 생활범절 등이 포함된다. 가풍은 유서 깊은 가문의 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던 까닭에 상류층일수록 가문의 위상을 높이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풍을 정립하고 전승하고자 노력하였다.

가풍 전승은 대부분 가정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 학문적 전통은 학풍學風이라고도 하는데, 가문의 독자적인 가학家學을 수립해 영구히 이어 가는 것을 말한

효자정려 | 가로157 세로6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다. 그리고 가학적 전통을 전승하기 위해 선대 조상들의 학문적 업적을 문집 등의 형태로 발간해 학문적 계통을 세운 뒤 지역사회에서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하였다.

의례적 전통에서는 독자적인 가례家禮를 수립하기 위해 『예서禮書』를 발간한 뒤 대대로 전승해 갔다. 의례를 둘러싼 가풍은 주로 조상제사의 실천 과정에서 구현되었다. 이로 인해 가가례家家禮라는 말도 생겨났다. 즉 제례문화의 기본원칙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근거하고 있지만 가문의 의례적 전통에 따라 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문의 의례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주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가족을 규율하는 도덕적 규범이란 삶의 지향점, 곧 가치관을 말한다. 전통사회의 도덕적 규범은 국가·사회·가정에서 행하는 유교의 실천윤리인 삼강오륜三綱五倫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중 삼강의 충효忠孝를 가장 중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오륜의 신의信義를 강조하였다. 가문의 도덕적 규범은 주로 유훈遺訓을 통해 전해졌으며, 후손들은 조상의 가르침을 공유하면서 가문의 독자적인 정신문화로 이어 나갔다.

일상의 생활범절은 가정생활 영위에 필요한 일종의 생활규약으로, 가훈家訓·정훈庭訓·가법家法·가범家範 등 형태로 전해졌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의 안지추顔之推가 지은 『안씨가훈顔氏家訓』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외 송나라 사마광司馬光의 『가범家範』과 주희朱熹의 『주자가훈朱子家訓』 등을 참고로 하고 있다. 특히 생활범절은 범주도 넓고 내용도 방대한 까닭에 유년 시절부터 엄격한 교육을 하였다. 『안씨가훈』의 서문에 다음의 글이 있다.

> 평소 우리 집안의 가풍과 교육은 엄격하였다. 나도 7, 8세 무렵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매일 두 형님을 따라 아침저녁으로 부모님의 방이 따뜻한지 차갑지는 않은지를 살폈고, 절도 있는 걸음걸이와 차분한 말투, 단정한 모습 등을 몸에 익혔으며···

내용에서 보이듯이 생활범절은 가족관계에서의 행동양식을 비롯해 걸음걸이와 말투 등 일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안씨가훈』은 총 20편으로

문자도 | 가로34 세로64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구성되어 있는데 가족 간의 화목, 식사예절, 청소하는 법, 친족 호칭, 독서법, 문장 쓰기, 건강 유지법 등 삶의 전반에 걸친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가풍의 내용은 대부분 치가治家 영역에 속해 있었다. 즉 가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일정한 규율을 마련하였고, 이를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가풍이 수립되면서 후손들에게 전승되어 갔던 것이다.

참고문헌 가례의 수용과 조선 사대부의 집안 다스리기(김미영, 민속원, 2022), 양동마을 경주손씨 가문의 가풍과 계승(차장섭, 강원사학37, 강원사학회, 2021), 조선시대 사대부 가풍의 계승 양상 연구(김학수, 국학연구31, 한국국학진흥원, 2016).

필자 김미영(金美榮)

가훈
家訓

정의 한 가정의 구성원이 지켜야 할 도덕적·윤리적·사회적 교훈.

개관 가훈家訓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정 내와 사회에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를 간단명료하게 나타낸 것을 말한다. 주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리와 사회에서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훈이 정립된 당대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으로 여겨져 왔다.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의 가치보다 사회 규범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컸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가훈은 유교적 이념을 가르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가치를 더욱 중요시한다. 산업화 이후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개인주의 확대로 가훈은 개인적 가치관이나 신념을 표방하는 것으로 성격이 변모하였다.

내용 가훈에 대한 기록은 남북조시대 안지추顔之推의 『안씨가훈顔氏家訓』, 당나라의 하동유씨가훈河東柳氏家訓,

가훈 | 충북 괴산 | 2011 | 국립민속박물관

송나라 사마광司馬光의 가범家範, 원나라의 정씨가범程氏家範, 명나라 때 주용순朱用純이 주자朱子의 거가격언居家格言을 바탕으로 만든 주자치가격언朱子治家格言[일명 주자가훈朱子家訓] 등 중국의 역사에서 면면히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가훈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김유신金庾信 집안의 충효忠孝, 최영崔瑩의 아버지인 최원직崔元直의 견금여석見金如石, 신사임당申師任堂의 신의信義·지조志操·청백淸白·성실誠實·우애友愛, 김굉필金宏弼의 인륜人倫, 이이李珥의 화목和睦과 우애友愛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사회 유지의 기본 원리로 삼았는데, 양반가에서 가훈의 정립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양반가의 가훈 내용은 집안이나 가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데, 대개는 아래의 범주에 속한다.

훈계: 전통적인 유교 사회의 규범과 덕목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선현의 가르침이 중심 내용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선시대 전기 좌찬성左贊成을 지낸 이언적李彦迪의 오잠五箴이 있다. 오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천畏天: 하늘을 두려워하라.
- 양심養心: 마음을 기르라.
- 경신敬身: 몸가짐을 공경히 하라.
- 개과改過: 허물을 고쳐라.
- 독지篤志: 뜻을 돈독히 하라.

자녀교육: 각 가문이나 가정에서는 학문 수행을 통해 자녀가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이황

李滉이 『퇴계집退溪集』에서 아들에게 남긴 가훈을 통해 당시 자녀교육에서 독서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데 어찌 있는 곳을 가리겠느냐? 시골에 살든 서울에 살든 오직 뜻을 세우는 게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따름이라. 모름지기 부족함이 없이 힘을 다하여 날마다 부지런히 공부할 것이지, 하는 일 없이 세월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讀書豈擇地乎 在鄕在京 維立志如何耳 須十分策勉逐日勤苦做工 不可悠悠浪送日月也."

마음가짐과 몸가짐: 조선시대의 올바른 마음과 몸가짐은 곧 선비정신 구현을 말한다. 학문과 진리를 향한 구도자의 자세와 태도는 선비가 가져야 할 일생의 덕목이었으므로 이를 가훈으로 삼아 평생의 행위 지침으로 지키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효종孝宗 대 문신이자 학자인 홍만종洪萬宗의 〈수신방修身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 효순孝順: 효도하고 순종하라.
- 호두장好肚腸: 좋은 위장을 보전하라.
- 자비심慈悲心: 남에게 자비심을 가져라.
- 온유溫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져라.
- 노실두老實頭: 노련하고 성실한 머리를 가져라.
- 도리道理: 올바른 도리를 지켜라.
- 충직忠直: 충성스럽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라.
- 음덕陰德: 남 몰래 선을 행하라.
- 방편方便: 모든 일을 알맞게 하라.

대인관계: 조선시대 양반층의 대인관계는 주로 친구나 동료, 친척과의 관계가 중심이다. 그래서 좋은 교우관계를 통해 서로 발전할 것을 당부하며 자칫 잘못된 무리에 들면 패가망신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또 친척이나 손님맞이에 예를 다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모든 관계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말조심과 붕당朋黨에 관한 것이다. 이는 당파 간 치열하게 논쟁하였던 당시의 시대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산 정약용은 당쟁이나 당파, 파벌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붕당朋黨'을 가훈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우리 집안은 선조로부터 대대로 붕당에 관계하지 않았으니 이 뜻을 가슴속에 명심해서 당파의 무리를 짓는 사사로운 마음가짐을 말끔히 씻도록 하여라朋黨 吾家自先世不涉朋黨 銘肺痛滌黨私之心."

이 외에도 건강·재산 관리, 관혼상제, 관직 생활 등에 대한 가훈도 다양하게 보이나 크게 보면 유교적 관습과 규범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보통이다.

현대사회에 와서 가훈 내용은 특정한 범주로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러나 성실, 정직, 화목, 근검, 신의, 관용, 겸허, 효도, 신중 등과 같이 여전히 전통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많다. 한편 과거와 전혀 다른 내용도 있다. 사랑, 명랑, 봉사, 자립 등이 그것이다. 사랑은 기독교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지만 종교적 차원을 넘어 인간사회에서의 보편적 가치로도 인식되고 있다. 명랑과 봉사는 산업화 이후 각박해진 인간사회를 개인적·공동체적 층위에서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자립은 핵가족과 개인주의가 확산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가훈은 가변성과 확장성을 기본 전제로 삼으며 시대적 상황이나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인간은 개인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데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이 둘 사이에는 분열이 있기 마련이며, 개인 간에도 충돌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인간은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을 통해 상호 발전을 보장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개별적 존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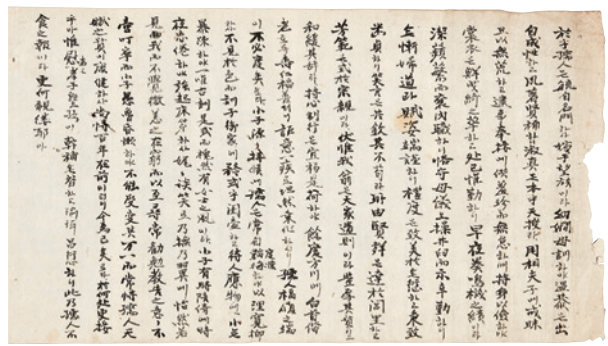

가훈이 쓰여진 종이 | 가로58 세로30 | 대한제국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면성실한 생활, 예의범절 준수, 배움과 건강 등의 가훈이 묵서된 종이.

초려이유태유고 | 조선 | 대전시립박물관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 이유태가 아들과 조카에게 써준 유고.

인간이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는 바로 가정이다. 인간은 가정에서 가훈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경험하고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통해 본연의 인간성을 함양하고 공동체를 통한 더 높은 가치로의 발전을 지향한 것이 가훈이다.

참고문헌 명가의 가훈(김종권, 가정문고사, 1977), 한국인의 가훈(손인수·이원호, 문음사, 198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오세길(吳世吉)

건강가정기본법
健康家庭基本法

정의 국민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정문제 해결을 위해 2004년에 제정된 가족정책 기본법.

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총 5장 37조로 구성된 법률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건강가정정책, 제3장 건강가정사업,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2월 9일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법률 구성은 동일하다. 제1조에서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공적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 가족 관련 문제는 아동·노인·여성 등 대상별로 분리되어 있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었다. 예를 들어 아동문제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로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보육원과 같은 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자녀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부양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달리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해결함으로써 가족해체의 위험을 낮추는 예방적 접근을 강조하였다(제9조). 〈건강가정기본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제15조),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다(제20조). 그리고 가족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제34조의 2)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하였다(제35조).

〈건강가정기본법〉을 토대로 가족 사업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2014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를 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고, 2021년부터 '가족센터'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2023년 현재 전국에 211개소의 가족센터에서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돌봄,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영역에서 다양한 가족교육, 가족상담,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건강가정기본법〉은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와 가정학계의 협력으로 제정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저출산 문제, 이혼율 증가 문제 등에 대응하

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적 정책이 아닌 예방적·보편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담당하였는데 〈정부조직법〉개정(2005. 3. 24. 개정)으로 여성부로 〈건강가정기본법〉을 이관하게 되었다. 개정 전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정부조직법〉제42조)'였는데,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사무에 더해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즉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시작되었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하게 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범위와 성격을 규정하는 유일한 기본법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가족의 제도적 측면을 다루다 보니 여러 논쟁의 중심에 놓이기도 하였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가족의 전형성을 전제로 한다는 비판,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제3조 1항)함으로써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 등이 그것이다.

2021년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이런 비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 용어와 가족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비혼 동거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며, 부성父姓주의 원칙에 따라 부여되던 자녀의 성姓을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가족해체를 가속화하고 가족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는 비판이 종교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들어 〈건강가정기본법〉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제정 이후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정의와 용어 해석을 둘러싸고 정치적 이념이 충돌하는 장이 되었고, 정책 방향성도 자주 변화하였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건강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3항).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가족원 개개인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의 생활, 돌봄, 관계, 공동체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출산율과 혼인율 감소 등과 같은 인구 변화와 함께 가족 변화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족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건강가정기본법 백서(대한가정학회 가정학실천위원회, 대한가정학회, 201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판적 검토와 가족정책의 과제(진미정, 가족정책연구1-2, 한국가족정책학회, 2021),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진미정(陳美靜)

건전가정의례준칙
健全家庭儀禮準則

정의 1999년 8월 31일,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가정의례에 대한 준칙.

내용 이 법령은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1973년부터 개정·시행해 오던 〈가정의례준칙〉의 벌칙조항이 실생활에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1999년에 기존 〈가정의례준칙〉 삭제하고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령이다. 이후 2008년에 한 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이 법은 가정의례에 있어서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조장함으로써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정 목적을 적시하고 있다.

이 법령이 기존의 〈가정의례준칙〉과 달라진 내용은 '성년례成年禮'를 새로운 항목으로 '회갑연回甲宴' 항목을 '수연례壽宴禮'로 바꾸어 회갑연과 고희연古稀宴 등으로 그 범주를 넓힌 점이다. 그리고 양력설에 지내던 '연시제年始祭'를 없애고 설날과 추석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 속에 포함하였으며, '사망한 날 해진 뒤'라고 명시

했던 제사를 지내는 시각에 대한 규정도 없앴다. 이는 음력설을 명절로 인정하고, 통행금지가 해제된 사회상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필자 도민재(都民宰)

결손가정
缺損家庭

정의 결혼한 부부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는 단위로서의 핵가족적 틀과 기능에서 벗어나는 제반 생활공동체.

내용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함께 기르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고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문화를 이어 왔다. 아마도 성장기에 보호자 역할을 하는 부모가 하나인 것보다 둘일 때 훨씬 안정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종족 보존을 위해 유리하다는 이유에서 생겨난 문화일 것이다. 그래서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 그들이 낳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핵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간주하는 문화가 이어져 왔다. 그런데 여기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밀하게 협력하면서 부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전술한 바대로 구성되거나 역할 기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자녀가 어느 한 편의 부모와 살아가는 한부모가족, 양편 부모가 모두 부재하는 소년·소녀가장가족, 부모 대신 조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조손가족, 재혼을 통해 친부모자녀와 계부모자녀 관계 및 계형제자매 관계로 얽힌 혼합가족 등이 병존하는 게 현실이다. 또한 양친과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라도 모든 부와 모가 양육 및 부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부 혹은 모가 심한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폭력 성향이 강한 경우 그 또는 그녀는 정서·도구·경제적인 면에서 자녀의 성장을 돕는 보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위협적이거나 부담이 되는 존재이다. 이처럼 핵가족 구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대되는 기능을 충분히 행하지 못하는 가족을 '이지러지고[缺] 불완전하다[損]'는 의미에서 결손가족缺損家族이라 하고 이들의 생활공동체를 결손가정缺損家庭이라고 부른다.

결손가정은 구조적 결손가정과 기능적 결손가정 두 개념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결손가정'이란 미성년 자녀와 생물학적 양친으로 이루어진 가족 구조에서 벗어나는 제반 생활공동체를 의미한다. 즉 이혼, 별거, 사망 등으로 인해 어느 한 편 혹은 양편의 생물학적 부모가 장기적으로 부재하는 가정이 구조적 결손가정이다. 따라서 전실前室 자녀와 계부모 관계로 구성된 재혼가정 역시 결손가정 범주에 포함된다.

물론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등의 경우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부부 및 그들의 생물학적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과 비교된다면 기능 면에서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한부모가 양육 역할과 경제적 부양 양립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결과 자녀에게 필요한 만큼의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할 가능성 역시 높다. 또한 조손가족의 경우 노령의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에 필요한 체력과 활동성이 부족할 수 있고, 노동연령층이 아니므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비율도 높다. 재혼가족의 구조적 복합성이 초래하는 관계상의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결손에도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과 지역사회 지원에 힘입어 가족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도 있다.

반면에 '기능적 결손가정'은 구조적 결손 여부와 상관없이 부 혹은 모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정을 의미한다. 결혼한 부부와 그들의 생물학적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라 해서 가족적 삶에 필요한 정서·도구·경제적 상호지원과 자녀에 대한 양육 기능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양친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도 부부 불화 및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경제적 부양이 충분치 않은 경우도 많으며, 정서적 상호지원 결여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 밖 사회가 해야 하는 역할 중 첫째는 구조적 결손가정이든 기능적 결손가정이든 이들 가족에 결핍된 부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하는 것이다. 개인이 가족 안에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개인을 둘러싼 가족적 특성이 집안에 감춰질 수 없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가족 안에서 충족될 수 없는 욕구를 가족 밖의 사회로부터 지원받아 대체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별 가족의 구조적 혹은 기능적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가족 안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욕구와 어려움을 가족 밖 사회가 치유하고 보충하는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경제적 지원이나 학습 지원일 수도 있고 상담체계의 활성화일 수도 있으며 법과 제도의 보완일 수도 있다.

둘째는 '정상가족'과 '결손가족'으로 구분하는 틀을 해체하여 가족을 이루는 연결고리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을 제거하여 모두를 품으려는 범사회적 노력이다. 어느 가족도 완벽하지 않고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가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교육과 매스컴을 통해 끊임없이 공론화함으로써 '낙인 지우기'와 차별적 시스템 제거를 위해 진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구조적 결손이나 기능적 결손 자체로 인한 문제 못지않게 '결손가족' 또는 '비정상가족'이라는 주변의 부정적 낙인烙印이 해당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초래하는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다양성으로 대표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선택하고 가족으로 엮이는 모습은 다양해졌고, 가족은 해체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는 의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친과 그들의 생물학적 자녀로 이루어진 구조에 부합하는 공동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구조적 완결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다양하게 구성된 공동체들을 품어서 인정하되 그 다양성만큼이나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사회가 준비해야 할 때이다. '완벽한 가족'이란 이상일 뿐 실재한다고 볼 수 없고, 모든 가족은 각각 나름의 아픔과 어려움을 지니고 살아가며 또한 그 자체로서 존중과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손가족'이라는 명칭은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 어감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가정의 구조적 결손과 기능적 결손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손광민·남상인·정성경, 인문과학논총27,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가족 안의 사회 사회 안의 가족(이여봉, 양서원, 2017).

필자 이여봉(李麗峰)

겹사돈

정의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다시 사돈 관계를 맺은 사이.

개관 겹사돈은 중복된 사돈 관계를 말한다. 사돈 관계에 있는 두 집안 사람이 다시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이 겹사돈이다. 혼인으로 맺어진 두 집안은 결속력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겹사돈은 '결속력 강화'라는 의미를 가진다.

내용 사돈 관계는 혼인을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집단 관계로 인식할 때 나타나는 개념이다. 즉 두 집안이 혼인으로 연결되면 두 집안 사람들은 서로 사돈 관계가 된다. 사돈 관계에 있던 집안 사이에 다시 혼인이 발생하면 두 집안은 겹사돈 관계가 된다.

겹사돈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 집안의 여성들이 다른 집안으로 반복해서 출가하는 유형으로, 혼인의 일반교환에 해당한다. 결혼한 여성이 자기 친정의 여성을 시가의 남자에게 소개하여 결혼하게 하는 경우이다. 시가에서 며느리에 대한 평가가 좋을 경우 이런 결혼은 성사되기 쉬웠다.

다른 하나는 두 집안이 서로 여자를 주고받는 '누이 교환' 방식으로, 혼인의 한정교환에 해당한다. 김유신의 누이가 김춘추와 결혼하고 김춘추의 딸이 김유신과 결혼함으로써 경주김씨慶州金氏와 김해김씨金海金氏는 겹사돈 관계가 된 것이 이런 유형의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주이씨全州李氏인 이성계와 신천강씨信川康氏인 강우는 서로 사촌 누이를 배우자로 주고받음으로써 조선 초기 전주이씨와 신천강씨는 겹사돈 관계를 맺었다.

결혼은 두 집안 사이의 결속과 유대를 강화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겹사돈 관계는 두 집안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 하나의 사돈 관계는 결혼한 당사자가 이혼 등을 통해 헤어지면 사돈 관계가 단절되지만 겹사돈 관계는 여러 개의 혼인 연줄을 통해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겹사돈 관계는 세대를 두고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사돈 관계에 있는 두 집안의 결속력은 세대가 지나면 약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돈 관계를 만들어 그 결속력을 현재화할 수 있다.

고려 중기 이자겸李資謙은 예종睿宗에게 딸을 왕비로 들여보내 예종의 장인이 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예종이 죽고 아들인 인종仁宗이 즉위한 뒤 이자겸은 두 딸을 다시 외손자인 인종과 결혼시켰다. 인종은 이모들과 결혼하였지만 이자겸은 다시 왕의 장인이라는 지위를 가질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권력을 전횡專橫하였다. 이자겸과 고려 왕실의 결혼은 일종의 겹사돈 관계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자겸은 장인 지위를 두 세대에 걸쳐 가질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혼반婚班에서도 겹사돈 관계가 나타난다. 혼반은 유력한 집안들 사이에 잦은 혼인 관계로 맺어진 사회적 연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는 진성이씨眞城李氏와 의성김씨義城金氏, 풍산류씨豊山柳氏, 안동김씨安東金氏 등이 잦은 혼인 관계로 혼반을 형성하였다. 양반 집안은 자신들과 격이 맞는 혼인 대상 집안을 찾았기 때문에 혼인 대상 가문이 제한되었고, 이는 중첩된 혼인으로 겹사돈 관계를 맺는 원인이 되었다.

제주도에는 겹사돈과 함께 '부찌사돈' 개념이 있다. 부찌사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겹사돈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다른 하나는 사돈의 사돈이라는 의미이다. 어느 것이든 두 집단 사이의 중복된 혼인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두 집단 사이의 결속력 강화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특징 및 의의 겹사돈은 '연줄혼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연줄혼인은 며느리가 친정 쪽 사람을 시집 쪽 사람에게 소개하여 혼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중매에 의한 혼인이 많았고, 두 집안을 다 잘 알고 있는 며느리나 사위가 중매를 서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도의 '부찌사돈'은 제주도에서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는 마을 내혼內婚이 많아서 나타난 현상이다. 친족조직 발달이 미비한 제주도는 혈연 또는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들을 '궨당'이라고 하며, 마을 내에서 복잡한 궨당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마을 내혼은 궨당 사이의 혼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부찌사돈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

참고문헌 영남지방의 혼반연구(조강희, 민족문화논총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4), 제주도 가족과 궨당(김혜숙, 제주대학교출판부, 1999),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필자 김창민(金昌民)

계녀서
戒女書

정의 조선시대 문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 안동권씨安東權氏 가문에 출가하는 맏딸을 위해 부녀자로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한글로 적어 전해 준 교훈서.

내용 『계녀서戒女書』는 우암 송시열이 한산이씨韓山李氏와의 사이에서 낳은 맏딸을 권유權惟에게 시집보내면서 반가의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각종 규범을 정리하여 전해준 책으로서, 한글로 기록된 자료이다. 현재까지 송시열이 작성한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고, 몇 군데

계녀서 | 가로22 세로33 |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처에서 등사한 자료가 발굴되어 해당 자료 몇 종이 각각 영인 발간되었다. 이렇게 발굴된 자료들은 전래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글의 전체 체제는 크게 글의 첫머리에 나오는 '전언前言 부분', 부모 섬기는 도리로부터 옛사람들의 선행 등을 다룬 20개 항목의 '본문 부분', 마지막으로 당부를 남긴 '발문跋文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본문에 수록된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부모 섬기는 도리라' '지아비 섬기는 도리라' '시부모 섬기는 도리라' '형제 화목하는 도리라' '친척을 화목하는 도리라' '자식 가르치는 도리라' '제사 받드는 도리라' '손 대접하는 도리라' '투기하지 말라는 도리라' '말씀을 조심하는 도리라' '재물 존절이 쓰는 도리라' '일 부지런히 하는 도리라' '병환 모시는 도리라' '의복·음식하는 도리라' '노비 부리는 도리라' '꾸이며 받는 도리라' '팔고 사는 도리라' '비수원하는 도리라' '중요로운 경계라' '옛사람 착한 행실이라'로 시작하는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듯이 송시열은 당시 남성들이 어려서부터 『소학小學』의 덕목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듯이 출가하는 딸이 이 책을 늘 옆에 두면서 부녀자로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경계로 삼기를 원했다. 이렇듯 『계녀서』는 당시 『소학』으로 대변되는 유교적 윤리 및 처세관에 맞추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 전경목(全炅穆)

계모담
繼母談

정의 계모와 전처 자식 간 대립을 주된 갈등으로 하며, 계모의 흉계로 전처 자식이 어려움을 겪다가 자신의 노력 혹은 원조자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일련의 이야기.

개관 가정은 인생의 근본이 되는 시공간을 형성하는 만큼 가정문제는 보편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은 대중성을 획득하기 쉽다. 계모繼母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 사회에서 어디에나 존재한다. 노동과 출산에 시달린 전통시대에 한 여성의 죽음으로 다른 여성이 계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부자연스럽게 모성을 전가한 계모의 위상은 가족 내에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다. 계모에게는 전처가 확보하고 있던 가족 내의 애정과 지위를 자신에게로 귀속시켜야 하는 압박감이 상존常存해 있었다.

그렇기에 계모와 전처 자식들 간의 갈등 가능성은 가정 내에 잠재해 있었고, 그 현실감 측면에서 남다른 이야기의 소재가 되어 왔다. 국문학계에서는 계모형繼母型 가정소설家庭小說이라는 별도의 유형이 논의될 정도로 조선 후기 한글소설의 주요 소재는 '계모담繼母談'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설화, 무가巫歌, 신소설新小說 등에 이르기까지 계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전승되었음을 감안하면 계모와 전처 자식을 둘러싼 갈등은 이야기 문화에서 주로 거론된 모티프이자 하나의 사회현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 우리나라 역사에서 계모와 전처 자식 간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고려와 조선 전기 문헌자료를 검토하면 계모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은 적어도 16세기 무렵까지는 '어머니'라기보다 '아버지의 아내'에 가까웠다. 가장 큰 이유는 '동거' 유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동거하지 않는 계모는 그녀를 둘러싼 가족 내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전처소생의 자식들이 계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대표적인 계모담인 장화와 홍련의 비극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계모담 또는 계모형 고소설은 주로 한 가정을 무대로 하기에 가문소설家門小說과 다르고, 처첩 간 갈등이 주된 소재인 쟁총형爭寵型 소설과도 다르다. 부정적으로 계모를 형상화하거나 전처 자식을 모함하고 살해하려는 수법은 작품마다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계모와 전처 자식 간 갈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계모를 외부에서 이입된 이질적인 존재로 간주한 서사는 부계혈통을 강조하고 남성 중심의 질서가 공고해진 조선 후기의 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계모담과 관련된 계모에 대한 이미지는

장화홍련전 | 가로19 세로28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조선 후기 이후 정착된 한국의 혼인관행 및 거주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모가 '어머니'가 된 것은 성리학적 윤리관과 거주관행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조선 전기의 처가거주 관행이 점차 소멸되고 여성의 소속이 남성 기준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전실前室의 자녀가 계모와 동거하게 되면서 자식 입장에서 계모를 '어머니'로 여겨야 하는 당위가 제기되었다. 계모를 미워하는 감정과 어머니로 여겨야 하는 당위가 서로 충돌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계모관'이 성립된 것이다.

조선 후기 계모형 가정소설의 대표작인 〈장화홍련전薔花紅蓮傳〉은 이러한 계모관의 형성 과정이 잘 표현된 대표적인 계모담이다. 장화와 홍련의 비극은 오래된 가족관과 성리학에 근거를 둔 새로운 가족 형태가 일상에서 충돌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전처의 딸이 계모의 박해를 받는 설정은 몇몇 초기 유형의 계모형 소설에만 보일 뿐 대부분의 후기 유형에서는 주인공이 전처의 아들로 바뀌어 나타난다. 가정 내에서 딸의 권리가 점차 약화되면서 계모의 증오 대상이 딸에서 적장자로 바뀌어 이야기에 구현되는 것이다. 아울러 성리학에 근거한 가족 질서가 굳어지는 후기 계모형 소설에서는 전처의 아들이 계모에게 살해되는 설정이나 전처의 아들이 계모의 죽음을 바라는 설정이 약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계모와 전처 자녀가 서로를 '자식'과 '어머니'로 여겨야 하는 당위를 긍정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계모형 고소설에는 〈장화홍련전〉 〈김인향전金仁香傳〉 〈어룡전魚龍傳〉 〈황월선전黃月仙傳〉 〈정을선전鄭乙善傳〉 〈콩쥐팥쥐전〉 등이 있다. 이들 중 〈어룡전〉의 경우 영웅소설과의 관련성을 언급할 수 있으며, 〈정을선전〉은 쟁총형 가정소설과의 교섭 양상을 거론할 수 있다. 계모담은 계모와 전처소생 간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확대되어 재생산되는 모습도 보인다. 계모형 고소설은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유형화된 공통의 서사를 나타낸다. '주인공(전처 자식)이 어릴 때 생모가 죽는다 → 아버지가 재혼한다(계모가 집에 들어온다) → 계모가 주인공을 학대하고 모함하여 궁지로 몰아넣는다 → 주인공이 살해된다(집에서 쫓겨난다) → 계모의 모함이 폭로되고, 주인공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 계모가 처벌받는다 → 주인공이 집으로 복귀해 정상적인 가정이 회복된다' 이런 서사구조는 작품에 따라 일부 가감加減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계모담은 이 서사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한편 계모 모티프를 근간으로 소설과 설화 사이에 그 서사 전개상 친연성親緣性을 보이는 일군의 작품들이 있다. 일단 '콩쥐'와 '팥쥐', '장화'와 '홍련'은 소설 작품과 설화 전승에 모두 등장하는 이름들이다. 소설 〈연당전蓮堂傳〉과 설화 〈손 없는 색시〉, 소설 〈황월선전〉과 설화 〈황화일엽黃花一葉〉, 소설 〈조생원전趙生員傳〉과 설화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등도 그 친연성의 예로 거론할 수 있다. 계모담은 20세기 초 서사 장르인 신소설에서도 등장한다. 이해조李海朝의 〈홍도화紅桃花〉 〈구의산九疑山〉 〈봉선화鳳仙花〉 등과 이인직李人稙·김교제金敎濟 공저인 〈치악산雉岳山〉, 김교제의 〈모란화牡丹花〉, 김용준金容俊의 〈금국화金菊花〉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신소설은 이전 고소설의 계모담 서사를 차용하였으나 당대 현실의 문제와 신소설 특유의 경직된 계몽관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징 및 의의 계모형 이야기의 높은 전승력은 전실 자식과 계모 간 갈등이 현실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야기 내 어린 주인공의 성장 과정에서 일종의 통과제의 절차인 시련과 고난의 소재로 계모담은 자주 등장하였다. 계모담은 〈사명당전泗溟堂傳〉과 같은 역사적 인물담과 결합하

여 다른 서사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동시에 이야기뿐만 아니라 민요로도 전승되었다. 민요에서는 주로 악인형 계모가 전실 자식의 혼인을 방해하고 전실 자식이 노래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모담의 등장인물들이 택한 지극히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들은 인간과 인간 사회의 미성숙함을 나무라고, 어른다운 어른으로의 성숙을 촉구하는 일종의 문학적 수사修辭라 할 수도 있다. 계모에 의한 전처 자식의 살해나 계모에 대한 자식의 복수 등은 올바른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처절한 비극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계모담은 가족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됨으로써 서로를 죽고 죽이는 가족 붕괴가 일어남을 경고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계모설화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한유진, 이화어문논집30, 이화어문학회, 2012), 계모형 고소설 연구(이윤경,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김재용, 집문당, 1996), 계모형 설화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특질(하경숙, 온지논총47, 온지학회, 2016), 고소설과 신소설의 관련성 연구(오윤선, 한국학연구2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형 설화 연구(이윤경, 구비문학연구16, 한국구비문학회, 2003), 전통적 계모관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이종서, 역사와 현실51, 한국역사연구회, 2004).

필자 김경섭(金鏡燮)

계자
繼子

정의 아들이 없는 집에서 집안을 잇기 위하여 입양한 양자.

역사 조선 초기에는 아직 가계 계승 의식이 강하지 않아서 입후立後, 즉 양자된 계자繼子가 많지 않았다. 조선 초기 실록에는 '무자無子'라는 기록이 꽤 보이는데 아들이 없어서 여동생의 아들이 제사를 대신하였다든가 '무자'라고만 밝히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초기까지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하고 그 아들이 집안을 잇고 제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식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른바 외손봉사도 많았다. 성삼문成三問의 제사가 오랫동안 외손인 무안박씨務安朴氏에 의해 지내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 종법宗法에 의해 부계적 가계 계승 의식이 확대되면서 아들이 없는 경우 입후, 즉 양자를 들이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입후 조항이 올라가고 계자들이 많아졌다. 조선 후기가 되면 양반 집안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1618년 광해군 때부터 1862년 철종 때까지 양자허가등록서를 모아 놓은 『계후등록繼後謄錄』이 출현할 정도였다.

내용 아들이 없어 아들을 입양한 경우 그 아들을 계자繼子 혹은 계후자繼後子라고 부른다. 전모前母에 대해 계모繼母 아들을 계자라고도 하나 사용 예가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계자는 양자를 가서 양부의 아들이 된 사람을 일컫는다. 이들 계자는 적자嫡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며, 서자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신분적 우위를 누린다.

16세기 경상북도 경주 양동마을에서는 이언적李彦迪의 부인 함양박씨咸陽朴氏가 이응인李應仁을 양자하여 서자庶子 이전인李全仁을 배제하고 계자로 가계家系를 계승하였다. 비교적 이른 시기로, 조선에서 계자가 서자에 앞서 집안을 잇는 관습이 자리 잡기 시작한 대표적인 예이다. 조선에서 아들이 없는 여자가 입후를 통해 자신의 아들을 확보하고, 그 계자로 하여금 집안을 잇게 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조선에서 아들이 없어도 적처嫡妻들이 출처出妻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경국대전』「예전禮典」 입후조에는 "적처와 첩 모두 아들이 없는 자는 관에 신고하여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세워 뒤를 잇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수 조항에 "양가의 아버지가 같이 명하여 입후한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어머니가 관에 신고한다. 존속과 형제, 손자 항렬에서는 서로 입후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우선 첩의 자식이 있으면 양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서자가 있더라도 양자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양반 집안으로서 과거를 볼 수 없는 서자로 가계를 계승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관직자가 나올 수 없는 양반 집안의 위상이 급격히 낮아진다. 따라서 계자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었다.

양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존속이나 형제, 손자 항렬行列에서 양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른바 소목昭穆 질서, 즉 종법 내에서의 순서인 항렬을 지켜야 하였다. 그리고 '동종의 지자'로 한다는 것은 양자 보내는 쪽 맏아들은 그 집안의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둘째 이하의 아들에서 양자를 선정한다는 뜻이다. 본래 양자로 가면 본족과는 친척 관계로 멀어지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본족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병자일기丙子日記』에서 남평조씨南平曺氏의 남편 남이웅南以雄은 양자를 갔지만 본족의 형제들과 더 가깝게 지냈다. 조씨 자신도 본족의 동서들과 더 자주 왕래하였다.

조선에서 입후는 반드시 모두 관에 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기록들을 보면 입후 과정이 늘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양가가 합의하였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계자에게 문제가 생겨 파양罷養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낙천군洛川君 이온李縕이 연령군延齡君 이훤李昍의 양자로 한때 인정받았다가 다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가를 반복한 과정은 유명한 입후 논쟁의 하나이다.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입후가 되고 '계자'의 신분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관계는 『계후등록』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조선 왕위계승에서 대표적인 입후 사례는 순원왕후가 철종을, 신정왕후 조대비가 고종을 양자로 삼은 것이다. 순원왕후는 소목을 건너뛰어 입후하였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였다. 손자 헌종에게 갔던 왕위를 아들뻘의 철종에게 주어 소목 불일치를 가져왔다. 신정왕후도 자신의 아들로 고종을 입후하였다. 철인왕후가 살아 있었지만 그 앞으로 양자하지 않고 자신에게 양자를 해서 헌종에 이어 다시 한번 왕의 어머니, 즉 대비가 되었다. 철종과 고종은 순원왕후와 신정왕후의 계자가 된 것이다. 그 후 철종과 고종은 자신을 입후한 순원왕후와 신정왕후에게 여러 차례 존호尊號를 올리는 등 효를 다하였다. 자신을 계자로 선택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조선 후기에 입후에서 입후권자와 계자 관계, 그리고 그 의미 등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특징 및 의의 조선에서는 총부冢婦의 권한이 강하였다. 총부란 맏며느리 또는 남편이 죽고 없는 맏며느리를 말하는데 이들에게 입후의 권한이 있었다. 이들 총부는 입후에서 계자를 얻을 때 가능하면 먼 친척에서 데려오려고 하였다. 10촌 이상인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영향력을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가령 바로 아래 시동생에게서 계자를 데려오면 그 시동생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꺼렸던 것이다. 순원왕후가 입후할 때 흥선대원군 쪽보다는 한미寒微하지만 철종을 택한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繼後謄錄, 禮記, 계후등록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입후의 특징(한상우, 고문서연구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별계후등록을 통해 본 17~18세기 여성의 입후 청원과 가계계승 분쟁(김보람, 여성과 역사38, 한국여성사학회, 2023), 조선후기 입후 방식과 계후자의 항렬에 관한 연구(고민정, 태동고전연구3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5).

필자 이순구(李舜九)

계후등록
繼後謄錄

정의 조선시대 때 예조가 국왕의 허가를 받은 입후 사례와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여 연도별로 기록한 책.

내용 조선시대의 입후立後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입후조立後條에 의해 운용되었다. 양가養家에서 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 입후를 요청하면 예조禮曹에서는 관련 사실을 검토하여 입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계후입안繼後立案을 발급하였다. 그리고 예조에서는 국가에서 허가한 입후 사실을 정리한 『계후등록繼後謄錄』을 편찬함으로써 향후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계후등록 | 가로26 세로37 | 조선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별계후등록 | 가로27 세로41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였다.

『계후등록』은 예조가 국왕에 올린 계목啓目의 내용을 축약하여 기록하였다. 즉 계후입안에는 양부모가 입후를 청원하며 올린 소지所志, 양쪽 가문에서 입후를 원한다는 조목條目, 양쪽 가문에서 내세운 증인이 올린 조목, 이에 대한 예조의 견해와 임금의 재결까지 모두 기록되었다. 그러나 『계후등록』은 입안을 요청한 사람의 직역과 성명, 생부의 직역과 성명, 입후 대상자, 증인의 인적 정보를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 입안 담당자와 임금의 재결 내용을 기록하여 핵심 정보만 전달하였다. 또한 난외欄外에는 양부의 성명과 주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색인이 가능하게 하였다.

『계후등록』은 조선 초기부터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7~19세기에 편찬된 것이다. 이는 수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계후등록』과 『별계후등록別繼後謄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후등록』에는 대부분 『경국대전』 입후조에 근거하여 입후가 허가된 사례가 수록되었으나 드물게는 특별한 입후 사례가 수록되기도 하였으며, 파계罷繼에 관한 정보도 확인된다. 『별계후등록』에는 『경국대전』 입후조에서 규정한 내용과 차이가 있지만 국왕의 허가를 받아 특별히 허가된 입후 사례가 수록되었고, 또 입후와 관련하여 조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함께 수록되었다.

『별계후등록』에 기록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가 부모 또는 양가 부모가 모두 사망함으로써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입후하는 사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둘째, 친부모의 가계家系를 이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처음부터 입후 대상에서 제외된 타인의 첫째 아들 또는 외아들을 입후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셋째, 가계 승계를 둘러싸고 가문 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된 사례의 판결 내용이 수록되었다. 넷째,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파계를 청원하는 사례에 관한 처리 내용이 수록되었다. 다섯째, 이성수양자異姓收養子가 양부의 성씨를 모칭冒稱한 사례의 처리 내용이 수록되었다. 여섯째, 계후자가 조부 이상의 선대 봉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 논의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일곱째, 입후를 국가에 신고하는 절차적 문제에 관한 논의가 수록되었다. 여덟째, 국가가 공신功臣과 유현儒賢의 봉사손奉祀孫을 지정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계후등록』의 주요 소장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계후등록』 20책과 『별계후등록』 9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장서각은 『계후등록』 1책과 『별계후등록』 1책을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들은 소장처만 서로 다를 뿐 실제로는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특징 및 의의 『계후등록』은 예조에서 입후 관련 사실을 정리하여 향후 이와 관련한 행정을 수행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입후를 허가받은 사례가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고, 입후 및 파계나 가계 계승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그에 관한 논의가 그 어떤 자료보다도 풍부하게 수록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입후의 추이와 변화, 입후 제도의 운용 양상 등을 연구하는 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계후등록의 기술방식과 법외계후에 대한 재검토(고민정, 사학연구 113, 한국사학회, 2014), 조선후기 가계계승 연구(고민정,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조선후기 입후 절차에 관한 연구(고민정, 사학연구117, 한국사학회, 2015),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필자 고민정(高旻廷)

계후입안
繼後立案

정의 조선시대 때 예조에서 발급한 입후를 증명하는 문서.

내용 입안立案은 어떤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통칭한다. 고려 말기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급받기 시작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국가가 증명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효력이 강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 가운데 계후입안繼後立案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입후조立後條에 근거하여 입후 사실을 증명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발급되었다. 즉 아들이 없는 사람이 후사를 잇기 위해 동종同宗의 조카를 입후하고 이 사실을 예조禮曹에 알린다. 그 후 예조에서 해당 내용이 법전에서 규정한 입후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그 대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어 최종적으로 국왕의 허가를 받은 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계후입안을 발급하여 주었다.

계후입안의 발급은 예조의 계제사稽制司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조를 통해서만 입후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원거리에 거주한 지방 사족이 직접 예조에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커서 17세기 이후에는 지방관아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 사족이 해당 관아에 입후 신청을 하면 관아에서 예조로 신청서와 함께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예조가 이를 검토하고 계후입안을 발급하여 관아로 다시 보내면 관아에서 신청자에게 계후입안을 내려주었다.

계후입안의 문서 양식은 일반적인 입안 양식을 규정한 『경국대전』 「용문자식用文字式」을 준용하였으며,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시면始面(발급연월일+예조입안禮曹立案)+기두어起頭語(우입안위계후사右立案爲繼後事)+본문+결어結語(합행입안자合行立案者)+당상·당하관의 서압署押.

이 중에서 본문에는 예조가 국왕에게 올린 계목啓目의 내용이 기록되었다. 계목 내용은 ①입후를 요청하는 양가 부모의 소지所志 ②입후에 동의한다는 생가 부모의 소지 ③양측의 친족이 입후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조목條目 ④예조가 해당 사례를 검토하여 낸 의견까지 입후 신청부터 발급에 필요한 핵심 사항이 정리되어, 이를 통해 입안의 구체적 발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계후입안의 종류는 크게 '일반 계후입안'과 '특별 계후입안'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계후입안은 법전에서 정한 입후 요건에 맞춰 발급된 것으로, 대다수가 이에 속한다. 특별 계후입안은 비록 법전에서 정한 입후 요건에는 맞지 않더라도 국왕의 특별한 허가로 발급된 것으로,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 특별 계후입안은 내용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입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생가生家와 양가養家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양측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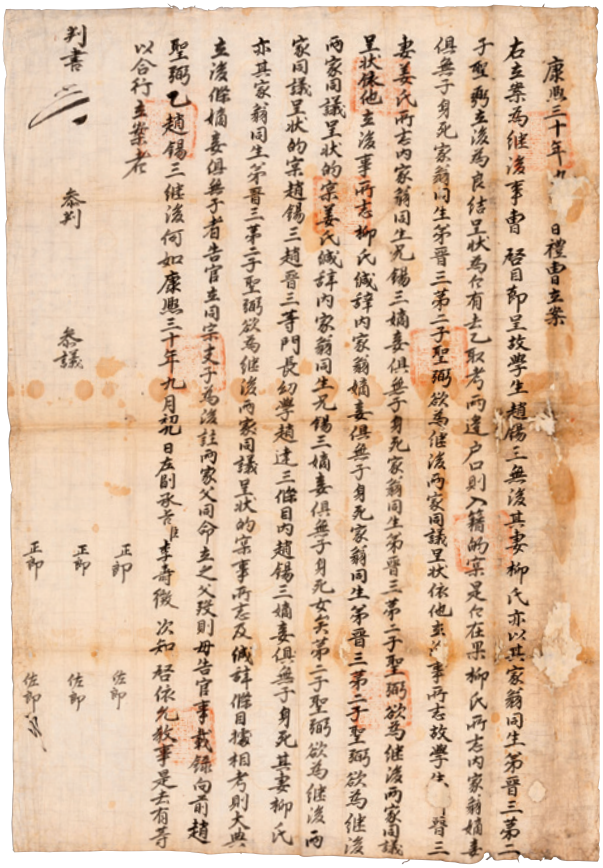

입안 | 가로78 세로11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1691년 9월 9일 조진삼의 둘째 아들 조성필을 조석삼의 양자로 삼는 문서.

으나 특별히 입후가 허가된 경우이다. 둘째는 입후 대상과 관련하여 입후 대상에서 제외된 타인의 첫째 아들을 입후한 것으로, 이 역시 특별히 허가된 경우이다. 셋째는 기타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복권된 충신忠臣에 대한 봉사奉祀와 왕실의 입후나 이종移宗 등을 사유로 특별히 허가된 경우이다.

특징 및 의의 계후입안은 입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므로 그 속의 내용을 통해 조선시대 입후의 구체적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부계父系 중심의 친족 체계를 견고하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이므로, 당시 사람들의 친족 관념이 변화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계후입안은 조선시대 입후제의 운영 과정과 친족제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5세기 입후법의 운용과 계후입안(박경, 역사와 현실59, 한국역사연구회, 2006), 17세기 입후의 요건과 첩자계승(고민정, 정신문화연구39-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계후입안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입후 양상에 관한 연구(고민정, 태동고전연구38,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7), 조선후기 가계계승 연구(고민정,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한국법제사고(박병호, 민속원, 2021).

필자 고민정(高旻廷)

고모
姑母

정의 아버지의 여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친족용어.

내용 아버지의 동기간同氣間 중 여자 형제, 즉 아버지의 누이를 통칭하는 친족용어이다. 이에 대응하여 아버지의 남자 형제는 삼촌三寸이라고 칭한다. 고모姑母는 삼촌과 함께 계촌법計寸法에 따라 나와의 촌수가 3촌三寸인 매우 가까운 부계친족이다. 고모에게 나는 조카[姪]가 된다. 한편 어머니의 여자 형제, 즉 어머니의 자매姉妹에게는 이모姨母라는 구별된 친족용어가 사용된다.

『고려사高麗史』의 상피조相避條에는 아버지의 손위 누이[姉]를 백모伯母, 손아래 누이[妹]를 숙모叔母라 기록하고 있다. 아버지와의 연령 관계에 따라 친삼촌을 백부伯父와 숙부叔父로 구분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고모도 친족 지칭을 구분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연령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고모'로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백모와 숙모는 각각 백부와 숙부의 배우자를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고모의 남편은 고모부姑母夫라고 칭하며 고숙姑叔이라고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작숙作叔이라고도 한다. 고모의 아들딸은 나와의 촌수가 4촌四寸인 형제자매이며, 고종사촌姑從四寸 또는 내종사촌內從四寸이라고 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친족제도가 부계계승父系繼承 원리를 따르고 있기에 고모의 자녀는 고모부의 부계친족집단에 귀속된다.

고모는 나의 어머니에게는 '시누이'가 되고, 그 역은 올케가 된다. 올케는 손위 시누이와 손아래 시누이를 각각 '형님'과 '아가씨'로 구분하여 부른다. 그런데 근래에는 올케가 자식이 생긴 이후 특히 손아래 시누이가 시집가면 아가씨에서 고모로 직접 호칭을 바꿔 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매개로 한 친족호칭어의 사용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고모는 삼촌과 함께 이러한 사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친족용어이다.

부계사회인 한국에서는 부거제父居制 관습을 따라 여자는 혼인하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친가親家를 떠나 남편이 살고 있는 시가媤家로 옮겨서 살게 된다. 그래서 시집간 딸을 가리켜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고 한다. 시집간 딸은 친정 사람이 아니고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그러나 적어도 어버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출가한 딸들이 친정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며, 친정 출입도 잦은 편이다. 부모 사후에도 제사나 친정 조카의 혼인 등 집안의 대소사에 참여하면서 친정과의 친족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고모는 비록 출가한 상태이지만 나의 가까운 친족관계망 안에 머물러 있는 부계혈연집단의 성원이다.

지역사례 지역별로 사용되는 고모와 고모부에 대한 친척용어를 친척지칭과 친척호칭으로 나눠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친척지칭	친척호칭	비고
경기 양평	고모	아주머니	혼인 전에는 '아줌마'로 부름
	고모부	아저씨	
인천 강화	고모	고모/아주머이	
	고모부	고모부/아저씨	
강원 삼척	고모	고모	혼인 전의 지칭 및 호칭도 동일함
	고모부	고모부	
충북 청주(청원)	고무(고모)	고무	혼인 전의 지칭 및 호칭도 동일함
	고무부(고모부)/ 고무아저씨	고무부/ 고무아저씨	
충남 홍성	고무(고모)	고무	혼인 전의 지칭 및 호칭도 '고무'
	고무부(고모부)	고무부	
전북 고창	고모	고모	혼인 전의 지칭 및 호칭도 동일함
	고모보(고모부)	고모보	
전남 진도 조도	고무(고모)	고무	혼인 전도 동일함
	작숙	작숙	
경북 구미 선산	고모	아지매	
	고모부	새아재	
경북 영덕 영해	고모	아지매	
	고모부	새아재	
경남 함양	고모	아주머니	
	고모부	아저씨	
경남 통영 사량도	고무(고모)	고무	혼인 전에도 '고무'
	작숙	작숙	'고무부'로 변화가 일어남
부산 동래	고무(고모)	고무	아이들은 호칭 및 지칭으로 '고무엄마'라고도 부름
	고무부(고모부)	고무부	아이들은 호칭 및 지칭으로 '고무아부지'라고도 부름

출처: 한국의 언어 민속지(2009~2023)

특징 및 의의 고모는 출가해서도 친정의 부계성씨를 그대로 지닌다. 이것은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부계친족제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고모는 여전히 나와 같은 친족집단에 소속해 있음을 상징한다. 한편 기록상으로 과거에는 고모에 대한 친족 지칭이 삼촌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의 연령 관계에 따라 백모와 숙모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연령 관계를 고려하는 고모에 대한 친족용어는 사라진다. 이것은 조선 중기 이후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친족구조가 남성 중심 부계사회의 성격을 강화해 온 것과 관련된다.

참고문헌 高麗史, 한국어 호칭어 체계(박정운, 사회언어학5-2, 한국사회언어학회, 1997), 한국의 언어 민속지-강원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기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상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한국의 언어 민속지-서편(왕한석, 교문사, 2009), 한국의 언어 민속지-전라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한국의 언어 민속지-충청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호칭과 지칭 예절(류재봉,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조숙정(趙淑晶)

고부
姑婦

정의 아들의 혼인을 통해 의리로 맺어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내용 예서禮書 친영례親迎禮의 영향으로 시집살이 혼속婚俗이 정착하면서 혼인한 여성은 남편의 아내이자 시부모의 며느리로서 시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때 며느리가 시집에서 만나게 되는 시부모, 시동생, 시누이, 시숙, 동서 등은 골육骨肉이 아니라 의리義理로 맺어진 가족이다. 그 가운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곧 고부姑婦는 가부장제의 부계가족으로 들어온 타성의 존재들로, 그 가족 내에서 가모家母 역할과 함께 주부권主婦權의 이양이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새 며느리는 선대 며느리이자 현 안주인인 시어머니로부터 치가사治家事 전반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일정한 때가 되면 그 치가사를 주도할 책임과 권리를 이양받는다. 이 과정에서 집안의 안채에서 전승되어 온 생활지식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생활 속에서 경험적으로 생산되고 체득된 방대한 민속지식이 고부간의 전수와 계승을 통해 해당 가문의 고유한 문화 전통으로 자리잡는 과정이다. 종가의 내림음식이나 가양주家釀酒 등 가문 특유의 음식문화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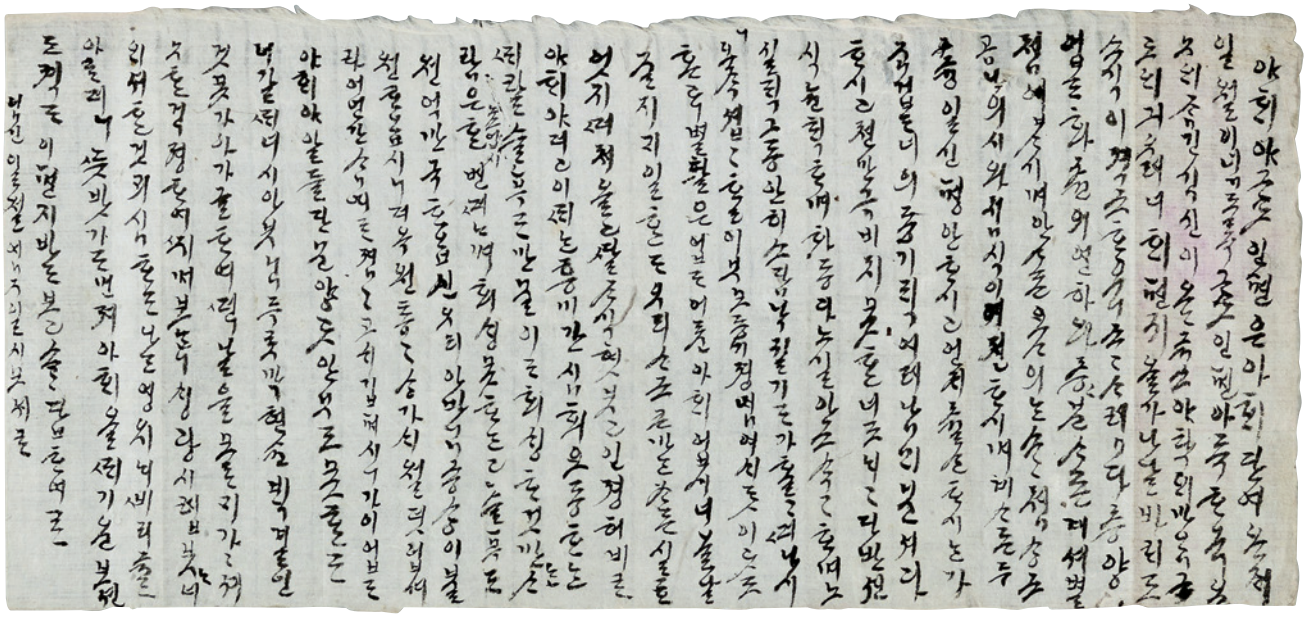

임신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낸 한글 편지 | 가로60 세로28 | 국립한글박물관

이 남아 있는 것도 가모의 책임을 다해온 고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시모가 며느리를 가르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한 경우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부모에게 불효하는 며느리는 칠거지악七去之惡으로 모는 오랜 전통이 있어 며느리 쪽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이다. 고부가 모두 혼입婚入한 데다 시모는 이미 며느리 신분으로 시집살이를 경험한 처지에서 새 며느리의 고충을 이해해 줄 만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고부는 또한 아들이자 남편을 공유하는 경쟁자이기도 해서 그 관계가 미묘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들이자 남편을 사이에 두고 고부간에 서로 애정 겨루기를 하다가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기대가 크면 클수록 며느리에 대한 질투가 심해지고, 며느리의 시집살이는 더 혹독해진다. 시집살이가 거의 사라진 요즘도 혼인을 앞둔 딸을 가진 많은 어머니들이 청상에 홀로된 시어머니와 사돈 맺기를 꺼리는 이유이다.

전통사회의 혼인에서 시어머니는 아들의 혼례 전에는 며느리를 만날 기회가 없다. 맞선 자리에도 혼례일에도 시어머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고부는 신부가 시집으로 신행(우귀)해 오는 날에 처음 대면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잿불을 타 넘고 신랑 집 대문을 들어선 신부가 시모에게 엿을 선물하는 민속이 있는데, 엿을 입에 물면 말을 하지 못하듯이 앞으로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삼가라는 의미이다. 고부간의 정식 만남은 신행한 날 신부가 시부모에게 인사를 올리는 현구고례見舅姑禮에서 이루어진다.

신행한 다음날부터 며느리는 아침마다 시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는 '사간드리기'를 한다. 이 문안 인사는 사흘에서 보름 정도로, 시부모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계속한다. 그리고 신행한 지 사흘 만에 새 며느리는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의 묵은 재를 치는 것으로부터 며느리로서 삶을 시작한다. 농촌에서는 며느리를 맞이하면 흔히 '정지꾼이 왔다'고 말하는데, 이는 부엌일을 담당할 사람이 들어왔다는 뜻이다. 이제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부엌으로 난 들창문을 통해 관리 감독 명분으로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었으니 며느리의 신역이 고된 것은 물론 그 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시집살이 경험담의 주된 내용이 고부간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고부갈등은 시집살이에 관한 설화나 민요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제이다. 시모의 구박을 참지 못해 가출한 며느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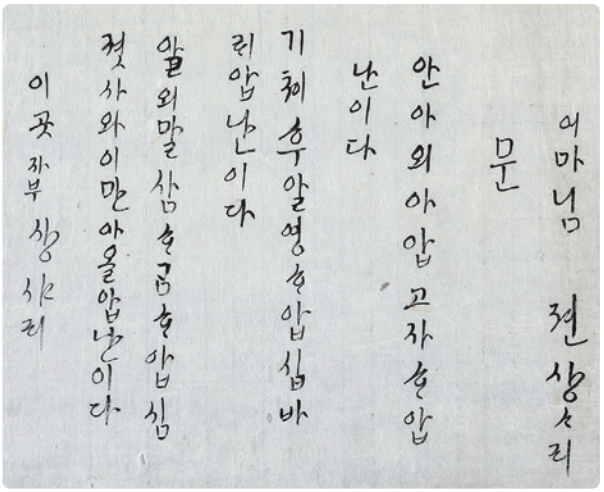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한글 편지 | 가로35 세로32 | 국립한글박물관

산속에서 굶어 죽은 후 며느리밥풀꽃 또는 당신堂神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뚫어진 들창 구멍으로 감시하는 눈초리를 참다 못한 며느리가 짐짓 벌레라며 꼬챙이로 찔러 시모의 한쪽 눈을 멀게 하였다는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고부갈등의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 설화적 자산이 풍부하다. 그런가 하면 힘든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중이 되려고 가출한 며느리, 실수로 깨뜨린 양동이를 물어내라고 야단치는 시집 식구들을 앉혀 놓고 그 불합리함을 당당히 따지는 며느리를 그린 서사민요도 전국적으로 전승된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지만 민요나 생애담 같은 민중적 언술에서는 시아버지에 대해서도 시어머니 못지않게 적대적인 시선이 확인된다. 며느리를 온 시집 식구가 차례로 야단치는 내용의 서사민요에서도 '범같이' 또는 '고초같이' 제일 먼저 나서는 것이 시아버지이다. "시아버지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서는 할림(홀김)새요 시누는 뾰족새요, 남편은 미련새요…"라는 민요에서도 희화戱畫의 시선은 고구姑舅가 다르지 않다. 농촌 여성의 구술생애사에는 심지어 시부에게 매 맞은 경험담도 드물지 않다. 이는 반촌班村에 비해 민촌民村의 가장들은 궁핍하고 팍팍한 현실에서 며느리를 감쌀 여유가 없었던 데서 나타난 차이로 짐작된다. 그렇더라도 구부舅婦갈등이란 말이 없는 것을 보면 구부, 곧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고부간만큼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고부간 갈등은 신소설에 이어 오늘날의 소설과 영화, TV 드라마 등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제이지만 점차 그 정도가 약해지고 양상도 많이 달라졌다.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도 생겨났다. 또는 '며느리 시집'이란 말에서 보듯이 고부 관계의 역학이 전도되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모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약화되면서 시집살이 문화가 빛이 바래가는 현실의 반영이다.

특징 및 의의 조선조의 가부장 이데올로기는 시부모에 대해 골육지친骨肉之親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며느리에게 효순孝順과 희생의 도리를 강요한 측면이 있다. 고부는 부계夫系 가문으로 혼입한 타성의 며느리라는 동질성이 있음에도 시집이라는 공간, 치가사 역할, 아들이자 남편의 존재를 공유하는 조건 속에서 갈등과 경쟁이 필연적인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동서들이 있는 경우는 갈등과 경쟁 구도가 더 다각화된다. 시집살이의 역사는 그러한 고부갈등을 중심으로 체념과 인내 또는 수용과 저항의 자장 안에서 전개되어 온 특징을 보여준다.

그런 한편으로 고부 관계는 가모 역할의 수행과 이양 과정에서 의식주 생활 관련 지식을 비롯한 방대한 민속지식 전수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고리이자 통로가 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민속지식은 고부가 치가사를 수행하는 생활 속에서 체득한 경험적·기술적 지식이다. 종래 지식의 역사에서 소외되어 온 민중적 주변 지식에 대한 가치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식의 주체이자 담지자로서 고부가

기제사 떡 준비 | 경북 안동 | 국립민속박물관

교동 법주 빚기 | 경북 경주 | 국립무형유산원

지니는 지성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여성 민속지식의 전승과 그 소외 또는 순치의 국면(천혜숙, 민속지식의 인문학, 민속원, 2020), 조선 전기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의 변화와 재산권(이순구, 여성과 역사23, 한국여성사학회, 2015), 조선 후기 가정 화목의 이면과 여성(성민경, 아시아여성연구61-3,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2), 조선조 사회와 가족(이이효재, 한울아카데미, 2003).

필자 천혜숙(千惠淑)

과부
寡婦

정의 남편이 죽은 후 수절하며 홀로 사는 여자.

내용 남편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과부寡婦는 예부터 환과고독鰥寡孤獨의 하나로 국가의 구제 대상이 되었다. 고대나 고려시대까지도 여성의 정절은 남편의 생전에 한정된 것으로 간주하였고, 과부의 재혼에 대한 제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후기에 원을 통해 성리학이 수용되고 조선왕조가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하면서 한 남편만을 섬겨야 한다는 '일부종사一夫從事' 관념이 강화되고, 과부의 재혼에 대한 규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재혼은 조선 왕조 성종 대에 처음으로 금지되었다.

1477년(성종 8) 7월 과부의 재혼문제를 놓고 고위 관리 46명이 모여 며칠에 걸쳐 논의하였다. 당시 42명의 관리는 "일찍 과부가 되고 자식이 없어 의탁할 곳 없는 여자들의 재혼은 막을 수 없는 일"임을 내세워 재혼금지법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4명의 관리들이 "굶어 죽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나 절개를 잃는 것은 지극히 큰일"이라는 송나라 정이程頤의 정절론을 내세워 개가改嫁의 전면금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런데 성종이 이 극소수의 의견을 채택함으로써 과부의 재혼이 전면 금지되었다.

1485년(성종 16) 『경국대전經國大典』「예전禮典」 제과조諸科條에서 "재혼하거나 실절한 부녀의 자손 및 서얼 자손은 문과, 생원, 진사과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하였다. 이처럼 명문화된 재가녀자손금고법은 재가녀의 자손이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여 관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한 법으로, 사실상 과부의 재가를 금한 것이다. 처음 과부 재혼을 법적으로 규제하였을 때 그 주된 대상은 양반층 여성이었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정표정책旌表政策을 통하여 과부들에게 사회적 신분의 고하와 귀천을 막론하고 정려문旌閭門, 복호復戶, 상물賞物, 면천免賤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정절을 강요하였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부에 대한 정절 강요는 수많은 열녀를 양산하였고, 많은 과부가 열녀가 되도록 강요당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인 정표정책과 유교윤리 보급으로 재혼금지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일반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조선 후기에는 여성들이 정절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과부의 수절을 여성의 의무처럼 생각하는 풍속이 생겼다. 혼례만 올리고 아직 시댁에 들어가 폐백도 올리지 않은 앳된 신부는 마당과부가 되고, 남자의 사주단자만 받아 놓은 상태에서 정혼자가 죽은 여성은 처녀 과부가 되어 평생 수절하고 살아야 하였다. 또 조선 후기에는 초기와 달리 첩도 수절하였다.

이부탐춘 | 신윤복 | 가로16 세로12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한편 혼자가 된 여자는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과부라는 손가락질과 업신여김으로 한 많은 삶을 살아야 하였다. 길고 긴 밤 견딜 수 없는 외로움 끝에 수절의 굴레에서 이탈하여 다른 남자와 통정하기도 하였다. 박지원이 쓴 소설 〈호질〉에 보면 정절을 지킨 여자라고 칭송받은 과부가 성이 다른 다섯 명의 아이를 두었다는 이야기에서 당시의 사정을 잘 풍자하고 있다. 묵인된 과부의 재혼도 있었다. 주로 평민층에서 일어났던 과부보쌈은 불법적인 행위였지만 대부분은 합의약탈혼이었다. 이후 과부의 재혼은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허용되지 않았다.

특징 및 의의 과부를 과수寡守, 미망인未亡人, 홀어미라고도 한다. 특히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여자는 청상과부靑孀寡婦 또는 청상靑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과부들은 굶어 죽는 것보다 정절을 지키기 위해 성적 욕구를 억압하며 한 많은 세월을 살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실학자들은 과부의 재혼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에도 '과부 재혼의 전면 허용'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과부의 재혼은 1894년 갑오개혁에서 처음으로 허용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재혼 금지 조항이 폐지된 것에 불과하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과부의 수절은 미덕으로 칭송되었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1(이배용 외, 청년사, 1999), 조선시대의 여성과 유교문화(박주, 국학자료원, 2008), 조선시대의 정표정책(박주, 일조각, 1990), 한국여성사1(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8).

필자 박주(朴珠)

교환혼
交換婚

정의 신랑집과 신붓집에서 자기 집단에 속한 여성을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성립되는 혼인.

내용 교환혼交換婚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집단의 규모가 크지 않은 호주 원주민의 경우, 한 집단을 반족半族, moiety이라는 두 집단으로 구분한 뒤에 여자를 서로 교환하였다. 이렇게 제한된 집단 내에서 여자를 맞교환하는 것을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 Strauss는 '한정 교환혼marriage by restricted exchange'이라고 불렀다.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대칭적 교환혼marriage by symmetrical exchange'이라고도 불리는 '한정 교환혼' 이외에 '일반 교환혼marriage by generalized exchange' '비대칭 교환혼marriage by asymmetrical exchange'도 존재한다. 이 교환혼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여자를 주고 그 집단에서 여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집단으로부터 여자를 받는 혼인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교환혼은 인도 북동부와 동남아시아 등에 분포되었다.

이광규에 따르면 신라 왕실의 혼인 체계에는 '한정 교환혼'과 '일반 교환혼' 두 형태가 모두 나타나는데, 신라시대 후기에 오면 '일반 교환혼'이 지배적이 되었다. 백제와 고구려 왕실의 경우에는 '일반 교환혼' 형태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한국의 사회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교환혼 형태는 사라지게 되지만, 일부 계층에서는 최근까지도 존재하였다.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의 보고에 따르면 평안북도의 하층민 사이에서 삼각 혼인이 거행되었다고 한다. 삼각 혼인은, 갑·을·병 세 사람에게 혼인 적령기의 자녀가 있다면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병은 갑에게 각각 딸을 시집보내는 것이다. 이는 '일반 교환혼'에 해당한다. 경기도 김포에서는 이를 '물레혼'이라고도 불렀다.

극히 드물지만 '한정 교환혼'도 한국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함경남도의 하층민 사이에서는 두 남자가 여동생을 서로 교환하여 혼인하였다고 한다. 서울 주변에도 '누이바꿈혼'이 존재하였다.

특징 및 의의 교환혼은 혼인의 역사에서 족외혼이나 족내혼이라는 규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개인의 선택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친족 집단에 기반을 둔 교환혼은 거의 사라진 혼인 방식이다.

참고문헌 인류혼인사(Edward Alexander Westermack, 정동호·신영호 역, 세창출판사, 2013), 조선민속지(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3), 한국가족의 사적 구조(이광규, 일지사, 1977), The elementary sturctures of kinship(Claude Levi Strauss, Beacon Press, 1969).

필자 강정원(姜正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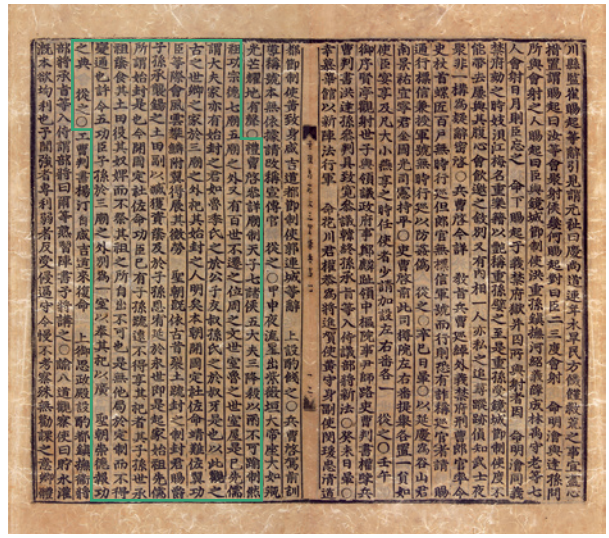

예조의 공신가문 불천위 제사 건의 기록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예조에서 공신들의 자손이 대대로 제사를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상소한 내용.

국불천위
國不遷位

정의 나라로부터 인정받아 대대로 사당에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허락된 신위.

역사 여말선초 성리학 수용과 함께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여 조상에 대한 제례가 강화되었다. 고려시대 조상에 대한 상·제례가 사찰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조선시대에 태조太祖 이성계가 즉위 교서를 통해 "관혼상제冠婚喪祭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禮曹로 하여금 경전을 세밀히 구명하고 고금을 참작하여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인륜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선포한다. 이후 태조는 관료들의 집에 가묘家廟 설치와 함께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제사를 모실 것을 명하였다.

태조 이후 성종成宗 대까지 가묘 설치, 주자가례 인쇄 및 보급 등과 같은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집안 사당에 조상의 신주神主를 봉안하고 제례를 지내는 풍속이 점차 정착된다. 16세기 이후에는 한강寒岡 정구政逑,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등 유학자들이 주자가례의 실천방법을 정밀하게 연구하면서 조선의 예학禮學이 발전하였다.

일반적으로 가묘에는 조상의 위패位牌를 봉안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봉사규정에 의하면 6품 이상은 3대까지 제사를 지내고 7품 이하는 2대, 일반인은 부모에게만 제사를 모시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 조항으로 "맨 처음 공신이 된 사람은 대수代數가 다 되었더라도 신주를 치우지 않고 따로 방을 한 칸 차려 놓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457년(세조 3) 예조에서 조선왕조 개국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개국공신開國功臣, 정사공신定社功臣, 좌명공신佐命功臣, 정난공신靖難功臣, 좌익공신左翼功臣 등 공신의 자손들은 별도로 일실一室을 만들어 자손 대대로 제사를 받들 수 있도록 할 것을 왕에게 청하면서 경국대전에도 반영되었다. 바로 이렇게 국가로부터 공신 자격을 받은 신주가 국불천위國不遷位이다.

내용 불천위不遷位는 부조위不祧位라고도 한다. 4대를 지나 친진親盡이 되어도 신주를 옮기지 않고 자손 대대로 영원히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신위를 의미한다. '불천위'라는 용어는 한자 뜻 그대로 '옮기지 않는 신위'를 의미한다. 즉 신주를 옮기지 않고 계속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모실 수 있는 신위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불천지위不遷之位'라는 용어로 나타난다. 왕실을 제외하고 국가에서 일반 사대부가의 불천위와 관련

된 논의는 1457년 예조에서 국가에 헌신한 공신을 불천위 조상으로 모시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를 모실 수 있게 할 것을 왕에게 건의하면서부터다. 이는 경국대전 규정으로 제도화되어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조상을 '국가가 인정한 불천위', 즉 국불천위로 대를 이어 모실 수 있도록 하였다.

국불천위 자격은 조선 후기에 점차 확대되어 국난을 극복한 공신뿐만 아니라 종묘宗廟에 배향되는 종묘배향공신, 학문과 덕망으로 문묘文廟에 배향되는 유현들,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인물에 대해 왕이 특지特旨를 내려 부조不祧의 명을 내리는 경우나 국가가 시호諡號를 내리는 경우 등으로 확대되었다.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불천위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은 그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으며, 향촌사회에서 가문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국불천위를 모시는 문중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조선 초기 5공신에 해당하는 집안과 왕실 종친 집안이 밀집되어 있어서 국불천위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충청 지역의 불천위는 국불천위 범주 대상의 조상이 대다수이다. 반면 영남은 현재 불천위가 충청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그중에서도 지방사회 논의를 거쳐 정해진 사불천위私不遷位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이는 영남 지역 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 후기 사족士族들의 향촌 지배가 강화되면서 사회 현상으로 불천위 조상을 모시고자 하는 요구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국가에 시호를 내려 달라고 청시請諡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고 문중이나 유림 스스로 학문적 성과가 있는 인물, 효행이 뛰어난 인물, 공적이 있는 인물에 대해 공의公議를 거쳐 불천위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때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불천위가 된 경우를 국불천위, 문중의 공의를 거쳐서 결정된 불천위를 사불천위로 구분한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역사적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고, 불천위를 모시는 후손 또는 문중의 사회적 구별 짓기 차원에서 사회적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집안에 모시는 조상의 격을 논할 때 국불천위를 사불천위보다 우월한 조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불천위 제례상 | 농암 이현보 종가 | 경북 안동 | 2003 | 국립민속박물관

불천위제 독축 | 사계 김장생 종가 | 충남 논산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조선시대 국불천위를 조상으로 둔 사족 집단은 그 조상의 업적 덕에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와 노비 등의 재산을 영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고, 출사出仕 시 과거를 거치지 않고 음직蔭職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향촌 사회에서 사족 집단은 사회적인 위세와 신분적 지위를 국불천위 조상을 통해 강화할 수 있었다. 오늘날까지 불천위제례는 각 지역에서 종가宗家를 통해 전승되고 있어서 한국의 전통을 보여 주는 무형유산적 가치가 풍부하다.

참고문헌 무형문화유산 자원조사 연구(강성복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불천위 제례(강성복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불천위 추대 기준에 대한 제도적·담론적 고찰(김미영, 국학연구17, 한국국학진흥원, 2010), 여말선초 상·제례 변동과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이상균, 한국민족문화4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역주 경국대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 198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상균(李相均)

국제결혼
國際結婚

정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혹은 결혼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

역사 한국 역사에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결혼國際結婚, cross-border marriage, international marriage이 존재하였다. 한국 최초의 국제결혼에 관한 기록은 가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야 건국신화에 나오는 허황옥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 서기 48년(유리왕 25) 배를 타고 가야에 와서 김수로의 비妃가 되어 김해허씨金海許氏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허황옥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그녀가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반도에 정착한 최초의 외국 여성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사진신부'로 미국에 간 1,100여 명의 조선 여성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간 조선인 남성 노동자와 결혼하기 위해 이주하였다. 한인 간에 이뤄진 동족혼이지만 배우자를 찾기 위해 다른 국가로 이주하였다는 점에서 국제결혼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후 6·25전쟁과 미군 주둔 결과로 한국 여성과 미국 군인 남성의 국제결혼이 많이 이뤄졌고, 이 여성들을 '군인신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1990년대 이후의 국제결혼은 국내 결혼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층 남성들, 특히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 수요 결과로 상업적 중개업을 통해 대규모로 일어났다. 1985년 일본의 '농가 후계자 결혼 시키기' 사업으로 시작된 행정주도형 국제결혼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1992년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한국 농촌의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공신력 있는 민간인이나 도시 간 협정체결을 통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내용 1994년까지 전체 혼인의 1% 미만에 불과하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결혼이 1995년 2.6%로 상승하며,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인 여성과 외국 남성 간 국제결혼 비율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에서 11%, 특정 농촌 지역의 경우 전체 결혼에서 40%를 차지하게 되었다. 2021년 현재 결혼이민자 수는 16만 8,611명이고, 이 중 여성이 13만 6,668명으로 81%를 차지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과 베트남이 다수를 차지하고, 필리핀·캄보디아·일본·태국·몽골·중앙아시아 지역 등으로 다양하다.

국제결혼 증가는 세계화로 인한 '개방성'이 확장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 간 사람들의 이동이 증가하고 해외 진출 기업이나 다국적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국적·언어·인종·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학교나 일터에서 만나 친밀성과 낭만적 감정을 쌓는 기회 또한 증대되었다. 인터넷 등 미디어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역적 거리에 상관없이 24시간 접속이 가능한 지구촌 환경 또한 국제결혼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한국의 국제결혼은 문화적 개방성과 개인화 및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발달을 통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 증가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급증한 것만은 아니다. 최근 한국에서 급증하는 국제결혼은 '사랑'에 의한 결혼보다 '편의'에 의한 결혼인 경우가 많다. '편의에 의한 결혼marriage of convenience'이란

결혼기념 사진 | 국립민속박물관

배우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필요에 의한 도구적 형태를 띤 결혼을 의미한다. 농어촌 지역 혹은 도시의 저소득층 남성들이 한국에서 쉽게 배우자를 구할 수 없을 때 국가 간 경제 격차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 여성들을 배우자로 맞아들이는 경향이 강하였다. 인구학적 위기를 해결하고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국제결혼을 장려하고 국제결혼 중개비용을 지원하였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 여성들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해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사회로의 결혼이주를 희망하게 되었다.

이런 대규모의 국제결혼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대만·싱가포르·홍콩과 같은 아시아 경제발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국가들 모두 결혼 시장의 성비 불균형, 저출산, 노동력 부족, 인구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의 남성과 아시아 국가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장려하고 있다. 편의에 의한 결혼이지만 그들을 사랑이 없는 부부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가족을 이루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신뢰와 친밀성이 강화되는 경우 또한 많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이 급증하였던 1990년대부터 2005년까지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없었다. 그러나 2006년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선언 이후 한국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행하면서 국제결혼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명명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법적 용어로서 다문화가족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의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나 난민 가족을 의미하는 '다문화가정' 또한 다문화가족으로 포함하면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국제결혼수속상담소 | 광복 이후 | 수원화성박물관

국제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족은 유입국의 가족 전통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성격을 지닌다. '초국적가족超國的家族, transnational family'은 결혼이민자가 한편으로는 이주국의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하려 노력하지만 동시에 본국 가족과의 연결성을 잃지 않고 이주국과 모국을 동시에 삶의 준거로 삼으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가족을 유지해 간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초국적가족으로서 다문화가족은 다양한 생활 양식, 성 역할과 가치관, 효 개념, 양육과 모성에 대한 이해 등 여러 면에서 가족 구성원 간 협상과 연대를 만들어 가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가족문화가 생겨난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특히 어머니들이 한국을 방문해 살림살이나 양육을 도우면서 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남편 중 일부는 부인 나라에 '역이주'하기 위해 그곳에 땅을 매입하거나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예도 있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을 통해 확장된 두 개 국가에서의 친족망을 이용해 삶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민자와 외국인이 가져오는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임으로써 활력을 얻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정체성 구성의 중요한 단위인 가족이 문화적으로 혼종적인 공간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우려는 한국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기조를 결혼이민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한국 문화에 빨리 동화시키는 것에 집중하게 하였다.

적응의 의무를 이민자에게만 부담하는 정책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민자 문화의 차별과 배제를 낳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2세를 동질적인 '취약계층'과 동일시하는 경향 또한 두드러진다. 다문화가족과 2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다문화사회로의 질적 발전의 척도이며 성과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한국사회는 한민족 간 동족혼同族婚을 이상적 결혼으로 간주해 왔다. 단일민족주의와 순혈주의가 강

한 사회에서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등장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국제결혼은 국적, 언어, 인종, 종교, 종족적 차이를 초월하여 '사랑'을 하고 '가족'을 구성하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의미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경제발전국과 경제개발국 두 나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초국적가족을 구성하며 생존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국제결혼은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라고 볼 수 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았던 한국의 〈국적법〉은 최근 결혼이주민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등 '호의적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국적법〉의 변화는 폐쇄적·단일적·규정적 국적 기준에서 개방적·복수적·생활적 기준으로 국민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국제결혼과 초국적 가족의 출현(김현미,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다산출판사, 2023), 다문화 사회와 이주 어머니(황정미, 아시아여성연구51-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2),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이혜경, 한국인구학28-1, 한국인구학회, 2005).

필자 김현미(金賢美)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

정의 조선 성종 대에 신숙주·정척 등이 왕명에 의해 오례를 중심으로 조선의 기본적인 예법과 절차 등을 규정해놓은 책.

내용 조선 초기 세종世宗은 국가의 기본예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허조許稠 등에게 명하여 오례五禮에 관한 책의 편찬을 명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세조世祖도 강희맹姜希孟 등을 통해 『홍무예제洪武禮制』를 비롯한 고금의 각종 예서들을 참작하여 편찬하도록 하였지만, 이 또한 완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성종成宗 대인 1474년(성종 5)에 이르러 신숙주申叔舟·정척鄭陟 등이 오례를 중심으로 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완성하였다. 『국조오례의』의 체재는 오례, 즉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로 나누어 예별로 세부 조목을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 길례 56개 조목, 가례 50개 조목, 빈례 6개 조목, 군례 7개 조목, 흉례 91개 조목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8권 5책으로 간행되었다.

국조오례의 | 가로21 세로32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국조오례의』는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과 함께 실질적으로 조선의 기본 예전禮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유교 이념을 통치기반으로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조선에서 『국조오례의』는 국가와 민간에서 준수해야 할 예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다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례를 위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실제로 적용할 부분은 많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주자의 『가례』를 중심으로 한 질서가 점차 강화되었다. 『국조오례의』는 성종조 이후에도 수차례 중간되었고, 이를 토대로 『서례序禮』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등의 편찬이 이어졌다.

필자 전경목(全炅穆)

권당

정의 제주도에서 친족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혈연과 지연으로 연관된 사람을 통칭.

내용 권당은 한자어 권당眷黨에서 유래한 단어로, 자기

의 혈족 및 혼인 관계를 통해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을 이른다. 그런데 제주도의 '권당'은 육지의 친족과 달리 그 지칭하는 범위가 넓다. 우선 부계父系와 모계母系를 모두 포괄한다. 육지에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리 떨어질수록 좋다.'는 속담이 있다면 제주도는 정반대다. 아버지 쪽 성펜권당[父系親], 어머니 쪽 외펜권당[母系親], 남자가 결혼해서 생긴 처가 쪽 처권당[妻族], 여자가 시집가서 맺어진 시권당[媤家] 이렇게 지평을 넓혀 가면 좁은 제주도에서 권당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한다. 출가외인과 같은 가부장제 질서는 제주도와는 거리가 멀다. 혈연血緣 이외 지연地緣을 가진 경우도 권당이라 칭하고 있다.

제주도 사람들은 조금만 안면이 있어도 "사돈에 팔촌으로 걸린 권당"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이는 서로가 굳이 친척 관계가 되는지 따져서 확인해 보지 않아도 고향이 어디인지 서로 알리고, 계보를 따지다 보면 하다 못해 사돈의 팔촌이라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제주도에서는 마을 중심의 통혼권으로 인해 같은 마을에 혈족과 인척의 중첩을 가져오는데 권당은 혈연과 지연에 중복이 생기면서 모두가 친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혼사를 통해 지연이 한 마을에서 이웃 마을로 이어져 확장되기도 한다.근대에 와서 권당은 지연과 혈연 이외에 학연까지 포함해 관련자들끼리 갖는 결속력을 칭하게 되었다. 이는 혈연·지연·학연으로 연관된 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공·사를 불문하고 보답해야 한다는 부정적 관계로까지 발전하였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선거 때의 '권당문화'다. 제주도에서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연관성을 지닌 사람끼리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밀착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권당이 정당보다 세다."는 말까지 유행하였다. 이처럼 봉건사회의 미덕이 연고주의로 변질되어 부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래서 중국의 관시關係 문화에 비견되기도 한다. 권당을 중시하다가 청탁이 만연해지고 '청렴'이 무너지는 폐단도 제주도 지역사회 속에서 자주 지적되었는데 이제는 많이 치유되었다.

권당문화의 폐단 중 하나는 지나치게 결속력을 강조하다 보니 경조사를 과중히 여기는 풍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혈연·지연·학연 중 하나만 해당하면 경조사를 돌봐야 하고, 교통 발달로 마을 단위의 경조사를 돌보던 단계에서 제주시 혹은 제주도 전체라는 커다란 단위의 경조사를 돌보게 되니 경조비 지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제주도의 겹부조는 많은 제주도 사람이 힘겨워하는 일이 되었다.

권당문화의 부정적 관점 중 가장 주목받는 사항은 자기들끼리 뭉치는 대신 남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태도다. 그래서 특히 외부에서 제주도에 진입한 사람들의 어려움이 컸다.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한 만큼 이주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불만이 있기도 하였고, 이주한 지역 마을 사람들의 따돌림이 크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런 '육지 것(육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에 대한 제주도 사람들의 배타성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몽골과 고려 등 외세의 침략과 조선조의 수탈을 경험하면서 혈연과 지연으로 뭉친 제주도 특유의 정서가 만들어졌다고 해석된다. 또한 제주4·3사건을 겪으면서 외부에 대한 경계 의식이 커졌고, 그들에 대한 저항감과 불편함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의 상처가 점차 치유되면서 외부자를 배타적으로 여기는 점은 다소 해소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주민들이 옮겨 간 마을 공동 행사에 참여하고, 마을에 기여할 때 공동체에 편입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경조사에 참여하여 마을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할 때 원주민과 이주자가 함께 권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를 관통하는 권당문화의 생성 배경은 농어촌공동체에서 마을의 생산과 의례를 함께하던 관습에서 비롯되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즐기고, 함께 가꾸는 공동체문화 속에서 자연히 지역 공동의 소속원이 혈연공동체 같은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여겨진다. 함께 협동하고 공존하는 '수눌음(제주도 특유의 공동노동문화)공동체'가 만들어져 개인과 가족과 친족의 경계를 넘어 마을에까지 이어졌다. 최근까지도 제주도에서는 밥을 먹을 때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있으면 불러서 함께 식사하는 관례가 남아 있었다. 이는 양푼 하나에 밥을 떠서 각자 숟가락을 하나씩 들고 먹는 문화다. 식사 도중에 이웃이 오면 수저 하나만 덧보태 함께 먹으면 되는 공동체문화, 즉 권당

문화가 살아 있었다.

권당문화가 지닌 부정적 측면에도 아직 공동체문화가 살아 생동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개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혈연·지연·학연 등의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는 다시 회복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는 21세기 현대사회의 고립·고독·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각자를 구별하는 '차이'도 존중해야 하지만 공통점을 확보해서 함께 인간적 유대를 형성해 가는 것의 중요함도 인식해야 한다.

특징 및 의의 제주도에서는 친척이 아니어도 서로 한동네에 살면서 친척처럼 여기면서 서로 이웃 간에 정을 나눈다. 혈연이나 아니어도 한동네에 살면 권당으로 통한다. 권당문화로 인해 정치적 연고주의, 경조사를 과중히 여기는 풍조, 이주자에 대한 배타성 등의 폐단도 있지만 그래도 상대를 감싸고 온정을 베풀려는 따듯한 마음이 권당문화 속에 남아 있다.

공동체문화의 회복을 위해서는 제주도 권당문화의 장점이 다시 조명되어야 한다. 현대사회가 개인의 성취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상황 속에서 공동체 의식이 실종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인간 사이의 배려와 유대가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런 결핍을 치유하기 위해 다시 권당문화가 호출되어야 한다. 지역과 자연과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가져야 21세기 지구와 환경은 되살아날 수 있다. 제주도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권당정신이 발휘된다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제주도민을 지키는 새로운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제주기행(주강현, 웅진지식하우스, 2011), 제주어 마음사전(현택훈, 걷는사람, 2019), 디지털제주문화대전(jeju.grandculture.net).

필자 허남춘(許南春)

규방가사
閨房歌辭

정의 영남지역 중심으로 규방의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창작하고 전승한 가사 작품군.

개관 규방가사閨房歌辭는 가사문학의 하위 갈래로, '규방'의 여성들이 주로 창작하고 전승하여 온 작품군을 말한다. 규방은 전통사회 여성들이 주로 거처하던 공간을 의미하는데, 가사 작품의 창작과 전승이 주로 이루어진 공간이라 해서 '내방'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에 이들 가사를 내방가사內房歌辭라고 칭하기도 한다.

규방가사의 창작과 향유는 경상북도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 양반 가문의 부녀자들로부터 출발하였다. 안동은 한문을 기반으로 해서 남성 중심의 유교 이념이 강하게 뿌리 내린 지역으로, 양반가 여성들도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유교적 교양과 문필적 소양을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들은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과 감정을 기록하고 표현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글하기'라고 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고 공유함으로써 규방가사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아울러 혼반婚班 관계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도 규방가사의 전승이 이루어져 가사 향유의 지역적 전승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규방가사 중에는 작가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작품이 드물기 때문에 작품이 발생한 시기는 추정하기 어렵다. 실제 창작연대와 작가를 확정할 수 있는 작품으로는 안동 지역 연안이씨延安李氏의 〈쌍벽가雙璧歌〉(1794)가 전승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규방가사가

쌍벽가 | 가로255 세로26 | 광복 이후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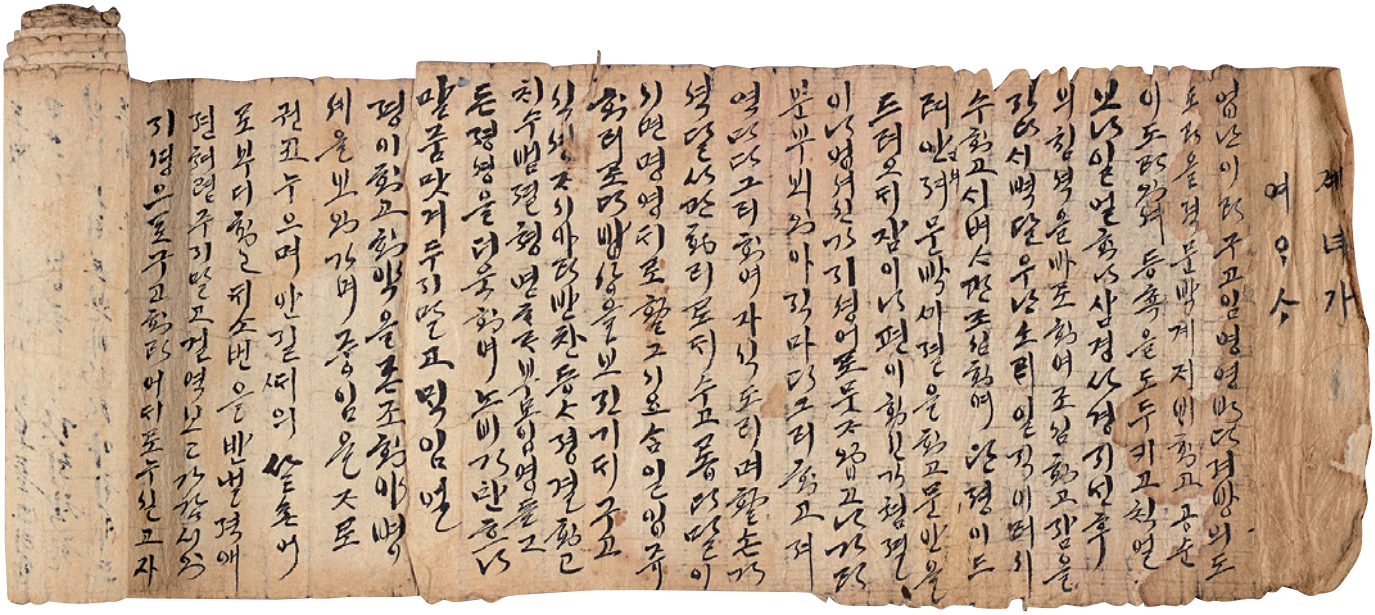

계녀가 | 가로210 세로15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본격적으로 창작되고 전승되던 시기는 18세기 중·후반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후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러 규방가사는 여성들의 대표적인 기록문학의 위치로 올라서게 된다. 이 시기 규방가사는 여성들이 지켜야 할 전통적 규범, 놀이와 여행, 인생에 대한 한탄뿐만 아니라 역사 인식과 대사회적 응전應戰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기록문학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22년 11월 26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규방가사는 전통적인 시가詩歌 양식이지만 현재도 그 전승과 향유가 지속되고 있다. 안동 지역의 내방가사보존회 등의 활동이 그것이다. 이들은 규방가사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필사筆寫와 낭독 방식으로 전승하고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로서 규방가사의 가치를 보전하고 계승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내용 규방가사는 여성들의 삶 전반에 걸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품 내용은 여성들의 삶과 감정을 주로 다룬 작품에서부터 역사적 사실과 대사회적 인식을 다룬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여성의 삶과 감정을 다룬 작품으로는 계녀가誡女歌류·화전가花煎歌류·탄식가嘆息歌류 등이 있고, 역사적 사실과 대사회적 인식을 담은 작품으로는 영사가詠史歌류와 만주망명가사 등으로 명명된 작품 유형이 있다.

계녀가류 가사는 가부장적 유교사회에서 시집간 여성이 지켜야 할 규범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시집가는 딸을 위해 친정 부모나 어른들이 작품을 창작하거나 필사해 주는 정황을 담고 있으며,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과 도리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작품이 많다. 작품의 주요 내용은 '시부모 모시기, 남편 섬기기, 친척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제사 지내기, 손님 접대, 태교胎敎와 육아, 노비 다스리기, 치산治山, 항심恒心' 등이다.

이들 항목은 조선시대 유학자 송시열宋時烈(1607~1689)의 『우암계녀서尤庵戒女書』나 이덕무李德懋(1741~1793)의 『사소절士小節』에서 강조된 여성 규범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교훈적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서 율문 형태의 가사작품을 유용하게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 순서나 비중이 변하기도 하는데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여성의 노동과 재산 관리에 관한 항목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안의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이러한 규범을 부모나 조모祖母로부터 교육받고 가사작품을 통해 음영吟詠하면서 사회와 가문이 요구하는 여성상을 스스로 내면화하고 전통사회 유지와 가문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화전가류 가사는 여성들의 대표적인 놀이인 화전놀이를 배경으로 한 〈화전가花煎歌〉가 대표적이다. 규방에 주로 기거하며 바깥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었던 여성들에게 화전놀이는 일 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허락되는 외출과 놀이 기회였고, 그동안 만나지 못하던 동류同流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에 작품에는 화전놀이를 준비하는 과정, 동류들을 만난 반가움과 놀이의 즐거움, 귀가의 아쉬움과 재회의 다짐 등을 생동감 있는 묘사와 다채로운 감각적 언어로 표현하였다.

화전가류 가사와 더불어 여성의 놀이나 여행을 다룬 작품도 많이 전하고 있다. 윷놀이·뱃놀이·산놀이를 다룬 작품과 근대전환기 관광 문화의 영향으로 창작된 여행기 등 기행가사紀行歌辭 작품이 대표적이다. 이 작품들을 통해 여성들의 놀이 문화와 더불어 가족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성들의 소통, 공감과 연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탄식가류 가사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결혼, 이별, 늙음과 죽음을 계기로 한 여성들의 삶에 대한 소회와 성찰을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여자자탄가女子自歎歌〉 〈노처녀가老處女歌〉 〈노부탄老婦歎〉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규방가사에는 근대전환기 시대상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과 애환을 담은 작품도 많다. 〈시골식씨셜은타령〉 〈경세가警世歌〉 〈생조감구가生朝感舊歌〉 등은 근대전환기 구여성들의 애환과 시대인식을 담은 대표적인 작품이다. 또 〈해도교거사海島僑居辭〉 〈눈물 뿌린 이별가〉 〈조손별서祖孫別書〉 등은 일제강점기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이어 간 안동 지역 여성들이 겪었던 만주 망명의 과정과 그들의 애환을 담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규방가사는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창작·전승된 문학이라는 가치를 지닌다. 규방가사 창작이 본격화된 시기에 문자 활동은 주로 양반사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한자로 기록된 지식과 교양은 이들에게 편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한글로 된 가사를 창작하고 유통함으로써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주체적으로 표현하며 독자적인 문학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규방가사는 주류 역사에서 기록하지 않은, 배제된 소수의 대안적 기록 가치를 지닌다. 근대전환기에 변화하는 사회상과 만주 망명이라는 역사적 상황 등을 기록한 규방가사는 역사의 주체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특히 구여성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고 있어 미시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규방가사는 여성들의 '글하기'라는 독특한 문화 활동의 산물이다. 글하기란 규방가사 창작을 비롯한 일련의 문자 활동을 지칭하는 말로, 규방가사 창작자들이 가사를 함께 짓고 베끼고 낭송하는 방식을 포괄하는 말이다. 이러한 글하기 방식은 개인적 차원의 글쓰기를 넘어 함께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규방가사의 글하기 전략과 소통의 수사학(최규수, 명지대학교출판부, 2014), 규방가사의 양성성(박경주, 월인, 2007), 규방가사의 전통성과 근대성(백순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근대기 역사의 전개와 가사문학(고순희, 박문사, 2021), 내방가사의 세계적 중요성과 가치(최은숙, 국학연구40, 한국국학진흥원, 2019),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이정옥, 박이정, 1999).

필자 최은숙(崔恩淑)

균분상속
均分相續

정의 부모의 재산을 장자와 중자,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나누어 주는 상속 관행.

역사 삼국시대 이전에 재산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자료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실상을 알기 어렵다. 고려시대에도 자료가 부족하기는 삼국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고려사高麗史』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남아있는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서 대체적인 윤곽을 살펴볼 수 있다. 학자들에 따라서 다소 의견 차가 있지만 대체로 고려시대에는 자녀들 사이에 재산을 균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봉작상속封爵相續이나 음직상속蔭職相續에서 장자長子와 중자衆子 그리고 친손과 외손의 차별이 보이지 않고, 혼인 후 남자가 처가에서 오래 생활하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은 노비와 토지를 비롯한 부모의 재산을 아들과 딸에게 균분해서 상속하

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고려사』 열전에서 볼 수 있는, 임종 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고르게 나누어 주고 화목하기를 당부하는 사례, 특별히 많은 재산을 분배받은 자식이 불평등한 분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물려받은 재산을 사양하는 사례, 차등상속으로 인한 쟁송爭訟에서 균분하도록 판결한 사례 등도 고려시대의 균분상속均分相續 관행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고려시대의 상속과 가례에 관련된 법제 속에는 장남을 우대하거나 여자를 차별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균분상속론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문은 중국의 『당률唐律』을 그대로 모방하여 기록한 것으로, 실제로는 고려에서 행해진 균분 관행과 다르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의 이러한 균분상속 전통은 조선시대 초기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균분상속 원칙은 조선시대 초기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부모가 자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수많은 분재기分財記를 통해 균분상속의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분재기는 고려시대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5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6세기와 17세기에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17세기 중엽까지는 균분상속에 매우 철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균분상속의 관행이 점차 줄어들고, 적장자를 우대하고 딸을 차별하는 차등상속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18세기 중엽이 되면 적장자우대상속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내용 조선시대에는 상속을 분금分衿, 분급分給, 금급衿給, 분집分執, 허여許與, 허급許給, 금득衿得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부모가 주체가 되어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아들과 딸, 장자와 중자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균분상속이다.

균분은 우선 상속재산의 양적 측면에서 서로 비슷해야 한다. 조선시대 초기의 분재기에 나타난 상속 내용을 보면 노비 수나 토지 면적에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균분은 상속재산의 양적 측면과 아울러 질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비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노동력이나 후손의 재생산 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토지도 비옥도나 거리의 원근에 따라 재산 가치가 다르므로, 재산을 나누어 줄 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재산을 배분한다. 여러 분재기의 기록에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부모의 의지가 구석구석 나타난다.

노비를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면서 모자라는 수가 있을 때는 "도망간 노비 아무개를 찾거든 누구에게 주라." "수태 중인 비 아무개가 출산하거든 그 소생은 누구에게 주라."고 분재기에 명시하는 등의 사례는 균분 원칙에 충실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토지 분급에서도 비옥도나 거리에 차이가 있는 토지를 구분해서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는 노력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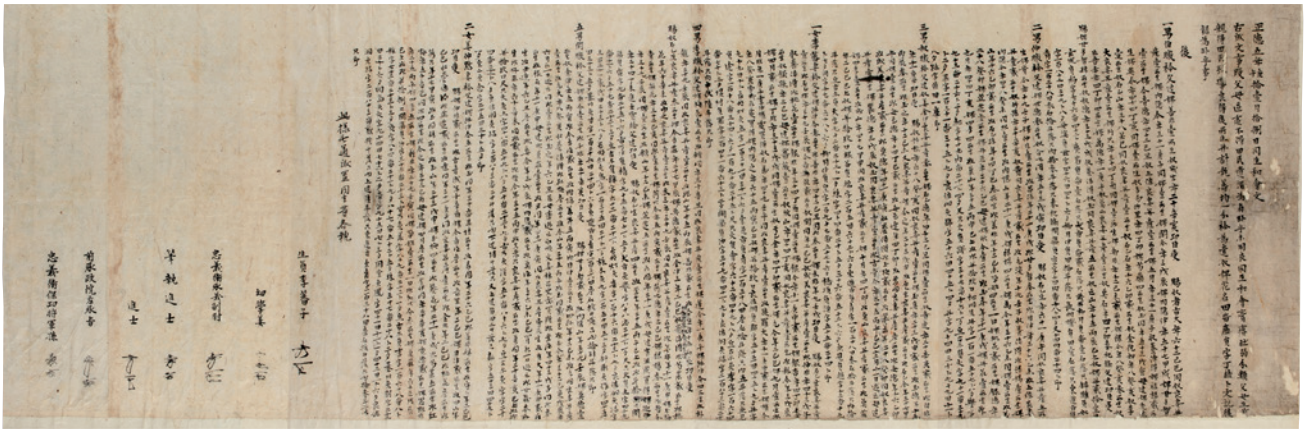

송중돈 동생 화회문기(경주 양동 경주손씨 종가 송첨 기탁) | 가로54 세로37 | 조선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손소의 자녀 7남매가 재산을 균분해 분할한 문서.

노비와 전답 외에 가옥과 농기구 및 가재도구도 분급 대상이었다. 분가할 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밥솥, 가마솥, 화로, 주발, 대접, 식기 등이 분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균분에 얼마나 충실하려 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초기의 이러한 균분상속 의지는 『경국대전』에도 반영되어 「형전刑典」 사천조私賤條에 부모가 생전에 나누어 주지 않은 노비와 토지가 있을 때는 자녀가 똑같이 나누고, 승중자承重子에게는 1/5을 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사를 모시는 승중자에게 20%를 더 지급하도록 하였지만 이를 봉사조로 본다면 상속재산은 자녀들 사이에 똑같이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선언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재산의 균분상속은 윤회봉사輪回奉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종법宗法이나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널리 보급되지 않아 성리학을 일찍이 수용한 소수의 지식층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조상제사를 자녀들이 나누어 맡아 지냈다. 제사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부모 제사와 조부모 제사처럼 조상별로 제사를 나눌 수도 있고, 기제사와 명절 차례를 나눌 수도 있다. 해마다 돌아가며 자녀들이 윤번제로 제사를 모실 수도 있다. 이렇게 제사에 대한 부담을 균등하게 나누기 때문에 특정한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당위성이 없었다. 의무를 균등하게 하고, 이에 따라 권리도 균등하게 나눈 것이다.

그러나 종법과 『주자가례』가 널리 보급되고 조상의 제사를 중시하는 의식이 점차 강화되어 제사가 장남에게 고정되자 재산상속도 적장자우대상속으로 서서히 변화하게 되었다. 대체로 17세기 중엽부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완전히 적장자우대상속이 정착되었다.

조상제사를 윤회하고 부모 재산을 균분하던 시기의 분재기에는 부변친족대표와 함께 모변친족대표가 입회인으로 참여한다. 상속재산 속에 모母가 친정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재산의 처분에는 모의 친정 친족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변친족母邊親族 대표의 입회인 참여는 딸이 상속에서 제외되고 적장자우대상속이 보편화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재산을 균분하는 관행에 매우 충실한 가운데에서도 이와 다른 예외적 조치로 별급別給과 봉사조奉祀條가 있다.

별급은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특별히 증여하는 재산이다. 자녀들에게만 한하지 않고 며느리나 사위는 물론 내외손자녀, 조카 등에게 주기도 한다. 별급 사유로는 과거 급제, 관직 제수, 승진, 혼인, 득남, 제사 봉행, 효도와 시봉侍奉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경사스러운 일을 맞아 축하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강하지만 구체적인 사유 없이 인정人情으로 별급하는 사례도 많다. 별급은 균분의 대원칙 아래에서도 부모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장남 부부나 첩 자녀들에게 통상적인 규범의 범위를 넘어서는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 상속재산 중에서 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봉사조는 균분하는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조상제사를 봉행하기 위해 마련한 재산이다. 윤회봉사가 보편화되어 있고 균분상속에 철저하였던 조선시대 초기에는 봉사조 재산을 별도로 마련하는 사례가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제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봉사조를 별도로 마련하는 사례가 늘게 되었다. 봉사조가 설정되던 초기에는 별급 형태로 지급하다가 점차 재산 분급의 한 형태로 고정되어서 봉사조재산奉祀條財産을 먼저 설정해 두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자에게 분배하였다.

재산을 물려주는 부부(상속자의 부모)의 사후 제사를 위한 재산도 미리 설정해 두었다. 이 재산은 부모 생전에는 노후 부양을 위한 재산이 되었다가 사후에는 봉사조재산이 되었다. 봉사조는 세분하지 않고 '봉사조' 혹은 '승중조承重條'라는 명칭으로 한 묶음으로 묶어서 설정하기도 하고, '부모 봉사조'와 '조부모 봉사조'같이 제사 대상이 되는 조상별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봉사조 재산은 그 제사를 담당하는 봉사자가 관리권을 가졌다. 이 봉사조 재산은 적장자가 제사를 전담하면서 적장자상속 재산에 통합되어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별도로 마련하는 사례가 급감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조선전기

상속법제(신영호, 세창출판사, 2002),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李朝の財産相續法(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창기(李昌基)

근친
觀親

정의 시집온 신부가 친정에 가서 부모님을 뵙는 일.

역사 근친覲親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조실록太祖實錄』에 근친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 조선 초에 근친을 행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근친은 고려 때부터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인 출신 지규식池圭植이 1891년에서 1911년까지 쓴 『하재일기荷齋日記』의 1895년 11월 8일 기사를 보면 "남한산성의 둘째 며느리가 귀녕歸寧하러 가는데, 인아仁兒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셋째 며느리도 근친하러 갔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건대,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근친을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친은 특히 신식혼례로 인해 변화했지만, 1980년대에 용인 지역에서 근친을 갔다는 조사보고에 의하면 그 시기까지도 근친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근친은 신부가 혼인 후 친정 부모를 뵈러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일정하지는 않다. 시집 생활 3일, 1개월, 2개월, 3개월, 1년 만에 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친정 부모의 생일이나 제삿날에 가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첫 아이를 분만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한 경우도 있었고, 첫 아이를 낳은 후 산후 조리하는 기간으로 보낸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이나 집안, 신식혼례와 급격한 사회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근친을 갈 때에는 간단한 차림으로 갈 수 없다. 원래 근친은 처음 수확한 햇곡식으로 떡과 술 등을 빚어 신랑·신부가 함께 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이때 가지고 가는 근친 음식을 '사돈음식'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신부가 시댁 음식을 가지고 친정에 가면, 친정에서도 신부가 시댁으로 돌아올 때 정성 들인 음식을 함께 보냈다. 그래서 사돈음식은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갚아야 하므로 언제나 받으면 부담된다고 하였다. 근친 가는 신부를 따라온 신랑은 장모 또는 처남의 안내를 받아 신부의 친척 집을 방문하여 인사를 한다. 이때 신부의 친척 집에서는 신랑·신부를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였다. 신랑은 며칠을 놀다가 신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때로는 신부가 더 오래 쉬다가 올 때도 있다. 신부가 시댁으로 돌아올 때도 떡·술 등을 마련하여 갖고 온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를 '차반'이라고 한다. 이처럼 시집온 신부가 친정에 다녀오는 근친까지 끝내야 혼례는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런데 『태조실록』 1년 9월 21일 기사에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간 경우에는 부모가 죽었으면 근친하는 의례가 없었다."라고 하였으니, 친정 부모가 사망하면 근친을 안 간 것 같다. 아울러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근친을 못 하게 될 때에는 '반보기[中路相逢]'를 하여 친정어머니를 만났다. '반보기'란 양가에서 미리 연락하여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시댁과 친정의 중간쯤 되는 경치 좋은 적당한 곳을 택하여 친정어머니와 출가한 딸이 만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장만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모녀가 그동안의 회포도 풀고 음식도 권하며 즐기다가 저녁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한편 혼인한 지 3년 안에 근친을 못 가면 일생 친정에 못 간다는 말도 있고, 3년 안에 근친을 못 가면 신부의 명이 짧다는 속신俗信도 있다. 이는 시집살이 처음 3년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3년 안에 근친을 보내라는 경구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지역사례 일부 지방에서는 근친을 '인재행引再行' '달신행' '묵신행'이라고도 했다. 이는 신부의 신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근친도 따라서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명칭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에서는 시집온 신부가 처음으로 친정에 가는 것을 '재행再行'이라 하는 곳도 있고, '근친간다'라고 하는 곳도 있다. 또 전라남도에서는 '재행간다' '재행걸음' '근행간다'라고도 한다. 전남 강진에서는 춘하추동 계절마다 친정을 다녀온다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신행은 시집온 후 제달로

가는 '제달 근친'이 아니면 '석 달 근친'이었다. 경상북도에서는 근친 때 시아버지와 신랑이 함께 가기도 하는데, 이때 친정 식구의 옷을 해 간다고 한다. '차반'이라고 부르는 떡·엿·과일·고기·술 등의 음식도 준비해 가면 친정에서 동네에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곧 돌아가고, 신랑도 며칠 뒤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시댁으로 돌아갈 때에는 친정아버지가 데려다 주든가, 신랑이 데리러 오든가 한다. 이때 역시 차반을 장만하여 시가에 돌아온다.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는 '며느리 근친은 무릎 밑에 접어 넣고, 딸의 근친은 세 동네가 나누어 먹는다.'라는 속담이 전해온다. 이는 며느리가 근친을 가서 가지고 온 음식은 별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 딸이 근친 올 때 가지고 온 음식의 양으로 딸이 얼마나 시집을 잘 갔느냐를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한편 제주도에서의 근친은 신붓집에서 열리는 '사둔잔치'가 이에 해당한다.

특징 및 의의 근친은 전통혼례과정의 마지막 순서로, 엄격한 유교적 가족제도가 빚어낸 풍속이라 할 수 있다. 시집 생활 후 근친을 가는 전통적 형식의 준행遵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가치관과 가족제도 등이 변화함에 따라 근친은 사라져 가거나 그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한편, 근친은 사위가 장모를 위로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갈암집葛庵集』에 "근친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를 보면, 근친이 시집생활을 하는 여자들에게 얼마나 가슴 설레고 중요했던가를 알 수 있다.

참고문헌 太祖實錄, 荷齋日記, 육례이야기(권광욱, 해돋이, 2000), 한국 의례의 연구(송재용, 박문사, 2010),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박혜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필자 송재용(宋宰鏞)

근친혼
近親婚

정의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혼인.

내용 모든 사회에는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정하는 규칙이 있다. 족내혼族內婚과 족외혼族外婚 규정에 따라 사람들은 혼인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 족내혼은 일정한 집단 내에서만 혼인해야 한다는 것이, 족외혼은 집단 외부에서만 배우자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친혼近親婚은 인간 사회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근친상간 타부incest taboo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혈족 사이의 혼인이다. 즉, 범위는 다르지만 근친 사이의 혼인을 금하는 타부는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 근친혼이라 할지라도 이 근친상간 금지범위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근친혼은 그 사회에서 전혀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거나 적어도 용인되는 친척 사이의 혼인을 의미한다. 모든 사회에서 근친상간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혼인이며, 이를 제외하면 각각의 사회마다 근친상간 금기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근친혼에 대한 이해도 달라진다.

한국에서 근친혼에 대한 가치 부여는 시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왕실의 혼인 자료를 볼 때, 신라와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친인척 관계에서 혼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근친혼이 상당한 정도로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근친혼은 일체 금지되었고, 족외혼의 범위가 동성동본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다. 현재 다시 근친혼이 법률적으로 8촌 이내가 아니면 가능해졌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동성동본불혼이 중요한 족외혼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사촌 간의 혼인이 한국에서는 일체 금지가 되지만, 인접한 일본이나 서양 및 아랍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한국보다 근친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세계에서 근친혼 금기가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한다.

특징 및 의의 가까운 혈족이나 인척간의 혼인을 말하는 근친혼은 한국사회에서 금기에 해당한다. 근친혼 금기는 현대 한국사회가 계승한 중요한 전통으로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사회의 근친혼 금기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문화민족'이라고 규정짓는 중요한

도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참고문헌 인류혼인사(Edward Alexander Westermack, 정동호·신영호 역, 세창출판사, 2013), 한국가족의 사적구조(이광규, 일지사, 1977), Kinship & Marriage(Robin Fox,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필자 강정원(姜正遠)

기일비망기
忌日備忘記

ㄱ

기일비망기

정의 조상의 제삿일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비망록.

내용 조상의 제삿날을 월별, 혹은 조상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비망록으로, 한 집안에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치러야 할 제사를 잊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기록한 일종의 일정표이다. 기일비망기는 주로 조상의 제삿날을 기록한 것이지만, 가족의 생일, 세계도世系圖, 가례오복家禮五服, 조장식弔狀式 등을 첨부하여 참고하기도 한다. '기일록忌日錄' 또는 '기안忌案'이라고도 한다. 여성들이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작성하여 보관한 기일비망록도 있다. 일정한 형식이 없이 사용하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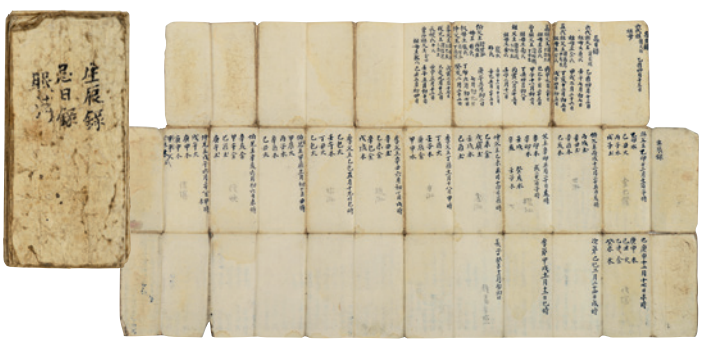

기일록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기일판 | 가로15 세로21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기일판 | 가로24 세로24 두께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편한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두꺼운 한지를 병풍식으로 접어 항상 휴대할 수 있게 만든 수진본袖珍本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가족의 생일을 기록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기일생신첩忌日生辰帖'이라고 부른다.

특징 및 의의 조상의 계대별로 제사일을 한데 모아 기록한 문서로 제사를 중시하는 예속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사진으로 보는 가정의례(조선일보사, 1989), 생활문화와 옛문서(국립민속박물관, 1990).

필자 이해준(李海濬)

기자의례
祈子儀禮

정의 자녀를 갖기 위해 행하는 의례儀禮.

역사 기자의례祈子儀禮는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타나는 '시조탄생'에 관한 기록을 볼 때 이미 역사의 이른 시기부터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수록된 단군신화에는 "웅녀熊女가 그와 혼인해 주는 이가 없으므로 매일 신단수神檀樹 아래에 가서 아이를 잉태하고자 정성을 다해 빌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웅녀가 신단수 아래에서 정성을 올리는 것은 곧 기자의례를 뜻한다. 특히 신단수

아래에서 정성을 드렸다는 것은 신수神樹에 깃든 정령과 같은 초월적인 힘을 지닌 존재의 힘을 빌려 아이를 낳고자 한 행위로, 이는 수목숭배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기자의례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큰 나무에 아들 낳기를 비는 기자의례로 전승되어 온 것이다.

또한 금와왕金蛙王 탄생신화에도 기자의례 관련 기록이 보인다. "북부여의 왕 해부루解夫婁가 늙도록 자식이 없어 후사後嗣를 구하고자 산천에 제사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그런데 왕이 탄 말이 곤연鯤淵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멈춰서서 눈물을 흘리자, 왕이 이를 이상히 여겨 그곳을 들춰보니 금색 개구리 모양을 한 어린아이가 있어 데려다 키웠다. 그가 바로 동부여의 2대 왕인 금와왕이다."라는 기록처럼 해부루 왕은 산천에 제사함으로써 금와왕을 얻는다. 이는 후대에 전해내려오는 기자의례 가운데 산이나 하천·기암괴석·기자암·기자석 등에 치성을 드리는 기자의례와 연결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당의 힘을 빌어 자식을 갖고자 했던 기자의례 풍속은 조선 후기에 출간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3월 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충청도 진천 풍속에 음력 3월 3일 삼짇날부터 4월 초파일까지 여자들이 무당을 데리고 우담牛潭의 동서 용왕당과 삼신당에 가서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비는데, 그 행렬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있다.

내용 기자의례는 일생의례 가운데 출생의례에 포함되는 의례이다. 남녀가 혼인하여 수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갖기 위해 의례를 행한다. 이를 기자의례라고 하는데, 종전에는 기자속祈子俗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기자의례는 자녀가 없을 때 행하지만 딸만 얻어 아들을 원할 때에도 행한다. 사실상 전통사회의 여성들에게 무자無子, 곧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칠거지악七去之惡의 하나일 만큼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아이를 갖기 위한 의례는 실로 중요했다.

기자의례는 그 정성을 드리는 방법과 대상도 다양하다. 이를테면 빌거나 굿을 하는 치성행위,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식음행위食飮行爲, 주술적인 물건이나 주술적인 힘을 이용하는 주술행위呪術行爲, 좋은 일과

가천암수바위 | 경남 남해 | 2010 | 국립민속박물관

선심을 쓰는 공덕행위功德行爲, 남녀 성기 모양의 돌이나 바위 또는 나무에다 잉태나 출산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모의행위模擬行爲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치성의 유형은 초월적인 존재나 영험이 있다고 믿는 자연물에 아이가 점지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기원 대상은 집 밖일 경우 산이나 바위·나무·절·산신당·삼신당·칠성당·용왕당 등이며 집 안일 경우 마루나 뒤꼍·부엌·윗방 등이다. 의례방법은 제물을 진설해 놓고 비손을 하거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한다.

비는 시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개 정월 대보름, 삼월 삼짇날, 사월 초파일, 오월 단오, 유월 유두, 칠월 칠석, 시월 상달 등 절기나 명절과 관련된 날에 이루어진다. 기자의례는 남모르게 비의秘儀로 해야 효험이 있다고 하여 대개 밤이나 새벽시간을 택한다. 의례를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목욕재계를 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것을 가린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산에 가서 3일·7일·21일·100일 기도를 드린다. ②절이나 산신각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③집안에서 성주·칠성·삼신·조왕·터주 등 가신家神에게 정화수를 떠놓고 빈다. ④샘이나 거목, 선바위와 같은 거암 등을 대상으로 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자암이나 기자석으로는 서울 인왕산 중턱에 있는 '선바위'와 충북 제천 송학면 무도리의 '공알바위', 전라도 지리산의 '선바위', 제주도 용담 냇가의 '석불' 등이 대표적이다. ⑤서

낭당이나 해변에 나가 용왕님께 빈다. ⑥정월 인일寅日에 부산 금정산 위 선바위에 가서 굿을 한다. ⑦칠석날 부산 봉래산 아래 당산나무에 가서 빈다.

둘째, 식음의 유형은 특정한 약물이나 음식을 마시거나 먹는 것이다. 남성을 상징하는 생식기나 물건, 또는 아들과 관련된 열매나 음식 등을 먹음으로써 그 기氣를 받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활용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약물의 경우 허준許浚이 편찬한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에서는 부녀자가 잉태를 바랄 때는 조경종옥탕調經種玉湯이 효험이 있다고 하였다. ②수탉의 생식기를 생으로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황소의 생식기나 살을 삶아 먹거나 설날에 낳은 달걀을 삶아 먹는다. 또 수평아리가 될 달걀을 매월 달 수 대로 삶아 먹는다. ③삼신당에 올려놓은 쌀을 훔쳐다 밥을 지어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④남의 집 금줄에 매단 고추를 훔쳐서 달여 먹는다. ⑤산모에게 첫국밥을 해주고 그 산모와 함께 첫국밥을 먹는다. ⑥한 개나 두 개만 열린 홍도 또는 석류를 따 먹거나 동쪽으로 뻗은 뽕나무 가지의 오디를 먹는다. 이 밖에도 금줄에 끼워둔 미역을 먹기도 한다. ⑦석불이나 미륵불의 코를 갈아 그 삶은 물을 마신다. ⑧아기를 잘 낳는 집의 행주나 주걱을 몰래 가져와 삶아서 그 물을 먹는다. 그 행주는 잘 간직해 두었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물가에 가서 태운다.

셋째, 주술의 유형은 특정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은밀한 곳에 숨겨두는 것이다. 여기서 특정한 물건은 대개 남성을 상징하거나 생산을 상징하는 주술적인 물건을 말한다. 그 사례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①다산한 여인의 월경대를 훔쳐와 몸에 두른다.

기자도끼 | 국립민속박물관

②아기 낳은 집 대문에 걸어놓은 금줄을 몰래 훔쳐와 자기 집에 모셔둔다. 또는 다산한 여인이 출산할 때 입었던 치마를 얻어다 입는다. ③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베개 속 또는 문 위에 붙인다. ④작은 도끼를 베개 속에 넣고 잔다. 특히 아들을 많이 낳은 집의 부엌칼을 훔쳐다가 작은 도끼를 만들어 여자가 베개 밑에 놓고 자거나 속옷에 차고 다닌다. 또는 기자도끼를 여자 허리에 차고 다닌다. ⑤상여가 나갈 때 공포 조각을 훔쳐다 속옷에 매달고 잔다. ⑥친정어머니가 준 은장도를 치마 끝에 달고 다니거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문턱 밑에 석 달간 묻어 두었다가 꺼내 허리에 차고 다닌다. ⑦아들 삼 형제를 둔 집의 수저를 훔쳐다가 부인의 베개 밑에 몰래 감추어 둔다. ⑧붉은 고추나 알밤 또는 은행을 주머니에 넣어 치마 속에 차고 다니거나 남편 베개 속에 몰래 숨겨둔다. ⑨호랑이 발톱이나 수탉의 생식기를 지니고 다닌다. ⑩신부가 신랑 집에 신행갈 때 신랑 집 마을에서 아들을 낳은 집 금줄을 몰래 떼어다가 가마 앞에 걸어둔다. ⑪임신할 때 까지 옷 속에 구슬을 간직한다.

넷째, 공덕의 유형은 여러 사람에게 공덕을 베풀어 자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인과응보因果應報에 따라 소원성취가 이루어진다는 불교적 관념에서 생긴 습속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①정월 대보름날 밤에 남편이 냇물에 징검다리를 놓아 많은 사람들이 편히 건너다닐 수 있게 해준다. ②칠월 칠석에 마을 공동우물을 퍼 마을 사람들이 늘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 ③허물어진 길을 잘 닦고, 마을길을 쓸어 마을을 깨끗하게 한다. ④부부가 절대로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으며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⑤시주승이 오면 시주를 정성껏 한다.

마지막 모의 유형은 남녀 성기 모양의 돌 또는 나무에 잉태와 출산의 모의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는 주술유형과도 상관성이 있다. 흔히 아들바위·성기암 등으로 불리는 남근석男根石이나 공알바위·치마바위 등으로 불리는 여근석女根石, 그리고 남근 또는 여근형국에서 행해지는 풍수상의 암석숭배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은 성교를 상징하는 유사한 것들과의 접촉을 통해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보다 적극적인 주술행위로 보통 치성행

기자치성암 | 경남 밀양 | 2004 | 국립민속박물관

위와 더불어 행해진다. 구체적인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아이를 낳지 못한 부녀자들이 밤에 몰래 남근석에 음부를 비벼대며 기도한다. 또는 여근석에 돌을 돌리면서 비벼 돌을 붙인다. ②기자석 앞에 실 한끝을 매놓고 다른 한쪽은 부인의 하복부에 둘러메고 기도한다. 하복부에 찌르는 고통이 올 때까지 며칠을 두고 계속한다. 이 방법은 조금만 움직여도 실이 끊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고역이 따른다. ③어멈바위라는 평평한 바위표면을 애돌[子石]로 갈아 오목하게 파놓고 그 애돌을 붙여두면 아들을 낳는다 하여 한밤중에 이 붙임바위를 찾아가 어멈바위를 갈면서 아들 낳기를 빈다. ④두 나뭇가지가 엉켜 한 나무처럼 된 연리지목連理枝木이나 사람의 다리 모양처럼 생긴 Y자형 나뭇가지가 있는 근처에서 부부가 동침한다. 또는 Y자형 나뭇가지에 돌을 끼워놓는다. ⑤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입었던 속옷을 입고 산실産室 아랫목에 앉아 아기 낳는 흉내를 내며 하룻밤을 지낸다. ⑥강원도 삼척 원덕읍 갈남리 해신당에 있는 남근에게 빈다. 이 남근은 해랑이란 처녀에게 바친 나무로 깎아 만든 신체神體이다. ⑦전라북도 순창 팔덕면 산동리 팔당마을에는 남근석이 있어 아기를 바라는 부녀자들이 이곳에서 빈다. ⑧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해안가 바위산 왼쪽에 있는 암굴에서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을 음부陰部에 쬐면 아들을 낳는다 하여 석양 무렵에 이곳에 와서 치마를 걷어 올린다.

특징 및 의의 기자의례는 글자 그대로 자식 갖기를 원해서 행하는 의례이다. 이는 생명을 존중하고 생산력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 대상이나 방법은 다양하지만 자식을 간구하는 마음은 누구나 공통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민속의례에서 중시되는 '정성'이 바탕이 된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는 속담이 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그 정성에 답한다는 뜻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자식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종교적 심성의 표출이 곧 기자의례 특징이자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三國史記, 三國遺事, 가신신앙의 성격과 여성상(김명자, 여성문제연구13,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양아록(이문건, 이상주 역, 태학사, 1997), 증보 한국민속학개론(박계홍, 형설출판사, 1997),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산속 상·하(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94), 한국민속학논고(임동권, 선명문화사, 197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성 숭배문화(이종철, 민속원, 2003), 한국의 여속(장덕순, 배영사, 1969).

필자 김명자(金明子)

기제사
忌祭祀

정의 조상의 죽음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유교의례儒教儀禮로서, 조상이 돌아가신 날 가장 이른 시각에 지내는 제사.

역사 중국 고대에는 기제사忌祭祀를 지내는 풍속이 없었고, 망자의 기일이 되면 살아있는 그 자손이 상喪을 당한 것처럼 예를 행하였다. 송대에 이르러 비로소 기제사의 예를 만들게 되었다. 이는 '종신지우終身之憂'라는 말처럼, 기일이 되면 상을 당했을 때의 마음으로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것이 옳다는 정신으로 만든 의례이다. 유교에서 제사는 '기복행사祈福行事'로서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만 기일에 지내는 제사는 상례와 같아 흉례凶禮에 속한다. 따라서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수록된 기제사에는 상례의 연장선에서 초헌初獻을 한 다음 "주인 이하는 곡哭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1390년(공양왕 2)에는 『주자가례』에 의거하였으나 "대부大夫 이상은 3대를 제사 지내고, 6품관 이상은

2대를, 7품관 이하 평민들은 부모제사를 지내도록"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둔 규정을 법령으로 제정하였다. 18세기에 이르러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대봉사四代奉祀를 하게 되자, 고조부모까지도 제사를 받들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기제사가 정착되었다.

내용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忌日' 또는 '휘일諱日'이라고도 한다. 기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의 전날인 입제일入祭日에 제물을 준비하여 돌아가신 날인 파제일罷祭日의 가장 이른 시각에 지낸다. 조상이 돌아가신 날짜에 기제사를 지내는 까닭은 조상이 돌아가신 슬픈 일이 생겨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파제일의 가장 이른 시각인 자시子時는 전통적으로 새로운 날짜가 시작되는 시간으로 간주되었다. 이 시각에 제사를 지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조상이 돌아가신 날짜의 가장 이른 시간에 조상제사를 지냄으로써 다른 모든 일보다 더 우선해서 조상을 받들어 모신다는 것이다. 둘째, 조상신이 활동하는 데 가장 좋은 시간대가 심야의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화되면서 자손들이 파제일 자시에 기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렵게 되자 파제일의 저녁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사례가 많아졌다.

기제사의 방식으로는 신주神主(또는 지방紙榜)를 제상 앞에 모시는 방식에 따라 기일을 맞이한 조상만 모시는 '단설單設', 기일을 맞은 조상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그 배우자, 즉 고위考位와 비위妣位를 함께 모시는 '합설合設'이 있다. 그리고 합설을 하더라도 고위와 비위의 상을 각각 차리는 '각설各設'도 있다. 기제사의 본디 뜻을 생각해 볼 때 조상이 죽었기 때문에 지내는 제사이므로 고위와 비위가 같은 날짜에 죽지 않았다면 단설이 맞다. 그런데도 조선시대의 기제도忌祭圖를 보면 단설과 합설이 공존하고 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이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禮로 보면 단설이 맞지만, 정情으로 합설도 무방하다."라고 하였다. 합설을 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평소에 남편이 밥을 먹을 때면 부인도 함께 먹는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한편, 대략 1990년대부터는 고위와 비위의 기일에 모두 제사를 지내지 않고 동시에 한 번만 지내는 '합사合祀'의 방식이 나타난다. 합사하는 경우, 보통 고위의 제사 때 비위도 함께 모셔와 제사 지내고 비위의 기일에는 따로 제사 지내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4대에 걸친 여러 조상을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한꺼번에 합사하는 방식도 있다.

기제사를 지내는 장소는 대청이나 안방이다. 반가班家의 전통이 남아있는 종가와 고택 등에서는 대청에서 기제사를 지내고, 여염집에서는 안방에서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러 가옥의 규모가 크고 유서 깊은 종가에서는 제사 전용의 제청祭廳이 별도로 있지만, 그 경우에도 일반 기제사는 안대청에서 지내고,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만 제청에서 지낸다.

자시가 다가오면 제물을 진설할 준비를 하고 축문을 미리 써두는데, 요즈음의 기제사에서는 축문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당이 없어 신주를 모시지 않는 집에서는 지방을 미리 써둔다. 기제사에 참여하는 제관과 참사자들은 직계자손과 당내堂內의 친인척으로 구성된다. 제관과 참사자들이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모두 마친 후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다. 기제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설위設位: 신위(신주 또는 지방)를 모시는 자리를 마련한다.
②진기陳器: 제사에 사용되는 기물을 늘어놓는 절차로, 이때 축문이나 지방을 작성한다.
③진설陳設: 설소과設蔬果라고도 하는데, 포·잔·수저·실과·채소처럼 식어도 되는 제수祭需를 미리 진설한다.
④출주出主: 신주를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곳으로 모셔오는 것인데, 지방을 붙이고 지내는 제사의 경우에는 이때 지방을 부착한다.
⑤참신參神: 참사자 전원이 신위에 재배한다.
⑥강신降神: 주인主人이 분향하고 술을 모사기茅沙器에 세 번 따른 다음 빈 잔을 원래의 자리에 올린다. 간혹 분향 이후에 재배하는 사례도 있다.
*신주를 모셨으면 참신을 먼저 하고, 지방을 써 붙였으면 강신을 먼저 한다.
⑦진찬進饌: 진설에서 차리지 않은 나머지 제수를 진설한다.
⑧초헌初獻: 주인이 신위에 첫 번째 잔을 올린다. 이때 적炙을 올리고 밥의 뚜껑을 연 다음, 축관이 주인의 서

진설

분향

헌작

헌작

헌작재배

진적

철상

기제사 | 강원 속초 | 2013 | 국립민속박물관

사신 재배

기제사 | 국립민속박물관

쪽에 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이어서 주인이 재배한다.

⑨아헌亞獻: 신위에 두 번째 잔을 올린다. 『주자가례』에는 주부가 아헌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안의 연장자나 주인의 동생이 하기도 한다.

⑩종헌終獻: 신위에 세 번째 잔을 올린다. 보통 귀한 손님이나 사위, 연장자 등이 한다.

⑪유식侑食: 주인이 종헌에서 다 채우지 않은 잔에 술을 가득 채우는 첨작添酌을 한 다음, 메에 숟가락을 꽂고 적이나 편에 젓가락을 올리는 삽시정저揷匙正箸를 한다. 가정에 따라 계반삽시啓飯揷匙를 하기도 하고 주인은 재배, 주부는 4배를 하기도 한다.

⑫합문闔門: 조상이 음식을 드시도록 기다리는 절차이다. 제상 앞에 병풍을 친 후 참사자들은 부복하여 조상이 수저를 아홉 번 뜨는 시간만큼 기다린다.

⑬계문啓門: 합문의 문을 연 다음 갱을 물로 바꾸고, 메 세 숟가락을 푸는 헌다獻茶를 진행한다. 물에 메를 푸는 것은 숭늉을 의미한다. 이후 조상신이 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참사자는 선 자세로 묵념하는 국궁鞠躬을 한다. 국궁이 끝나면 집사자가 수저를 거두고 메 등의 뚜껑을 닫는 철시복반撤匙覆飯을 행한다.

⑭사신辭神: 참사자 전원이 재배하는 것으로, 신을 돌려보내드린다.

⑮납주納主: 신위를 사당으로 다시 모셔드린다. 지방으로 제사를 지낸 경우에는 지방을 태운다.

⑯분축焚祝: 축문을 태운다.

⑰철撤: 제수를 모두 거두어들인다.

⑱준餕: 제관과 참사자들이 음복주와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음복飮福을 한다. 원래 기제사에는 음복 절차가 없으나 관행적으로 행한다.

2012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경상북도 안동에 거주하며 기제사를 지내는 5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실시한 '조상제사의 실태 및 의식 조사'를 살펴보면 제삿날은 돌아가신 날(25.4%)보다 돌아가신 전날(74.6%)이 약 3배 가까이 더 많았다. 돌아가신 전날에 지낼 경우에는 밤 11시~12시 사이에 지내는 비율이 51.9%로 매우 높았다. 이것은 파제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경우에도 밤 11시~12시 사이에 지내는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밤 8시~9시 사이에 지내는 것이 그다음이었다. 제사의 방식은 단설보다 합설을 하는 경우가 66.0%로 2배 이상 많았다. 축문은 생략하는 경우가 81.4%로 많았고, 술은 한 번이나 두 번 올리는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 이는 관습에 따르거나 참사자의 인원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아헌을 주부가 하는 경우는 32.3%이며 그 외에는 맏며느리 또는 며느리가 술을 올렸다. 돌아가신 조상을 한꺼번에 모셔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5.6%로 적었으나 합사할 경우에는 남녀 모든 조상을 한꺼번에 지내거나 여성의 제사를 생략하고 남성과 함께 지내는 사례가 비등했다. 기제사에서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은 제물의 종류와 조리법, 참사자의 대상이었다. 즉, 제물의 종류와 조리법을 간소화하였으며 참사자의 대상이 가족 중심으로 변화했다.

우리말에 '가가례家家禮'라는 말이 있는데, 의례를 행하는 예법이 가정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제사 역시 가정마다 예법의 차이가 있어 제사 시간, 절차, 제물의 종류와 양이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기제사는 현대인들에게 복잡한 제의 절차와 고향 땅까지 이동하는 고단함을 던져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기제사의 전통이 유지되는 것은 기제사를 통해 조상을 숭배하고 예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기제사는 유교 제사의 기본이 되는 제사로서 조상에게 예를 다하고 친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유교의례에서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제사는 유교적 전통문화에서 '효'의 실천과 맞닿아 있다. 특히 기제사는 사대봉사를 원칙으로 하여 생전 면식面識이 있는 조상에 대한 예와 효를 다하고자 한 것이다.

참고문헌 우리의 전통예절(김득중·유송옥·황혜성,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8), 전통적 기제사를 통해 본 조상관(배영동, 비교민속학23, 비교민속학회, 2002), 제사와 제례문화(박원재 외, 한국국학진흥원, 2005),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민속원, 2012), 주자가례(주희, 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배영동(裵永東)

기휘
忌諱

정의 가족의 본명을 부를 때 바로 부르지 않고 피하여 다르게 부르는 관습.

개관 기휘忌諱란 사전적으로 '꺼리어 싫어함' 또는 '두려워 피하다'를 의미한다. 기忌, 금기禁忌, 재계齋戒 또는 피휘避諱의 뜻으로 사용되는 기휘는 삼가는 정신적인 현상의 하나이다. 폴리네시아 토속어인 'taboo'와 'tabu'도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 가족관계에서 기휘는 종교, 특히 유교적인 전통의 영향이 크다. 부모를 비롯하여 존경받아야 할 조상(신)의 이름이 가진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不淨을 피하려는 언행을 말한다.

내용 기휘의 정확한 연원은 알 수 없다. 이름을 직접 호칭하거나 지칭하는 것을 기피하는 종교적인 관념觀念에서 비롯된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이름 명名'의 한자 가운데 '저녁 석夕'은 제사상의 고기 육肉이며, '입 구口'는 단순한 입이 아니라 제사에서 읽는 축문祝文을 넣는 그릇과 관련된다. 즉 아이가 태어나 일정한 시기가 되면 축문이나 족보族譜 등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름을 부여하고 조상신께 보고하는 고대의 명명의례에서 명名자가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유교 성립 이전부터 한자문화권에서는 이름에 대한 신성한 태도를 보였다. 조상에게 보고된 '알려진 이름[諱]'은 (조상)신들의 비호를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신성한 이름이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이름이 함부로 노출되어 불려서는 안 된다는 부정不淨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었다. 이 때문에 이름을 짓는 작명作名도 의례처럼 중시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생전에 쓰던 이름인 휘는 원래 죽은 사람의 생전 이름을 삼가 부르지 않는다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결국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의 생전 이름 그 자체를 휘로 여기게 되었다.

또한 명체불리名體不離 관념의 영향도 고려된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과 운명을 같이한다는 관념이 그것이다. 만약 이름이 다치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람과 이름이 길흉화복을 같이한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본명, 즉 휘가 흑마술 등의 주술 등에 의해서 해를 입거나 다칠까 봐 이를 철저하게 숨기는 관습이 발달하였다. 문령文靈, 즉 글에 영이 있다는 뜻으로, 이런 문자의 주술성과 금기를 반영한 것이 기휘이기도 하다.

한편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관념은 왕이나 조상 그리고 스승 등을 비롯한 웃어른에 대한 존경의 의미에서, 때로는 존경을 넘어 신성 측면에서 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금기시하였다. 이런 금기, 즉 기휘를 어기는 것은 불경한 행위로 치부되었으며, 그런 거대 종교적인 금기의 틀 속에서 피휘避諱라는 언어적인 전통을 만들어 냈다.

『예기禮記』「곡례曲禮」에서는 졸곡卒哭을 지낸 뒤에 비로소 휘한다든가, 두 글자로 된 이름은 한 글자만 휘한다든가, 조정에서는 사사로운 휘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산 사람에 대한 휘, 즉 생휘生諱의 풍습은 진秦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진시황秦始皇의 이름인 정政은 정正으로 부수를 빼는 등 획수를 조절하는 결획缺劃을 하였다. 이 외에도 다른 글자로 바꿔 쓰는 대자代字, 글자를 고쳐 쓰는 개자改字, 그 글자를 빼고 쓰는 결자缺字 등의 방법이 쓰였다. 이것 때문에 관명官名, 지명地名, 물명物名 등이 개폐改廢되는 일까지 생겨났다.

전통사회에서는 유교 확산에 따라 양반 등 지배계층은 자나 호와 같은 제2의 이름으로 부르는 유행이 생겼다.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예처럼 한 사람이 수십 개의 호를 가지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일반 백성들도 조상의 이름자를 피하는 풍습까지 생겨났다. 글을 읽을 때 5대조의 이름자가 나오면 해당 글자는 소리 내 읽지 않고 묵음으로 넘어가기도 하였다.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굳이 말해야 할 때는 이름 두 자를 연속적으로 말하지 않고 한 자씩 떼어 '○자 ○자'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기휘에서 비롯된 풍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홍길동전洪吉童傳〉에서 보이듯이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는", 즉 유교사회에서는 첩의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거나 형을 형이라 부르는 것도 금기 영역에 포함되는 차별이 존재하였다. 조금

다르지만 양반가班家의 기혼 여성 역시 자신의 출신 지명으로 지어진 택호宅號, 즉 '천안댁' 등으로 이름을 대신하였으며, 남편 역시 처의 택호로 불리기도 하였다. 아이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위해 아명兒名을 지어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불행을 차단하려는 기휘적 행동으로, 일종에 금기 현상이다. 이같이 기휘, 즉 터부는 미신적인 관습으로, 성스러운 것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위험한 것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계속 확장되는 사회적·관습적 현상이라는 특징과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고려조의 피휘법에 관한 연구(정구복,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상, 일조각, 1994), 삼국유사 사료비판(하정용, 민족사, 2005), 이름과 금기(연호탁, 사회언어학 22-1, 한국사회언어학회, 2014), 한자 백 가지 이야기(白川靜, 심경호 역, 황소자리, 2005),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하도겸(河度慊)

남귀여가혼
男歸女家婚

정의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례婚禮를 치르고 신부 집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한국의 전통적 혼인방식.

역사 '남귀여가男歸女家'란 남자가 여자집에 의탁한다는 의미이다. 신랑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랑 집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고례古禮'인 친영혼에 대칭된다는 의미에서, 조선시대에 흔히 '속례俗禮'로 칭해졌다.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데릴사위혼·솔서혼率壻婚 등으로 부르는 연구자도 있다. 데릴사위라는 용어는 진秦의 췌서제贅壻制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서漢書』「가의전賈誼傳」에 "진나라 사람은 부유한 집 아들이 장성하면 분가해 나가고, 가난한 집 아들이 장성하면 데릴사위로 나간다[出贅]."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 조선시대 문집에서 자주 언급 된 진췌秦贅·췌랑贅郎·췌서贅壻·췌객贅客 등은 모두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에서의 데릴사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1920년대 전후하여 성행한 것으로 알려진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의 혼인풍속인 솔서혼도 데릴사위혼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남귀여가혼은 그 기원이 고구려의 서옥제壻屋制로 추정된다. 『삼국지』「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서는 고구려의 혼속婚俗으로 서옥제의 내용에 대해 "혼약이 이루어지면 신부 집 뒤에 작은 집을 지어 '서옥'이라 칭하는데, 신랑이 저녁에 문밖에서 2~3번 간청하여 승낙을 받은 후 서옥으로 가며, 아이를 낳아 장성하면 부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서옥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후대의 '남귀여가혼'에서와 같이 여자 집에서 성혼하고 혼인생활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서옥제와 남귀여가혼은 혼인 후의 거주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서옥제가 혼인 후 일정 기간 처가에 머물다 마침내 남편 쪽으로 거주지가 정해지는 부처혼夫處婚이었다면, 남귀여가혼은 혼인 초기를 지난 후의 거주지가 남편의 집으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로 달랐다. 고려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신랑이 신부 집에서 평생 사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에 부인과 함께 돌아가거나 분가해 나가는 경우 등 다양한 거주형태가 나타난다. 손자가 생긴 후에도 처가에 머무는 경우나 아예 처가가 있는 고장을 자손 대대의 삶의 터전으로 잡는 경우까지 있었다.

내용 남귀여가혼은 친영혼親迎婚과 달리 여러 날에 걸쳐 혼례가 진행되었다. 성혼 첫째 날에는 신랑이 자신의 아버지나 큰아버지 등을 상객上客으로 동반하여 저녁 무렵 신부 집에 도착한다. 이때 신부 집에서 성찬을 차려 신랑 측의 손님을 대접하며 신랑은 별다른 의식을 치르지 않고 신부와 동침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에는 상견례 이전의 납채·납폐의 절차로 이미 성혼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부과되는 등 법적·사회적으로 부부로 공인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날에는 신부 집의 친척과 신랑의 친구 및 기타 많은 하객에 대한 잔치를 벌였다. 셋째 날에는 신랑과 신부가 비로소 상견례를 치렀다. 이때 교배례交拜禮에 이어 표주박잔으로 함께 합환주를 드는 합근례合巹禮, 함께 음식을 드는 동뢰연同牢宴 등이 시행되는데, 성혼 3일 만에 부부가 비로소 대면하여 음식을 함께 든다는 의미에서 이를 '삼일대반三日對飯'이라고도 칭하였다. 이상과 같은 절차가 모

두 끝나면 날을 잡아 신부가 시부모를 찾아뵙는 의식인 현구고례見舅姑禮를 치렀는데, 이는 시집에서 살기 위해 들어가는 신행의 현구고례와는 별개의 의식이었다.

남귀여가혼은 조선에 들어오면서 친영혼의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들이 성리학 이념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면서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해 혼인을 모두 친영례에 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영은 전통적 혼속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데 대한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국가와 일부 사대부가 민간의 반대를 무릅쓰고 친영례를 시행하려 하였던 것은 속례인 남귀여가혼의 절차가 성리학적 질서에 어긋난다는 점 때문이었다. 처방거주妻方居住를 전제로 하고, 성혼일에 동침부터 먼저 한 후 혼례 3일째 되는 날에야 상견례를 한다는 점이 친영혼에 비해 무례하게 비쳤던 것이다. 그럼에도 민간에서 남귀여가혼이 끈질기게 계속된 이유는 거주제의 변화에 따라 생활양식 자체를 바꾸는 데서 오는 어려움과 거부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려시대 이래 남녀균분상속에 의한 경제적 지원이나, 사위에게 아들 못지않은 혜택을 주었던 음서제 등도 전통적 혼인제를 뒷받침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친영혼을 솔선수범 해야하는 성리학자들도 속례인 남귀여가혼의 혼인방식을 고수하였다. 조선 전기 대표적 성리학자인 김종직金宗直을 비롯해, 정여창鄭汝昌·김굉필金宏弼·이황李滉·류성룡柳成龍 등의 가문 연고지로서 외가·처가·처외가 등이 내세워진 것도 남귀여가혼의 혼인방식 아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친영례 시행이 여의치 않자 친영례를 강요하는 대신 삼일상견례만이라도 당일상견례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명종明宗 대를 전후하여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였던 사람은 서경덕徐敬德과 조식曺植이었다. 당일상견례는 중종中宗 대에 서경덕 아들의 혼인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명종·선조宣祖 대를 거치며 조식·이황 등의 자녀들이 혼인할 때에도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남귀여가혼의 혼인절차 일부를 수정한 당일상견례가 어느 정도 사족들에게 수용되기 시작하자, 이에 고무된 일부 인사들이 좀 더 친영제에 가깝게 하고자 명종 대에 명일현구례를 첨가하여 반친영을 주창하였으나 널리 수용되지 못하였다. 명종대 이후 일반 사서인의 혼례는 전통적 남귀여가혼의 절차를 일부 수정하여 당일상견의 절차를 수용한 남귀여가혼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전기 이래 끈질기게 친영례 시행을 시도하였던 사대부는 친영의 요건 중 당일상견례만을 시행하여, "사정私情을 앞세우고 예의는 뒤로 한" 삼일상견례의 '무례한' 제도를 고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명종 대에서 인조仁祖 대 사이에 발간된 문집들에서 당일상견의 절차를 밟은 다음 거주지를 처가로 택

육예영상 | 평생도 중 부분 | 가로37 세로72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보이는데, 이를 일컬어 '시속時俗' '속례' '속제俗祭'라고 칭하였던 사례가 자주 나타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다. 당일상견의 절차를 수용한 새로운 남귀여가혼은 중종대에 서경덕이 처음으로 시행한 이후 조선 중기를 지나며 새로운 속례(이하 신속례新俗禮)로 널리 수용되었다.

신속례의 성립으로 친영제를 도입하려는 성리학자들의 노력이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니었다. 17세기 예학의 심화와 함께 고례의 시행이 다시 화두로 등장하였다. 거주제를 일단 논외로 하는 것은 반친영과 다름없으나, 반친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친영제의 요소를 좀 더 보강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인조 대 무렵 나타났다. 신랑집과 신붓집 사이에 임시로 관소館所를 마련하여 혼인의식을 진행한 '가관친영례假館親迎禮'가 그것이다. 그러나 가관친영례는 의례 자체가 가진 문제와 시행상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인조대부터 50여 년간 호서 사림을 중심으로 시도되다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변형된 형태로라도 친영례를 시행하려던 사대부들의 노력조차 중단되고 신속례로서의 남귀여가혼이 조선 후기 혼례의 주류가 되었으니, 이러한 사실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사대부의 문집이나 일기 등에, 신붓집에서 혼인 당일에 상견례를 한 후 신랑은 본가와 처가를 오가나 신부는 1~2년 자신의 집에서 머물다 시집으로 가는 사례가 간혹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결국, 조선사회는 건국 이후 왕실부터 일반인의 혼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친영례를 시행하려 진력하였으나, 왕실을 제외한 일반인의 혼례에서는 반친영이나 가관친영 등 변형된 형태의 친영례조차 조선 후기까지 끝내 정착시키지 못하였다. 전통적인 남귀여가혼을 약간 변형한 신속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비록 혼례 후 친정에 머무는 기간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은 엿보이지만, 전통적인 남귀여가혼의 끈질긴 잔존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친영'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선사회의 강박의식은 친영이라는 용어의 남발을 초래하여 마치 친영혼이 정착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당일상견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남귀여가혼조차 친영이라 부르거나, 일제강점기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한다.'는 어의에만 초점을 맞추어 신랑이 '신부 집에 (혼례를 치르기 위해) 가는 것'을 친영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친영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남귀여가혼은 거주방식이 처처혼妻處婚과 유사하다. 그러나 신혼기간 외에 전 혼인생활을 처가 또는 처가 근처에서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자식이 처가의 친족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혼인절차에서 상견례 전에 부부가 동침한다는 점과 혼인 후 상당기간 신부가 신랑 부모를 뵙는 정식 절차를 갖지 않는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남귀여가혼은 중국 문화의 막대한 영향 속에서도 한국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점, 신랑이 신부의 부모·형제·자매를 비롯한 처가 식구와 돈독한 관계를 갖게 되어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도 여성의 권리와 지위 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가족제도(노명호, 한국사15, 국사편찬위원회, 1995), 조선 혼인의 주요 형태인 솔서혼속고(손진태, 조선 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조선전기 혼인제도와 혼인에 대한 규제(장병인, 조선전기의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조선중기 사대부의 혼례형태(장병인, 조선시대사학보45, 조선시대사학회, 2008), 조선중기 혼인제의 실상(장병인, 역사와 현실58, 한국역사연구회, 2005),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박혜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혼례의 절차 및 의미에 대한 고찰(정종수, 민속학연구6,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필자 장병인(張炳仁)

남녀칠세부동석
男女七歲不同席

정의 7세부터는 남녀가 함께 앉지 않는다는 남녀 신체 분리에 대한 유교 관념.

개관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란 남성과 여성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이념인 남녀유별男女有別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유교 문화권 여성의 몸을 통제하던 대표적인 유교 관념이다. 이렇게 시작된 남녀의 분리는 이후 남녀의 일상을 지배하였다.

내용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말은 유교서 『예기禮記』「내칙內則」에 실린 "일곱 살이 되면 남녀가 자리를 함께하지 않으며, 함께 먹지 않는다七年男女不同席不共食."는 문장에서 유래한 것이다.

조선 건국 세력들은 사회를 성리학적 질서로 재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15세기에는 국가 제도와 각종 문물이 정비되었다. 그들은 이미 고려 말부터 정치 활동을 통해 사회를 재편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사회 구성의 첫 출발점인 남녀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방법은 대부분 여성을 통제하는 일이었다.

유교는 남녀 결합을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보았다. 남녀 결합으로 부부가 탄생하고, 부부 결합으로 인간의 사회 질서가 형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남녀 결합 이전에는 남녀를 분별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처럼 남녀 분별을 모든 예의 기본으로 삼은 것은 남녀의 성별 구분을 통해 사회 질서를 형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유교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구조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의 구성과 질서가 유교 이념에 따라 편성되었다. 특히 유교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 질서는 부계친父系親 중심의 종법적宗法的 가부장제로, 엄격한 남녀 구별이 필수적이었다.

남녀유별은 음양론陰陽論과 내외內外 관념을 통해 간명하게 해석된다. 유교는 '부부간의 위치가 음양의 나누어짐으로 인해 정해지며, 부부의 도는 음양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음양은 상호 대립적이면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차별

월하정인 | 신윤복 | 가로36 세로28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풍속화 | 가로31 세로37 | 국립중앙박물관

원리로 읽히면서 남녀 본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은 아프기 쉬운 약한 몸이자 편협한 성품을 가진 존재로 이해되었다. 또한 남녀를 안과 밖, 즉 내외 개념으로 파악하여 내외의 명확한 구별을 예로 보았다.

남녀유별은 삶의 공간과 직분 분리, 상호 불접촉 및 불간섭, 그리고 삶의 내용까지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결국 내외관은 여성의 삶 공간을 집 안으로 한정하고, 바깥 세계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이에 혼인 이후 여성의 삶은 남편과 시집에 국한되었다. 또한 남녀유별은 수동적인 여성 관념에 기초하여 여성을 남성에게 순종하는 존재로 규정하였다.

조선 조정은 여성을 남성으로부터 떨어뜨려 그 활동 공간을 가정 내로 한정하고 남녀의 상호 교류를 막았다. 이는 '내외법內外法'이라고 명명되었다. 1431년(세종 13) 조정에서는 양반 여성으로서 명산名山과 신사神祠에 내왕하는 자, 음욕을 자행한 자, 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습속을 어지럽힌 자는 실행失行으로 논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조선 전기에 '실행 부녀婦女'의 대표적인물은 종친宗親의 부인인 어우동於宇同으로, 그의 '간통' 사건에 대한 위정자爲政者들의 차별적 처리는 유교 이데

올로기에 따른 성윤리 의식을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게 하려고 하였던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알려준다.

조선 전기 내내 사대부 여성의 외출과 바깥 활동은 거듭해서 논란이 되었고, 조정에서는 규제에 많은 공을 들였다. 구체적으로는 사대부 여성의 사찰 출입 금지, 가마 사용의 의무화, 행락行樂 금지, 얼굴 가리기와 거리행사 관람 금지 등이 이뤄졌다. 17세기 이후가 되면 내외법에 어긋나는 여성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 기록은 이전 시기만큼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여성들이 공공연한 외출을 삼가기 시작하였고, 자신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유교는 성별을 신체 기관에 따라 남녀로 분별하고 다른 존재로 규정하여 그에 합당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는 음양론과 내외 분별을 그 내용으로 삼는 남녀유별 원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경우 조선 건국 이후 이러한 유교식 사회 구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남녀유별의 유교 관념이 제도화하고 확산되었다. 이는 주로 여성에 대한 통제 형태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이숙인, 여이연, 2005), 예와 수신으로 정의된 몸(김언순, 몸으로 본 한국여성사, 경인문화사, 2011), 조선시대 부녀의 노출과 외출(정지영, 여성과 역사2, 한국여성사학회, 2005), 조선시대 의학서로 본 여성 몸 담론(하여주, 역사와 경계109, 부산경남사학회, 2018), 조선전기 어우동 사건에 대한 재검토(정해은, 역사연구17, 역사학연구소, 2007), 조선초기 내외법의 성립과 전개(이순구, 청계사학5, 청계사학회, 1988).

필자 하여주(河如株)

남매
男妹

정의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 중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이르는 말.

내용 남매男妹는 성별이 다른 남자와 여자 동기同氣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양상은 동일한 성별의 동기에게 쓰는 '형제'나 '자매'와는 용법을 달리한다. 우선 이남매, 삼 남매, 사 남매, 오 남매와 같이 수사를 사용하여 구성원 전원의 수를 표현하는 방법과 관련된 용법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이는 성별이 동일한 대상에게 사용하는 형제·자매와는 달리 성별이 다른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어휘인 까닭에 '아들 하나에 딸 하나, 아들 셋에 딸 둘, 딸 둘에 아들 하나'와 같은 방법으로 남매를 구성하는 대상의 성별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삼 남매 이상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성별의 속성에 따라 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가령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과 같은 순서로 삼 남매가 구성된 경우 '둘째 딸'은 전체적인 동기 관계에서 두 번째 순서에 위치하지만 여성인 딸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첫째 딸'로도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남매의 경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삼은 언어 사용자들의 개별적인 용법이 형제·자매와 비교하여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어휘이다.

특징 및 의의 남매는 일상 언어생활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어휘는 아니다. 보통 가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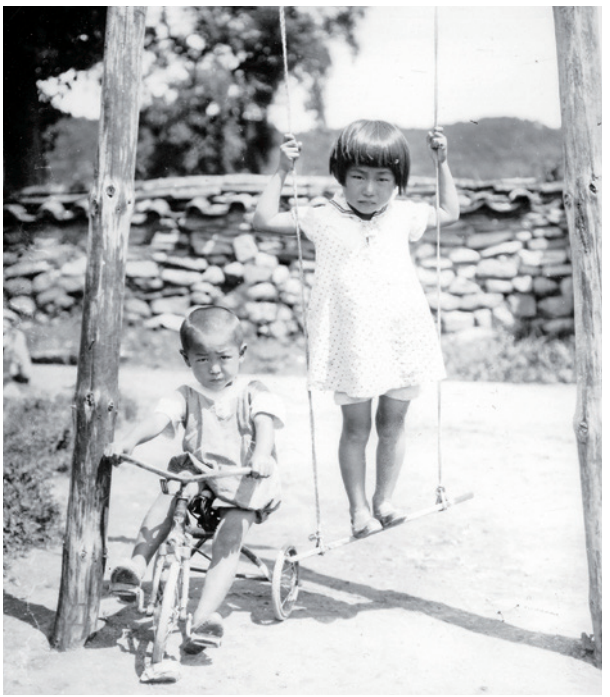

남매 | 가로12 세로16 | 일제강점 | 국립중앙박물관

오누이 맷돌 굴리기 | 가로21 세로30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할 때 사용하거나 지시 대상이 대화에 참여하여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그와의 관계를 소개하는 경우에 사용될 정도로 사용 빈도는 낮다. 더욱이 한 자녀 가정에서 태어난 외동이나 형제 또는 자매만으로 가족이 구성된 경우라면 친족어 남매를 사용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또한 남매는 형제·자매와 동일하게 한자어로 구성된 어휘이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경우 윗사람의 의미를 가진 '형兄'과 '자姉'가 선행하고 아랫사람의 의미를 가진 '제弟'와 '매妹'가 후행하는 형태로 결합한 어휘이다. 하지만 남매는 아랫사람의 의미를 가진 '매妹'만 존재할 뿐 윗사람의 의미를 가진 어휘가 위치해야 할 자리에 남성의 의미를 가진 '남男'이 결합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 가정에서 남성의 위치를 여성보다 우위로 여겨왔던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의 전통 속에서 친족어가 발달한 결과 중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한국어 친족어의 용법을 살펴보면 상·하 관계의 구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나이가 많은 대상을 윗사람, 나이가 어린 대상을 아랫사람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친족어인 '형' '언니' '누나' '오빠'의 사용이 그 예가 된다. 다음은 나이와 관계없이 동일한 항렬의 경우 남성을 여성보다 상위관계로 여기는 특징으로, 남편과 아내를 지칭하는 '부부夫婦'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 '부모父母'에서 남성을 뜻하는 부夫와 부父가 선행하는 예를 통해 관련 인식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특징은 남자의 의미를 가진 '남男'이 선행한 '남매'에서도 나타나며, 남성의 지위를 여성보다 상위관계로 여긴 전통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게 한다.

이런 인식은 현대에 와서도 일부 존재하는 듯하다. 실제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은 남매의 기본 의미를 '오빠와 누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설정하여 누나와 남동생의 관계에 초점을 두지 않는 어휘로 정리하였다. 하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남매'는 누나와 남동생, 오빠와 여동생 관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친족어의 호칭어로서 확장·사용 양상(김광순, 한국어 의미학48, 한국어의미학회, 2015), 한국어 친족어의 의미(김광순, 박문사, 2017).

필자 김광순(金光淳)

남매혼설화
男妹婚說話

정의 인류의 종족 번식을 위해 하늘의 뜻을 물어 허락받고 남매가 혼인한다는 내용의 설화.

내용 친남매가 혼인한다는 것은 인류의 대표적인 금기인 근친상간近親相姦으로, 윤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설화에서는 남매가 욕망에 의해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설정된다. 주로 대홍수로 인해 인류가 멸절하고 남매 단 두 사람만 생존하게 되며, 이들은 인류의 종족 번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혼인하여 자손을 퍼뜨린다. 홍수가 아닌 전란戰亂이 배경인 이야기도 있다. 이 설화는 인간의 윤리론과 존재론이 극명하게 충돌하는 경우를 잘 보여

준다. 남매는 하늘의 뜻을 물어 허락을 받은 후 혼인을 한다. 천의天意를 확인하는 방식은 몇 가지로 유형화된다. 남매가 각각 다른 산봉우리에 올라 연기를 피우자 연기가 서로 합쳐진다. 남매가 다른 산봉우리에서 암수 맷돌을 아래로 굴리자 맷돌이 서로 합쳐진다. 남매가 손목에서 피를 떨어뜨리자 그 피가 서로 합쳐진다. 이 같은 초자연적 신호를 바탕으로 남매의 혼인은 정당화된다.

필자 오세정(吳世晶)

남아선호사상
男兒選好思想

정의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관념 하에 여아보다 남아를 선호하는 사상.

역사 권력이 발생하고 그것을 상속한다는 개념이 생기면서 아들 선호는 시작되었다. 아들에서 아들로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적장자嫡長子 위주의 가계家系 계승繼承을 종법宗法이라고 불렀다. 종법에 의하면 적장자는 제후가 되고 그 밑의 아들들은 대종大宗 혹은 소종小宗의 대표가 된다. 이른바 적장자상속주의嫡長子相續主義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적장자, 즉 맏아들의 위치는 중요하였다. 물론 유목민족 중에는 말자末子상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막내아들이라 해도 아들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대에 권력 계승이 부계 중심이기는 하였지만 반드시 적장자 혹은 아들 상속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아들이 우선이기보다는 혈통이 앞섰다. 신라 선덕여왕이 즉위할 때 '성골남진聖骨男盡'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성골 남자가 더는 없기 때문에 여왕으로 계승한다는 뜻이다. 진골 남자는 많았지만 성골 여자를 택하였다는 것이다. 즉 아들이 우선이기는 해도 아들이냐 딸이냐의 문제보다 더 순수한 혈통과 신분이 우선이었다. 이러한 관념은 고려시대까지도 이어졌다.

물론 아들이 왕위계승을 하지만 왕위계승자 결정에 어머니 쪽 신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양쪽 혈통의 순수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부계父系 중심의 가계 계승 의식이 강해지고 제사가 보편화되면서 그 주제자인 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커졌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아들을 선호하는 남아선호사상男兒選好思想은 매우 강해졌다.

내용 조선 초기까지는 가계 계승 의식이 강하지 않았다. 이른바 대代를 잇는다는 생각이 확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제사를 반드시 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았다.

1442년(세종 24) 8월 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 "지금 세속에서는 비록 봉사할 아들이 없더라도 여손女孫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자식을 빌려 후사後嗣로 삼지는 아니하니 이것은 사람의 정리가 본디 그러한 것입니다. …… 덕생의 토지를 외손에게 주어 제사 지내게 하신다면 그 자손이 마음을 다하여 봉사할 것이니 귀신이 감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덕생의 아우 우생의 차자로 후사를 삼게 한다면 이는 입후立後된 자가 아들이 되어 재산을 가지고 덕생의 외손과 다툴 것이니 정리가 순하지 못할 듯합니다." 15세기 중반 조선에서는 아직 반드시 제사를 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자를 들이기보다는 딸의 자손, 즉 외손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게 더 정리에 맞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이 주장대로 김덕생의 외손이 제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조선 초기 실록에서는 인물을 묘사할 때 무자無子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와 같이 가계 계승 의식이 뚜렷하다면 당연히 무자라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양자를 해서 아들을 두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자라는 기록이 보이는 것은 아직 아들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15세기까지는 족보에서 본손本孫만이 아니라 외손까지 모두 기록하는 특징을 보였다.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1476)에는 아들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본손만이 아니라 사위와 외손이 모두 함께 기록되어 있다. 출생 순도 아들과 딸 구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

록하고 있어 후기 족보에서 선남후녀先男後女, 즉 아들 먼저 기록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는 당시 재산상속에도 나타난다. 『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 사천조私賤條에는 "부모 노비는 승중자承重子에게 5분의 1을 더해 주고 여러 자녀에게는 똑같이 나누어 준다."라고 되어 있다. 아들과 딸의 재산상속분이 같다. 재산상속에서 같은 몫을 받는다는 의미는 크다. 가장 중요한 경제권에서 아들과 딸이 동등한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중국과 달리 조선은 부계 중심으로만 신분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계혈통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이 같은 상속 개념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조선 초기까지는 가족 구성 내에서 아들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다. 아들이 없을 때 무자로 있기도 하고, 제사는 외손이 지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가면서 부계 중심과 가문家門 중심이 되고, 이에 따라 아들의 중요성은 커지게 된다. 조선이 국가 운영의 많은 부분을 가족에게 일임하면서 부계혈통 가문의 위치는 더욱 중요해졌다. 조선 후기가 되면 족보族譜는 부계 중심이 되고 외손은 줄어들어 사위를 기재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리고 제사가 중요해지면서 아들이 있어야 하고, 아들이 없으면 입후를 하였다. 아들에 의해 제사가 치러지고 가문이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맏아들, 즉 종손은 중요성이 더 커지고 그 밖의 아들들에 비해 지위가 우월해졌다. 아울러 종부의 위치도 중요해졌으며, 여자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들이 없다면 아들을 만들어야 하였고, 따라서 입후가 만연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남아선호사상은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든 아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입후를 통해 아들을 만들었다. 조선에서 입후를 더 해야 하는 이유는 첩妾의 아들, 즉 서자庶子로는 집안을 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국대전』에는 처妻와 첩 모두에게 자식이 없어야 입후한다고 하였으나 현실에서는 누구도 서자로 집안을 이으려고 하지 않았다. 『병자일기丙子日記』에서 남평조씨南平曺氏는 서자 천남이가 있지만 죽은 아들에게 양자를 입후한다. 서자가 있어도 입후하는 것이다. 조선에서 남아선호사상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

1970년대 산아제한 포스터 | 보건복지부

조선을 통해 강력해진 남아선호사상은 근대 이후에도 그 영향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20세기 중반까지도 대를 이어야 한다는 관념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 딸을 5, 6명씩 낳는 경우도 있었다. 또 아들이 없으면 양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산아제한 개념이 확대되면서 남아선호사상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캠페인이 정착하면서 더 이상 아들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딸만 둘이어도 더는 출산하지 않는 가정이 늘어갔다. 대가족의 가계 계승이나 제사 관념도 약화되었다. 그리고 사회 진출을 통해 여성의 경제력이나 지위가 높아진 것도 남아선호사상이 줄어드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남아선호사상은 역사적 유물이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남아선호사상의 특징은 아들 선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만들어 낸다는 데 있다.

아들이 없으면 대부분 입후, 즉 양자를 해서 적자嫡子를 만들었다. 『경국대전』에 적·서 모두 아들이 없어야 양자를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조선시대에는 서자가 있어도 양자를 하였다. 적처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서자가 있어도 양자해서 자신의 아들로 만들고, 그 양자에게 집안을 잇게 할 수 있었다. 중국이 서자로도 집안을 잇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우리나라에서 적처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고대 이래 혼인에서 여자 집안이 남자 집안과 대등한 협력관계를 이루며 그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丙子日記, 三國史記, 世宗實錄, 16세기 양반 남아의 성장 과정과 교육(이성임, 고문서연구63, 한국고문서학회, 2023), 17세기 입후의 요건과 첩자계승(고민정, 한국학39-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19세기 충청도 양반 가문의 입후 사례연구(이대화, 한국학연구6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3), 조선후기 양반 여성의 모권과 입후 분쟁(한효정, 여성과 역사38, 한국여성사학회, 2023).

필자 이순구(李舜九)

남편
男便

정의 부부 중 남성 배우자를 가리키는 말.

내용 남편男便은 여성이 자신과 결혼한 남성을 부르거나 부부 중 남성 배우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남편 이외에 부夫, 영감, 부군夫君, 바깥양반, 우리집양반, 서방書房, 신랑新郎, 주인主人, 망부亡夫, 낭군郎君, 애기아버지, 지아비 등의 용어가 있다. 부부 두 사람만 있을 때 아내가 남편을 호칭하는 경우와 부부 외의 제3자가 함께 있을 때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다. 또한 자신의 남편을 지칭하거나 상대의 남편을 지칭하는 경우 등에 따라 '남편'을 의미하는 호칭을 구분하였다. 다만 한국인은 친족원이나 친족이 아닌 남 앞에서는 남편, 서방, 주인 등의 명료한 호칭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부 둘만 있는 상황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서방님' 또는 '여보' '당신' '임자' 등으로 부르거나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이름을 붙여 '아무개 아버지'라고 하였고, 남편이 벼슬이 있을 때는 '나으리' '영감' '대감'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부부의 이혼과 재혼이 자유롭지만 조선시대는 신분에 따라 사정이 달랐다. 양인이나 천민과 달리 양반의 경우에는 이혼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남편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정식 부인과 함부로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 다만 남편은 아내가 사망한 경우 3년이 지난 후 재혼하여 새 아내를 얻을 수 있고, 아내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첩을 두는 일도 용인되었다. 아내가 사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부모가 원하여 재혼할 것을 명하거나 마흔이 넘었는데도 아들이 없는 남편은 부인 사후 1년 만에 재혼이 가능하였다.

이에 비해 양반인 여성에게 남편은 평생 한 사람뿐이고, 남편이 사망하였다 해도 재혼하기는 어려웠다. 일부종사一夫從事 또는 불경이부不更二夫라 하여 아내는 처음 혼인한 한 사람의 남편을 평생 섬기고 절의를 지켜 열녀烈女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권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고 새로 남편을 맞이하는 일은 아내 자신은 물론 아내의 친정과 시가媤家 모두 실질적인 불이익과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큰 결정이었다. 따라서 젊어서 혼자가 된 청상과부는 물론 혼례를 치르지 않고 정혼定婚한 상태에서 남편 될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도 그의 아내로서 평생 홀로 살아야 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적 질서가 확산되면서 이후 유교 문화는 가족·친족 체계를 포함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층만이 아니라 하층 노비 신분에까지 유교적 가부장제 관념이 수용되어 나갔다. 이러한 영향은 조선시대로 끝나지 않았고, 부계父系혈통 중심의 관념은 현재까지도 한국인의 행동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성 중심의 가족 질서가 확립되면서 부부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가정 내에서 권한이 더 많은 존재로 대우받았다. 삼종지도三從之道나 여필종부女必從夫 등으로 표현되듯이 아내가 가계 계승자인 남편의 뜻을 받들고 따르는 것을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남편의 지위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화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일제강점기 관련 법규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심해졌다. 1909년 〈민적법〉과 1922년 〈조

사랑채 | 명재 고택 | 충남 논산 | 정정남

선호적령〉을 통해 적장자嫡長子가 상속하는 호주戶主제도를 확립함에 따라 부계 계승이 법제도로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주제도는 2007년에 폐지되었으므로 부부간의 법적 평등은 이전보다 강화되었고, 관습과 판례 역시 가부장제적 유습遺習에서 벗어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남편과 아내는 부부유별夫婦有別이라 하여 각기 본분이 다르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남편과 아내는 가정 내에서 역할뿐만 아니라 점유하는 공간도 달랐다. 경제적 여건이 허용된다면 양반 가정의 집은 안채와 사랑채로 구분하여 짓는 것이 통례였다. 이때 아내는 안채, 남편은 사랑채에 각각 머물렀다. 사랑채는 남편이 일상생활을 하고 외부 손님도 맞아 교유交遊하는 공간이었다.

남편은 가족의 대표권, 감독권, 재산권 등을 가지고 가장家長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가족 대표로 지역공동체 회의에 참가하여 가족구성원의 의사를 표명하고, 지역공동체 행사에 참가하였다. 또한 가족구성원을 지도하고 통솔하며, 가족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가족 구성원이 외부에서 한 행위에 도의적 책임을 졌다. 아울러 가장은 생계 활동을 통해 가족이 안정적으로 의식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하고, 가족 재산을 소유·관리·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

조선시대 이후 줄곧 부부의 자녀는 남편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였으나 〈민법〉 개정으로 2008년 이후에는 부부가 합의한다면 자녀가 아내의 성을 따를 수도 있게 되었다.

속담 중에 '겉보리 서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다.' '처가살이가 굶는 내 집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남편은 처가살이를 원하지도 않고, 처가살이가 쉽지도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남편은 주로 처가 쪽에 거주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16세기까지의 조선에서는 남편은 아내의 본가, 즉 처가에서 혼례를 치른 후 자기 집과 처가를 오가거나 처가에서 살았다. 그러다 남편이 아예 처가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처가에서 아내에게 물려준 가옥, 토지, 노비 등의 재산이 주로 처 근처나 처가와 관련 있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혼인 풍습이 변화하면서 장남은 물론 차남 이하의 아들도 처가살이가 아니라 아내가 시집으로 들어와 시집살이를 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조선 중기까지도 딸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균등하게 재산을 상속받았다. 조선 후기가 되어 집안을 잇고 제사를 맡는 장자長子, 즉 큰아들을 우대하는 재산상속이 이루어진 뒤에도 딸의 몫이 줄어들었을 뿐 상속에서 아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가장인 남편이 가족의 재산을 소유·관리하는 권한을 지니지만 조선시대 남편과 아내의 재산은 혼인 후에도 부변夫邊과 처변妻邊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었다.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전유專有하며 가정의 법률적 권리와 행위를 대표하는 관습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법제가 이식·변용되면서 강화된 결과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징 및 의의 '남편'은 부부 가운데 남성을 지칭할 때 법적·행정적 용어로 사용된다. 즉 부부 상호 간에 부르는 호칭보다는 제3자가 부부 가운데 남성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존칭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참고문헌 국어 부부호칭의 사회언어학적 고찰(이옥련, 아시아여성연구26,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 1987), 조선 양반의 일생(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글항아리, 2009), 조선시대 생활사2(한국고문서학회, 역사비평사, 2000),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한국인의 친족호칭과 친족조직(최재석, 아세아연구6-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3).

필자 이대화(李大和)

납골당
納骨堂

정의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담은 항아리를 안치해 두는 시설.

내용 납골당納骨堂은 시신의 유골을 수습한 용기를 안치해 두는 시설을 말한다. 최근에는 납골당이라는 용어가 혐오감을 줄 수 있다 해서 '봉안시설'로 대체되어 가는 추세이다. 납골시설은 형태별로 납골당, 납골묘, 납골탑으로 분류된다. 납골당은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형태의 납골시설이고, 납골묘는 분묘 형태로 조성한 뒤 유골함을 안치하는 방식이며, 납골탑은 탑을 만들어 그 안에 유골함을 모시는 형태이다.

납골당 | 경기 파주 | 국립민속박물관

납골시설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납골당이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건물 내에 우편함 구조로 지어진 형태, 실외에 벽 모양으로 세워둔 옥외벽식 형태, 거대한 분묘 모양으로 만든 왕릉식 형태 등이 있다. 문중이나 가족 납골당의 경우 분묘 모양의 납골묘와 탑 모양의 납골탑 등 형태가 일반적이고, 간혹 땅에 유골함을 묻고 비석을 세우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납골당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가장 많은데 불교와 천주교가 대표적이다. 불교에서 운영하는 사찰 소속 납골당은 경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사설 납골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 천주교는 교구 소속의 공동묘지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신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은 대부분 공원묘지 내에 자리하고 있고, 납골묘와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문중門中과 종중宗中에서 설치한 납골당은 성원(후손)에게만 사용허가권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기업형 납골당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대부분 민간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무덤이나 사리탑에 유골을 안장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납골'이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1912년에 제정되어 1961년까지 시행된 〈묘지·화장장, 매장 및 화장취체규칙〉에도 납골(당)이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그

러다가 1933년 경성부(현재 서울시) 화장장의 신문 기사에서 '납골당 사용료'라는 문구가 최초로 등장한다. 이후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장(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중 "타인의 위탁을 받아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납골당으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이라는 내용에서 '납골당'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1981년 3월 16일 앞의 법률을 개정하면서 '납골묘(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유골을 땅에 납골한 분묘는 평분平墳으로 하되,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조물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수장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납골묘(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납골' 및 '납골시설'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내려졌으며, 이후 2007년 5월 25일 법률이 재개정될 때 '납골'은 '봉안'으로, '납골시설'은 '봉안시설'로 대체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기반을 둔 유교식 매장埋葬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화장은 풍토병 환자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다가 1912년 일제강점기 때 〈묘지·화장·화장장에 관한 취체규칙〉이 제정되면서 화장을 실행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으나 마땅한 납골시설이 없었던 까닭에 가루로 된 유골을 산이나 강에 뿌리는 방식을 취하였다.

현대식 납골시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0~1970년대이지만 납골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당시 인구 증가에 따른 거주지 확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묘지 강산을 금수강산으로' '묘지공화국 해결' 등의 구호를 내세워 국민계몽을 실시함에 따라 화장률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특히 1990년에 접어들어 "묘지 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장해야 하고, 화장을 하면 반드시 봉안해야 한다."는 강력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화장문화는 더욱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납골당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영리법인 및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문화 및 납골당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탓에 현재 화장장과 납골당 부족 현상이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기준으로 묘지가 전 국토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25만 기의 새로운 묘지가 조성되는 탓에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이르는 국토가 묘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을 경우 묘지 수급 부족으로 공급 한계에 이르면서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산과 평야가 만나는 지점마다 묘지가 있어 국토개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친족 관념의 약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무연고 묘지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묘지 조성으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화장문화를 적극 권장하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납골당 외부 분향소 | 경기 파주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후 600년이 넘도록 유교의 매장문화를 시행해 왔다. 특히 조상의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불효라고 여겼던 까닭에 화장법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강하였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도시화 등에 따라 묘지의 국토 잠식 문제, 묘지 관리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화장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납골당의 저렴한 요금, 위생적이고 고급화된 시설, 사후 관리의 간편함 등에 힘입어 납골당 안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현대 한국 장묘문화에 있어 일본식 화장·납골의 영향과 그 문제점(김시덕, 한국민속학43, 한국민속학회, 2006), 화장을 하면서 무덤도 달라졌다(실천민속학회, 민속문화가 외래문화를 만나다, 집문당, 2003),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김미영(金美榮)

내롱

정의 흑산도의 친족 조직으로, 시제를 모시는 단위.

개관 전라남도 신안 흑산도에서는 시제時祭를 모시는 단위를 '내롱'이라고 한다. 이는 문중門中의 '파派'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종손宗孫이나 문장門長 개념이 없다는 점에서 '파'와 다르다. 장남부터 분가하는 것이 전통인 흑산도에는 막내만 마을에 남아 가계를 계승하므로 친족원들 사이가 멀고 문중 조직 발달도 미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제時祭는 내롱별로 돌아가면서 모신다.

내용 흑산도는 장남부터 분가하고 막내가 남아서 가계家系를 계승하는 말자상속末子相續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산악 지형으로 이뤄진 흑산도는 토지가 좁아 농업에 불리한 반면 어업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남부터 서둘러 분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 가구원 수를 줄이고 가구 수를 늘리는 방법이 노동에 참여하는 인원을 많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가한 아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다른 마을이나 육지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마을에는 막내만 남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분가의 전통으로 마을에 남은 사람들의 친족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흑산도는 조선시대에 귀양지로 이용되어 양반이나 선비들이 귀양 오는 경우가 많았다. 정약전丁若銓, 최익현崔益鉉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귀양지에서 한학漢學을 가르치기도 하여 흑산도에는 유교적 전통이 잘 남아 있다. 따라서 조상제사나 선조를 모시는 시제가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후손의 역할로 여겨지고 있다. 형들이 마을을 떠나기 때문에 제사는 마을에 남은 막내의 몫이었으며, 시제는 마을에 남은 후손들 전체의 몫이었다.

흑산도 사리마을 근경 | 전남 신안 | 2000 | 김창민

흑산도에서 시제를 모시는 단위를 '내롱'이라고 한다. 내롱은 문중의 '파'와 유사하지만 파의 중심인물인 종손이나 문장이 내롱에는 없다는 점이 다르다. 장남들이 대부분 분가하여 마을을 떠나고 막내들이 남아서 가계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종손 개념이 성립하지 못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제는 문중에서 모신다. 문중은 시제를 모시기 위하여 공유 재산을 마련하며, 문장이나 종손이 중심이 되어 시제를 모신다. 그러나 흑산도에서는 내롱별로 돌아가면서 시제를 모신다. 흑산도의 모래미 마을에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는 세 개의 내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향조 이후 모든 조상의 시제를 세 내롱이 돌아가면서 모신다. 시향밭이 있는 내롱은 시향밭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시제를 모시며, 시향밭 같은 공유 재산이 없는 내롱은 내롱 구성원들이 비용을 분담하여 시제를 모신다.

흑산도에서 내롱이 중요한 친족집단인 이유는 조상숭배 의례에서 시제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사는 각 가구에서 모시지만 시제는 내롱이 모신다. 마을에 같이 살고 있는 형제도 없는 상황에서 증조부까지 제사를 모시는 것은 개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제사를 일찍 중단하고 시제로 모시려는 경향이 강하다. 시제는 모든 조상을 하루에 모시는 까닭에 가구별로 제사를 모시는 것보다 부담이 적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내롱은 시제를 모시는 단위이기도 하지만 이런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막내들만 남아 친족관계가 멀어진 친족원들을 가까운 관계로 인식하게 하는 문화적 장치이기도 하다. 촌수가 먼 친족들이 같은 내롱 구성원이 됨으로써 친족관계를 가깝게 인식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흑산도에서는 부모와 함께 생업을 한 막내에게 가계를 물려주고 제사를 상속하게 한다는 점과 내롱별로 돌아가면서 시제를 모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

조상방의 위패함과 제기 | 전남 신안 | 2000 | 김창민

다. 이는 흑산도라는 자연환경에 잘 부합하는 문화 전통이다. 장남이 결혼한 후에도 분가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면 가구 규모가 커져 좁은 경지를 가진 가구의 경제적 형편은 더 나빠지게 된다. 따라서 장남이라 할지라도 결혼하면 분가를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막내가 가계를 계승하고 제사도 물려받게 된 것이다. 장남들이 분가하여 마을을 떠나기 때문에 친족집단 형성이 어려웠고, 이는 시제를 모시는 단위로서 내롱이 만들어진 배경이 되었다. 결국 사회조직은 자연환경과 부합하는 형태로 형성된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흑산도의 친척(김창민, 비교문화연구7-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1).

필자 김창민(金昌民)

내외
內外

정의 조선시대 남녀 간에 자유로운 접촉을 피하는 관습 또는 법.

역사 『예기禮記』 내칙內則의 "남자는 안의 일을 말하지 않고, 여자는 밖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男不言內女不言外."는 남녀 역할 분담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남녀 간의 공간 분리와 영역 존중의 의미가 크다. 나이에 따른 규범에서도 이는 다시 한번 강조되어 "7세가 되면 남녀는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다. 이른바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다. 이 조항은 『소학小學』에도 그대로 실려 조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조선 초기에는 남녀 간에 비교적 자유로웠던 고려시대의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내외內外 규범을 강력하게 시행하였다. 이성친異姓親 간에 자유로운 접촉을 하거나 부녀자로서 절에 올라가는 것, 산간에서 놀이하는 행위 등에 내외법을 적용하여 금제禁制 조항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올렸다.

내용 '내외'란 '안'과 '밖'을 말하는데 예禮에서는 '부부'나 '남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예기』에서는 남녀 역할 구분에서 시작하여 부부간의 예로 확대 강조되었다. "예는 부부간에 서로 삼가는 데서 시작된다. 집을 지을 때 내외를 구분하여 남자는 바깥에 거처하고, 여자는 안쪽에 거처하며 문단속을 한다. 남자는 함부로 내당에 들지 않고, 여자는 밖에 나가지 아니한다."고 하여 부부간에 공간을 달리할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심지어 "남녀는 제사나 상사가 아니면 물건을 주고받지 아니한다. 부득이 물건을 주고받아야 할 경우에는 여자 쪽에서 광주리를 써서 물건을 받도록 하며, 광주리가 없을 때는 남녀가 모두 앉아서 한편에서 물건을 내려놓으면 상대방이 그것을 취하도록 한다."라고 하여 철저하게 접촉을 금하였다.

조선 초기에 내외가 본격적으로 문제시된 것은 근친상간近親相姦 때문이었다. 이때의 근친은 주로 모계 쪽 친척을 말하는데 조선이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으로 이성

내외담 | 허백당 종택 | 경북 안동 | 국립민속박물관·최지현

異姓 친족 간 접촉이 빈번하였던 것이 원인이다. 이성친 간의 상간을 문제로 조선은 남녀 간의 내외를 규범이 아닌 법률로 확대하였다. 우선 근친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반가班家 부녀자가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는 친족 범위를 삼촌三寸으로 제한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빠졌지만 『경제육전經濟六典』에는 있었던 이 조항은 조선 시대에 친족 간 내외의 기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경국대전』에는 내외를 기본으로 하는 몇 가지 금지조항이 있다. 부녀자로서 절에 올라가는 것, 사족士族 부녀자로서 산간이나 물가에서 놀이와 잔치를 하거나 야제野祭·산천성황山川城隍 제사를 직접 지낸 자에게는 장 100대에 처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경국대전』에는 없지만 폐면蔽面, 즉 외출 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양반 부녀자들에게 요구되었다. 세종 때 폐면을 하지 않은 반가 부인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폐면이 법률에는 없지만 관습적으로 잘 유지되면서 조선 후기로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폐면과 유사한 것으로 옥교자屋轎子 사용이 있다. 『경국대전』에 "종친 부인과 딸, 당상관의 어머니나 부인과 딸, 신부가 아니면 옥교자를 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종친이나 당상관 가족은 옥교자를 타서 내외를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선 초기에 간통에 대한 처벌이 법률 이상으로 강력하였던 것도 내외를 엄격히 하는 일환이었다. 어우동은 유부녀 간통으로 장 90대에 해당하였지만 실제로는 교형絞刑에 처해졌다. 재가금지가 『경국대전』에 올라간 것도 내외 관련 풍속교화風俗敎化의 의미가 있었다. 법률로 『경국대전』에 올라갈 정도로 조선에서 내외의 예禮 또는 법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실천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여성들의 도덕적 내면화가 강화되면서 내외가 더 잘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부부 초상화 | 가로121 세로141 |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조선은 초기에 내외 관념과 법을 강력하게 시행하였다. 고려시대에 비교적 자유로웠던 남녀 간 접촉을 풍속교화라는 의미에서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경국대전』에서 놀이나 잔치를 일일이 금하고 간통을 가중처벌하는 것, 재가금지를 법률화한 것 등은 모두 조선이 내외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유교적·도덕적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안채와 사랑채 구분이 명확해지고, 남녀 간에 직접적인 접촉도 피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成宗實錄, 世宗實錄, 남녀유별 예의식이 복식생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이경미, 복식57-1, 한국복식학회, 2007), 조선 말기 경기지역 상류주택에 나타난 남녀 공간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박형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22-5,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3), 조선시대 폐면용 복식 착용의 확산과 모방에 관한 연구(안인희, 한국디자인포럼46,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5), 조선초기 내외법의 성립과 전개(이순구, 청계사학5, 청계사학회, 1988).

필자 이순구(李舜九)

누나

정의 같은 부모를 둔 남녀 동기 사이에서 남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을 이르거나 부를 때 사용하는 어휘.

내용 누나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녀 동기同氣 사이에서 남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 사용하는 한국어 친족어 중 하나이다. 또한 사촌·이종사촌·고종사촌 관계에 있는 친족이나 부모의 재혼으로 형성된 관계뿐만 아니라 비친족의 여성에게도 사용이 가능한

어휘소로, 지시 대상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어와 지시 대상을 가리켜 이르기 위해 사용하는 지칭어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한 가정 내에서 '누나'라고 불러야 하는 여성이 여러 명 존재하여 정확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시 대상이 되는 여성의 연령을 기준으로 '첫째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나 '큰누나, 작은누나'와 같은 순서에 초점을 둔 방법과 지시 대상의 이름을 붙여 '이름+누나'처럼 부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사촌 누나, 이종사촌 누나, 고종사촌 누나와 같이 확장된 어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촌수가 먼 친척에게는 촌수 구분 없이 '친척 누나'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친족어로 활발하게 사용되는 까닭에 '동기 관계'임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혈연관계로 맺어진'의 뜻을 가진 접두사 '친親'을 사용한 '친누나'를 지칭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실제 언어생활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장·사용되는 누나의 확장 어휘소는 대부분 지시 대상과의 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지칭어 기능만을 담당한다. 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를 부르는 호칭어로 사용이 제한되며, 모든 대상에게 형식 확장이 없는 '누나'만이 호칭어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용법이다.

특징 및 의의 한국 전통사회에서 친족어 '누나'는 태어난 날이 같은 쌍둥이의 경우 분分 단위까지 고려하여 그 관계를 구분해 왔다. 이는 한 가정 내에서 위계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온 한국 언어문화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형, 누나, 오빠, 언니와 같은 어휘소는 이를 선택할 때 지시 대상의 성별뿐만 아니라 어휘를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의 성별을 모두 고려하는 용법을 가지는데 이는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일본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권에서 나타나지 않는 한국어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저출산 사회로 불리는 현대에 와서 '누나'가 친족어로 사용되는 빈도나 기초 어휘소로서의 중요도가 예전과 비교하여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한 가정 내에 누나가 존재하지 않아 일생 동안 누나를 친족어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모국어 화자가 존재하기 시작하였고, 전통사회처럼 친족 간 교류 또한 활발하지 않기에 실제 언어생활에서 누나를 친족어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모국어 화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친족어 누나가 비친족 여성에게 사용되는 '의사친족어'로서의 기능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언어 사용자 관계에서 친밀을 공유한 연상의 여성이라면 '누나' 사용이 비교적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 언어생활에서 비친족어로 사용되는 양상이 친족어로 사용되는 본래의 양상보다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누나'보다 더 높임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누님'이 있다. 이는 언어 사용자와 지시 대상의 나이 차가 크거나 상대를 대우하기 위한 의도 중심으로 선택·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대 언어생활에서 누님은 언어 사용자와 지시 대상 관계에서 연령 차가 많은 속성에 초점을 두어 자칫 지시 대상이 되는 여성에게 늙음의 속성을 전달하게 되는 탓에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이 활발한 편은 아니며, 여성 또한 이 말을 듣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한다.

'누나'는 부부 사이에서 호칭어로 사용이 자연스러운 '오빠'와 달리 아내에게 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따르는 특징도 보인다. 이는 친족관계에서 남성의 위치를 여성보다 높게 여겨 온 가부장적인 사상이 반영되어 윗사람의 속성을 가진 '누나'의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광순은 한국인의 인지구조에서 '어머니'가 음식 만들기, 청소하기, 빨래하기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양육' 대상으로 인지되어 왔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때 누나는 집안에서 어머니 부재 시 이와 관련된 양육 역할을 대신 담당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양육 역할을 일부 돕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동기 중에 맏이가 되는 여성은 '아버지' 부재 시 경제적 행위를 담당해야 할 의무도 존재하기에 동생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을 택하였다는 소식을 현대에도 종종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사회 인식에서 여성은 혼인 이후 '출가외인出嫁外人'으로 여겨 가족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집안의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家長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또한 혼인 이후 집안에서 담당하는 양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역할이 모두 사라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혼인 이후 남동생의 자녀에게는 고모姑母로 불릴 뿐 양육 의무가 존재하는 '어머니'가 확장된 친족어로 불리지는 않는다. 반면 남편 형이나 남편 남동생의 자녀에게는 양육의 의무를 가진 '어머니'가 확장된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로 불리는 친족어의 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통해 혼인 이후의 양육과 관련된 의무가 남편 중심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명사 어머니의 형식과 의미 확장(김광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친족어의 호칭어로서 확장·사용 양상(김광순, 한국어 의미학48, 한국어의미학회, 2015), 한국어 친족어의 의미(김광순, 박문사, 2017).

필자 김광순(金光淳)

다문화가족
多文化家族

정의 국제결혼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부가 이룬 가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자 간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내용 다문화가족多文化家族은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에서 기인한 용어이다. 다문화주의란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주변화된 특정 집단의 존재와 정체성을 재평가하여 주류의 흐름을 바꾸려는 정치적 사상을 의미한다. 다문화주의는 인종·민족·종교·언어적 다양성을 상호 이해하고 포용하며 평등하게 존중한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주의는 국제이주, 특히 결혼이주를 통한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다문화주의에 대비되는 것은 동화주의同化主義로, 이주민이 본래의 문화적 전통 대신 주류 문화를 수용하고 적응함으로써 동질적인 정체성과 문화를 가진 시민으로 통합되는 것을 지향한다.

2008년 9월 22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인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제2조). 제정 당시에는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귀화자 포함)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였는데, 2011년 10월 법을 개정하면서 출생·인지·귀화를 구분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외국인(귀화자 포함)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즉 외국인이 한국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 다른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다문화가족으로 간주된다.

다문화가족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인종·민족·종교·언어적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다. 외국 국적의 배우자는 새로운 민족, 언어, 생활문화에 노출되며 익숙하지 않은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족 내에서 부부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평등하게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두 문화적 전통에 놓이므로 이중문화사회화를 통해 양쪽 문화에 모두 익숙하게 양육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국 국적 배우자의 정체성과 문화가 인정되지 않고 한국의 주류 문화를 습득하도록 기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특수성 및 부계가족주의 문화에서 기인한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역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대까지는 주한미군과의 결혼, 통일교 주도의 결혼, 해외여행 및 유학 자유화에서 비롯된 국제결혼이 주를 이루었다. 미혼여성의 이농현상離農現象이 증가하면서 농어촌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남성을 대상으로 아시아 지역 여성과의 중매를 알선하는 업체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1990년 4,710건이었던 국제결혼이 2000년에는 1만 1,605건으로 증가하고, 2005년에는 4만 2,356건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통계를 보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필리핀·일본이 전체의 83.2%를 차지하고 베트남에서 온 경우는 1.3%였는데 2002년부터 베트남 출신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의 18.7%를 차지하였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총 38만 5,512명이고,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 12만 4,213명(32.2%)을 비롯하여 베트남(22.6%)·중국(19.0%)·필리핀(5.55)·일본(3.7%)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보다 2배 이상 많다. 2022년 기준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이 1만 2,000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이 4,700건이었다. 외국인 아내 국적은 베트남(27.6%), 중국(19.0%), 태국(16.1%) 순으로 많아 주로 아시아 지역 여성들임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중개업이 활성화되면서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개업체 관리와 여성 결혼이민자 보호 등의 필요로 2007년 7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9년 6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책이 시작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제3조의 2), 3년마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제4조),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하며(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부부교육·부모교육과 취업지원 등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녀 언어발달지원·성장지원·이중언어환경조성 등 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1년부터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차별과 한국 생활의 어려움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 국가 평균보다 낮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성취도 등 극복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23~2027)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언어발달 지원, 학습 지원, 진로 지도 등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였다.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에서 다문화가족은 인종, 민족, 종교, 언어적 다양성을 보여 주고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초기 단계에서는 동화주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유도한 경향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가족제도와 생활문화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과 서비스는 많이 제공되었지만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남성에게는 배우자의 출신국 문화와 가족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서비스는 별로 없었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시장 논리로 확대된 국제결혼의 역사와 단일민족주의 및 부계가족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가족 내 성불평등에 있다. 그러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부터는 가족 내 불평등 관계 해소,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주의 관점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참고문헌 다문화가족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김유경, 보건복지포럼17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관계기관 합동, 여성가족부, 2023),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Will Kymlicka, 장동진 외 역, 동명사, 2006),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통계청(kostat.go.kr).

필자 진미정(陳美靜)

당내
堂內

정의 고조高祖가 같은 동성 8촌 이내의 친족 범위를 일컫는 말.

내용 당내堂內는 현재 동성 8촌 이내의 유복친有服親, 즉 상복을 입는 친족 범위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전통시대 문헌기록에서 직접 '당내'를 친족과 관계된 용어로 일컬은 경우는 많지 않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같은 관찬사료에서 이러한 용례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고, 문집에서는 '당내친속堂內親屬' '당내친족堂內親族' '당내지친堂內之親' 등이 이러한 예로 사용된 경우가 몇 군데 보인다. 이와는 달리 '당내'를 직접 지칭하지 않은 '동당지내同堂之內'라는 표현은 앞의 용례보다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당내'는 '동당同堂'의 범위 내에 들어있는 혈족관계를 뜻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고려 말 이후 우리나라 법제에 큰 영향을 끼친 『대명률大明律』이나 조선조에 성립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직접 특정 범위 내의 친족을 '당내'라고 명시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경국대전』 예전禮典의 오복조五服條에 사용된 '당형제堂兄弟' '당자매堂姊妹' '당형제처堂兄弟妻' '당백숙부堂伯叔父' '당고堂姑' '당질堂姪' 등의 용어는 모두 동당 내의 혈족을 지칭하는 경우이므로 명시적으로 '당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당'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배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당내'는 전통시대의 법제 용어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부계를 중심으로 한 동종同宗, 종족宗族 등의 개념이 강화되면서 관습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보인다.

조선 전기에 성립된 『경국대전』의 오복五服에 관한 법제는 기본적으로 『주자가례朱子家禮』와 동일한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고려시대부터 전래한 고유의 상복제는 제도적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여전히 외족外族이나 처족妻族과의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고유의 복상 제도가 조선 중기까지도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성 8촌 이내 친족의 상례에 대해 복을 입는 제도는 이미 조선 전기부터 마련되었지만, 당내라는 부계 중심의 유복친에 대한 제한적인 친족 개념과 그에 대한 인식 강화는 조선 중기를 지나 17세기 이후 무렵부터 자리 잡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같은 시기 동일한 고조高祖를 둔 당내의 친족이 여럿 모여 하나의 종중宗中이나 문중門中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과도 맥락을 함께한다.

조선에서 법전에 명시한 본종本宗의 오복제는 관계에 따라 크게 참최斬衰, 재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로 구분하였다. 자신을 중심으로 촌寸이 멀어질수록 상복과 해당 기간이 간략한데, 고조부모의 상에는 재최 3월, 족형제族兄弟와 족자매族姊妹, 즉 8촌 형제와 자매의 상에는 시마를 적용하였다. 이렇듯 촌으로 헤아릴 수 있는 친족의 예시는 상하로 고조와 현손을 넘지 않았고, 3촌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최대 8촌을 넘지 않았다. 법전에 명시된 이 조문은 조선 전기에는 아직 실효성이 떨어졌으나, 17세기 이후에는 양반가를 비롯하여 조선사회 전반에서 제대로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당내는 한국사에서 친족의 개념이 모계나 처계를 배제하고 부계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시기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따라서 당내라는 친족의 범위는 조선 중·후기에 형성된 부계혈연 중심의 제한된 친족 개념을 바탕으로 정립된 용어로 볼 수 있다. 근대를 지나 현대까지 이 '동성 8촌 이내의 일가一家'라는 친족 범위는 법제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여말선초의 친족의 칭호와 범위(박병호, 법학44-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친족제도의 변천(우병창, 금산법학1, 금산법문화연구회, 1998),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필자 전경목(全炅穆)

당내친
堂內親

정의 같은 고조부를 둔 후손들로 구성된 친족집단.

내용 같은 고조高祖를 모시는 후손들이 형성한 친족집단을 '당내堂內' 혹은 '집안'이라고 한다. 원래 '당堂'은 조상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당내는 '조상제사를 지내기 위해 당에 모인 사람들'로 해석된다.

당내는 유교의 종법宗法에서 비롯된 친족관행이다. 종법의 소종小宗에는 이종禰宗, 조종祖宗, 증조종曾祖宗, 고조종高祖宗 등 4종류가 있다. 소종의 경우 위로는 아버지·조부·증조부·고조부까지 포함되며, 아래로는 아들·손자·증손자·현손자玄孫子까지 내려가는데 이들 모두 4대 범위이다. 그리고 고조부로부터 확장된 후손

들은 형제자매·4촌형제자매[從兄弟]·6촌형제자매[再從兄弟]·8촌형제자매[三從兄弟]로, 최대 8촌의 친족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이유로 당내를 '동고조 8촌'이라고도 한다. 종宗은 조상제사를 수행하는 친족집단을 말한다. 이종은 아버지 제사, 조종은 조부 제사, 증조종은 증조부 제사, 고조종은 고조부 제사를 모신다. 5대조부터는 소종에서 제외되는 대신 대종에서 시제時祭를 봉행한다.

당내친堂內親은 유복친有服親의 범위와 일치한다. 상을 당하였을 때 상복을 입는 최대 친족 범위가 8촌 범위, 곧 당내친인 것이다. 상복에는 참최斬衰·재최齊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 등 5종류가 있는데, 친족관계에 따라 상복의 종류와 착용기간이 달라진다. 참최는 가공하지 않은 거친 삼베로, 재최는 4~6승升의 삼베로, 대공은 7~9승의 삼베로, 소공은 10~12승의 삼베로, 시마는 15승의 고운 재질의 삼베로 상복을 만든다. 삼베의 경우 숫자가 낮을수록 촉감이 거칠다. 그 이유는 친족관계가 가까울수록 슬픔과 비통함이 큰 정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아버지 상에는 참최 3년복, 조부 상에는 재최 1년복, 증조부 상에는 재최 5월복, 고조부 상에는 재최 3월복을 입지만 5대조 이상에 대해서는 복이 없다. 또 형제 상에는 지팡이를 짚지 않고 상복만 착용하는 재최부장기齊衰 不杖朞 1년복, 4촌형제 상에는 대공 9월복, 6촌형제 상에는 소공 6월복, 8촌형제 상에는 시마 3월복을 입고 그 이상 촌수의 형제에게는 역시 복이 없다.

특징 및 의의 종법의 소종은 오세즉천五世則遷 원칙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대종은 백세불천百世不遷 원칙에 의해 형성된다. 오세즉천이란 나로부터 4대조(고조)를 넘기면 종宗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5대조부터는 조상제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고조 제사를 모시던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의 아들이 제사를 계승하면서 당내의 구성원은 달라진다. 즉 아버지의 고조부는 아들에게는 5대조가 되기 때문에 아들의 고조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당내집단이 형성된다. 또 같은 고조를 모시면서 당내를 구성하던 아버지의 8촌형제[三從兄弟] 역시 아들에게는 9촌관계가 되기 때문에 당내에서 제외된다.

당내친의 주된 목적은 조상제사의 수행이다. 고조부 제사에는 8촌 범위의 친족들이 참여하고 증조부 제사에는 6촌 범위, 조부 제사에는 4촌 범위, 아버지 제사에는 형제자매들이 모인다. 즉 형제자매는 아버지·조부·증조부·고조부 제사에 함께 참여하고 4촌형제는 조부·증조부·고조부 제사에, 6촌형제는 증조부와 고조부 제사에, 8촌형제는 고조부 제사를 함께 지낸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유교의례의 사회적 기능과 상징적 의미(김미영, 국학연구 14, 한국국학진흥원, 2009),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최인학 외, 민속원, 2001),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필자 김미영(金美榮)

당호
堂號

정의 그 집에 사는 사람의 호 등을 활용하여 집이나 건물에 특정한 의미를 담아 부여한 명칭.

내용 당호堂號란 집이나 건물에 지은 이름을 뜻한다. 당호에는 '공간'을 의미하는 당堂, 헌軒, 재齋, 누樓, 와窩, 방房, 정亭, 실室, 암庵 등의 한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집성촌 중 하나인 경상북도 안동 풍산류씨豊山柳氏종택은 양진당養眞堂이라는 당호를 쓰고 있고,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의 생가는 충효당忠孝堂이라는 당호를 쓰고 있다. 그 외에도 하회마을에는 화경당和敬堂, 염행당念行堂, 양오당養吾堂 등 당호가 있는 집이 많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자신의 생가에 여유당與猶堂이라는 당호를 붙였고, 경상북도 경주 양동마을에 있는 조선 전기 문신인 이언적李彦迪의 종가 종택 별당을 무첨당無忝堂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관가정觀稼亭, 서백당書百堂 등도 있다. 또한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해남윤씨海南尹氏종택은 녹우당綠雨堂이라는 당호를 쓰고 있으며, 효종 때 문신 송준길宋浚吉이 살던 생가는 동춘당同春堂이라는 당호를 쓴다. 조선 전기 문신 김굉필金宏弼의 생가도 한훤당寒暄堂이라는 당호를 가지고 있다.

한편 당호는 집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호號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 학자이자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안동의

하회마을 양진당 편액 | 경북 안동 | 2001 | 국립민속박물관

양동마을 무첨당 편액 | 경북 경주 | 1985 | 국립민속박물관

문풍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는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璣, 임진왜란 당시 장수였던 만취당晩翠堂 권율權慄, 조선 중기의 여류 문인이자 화가 사임당師任堂 신씨申氏 등이 당호를 자신의 호로 쓴 경우이다.

한편 조선시대 궁중에서 후궁들도 당호를 지니게 된다. 대개 임금이 지어 하사하는데, 세자 또는 왕의 어머니가 되는 후궁에게 궁호宮號를 내렸다. 후궁의 경우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당호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특별히 삼축당三祝堂 김씨金氏의 경우는 아이를 낳지 못했으나 이례적으로 순종이 당호를 하사하였다고 한다.

아호나 호 중에 '당'이 들어간 경우가 적지 않다. 편자 미상의 조선 말기에 저작된 것으로 알려진 『당호비고만성씨보堂號備攷萬姓氏譜』는 5권 5책으로 규장각에 소장된 고서인데, 이를 보면 고려 말기에서 조선 말기까지 별호別號 또는 당호를 가진 인물을 성씨별로 나열하여 호·이름·자·가계 등과 간략한 행적 등을 수록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당호란 집의 이름을 뜻하는 것으로, 집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집에 기거하는 사람의 '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당호는 남녀가 모두 사용하였지만 여성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다. 당호는 주로 건물 위에 달린 현판에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추사선생아호집을 내면서(오제봉, 갈숲27, 태화출판사, 1989), 한국인명자호사전(이두희 외, 계명문화사, 1988), 한국인의 자·호 연구(강헌규·신용호, 계명문화사, 1990).

필자 이해준(李海濬)

대
代

정의 친족원의 혈연관계를 세계의 차서로 구분한 범주.

내용 대代란 '교체됨' '한 왕조가 계속되는 동안' '한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등을 뜻한다. '대'는 어느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주체들의 상이한 역사적 체험이나

생계방식으로 기존의 사회와 구분될 수 있는 특정한 시대를 가리킨다. 이에 대해 친족 구성원의 관계에 한정하여 사용할 때 이 용어는 세대 간 사회적 시간의 단위 혹은 범위, 그리고 혈통과 계보 순서 등을 나타낸다. 대와 함께 사용되는 용어로 세世가 있다. 세는 '세대의 세' 혹은 '대를 이르는 말인 세' '세대 간의 차서次序' 등을 뜻한다.

한국의 족보에는 시조를 1세로 하여 그 이후 자손들은 2세, 3세로 이어서 세수가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 대代와 세世를 동일하게 간주하여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 예로 은진송씨恩津宋氏와 밀성박씨密城朴氏 참의공파參議公派의 족보를 들 수 있다. 전자나 후자의 족보 서발문을 보면 ○대손, ○세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묘갈명이나 재실 중수기 등에도 대와 세가 구분되지 않은 채 기록되어 있다. 이 점은 대라는 용어가 세와 함께 혈통과 계보를 잇는 차서를 뜻하는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친족원들은 상하 간의 어느 위치에서 선조와 후손을 부르느냐에 따라 세와 대를 구분한다. 세는 특정 조상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그의 아들은 2세, 손자는 3세, 증손은 4세, 현손은 5세, 이후 6세, 7세, ……, ○○세가 된다. 이에 비해 대의 경우, 상하 4대 범위에는 구체적인 지칭어(부, 조부, 증조부, 고조부, 자, 손, 증손, 현손)가 있어서 '대'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고조나 현손을 벗어나면 구체적인 용어가 없어서 5대조, 6대조, … 등으로 표현한다. 후손이 어떠한 선조에 대해 말할 때 ○대조라 부르고, 선조 입장에서 후손의 세대를 산정할 때는 ○세손으로 한다. 대는 시조에서 후손으로 내려올 때 몇 세손, 손자에서 고조부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몇 대조로 사용된다. 세는 선조에서 후손의 세대를 숫자로 기술하는 반면에 대는 선조를 높여 부를 때 사용된다. 조상과 후손 간에 대와 세를 숫자로 산정할 때 중심이 되는 자신이나 선조는 대수에서 제외된다. 종족집단에 따라 대를 세와 같게 혹은 다르게 사용한다.

대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그 자식이 다시 부모가 됨으로써 기존의 관계가 교체되는 시기별 간격과 현시점의 자신에서 공동의 조상으로 올라가면서 친족원이 세대별 구성원 전체를 하나의 사회적 단위로 묶어서 위계상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 사회적 범주를 가리킨다. 이렇듯 대는 사회적 시간과 사회적 범주가 복합되어 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는 종족사宗族史에서 혈통의 승계와 관련된 혈족 구성원 간 관계를 문화적으로 규정한 종족집단의 시간을 말한다. 이는 혈족의 한 개인에서 시원始原이 되는 시조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 태어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친족원들은 이를 통해 본인이 시조로부터 전개된 종족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시대와 족보상의 깊이를 구분하고 계산할 수 있다.

둘째, 한 사회 내에서 조혼早婚하는 경향이 강하고 출산하는 여성의 나이가 어릴수록 후손으로 이어지는 대수는 증가한다. 직계가족과 같은 가족구조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자손 수가 증가할 때마다 수직적 차원에서 대수가 증가한다. 이에 비해 수평적으로 가족 수가 증가하는 공동가족이나 확대가족의 경우 후손으로 이어지는 대수는 직계가족에 비해 감소한다.

셋째, 대는 세대 규준規準을 나타내는 친족명칭과도 관련된다. 한국의 친족명칭은 직계친과 방계친을 구별하는 방계규준과 더불어 세대규준이 합성되어 있다. 그리고 세대와 관련된 친족 호칭의 경우 상위 항렬行列의 친족원 및 동일 항렬 내의 연령상 상위자에게만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동일 항렬 내의 하위자일지라도 상대 친족원이 혼인에 의해 맺어진 인척일 때는 대부분 친족 호칭이 사용되고, 또 출가한 혈족의 경우에도 대개 넓은 의미에서 친족 호칭이 사용된다.

넷째, 대는 계보적 차원에서 한 개인에서 공동의 조상에 이르기까지 중심된 자신과 수평적·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종족들을 그 위계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사회적 규칙과 가치로 통합·분리한다. 종족 조직에서 대는 부계혈통 계승과 위계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항렬로 구체화되고, 종족원은 이와 관련된 세대별 행동규범을 실천한다. 종족원이 예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렬은 연령보다 우선시하여 항고연고行高年高 원리를 중시한다. '뱃속에 할아버지가 있다'는 말과 같이 항렬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 따라 선후가 정해지기 때문에 혈족 구성원 간의 사회적 위계에서 연령보다 우선한다.

사회적 시간의 선후를 나타내는 항렬의 차서는 종족 성원들 사이에 사회적 위계를 정하는 규준이 된다.

경상북도 지역의 반가 종족원들은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 등과 같은 의례를 행할 때 항렬을 연령보다 우선시하여 항고연고의 규범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 경북 지역 불천위 종가의 경우 대부분 제의처祭儀處에서 참제자參祭者의 공간적 위치는 항고연고 원리에 따라 정해진다. 물론 연고항고年高行高 원리를 행하는 집안도 있다.

특징 및 의의 대는 세계世系나 사회적 지위의 차서를 나타내는 말이다. 특히 친족원 간 위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만든 항렬의 순위는 대를 정하는 언어적 규준이 된다. 이러한 항렬을 우선시하는 규범은 혈통 계승과 의례 수행 공간에서 선위권先位權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특히 불천위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종손에게는 종가宗家와 지가支家, 연령의 고하, 항렬 관계 등에서 우선적 순위에 자리매김하는 상대적 선위 원리가 적용된다. 선위 원리는 제의처에서 참제자의 공간 배열상 우선순위로 나타난다. 친족 구성원 간 사회적 질서에는 대를 규준으로 한 항렬 원리가 작용한다.

참고문헌 명망의 문화정치(박성용, 민속학연구52, 국립민속박물관, 2023), 한국 친족호칭체계의 의미기술(왕한석, 한국문화인류학24, 한국문화인류학회, 1992), 한한대자전(민중서림, 1999).

필자 박성용(朴晟慵)

대동보
大同譜

정의 동성동본의 부계친족에 대해 시조로부터 여러 계파의 후손들을 망라하여 등재하는 족보.

내용 동성동본同姓同本 부계친족의 대동보大同譜는 시조始祖로부터의 여러 계파 자손들이 망라되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계보를 볼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이다. 이 족보는 아들과 사위 양쪽으로도 계보가 이어지는 '자녀보子女譜'로, 안동권씨安東權氏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성씨도 등재되었다. 안동권씨 부계친족에 한해서 본다면 이 족보에는 조선 후기 안동권씨 족보에 기재되는 10여 개 계파 가운데 2개 계파만이 기재되었다.

1476년 『안동권씨성화보』가 편찬된 이래 1606년에 편찬된 『안동권씨을사보安東權氏乙巳譜』도 성화보成化譜와 같은 자녀보 형태이지만 안동권씨 부계친족의 4~5개 계파가 새롭게 등재되었다. 1701년에 편찬된 『안동권씨신사보安東權氏辛巳譜』는 안동권씨 부계남성 중심의 계보 기록인데, 여기에도 3개 파가 새롭게 등재되었다. 1734년의 『안동권씨갑인보安東權氏甲寅譜』에는 신규 계파가 없으나 1794년의 『안동권씨후갑인보安東權氏後甲寅譜』에는 여전히 무려 5개 계파가 새로 등재되었다. 안동권씨 부계친족으로 구성되는 10여 개 계파를 망라하여 대동보 모습을 갖추어 간 것이다.

그런데 대동보를 '전국 규모로 모든 계파가 망라된 부계친족의 족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기에는 주저되는 측면이 있다. 『안동권씨신사보』만 보더라도 전국 규모로 확산된 10개 계파가 모여 있다. 안동권씨 부계남성 중심의 족보로 편찬될 때부터 족보는 이미 대동보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에 족보는 부계친족의 모든 계층을 망라하여 등재하지는 않는다. 서파庶派는 등재에서 배제되며, 적파嫡派라 하더라도 향리나 군역자의 후손은 등재되지 못한다. 18세기 중엽의 족보에는 부계친족 내의 이러한 신분적 배타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18세기 말에는 다시 등재 범위가 개방적이다.

족보가 중간重刊될 당시 새롭게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족보에 등재되어 오던 다른 계파들의 후손과 동일한 계층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새롭게 등재되는 계파의 선조들이 상위 계층이 아니었더라도 그 후손들은 족보 편찬 당시 상위 계층으로 인식될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 반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족보에 등재된 계파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신분적 하락으로 족보 등재에서 탈락할 수 있었다. 족보는 적파에 한정해 그 후손들을 등재한다 하더라도 부계친족 구성원을 망라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족보가 중간될 때마다 신분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조선시대 족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앙일보사에서 한국 성씨를 망라하여 발간한 『성씨의 고향』은 15세기 이후 동성동본 각 성관姓貫의 대

만성대동보 | 가로19 세로26 두께6 |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조선씨족통보 | 가로18 세로26 |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동보 편찬 상황을 알려준다. 성관별로 처음 편찬된 창시보創始譜는 총 380여 건으로 파악되는데, 18세기에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다가 19세기 이후에 급감한다. 반면에 중간되는 족보를 포함하여 전체 대동보 편찬 수는 총 2,210여 건으로 집계되는데, 18세기 이후부터 증가하여 20세기에 급증하는 현상을 보인다. 18세기에 대부분의 성씨가 족보를 처음으로 편찬하고 또 기왕의 족보를 중간하였는데, 이후 20세기에 족보 중간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계친족 내의 계층적 통폐합이 19세기 이후 족보 중간을 빌미로 빈번하게 진행되다가 20세기에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족보는 대부분 20세기 전반의 것으로, 2,000건이 넘는다. 191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후반에 걸쳐 편찬된 것이 대부분이며 후기로 갈수록 증가한다. 또한 이 사이에 출판 허가를 받은 서적 가운데 족보가 단일 1~2위의 건수를 보인다. 그런데 20세기 전반의 족보에는 대동보의 중간과 더불어 특정 계파의 후손에 한정한 파보派譜의 편찬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각 계파가 대동보를 중간하기 위한 수단收單으로 작성된 파보도 있겠지만 대동보에 서파를 비롯해서 다른 신분 출신의 계보가 편입되는 것에 반대하여 양반 신분의 정통성을 견지하려는 의도로 편찬된 파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의 신문은 대동보 편찬 비용이나 족보 분배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적파와 서파 사이의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보여 준다.

한편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처럼 여러 성씨의 계보를 망라하여 등재하는 족보를 대동보라 칭하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안동권씨성화보』를 비롯하여 여러 성씨 가족들을 망라하는 조선 전기의 자녀보도 이미 대동보인 셈이다. 20세기에도 여러 성씨의 계보를 망라하여 『백씨통보百氏通譜』 『만성대동보』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청구씨보靑丘氏譜』 등 '만성보'류의 족보가 다수 편찬되었다. 전국 모든 성씨의 '부계친족'들을 망라함으로써 그로부터 '대동'하여 '민족' 개념을 끌어내려는 사고방식도 담겨 있었다.

특징 및 의의 부계친족의 대동보는 족보를 중간할 때마다 새로운 계파가 등재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족보 등재의 신분적 배타성이 재천명되는 반작용도 지속되었다. 파보는 신분적 정통성을 고수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러 성씨의 계보를 망라하는 족보도 대동보로 불린다. 조선 전기 족보가 여러 성씨 가족들이 동일 계층으로 '대동'하기 위해 편찬되었다면 20세기 족보는 서로 다른 계층들이 비로소 하나의 부계친족으로 '대동'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20세기 초 한국의 족보 편찬과 동족집단 구상(손병규, 대동문화연구9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한국의 성씨와 족보(이수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의 족보(정승모,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系圖が語る世界史8(歷史學硏究會, 靑木書店, 20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손병규(孫炳圭)

대문중
大門中

정의 소문중의 연합체로서 명망 높은 선조에 대한 향례 시행, 유업 계승, 묘소 및 사우 수호, 문화유산 보호,

종재 증식, 족보 제작 등과 같은 공동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된 법인체적 집단.

역사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각 종족에서는 문규門規를 마련하고 문장門長, 유사有司 등 임원으로 구성된 문중 조직을 갖추었다. 이러한 문중 조직은 족보 등에 등장하는 소문중小門中이며,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소문중 결합체로서의 대문중大門中이 구체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내용 대종중大宗中이라고도 하는 대문중은 중시조中始祖나 명조名祖·현조顯祖에 대한 제의 수행을 위한 개별 소문중을 포함하는 종족 전체의 조직이다. 이것은 종손과 문장의 존중, 효제孝悌를 축으로 한 예의 존중과 돈목敦睦 강조, 종약宗約 실천으로 유교적 혈연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위 소문중으로 분지分枝된 파派들로 결성된 종족집단이다.

예컨대 안동김씨安東金氏 대종중에 등록된 단체로는 17개 파종회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족보에 그 계보가 확실하게 수록되고 뚜렷이 차별화할 수 있는 직위나 칭호가 있는 조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경상북도 청도의 밀성박씨密城朴氏 은산부원군 대종중의 경우 7개 파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파마다 2개 파에서 7개 파로 분파되어 청도와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 종족촌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청도 밀성박씨 밀직부사공파의 대종중은 청도군 이서면 일대에 종족촌을 이룬 4개 파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파에서 다시 분파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대종중은 대개 지파가 소문중으로 조직된 이후 이것이 다시 조합·결성되어 형성된 경우이다.

이 같은 대문중에는 대종회, 대문회 등으로 불리는 운영조직이 있다. 이는 이사장, 고문, 이사, 감사, 총무 등 이사회 체제로 그 지위와 역할이 분화되어 있다. 이사장은 문중을 대표하며, 종중 사무를 총괄한다. 고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는 문중의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감사는 문중의 자산과 재정 업무를 감독·검사한다. 대문중의 총회는 대개 연 2회 열린다. 대종중은 소문중에서 선출된 공임公任, 즉 이사에 의해 합동으로 운영된다. 이사장도 가능한 한 각 지파에서 순번으로 정해진 기간에 직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지파나 소문중에서 선출된 위원들의 연합체로 구성된 대문중은 법인체적 공유 재산으로 산과 산림, 위토, 묘소, 사당, 재실, 종답, 현금 등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은 조상과 관련된 모든 후손에 의해 집단으로 관리된다. 오늘날 대문중은 장학금 지급, 시조묘 참배, 대종중 묘사 참배, 종택 방문, 명승지 관광 등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처럼 선조의 벼슬·명망·종원 수·경제적 기반 등이 탁월한 문중에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대문중을 결성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각 마을이나 지역 차원에서 분파된 소문중(파문중)들이 대문중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종족원들은 입촌조入村祖 혹은 입향조入鄕祖를 중심으로 조직한 문중을 대문중(대종중)이라 부른다. 대문중을 구성하는 파문중도 이보다 하위에 있는 소규모 파문중의 입장에서는 대문중으로 간주한다.

특징 및 의의 대문중은 역사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며, 명망 높은 중시조나 명조·현조로부터 수십 세대를 거쳐 종통宗統이 계승된 전체 소문중을 포괄하는 최대 범위의 문중이다. 대종중의 범위는 지역화된 파문중이나 소문중 전체를 포괄한다. 대종중은 다시 전국적 차원에서 연합한 대단위의 전국종친회가 된다.

참고문헌 명망의 문화정치(박성용, 민속학연구52, 국립민속박물관, 2023), 문화의 정치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김광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종족조직과 생활문화(문옥표 외,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백산서당, 2004), 한국 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9),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Ancestor Worship and Korean Society(Roger L. Janelli·Dawnhee Yim Janelli,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Kinship and Lineage in Korean Village Society(Sunhee Song, Ph.D Thesis, Indiana University, 1982).

필자 박성용(朴晟慵)

대종가
大宗家

정의 혈연집단에서 대대로 적장자 중심으로 부계혈통의 정통성이 계승되어 온, 파종가들을 포괄하는 상위의 종가.

의성김씨 청계 종택(큰종가) | 경북 안동 | 2015 | 배영동

내용 종가는 종법제도宗法制度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종법은 공동 조상의 후손들로 구성된 하나의 혈연집단을 피라미드 체계 안에서 안정되게 운영하는 논리이자 그 집단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정하는 규칙이다. 종법이 조선 중기에 도입되었기에 아득한 고대의 조상을 계승하는 종가는 현실적으로 없다. 종법에 따르면 전체 부계친족집단을 가리키는 대종大宗과 고조부 이하의 각 조상을 중심으로 하는 친족집단을 가리키는 소종小宗이 있다. 대종의 종가를 대종가大宗家, 소종의 종가를 소종가小宗家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체 부계친족집단을 가리키는 대종이라는 개념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 왜냐하면 전체 부계친족집단이 어떤 조상을 기점起點으로 하는 친족집단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종가와 소종가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사례를 보면 하나의 동성마을 안에서 상대화된 개념에 가깝다. 하나의 동성마을 안에서 상대적으로 선대의 조상을 기점으로 하여 형성된 부계친족집단의 적장자嫡長子로 이어지는 집을 대종가(혹은 '큰종가')라고 부른다. 그에 반해 대종가에서 분파된 파종가派宗家를 소종가(혹은 '작은종가')라고 부른다.

이를테면 경상북도의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풍산류씨豊山柳氏 입향조入鄕祖 류종혜柳從惠의 종통宗統을 이은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1515~1573)의 종가를 풍산류씨 대종가라 부르고, 류중영의 둘째 아들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의 종가는 종법상 소종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 서애종가를 소종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서애 류성룡이 최고의 관직인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기 때문일 듯하다. 경북 안동의 내앞마을에서는 청계靑溪 김진金璡(1500~1580)을 기점으로 하여 형성된 의성김

의성김씨 귀봉 종택(작은종가) | 경북 안동 | 2019 | 배영동

씨義城金氏 종가를 대종가(혹은 '큰종가'), 청계 김진의 둘째 아들 귀봉龜峯 김수일金守一의 종가를 의성김씨 소종가(혹은 '작은종가')라고 부르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대종가는 소종가나 파종가가 있다는 전제에서 성립된 개념이다. 대종가는 상대적으로 더 오래된 혈연집단에서 누대에 걸쳐 적장자로 이어 온 종가를 가리킨다. 대종가의 기점에 있는 조상은 어떤 지역의 입향조일 수도 있고 중시조中始祖일 수도 있다. 누가 대종가의 기점에 있는 조상인지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혈연집단의 역사와 특성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종가에서 후대에 파종가가 분화되어 나가니 대종가는 여러 파종가를 거느리는 경우가 있다.

참고문헌 전통의 맥을 잇는 종가문화(한국국학진흥원, 2008), 종가의 사당을 통해본 조상관(배영동, 한국민속학39, 한국민속학회, 2004), 한국의 명문 종가(이순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한국의 종가 그 역사와 정신(김미영 외, 예문서원, 2016), 한국의 종가 그 현재와 가치(김광억 외, 예문서원, 2016).

필자 배영동(裵永東)

데릴사위제

정의 혼인 후 남자가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결혼제도.

역사 데릴사위제는 결혼 후 남자가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구려의 서옥제壻屋制가 있다. 서옥제는 딸이 결혼하면 집 뒤에 작은 집(서옥)을 짓고 딸과 사위가 살도록 거처를 마련해 준 뒤 일정 기간 살게 하다가 사위의 집으로 돌려보낸 결혼제도이다. 사위는 처가에 사는 동안 처가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내용 예서제豫壻制, 서옥제라고도 하는 데릴사위제는 결혼 후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결혼제도이며 그 형식과 내용은 다양하다. 고구려시대에는 서옥제라고 하는 데릴사위제도가 있었다. 남자는 결혼 후 처가의 서옥에서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 처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와 자녀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데릴사위제는 고구려시대 이후에도 남아 있었다. 손진태의 연구에 의하면 평안남도 지역 화전민들 사이에서는 1900년대 초에도 솔서혼率婿婚이라고 하는 데릴사위제도가 있었다. 솔서혼은 딸이 결혼하면 사위를 집에 들여 짧게는 5~6년, 길게는 십수 년간 처가에서 생활하게 하다가 처가의 사정이 허락할 때 분가·독립하는 것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가하지 않고 처가에서 계속 생활하기도 하였다. 솔서혼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아들이 있는 경우에도 솔서혼을 하기도 하였다.

이것과는 다른 솔서혼 형태도 있었다. 즉 딸이 10세 전후가 되면 17, 18세의 사위 후보를 집에 들여 노동하게 하고 딸이 성인이 되면 결혼하게 하였다. 이 경우 결혼 비용은 모두 처가에서 부담하였으며, 결혼 후에도 계속 처가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처가에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결혼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봉사혼奉仕婚이며, 정식 결혼을 하기 전부터 처가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예서제였다.

일반적으로 데릴사위제는 봉사혼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봉사혼은 하층민의 경우 생활 기반이 되는 토지가 없거나 혼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여자의 집에 들어가 일정 기간 노동력을 제공하고 난 뒤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남자의 노동력이 신부대新婦代를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남자의 능력을 처가에서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데릴사위제는 처가에 노동력을 제공한 뒤에 결혼한다는 측면에서 봉사혼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봉사혼은 데릴사위제와 구별된다. 데릴사위제는 아들이 없는 경우 사위가 아들 역할을 하도록 기대한 혼인제도이며, 봉사혼은 신부대와 관련된 제도이다.

혼인에는 신랑의 집과 신부의 집 사이에 경제적 이전이 일어난다. 여자의 집에서 남자의 집으로 보내는 재화를 지참금이라 하고, 남자의 집에서 여자의 집으로 보내는 재화를 신부대라 한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도 남자의 집에서 여자의 집으로 재화를 보내는

관습이 있었지만 이는 신부대라기보다 예물 성격이 강하였다. 신부대 또는 예물을 노동으로 대신하고 결혼하는 것이 봉사혼이다. 이런 면에서 봉사혼과 데릴사위제도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데릴사위제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에 행해지던 것이 보편적이었다. 아들이 없는 집이 사위에게 아들 역할을 맡기기 위해 사용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사위가 가계家系를 계승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즉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은 혈통이 같은 친족 남성 중 한 명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결하였고, 데릴사위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위가 집안의 대를 잇기도 하였다. 사위를 양자로 삼는 것을 서양자壻養子라고 한다. 그러나 서양자는 전통사회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았다. 사위를 양자로 삼게 되면 딸과는 동성동본同姓同本 결혼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계혈통을 중시한 조선 후기에 성이 다른 사람을 양자로 들이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특징 및 의의 데릴사위제는 가난한 집 아들이 처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처가살이하는 것으로, 남자 입장에서는 기피 대상이었다. 따라서 데릴사위제는 토지가 없는 가난한 집안의 남자와 딸만 있어 노동력이 부족한 집안의 여자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데릴사위제는 부계혈통과 관련성이 크다. 부계혈통은 아들을 통해 가계가 계승되는 것으로, 딸은 가계 계승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들여 가계를 계승하게 하고 부족한 노동력은 데릴사위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사위는 사위일 뿐 가계 계승의 주체는 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三國志, 삼국시대의 족외혼과 데릴사위제(김기흥, 역사비평27, 역사문제연구소, 1994), 조선민족문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8), 창씨개명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이대화, 숭실사학26, 숭실사학회, 2011),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이광규, 일지사, 1992),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필자 김창민(金昌民)

독거
獨居

정의 혼인 여부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혼자 생활함.

내용 독거獨居는 배우자·동거인·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1인가구 생활 형태를 의미한다. 독거는 독신이라는 의미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1인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 6,000가구가 1인가구에 속한다. 1인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9세 이하 19.8%,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의 경우 학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 많지만 30대는 혼인 적령기임에도 독거 비율이 적지 않다. 2021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116만 1,000가구로, 수급 대상 가구 10가구 중 7가구(70.9%)가 1인가구로 나타났다. 그리고 1인가구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가 21.5%로 가장 높은 가운데 서울(20.8%), 부산(6.8%), 경남(6.3%)이 그 뒤를 이었다.

독거 가구 급증으로 고독사孤獨死가 기존의 독거노인 중심에서 최근 청장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에서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독거 가구 중 60대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34.5%를 차지한다. 독거노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삶의 질과 정신건강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비독거노인에 비해 일상생활 영위 능력이 낮거나 열악한 경제 상태, 우울 및 불안 증상, 느슨한 사회적 교류, 열악한 주거 환경, 낮은 사회 서비스 인지율, 높은 노인학대 경험률 등의 특성을 보인다. 자살 가능성도 비독거노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노인의 질환을 예방 또는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인

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 2007년에는 독거노인의 절대적 수와 상대적 비율 증가로 이들의 열악한 생활실태 및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를 신설, 독거노인의 정책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같은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관련된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로는 가정방문,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응급 안전돌봄, 사랑잇기, 단기가사활동 지원,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등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다. 또한 독거노인의 고독사나 자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정부가 고용한 노인돌보미(생활관리사)가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노인 안부 확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생활관리사는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그들이 기초생활수급제 등의 복지 서비스 대상자로 파악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과거 독거노인은 자녀도 없이 생활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 안전성을 토대로 자발적인 독립생활을 선호하는 노인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족 구조적으로도 노부모를 봉양하고 '효'를 통한 부양의식의 당위성이 차츰 사라지면서 노인 역시 자녀의 부양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약해지고, 노후에는 연금과 사회복지 서비스로 생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적부양우선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자녀는 노부모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양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974조). 그러나 공적 부양으로, 독거노인에게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없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과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헌법 제34조 제5항).

참고문헌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7),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통계청, 2022), 고독사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제적 고찰(채우석, 일감법학51,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노년기 삶에 대한 독거효과 분석 연구(강은나 · 이민홍, 보건사회연구38-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통계청(kostat.go.kr).

필자 조은희(趙恩嬉)

독신
獨身

정의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

역사 조선시대에 사용된 '독신獨身'이라는 말은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 또는 '혼자서'라는 의미로, 오늘날 혼인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말은 아니었다. 조선시대에 혼인하지 않은 사람을 통칭하는 말은 없었고, 다만 '독녀獨女' 혹은 '독남獨男'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는 혼인과 무관하게 늙어서 배우자나 자녀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었다.

『황성신문皇城新聞』(1903. 4. 17.) 기사 '독신자의 과세(獨身者의 課稅)'에서 '독신'이라는 말이 등장하였으며, 여기서는 혼인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표현되었다. 즉, 독신은 근대적 '결혼'이 설정된 방식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일제강점기 법률혼法律婚과 함께 혼인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독신자는 연애나 결혼에 실패한 사람 혹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사회적 시선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근대화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서 독신생활과 독신주의에 대한 선망도 일어났다. 개인주의, 도시화,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혼인이 하나의 선택 문제로 인식되면서 독신은 생활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용 오늘날 청장년층에서 독신인 1인가구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 6,000가구가 1인가구에 속한다. 1인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9세 이하 19.8%,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 적령기에 있는 30대의 독신 남녀에게 "결혼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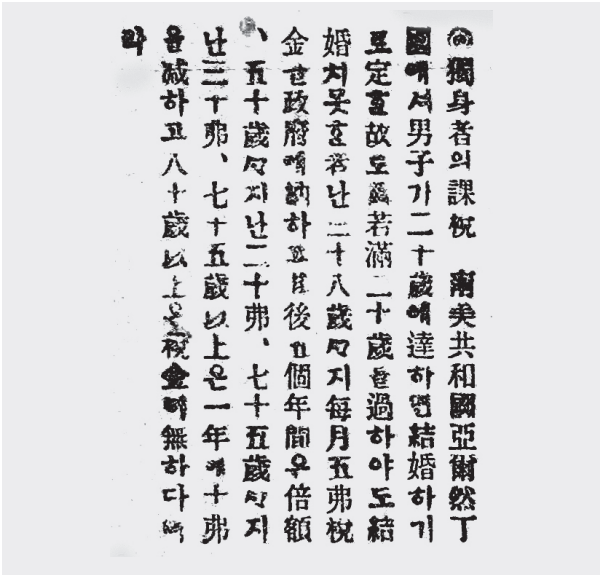

독신자의 과세 | 1903. 04. 17 | 황성신문 | 국립중앙도서관

는 54.2%, 여자는 45.1%가 "결혼계획이 있다."라고 답하였다.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 남녀는 혼자가 편해서(남 54.1%, 여 70.5%), 집값이 너무 올라서(50.4%, 36.0%), 취업난 때문에(40.7%, 27.3%),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35.6%, 42.4%)라고 답하였다. 다수의 독신자는 혼인을 원하지만 혼인 상대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사회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독신을 고수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독신생활이 편해서 이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한편 독신자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입양 유형으로는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일반양자(〈민법〉 제866조-제908조) 입양,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입양이 있다. 이들 입양 유형의 요건과 효력은 각각 다르다. 독신자는 친양자를 제외하고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독신 여성에게 정자가 제공되는 보조생식술에 의한 인공수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인공출산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임부부(2019년 이후 사실혼 부부 포함)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독신은 배우자 혹은 파트너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고 정해진 사회적 관계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독신은 혼자 사는 1인가구라는 점에서 과부·환부鰥夫, 이혼자, 미·비혼 등을 포괄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독신'은 결혼한 적 없는 사람에 한정된다. 독신주의자는 현재 그리고 장래에도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겠다는 주관적인 의사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19년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와 기대수명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기대수명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소득 수준, 결혼 여부, 사회적 건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높고 사회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기대수명이 높고, 비혼이든 기혼이든 관계의 질은 기대수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건강상의 악영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통계청, 2022), 식민지 조선의 독신 범주 구성과 모순적 작동(정지영, 한국문화연구3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8), Establishment of Normative Self-Rated Health Status Data in Korea(이지혜 외, Asian Nursing Research13-2, 한국간호과학회, 2019), 독신자의 과세(황성신문, 1903.4.17.).

필자 조은희(趙恩嬉)

동거
同居

정의 사람이 누군가와 한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

내용 동거同居는 포괄적으로 파트너, 친구, 친척 등이 한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혼인하지 않은 커플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동거라고 한다. 사실혼事實婚도 혼인하지 않고 함께 생활한다는 점에서는 동거와 동일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동거와 사실혼은 당사자 간 혼인 의사 유무에 따라 구별된다.

남녀의 동거는 사실혼과 달리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로써 동거하는 당사자 간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동거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상대방의 유책有責으로 말미암은 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없다.

남녀의 동거는 혼인으로 가는 과도기적 시험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혼전 동거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회 인식도 존재한다. 그러나 혼인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사실혼이나 동거를 선호하는 커플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이미 동거는 1970~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문화이다. 커플이 동거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동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인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기를 원한다. 현재 한국의 혼외자 출생률은 2000년 0.9%, 2005년 1.5%, 2010~2013년 2.1%, 2014년~2017년은 1.9%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의 평균 혼외자 출생률이 40.5%이며, 유럽국가의 평균 혼외자 출생률이 39.6%라는 점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동거 커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집 마련이나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려고(32.2%), 같이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기 위해서(28.7%),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20.7%)라고 답하였다. 이혼율 증가와 함께 재혼율도 증가하고 있다. 재혼의 경우 초혼 실패의 경험 때문에, 노년층은 재산문제 등을 이유로 한 전혼前婚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함께 사는 경향을 보인다.

특징 및 의의 서구 유럽에서 비혼인 공동체는 혼인이 아닌 동거를 의미한다. 그러나 비혼인 공동체와 그들 자녀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혼인 공동체의 생활 형태를 혼인, 생활동반자 관계, 동거로 분류하였다. 생활동반자 관계는 프랑스의 팍스PACS제도와 독일·오스트리아의 〈등록된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생활동반자 관계는 혼인보다 느슨한 법적 권리의무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커플이 등록(신고)을 하면 상호 간 부양의무의 책임이 있다. 이들은 주거, 세제 혜택, 의료보험, 사회보장법, 파트너에 대한 의료 과정의 의사결정, 가정폭력에 대한 특별보호 등 법적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동거는 혼인이나 생활동반자보다는 자유로운 생활유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박종서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실혼 보호법리의 변천과 과제(박인환, 가족법연구23-1, 한국가족법학회, 2009), 사실혼과 비혼동거에 관한 연구(강승묵, 한양법학26-3, 한양법학회, 2015),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소고(조은희, 법과정책28-3,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2).

필자 조은희(趙恩嬉)

동생

정의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 사이에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내용 동생은 원래 부모를 함께하는 형제·자매·남매를 이르는 한자어로, 동기同氣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동생의 어원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과 아우[同母兄弟]'라는 뜻의 동산同産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형제자매 간에는 예로부터 "몸은 나뉘었으나 기운은 이어졌다[分形連氣]."라고 하였다. 조선 중기까지 형兄은 '동생 형', 제弟는 '동생 제', 매妹는 '동생 매'라 하였다. 즉 조선 중기부터 같은 부모를 둔 형제자매인 동기간에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를 동생이라 하였다. 또한 동기간에 손위 여자가 손아래 여자를 동생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동생은 대부분 지칭어로 사용되지만 이름 대신 '동생아'라는 호칭어로 쓰기도 한다.

동생의 성별을 고려하여 남자이면 남동생이라고 하고 여자이면 여동생이라 한다. 남자의 나이 어린 여자 동생을 누이동생이라고도 지칭한다. 남자들 사이에서 손아랫사람을 아우라고 하는데 보통 남동생을 대우할 때 사용하였다. 태어난 순서를 고려하여 첫째 동생, 둘째 동생, 막냇동생이라고 한다. 성별이 같으면서 자기 바로 밑의 동생은 제밑동생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동생은 언어 사용자와 지시 대상이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쪽만을 공유하였을 때도 사용된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동생을 이복동생異腹同生 또는 배다른 동생이라고 지칭한다. 한 어머니에게서 난 동생은 동복동생同腹同生이라고 한다.

동생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친족인 혈족血族의 직계直系에서 갈라져 나간 계통 사이의 대수를 나타내는 말인 항렬行列이 같은 사이에서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도 쓴다. 형제자매는 같은 항렬을 나타내기 위해 이름자 안에 넣어 쓰는 돌림자를 같이 사용한다. 돌림자를 같이 사용하는 같은 항렬 안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친척 동생이라고 한다. 친척 동생은 친족 사이의 멀고 가까운 사이를 나타내는 촌수寸數를 따라 사촌四寸 동생, 육촌六寸 동생 등까지 동생 범위에 포함된다. 사촌 동생은 아버지 친형제·자매들의 아들과 딸 가운데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다. 육촌 동생은 할아버지 형제의 손자와 손녀로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다.

혼인한 여성은 같은 부모에게서 난 동생을 친동생이라 하고 남편의 남동생을 시동생이라 한다. 현재는 동생의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 남남 사이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을 정답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사용하기도 한다. 동네 동생, 학교 동생, 이웃 동생 등은 비친족어로 사용된 용례이다. 전통시대 남의 아이에게 그 어머니 대신 젖을 먹여 주는 여자를 유모乳母라고 하는데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는 자기 유모가 낳은 아들과 딸을 젖동생이라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유모가 사라지면서 젖동생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특징 및 의의 동생은 원래 동기와 같은 뜻으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남매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친족용어였다. 조선 중기부터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 가운데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만을 지칭할 때 동생이라고 하였다. 동기간에 손위 여자가 손아래 여자를 동생이라 하기도 하였다. 같은 부모에게서 난 동생을 친동생이라고 구분하여 지칭하였다. 부계친족조직의 발달과 함께 항렬이 같으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친척 동생이라고 하였다. 동생 범위는 점점 확장되어 친족관계가 아닌 남남 사이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에게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 동생을 호칭어와 지칭어로 자주 사용한다.

참고문헌 한국어 친족어의 의미(김광순, 박문사, 2017),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필자 김지영(金志榮)

동서
同壻

정의 형제의 아내들 사이 또는 자매의 남편들 사이에 서로 가리키거나 부르는 친족용어.

내용 동서同壻 관계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형제兄弟의 아내[妻]들 사이이고, 또 하나는 자매姉妹의 남편[夫]들 사이다. 즉 전자는 한 집안에 며느리[婦]로 들어온 여성들 사이이고, 후자는 사위[壻]로 들어온 남성들 사이를 가리킨다. 따라서 '동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사용되는 친족용어이다.

①여자 동서 간: 형제의 아내들 사이를 동서 간이라고 한다. '동서'는 형제의 아내들 사이에 서로를 호칭하는 말이다. 손위 동서가 남편 동생[媤同生]의 배우자인 손아래 동서를 직접 호칭할 때는 '동서'라고 하지만 반대로 손아래 동서는 남편 형[媤叔]의 배우자인 손위 동서를 '형님'이라고 부른다.

②남자 동서 간: 자매의 남편들 사이를 동서 간이라고 한다. '동서'는 자매의 남편들 사이에 서로를 호칭하는 말이다. 손위 동서가 아내 동생[妻弟]의 배우자인 손아래 동서를 직접 호칭할 때는 '동서' 또는 '성+서방' 등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손아래 동서는 아내 언니[妻兄]의 배우자인 손위 동서를 '형님'이라고 부른다.

바꿔 말하면 ①여자 동서 간에 사용되는 '동서'는 부계夫系, 즉 남편의 친족과 관련된 용어이고 ②남자 동서 간에 사용되는 '동서'는 처계妻系, 즉 아내의 친족과 관련된 용어이다.

남편의 형제나 아내의 자매가 여럿인 경우에는 큰동서·작은동서 또는 몇째 동서 등으로 그 차례를 챙겨서 부른다. 동서끼리는 자기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 집안의 형제나 자매 나이를 좇아 손위와 손아래를 따지게 된다.

여자 동서 간은 전통적인 부계친족제도 아래 같은 여자로서 혼입混入하여 남편의 부계가족에서 주변인이며, 어려운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며느리의 입장을 공유한다. 그러나 손아래 동서 입장에서는 손위 동서의 시집살이가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더 매서운 경우도 있다. "동서 시집살이는 오뉴월에도 서릿발 친다."는 속담은 여자의 시집살이 가운데 동서 밑에서 하는 시집살이가 가장 어렵다는 말로, 며느리 입장에서 '동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지역사례 지역별로 사용되는 ①여자 동서 간 ②남자 동서 간에 대한 친척용어를 연령에 따라 친척 지칭과 친척 호칭으로 나눠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친족원	친척지칭	친척호칭	비고
경기 양평	① 여자 동서 간	(손윗)동세님	성님	
		(손아랫)동세	동세	
	② 남자 동서 간	(손윗)동서	성님	
		(손아랫)동서	동서	
인천 강화	① 여자 동서 간	큰동세님	성님	
		작은동세	동세	
	② 남자 동서 간	(큰)동서	성님	
		(작은)동서	동서	
강원 삼척	① 여자 동서 간	웃동세	형님	
		아랫동세	동세	
	② 남자 동서 간	큰동서	형님	
		작은동서	동서	
충북 청주(청원)	① 여자 동서 간	큰동세	형님	
		동세	동세	
	② 남자 동서 간	큰동서	형님	
		동서	동서	
충남 홍성	① 여자 동서 간	큰동세님	형님	
		(손아래)동세	동세	
	② 남자 동서 간	(손위)동서	동서	
		(손아래)동서	동서/ 성+서방	
전북 고창	① 여자 동서 간	큰동서	(큰)성님	
		동서	동서	
	② 남자 동서 간	(큰)동서	동서/ 성+서방	
		(작은)동서	동서/ 성+서방	
전남 진도 조도	① 여자 동서 간	성님/(큰)동서	성님	'형님'으로 변화가 일어남
		동숭/동서	동숭	
	② 남자 동서 간	(큰)동서	성님	
		(작은)동서	동숭	
경북 구미 선산	① 여자 동서 간	(맏)동서	형님	
		(아랫)동서	새딕이	
	② 남자 동서 간	동서	동서	
		동서	성+서방	
경북 영덕 영해	① 여자 동서 간	동서	형님	
		동서	새댁	
	② 남자 동서 간	동서	이름+(씨)/ 성+서방	
		동서	이름/ 성+서방	
경남 함양	① 여자 동서 간	동서	형님	
		동서	새댁	
	② 남자 동서 간	(손위)동서	성+서방/ 동서	
		(손아래)동서	성+서방/ 동서	
경남 통영 사량도	① 여자 동서 간	(손우)동서	성님	
		(손아래)동서	동숭/동서/ 아이 이름	
	② 남자 동서 간	동서	성님/동서	
		동서	동서	'성+서방' 형태는 쓰지 않음
부산 동래	① 여자 동서 간	웃동시	성님	
		아랫동시	동시	
	② 남자 동서 간	(큰)동서	성님	
		(작은)동서	동서/ 성+서방	

출처: 한국의 언어 민속지(2009~2023)

특징 및 의의 동서라는 말은 사위를 뜻하는 서婿에서 비롯하고 있기에 본래는 사위들이 서로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고 며느리들 사이에는 통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함께 시집을 산다는 뜻의 '동시同媤'에서 '동세'가 되고, 이것이 다시 '동서'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강원도·충청도 등에서는 여자 동서 간에는 '동세', 남자 동서 간에는 '동서'를 구분하고 부산에서는 여자 동서 간에는 '동시', 남자 동서 간에는 '동서'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예들이 보고된 것은 참고할 만하다.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는 형제 아내들이 서로 칭하는 말인 '축리妯娌'를 '계집동셰'라고 뜻풀이하고 있는데 이 '동셰'가 동서에서 전환된 것인지 '동시同婿'에서 전환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참고문헌 訓蒙字會, 한국의 언어 민속지-강원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기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상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한국의 언어 민속지-서편(왕한석, 교문사, 2009), 한국의 언어 민속지-전라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한국의 언어 민속지-충청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조숙정(趙淑晶)

동성동본
同姓同本

정의 성과 본관이 같은 친족, 가계.

내용 본관은 어느 한 시대에 정착했던 조상들의 거주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본관제도가 정착된 시기는 고려시대로, 고려 초기에 지배층 일반에게 성이 보급되면서 정착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본관제도가 정착되었지만 여전히 근친혼과 동성혼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학자들의 의견과 규정, 제도에 의해 동성불혼同姓不婚이 철저하게 강조되었다. 다만 동성이본同姓異本 간 혼인은 행해지고 있었다.

동성동본同姓同本의 혈연관계를 성족姓族·동성친同姓親·동종同宗이라 부르고, 간혹 친족이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용어는 대체로 160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 보였고, 그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동족집단 형성은 16~17세기 이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동족집단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시기에 남자와 여자 서열이라든지 양자 신분, 외손 범위 등에 변화가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항렬의 출현과 확대, 외손봉사, 재산상속과 제사상속 등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외족과 처족 관계가 약화되고 남계男系집단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 동성동본 개념은 친족 발달과 그를 둘러싼 여러 제도와 관련이 있다.

동성동족에서는 파조派祖를 정점으로 그 자손들이 이룬 분파分派도 형성·발전하였다. 족보를 보면 조선시대 파의 형성 과정을 알 수 있다. 파는 17세기에 출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출현하였다. 그리고 초기에 족보는 자기 직계조상을 찾아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파조를 중심으로 자기 파의 결합이나 본인의 파와 다른 파를 구별하기 위한 기능으로 바뀌어 갔다.

한편 양자제도도 15세기 이전에는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 전기 족보의 기록을 보면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 입양 없이 딸에 의한 제사와 분재分財가 이루어졌다. 17세기 중엽까지는 양자 결정 시 처가 친족도 본가 친족과 동일하게 그 결정에 참여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처가 친족 쪽의 참여는 배제되고 남편 쪽 친족의 결정만으로 양자 입양이 행하여졌다. 즉 양자제도를 통해 17세기 이후가 되면 양계친족에서 부계친족으로 친족 성격이 전환되며 부계친의 유대 범위 확대와 조직화, 아들에 의한 가계 계승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분파별로 파보派譜를 발간한 경우 파 단위 항렬도 제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런가 하면 가계 존속을 위한 선남후녀의 출생순 족보 기재, 입양을 통한 종가전대宗家傳代, 대동항렬자大同行列字 등이 나타난다.

대동보도 편간된다. 이는 가문과 문벌을 중시하는 양반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동성동본의 대동보는 시조로부터 모든 파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합쳐서 엮은 것이다. 양반들은 조상을 잘 알고 그로써 집안 내력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 된 도리로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대동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념을 지나치게 중요시하여 양반 행세를 하며 권력을 누리려 하거나 문벌을 내세워 이득을 얻으려 하는 등의 폐단도 많았다.

족보는 대체로 30~50년마다 편집·수정하여 새로 간행하였고, 화수회·종친회·종약회 등에서 이를 관리하였다. 족보 간행이 결정되면 종회에서 따로 대동보소를 조직하고 '유사有司'라는 실무 책임자를 두었다. 이때 유사는 일족에게 단자를 보내라는 서신이나 공지를

띄운다. 단자에는 계파系派를 쓰던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 본인과 자식 나이 및 이름, 배우자의 성씨, 사위와 사위 아버지 이름도 적는다. 본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기일 및 묘와 관련된 내용도 기재한다. 본인 몫의 경비도 함께 보내야 한다.

동성동본불혼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성과 본이 같은 동성동본 간을 친족으로 인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성리학 영향으로 조선 초기부터 금지되었고, 이는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의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유지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 이를 규정하였다.

이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해서는 계속 이의가 제기되었다. 1978년, 1988년, 1996년에는 각각 1년 동안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동성동본인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에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현재는 동성동본 여부를 불문하고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의 혼인만을 금지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동성동본은 성이 같음을 뜻하는 동성과 본관이 같음을 뜻하는 동본이 합쳐진 말로, '성과 본관이 모두 같음'을 뜻한다. 이는 엄격한 부계 중심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혈족 계통은 성씨만으로는 표시하지 못하고 본관을 병칭竝稱하여야만 동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과 본관의 상관관계에 따라 동성동본·동성이본·이성동본異姓同本·이성이본異姓異本의 경우가 있다. 예컨대 연안이씨延安李氏·한산이씨韓山李氏·광산이씨光山李氏에서 보이는 동성이본, 경주최씨慶州崔氏·경주이씨慶州李氏·경주김씨慶州金氏에서 보이는 이성동본, 광주김씨廣州金氏·동래정씨東萊鄭氏·울산박씨蔚山朴氏에서 보이는 이성이본과 다르게 성과 본관이 같은 것이 동성동본이다.

참고문헌 한국가족연구(최재석, 일지사, 1982),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한국법제사고(박병호, 법문사, 1974), 한국의 씨족제에 있어서의 본관 및 시조의 문제(송준호, 역사학보109, 역사학회, 1986), 한국중세사회사연구(이수건, 일조각, 1984).

필자 이해준(李海濬)

동성동본불혼
同姓同本不婚

정의 성과 본이 같은 남녀 사이, 즉 동일한 남계시조의 후손 사이에는 촌수와 관계없이 혼인하지 않는 제도.

내용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가 근친금혼近親禁婚, incest taboo이다. 이는 원시사회부터 족내혼과 족외혼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그 자손들의 번성함을 통해 점차 족내혼, 특히 근친혼이 좋지 않다는 경험칙을 발견하여 사회규범으로 정착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친금혼은 혼인대상자를 일정한 범위 밖에서 구하는 외혼율外婚律, exogamy이며, 성姓과 본本을 같이하는 사람들 사이의 혼인을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씨족외혼제氏族外婚制이다.

성은 남계혈통이 계속되는 한 아무리 자손이 갈라지더라도 영구히 변하지 않는 것이며, 본 또는 본관本貫·관향貫鄕·향관鄕貫은 시조 또는 중시조의 발상지를 표시하는 것이고 동성동본은 동일 조상을 표상하는 것이다. '동성'이라는 형식과 '동조'라는 실질은 공신功臣에 대한 사성賜姓(임금으로부터 성을 받는 일)이나 개성改姓, 개본改本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조상이 같은 동성동본인 남계혈족뿐만 아니라 조상이 같은 동성이본·이성동본·이성이본 사이에서도 혼인하지 않았으며, 동성동본이라도 조상이 다르면 종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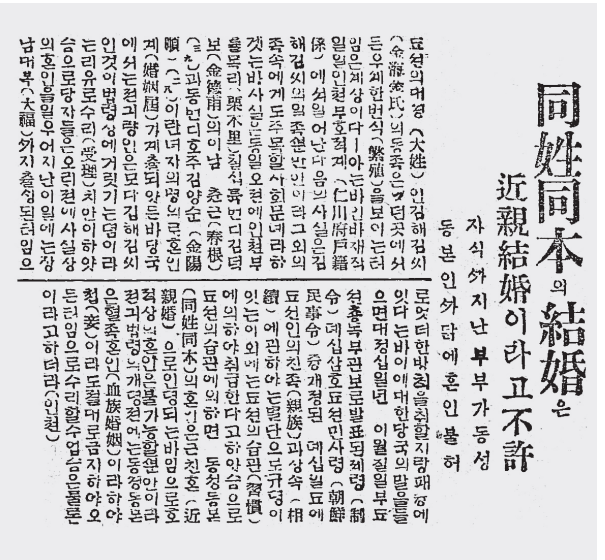

同姓同本의 結婚은
近親結婚이라고不許
자식까지난부부가동성
동본인까닭에혼인불허

동성동본의 결혼은 근친결혼이라고 불허 | 1926. 05. 03 | 매일신보 | 국립중앙도서관

이 아니므로 혼인을 하였다.

동성과 동본만을 따지지 않고 족보나 구전口傳 등에 의하여 동조同祖임이 확인되어 서로 혼인하지 않는 예도 있다. 즉 안동김씨安東金氏·안동권씨安東權氏·예천권씨醴泉權氏는 그 시조가 신라의 종성宗姓인 김씨이므로 수로왕首露王의 후손인 김해김씨金海金氏·김해허씨金海許氏·양천허씨陽川許氏·인주이씨仁州李氏 사이, 기자箕子의 후손인 청주한씨淸州韓氏·행주기씨幸州奇氏·태원선우씨太原鮮于氏 사이, 고려 태조太祖의 공신인 유차달柳車達의 후손인 문화유씨文化柳氏·연안차씨延安車氏 사이에는 서로 혼인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불취동성제不娶同姓制가 있었음을 언급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으로, 예조濊條에서 '동성불혼'이라고 한 구절을 찾을 수 있다. 동성불혼은 족외혼의 단위가 되는 씨족 집단이 존재하였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지금의 동성동본불혼同姓同本不婚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동성혼 기록이 없으며, 신라는 전시기를 통하여 동성근친혼同姓近親婚과 이계동성혼異系同姓婚 등이 지속되었지만 동성혼에 관한 시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한다. 고려시대에도 신라의 동성 근친혼 전통이 계속되어 적어도 왕실에서는 동성혼이나 근친혼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시대 근친혼에서 하나의 전례를 찾는다면 이복남매혼異腹男妹婚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모母가 혼인을 행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가 되었다.

고려 초기부터 근친혼을 금하여 1058년(문종 12), 1085년(선종 2), 1096년(숙종 1), 1134년(인종 16) 등 여러 차례 4촌 이내의 혼인을 금하기도 하고 해제하기도 하였다. 다만 혼인을 직접 금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의 출사를 막는 등 간접적인 방법이었다. 1309년(충선왕 즉위년)에 원元나라의 영향으로 문무양반文武兩班의 동성동본금혼령이 내려졌다. 거듭된 금령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에는 여전히 동성혼이 존속하였다. 동성불혼이 확립된 때는 유학을 국시國是로 하는 조선시대이다. 조선시대 일반형사법으로 적용되었던 『대명률大明律』에서 동성혼과 근친혼을 금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 전기부터 동성혼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同姓同本間에도
結婚을認定하기
制限은오히려惡影響이
當局에서準備進行
在來慣習을打破

동성동본간에도 결혼을 인정하자 | 1936. 04. 22 | 조선중앙일보 | 국립중앙도서관

동성불혼은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동본불혼이 되어 동종불혼同宗不婚이 된 것이지 성姓만 같으면 혼인을 금하는 동성불혼은 아니었다. 조선시대 『속대전續大典』에서 동성불혼을 규정하였으나 끝내 이는 준수되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적 특색으로, 성뿐만 아니라 본관이 같아야 동종同宗인 한국에서 동성同姓이면 동종인 중국식 동성불혼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1958년 제정된 〈민법〉(1960. 1. 1. 시행)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817조에서는 동성동본자 간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나 본인들의 직계존속 또는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혼인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제820조에서는 동성동본끼리 혼인하여 혼인 중 포태胞胎한 경우에는 위의 취소권자가 그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동성동본금혼 때문에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고려하여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1977년 12월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1978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동성동본인 부부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88년과 1996년에도 같은 내용의 특례법이 시행되어 동성동본인 부부와 그 자녀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강연회 및 피해자 사례 발표 | 1991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성동본불혼을 규정하고 있는 위 〈민법〉 조항은 제정 당시부터 충효 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 중심의 가부장적·신분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기능을 한 유산이라는 점과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에 위반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가정법률상담소를 중심으로 여성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하였다. 1997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불혼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憲法不合致決定을 하면서 1998년까지 해당 조문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는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동성동본불혼을 규정한 위 〈민법〉 조항은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한 상태이다. 둘째, 동 조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다만 동성동본금혼은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고 동시에 윤리규범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으며, 혼인제도는 입법부인 국회가 우리 민족의 전통·관습·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 재량 사항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위의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이 혼인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05년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문의 표제는 '동성혼 등의 금지'에서 '근친혼 등의 금지'로 개정되었다. 혼인이 제한되는 근친의 범위도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2008년 시행). 2005년의 〈민법〉 개정으로 촌수와 관계없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하던 것은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제한하게 되었다.

개정 〈민법〉 제809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인이 제한되는 근친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 성과 본에 기초한 신분적 요인에 따른 사회적 폐해는 대부분 사라졌다. 동성동본불혼 원칙은 사회질서의 하나인 혼인의 성립·유지에 크게 이바지하는 하나의 근본원칙이었는데, 특수한 사정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여 성급하게 결정 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반론도 있다.

특징 및 의의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체득한 동성동본불혼 관습은 신라의 골품제骨品制와 고려 왕실의 족내혼에서 보듯이 역사적 상황에 따라 준수되지 않기도 하였다. 동성동본불혼은 조선조에 들어서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강제되었으며, 이후 윤리 규범으로 확립되어 1960년 제정 〈민법〉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폐지론이 주장되어 1997년 이후 폐지되었다. 폐지 이전에도 세 차례에 걸친 특례법으로 동성동본인 부부와 그 자녀를 구제하였는데, 이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잘 보여 준다.

참고문헌 동성동본불혼에서 근친혼금지로의 개정(이희배, 가족법연구12, 한국가족법학회, 1998), 한국 가족법 읽기(양현아, 창비, 2011),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가족제도 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한국법제사(박병호, 민속원, 2012), 한국법제사고(박병호, 민속원, 2021),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정긍식(鄭肯植)

동성촌
同姓村

정의 동성동본의 혈연집단이 한곳에 모여 형성된 촌락.

개관 동성동본同姓同本의 씨족 성원들이 한 마을에 집단 거주하면서 마을 사회 전반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오랜 기간 지속된 마을이다. 동성촌同姓村에 한 성씨 집단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다른 성姓을 가진 사람도 일부 살았다. 종법사상宗法思想과 씨족조직이 널리 보급되었던 16~17세기 무렵 동성촌이 형성되고 발달하였다. 이때부터 종법에 따라 문중재산인 족전族田을 형성·유지하였고, 가묘家廟를 세웠다. 또한 종중 조직을 체계화하면서 동성촌락同姓村落이 나타났다.

내용 동성촌은 각 지방의 토성土姓들 중에서 성과 본관本貫이 동일한 혈연집단으로 형성된 촌락으로, 전통 촌락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현재의 동족 촌락은 16~17세기경 조선 중기 이후 종법사상과 씨족조직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등장하였다. 종법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에 따라 문중재산인 족전을 형성하고 가묘를 세우기도 하였다. 또한 종중 조직을 체계화한 것은 동성촌락이 나타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동성촌의 기본구조는 조선 후기 부계혈연을 중심으로 가계家系 계승이나 혼인제도, 입양제도, 상속제도 등과 연관된다.

동성촌에서 가장 중요한 성씨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나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1425)에 나타난다. 『세종실록지리지』와 『경상도지리지』 등에 토성土姓, 없어진 토성을 뜻하는 망성亡姓, 다른 곳에서 들어온 내성來姓, 원래 있다가 없어진 토성을 이어받은 속성續姓 등의 표현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 등에 보이는 각 지역의 성씨는 그 지역 토성의 성격을 계승하는 성씨였다. 그리고 이러한 각 지역의 토성 집단은 성씨별로 파와 벼슬의 품계를 나누어 지역별로 그 범위를 넓혀 갔다.

그러나 고려 후기 이후 향鄕·소所·부곡部曲의 소멸, 여말선초의 사회변화와 조선왕조 성립에 따른 세력 변동 등으로 15세기 후반부터는 본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반면 토성의 토착적 성격은 점차 약해졌다. 게다가 조선 중기 이후 종법사상이 강조되면서 동성촌이 다수 출현하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한 지역에 토성 집단이 모여 살긴 했지만 씨족조직을 뚜렷하게 구성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관직에 있었던 명문 사족들은 자신들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분가하거나 다른 마을로 분촌하여 파를 이루고 동성촌을 형성한 경우도 많았다.

동성촌의 핵심인 동성조직 지탱, 종가의 지위 유지뿐만 아니라 선조제사를 지내고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잇기 위해 종토宗土·위토位土·종산宗山·문중산門中山 등을 문중의 공유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들 동성촌이 가졌던 공유 재산은 그들의 권위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여 마을 안의 타성他姓과 인근의 비동성非同姓 주민들에게까지도 그 세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동성촌에는 서원, 사우, 재실, 정려, 서당, 누정 등도 있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가문에 내려오는 조상의 명성이나 권위를 널리 알리는 기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는 내적으로는 혈연집단의 결속력을 높이고, 외적으로는 하층민이나 타성에 대한 상대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권위를 과시하는 상징물이었다. 동성촌은 혈연 결속을 통해 사회·경제·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동성촌 확산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사회 신분구조의 변동과 연관되기도 한다. 즉 조선 후기 양반 사족의 점유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 한말에는 과반수의 변화상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로 인하여 혈연·지연적으로 결속한 동성촌이나 동성집단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의 취락朝鮮の聚落』(1935)에 따르면 동성촌 수가 1930년대에는 전국 촌락의 50% 정도에 달하고, 그 성립 연대도 300년에서 500년 이상이 태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신분제도가 폐지되면서 문중

하회마을 전경 | 경북 안동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양동마을 전경 | 경북 경주 | 2023 | 국립민속박물관·최지현

조직이 약화되고 경제적 계층구조가 변화하면서 동성촌 내에서의 사회관계가 크게 달라졌다. 이전에는 신분에 따라 마을의 정치적 지도자가 결정되었다면 근대에 와서는 부를 쌓은 타성씨가 마을 내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동성촌의 주를 차지하는 성씨와 타성씨 사이를 양반과 상민이라는 신분제로 나누는 인식은 혼인에서만 희미하게 나타나고 실제 사회관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 남아 있는 대표적인 동족촌으로는 풍산류씨豊山柳氏가 600여 년간 대대로 살아온 안동의 하회마을, 월성손씨月城孫氏와 여강이씨驪江李氏 종손이 500여 년간 전통을 이어 온 경주의 양동마을이 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2010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특징 및 의의 동성촌은 성과 본관이 동일한 혈연집단이 모여 형성된 촌락으로, 양반 사족 성씨 중심으로 형성된 씨족집단의 취거 촌락이었다. 조선 후기 친족체계는 내외친이 포함되는 양계兩系친족질서에서 적장자嫡長子가 중심이 되는 부계친족질서로 변화하였다. 이 질서가 변화하면서 재산상속에서 적장자가 중심이 되는 남녀 차등 상속, 장자가 조상제사를 책임지는 단독 봉사奉祀, 혼인에서 유교적 요소 증가 및 강화, 부계질서를 중심으로 한 문중門中 결성, 동성마을 형성 등이 나타났다. 특히 동성촌은 이러한 조선 후기 부계혈연 중심의 문중이 사회적으로 조직·운영되던 대표적인 기반이었다. 부계혈연의 중심적 기능을 하는 동성촌은 부계질서가 강화될수록 증가하였으며, 조선 후기를 거치면서 보편적인 마을 형태로 발달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 산업화·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동성마을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동족부락의 생활구조 연구(김택규, 청구대학출판부, 1964), 씨족부락의 구조 연구(김택규, 일조각, 1979), 조선시기 촌락사회사(이해준, 민족문화사, 1996), 조선시대의 족보와 동족조직(최재석, 역사학보81, 역사학회, 1979),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한국중세사회사연구(이수건, 일조각, 1984), 한국호적제도사연구(최홍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朝鮮

の聚落(善生永助, 朝鮮總督府, 1935).

필자 이해준(李海濬)

둥지양자

정의 혼인한 후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양자로 들어가는 사람.

내용 유교의 부계父系 중심적 가족이념이 정착하지 않았던 고려시대에는 집을 이어받는다는 계승 관념이 희박하였다. 이런 이유로 자녀를 두지 않았을 때 혈통과 상관없이 양자를 들이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조선시대로 접어들어 종법宗法에 따른 부계혈통 중심의 계승 관념이 강조되면서 장남 우대의 재산상속과 장남 단독의 제사계승이 자리 잡게 된다.

양자관행은 혈통의 정통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었다.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아들이 없으면 관청에 신고한 후 동종同宗의 사람을 양자로 들일 수 있다."라고 부계혈통을 양자로 삼도록 규정해 두었다. 이처럼 종법에 기초한 양자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계혈통'이었다. 그래서 성姓이 다르면 양자로 삼지 않는다는 이성불양異姓不養 원칙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양자를 들일 때는 '항렬行列'도 중시하였다. 즉 자식항렬[子行]에서 양자를 들여야 하였고, 또 항렬은 적합하지만 양부보다 나이가 많으면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를 순행서치順行序齒 원칙이라고 한다. 항렬과 연령을 함께 고려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양자관행의 엄격한 원칙 때문에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백골양자白骨養子인데, 이는 순행서치 원칙으로 인해 비롯된 습속이다. 즉 아들 항렬 중에 적당한 대상이 없어 손자 항렬에서 양자를 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취해진 방식이다. 손자 항렬의 사람을 양자로 삼으면 순행서치 원칙에 위배되기에 그 사람의 죽은 아버지를 양자로 삼았다는 내용을 족보에 기재해 두는데, 이때 백골(유골) 상태로 들어왔다는 의미에서 백골양자라고 불렀다.

'둥지양자' 역시 원칙에 부합되는 대상을 찾지 못하였을 때 행해졌던 관행이다. '둥지'는 새의 보금자리를 뜻하는 것으로,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둥지양자는 '혼인해서 가족을 이룬 상태에서 양자로 들어오는 경우'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경상도에서는 새의 둥지가 통째로 옮겨진다고 해서 둥주리 양자, 둥우리 양자, 둥지리 양자라고도 한다. 원래 양자는 혼인 전에 들어와서 양가養家의 가풍을 충분히 익힌 후 가문의 위상에 어울리는 집안과 혼인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겼다. 그래야 비록 양자를 들여 후사를 잇더라도 가문의 정통성을 담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안동 서후면의 의성김씨義城金氏 학봉 김성일 종가의 14대 종손 김시인金時寅(1917~2008)은 13대 종손 김용환金龍煥(1887~1946)이 후사를 두지 못해 29세 되던 해에 양자로 들어왔다. 당시 그는 혼인해서 아들 형제를 둔 상태였기 때문에 둥지를 통째로 옮겨 왔다는 뜻에서 '둥지리 양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앞서 김용환 역시 양자로 들어왔으나 딸 하나만 두고 후사를 잇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중에서는 양자를 물색하던 중 지례에 살고 있던 족친 김시인을 지목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미 가족을 이룬 상태였기에 거듭 거절하였으나 학봉 문중의 끈질긴 설득과 간청을 이기지 못해 양자로 들어왔다.

특징 및 의의 『국조방목國朝榜目』에 수록되어 있는 과거급제자 집안의 양자 내력을 보면 양자의 연령은 10세에서 20세 사이를 차지하였으며, 10세에서 15세 사이가 가장 많았다. 양자는 미혼 상태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양부의 나이는 40세 이상이었다. 이처럼 양자는 미성년의 아이나 미혼의 청년을 입양해서 그 집안의 가풍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최인학 외, 민속원, 2001),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필자 김미영(金美榮)

딩크족

정의 혼인한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족 형태.

내용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 중산층의 일반적인 가족 유형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이라면 최근에는 핵가족에서 분파된 가족 유형인 딩크족도 출현하였다. 딩크DINK란 'double income, no kids'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즉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일을 해서 수입이 있으며, 자녀가 없다는 뜻이다.

딩크족은 1986년경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가족 형태라고 알려져 있다. 도시에서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일과 자녀 양육이 공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부모로서의 희생,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직업에서 얻는 만족감과 여유로운 부부생활을 택하는 젊은 부부를 딩크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딩크족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수입이 외벌이 가정보다 많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면서 수입을 얻기에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진다. 둘째는 자녀가 없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에너지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에 부부가 자유롭게 여행이나 여가 활동을 즐기게 된다. 셋째는 자유로운 소비생활의 유지이다. 자녀 양육에 드는 시간과 돈을 부부의 자유로운 소비활동에 투자한다. 부부 각자의 관심사나 취미를 추구하거나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강조된다. 이들은 여가 혹은 문화 활동, 레저, 여행 등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딩크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로 여겨진다. 딩크족의 출현은 우리나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최근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증가한 것은 물론 기혼의 무자녀 부부 수가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3년 주기로 〈건강가족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전국의 1만 997가구의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국가 승인 통계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20대의 절반 정도가 비혼 독신, 비혼 동거, 무자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향후 가족 형태 및 생애주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비교하면 무자녀가 29.1%에서 52.5%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 9월 849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무자녀 기혼자와 미혼자 10명 중 3명(30.6%)이 딩크족을 희망한다고 답한 사례가 있다. 딩크족을 희망하는 주요 이유로 여성은 양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23.5%), 내 삶에 집중하고 싶음(23.5%)을 들었다. 남성 또한 딩크족을 희망하는 주요 이유로 양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40.0%)을 들었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에서 딩크족의 출현은 자녀를 낳는 일의 경제적인 부담과 그 부담을 지기 싫다는 이유가 주요인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딩크족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미국에서는 부부가 누려야 하는 자유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딩크족이라 하더라도 문화적 배경에 따라 딩크족으로 사는 이유가 달라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참고문헌 30~40대 딩크족 부부의 결혼유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장유경·김현주, 가족과 가족치료29-2, 한국가족치료학회, 2021), 한국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최유정·신아름·최샛별, 가족과 문화27-2, 한국가족학회, 2015),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 딩크족(울산매일UTV, 2022.11.15.).

필자 함한희(咸翰姬)

딸

정의 부부가 낳거나 입양한 자녀 가운데 여자를 가리키는 말.

내용 딸은 부부가 낳거나 입양한 자녀 가운데 여자를 부모에 상대하여 이르는 순우리말로, 아들과 대비되는 개념어이다. 부모가 딸을 지칭하거나 호칭하는 친족용어는 딸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 명의 딸과 부모 사이에서 부모는 딸을 이름이나 '딸' '딸내미' '내 새끼' 등으로 부른다. 딸이 두 명 이상이면 이름이나 태어난 순서에 따라 '첫째 딸, 장녀長女, 큰딸, 맏딸' '둘째 딸, 차녀次女, 작은딸, 막내딸' 등으로 부른다. 부모가 딸을 직접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딸이라고 지칭한다. 부모는 딸을 입양 여부에 따라 친딸과 양딸로 구분하여 지칭하기도 한다. 양딸의 경우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길렀다는 의미로 수양딸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종법宗法에 기초한 유교적 가족 질서로 인해 딸은 가家의 계승자가 될 수 없었다. 20세기 후반까지도 딸만 낳은 여성은 가족 내에서 부인·며느리·어머니로서 불안한 지위를 가진 존재였다. 딸만 낳은 여성의 지위는 아들을 낳은 여성의 지위보다 낮았다.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많이 낳을수록 여성의 지위는 하락하였다. 여성 스스로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15세기 대표적 의서醫書『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1433)과『태산요록胎産要錄』(1434)에는 임신 중에 자녀의 성별을 바꾸는 방법인 전남위녀법轉男爲女法과 전녀위남법轉女爲男法이 모두 등장한다. 예를 들어 "남아를 얻고자 한다면 활과 화살을 만지거나 수말을 타고, 여아를 얻고자 한다면 귀걸이를 걸라."라고 하였다. 남성을 상징하는 물건이나 여성을 상징하는 물건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임신 중에 원하는 성별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 두었다. 그러나 17세기 대표적 의서인 허준許浚(1539~1615)의『동의보감東醫寶鑑』(1610)에는 임신 중에 딸을 아들로 바꾸는 방법인 전녀위남법만 등장한다. 그 후 아들을 딸로 바꾸는 전남위녀법은 의서에서 사라졌다. 조선은 17세기 이후부터 자녀 가운데 딸보다 아들을 더 낳길 원하는 사회로 점차 변화하였다.

부모가 자녀 가운데 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하는 것을 남아선호男兒選好라고 한다. 유교 영향을 받은 부모는 집안 계승과 노후 보장을 위해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가족 내에서 아들이 딸보다 중요해지자 아들·딸 구별 없이 자녀를 달라고 빌었던 여성들은 부처[佛], 칠성七星, 제석帝釋님께 아들 하나 꼭 점지해 주길 소원하였다.

전통시대에는 신랑이 신붓집으로 가서 혼례식을 치르고, 신랑이 신붓집에서 사는 혼인 형태였다. 이를 남자가 여자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남귀여가男歸女家라고 한다. 혼인 후에도 여자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집에서 거주할 때 딸로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부계친족의식이 점차 강화되면서 친정에서 딸로서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남편의 집인 시집으로 가서 며느리로서 생활하는 생애 기간이 점점 늘어 갔다.

또한 혼인 형태의 변화와 함께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 주는 방식도 변화하였다. 이전에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자녀에게 고르게 나눠 주는 자녀균분상속子女均分相續에서 부모를 모시는 장자長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는 장자우대불균등상속長子優待不均等相續으로 변화되었다. 균분상속에서 딸과 장자에 대한 차등 상속으로 변화하는 데는 조상제사를 받드는 봉사奉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재산상속의 변화로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받드는 윤회봉사輪廻奉祀도 사라지게 되었다. 윤회봉사가 사라지면서 족보 기재 방식도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 적었던 방식에서 아들을 먼저 적고 딸을 그다음에 적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부계친족의식이 강화되면서 4대 봉사를 봉행하는 사회집단인 당내堂內를 넘어 5대조 이상 조상에 대한 제사를 봉행하는 부계친족집단인 문중門中이 더욱 발달하였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문중 구성원 자격은 아들에게만 주어졌다. 딸은 문중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었으나 2000년에 용인이씨龍仁李氏 사맹공파의 출가한 딸들이 딸들도 문중 모임인 종회宗會의 회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딸들의 반란'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005년 대법원에서 여성인 딸들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면서 남성인 아들에게만 주어졌던 특권적 지위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1962년부터 한국에서는 산아제한産兒制限 정책을 실

시하였다. 그러나 아들 선호로 인한 남성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0년대 가족계획 포스터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등장하였다. 1980년대에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한 자녀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한 자녀 정책과 근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여성의 임신 중에 태아의 성性을 미리 감별하여 여아만을 선택적으로 인공유산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여아 낙태 증가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1987년 11월 28일 〈의료법〉 제19조 2의 제2항으로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딸 사랑'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2년 10월 3일부터 1993년 5월 9일까지 방영된 MBC 주말 연속극 '아들과 딸'은 아들 선호와 딸에 대한 강한 차별을 드라마 소재로 삼았다. 쌍둥이로 태어난 아들 귀남貴男과 딸 후남後男의 인생을 그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뜻인 '엄부자모嚴父慈母'는 한국의 전통적인 부모의 역할과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딸은 아들과 달리 가문을 계승할 후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아들에게 대하는 엄한 태도를 딸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딸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딸은 시집가게 되면 남이 된다는 뜻으로, 부모와 딸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관념이 강해지면서 부모가 딸에게 지나친 정을 주면 딸이 혼인 후 시집살이를 잘하지 못할 것이고, 시집갈 때 정을 떼기가 어려워질까 봐 정을 많이 주지 않았다. 그리고 딸 가운데에서도 태어난 순서가 가장 빠른 맏딸은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자신의 뜻보다 가족의 기대와 필요에 대한 부담감·책임감·의무감에 사로잡힌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맏딸 콤플렉스'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맏딸과 달리 막내딸은 애교가 많은 자유로운 성격으로 자라난다.

특징 및 의의 한국 사회는 조선시대 유교적 종법 의식과 가족 질서의 영향으로 자녀 가운데 딸보다 아들을 더 중시하였다. 가계 계승과 부계의식 발달과 함께 여성은 혼인 후에도 태어난 집에서 머무르며 딸로서 생활하던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남편 집으로 가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며느리로서 사는 삶이 더 중요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급격한 사회 변화와 국가 정책으로 부부가 낳은 자녀의 수가 줄면서 자녀 가운데 딸을 차별하는 현상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딸보다 키우기가 어렵다는 의식이 생겨나면서 딸을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또한 아버지가 딸을 각별히 아낀다는 의미에서 '딸바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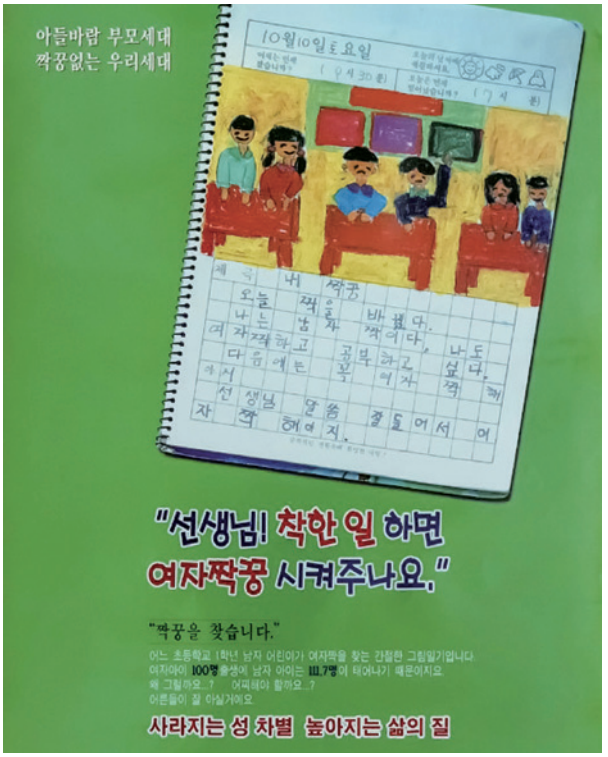

1990년대 성비균형 포스터 | 보건복지부

참고문헌 가족과 친족(이광규, 일조각, 1992), 전녀위남법의 고고학(신동원, 역사민속학9, 한국역사민속학회, 1999), 조선 전기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 변화와 재산권(이순구, 여성과 역사23, 한국여성사학회, 2015),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한국 가족계획의 역사(강준만, 인물과사상124, 인물과사상사, 2008),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필자 김지영(金志榮)

막내

정의 부모가 여러 명의 자녀 중에서 태어난 순서가 맨 뒤인 자식을 가리키는 말.

내용 막내는 부모가 여러 명의 자녀 가운데 성별과 상관없이 맨 나중에 태어난 자식을 가리키는 순우리말이다. 막내의 반대말은 자녀 가운데 맨 먼저에 태어난 맏이이다. 막내는 보통 성별과 상관없이 맨 나중에 태어난 자식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부모가 막내의 성별을 구분하여 지칭하고자 할 때 막내의 성별이 남자이면 막내아들이라 하고 여자이면 막내딸이라고 한다. 자녀 수가 많지 않을 때는 맏아들이 아닌 작은아들을 막내아들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막둥이와 막내둥이는 막내를 귀엽게 이르는 말이다. 막내는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한 명의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막내는 태어난 순서가 맨 나중이므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同氣들은 모두 윗사람 속성을 띠게 된다. 막내는 성별에 따라 손위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형, 누나, 언니, 오빠와 같은 네 종류의 친족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막내가 남자일 때 남자인 손위 동기에게는 형이라 하고 여자인 손위 동기에게는 누나라 한다. 막내가 여자일 때 남자인 손위 동기에게는 오빠라 하고 여자인 손위 동기에게는 언니라 한다. 반면에 손위 형제와 자매는 부모가 사용하는 친족용어와 동일하게 동기 가운데 맨 나중에 태어난 사람을 막내라고 지칭하거나 호칭한다.

인간은 가족 안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태어난 순서는 개인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부모의 양육 태도와 형제 관계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막내는 누군가가 무엇을 해 주기 바라며, 부모와 손위 동기로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여 얻어 내고 매력적인 존재가 되려고 한다. 막내는 맨 나중에 태어난 자식이고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특성으로 인해 보통 부모와 손위 형제자매들이 귀여워해 줄 것을 믿고 버릇없이 굴며 자라기 때문에 응석받이라고도 한다. 한국 속담에 '막내둥이 응석받듯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무엇이든지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의미이다. 또한 '막내아들이 첫아들이라.'라는 속담은 맨 나중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뜻이다. 막내는 유교적 위계질서와 가부장적 가족 구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가족 구성원이다. 따라서 자녀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맏이와 달리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적으며, 부모의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성향이 강하다.

부모는 자녀 가운데 맨 나중에 태어난 막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게 된다. 막내는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나 손위 동기들의 돌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녀 수가 많았던 전통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으면서 맨 먼저 태어난 맏이와 맨 나중에 태어난 막내의 나이 차가 많이 나기도 하였다. 특히 맏이는 부모를 대신하여 막내를 책임지고 돌봐야 하였다. 가족 내 위계와 서열을 중시하였던 유교적 가족 문화의 영향으로 동기간에도 태어난 순서가 먼저인지 나중인지, 성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따라 위계화되었다. 태어난 순서가 맨 나중인 막내는 손위 동기의 권위를 인정하고 위계질서에 순종하였다. 유교적 가족 문화는 막내의 가족 내 역할과 정체성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특징 및 의의 유교적 가족 문화는 가족 안에서 태어난 순서에 따른 역할과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자녀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맏이가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강하다. 반면에 막내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약하며, 부모의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행동한다. 막내는 유교적 위계질서와 가부장적 가족 구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가족 구성원이다.

참고문헌 심리적 출생순위 척도K-PBOI의 타당화 연구(정경용·김춘경, 청소년학연구17-1, 한국청소년학회, 2010), 출생순위 관련 국내 연구 동향(최인희·김현주,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8-2,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2015), 한국어 친족어의 의미(김광순, 박문사, 2017),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필자 김지영(金志榮)

만성보
萬姓譜

정의 유력한 여러 동성동본 성씨의 부계남성 계보를 망라하여 기재한 족보.

내용 중국 고대국가는 백관百官의 신분 출신을 확인하기 위한 계보系譜를 '도보국圖譜局'에 제출케 하고, 여러 성씨姓氏를 통합하여 족보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한대漢代에 편찬된 '관보官譜' '씨족편氏族篇' '만성보萬姓譜' 등이 그것이다. 또한 '성망씨족보姓望氏族譜'는 정부가 족보를 통해 지역마다 몇 개의 유력 성씨들을 파악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중국 고대의 족보는 정부가 여러 성씨의 귀족들을 계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위 '관찬 족보'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 유명 부계남성 계보를 여러 성씨에 걸쳐 망라한 '만성보' 형태의 족보는 이미 15세기에 작성된 바 있다. 양성지梁誠之(1415~1482)가 어명으로 편찬한 『해동성씨록海東姓氏錄』(1466)은 조선 초기에 유력 성씨의 가족들을 집권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관찬 족보라 할 수 있다. 15세기는 민간에서 족보가 편찬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때의 민간 족보는 상층 신분의 여러 성씨가 망라되는 족보였다. 아들만이 아니라 딸로도 연속될 수 있는 '자녀보子女譜'로 편찬됨으로써 서로 다른 성씨의 가족들이 족보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자녀보로 편찬되는 조선 전기 족보 대부분도 '만성보'라 할 수 있다.

17세기 중엽의 『씨족원류氏族源流』 『제성보諸姓譜』 『성원총록姓苑叢錄』 등은 민간의 족보 편찬이 성씨별로 분담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제시되었다. 이것은 집권적 성씨 파악의 정책 의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후 19세기에도 『잠영보簪纓譜』나 『동국세보東國世譜』와 같은 족보는 당시 주요 인물들의 성관별 부계남성 계보를 밝히면서 특히 관직 경임更任 관계에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다. 양반들의 중앙정치 지향적인 성향과 함께 상층 신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도도 느껴진다.

만성보 | 가로25 세로38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일정 지역의 성씨 계보를 망라하는 족보 가운데 1917년에 간행된 『하동향안세계원류河東鄕案世系源流』는 조선시대의 『하동향안河東鄕案』에 등재되었던 인물들로부터 후대로 내려오는 부계남성 계보를 모은 것이다. 당시 지역사회 인물들이 각자 '양반'으로의 신분적 연원을 계통적으로 확인하고자 편찬되었다.

한편 20세기 초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백씨통보百氏通譜』나 1900년경에 작성되어 1931년에 간행된 『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 1924~1925년에 편찬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와 『청구씨보靑丘氏譜』 등은 전국의 모든 '부계친족'들을 망라하는 족보로, 그로부터 '민족' 개념을 끌어내려는 사고방식이 개재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특정 신분을 대상으로 여러 성씨의 계보를 망라하는 족보들이 있다. 우선 과시科試에 합격한 자들의 계보를 성관별로 기록한 족보로, 문과에 급제한 자들의 문보文譜와 무과에 급제한 자들의 무보武譜 외에 역과나 의과 등에 합격한 자들의 역과보譯科譜·의과보醫科譜·의역주팔세보醫譯籌八世譜 등이 있다. 이들 족보는 대체로 합격자의 부계직계존속을 8대까지 기재하는 '팔세보' 형태를 띠며, 여기에 외조外祖와 처부妻父를 기록하기도 한다. 음직蔭職으로 관료에 진출한 자들의 음보蔭譜, 문과 급제자와 음직자의 계보를 기록한 진신보縉紳譜 등도 있다.

또한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남보南譜』와 『북보北譜』는 각각 영남 남인南人과 북인北人의 '당파보黨派譜'로, 당파의 주요 가계를 성씨별로 정리하였다. 모두 중앙정계의 변동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부계친족 가운데 당파를 달리하거나 당파와 관계없이 혼사가 이루어질 때도 있었다. 당파와 부계친족이 서로 일치하는 관계로 기록되지만 각각 분명히 구분되는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듯하다.

특징 및 의의 여러 성씨의 부계 계보를 하나로 묶은 족보는 대부분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편찬되었다. 만성보는 전국 규모의 지배적 계층에 대한 중앙정부의 집권적 통제를 위하여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전기의 족보도 여러 성씨의 가족들이 계층적 결합을 위하여 편찬된 일종의 만성보라 할 수 있다. 만성보는 여러 성씨를 수록하기 위해 부계 계보로 간략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족보는 조선시대 전 시기에 지속적으로 편찬되어 20세기 초의 족보 편찬에도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한국의 성씨와 족보(이수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의 족보(정승모,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손병규(孫炳圭)

맏이

정의 부모가 여러 명의 자녀 중에서 맨 먼저 태어난 자식을 가리키는 말.

내용 맏이는 부모가 여러 명의 자녀 가운데 성별과 상관없이 맨 먼저 태어난 자식을 가리키는 순우리말이다. 맏이의 반대말은 맨 나중에 태어난 막내이다. 맏이에 쓰이는 접두사 '맏'은 나이가 가장 많다는 의미이다. 맏이는 '맏'에 '—이'가 결합한 말이다. '맏'은 맏며느리, 맏사위, 맏손자, 맏손녀, 맏형수 등과 같이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여 사용한다. 맏이는 친족관계 외에 남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맏이는 성별과 상관없이 태어난 순서상 첫째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맏이 대신 '큰아이' '첫째 아이'라고도 하며, 직접 부를 때에는 '큰애야' '첫째야'라고 한다. 부모는 나이가 가장 많다는 의미의 접두사 '맏'에 자녀의 성별을 나타내는 의미의 아들과 딸을 추가하여 지칭하기도 한다. 그래서 둘 이상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은 맏아들이라 하고, 둘 이상의 딸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난 딸은 맏딸이라고 한다. 접두사 '맏' 대신 크다는 의미를 가진 큰딸, 큰아들이라는 친족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자어로 표현할 때는 장남長男, 장녀長女라고 한다. 즉 맏이는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한 명의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맏이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同氣간에 태어난 순서가 자기보다 뒤인 동기를 모두 동생이라고 지칭한다. 맏이는 동생을 성별에 따라 남동생과 여동생으로 구분하여 지칭하기도 한다. 맏이는 동생이 여러 명일 때 동생들이 태어난 순서를 따라 첫째 동생, 둘째 동생, 셋째 동생이라고 구별하여 지칭한다. 맨 나중에 태어난 동생은 막냇동생이라고 지칭한다. 반면에 동생은 자신의 성별에 기반을 두고 윗사람 속성을 띠면서 가장 먼저 태어난 동기를 큰형·큰누나·큰언니·큰오빠로 지칭하거나 호칭한다. 여동생과 달리 남동생은 큰형에게 높임을 추가하여 큰형님이라 하고, 큰누나에게 높임을 추가하여 큰누님이라고도 지칭하거나 호칭한다.

인간은 가족 안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태어난 순서는 개인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부모의 양육 태도와 형제관계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맏이는 어른과 관계를 잘 맺고, 타인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 맏이는 유교적 위계질서와 가부장적 가족 구조 속에서 다른 자녀보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크며, 자신의 주장보다 집안의 기대를 충족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부모는 자녀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나 나이가 가장 많은 맏이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의지하였다. 특히 자녀 수가 많았던 전통시대에 맏이는 부모를 대신하여 여러 명의 동생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 동생들도 첫째로 태어난 맏이에게 부여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였다. 가족 내 위계와 서열을 중시하였던 유교적 가족 문화 영향으로 동기간에도 태어난 순서가 먼저인지 나중인지, 성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따라 위계화되었다. 유교적 가족 문화는 맏이의 가족 내 역할과 정체성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맏이는 성별에 따라 부모의 기대뿐만 아니라 가족

출산장려 캐치프레이즈 | 2009 | 보건복지부

내에서 역할이 달랐다. 맏이 가운데 남자인 맏아들은 집안 계승자로서 아버지의 신분과 지위를 물려받았다.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아버지 부재 시 집안을 대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맏아들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다른 자녀에 비하여 가장 컸다. 부모는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 집안을 계승할 맏아들에게 교육권을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재산도 부모를 모시는 맏아들에게 더 많이 상속하였다. 맏아들은 조상에 대한 제사권을 가지고 있고, 조상신에게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초헌관初獻官 역할을 담당하였다.

'큰아들 만한 아들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들 가운데 맏아들의 구별된 지위와 역할을 함축하고 있다. 동생들이 잘못하여 꾸중 들을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직접 당사자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을 꾸짖고 벌을 주어 맏아들이 직접 동생에게 벌을 주고 통솔하도록 하였다. 실제 연령차가 많이 나는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는 맏이인 큰형이 아버지와 같이 엄한 경우가 많았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 아버지 역할을 담당하여 동생들을 교육시키고 혼인시켜 분가하게 하는 아버지 의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반면 맏이 가운데 딸은 첫 번째로 태어난 맏이와 딸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맏딸은 전통적으로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나이 어린 동생들을 돌봤다. '맏딸은 살림 밑천'이라는 관용구는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던 맏딸의 역할을 표현한 것이다. 가족 내에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야 하였던 맏딸 특유의 심리상태로 인해 '맏딸 콤플렉스'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맏딸 콤플렉스는 부모와 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의무감에 사로잡힌 심리적 상태를 뜻한다. 자신의 취향과 의지보다는 가족을 우선시함으로써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며 애쓰는 맏딸 특유의 성향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맏이의 가족 내 의무와 역할은 혼인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 맏아들과 맏딸 모두 혼인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한다. 유교적 가족관계 속에서 맏아들의 아내인 맏며느리와 맏딸의 남편인 맏사위의 의무 및 역할이 다른 며느리나 사위들보다 크기 때문이다.

전통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복이 있다는 다산多産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한국 사회는 1960년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6.0명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산아제한産兒制限 정책으로 자녀 수가 점점 감소하였다. 1980년대에는 두 자녀에서 한 자녀 낳기 정책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1983년 출산율은 2.1명 이하로 떨어졌다. 2005년에는 1.08명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시대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결국 2004년에는 가족계획 표어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부부가 한 자녀만 낳는 3인 가족이 늘면서 외동은 많아지고 맏이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전통시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복이 많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부부는 자녀를 많이 낳고자 하였다. 부모가 낳은 여러 자녀 가운데 태어난 순서가 첫 번째인 맏이는 부모를 돕고 나이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태어난 순서에 따라 가족 안에서 맏이가 담당했던 역할은 맏이의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대개 맏이는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 역할을 잘 수행하며, 조직 생활을 잘하고, 순응적인 성향을 보인다. 맏이 가운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후계자인 집안 계승자로서 가족 내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 반면에 맏딸은 남아선호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며 집안의 살림 밑천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어린 남동생

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자신을 희생함에도 남동생들보다 지위가 낮았다.

전통적인 한국 가족 내 맏이 역할에 따른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감은 '장남 콤플렉스' '맏딸 콤플렉스'와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한국 정부가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가족 내 자녀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한 자녀만 낳은 가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외동 수는 늘고 맏이 수는 줄고 있다. 자녀 수 감소로 일상생활에서 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는 낮아지고 있다.

참고문헌 심리적 출생순위 척도K-PBOI의 타당화 연구(정경용·김춘경, 청소년학연구17-1, 한국청소년학회, 2010), 한국 가족계획의 역사(강준만, 인물과사상124, 인물과사상사, 2008), 한국어 친족어의 의미(김광순, 박문사, 2017),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필자 김지영(金志榮)

말자상속
末子相續

정의 막내아들이 아버지의 재산과 가장권을 계승하는 상속제도.

개관 말자상속末子相續은 유목사회나 농경지가 좁은 농경사회에서 잘 나타나는 상속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부모 사후 부모의 재산과 가장권을 막내아들이 물려받는 상속제도를 말한다. 장자長子와 종손宗孫을 중요시한 우리나라에서는 장자상속이 문화적 규칙이었기 때문에 말자상속은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라남도 신안 흑산도의 예에서 보듯이 지역적으로는 말자상속 관행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내용 말자상속은 장자상속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직계가족에서 나타나는 상속 유형이다. 직계가족은 부모가 결혼한 한 명의 아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장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장자에게 재산과 가장권을 물려주는 것을 장자상속, 막내아들에게 재산과 가장권을 상속하는 것을 말자상속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재산이 양과 염소인 유목사회, 토지 규모가 작은 농경사회에서 말자상속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목사회에서 양·염소 등과 같은 재산은 분할이 쉽고, 목축을 위해 이동을 자주 해야 하기 때문에 장남이 결혼하면 일정 정도의 재산을 분할하여 주고 가족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방식이다. 경지면적 규모가 작은 농경사회에서도 결혼한 장남 가족이 함께 생활하면 가족 부양이 더 어렵기 때문에 장남이 결혼하면 분가시켜 가족 부양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였다.

어느 경우에나 형제들은 결혼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분가하고 막내가 남아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부모 사후에 부모의 집과 남은 재산 그리고 제사 등을 물려받고 가계家系를 계승하게 된다. 이를 말자상속이라고 한다.

말자상속은 몽골의 관습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몽골이 유목사회라는 점이 말자상속의 배경이었다. 초지 발달이 미약한 몽골에서는 이동형 목축을 하여야 하였고, 민첩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가축 수와 가족 수가 적은 것이 유리하였다. 따라서 아들을 결혼과 함께 순차적으로 분가시키고 막내와만 생활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또한 몽골의 과세課稅는 인두세人頭稅여서 사람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아들들을 분가시키는 것이 납세 측면에서도 전혀 불리하지 않았다.

반면 장자와 종손을 중요시한 우리나라에서는 장자상속이 문화적 규칙이었으며, 말자상속은 잘 나타나지 않았다. 장남은 결혼한 후에도 부모를 도와 농사를 같이하면서 생활하고, 동생들이 결혼하면 최소한의 재산만 분배하여 분가시켰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남이 부모의 집과 재산 그리고 제사를 상속하고 가계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말자상속 관습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흑산도에서 말자상속의 전통이 있었다. 흑산도는 산악 지형의 섬으로, 농경지가 매우 협소하여 어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가족원의 규모를 줄이고 가구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노동 참여 인원을 늘리기 위해 장남부터 결혼과 함께 분가하는 전통이 있다.

흑산도에서 '큰집'은 장남의 집이 아니라 조상방이 있는 집을 의미한다. 조상방은 조상의 위패를 모신 방

으로, 제사를 상속받은 사람의 집에만 있다. 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막내아들이 부모의 집을 물려받으면 조상 방도 물려받는 것이 되고, 따라서 막내의 집이 '큰집'이 된다. '큰집' 관념은 흑산도에서 말자상속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장치인 셈이다.

특징 및 의의 말자상속은 재산 분할이 용이한 유목사회와 농경지가 부족한 농경사회에서 보이는 상속제도이다. 말자상속에 비해 장자상속이 더 보편적인 상속제도이며, 말자상속은 특수한 환경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생계를 위해 가구 규모를 줄이거나 노동력 동원을 위해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한 지역에서 결혼한 아들은 순서대로 분가하고 막내가 끝까지 남아 부모와 생활을 함께하다가 부모 사후에 가계를 계승한 것이 말자상속이다. 장자상속이든 말자상속이든 부모의 재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 사이에 불균등 상속을 하였다. 그러나 아들들 사이에 평등성이 강조되고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의식이 완화되면서 자녀 균분상속이 확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몽고의 상속관행에 대하여(손현숙, 동양사학연구16, 동양사학회, 1981),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이광규, 일지사, 1992), 흑산도의 친척(김창민, 비교문화연구7-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1).

필자 김창민(金昌民)

맞벌이

정의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갖거나 일해서 돈을 버는 것.

개관 부부가 같이 일을 해서 가계家計를 운영한 것은 농경사회에서도 있었던 현상이다. 농경사회의 부부도 오늘날의 맞벌이처럼 농사와 직조織造 등 생산활동을 하며 조세도 납부하고 생산물을 화폐로 이용하여 시장에서 생활필수품을 마련하였다. 부인 중에는 신분상 가외家外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상업활동을 하며 가계에 일조하는 여성도 있었다. 산업사회에 들어와 남편은 일터에서 임금노동을 하고 부인은 가정에서 무급의 가사노동을 하게 되면서 외벌이가 나타났다. 이후 부인의 사회 진출 욕구가 커지고 소비지출 증가로 가계소득이 더 많이 필요해지면서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며 맞벌이가 증가하였다.

내용 농경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의 맞벌이 여성처럼 일해서 소득을 올리는 여성이 적지 않았다. 직조노동으로 부를 쌓거나 자가생산물 혹은 품을 파는 여성이 있었다. 민속학자 이능화李能和(1869~1943)는 "농가의 부녀가 무명짜기를 정업正業으로 하여 시골에서 부자가 되는 일이 있다."고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에서 말하였다. 역사학자 최남선崔南善(1890~1957)은 『고사통故事通』에서 "한경(서울)에서 사인士人은 궁하나 속수무책하거늘 안에서는 바느질, 세탁 외에 박물博物을 판다 하여 온갖 내조로 가계를 버텨 가는 것이 비장의 느낌을 주었다."고 하였다.

특수한 신분계층으로 관청과 민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자 노비 비자婢子도 있었다. 궁궐과 관청에 소속되어 있던 공노비公奴婢는 시중을 드는 일을 하거나 궁녀, 의녀, 기녀로 일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부府의 지방관리에게 여종 5명, 대도호부 이하 고을은 여종 4명, 군 이하의 고을에는 여종 3명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사노비私奴婢는 주인집에서 밥 짓기, 바느질, 육아 등의 가사노동과 농사일을 하거나 주인집 외부에 살면서 면포 등을 납부하며 일정 기간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노비의 노동은 강제된 것이었지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식사와 의복 등을 받았다. 17세기 이후에는 노비 동원이 고용으로 바뀌면서 노임勞賃을 받고 일하였다.

세습되는 신분이었던 노비는 조선 중기에 대체로 전 인구의 30~50%를 차지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노비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중기를 기준으로 남녀 비율이 비슷하였다고 본다면 전 인구의 15~25%가 비자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이 모두 결혼한 것은 아니었다. 『경상도산음장적慶尙道山陰帳籍』(1630)에 의하면 노비로 구성된 천민 가구주 중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가 33.6%였다. 결혼하더라도 노비들은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동원되거나 주인의 지시로 거주지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였다. 비

자가 결혼하여 남편과 살았다면 오늘날 취업주부처럼 맞벌이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상인商人으로 일하는 여성도 있었다. 조선시대 풍속화에서 행상하는 여인을 볼 수 있다. 상인조직인 보부상에는 여자로 구성된 여상단女商團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부녀의 외출은 내외법內外法으로 제한되어 있어 양반 계층의 여성은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반 여성의 시장 활동은 적지 않았다. 최남선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이는 거의 여성들"이라고 『고사통』에 기록하였다. 김만덕金萬德(1739~1812)은 상업활동으로 재산을 모아 빈민구제에 기부한 여성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농경사회의 부인 중에는 오늘날의 취업주부처럼 경제활동으로 남편과 더불어 가계에 기여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가내에서 제한된 생산활동을 하였으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맞벌이처럼 가사노동 분담의 문제는 겪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는 농사와 직조를 비롯하여 가정생활 영위에 필요한 가사노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양반 가장家長이 가사노동에 관여하였던 것은 오희문吳希文(1539~1613)이 쓴 일기 『쇄미록瑣尾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비에게 미역·고등어·쇠고기 등 식품 구입과 두부 만들기, 간장 담그기, 솥 수리, 가족의 신발 구입과 노비의 의복 마련, 울타리 손질, 변소 청소, 땔나무 마련을 지시한 것은 남편이었다. 딸과 놀이하기, 아들 교육 감독, 환자의 약을 구하고 의원을 부르는 일, 자녀 결혼식에 쓸 의복과 그릇 마련하기 등 거의 모든 집안일을 남편이 관리하였다.

일반 남성이 가사노동을 하는 것은 풍속화에서 볼 수 있다. 남성은 농사짓는 일 외에 연료인 땔나무 해오기, 맷돌 갈기, 방아 찧기, 떡 치기, 기름 짜기, 엿 만들기, 국수 만들기, 겨울 식량 저장하기, 상 나르기, 직조 도구인 바디 손질하기, 섬 짜기, 새끼 꼬기, 짚신 만들기, 자리 짜기, 소 젖 짜기, 마당 쓸기와 같은 일을 하였다.

오늘날의 맞벌이 가정에서 가계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농경사회의 부부도 직조물과 농산물을 생산하여 조세납부와 시장교환에 사용하는 맞벌이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초기 직조노동이 공장생산으로 넘어간 후 여성들은 남성들이 조직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남성 임금의 절반 정도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였다. 이로 인해 여성은 결혼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하며 내조하는 가정주부 역할을 여성이 맡고,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받아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은 남성이 맡는 성별분업이 이루어지며 외벌이가 형성되었다.

어물장수 | 김홍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가정에서의 성별분업은 노동시장의 성별 간 임금격차와 고용 격차로 이어졌다. 노동시장의 불리한 조건에도 무급의 가사노동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교육 수준을 높이며 임금노동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갔다. 상품과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여 더 많은 가계소득도 필요해졌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취업 기회도 늘어나 부부가 같이 일하는 맞벌이가 증가하였다.

특징 및 의의 맞벌이 가정은 외벌이 가정보다 가계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 이용비, 외식비, 여가비, 교통비, 의복비 등의 지출도 많아진다. 맞벌이 가정은 어느 한쪽이 실직하면 소득이 크게 줄어 위기를 맞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겪는다. 또한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가사노동도 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육아를 직장생활과 병행하기 어려운 취업주부는 계속 경력을 쌓고 싶어도 직장을 중도에 그만두기도 한다. 부인이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을 지닌 때에는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맞벌이 가정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부인보다 적은 편이다.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부인을 돕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산업사회의 성별분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외벌이의 조건이었다. 오늘날 맞벌이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일하며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것은 농경사회와 유사하다. 맞벌이의 기원을 농경사회에 둔다면 가사노동은 가족 공동의 몫으로, 가사를 분담하면서 빚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돈 잘 버는 여자 밥 잘 하는 남자(Arlie Russell Hochschild, 백영미 역, 아침이슬, 2001), 맞벌이의 함정(Elizabeth Warren·Amelia Warren Tyagi, 주익종 역, 필맥, 2019), 조선시대 가사노동의 성별분업(김성희·이기영, 가족자원경영과 정책11-3,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7),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김성희, 학지사, 2002).

필자 김성희(金聖姬)

며느리

정의 아들의 아내를 이르는 친족용어.

내용 며느리는 아들의 배우자를 통칭하는 친족용어로, 자부子婦라고도 한다. 이에 대응하여 딸의 남편은 사위 또는 여서女壻라고 칭한다. 며느리는 아들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이므로 인척姻戚에 해당한다. 며느리에게 남편의 아버지는 시부媤父가 되고 어머니는 시모媤母가 된다. 시부모媤父母는 며느리를 혼인 직후에는 '아가, 새아가' 등으로 부르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 이름)+어멈·어미' 등으로 바꿔 부른다. 며느리는 시부모를 시아버님·시어머님으로 간접 호칭하고, 직접 호칭할 때는 시媤 자 없이 아버님·어머님으로 부른다.

신부 | 엘리자베스 키스 | 가로46 세로87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전통적인 친족제도가 부계계승父系繼承 원리를 따르고 있기에 며느리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자녀는 자기와 같은 부계친족집단에 속하며, 손주 또는 '친손주'라고 한다. 반면 딸의 자녀는 사위의 부계친족집단에 귀속되므로 '외손주'라고 한다. 며느리에게 남편의 집은 시가媤家가 되고 아들에게 아내의 친정은 처가妻家가 된다. 친손주에게 아들의 처가는 외가外家가 된다.

질항姪行, 손항孫行 등 아래 세대의 조카나 손주 등의 배우자도 며느리[子婦]와 마찬가지로 조카며느리[姪婦], 손주며느리[孫婦] 등으로 호칭한다. 한국의 친족용어 체계는 아래 항렬의 남자 친족원과 혼인하여 들어온 여

자를 모두 '며느리'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부계혈통을 따르는 전통사회에서 혼인은 신혼부부가 새로운 가족을 창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속하고 있는 부계가족 내에 여자가 편입되는 것이다. 시가의 일원으로 편입된 며느리는 비혈연자이기 때문에 시가에서 가장 낮은 지위를 점유하게 된다. 가장 낮은 지위를 점유한 새며느리의 입장을 잘 표현하는 것이 며느리의 언어 행위이다. 한국 가족에서는 세대나 연령에 따라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존칭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며느리에게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며느리는 손아래 시동생을 '도련님'이라 부르며 존대하고 손아래 시누이에게는 '애기씨, 아가씨'라 부르며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였다.

친족제도가 부계계승 원리를 따르고 있는 한국의 부계가족은 남자에게는 출생으로 얻어지는 생득 지위를 주고 여자에게는 시가의 구성원이 되어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성취 지위를 준다. 여자가 시집에서 얻은 성취 지위의 첫째 조건은 시집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 여자는 혼인하면 자기가 성장해 온 본가를 떠나 시가에 오기 때문에 옛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둘째 조건은 경제적인 공헌을 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며느리를 가내 노동력으로 생각하였기에 미성년의 아들에게 연상의 며느리를 맞아들이기도 하였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도와 집일, 들일 등을 해야 하였다. 셋째 조건은 며느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인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며, 특히 집을 계승할 아들을 출산하는 것이다. 며느리가 아무리 시가 식구들에게 잘하고 경제적으로 공헌했어도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부계혈연 중심의 부계가족 구조에서 며느리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은 시어머니이다. '시어머니 시집살이'로 인한 갈등적 고부姑婦 관계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보여 주는 한국 속담이 적지 않다.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는 며느리의 허물을 잡을 일이 없는데 억지로 허물을 지어냄을 이르는 속담이다. '봄볕은 며느리를 쬐이고 가을볕은 딸을 쬐인다.'는 속담은 시부모,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딸을 더 아끼고 위한다는 뜻이다. 봄볕은 뜨겁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까맣게 그을게 되어 가을볕보다 살갗이 더 잘 타고 거칠어지기 때문에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낸다는 것이다. '며느리 늙어 시어미 된다.'는 속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 때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시어머니가 하던 일을 되풀이한다는 말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부계혈족 집단으로 시집온 외자外者적 존재로서 미묘한 갈등과 대립 관계에 있다. 며느리 시절에 힘든 시집살이를 겪은 시어머니는 자기 며느리에게도 역시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게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례 지역별로 사용되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친척용어를 친척지칭과 친척호칭으로 나눠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친척지칭	친척호칭	비고
경기 양평	아들	애비/아범	혼인 전에는 이름을 부름
	며누리	에미/어멈	혼인 전에는 '아가'로 부름
인천 강화	아들		이름 대신 사용되는 정형화된 호칭이 없음
	메누리		이름 대신 사용되는 정형화된 호칭이 없음
강원 삼척	아들	이름/아범/애비	
	며누리	어멈/에미	혼인 직후에는 '며눌아기'로 부름
충북 청주(청원)	아들	이름/아범+아/애비+야	자녀가 생기면 '아범' '애비'를 사용
	며누리	어멈+아/이미[에미]+야	혼인 직후에는 '아가' '새애기'로 부름
충남 홍성	자식/아들	이름/애비	
	며누리/자부	(새)아가/에미	
전북 고창	아들	이름/(애비야)	
	메나리	(에미야)	
전남 진도 조도	아들	이름/아이 이름+납씨야	'납씨'는 '네+압씨'의 축약형
	메느리	젊은아야/아이 이름+넘아	'넘'은 '네+엄매'의 축약형
경북 구미 선산	가아/아들	이름	
	미느리/젊은이	이미[에미]	

지역	친척지칭	친척호칭	비고
경북 영덕 영해	자식/소생	이름/애비	
	며느리	새사람/에미	
경남 함양	자식	이름	
	며느리	(아이 이름+)에미	
경남 통영 사량도	아들	이름/아범/애비/ 지가배[지거 아배]	
	메늘/자부	어뭄/에미/ 지거매[지거 어매]	
부산 동래	아들	(아바이)	( ) 안의 호칭은 이름 대신 사용되는, 정형화되지 않은 호칭 형태들임
	메늘	(어마이)	

출처: 한국의 언어 민속지(2009~2023)

특징 및 의의 시집살이는 며느리를 시가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들을 빼앗긴 시어머니의 서운함이 은근히 작용하여 더욱 혹독해지기도 한다. 시가에서 성취 지위의 경쟁자라는 동일한 입장을 공유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적인 고부관계는 부계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서 근원적인 원인을 이해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요즘은 시부모가 며느리 눈치를 보며 '며느리 시집살이'를 한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이는 핵가족화된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족관계의 변화 및 며느리의 도리와 위상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한국의 언어 민속지-강원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기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상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한국의 언어 민속지-서편(왕한석, 교문사, 2009), 한국의 언어 민속지-전라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한국의 언어 민속지-충청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현대 한국가족의 이해(이광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조숙정(趙淑晶)

명당설화

明堂說話

정의 자신이나 후손에게 장차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는 집터나 묏자리에 관한 이야기.

역사 명당明堂은 집터나 마을 또는 무덤 등의 자리를 정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공간을 가리키는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 용어이다. '풍수風水'라는 말은 '바람을 막고 물은 얻는다.'라는 뜻의 '장풍득수藏風得水'에서 비롯된 용어인데, 중국 동진東晉의 곽박郭璞이 쓴 『장서葬書』에 등장하는 말이다.

산악지형이 많은 곳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일찍부터 방위方位와 지형地形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관념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풍수지리설은 삼국시대 이후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도입되었으며,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기존의 풍수 관념과 결부되어 한반도 전체에 유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통일신라 말에 도선道宣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정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풍수지리설은 도읍지나 집터 등을 선정하는 데 활용되었고, 조상숭배 사상과 결합하여 묘지를 선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내용 풍수에는 '양택풍수陽宅風水'와 '음택풍수陰宅風水'가 있다. 집이나 도읍 등을 명당에 조성함으로써 복福을 얻는다는 것이 양택풍수이고, 조상의 묘를 명당에 씀으로써 자손에게 복이 미치도록 한다는 것이 음택풍수이다.

명당은 흔히 혈穴로 이야기되며, 어떻게 혈을 얻고 활용할 것인지가 명당에 관한 본질적인 생각이다. 혈

풍수서 | 가로21 세로36 | 국립민속박물관

로 통칭하는 명당은 성스러운 공간이고, 이곳에 정주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고 여긴다.

명당설화明堂說話는 풍수설에 관한 내용을 일반인이 재해석해 나름대로 수용한 것으로, 명당을 어떻게 얻는가 혹은 얻은 명당을 어떻게 잃는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명당을 어떻게 얻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본래 명당인 자리를 특정인이 획득하는 것과 본래 명당은 아니었지만 특정한 방법을 통해 명당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양택풍수에서 명당 획득에 관한 이야기는 특정인이 명당을 획득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이야기 유형이 있다. 중이 밤에 길을 가다가 목에 비녀가 걸린 호랑이를 만나 비녀를 뽑아 주고 호랑이가 알려준 자리에 절을 지은 이야기처럼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명당을 얻는 '보은형報恩型' 이야기가 있다. 은씨 성을 가진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자리에 은씨 집안 셋째 아들이 집을 지어 살면서 부자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굴씨와 관계를 맺어 태어난 아이가 셋째 아들임을 알고 부인을 용서한 은씨 지관地官 이야기처럼 본래부터 명당을 얻을 운명인 '예정형豫定型'도 있다. 또한 도선국사가 연못이 명당임을 알고 눈병을 퍼뜨려 연못을 메워 절을 지은 이야기는 재치로 명당을 획득하는 '지혜형智慧型'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본래 명당은 아니었지만 특정한 방법을 통해 명당으로 만드는 이야기도 있다. '비보풍수형裨補風水型'으로, 모자라거나 약한 것을 채우고 보호함으로써 명당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마을 앞에 탑을 세우고 나무를 세움으로써 마을의 화재를 막았다는 '압승형壓勝型' 이야기가 있고, 마을이 배 모양이기 때문에 마을에 돛대에 해당하는 짐대를 세워 마을이 평안해졌다는 '보충형補充型' 이야기도 있다.

음택풍수에서도 명당 획득에 관한 이야기는 명당을 획득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던 뱃사공이 부친상父親喪을 당해 묘지를 찾지 못함을 한탄하자 공신功臣의 자손이 나올 자리를 스님이 잡아 주었다는 '선행형善行型' 이야기가 있다. 모친의 시신을 지게에 지고 가던 머슴이 넘어진 자리에 모친의 묘를 써서 부자가 되었다는 '우연형偶然型'도 있다. 명당을 구하는 스님에게 삶은 달걀을 주어 속인 다음

산수도 | 가로23 세로24 | 국립민속박물관

조상 묘를 써서 자손이 잘되었다는 이야기는 '지혜형'에 해당한다.

음택풍수에서도 모자라거나 약한 것을 채우고 보호함으로써 명당으로 만들어 가는 비보풍수형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선시대 권근權近의 묘지를 물이 나오는 자리에 이장하려다가 노승의 도움으로 수리산 정상을 파서 물길을 돌려 명당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다음은 얻은 명당을 어떻게 잃어버리는가에 관한 이야기로, 양택풍수에는 명당을 파손함으로써 그 기운을 잃는 설화가 전해 온다. 용龍 형국의 마을이 있었는데 수로 공사를 하던 중 용의 허리 부분을 팠고, 여기에서 피가 나오더니 더 이상 마을에 인재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절맥형絶脈型'이다. 성질이 고약한 부자 왕씨가 시주하러 온 중을 괴롭히다 자신의 집터를 지켜 주던 황새바위를 잘라 망하였다는 이야기는 '비보파괴형裨補破壞型'이다. 시주를 구하러 온 중을 무시하였다가 배의 형국인 마을에 우물을 파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형국파괴형形局破壞型'이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명당 파손과 관련된 것이다. 이때 비보나 형국파괴는 사람의 욕심이나 악덕惡德 등에서 기인한다.

음택풍수에서도 명당을 잃게 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중이 시주를 구하러 오면 욕을 퍼붓고 내쫓던 집안이 '묘를 이장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중의 말을 듣고 묘를 옮겼다가 망하였다는 '이장형移葬型' 이야기가 있다. 노승이 묏자리를 잡아 주면서 구들장 같은 돌을 걷어내지 말라고 하였지만 이를 어기고 돌을 걷었다가 집안이 좋지 않게 되었다는 '금기형禁忌型' 이야기도 있

다. 또한 좋은 묏자리를 잡아 주었는데, 생전에 살인을 저질러 발복發福하지 못한 '불발복형不發福型' 이야기도 있다. 이때 명당을 잃게 된 원인은 사람의 욕심, 금기 위반, 전생의 잘못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명당과 관련된 이야기는 대부분 한 가정이나 집안 전체가 복을 받는 가족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가족 당사자 간에 명당을 얻고 뺏는 이야기 유형도 있다. 소위 〈딸이 뺏은 명당〉 이야기와 〈우물 명당〉 이야기가 그것이다.

먼저 〈딸이 뺏은 명당〉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가난한 집안으로 출가한 딸이 있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묏자리가 명당이라는 말을 듣고 그 안에 물을 채워 아버지의 묘를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 명당에 시아버지나 남편의 묘를 써서 발복하게 된다.

딸의 처지에서는 지혜로 명당을 획득한 것이지만 집안 입장에서는 시집간 딸에게 명당을 빼앗긴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딸이 친정의 명당을 빼앗아 자신의 시댁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이다.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린 딸이 친정보다는 시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이야기이다.

다음으로 〈우물 명당〉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름난 지관이 죽으면서 자신이 묻힐 명당을 아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이때 옆에 있는 부인에게 "당신은 남이니 나가 있어."라고 한다. 부인은 지관이 아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목을 베어 동네 샘에 넣으라고 하는 말을 문밖에서 엿듣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의 시신을 마을 샘에 넣었는데, 어느 날 지관의 아내가 아들과 다투고 홧김에 동네 사람들에게 비밀을 털어놓는다. 동네 사람들이 샘을 팠더니 용이 되어 승천하려던 지관의 시신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석 달 열흘을 채우지 못해 결국 지관의 집안과 그 후손들은 망하고 말았다.

명당경 | 가로21 세로32 | 국립민속박물관

지리현주 | 가로16 세로26 | 국립민속박물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밀을 간직한 가족 사이에서 타인他人으로 대접받은 어머니가 가족의 비밀을 스스로 폭로한다는 것이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반항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딸이 뺏은 명당〉이나 〈우물 명당〉 이야기는 시집온 여자의 정체성에 관한 관점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남편과 자식을 가족으로 여기는 어머니의 입장과 성씨가 같은 사람만을 가문家門으로 삼고자 하는 아버지의 입장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특징 및 의의 명당설화는 전통적인 풍수지리설에 따라 길지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을 표현하는 이야기이다. 집터나 도읍지를 선정하는 양택풍수는 묏자리를 잡는 음택풍수에 비해 명당의 범위가 넓고 집단적이다. 따라서 초기 사회에서 매우 중시되었던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 위주의 사고가 발달해 감에 따라 개인이나 가문에 영향을 끼치는 음택풍수가 훨씬 더 발전하였다. 특히 조상의 뼈를 좋은 땅에 매장하면 땅의 기운을 받아 자손

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동기감응설同氣感應說은 풍수사상을 중시하게 하는 커다란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풍수지리설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는 풍수설에서 제기되는 관념과 다르다. 본래 풍수설의 관념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수용하고, 나름의 해석에 따라 자의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까닭에 풍수설화에는 명당에 자리를 잡아야만 후손이 발복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현세구복現世求福, 권선징악勸善懲惡, 가족중시家族重視 등의 관념이 드러난다.

참고문헌 구비설화에 나타난 가계계승과 혈연의식(이인경, 고전문학연구21, 한국고전문학회, 2002), 비극적 구전 서사의 연행에서 나타나는 비밀 폭로자로서의 여성 이미지 연구(김영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양택풍수설화 연구(박종오,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음택풍수의 명당발복 설화를 통해 살펴본 우리 풍수문화(김만태, 실천민속학연구15, 실천민속학회, 2010), 풍수사상의 전래와 명당 발복 설화(문형진, 역사문화연구1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풍수설화에 나타난 여성의 행위와 내재적 의미(유형동, 어문론집77, 중앙어문학회, 2019), 풍수설화의 유형분류(장장식, 한국민속학22-1, 한국민속학회, 1989),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92),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박종오(朴宗吾)

모계
母系

정의 단계출계의 하나로, 어머니 쪽 혈통을 따르는 출계율.

개관 모계출계는 어머니 쪽 혈통을 따라 혈통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어머니, 어머니의 형제자매,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자매의 자녀 등과 함께 혈통집단을 구성한다. 모계母系로 혈통을 구성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딸의 자녀는 나와 같은 혈통집단에 속하지만 아들의 자녀는 나와 같은 혈통집단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의 혈통집단에 속하게 된다.

모계혈통에서는 외삼촌의 역할이 중요하다. 외삼촌은 나와 같은 혈통집단에 속한 성인 남자로서 나에게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며, 따라서 나는 외삼촌의 훈육과 지도를 받게 된다. 부계혈통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모계혈통사회에서는 외삼촌과 생질甥姪 관계로 나타난다.

내용 모계출계는 부계출계와 정반대 모습이다. 모계출계율을 가진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가 속한 혈통집단에 속하게 된다. 혈통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자녀들은 모두 어머니의 혈통집단에 속한다. 그러나 딸이 낳은 자녀들에게는 혈통집단의 성원권이 부여되지만 아들의 자녀에게는 성원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아들의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혈통집단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개인은 어머니, 어머니의 형제자매,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자매의 자녀 등과 같은 혈통집단에 속하게 된다.

북미의 호피Hopi 인디언들이 모계출계율을 가지고 있다. 이 부족은 여러 개의 모계혈통집단을 가지고 있고, 이 집단들은 외혼을 하는 단위이다. 남자들은 결혼하면 아내 쪽으로 옮겨 가서 생활한다. 혈통집단 구성원들은 모계친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성 노인을 중심으로 그 노인의 딸들과 그 딸들의 자녀들이 모여 살고 있다. 반면 결혼 후 함께 살고 있는 성인 남자들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없다. 이 집단의 남자들은 모두 이방인이며, 이 집단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모두 결혼과 동시에 아내가 속한 집단으로 이동한다.

부계출계와 모계출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버지의 역할이다. 부계출계율을 가진 사회에서 자녀의 훈육과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반면 모계출계사회에서는 이 역할을 어머니가 아니라 외삼촌이 한다. 부족사회에서는 족외혼을 하더라도 대부분 같거나 가까운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진다. 즉 남자들이 결혼하여 아내 쪽으로 옮기더라도 원래 자기가 속한 집단과 근거리에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남자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낳은 자녀는 자기와 같은 혈통집단 구성원이 아니므로 가계나 혈통집단 계승을 위하여 훈육할 필요성이 적다. 반면 누이의 자녀들은 자기와 같은 혈통집단 구성원이므로 훈육과 권위의 필요성이 생긴다. 남자가 가진 사회적 평판이나 재산도 누이의 아들에게 계승된다.

트로브리안드섬Trobriand Islands의 부족들도 모계혈통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섬에서 남자들이 농사를 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누이의 아들에게 농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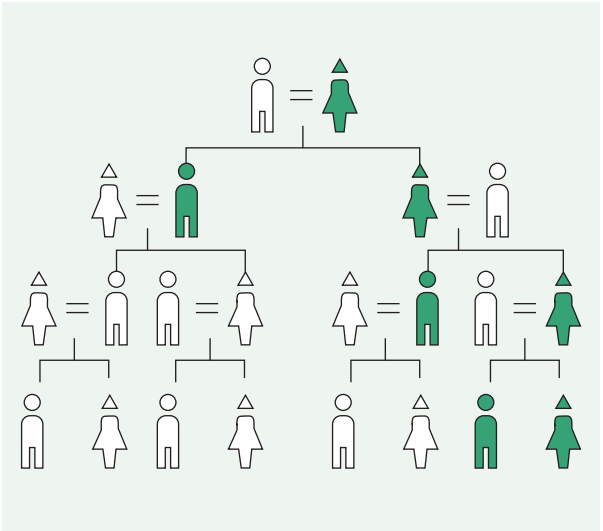

모계

을 증여하는 것이다. 더 많고 좋은 농산물을 증여하는 것이 외삼촌의 역할이며, 이 증여를 통하여 생질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모계출계율을 가진 사회에서 남자의 지위는 이중적이다. 자기가 속한 혈통집단에서는 누이의 자녀들을 훈육 지도하면서 권위를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처가에서는 이방인에 불과하다.

특징 및 의의 제국주의 이전에는 모계혈통사회가 많았지만 이후 모계혈통사회가 점점 줄고 있다. 서구 사회의 가치관이 비서구 사회로 전이되면서 핵가족 중심 사회로 변화되고, 핵가족에서는 남자의 가장권이 강조된다. 그 결과 모계혈통사회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외삼촌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기독교와 이슬람 등 제국주의 국가의 종교가 비서구 사회로 확산된 영향도 크다. 이런 종교는 부계혈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문화인류학개론(한상복·이문웅·김광억,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현대문화인류학(권숙인 외, 형설출판사, 2018), 현대문화인류학(Roger Martin Keesing, 전경수 역, 현음사, 1985).

필자 김창민(金昌民)

모성애
母性愛

정의 어머니다움이나 어머니 역할 수행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규범, 가치, 이데올로기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

개관 모성母性과 관련된 규범, 가치관, 이데올로기 등은 문화적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화하면서 함께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모성은 본능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통념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가족사 연구자들과 모성 경험에 주목한 페미니스트 학자 중심으로 모성 또한 역사적 다양성을 보여 주는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도입되었다.

내용 오늘날 모성은 '발명'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업화로 인해 가족과 일터가 분리되면서 생산적 일에서 배제된 부르주아 계급 여성의 시간을 점유하고자 모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모성 역할은 특별히 발달단계상 성인기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아동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발견, 아동의 건강한 인성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애착관계를 형성할 성인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존 볼비Edward John Mostyn Bowlby의 애착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산업혁명기 유년 노동의 활용을 억제하고자 초등교육제도를 정립함에 따라 아동은 아동만의 독특한 발달 과업과 정서가 있음이 밝혀진 이후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모성 역할의 중요함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훗날 애착 이론은 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심 이론이 되었다.

하지만 가족사 연구자들은 여성의 출산이 죽음과 직결되면서 일부 여성에게는 부정적 경험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상류계급 중심으로 양육을 전담하는 보모를 두는 관행, 훈육을 목적으로 친인척에게 자녀 양육을 위탁하는 관행도 빈번히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유럽의 중세 시기 인구 조절 수단 중 하나가 신생아 살해 및 유기였다는 사실은 모성을 본능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교 분자생물학 및 세포생물

학과의 카트린 뒬라크Catherine Dulac 교수는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두 종류의 뉴런neuron을 발견하였다. 하나는 새끼를 돌보는 능력을 증진하는 갈라닌galanin 뉴런이고, 다른 하나는 영아 살해 충동을 부추기는 우로코르틴urocortin 뉴런이다. 두 뉴런은 서로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 하나를 자극하면 다른 하나는 억제되는 상호배타성을 보여 주었다. 인간의 모성애母性愛와 생물학적 요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 인간은 생물학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라기보다 사회문화적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성 스스로 체험하는 모성 경험에 주목해 온 대표적 페미니스트 에이드리엔 리치Adrienne Cecile Rich의 '경험으로서의 모성'과 '제도로서의 모성'에 대한 구분은 한국 사회의 모성 연구에도 유용한 준거를 제공해 주었다. 리치에 따르면 경험으로서의 모성 속에는 경이로움과 즐거움, 보람과 기쁨 등의 긍정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모성을 실현하는 동안 인내심과 끈기와 지구력을 연마하며 타인에 대한 관대함을 키울 수 있다. 반면 제도로서의 모성은 가족과 일터에서 젠더 불평등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주요 기제로 작동하면서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고착시키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가져오는 주원인이 된다. 이로써 모성은 여성의 삶에 양가적 의미로 다가온다.

사라 러딕Sara Ruddick 또한 페미니즘 관점에서 모성애에 대한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 러딕은 모성을 여성 고유의 속성으로 규정하면서 부성을 남성에게 할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젠더를 뛰어넘어 남녀 모두 모성애를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성 개념의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이때 모성은 기존의 이기적이고 소모적인 사랑 개념을 넘어 이타적이면서 성숙한 사랑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사려 깊은 사랑attentive love'이라 칭하였다.

특징 및 의의 한국의 근현대 역사에서 모성은 숙명적 존재감存在感과 불가해한 부재감不在感을 동시에 간직해 왔다. 개별 가족과 개인의 삶 속엔 모성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식적인 사료나 객관적 연구 측면에서는 대체로 부재하였다는 점에서 그러

어머니와 아이 | 엘리자베스 키스 | 가로39 세로45 |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하다. 실제로 광복, 6·25전쟁과 분단, 압축적 근대화 및 민주화 운동을 거치는 격변의 현장에 어머니는 모성의 자리를 지켜 왔지만 역사가와 저술가의 작업에서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아마도 어머니의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위상을 객관적으로 대면하기엔 어머니가 불러일으키는 정감적 함의가 너무 컸으며, 어머니의 따스한 표면적 이미지 이면에 복잡다단한 애증의 실타래가 엉켜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머니의 역사는 단순히 어머니만의 역사로 한정될 수 없다. 일제강점기 조국의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 현장의 뒤에도, 전쟁과 분단이 낳은 절대 빈곤의 고통 속에도,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를 외치는 근대화와 산업화의 길에도,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 실천에도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과 헌신과 협조가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삶에 긍정적 요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계혈연 중심의 가부장제 가족 내에서 어머니는 모성이 지닌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역설을 경험해 왔다. 고

부갈등 속에서 며느리를 억압해 온 시어머니의 존재는 가부장제와 타협한 결과였고, 입시 현장에서 '치맛바람'의 주인공이 되거나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복부인'이 된 어머니는 사회적 비난과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제 모성애 또한 부성애와 함께 사회적 고정관념 및 편견을 넘어 21세기의 새로운 가족에 부응하는 진취적 모델을 정립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Adrienne Cecile Rich, 김인성 역, 평민사, 2018), 모성과 모성 경험에 관하여(한지희, 소명출판, 2017), 모성애의 발명(Elisabeth Beck Gernsheim, 이재원 역, 알마, 2014), 모성의 담론과 현실(심영희·정진성·윤정로, 나남출판, 1999), 암컷들(Lucy Cooke, 조은영 역, 웅진지식하우스, 2023).

필자 함인희(咸仁姬)

모자보건법

母子保健法

정의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73년에 제정된 법률.

역사 〈모자보건법〉은 1973년 2월 8일 제정되었으며, 1986년 5월에 전문 개정되었다. 그 뒤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현행법은 2021년 12월 21일 개정된 법이다. 〈모자보건법〉이 제정되기 전인 1940년대 말부터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1950년대에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가족계획운동이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1960년대 출생아 수가 평균 100만 명을 상회함으로써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가족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73년에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모자보건법〉에는 '불임수술'이나 '수태조절'에 관한 정의가 있었고,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도 규정되어 있었으며, 1986년 개정된 〈모자보건법〉에는 '피임시술'에 관한 정의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합계출산율이 2명 이하로 낮아지자 그동안 시행되던 인구억제 정책이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되었는 바 2015년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불임수술' '수태조절' '피임시술'에 관한 정의가 삭제되고, '난임' '보조생식술'에 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2017년 개정에서는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용어 정의가 삭제되었다.

내용 〈모자보건법〉 제2조에서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때와 달리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임산부'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포함하며, '모성'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난임에 관한 제2조 제11호에서는 부부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부' 개념을 확대하였고,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모자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제3조와 제7조 이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모성母性과 영유아嬰乳兒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모자보건에 관한 사업을 종합·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보호자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모자보건수첩이 발급되어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보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숙아 등이 출생한 경우는 신생아 집중치료 등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료지원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임신을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한다.

나아가 2005년의 개정으로 〈모자보건법〉에 출산 후 산모를 돌보기 위한 산후조리업 관리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대가족 시대에는 산후조리가 가족 몫이었다면 부부 중심의 가족이 보편적인 현재에는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므로 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산후조리업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과 산후조리원이나 산후조리도우미에 관한 사항을 〈모자보건법〉과 〈모자보건법시행규칙〉에 자세하게 규정

2022 표준모자보건수첩(아기수첩과 임산부수첩) | 인구보건복지협회

해 두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두고 있다. 이 협회는 1961년 창립 당시 '대한가족계획협회'였지만 1999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2006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변경되었다.

〈모자보건법〉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현재는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자보건법〉만으로는 저출산 대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2005년에는 자녀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혼인과 출산 및 육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출산율 감소가 계속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징 및 의의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초기에는 산아제한에 맞춘 정책이 실시되었으나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자 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자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점차 감소한다는 점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가 더욱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허용 범위가 매우 좁다는 점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신중절수술의 범위 결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이 임신과 출산 및 영유아에 대한 보육에 관하여 규정한다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 존재한다. 이들 법령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임신과 출산, 육아 및 아동 양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상호 간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방향 연구(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2015), 모성의 의무에서 재생산 권리로(김선혜, 이화젠더법학 12-2,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0),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적 검토(박승호, 법학논총31,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모자보건법의 주요내용 고찰(이규호, 사법행정61-8,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김태환, 사회법연구47, 한국사회법학회, 2022).

필자 전경근(田慶根)

묘제
墓祭

정의 조상의 체백體魄을 매장한 묘소墓所에서 지내는 제사.

역사 『주자대전朱子大全』이나 『사향의祀享儀』『가례家禮』 등에서는 "묘제는 원래 규정이 없었으나 관습을 따른 것"이라고 하고, 『개원례開元禮』에서는 "삼대三代 이전에는 없었으나 진秦나라 때 무덤 옆에 재실齋室을 지었고, 이를 한漢이 이어받아 풍속이 되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묘제는 한대 이후에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자대전』에서는 세속의 묘소에 배소拜掃하는 예禮가 오래되어 없앨 수 없다고 하여 정식 제사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례』에서는 묘제를 제사의 하나로 공식 인정하였는데, 고려 말기 『가례』와 함께 묘제 역시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정구鄭逑(1543~1620)가 "우리나라는 가묘家廟를 세우기 전에 묘소에서 사시제를 지냈으나 가묘를 세운 후에는 가묘와 묘소의 예법이 다르다."라고 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묘제는 옛날의 법이 아니

다. 주자가 세속을 따라 한 번 제사를 지냈는데, 남헌南軒은 예가 아니라고 하여 여러 번 문의를 한 다음에야 따랐다. 이로 보아 묘제墓祭와 가묘제사는 체계가 다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여 세속의 제사가 정식 예제로 정착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묘제를 지내는 시기 역시 다양하다. 『개원례』『사향의』『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한식날 묘제를 지낸다고 하였다. 특히, 『동국세시기』에는 설날·한식·단오·추석의 네 명절에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절사節祀'라 하여, 절사가 곧 묘제였음을 알 수 있다. 『주례周禮』『봉선잡의奉先雜儀』에서는 10월 1일에 묘제를 지낸다고 하였다.

이처럼 묘제는 시대 및 지역에 따라 지내는 시기가 매우 다양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집의四禮集儀』에서는 "3월 상순에 날을 가려 1년에 한 번 제사한다. 이는 사시제보다 간결하게 지내니, 초목이 처음 나와 비와 이슬에 감동하기 때문이다. 처음 묘제를 지낸 날을 정하여 해마다 같은 날에 묘제를 지낸다. 기일과 절일節日에는 사당에서 먼저 지낸 뒤 무덤에서 지낸다고 하였다."라고 했다. 이를 보면, 묘제는 일정한 규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와 동시에 성묘 형식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0월에 날을 잡아 묘제를 지내는 것이 일반화된 사례도 많다.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는 "10월에 도포 입고 나서면 보름을 지낸다."라는 말이 있는데, 10월 묘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묘제는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로 지역에 따라 영남지역에서는 시제時祭, 시사時祀, 기호지역에서는 시향時享으로 불렸으며 회전會奠이라는 용어는 영남·기호지방 모두에서 사용하였다. 또한 묘사墓祀는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이처럼 묘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회전은 '회전제사會奠祭祀' 또는 '회전지제사會奠地祭祀'라고도 하는데, 문중門中 성원이 시조 혹은 파시조派始祖, 입향조入鄕祖의 묘소에 모여서 지내는 제사라는 뜻이다. 시제라는 용어는 『가례』에서 규정한 가장 중요한 제사인 사시제四時祭가 우리나라에서 명절 차례와 절사 혹은 묘제와 결합하면서 나타난 용어로 보인다. 기호 지역에서 사용되는 세일사歲一祀 혹은 세일제歲一祭란 1년에 한 번 지낸다는 뜻이다.

묘제는 한 집안이 모시는 조상의 산소山所에서 지내는 제사임에도 지역과 집안에 따라 묘제의 대상을 달리 하기도 한다. 『사례집의』에서는 묘제 외에 「선조묘제의先祖墓祭儀」를 두어 고조 이상의 조상제사는 10월 1일에 따로 지내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묘제의 시기는 다르지만, 봉사대상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묘제의 대상은 한 집안을 이룩한 최고 시조로부터 바로 윗 대 조상까지가 일반적이다. 가장 큰 대종大宗일 경우에는 시조始祖까지, 파派로 갈라진 지파支派의 소종小宗일 경우 파시조派始祖까지가 묘제의 대상이 된다. 『사례편람』에서 사대봉사의 대수를 넘긴 친진親盡한 조상의 묘사에 대한 축문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묘제의 대상이 5대 이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묘제를 지내는 순서는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와 거의 동일하다. 단지 묘지기가 대행할 때에는 축문을 읽지 않고 헌작獻爵도 단헌單獻을 한다. 묘제 역시 하루 전에 준비하여 날이 밝으면 묘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지내는데, 이동 시간, 청소 시간 등을 고려하면 여건상 낮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묘제를 지내는 장소는 산소이지만, 자연재해 등으로 묘소에 접근하지 못하면 재실이나 멀리서 묘를 향하여 지내는 망제望祭를 지내기도 한다. 묘제를 지내는 절차는 집안 제사와 동일하나 장소의 특성 때문에 간소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묘제 준비: 하루 전에 재계하고, 제기를 갖추고 제물을 준비하는 구찬具饌을 한다. 모두 집에서 지내는 제사와 동일하다.

②산소 청소: 날이 밝으면 산소에 가서 재배하고, 묘역을 세 바퀴 돌며 살피고 나쁜 초목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고 재배하고 돌아온다.

③진찬: 묘소 앞에 자리를 깔고 집에서 지내는 제사처럼 제물을 진설한다.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처럼 진설陳設 절차가 없으므로 제물을 한꺼번에 차린다. 상석床石이 있으면 상석에 차린다.

④강신·참신: 『가례』에서는 참신을 먼저 한다고 하였으나 『가례집람家禮輯覽』, 『격몽요결擊蒙要訣』 등에서는 강신을 먼저 하도록 규정하여 집안마다 차이가 있다.

⑤초헌·아헌·종헌: 묘제 역시 삼헌을 하는데, 초헌에서 독축을 한다. 주인이 초헌하고 자제와 친빈이 아헌과 종헌을 담당한다.

⑥사신·철상: 참사자가 재배하고 물러나면 제물을 거둔다.

⑦후토제: 강신—참신—삼헌—사신—철상의 순서로 진행한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상주의 우복愚伏 종가에서는 첨작을 한다. 안동의 겸암謙菴 종가, 안동 전주유씨全州柳氏가, 경기도 파주 파평윤씨坡平尹氏가에서는 규정에 없지만 합문을 한다. 파주 고령신씨高靈申氏가에서는 진다를 하고, 파주 파평윤씨가에서는 수조례와 고이성을 한다. 경기도 남양주와 연천의 청풍김씨淸風金氏가, 인천광역시 강화도 전주최씨全州崔氏가에서는 합동 묘사를 지낸다. 퇴계 종가에서는 재실에서 합동묘사를 지낸다. 충청남도 논산 광산김씨光山金氏가에서는 단오와 한식에 4대친 및 불천위의 산소에서 절사를 지낸다. 이 집안에서는 정정공丁靖公 김국광金國光(1415~1480)을 3년에 한 차례씩 10월에 별사로 모신다.

특징 및 의의 묘제는 집에서 지내는 제사와 같으나 장소가 묘소이므로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첫째는 신주를 모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출주出主와 납주納主의 과정이 생략된다. 둘째는 모든 음식을 동시에 진설한 후 제사를 진행한다. 야외에서 행하는 예는 간소화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주부가 산소에 따라가지 않으므로 자제와 친척이 아헌관이 된다. 넷째는 유식侑食의 절차가 없어 합문闔門과 계문啓門의 절차가 생략된다. 다섯째는 제사를 마친 후에 산소가 있는 산의 산신山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후토제后土祭가 있다.

묘제는 속례가 정례화된 것으로 조상신의 제사인지 고인의 체백에게 지내는 제사인지 분명하지 않다.

진설

참신

독축

초헌 헌작

묘제 | 대전 서구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묘제 음복 | 풍산류씨 종가 | 경북 안동 | 국립민속박물관

묘제 | 경주손씨 | 경북 포항 | 국립민속박물관

묘제 | 동래정씨 종가 | 부산 동래 | 국립민속박물관

그러나 참신과 강신, 축문의 내용을 보면 조상신의 제사를 묘소에서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명절, 기제사 등에 묘제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는 사시제가 축소되어 명절에 통합된 것이다. 묘제를 통해 조상의 영혼과 체백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관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家禮, 開元禮, 東國歲時記, 四禮集儀, 四禮便覽, 士儀, 祀享儀, 常變通考, 朱子大全,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민속원, 2012),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민속원, 1995),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김시덕(金時德)

무복친
無服親

정의 참최, 재최, 소공, 대공, 시마의 다섯 가지 상복에 해당하지 않는 본종本宗·모당母黨·처당妻黨의 권속.

내용 『예기禮記』「문왕세자文王世子」에는 "친족 사이에 서로 도와야 할 상례에서 조문해야 하는데 조문하지 않고, 단문袒免해야 하는데 단문하지 않으면 담당자를 처벌한다."라는 글이 있다. 이에 대해 정현鄭玄은 "'조문[弔]'은 6세 이후를 가리키고, '문免'은 5세를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진호陳澔는 "4대가 되면 시마복을 하며 상복의 끝이다. 5대가 되면 친親이 다 끝나므로 단문袒免만 한다. 6대 이후에 대해서는 조문[弔]만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고조의 부친을 함께 받드는 사람은 5세로서 단문을 하고, 고조의 조부를 함께 받드는 사람들은 6세로서 단문도 하지 않고 조문만 하는 동성同姓의 권속이 된다.

『개원례開元禮』에서 당구堂舅(어머니의 종형제)와 당이堂姨(어머니의 종부자매)에 대해 단문袒免을 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당의 경우에도 단문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의례儀禮』에서는 무복으로 규정되던 당구와 당이에 대해서도 인정상 단문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예기』「분상奔喪」에서는 정현의 주를 통해 "『일분상례逸奔喪禮』에 '복이 없지만 단문을 하고 곡위哭位를 설치하는 경우는 형수와 아재비

가마를 하는 문하생 | 경남 김해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뿐이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는 단문이 본종의 동오세친同五世親의 경우뿐만 아니라, 수숙 간의 경우처럼 본래 복을 하지 않던 대상에 대해서도 점점 확대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가례家禮』 소렴조의 "다른 방에서 단, 괄발, 문, 좌를 한다."에 대한 본주에 "남자로서 참최복을 하는 사람은 단을 하고 괄발을 하며, 재최복 이하 5세조를 함께 하는 사람은 모두 별실에서 단과 문을 한다. 부인은 별실에서 좌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재최 이하 단문까지를 복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문맥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김장생의 『의례문해疑禮問解』에서는 "『가례』 소렴에 5세조가 같은 자는 모두 단문을 하는데, 계빈啓殯으로부터 매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복장으로 임하는가?"라는 질문에, "복이 없는 친척에 대해서는 복식을 말하지 않았으니, 다만 조복을 입을 뿐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단문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무복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동일한 맥락에서 모당, 처당의 경우에도 복을 하는 권속을 제외한 나머지 권속을 무복친이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무복친은 오복친五服親의 반대말로서 동종同宗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5세 이후의 권속을 가리키지만, 5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단문을 하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무복친이 단문친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 단문친은 무복친 가운데 유복친에 가장 가까운 권속이어서 단문이라는 특수한 복식을 하도록 허용한,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家禮, 開元禮, 禮記, 疑禮問解, 한국의 상례(양승이, 한길사, 2010),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장동우(張東宇)

문벌
門閥

정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내용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마다 지배세력을 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문벌門閥을 비롯해 벌열閥閱, 세족世族, 거족巨族 등이 그것이다. 중국에 유래를 두고 있는 문벌은 지주계급 내부의 일부 대지주들이 정치적·경제적 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축적하고 대대로 벼슬을 독점하는 특권계층을 의미하였다.

우리나라의 문벌은 고려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문벌귀족으로 칭해지면서 지배층으로서 특권을 부여받아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부를 누리며 대대로 세습해 갔다. 고려의 문벌귀족에는 성종成宗 대의 지배 체제 정비 과정에서 활약한 유학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신라 경주 출신의 6두품 계통이었다. 그리고 지방호족 가운데 중앙 관료로 진출한 계열과 개국공신 계열도 있었다. 특히 고려 태조太祖 때 공신으로 책봉된 약 2,000명 중 상당수가 문벌귀족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문종文宗이 학문을 장려하면서 유신儒臣을 다수 임용하였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사학私學이 크게 발달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귀족가문의 자제들이 과거시험을 거쳐 중앙 관료로 진출하면서 문벌귀족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게 된다. 또 문무 5품 이상의 자손들이 과거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음서제蔭敍制로 인해 문벌귀족이 대폭 증가하게 되며,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지급된 공음전功蔭田은 문벌귀

족의 세습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신분 구조는 크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성되었다. 그 가운데 양반은 대대로 벼슬을 하면서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자손에게 세습하는 문벌 가문, 그리고 양반 신분은 유지하고 있으나 벼슬을 하지 못해 한미寒微해진 가문으로 분화된다. 조선의 문벌은 인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로 불안한 정치적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신 중심으로 조정을 옹호하는 역할을 맡기면서 문벌 가문의 세습화를 더욱 공고히 하였던 것이다.

고려시대의 문벌귀족이 주로 개별 가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유교 종법宗法이 발달한 조선 후기의 문벌은 가문을 넘어 종족집단 단위로 형성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종족집단은 성씨와 본관을 중심으로 결성되며, 하위집단으로 파문중派門中과 가문이 있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는 성씨姓氏와 본관本貫을 바탕으로 파생된 파派 중심으로 문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사회적·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을 시조始祖로 모신 파문派門 중에서 3세대에 걸쳐 당상관 이상의 고위직 관료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면 문벌가문으로서 위상을 다질 수 있었다.

특징 및 의의 문벌의 핵심 내용은 정치적·사회적 특권의 세습화이다. 그래서 가문에서는 대과大科 급제자를 꾸준히 배출하면서 중앙 관직으로 진출할 기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당을 건립해 집안 자제들의 학업을 관리하였으며,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남긴 조상의 문집을 발간해 가문의 학통學統을 수립해 갔다. 또 지역의 명문세족과 전략적 혼인 관계를 맺어 세력을 확장함으로써 문벌가문으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졌다.

참고문헌 고려의 문벌귀족과 무신정권(이흥종, 전농사론7,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2001), 조선후기의 문벌(차장섭, 조선사연구2, 조선사연구회, 1993).

필자 김미영(金美榮)

문장
門長

정의 덕망과 학식을 갖춘 원로로, 문중을 대표하는 인물.

역사 고려 말기부터 전래된 성리학은 조선시대의 제도·사상·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끼쳤다. 그 가운데 『주자가례朱子家禮』 도입을 통해 집안에 가묘家廟를 설치해서 조상을 기리는 제례祭禮가 점진적으로 확산되었다. 조상을 기리는 제례는 기제사忌祭祀, 세사歲祀, 향사享祀, 묘사墓祀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었다. 또한 조선 중기 이후 불천위不遷位 조상을 중심으로 부계적장자 계통을 이어 가계와 제례를 계승하는 종가宗家가 정착되었고, 조상제례를 영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한편 조상의 업적을 선양하기 위한 문중門中조직도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문중조직 형성은 일차적으로 조상제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계친족원들 간 결의를 통해 나타났다. 주요 활동이 불천위제례와 4대 봉사가 끝난 조상의 묘제墓祭 등을 끊이지 않고 수행하기 위해서 제전祭田을 마련하고 제례를 주관하며, 조상의 업적을 선양하는 일이었다.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문중조직을 결성한 것은 가문의 사회적 위상을 유지하고 사족들이 향촌사회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문장門長은 문중에서도 항렬과 연령이 높은 원로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 추대되어 종사宗事의 대소사를 종손宗孫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문중을 대표해서 활동하였다.

내용 조선시대 문중조직은 초기엔 주요 불천위 조상을 둔 집안이나 향촌사회 지배층 중심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에는 종법宗法 의식이 대종大宗뿐만 아니라 소종小宗으로 확대되면서 당내堂內 단위의 기제忌祭에서 당내를 넘어선 친족집단의 묘제로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례를 유지하기 위해 문중조직이 결성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가 되었다.

조선 후기 향촌사회 지배세력이 구성한 문중조직에서는 문중 원로 가운데 지식과 덕망이 큰 어른을 문장으로 추대하여 영속적인 조상제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상 선양을 위한 문집 발간, 족보 편찬, 현조顯祖 유적 정비, 문중서원 건립과 같은 활동을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문중의 경우 현조를 중심으로 보종保宗의 중심에 종가가 있고, 문중은 종가와 함께 협력해서 문중을 운영하였다. 문중 대표인 문장과 종가 대표인 종손은 문중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상호 협조적이면서도 견제 역할을 하였다.

문중은 조상제례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종약宗約, 족규族規, 문중계門中契 등을 마련하여 종인宗人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한말 향촌지역의 문중은 군·현 단위 지배세력 문중에서부터 일반 상민들이 종족마을을 구성한 후 조직된 생활공동체 성격의 문중 등 다양한 위상을 가진 문중들이 혼재하였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 1만 4,672개의 동족집단이 있었다. 즉 문중이 일제강점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사회 문중에서의 문장과 일제강점기 이후 근현대사회에서의 문장이 수행한 역할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 문중의 문장은 문중 원로로서 종신終身토록 향촌사회에서 문중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문중 내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지역 사회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반면 근현대사회에서의 문장은 문중 내부에서 총회 등을 거쳐 임기제로 추대되고, 문중 내부의 조상 선양 활동에 한정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의 문중조직은 종족마을 또는 군·현 단위 향촌사회를 기반으로 부계혈연의 지연적 공동체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중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중도 있지만 한 성씨를 대표하는 문중조직, 즉 대종중·대종회와 같은 조직으로도 확대되었다. 확대된 문중조직인 대종중과 같은 조직에서는 더 이상 지연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정관을 기반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때 과거 대문장大門長으로 추대되었던 대표는 현재 대종중 회장 등의 명칭으로 전체 한 성씨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보통 임기가 정관에 의해 2년에서 4년 정도로 정해져 있고, 선출 과정에서도 과거와 달리 개별 종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있어서 전통사회 문장과 현대사회 문장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

특징 및 의의 전통사회에서 문장은 종손과 더불어 향촌사회 지배 성씨 친족집단인 문중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통사회에서 문장과 종손은 상호 협력과 견제 관계에 있었다. 문장이 대외적으로 문중을 대표하는 것처럼 종손은 거처하는 종택宗宅을 중심으로 문중을 대표하여 봉제사奉祭祀와 접빈객接賓客을 담당하였다. 조선 후기부터 문중조직이 한말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조상의 업적과 유산 및 제례는 문중조직의 수장인 문장의 역할을 통해 영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통사회에서 현대로 시대가 변화하면서 문중조직도 정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현대화되었으며, 전통사회 문장은 오늘날에는 종중회장으로 명칭을 달리하여 한 단체의 수장으로서 문중의 제례, 선조 선양사업, 재산 운영, 의사결정 과정 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서울 근교 종중과 종중재산의 변용(이상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6),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하(임동권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조선후기 문중화 경향과 친족조직의 변질(이해준, 역사와 현실48, 한국역사연구회, 2003), 조선후기 지역사회구조 연구(정승모, 민속원, 2010),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필자 이상균(李相均)

문중
門中

정의 특정 조상의 부계·남계 자손들로 구성된 친족 집단의 조직체.

역사 문중은 조상을 숭모하고 자손들 상호 간의 친화와 단결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부계혈연의식과 조상숭배 의식을 정신적 바탕으로 하여 조직되고 활동한다. 그러므로 부계혈연의식이 미약하거나 조상숭배 의식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문중 조직이 출현하기 어렵다. 고려시대에 문중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려시대에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 동성(동본)혼, 근친혼이 널리 행해졌고, 자녀 균분상속과 외손봉사가 매우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부계혈연의식이나 조상숭배 의식이 강하게 형성되기 어려웠고, 항구적으로 제사를 봉행하고 묘소를 관리할 문중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

문중이 조직되고 그 움직임이 활성화된 것은 종법사상宗法思想이 보급되고 부계혈연의식과 조상숭배 의식이 강화된 17세기 이후의 일로 보인다. 종법사상은 고려 말기에 성리학과 함께 도입되었으나, 도입 초기에는 소수의 유학자 사이에서만 수용되었을 뿐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조선이 개국되고 성리학을 국가경영의 기본 원리로 삼으면서 종법사상이 점차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 계승 의식과 조상숭배 의식이 강화되었고, 윤회봉사輪回奉祀가 소멸됨으로써 장남봉사가 보편화되었다. 또한, 서류부가의 기간이 단축되어 혼인 후 처가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아들들이 돌아와 본가 주변에 분가 정착함으로써, 한 성씨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종족마을(집성촌)이 곳곳에 생기게 된다. 문중조직은 바로 이러한 부계혈연의식의 강화와 부계친족제도의 변화를 바탕으로 출현하여, 조선 중기 이후 종족마을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내용 장남봉사長男奉祀와 사대봉사四代奉祀의 원칙이 정착된 조선 중기 이후에는 4대(고조부모)까지의 조상에 대해서는 봉사손(종손)의 가산으로 기제사를 모시게 된다. 제사의 대상이 되는 조상이 5대를 넘으면 기제사를 중단하고 묘제로 옮기게 된다. 이를 '제천祭遷'이라 한다. 기제사를 지제止祭하고 묘제로 제천하게 되면 봉사손의 가산에서 더는 제사 경비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5대 이상의 조상제사와 묘소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토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위토와 묘소를 관리하고 묘제를 봉행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 조직을 흔히 '문계門契' 또는 '종계宗契'라 부른다. 세대가 거듭되어 묘제의 대상이 되는 조상의 수가 늘어나고 위토가 증가하게 되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욱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한다. 이렇게 문계가 성장 및 발전하여 체계화된 조직이 문중이다. 이런 점에서 문계는 문중의 시원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문중은 최고 조상의 가계를 계승한 종손宗孫이 결합의 중심이 된다. 종손은 최고 조상의 가계 계승자로서 제사를 주재하고, 종가와 가묘를 지키며, 조상의 유품을 보존·관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여 종족 성원으로부터 특별히 우대되고 존숭尊崇된다. 그러나 종손은 운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때로는 문중 조직의 지도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를 보완하는 인물이 문장門長이다. 문장은 나이와 항렬이 높고 학덕이 있는 종족 성원 중에서 추대되었고, 추대된 문장은 종신토록 그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문장은 종손을 보좌하여 문중의 의사를 결집하고 종법 질서를 확립하는 중심인물로, 종손과 더불어 대외적으로 문중을 대표하기도 하였다. 종손과 문장 이외에 문중의 실무를 담당하는 여러 명의 유사有司가 종손과 문장의 지휘를 받아 각기 소관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문중의 일상적인 업무는 종손과 문장, 유사가 협의하여 처리하지만, 주요 사업의 결정과 결산보고 및 유사의 선출 등 중요한 사항은 문중 총회에서 의결한다. 이 문중 총회를 '문회門會' 또는 '종회宗會'라 한다. 문중에 따라서 문중조직 자체를 문회, 또는 종회라 부르기도 한다.

문중은 특정한 조상의 자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결합 범위의 넓고 좁음에 따라 동심원적 중첩 구조를 가진다. 고조부를 중심으로 하는 당내집단堂內集團의 소규모 문중에서부터 입촌조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 단위의 문중, 일정 지역 내의 여러 마을을 포괄하는 정착시조 중심의 문중, 파조를 중심으로 하는 문중, 시조 이하 모든 자손을 망라하는 동성동본의 대문중(대종중)으로 확대된다. 이들 중에서 마을 단위의 문중이나 마을 단위의 여러 문중이 결합한 정착시조 중심의 문중이 강한 결합력을 보여주며, 특히 중심 조상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인물일 경우, 문중조직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다.

문중의 기능은 조상숭배, 문중 성원들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 사회적 위세의 과시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제사(묘제)의 봉행과 묘소의 관리 및 조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숭모사업 같은 조상숭배가 어느 문중에서나 보편적이고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기능이다. 이런 점에서 문중은 부계혈연의식을 바탕으

로 특정 조상의 자손들이 항구적으로 묘제를 거행하고 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계보조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계보와 관계없이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종족원들이 상호 친목을 위해 조직한 지역조직인 화수회花樹會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문중이 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문중 성원들이 '우리'라는 공동체의식 즉 종족의식을 가지고 강하게 결합하여야 하며, 집단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종족의식은 같은 조상의 자손이라는 동조의식同祖意識과 가계 계승 의식, 조상숭배 의식을 내용으로 하여, 배타적 족결합의식으로 표출된다. 문중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현실적 조건은 조상의 위세, 자손의 수와 밀도, 문중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중재산 등이다.

특징 및 의의 문중은 조선 중기 이후 부계혈연의식이 매우 강화된 한국사회의 기층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아이콘이다. 혈통의 계승을 넘어서서 조상의 사회적 지위와 조상이 남긴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고자 노력함으로써, 한국인의 사회관계와 행위규범의 형성에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을 제공하였으며,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전승하는 주체로서 오랜 세월 이바지해 왔다.

양변적兩邊的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서구의 여러 사회에 비해 한·중·일 동양 3국은 부계친족제도를 공유하고 있지만, 부계혈연집단의 조직화의 양상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제자諸子균분상속의 전통을 가진 중국의 '종족宗族'은 종손의 존재가 주목받지 않으며, 유동적인 족장族長을 중심으로 결합하여 조직의 결합력이 약하고 조상숭배 의식도 강하지 않다. 일자一子단독상속의 전통을 가진 일본의 '동족同族'은 단독으로 가계를 상속한 본가本家가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며, 혈연을 강조하지 않고 비혈연자의 가계 계승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서, 혈연집단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인지적계보관계認知的系譜關係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서 조선 중기 이후 장남봉사와 장남우대상속을 바탕으로 형성·발전된 한국의 문중은 비혈연자의 참여를 엄격히 통제하여 혈연의 순수성을 특히 강조하며,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중시하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 결합의 중심도 종손과 문중으로 이원화되어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었다. 가장 전형적인 부계혈연집단의 계보조직이라 할 수 있다.

지금처럼 농촌인구가 감소하여 문중의 조직기반이었던 종족마을이 해체 위기를 맞고, 출산율이 감소하여 한자녀 가족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문중조직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한국동족집단의 구성원리(이창기, 농촌사회 창간호, 한국농촌사회학회, 1991),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필자 이창기(李昌基)

문회
門會

정의 종사를 의결하는, 문중을 대표하는 회의.

역사 고려 말기부터 전해 온 성리학은 조선시대의 사상은 물론 제도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주자가례朱子家禮』 도입을 통해 집안에 가묘家廟를 설치하는 등 제례祭禮와 관련된 것들도 다양해지고, 그 인식도 확대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 불천위不遷位 조상 중심으로 부계적장자 계통을 이어 가계와 제례를 계승하는 종가宗家가 형성되었고, 조상을 선양하고 제례를 함께 수행하기 위한 문중門中조직도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문중조직의 형성은 부계친족원들 간 결의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는 조상의 제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중조직이 한 활동으로는 불천위 제례와 4대봉사가 끝난 조상의 묘제墓祭를 모시기 위한 제전祭田 마련, 제례 주관, 조상의 업적 선양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향촌사회에서 문중조직이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고, 향촌사회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문회門會는 문장門長이 중심이 되어 종사의 대소사를 종손宗孫·종원宗員들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문중을 대표하는 회의이다.

내용 조선 초기 문중조직은 불천위 조상을 둔 집안이나 향촌사회 지배층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제

례를 유지하기 위해 문중조직이 결성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다. 대종大宗뿐만 아니라 소종小宗으로까지 종법宗法 의식이 확대되면서 당내堂內 단위 기제忌祭였던 것이 당내를 넘어선 친족집단의 묘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향촌사회 지배세력들로 구성된 문중조직은 문중 내에서 지식과 덕망이 큰 어른을 문장으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이 문장을 주축으로 하여 지속적인 조상제례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집 발간, 족보 편찬, 현조顯祖의 유적 정비, 문중서원 건립과 같은 활동을 통해 조상의 업적을 선양하였다. 문장은 불천위제사와 묘제를 지내는 날을 기점으로 문중을 대표하는 문회를 개최하여 문중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종사의 일을 결정한다. 문회는 지역이나 집안에 따라 종회宗會로 불리기도 한다. 문중에 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통문通文을 돌려서 수시로 문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문회와 관련된 조선시대 기록물을 살펴보면 조상의 선영先塋을 관리하는 문제, 문중의 위토位土 등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사항, 문중 내부 갈등을 처리하는 문제, 조상의 문집이나 족보를 발간하는 문제, 재실齋室 등을 건립하는 문제 등 종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을 문회에서 논의하였다. 조선 말기 사례를 보면 문회를 개최할 때 참석자 명단인 도기到記를 작성하고, 유사有司를 두어 문회 개최 결과를 기록하게 하고, 결의한 내용을 통문으로 종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특징 및 의의 전통사회에서 문회는 문중을 대표하는 회의로, 문장을 중심으로 한 문중조직의 주요 활동이었다. 현대사회에서도 문중은 주로 '○○종중'이라는 명칭 아래 법인에 상응하는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토지개발이 빈번한 대도시 주변 종중의 경우에는 선영이나 위토 등이 개발 대상지에 포함돼 개발보상금을 받게 되면서 종중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종중조직의 법인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 과거의 문중을 대표한 문회는 오늘날 종중을 대표하는 종중총회宗中總會 형태로 변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오늘날 종중을 대표하는 총회는 연 1회 날짜를 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안건은 전통사회 문회 안건과 유사하다. 하지만 안건에 대한 의결 방식이 전통사회에서는 문장이나 종손의 의견이 존중되었던 반면 현대 종중총회에서는 투표로 의결하고 있기 때문에 종중회장이나 집안 종손의 의견과 상이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전통사회 문회는 오늘날의 종중총회로 변화하는 문화적인 원형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서울 근교 종중과 종중재산의 변용(이상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6),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하(임동권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조선후기 문중화 경향과 친족조직의 변질(이해준, 역사와 현실48, 한국역사연구회, 2003), 조선후기 지역사회구조 연구(정승모, 민속원, 2010),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필자 이상균(李相均)

물레혼

정의 두 집안이 딸을 맞바꾸거나 딸 가진 세 집안끼리 물레 돌듯이 하는 회전식 삼각혼.

역사 교환혼交換婚의 하나로, 18세기 이후 전통사회에서 행해졌다. 두 혈연 집안의 누이바꿈이나 물레혼은 흔히 교환혼에 해당하지만 적령기에 달한 딸 셋과 이들을 맞이할 혼인 상대자인 아들이 있는 집 셋이 있어야 성사되기 때문에 누이바꿈만큼 널리 행해지지는 않았다. 역사 기록에는 신라시대 신덕왕神德王의 누이가 효공왕孝恭王의 비妃가 되었고, 역으로 효공왕의 누이가 신덕왕의 비가 되었던 사례가 있다.

내용 조선 후기에 이르러 물레혼이 나타났다. 딸바꿈이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누이바꿈이라고 쓴다. 누이바꿈과 비슷한 혼인 형태로 물레혼이 있었다. 이것은 세 집이 딸을 교환하여 혼인을 맺는 유형이다. 예를 들면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을 둔 갑이 자기 딸을 을의 아들과 결혼시키고, 을은 자기 딸을 병의 아들에게 주고, 병은 자기 딸을 갑의 아들에게 주는 방식이다. 이같이 시차를 두고 간접 교환하는데, 세 집 사이의 딸이 물레가 돌듯 자연스럽게 일반 혼인이 이루어진다 하여 물레혼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평안북도의 하층민 사이

에서도 삼각혼을 행하였으며, 함경남도의 하층민 사이에서는 두 남성이 여동생을 서로 바꾸어서 혼인하였다고 한다. 서울·경기 일부에도 '누이바꿈'이 존재하였다.

물레혼이 세 집 간에 딸을 주고받는 것이라면 누이바꿈은 두 집 사이에 딸(특히 쌍둥이 집안)을 한정적으로 맞바꾸는 것이다. 누이바꿈이나 물레혼은 가까운 친척이나 인척간에 혼인하기를 기피하는 전통사회의 혼인 규정에는 위배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가난한 계층 사이에서 드물게나마 행하여졌다. 이처럼 특별한 환경에서 나타난 물레혼보다는 누이바꿈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더 많으며, 여러 지역에서 간혹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누이바꿈이 나타난 주요 이유로는 대체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이러한 바꿈을 하는 부모들이 극히 절친한 사이로 형제처럼 가까이 지냈으며, 절친한 사이를 더욱 긴밀히 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다른 하나는 두 집 사이에 딸을 맞바꿈으로써 혼수나 예물을 서로 상쇄하여 혼인 비용을 절약하려는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지금까지의 보고로는 전자보다 후자의 이유로 누이바꿈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궁핍한 집안에서 특이한 전략의 혼인 형태가 드러나는 것도 이 두 가지 목적과 깊은 연관이 있다.

특징 및 의의 물레혼보다 누이바꿈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빈궁한 계층에서 특히 이러한 특이한 혼인 형태가 보이는 것은 연대감과 부의 가치를 축적하려는 의도가 있다. 삼각사돈 관계의 물레혼은 운명적 인연론이 작용한다. 곧 갑·을·정 세 집안이 있는데 갑 집안—을 집안, 을 집안—정 집안, 정 집안—갑 집안 간 묘한 사돈의 연을 맺는 경우이다. 이는 유대관계 강화와 경제적 실효를 중요시하는 데 뜻이 있다. 결국 물레혼은 혼인사에서 족외혼 규칙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개인의 선택이 우선시되고 자녀를 적게 낳는 오늘날 사회에서 친족 집단을 기반으로 발상된 이러한 혼인은 거의 사라진 혼사 방식이다.

참고문헌 조선민속지(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3),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이광규, 일지사, 1975),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일생의례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14), 허혼에 관한 연구(강용권, 민속문화2, 1980).

필자 이창식(李昌植)

민며느리제

정의 쪽을 찌지 않은 민머리의 어린 소녀를 데려와서 기른 후 며느리로 삼는 혼인 방식.

역사 민며느리제는 동옥저 민속 문화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전근대 시기에 한국의 서북지방을 비롯한 만주와 중국 등지에서 시행되었다. 빈한한 계층에서 딸을 민며느리로 보내는 경우는 20세기 초반까지도 있었다.

내용 민며느리제는 예부제豫婦制라고도 한다. 민며느리는 민머리 소녀가 며느리가 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지만, 아키바 다카시秋葉隆는 '밑며느리'가 변해서 된 단어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밑은 원료 등의 의미를 지니므로 '신부가 될 기본'이라는 뜻이 된다. 민며느리제는 동옥저의 혼인 방식 가운데 하나로, 중국 역사서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실려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그 나라의 혼인 풍속은 여자의 나이가 열 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집에서는 (그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집에서)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집으로 돌아온다其嫁娶之法 女年十歲 已相設許. 壻家迎之 長養以爲婦. 至成人 更還女家. 女家責錢 錢畢 乃復還壻."

3세기경 동옥저에서는 부모가 민머리를 한 어린 딸의 혼인을 약속하고 장래의 신랑집에 넘기고, 신랑집에서는 장성할 때까지 기른 후 혼인을 시켰다. 어린 딸은 신랑집에서 여러 노동을 하며 생활하였을 것이다. 당시 동옥저에서는 딸이 신랑집에서 성장하면 다시금 친정으로 돌아간 뒤 신랑집에서 돈을 지급하기를 기다

렸다가 돈 지급이 끝나면 신랑집으로 갔다.

이 사료를 통해 우리는 민며느리제라는 예부제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민며느리제는 어린 소녀가 예비 시댁에서 예비 며느리로 생활하다가 결혼하게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사료만을 가지고 동옥저의 보편적 혼인 방식이 민며느리제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해당 사료에서 보이는 민며느리제는 동옥저 혼인 방식 중 하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국 사서의 기록이 전형적이고 대표적 사례가 아니라 특수하고 호기심 가는 사례 중심으로 서술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며느리제를 구매혼과 결부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해당 사료에서 서술된 지급액이 결혼식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지급액도 소액이어서 구매혼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민며느리제는 한국에선 드물게 도서 등지에서 가난한 계층 중심으로 20세기 초반까지 나타났지만 중국이나 만주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특징 및 의의 민며느리제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지금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조혼早婚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남녀 모두 어린 나이에 혼인하는 방식인 조혼이 노동력 이용 방식과 결부되어 나타난 것이다. 민며느리제는 구매혼의 일종이라 볼 수 있지만, 신랑집에서 지급하는 돈의 액수가 규범적 민속 문화에 의해 정해지고 그리 많지 않으며 시장의 일반적 상행위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혼 성격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志, 조선민속지(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3), 주산군도 하치도의 가족과 혼인에 대한 현장론적 연구(이윤선, 도서문화29,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7),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이광규, 일지사, 1975).

필자 강정원(姜正遠)

민적법
民籍法

정의 1909년부터 1923년 6월까지 시행된, 최초로 일본식 '가家'를 단위로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하게 한 법령.

개관 근대 민사법은 법률적 행위의 주체인 개인의 존재와 자격 역시 법률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면(대한민국 〈민법〉 제3조) 그 생존의 시작과 끝인 출생과 사망, 가족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혼인·이혼과 입양 등은 이제 의례나 친족·이웃의 인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적 효력을 갖는 서류에 등기됨으로써 증명되어야 한다. 메이지유신으로 비로소 중앙집권 국가를 수립한 일본은 1871년 남성 호주의 직계가족인 '가いえ(이에)'의 구성원을 하나의 장부에 모아 적은 '호적こせき(고세키)'을 편성하였고, 1898년 〈민법〉 시행과 함께 호적을 가 구성원 전체의 출생·사망·혼인 등을 등기하는 장부로 재규정하였다. 그럼으로 3년에 한 번 동거하는 가구를 '호戶'로 파악·등록하던 '조선 후기의 호적'과 동거 여부와는 무관하게 호주의 직계가족을 하나의 영구문서에 기재해 놓고 구성원의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기록을 첨삭·수정하는 '근대 일본의 호적'은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성격의 장치이다.

한편 조선에서는 3년마다 편성되던 전통적 호적을 대체해서 1896년부터 표 형식의 '신(식)호적' 또는 '광무호적'이 도입되었으나 외세의 침략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호적의 인구 파악률은 이전보다 더 저조해졌다. 그런 상황에서 1907년 고종의 강제 양위 이래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한 일본 세력은 일본의 근대적 호적제도를 본뜬 신분등록 겸 인구 파악 장치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1909년 대한제국 법률로 〈민적법〉을 제정하게 된다. '민적'이라는 명칭은 기존의 호적이나 일본의 호적과 구별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1923년 7월부터는 〈민적법〉이 폐지되고 〈조선호적령〉이 시행되어 '민적'은 '호적'으로 개편된다. 그러나 민적부와 호적부는 양식이나 기재 내용이 거의 같았으므로 기존의 민적부는 그대로 호적부로 간주하였다.

내용 조항이 겨우 8개뿐인 〈민적법〉은 당시의 일본 〈호적법〉을 거칠게 모방한 것이다. 모든 인민은 남성 가장을 호주로 하는 직계가족 모델에 따라 어느 '호'의

민적에 등록되어야 하였다. 그 시점의 가(호)의 소재지가 '본적'이 되었다. 가(호)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호주와의 관계[身位], 성명, 본(관), 친부모, 출생일 등의 정보가 기재되었다.

〈민적법〉은 1909년 4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우선 전국적 일제조사를 통해 최초의 민적부를 한꺼번에 편성할 필요가 있었다. 전국 경찰력을 총동원한 민적조사는 1909년 7월부터 시작되어 이듬해 4월 말에 조사가 완료되었다. 조사된 전국 인구는 1,293만여 명이었다. 신식호적으로 파악된 인구가 600만 명 미만이었던 데 비하면 인구 파악률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셈이다.

이렇게 일단 민적부가 편성된 뒤에 수시로 신고해서 민적부에 기재하게 한 사항은 15가지였다. 출생·사망·호주변경·분가分家·이거移居는 신식호적에서도 수시로 신고하게 하였던 것이고, 양자[立後]와 파양罷養·개명改名은 조선시대에도 관의 허가를 거쳐 증빙을 받거나 호적대장에 기재하던 사항이었다. 그러나 혼인이나 사례가 많지 않았을 이혼을 관에 신고한다는 것은 낯선 생각이었고, 일본식 가제도에 일가창립一家創立·입가入家·폐가廢家·폐절가재흥廢絶家再興 등은 개념부터가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지방에서 민적 사무의 담당자는 경찰이었다. 민적 신고는 면장이 받지만 민적부는 경찰서·경찰분서·순사주재소에 두고 면장이 한 달 치 신고서를 모아서 경찰관서에 송치하게 하였다. 당시 '면'은 아직 제대로 행정력을 갖춘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일병합'을 앞둔 1910년 6월 '경무고문부'가 설치되어 헌병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민적 사무 역시 헌병경찰의 소관이 되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뒤에도 〈민적법〉은 예외적으로 계속 효력을 갖게 되었다. 1910년대 전반까지 민적은 개인의 신분관계 등록보다는 일차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인구·주민 장악 수단으로 더 큰 역할을 하였다.

1914년 4월 군·면의 대규모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지방행정이 정비되자 총독부는 1년 뒤 민적 사무를 헌병경찰에서 부府·면으로 이관하였다. 이때부터 규범적인 가(호) 모델이 강조되고 민적의 신분등록적 성격도 강화되었다. 예컨대 최초의 민적 조사단계에서는 근대적 일부일처제와 맞지 않는 첩妾도 신고한 대로 민적에 기재해 주었지만, 이때부터는 첩의 신고를 받지 않게 되었다. 신식호적의 기구·고용처럼 다른 집에 기식寄食하는 경우를 편의상 인정해 준 '부적附籍'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적법〉이 우리 생활에 가져온 큰 변화 중 하나는 '성+명'이라는 이름 형식의 일반화이다. 조선시대 양인 여성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호적에도 신분에 따라 양반은 '김씨', 상민은 '김조이金召史'라고 성과 호칭만 적었다. 천민·노비 중에는 성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최초로 모든 인민을 똑같이 '성명'으로 등록하게 한 것이 이 〈민적법〉이다.

참고문헌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서호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한국 근대 호적제도의 변천(이정선, 한국사론 5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9), 民籍事務概要(內部警務局, 1910), 朝鮮民籍要覽(細谷定, 斯道館, 1915).

필자 서호철(徐浩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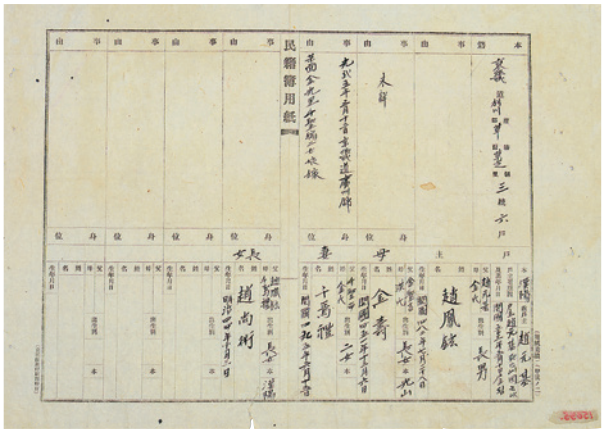

민적부 | 가로38 세로27 |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반보기

정의 8월 추석 이후 농한기에 여성들이 일가친척이나 친정집 가족들과 양쪽 집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 회포를 푸는 풍속.

내용 '처가와 변소는 멀어야 좋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남녀를 불문하고 사돈 간의 교류가 거의 없던 전통사회에서 상호 방문 혹은 왕래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여성의 외출이 금기시되었던 전통사회에서 며느리의 외출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특히 농사를 주업으로 하던 전통사회에서 가사와 농업 노동을 병행했던 며느리들이 며칠씩 집을 비우기는 쉽지 않았다. 농번기의 외출은 더더욱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이었다.

남자들은 다양한 외부 일로 사돈 간의 상호 교류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여자들은 한 번 시집간 딸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 했을 정도로 평상시 친정과의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번기를 벗어나는 추석 무렵이 되면 하루 정도 짬을 내어 외출하는 것이 묵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룻밤 묵는 것은 용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가 멀 때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반보기로 보인다. 약속한 날짜에 양쪽 집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 회포를 풀고 그날 돌아오는 당일치기의 만남이었다.

특징 및 의의 반보기를 할 때는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가서 회식하고 환담하며 하루를 즐긴다. 사돈 간의 관계가 돈독한 집안에서는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뿐만 아니라 사돈 부인들이 함께 만나기도 하였고, 동년배들이 함께 참석하여 흥을 돋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보기는 딸과 친정어머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사돈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모녀간의 상봉과 회포 풀기가 사돈 간의 교류, 동년배 간의 교류, 지역 간의 공동체 교류로까지 이어지는 특성이 있었다. 따라서 반보기는 그리움의 해소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공동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기능과 특성이 있었다.

반보기는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의 비밀스러운 만남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사돈 간의 교류를 돈독히 하는 기제로 발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연비연사聯臂聯査' '사돈 관계가 연 걸리듯 한다' '겹사돈'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같은 지역에서 시집온 여자들이 많아 서로 친분이 있었다. 그래서 반보기를 할 때면 이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단체 유희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즉 좋은 날과 장소를 택하여 서로 음식을 장만하여 각종 놀이를 하면서 야외에서 하루를 보내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한 것이다. 전라남도 강진이나 송덕에서 매년 추석 무렵 이웃 마을과 함께 큰 방죽가에서 회식하고 강강술래를 하면서 하루를 즐기는 야유회로 발전된 것이 좋은 예다.

최근에는 사돈 간의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며느리의 친정 나들이가 용인되는데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더 이상 반보기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아울러 추석이 사흘간의 연휴로 정착됨에 따라 추석 차례라든가 시댁의 중요한 일을 마치면 친정에 다니러 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자리 잡으면서 며느리의 친정 나들이가 반보기를 대신하게 되었다.

또한 일가친척의 동년배나 같은 지역을 친정으로 하는 부인들의 모임으로서 반보기의 기능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른바 같은 지역과 집안을 친정으로 하는 부인들이 만든 '딸네들 모임'이 그것이다. 이는 친정과 시댁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 년 일회의 모임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모임은 성별性別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향우회의 형태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같은 지역을 친정으로 하는 딸네들'이라는 구분이 있어서 반보기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마을에서 자랐거나 같은 학교에 다니다가 혼인으로 인해 타지로 흩어진 동창생들의 모임을 위한 반보기가 있다.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으로 쉽게 만나지 못하게 되자 서로의 중간 지점이나 교통의 요지를 택하여 만나는 반보기 형태도 등장하였는데, 이른바 동년배 모임이 그러한 것들이다. 동년배 모임은 중간 지점이라는 측면도 강하지만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를 만남의 장소로 하는 일도 있어 동창회의 성격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만의 모임이라는 측면에서 반보기의 변형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렇듯 모임화 된 반보기는 교통의 발달로 인해 만나는 장소가 굳이 양가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경치 좋은 야외나 유원지로 변화하였고, 심지어는 관광으로 발달하기도 하였다. 시기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반보기는 친구들의 모임을 위한 하나의 구실이 되었고 공동체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참고문헌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한국 민속학 개설(이두현 외, 일조각, 199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81), 한국세시풍속(김명자, 민속원, 2005), 한국의 세시풍속(장주근, 형설출판사, 1984).

필자 김시덕(金時德)

방계가족
傍系家族

정의 방계혈족으로 구성된 가족.

개관 직계直系와 대구對句를 이루는 방계傍系는 주된 계통에서 나간 갈래라는 의미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고모 등)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촌, 6촌 등)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또한 아버지 계통(친가)의 혈족을 부계혈족, 어머니 계통(외가)의 혈족을 모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제767조에 따르면 혈족은 모두 친족이지만, 제777조에 따르면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으로 한정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간한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에서는 기타가족 범주를 두고 있는데, 기타가족 비율은 1980년 16.1%에서 2000년 10.1%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11.0%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기타가족 범주에는 핵가족 및 직계가족을 제외한 가족 형태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방계가족傍系家族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내용 직계가족 원리를 고수하는 문화권에서 방계가족은 가족 전략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선택한 가족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경험적 자료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경우 6·25전쟁 당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피란길에 올랐을 때, 가장의 사업 실패로 가족이 풍비박산 났을 때,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이농이 활발히 진행되었을 때 등 과도기적 형태로 방계가족을 구성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아울러 방계가족은 주류인 직계가족과 별개의 독립된 가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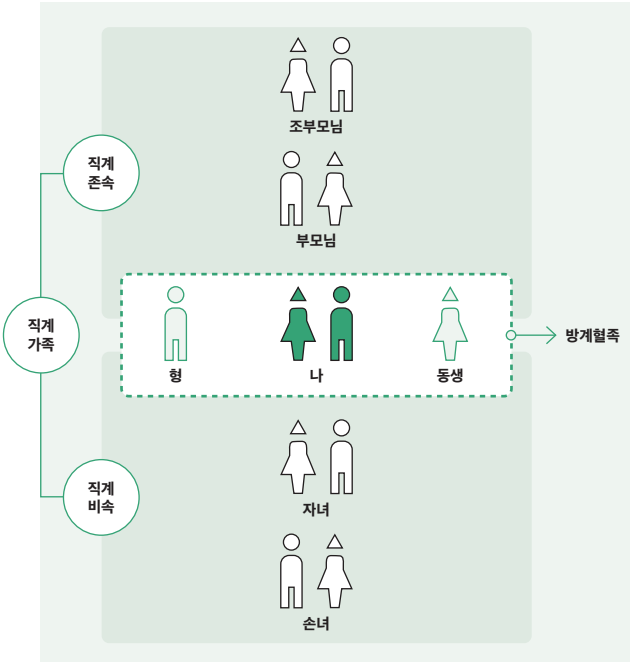

방계혈족

구성하기보다는 직계가족과 동거하는 형태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근대적 핵가족 규범이 확산하기 전인 전통사회에서 가족 형태가 보다 다양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생존 공동체 성격이 강하던 전통사회 가족의 경우 전쟁과 기근·풍토병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양반층에서도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재혼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를 먼 친척에게 보내는 관행도 빈번하였고, 친지의 자녀를 맡아 기르는 등 비혈연 가족 구성원의 존재도 비일비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계로 구성된 가족 또한 적잖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돌파한 상황에서 70대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고령화의 흐름을 타고 남녀 간 평균수명의 차이로 인해 여성 노인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매 가족이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특징 및 의의 방계가족의 존재는 왕래하는 친족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친족관계가 양계제

적兩系制的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직계 혈족에게 부여되었던 재산상속 및 다양한 법률적 혜택을 방계 친족에게도 확대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에 이어 4촌 이내 방계 혈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 부양이나 손자녀 양육을 둘러싸고 방계 혈족 사이에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계가족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 가족과 친족의 인류학(정향진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필자 함인희(咸仁姬)

백골양자
白骨養子

정의 이미 사망한 사람을 양자로 들여 그의 아들로 가계를 잇게 하는 행위 또는 그 사람.

내용 남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현대사회의 입양과 달리 전근대사회에서의 입양은 주로 가계家系 계승을 목적으로 행해졌다. 이는 기존의 친족 관계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새로운 부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기에 엄격하게 관리되었으며, 제도적으로 규제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이 세워지고 각종 제도가 정비될 때 입양 규정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세종世宗 대에는 입양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존속과 형제를 제외한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로 한정하면서 조부가 손자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직접 입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종成宗 대에 이르러 신효창申孝昌의 봉사자奉祀者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친족의 기본 질서에 해당하는 항렬에 맞지 않는 입양은 금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과도기에 일어난 김효지金孝之의 입양은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15세기 후반 『경국대전經國大典』 체제가 완성된 후로 손자 항렬을 직접 후사로 세우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런데 가계 계승의 대안으로 입후入後가 널리 유행하였던 17세기 이후 『경국대전』 규정에 부합하는 양자를 찾아 후사를 잇는 일은 더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이미 사망한 자를 입양하여 그의 아들로 가계를 잇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백골양자白骨養子·신주양자神主養子·신주출후神主出後라고도 한다. 즉 손자 항렬을 입양할 수 없는 법적 규정을 피하여 이미 사망한 자라 하더라도 아들 항렬에 해당하는 이를 양자로 삼고, 실질적으로는 그의 아들을 계승자繼承者로 내세우는 방식이다. 이처럼 백골양자는 입후를 변칙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조부에서 손자로 이어지는 적손승중嫡孫承重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조정의 관료들은 죽은 사람을 입양하는 것이 법전 내용과도 어긋난다고 해석하였다. 그것은 입양할 시점에 친부모와 양부모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자 역시 살아 있는 것이 전제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입양한 양자가 사망하게 되면 양부모가 새로운 양자를 들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이 역시 양자가 계승자 역할을 행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죽은 사람을 후사로 세우는 이 같은 행위는 실학자實學者들에 의해서도 비판되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백골양자 계승 방식이 예학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풍속이 쇠락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이해하여 법으로 강력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주五洲 이규경李圭景 역시 죽은 사람을 혼인시키는 것보다 백골양자가 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생전에는 남남이었다가 사후에 신주를 취하여 아들로 삼는 것을 천하의 불경이라고 하며, 근래의 무식한 사람들이 간혹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인간의 도리를 무너뜨린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백골양자를 요청하는 쪽에서는 집안 내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논리를 펼치며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수 있게 허가해 주기를 원하였다. 또한 선조의 제사가 단절되는 것보다는 백골양자라도 들이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우선할 때는 정식

입양으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죽은 사람을 입양하고 그의 아들에게 선조 제사를 받들게 하는 백골양자는 부계 중심의 수직적 친족 질서가 견고하게 형성됨에 따라 항렬을 지키기 위해 변칙적으로 행해진 방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의 친족 의식이 변화되는 과정과 제사 관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15세기 입후법의 운용과 계후입안(박경, 역사와 현실59, 한국역사연구회, 2006), 17~18세기 적손승중에 관한 일고찰(고민정, 조선시대사학보67, 조선시대사학회, 2013), 조선시대의 가계계승법제(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5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조선후기 가계계승 연구(고민정,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필자 고민정(高旻廷)

백년손님

정의 영원한 손님, 즉 사위를 일컫는 말.

개관 늘 손님처럼 대한다는 뜻으로, 처가와 사위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사위를 대할 때는 항상 손님을 맞듯 예의를 갖추어 대우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17세기 이후부터 보편화된 시집살이 혼인풍속으로 혼인한 여성을 출계出系 집안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출가외인 이념과 더불어 한국사회에 정착한 개념이다.

내용 15세기까지 혼인풍속은 신붓집에서 혼례식을 올리고 그대로 여성 집에서 가족을 꾸리고 사는 것이었다. 이를 서류부가婿留婦家·남귀여가男歸女家·솔서率婿 등으로 표현하며, 흔히 처가살이라고 부른다. 혼인과 동의어로 '장가든다'는 말도 있는데 남성이 장인 집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처가살이 혼속婚俗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사위가 평생 처가에서 사는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은 혼인 후 어느 정도 기간을 여성 집에서 머무른 뒤 남성 집으로 가거나 분가를 하였다.

이러한 처가살이 혼인풍속은 중국의 유교식 혼인풍속과 정반대였다. 중국의 유교식 혼인풍속은 '시집살이'이다. 즉 신랑집에서 혼례식을 올리고, 혼인 첫날부터 신랑집에서 사는 것이다. 성리학性理學을 국시國是로 한 조선은 건국 이후 각종 사회 제도와 문물을 유교식으로 바꾸고자 하였다. 그중에서 인륜의 첫 단계인 남녀의 결합 의식인 혼례식이야말로 변화를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온 처가살이 혼인풍속은 혼수나 주거지 마련 등 경제적인 문제, 신부인 딸을 갑작스럽게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는 부담감 등으로 쉽사리 바꿀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 건국 후 1세기나 흐른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처가살이 혼속이 보편적이었으며, 부계父系와 모계母系를 모두 중시하는 양측적인 가족 구성으로 인하여 외가와 처가는 친가와 대등한 친연성親緣性을 유지하였다. 사위와 외손은 아들이나 친손자와 다름없었다. 더군다나 고려에서는 부계혈통을 중시하는 곳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양자도 보이지 않는다.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어떤 이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 내가 얼마나 오랜 기간 상복을 입는지가 그와 나의 멀고 가까움을 보여 주는 지표였다. 중국에서는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장인·장모가 돌아가셨을 때 각각 1년, 5개월, 3개월 동안 상복을 입어 애도에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이 모든 경우 동등하게 1년 상복을 입어 친가와 외가, 처가가 동등한 위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전통은 조선 건국 후 중국식으로 환원하면서 제자리를 찾았다.

이러한 친족 구조는 몇몇 귀족들이 특권을 유지해 나가는 데 더없이 좋은 제도였다. 예컨대 고려시대 귀족들의 경우 음서蔭敍제도를 통해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이때 아버지나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장인이나 외할아버지가 고위관료라면 사위나 외손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외가와 처가는 친가와 마찬가지로 상벌에 함께 연루되었다. 예컨대 고려 관리 김은부金殷傅는 세 딸이 왕비가 되자 왕이 김은부와 그의 처, 부모뿐만 아니라 장인인 이허겸李許謙에게도 벼슬과 함께 식읍 1,500호를 주었다. 그리고 고려의 관리 김인규金仁揆는 그의 딸이 권신 이자겸李資謙의 아들 이지언李之彦

에게 시집갔는데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자 벼슬이 강등되었다. 고려에 이어 조선에서도 단종端宗 복위 운동에 가담한 대신들의 처가와 외가 모두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후 숙종肅宗 대에 가담자들에 대한 복권이 실현되자 가담자들의 친가와 외가의 처우 역시 개선되었다. 즉 외가와 처가는 친가와 마찬가지로 공동운명체였고, 이러한 전통이 유교사회를 실현하고자 목표하였던 조선 왕조에서도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16세기부터 유교식 혼례 절차 중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신랑집에서 혼례식을 올리는 친영親迎 요소를 접목하고자 노력하면서 처가살이가 조금씩 사라지고 가족의 주거 형태는 여성이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는 시집살이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양측적 가족 구성에서 단일한 부계 중심의 가족 질서가 자리 잡으며 처가와 사위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특징 및 의의 부계를 더욱 중시하는 사회 질서로의 전환은 처가 식구가 사위를 대하는 태도 변화를 낳았다. 고려사회는 처계妻系와 모계가 부계 못지않게 중시되었던 '양측적兩側的 친속親屬' 체계였으므로 외가와 처가는 친가와 마찬가지로 공동운명체와 같았다. 그러나 성리학을 국시로 하였던 조선 왕조의 건국 후 사회가 유교식으로 변화하면서 처가와 외가는 친속親屬 체계에서 그 중요성을 잃어 갔다. 이에 따라 처가가 사위를 대하는 방식은 예를 갖추어 손님을 대한다는 의미로 사위를 '백년손님'이라 일컫게 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17세기 송시열의 가부장적 가족주의 정착을 위한 노력과 좌절(하여주, 조선시대사학보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고려의 혼인제와 여성의 삶(권순형, 혜안, 2006), 단종 복위 사건 처벌에 나타난 조선 가족제의 특성(이순구, 사학연구98, 한국사학회, 2010), 조선 중·후기 사대부의 혼례방식(장병인, 한국사연구169, 한국사연구회, 2015),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국사편찬위원회 편, 두산동아, 2005).

필자 하여주(河如株)

벌초
伐草

정의 조상의 묘에 자란 풀이나 나무를 베어내고 묘를 깨끗하게 하는 일.

벌초 | 제주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벌초는 한식寒食이나 추석 성묘 이전에 조상의 묘에 자란 풀이나 나무를 베어 깨끗이 하는 일이다. 대개 백중百中(음력 7월 15일) 이후부터 추석 전에 모두 이루어진다. 설과 한식에는 성묘는 하지만 벌초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에는 벨 풀이 없고 한식에는 풀이 막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식에는 겨우내 묘에 생긴 구덩이나 부족한 떼(잔디)를 다시 입혀 주는 개사초改莎草를 하기도 한다. 개사초를 할 때는 '손이 없는 날(무방수날)'을 택일하는데, 한식은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한다. 개사초를 하기 전에는 몇 가지 제물을 마련하여 산신, 토지신, 묘의 주인(조상)에게 먼저 고한 다음 진행하고, 개사초가 끝나면 묘의 주인에게 고하여 평안을 알린다. 개사초 전에 산신과 묘의 주인에게 고한 다음 개사초가 끝나고 산신과 묘의 주인에게 다시 고하기도 한다. 장례를 치른 이듬해 봄에 떼를 입히기도 한다.

백중 이후에는 풀의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추석 전에 벌초해 두면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깔끔하게 손질된 묘가 유지된다. 추석에 성묘를 가기 위해 추석 전에

는 반드시 벌초해 둔다. 그렇지 않으면 보기도 흉하며, 자손이 없는 묘로 여기기도 하였다. 또한 자손이 있음에도 벌초를 하지 않는 행위는 불효로 간주되었다.

한국인은 죽은 조상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예우하였기에 조상의 묘를 살피고 돌보는 일은 효행이자 후손들의 책무였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추석 성묘 전 벌초를 중요하게 여겨 추석 전 한 달은 성묘하는 차로 도로가 붐비는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혹여 벌초할 시간과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벌초하기도 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예초기의 보급과 함께 벌초대행업이 성행하기 시작하여 더욱 편리하게 벌초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대행업의 성행도 벌초를 하는 풍속이 계속 전승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지역사례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추석 전에 벌초를 해 두지 않으면 큰 불효로 여겼다. 벌초하러 갈 때에는 집안의 여러 친척이 모여 날짜를 정하였다. 벌초의 순서는 웃어른의 묘부터 먼저 시작했으며 벌초하기 전에는 조상의 묘를 둘러본 다음 술과 음식을 간단히 차려놓고 재배를 했다. 이 지역의 벌초 풍속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전승 양상이다.

경기도 양주 지역에서는 입추 전후, 7월 초승, 7월 보름에 벌초하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음력 8월 중 공휴일에 맞춰 벌초한다. 공휴일에 벌초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벌초를 '소분掃墳'이라고도 한다. 음력 8월부터 추석 전날까지 벌초를 모두 마치도록 한다. 8월 초하룻날은 묘제나 시제를 하는 윗대 조상의 묘소에 친척들이 모여 공동으로 벌초하는데 이를 '모듬벌초'라 한다. 제주도에서는 모듬벌초로 윗대 조상의 묘역을 벌초한 이후에 추석 전날까지 벌초를 모두 끝내는 것이 전통이다. 모듬벌초 때는 한 집에 한 명씩 참여하는데, 남자가 없는 집에서는 여자가 대신 나오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학생들도 모듬벌초에 참여하도록 '벌초방학'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유교사회에서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다. 조상제사를 비롯하여 조상의 육신이 있는 묘를 살피고 보존하는 일은 살아있는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효행으로 인식되었고, 이런 효행을 하는 것이 후손들의 책무라고 인식되었다. 특히 묘와 주변에 자란 풀을 베고 다듬으며 떼(잔디)를 잘 입히는 일이 중요하였다. 벌초 풍속은 1990년대 초 대행업체의 등장과 함께 많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참고문헌 동국세시기(홍석모, 정승모 역, 풀빛, 2009),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예초기 벌초대행 보편화(매일경제, 1993.9.28.).

필자 배영동(裵永東)

별급문기
別給文記

정의 재주財主가 생전에 특정인에게 특별한 이유로 일정 재산을 증여하며 작성한 문서.

내용 조선시대에 작성된 분재기分財記의 일종이다. 분재기는 재주가 사망한 뒤 작성한 문서, 살아 있을 때 작성한 문서로 구분된다. 살아 있을 때 작성한 문서는 다시 상속 대상자 모두에게 전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인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

별급문기 | 가로44 세로47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1728년 6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노비를 별급하고 작성한 분재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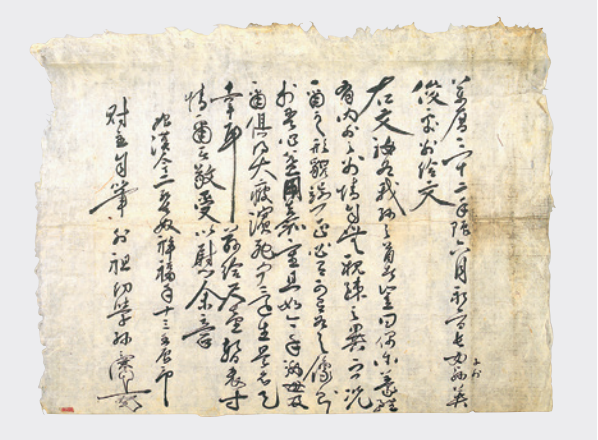

별급문기 | 가로57 세로4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1604년 6월에 외할아버지가 첫손자인 영준에게 노(奴) 1명을 주면서 작성한 문서.

러한 분류에 따르면 별급문기別給文記는 재주가 살아 있는 동안 특정인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할 때 작성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별급문기의 별급別給이란 '특별히 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특별한 이유로 특정인에게 재산 일부를 미리 증여하는 행위 자체를 가리킨다. 재산의 증여 대상은 자녀 또는 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이 외에도 동생, 첩자녀, 증손자녀, 사촌 형제, 조카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이러한 별급은 재주가 법전에서 정한 재산상속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재산을 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또 특정 사유로 인해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기에 단편적이고 일회적 성격을 지닌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별급 사유는 매우 다양한 편이지만 대략 8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자녀가 혼인할 때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여 주기 위해 신노비新奴婢를 주었다. 이는 혼인한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같은 숫자의 노비를 증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자손이 과거 급제 또는 관직을 제수除授하였을 때 이를 축하하기 위해 재산을 증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6~17세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조상을 위한 봉사奉祀 의무를 진 장자 또는 장손을 위해 재산을 증여하였다. 이는 봉사의 의무가 강화되었던 17세기에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신을 위해 정성껏 구병救病하거나 시양侍養한 자녀·손자녀에게 효도의 대가로 재산을 증여하였다. 다섯째, 손자녀가 태어났거나 중병重病에 걸린 자녀·손자녀가 건강을 되찾은 경우에도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재산을 증여하였다. 여섯째, 자녀·손자녀가 가난해서 빚이 있거나 노비가 없는 경우 경제적 보조를 위해서도 별급이 이루어졌다. 일곱째, 자신의 사후에 남아 있을 서·얼자 또는 첩이 걱정되어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별급이 있었다. 여덟째, 갑작스럽게 부모를 잃게 된 손자녀 또는 배우자를 잃은 자녀를 위로하기 위해 별급이 있었다.

이처럼 별급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였던 어린 자녀와 손자녀가 성인으로 장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대견해 하며 별급하기도 하였고, 특별한 사건이나 사유가 없어도 재주가 마음먹은 대로 별급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별급과 다르게 채무 변제를 위해 노비 또는 전답田畓으로 빚을 대신 갚는 경우에도 이 같은 형식을 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다.

별급은 정식 재산상속으로 대표되는 허여許與와 화회和會와는 다른 형태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정식 재산상속을 통해 재산상속의 기본 원칙인 '균분均分'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상속 대상자 가운데 특정 능력이 있던 특정인에게만 별급이 집중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차등 분배가 실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별급문기는 특정 시점에 특별한 이유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며 작성한 문서이므로, 문서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재산이 전래되는 과정을 비롯하여 사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형성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별급문기는 조선시대 재산상속의 대원칙 속에서도 재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재산분배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제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16세기의 별급관행(이문현, 고문서연구14, 한국고문서학회, 1998), 경북지방고문서집성(이수건,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조선시대 별급 분재의 사유와 변화 양상(손계영, 국학연구39, 한국국학진흥원, 2019),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필자 고민정(高旻廷)

보쌈

정의 조선 후기 이후 주로 과부를 보에 싸서 잡아다가 강제로 살던 경우나 처녀 액땜을 위하여 밤에 외간 남자를 보자기에 싸서 잡아다가 강제로 동침하던 혼속.

역사 발해에서 남녀 양가 혼인이 허락되면 혼인 과정에 남자가 여자를 훔쳐가고 이후 여자집에 소와 말을 보내는 습속이 있었는데, 과부 약탈은 이 혼속婚俗에서 유래한 것은 아니다. 보쌈은 『경국대전經國大典』 과녀寡女 재가再嫁 금지에서 연유하고, 이후 17세기에 점차 일반화되었다. 일부 금전 거래로 보쌈꾼에게 부탁하기도 하였다. 과녀는 홀어미로, 나이 든 여성 또는 남편이 없는 여성을 일컫는다. '과寡' '과부寡婦' 등의 한자어로 표기된다.

내용 주로 남자가 과부를 보에 싸서 데려와 살던 과부 업어가기가 대표적이며, 일종의 약탈혼이다. 과부 업어가기에는 과부 당사자나 과부의 부모들과 약조한 후 보쌈을 통해 데리고 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합의 조건 없이 반강제로 보쌈하여 가는 유형도 있다. 앞의 사례는 남 몰래 과부와 정情을 나누다가 혼인을 이루기 위하여 보쌈 방식을 빌려 사회의 이목을 속이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뒤의 사례처럼 강제적으로 보쌈할 경우 미리 과부가 사는 곳을 살펴 두었다가 밤 시간대에 쳐들어가 보자기나 자루에 담아 데리고 온 뒤 억지로 정을 통한 후 배우자로 삼는다. 강제 행위일 때 가끔 과부 쪽 가족과 다투기도 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비화하지는 않았다. 둘 다 마을 내 노총각이나 노처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기에 관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처녀를 위한 보쌈은 재가금지제도에서 나온 역설적 약탈혼이었다. 처녀가 보쌈한 총각과 동침함으로써 과부가 된 것과 같은 경험을 한 여자가 된 것으로 여겨서 과부의 액운을 면하였다는 속신俗信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걱정 없이 시집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혼속이다. 처녀를 위한 보쌈은 둘 이상 섬겨야 할 팔자인 딸의 액厄막이를 위하여 조선시대 양반집에서 행하던 것인데, 잡혀 온 남성은 입조심의 강압이 내려진 채 방면되거나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남자 보쌈은 이처럼 대개 처녀 팔자를 고치기를 말하지만 조선시대 하층에서 수절과부가 홀아비나 노총각을 동일한 수법으로 납치하여 오는 사례도 있다.

여자가 귀하였던 함경도 지역에서는 소박맞은 여자가 친정에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일 경우에 이른 새벽 서낭당에서 누가 자신을 보쌈해 가기를 바라면 이 소박맞은 여자를 맨 처음 보는 남자가 보쌈하여 집으로 데려가 살아야 한다는 관습이 통용되었다. 소박맞은 여자는 대체로 자신 또는 남편의 저고리 옷섶을 세 모꼴로 찢은 나비를 달고, 등 쪽에는 이불보를 진 채 서낭당에서 서성거리며 기다린다. 이 여자를 그날 맨 처음 만난 남성은 처지나 형편과 관계없이 데리고 살아야 하는 숙명의 의무가 지워진다. 소박맞은 여자는 서낭당에서 남성을 만나면 나비를 보여 준다. 그러면 남성은 그 여자가 등에 진 이불보로 둘둘 말아 보쌈하여 집으로 데려와 살게 된다.

더구나 보쌈이 과부의 재혼금지제도에서도 암암리에 이루어진 원인은 '노총각의 몽달귀신 이야기'와 '과부 원귀가 되는 이야기'로 마을에 재해가 빈번히 들게 된다는 믿음에서 였으나, 마을에 노총각이 많아지면 민심이 흉흉해진다는 소문과 홀아비의 아이 키우기라는 절실함 때문에 일정한 부분까지는 관에서 묵인하였던 국면도 작용하였다. 다만 보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재혼금지 제도가 실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조 관념과 과부 수절을 중요시한 전통사회의 관습적 맥락 속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졌을 뿐이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따랐다.

특징 및 의의 과부 보쌈이나 남성 보쌈은 유교적 통치제도로 불경이부不更二夫라는 사회적 통념이 굳어지면서 여자의 경우 비록 남편과의 사별이 인정되더라도 재혼하지 말고 수절의 삶을 강요당한 결과에서 나온 혼속이다. 과부의 재혼 금지를 시행한 제도는 대체로 고려 말기에 등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더욱 강화되고 조선 중기에 들어와서는 민간계층에까지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보쌈은 유교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수절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며 살았던 봉건적 이념의 민낯을 드러

내는 것이다. 과부 보쌈의 출현은 농업사회에서 생업 활동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구성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현실과 국가의 실질적인 당위성에 의한 것이었다. 생계 유지를 위한 과부, 가난하여 혼례를 할 수는 없지만 가족이 필요한 홀아비와 노총각, 사회 안전 보장망이자 수취 대상인 가호家護의 확보가 필요한 국가 등 각 주체는 미혼 여성이 아닌 과부의 정절까지 강조하는 사회에서 음성적 형태의 재혼 방법을 수용하였다. 이렇게 볼 때 과부 보쌈은 정절 이념을 추구하는 이상과 가족 구성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의 간극 속에서 용인되었음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19세기 과부약탈사건의 재검토(김백철, 동아시아고대학64, 동아시아고대학회, 2021), 보쌈 구전설화 연구(이영수, 비교민속학69, 비교민속학회, 2019), 조선민족문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8), 조선시대 과부 보쌈 혼속의 출현과 사회경제적 배경(박미선,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창식(李昌植)

보종
補宗

정의 종가를 존중하고 받드는 일.

내용 보종補宗은 위종爲宗이라고도 하며, 종가宗家를 받들고 지원하는 일이다. 종가는 문중을 형성한 시조의 가문이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구심적 존재 역할을 한다. 즉 "존조경종尊祖敬宗, 곧 조상을 존중하는 까닭에 종가를 공경한다."라는 언설言說과 같이 종가를 돌보는 것은 조상을 받드는 일과 다름없다고 여겼다.

유교의 종법宗法에서는 대종大宗과 소종小宗 구분을 두었다. 소종은 오세즉천五世則遷 원칙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대종은 백세불천百世不遷 원칙에 의해 형성된다. 오세즉천이란 나로부터 4대조(고조)를 넘기면 종宗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5대조부터는 조상제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소종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교체될 때마다 시조가 바뀌는 까닭에 종가를 창출할 수 없는 구조적 속성을 지녔다. 이와 달리 대종의 시조는 세대 제한 없이 영구히 조상제사를 받으면서 지위를 유지하는데, 그를 중심으로 문중(대종)이 형성되고 그 혈통을 이어받은 집이 바로 종가이다.

이런 이유로 종가는 지가支家에 비해 우열적 지위에 놓이고, 지가는 종가에 예속되는 서열적 질서가 수립되기도 한다. 또 문중門中을 대표하는 문장門長이 후천적으로 부여되는 사회적 지위라면 종손은 시조의 혈통을 이어받은 생득적 지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종손은 시조 제사를 주관하면서 다른 문중 성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보종에는 물질적 보종과 정신적 보종이 있다. 물질적 보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가의 기본 책무인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다. 문중에서는 이를 위해 위토位土를 마련해 두거나 위토 조성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제위소祭位所라는 조직을 결성해 조상제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한다. 또 접빈소接賓所를 조직해서 종가를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정신적 보종의 대표적인 것은 종가가 안정적으로 후사後嗣를 이어 가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종가는 문중의 얼굴이고, 종손은 지손支孫들의 얼굴"이라고 하듯이 문중에서는 종손의 혈통을 이어 가는 혼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종손의 혈통은 종가의 정통성을 의미하고, 나아가 문중의 정통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문중에서는 혼담이 오가는 여성의 집안 내력을 살피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인다. 그런 다음 종부宗婦가 들어오면 후사를 기다리는데, 아들을 얻지 못하면 문회門會를 열어 양자 문제를 협의한다. 그래서 지손가支孫家 중에서 적합한 대상자가 지목되면 '보종'을 한다는 심정으로 수락하였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오늘날에는 전통적 가치관과 공동체 관념의 약화로 종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보종 범위도 대폭 축소되었다. 특히 종손의 혼인이나 후계자(아들)의 출산 등은 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거의 관여하지 않는 편이다. 또 종가의 주된 책무인 봉제사접빈객 중에서도 조상제사의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위토 기반의 경제적 지원이 대부분이고 노동력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에서 종가가 처한 위상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최인학 외, 민속원, 2001), 현대사회 문중의 의미와 역할(김미영, 안동학연구20, 한국국학진흥원, 2021).

필자 김미영(金美榮)

복인
服人

정의 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참최斬衰, 자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의 상복을 입는 사람.

역사 『예기禮記』「상복소기喪服小記」에 "친한 이를 친하게 여기는 것[親親]은, 삼대를 친하게 여겨 오대에까지 이르고 오대를 통해 구대까지 미친다. 윗대로 갈수록 줄어들고 아랫대로 갈수록 줄어들며, 방계로 갈수록 줄어들어 친함이 끝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정현鄭玄은 "자신으로부터 위로 부친을 친하게 여기고, 아래로 아들을 친하게 여겨 '삼대'가 된다. 부친을 통해 조부를 친하게 여기고, 아들을 통해 손자를 친하게 여겨 '오대'가 된다. 또 조부를 통해 증조·고조를 친하게 여기고, 손자를 통해 증손·현손을 친하게 여겨 '구대'가 된다. '쇄'는 친함이 더욱 멀어질수록 상복을 입는 것도 가벼워짐을 말한다."라고 해석했다. 원대元代의 진호陳澔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아버지가 같은 사람끼리는 기년복을 입고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끼리는 대공복을 입으며, 증조부가 같은 사람끼리는 소공복을 입고 고조부가 같은 사람끼리는 시마복을 입는다. 이것이 '옆으로 줄어드는 것[旁殺]'이다. 고조를 넘어서는 관계에서는 상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므로 '끝난다'고 한다."

『예기』「대전大傳」에서는 "친족 관계가 끊어지면 상복을 입지 않는다.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친족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는다."라고 했다. 정현은 "'족형제族昆弟(고조가 같은 형제들)'의 아들은 서로 복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진호는 "삼종형제는 고조가 같으므로 시마복을 입는다. 사종四從에 이르면 친족 관계가 끊어져서 더 입어줄 수 있는 복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복인은 상복을 입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상을 치를 때 참최·자최(재최)·대공·소공·시마의 다섯 가지 옷차림[五服]을 입는 사람을 가리킨다.

내용 '상을 치르는 기간[喪期]'과 '상을 치를 때의 옷차림[喪裝]'은, 죽은 이와 살아남은 이의 '사랑하고 아끼는 정감[親]'과 '높이고 공경하는 마음[尊]'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의례儀禮』「상복喪服」에 따르면, 상을 치르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 1년, 9개월, 5개월, 3개월 등이다. 이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사계절의 변화와 순환으로 표상한 것이다. 상을 치를 때의 옷차림[喪裝]은 상의上衣, 하의下衣, 요질要絰, 수질首絰, 지팡이, 관, 신발 등을 기본적인 구성으로 하고, 각 구성 요소의 재질 또는 재료에 차이를 둠으로써 참최의 옷차림[斬衰服], 자최의 옷차림[齊衰服], 대공의 옷차림[大功服], 소공의 옷차림[小功服], 시마의 옷차림[緦麻服]의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예컨대 가장 무거운 상복인 참최의 옷차림은 "단을 깁지 않은 상의와 하의, 검은 암삼으로 만든 요질과 수질, 대나무로 만든 조악한 지팡이, 삼을 꼬아 만든 대, 삼으로 갓끈을 만든 관, 그리고 엄짚신을 한다."라고 규정되는데, 검은 암삼으로 만든 질, 삼을 꼬아 만든 수질과 요질, 엄짚신 등에는 모두 거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는 인공적인 수식이 최소화되었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거칠고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재질로 된 옷차림부터 조금씩 세련되면서 인공을 가미한 옷차림, 즉 평상복에 가까운 옷차림까지를 다섯 단계로 표현한 것이다. 전통적인 복인의 범위와 그가 사망하였을 때 하는 상기·상장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의 왼쪽, 즉 본종에 대해 복服을 하는 범위는 '나[己]'를 중심으로 같은 항렬[平輩]로는 곤제자매, 종부곤제, 종조곤제, 족곤제에 이르고, 윗방향[尊屬]으로는 부, 세숙부, 종조부, 족부, 조부, 종조조부, 족조부, 증조부, 족증조부, 고조부에 이른다. 나를 중심으로 아래 방향[卑屬]으로는 자, 곤제지자, 종부곤제지자, 종조곤제지자, 손, 곤제지손, 종부곤제지손, 증손, 곤제지증손, 현손에 대해 복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들과 나의 관계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곤제·자매와 나는 아버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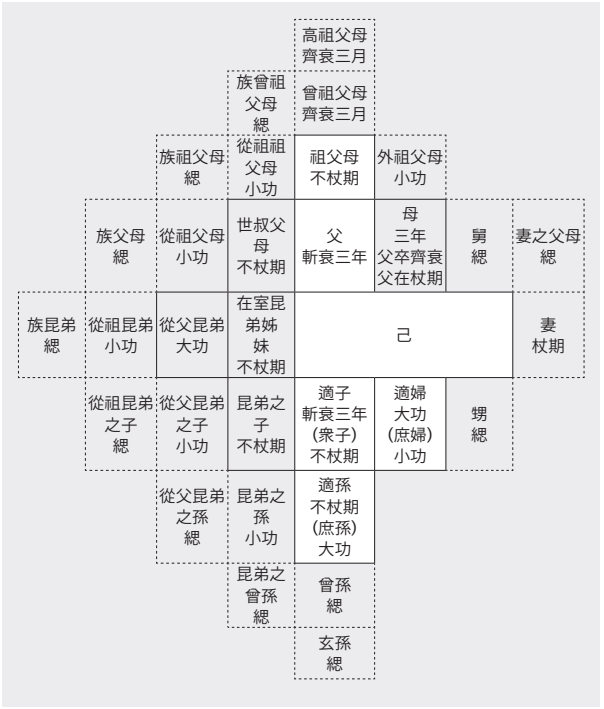

동일한 근원으로 한다. 세숙부모와 종부곤제는 할아버지를 동일한 근원으로 한다. 종조조부모와 종조부모와 종조곤제는 증조부모를 동일한 근원으로, 종조조부모, 족증조부모, 족조부모, 족부모, 족곤제는 고조부모를 동일한 근원으로 하는 친족이다. 나와 그들의 관계를 매개시켜 주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모에 대한 복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고조부모에 대한 복도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상복」에는 없다. 나를 중심으로 아래 방향[卑屬]으로 현손에 대한 복이 없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이는 그들에 대한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조부모와 증손의 사례에서 이미 그 상장과 상기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이처럼 복을 하는 대상은 복을 하는 주체로부터 위아래로 4대까지이다. 이를 구족九族이라 한다.

평배平輩의 경우 곤제자매, 종부곤제, 종조곤제, 족곤제에 대한 복은 부장기, 대공, 소공, 시마로 규칙적으로 감쇄하는 양상을 띤다. 이러한 규칙은 고조를 동일한 근원으로 하는 족증조부모, 족조부모, 족부모가 족곤제와 동일한 시마로 규정되고 있는 것과, 증조를 동일한 근원으로 하는 종조조부모, 종조부모가 종조곤제와 동일한 소공으로 규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아버지를 동일한 근원으로 하는 자식들에 대해서는 기년을 하고, 할아버지를 동일한 근원으로 하는 자손들에 대해서는 대공을 하고, 증조를 동일한 근원으로 하는 자손들에 대해서는 소공을 하고, 고조를 동일한 근원으로 하는 자손들에 대해서는 시마를 한다."라는 일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이 경우 내가 상대방을 위해 하는 복은 바로 상대방이 나를 위해 하는 복이 된다는 점에서 상호주의가 관철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직계존속·비속과 할아버지를 동일한 근원으로 하는 친족(표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의 경우 왜곡되는 양상을 보인다. 만일 이러한 원칙이 철저하게 관철된다고 전제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부장기, 조부모에 대해서는 대공, 증조부모에 대해서는 소공, 고조부모에 대해서는 시마가 되어야 하고, 자식은 부장기, 손자는 대공, 증손은 소공, 현손은 시마여야 한다. 따라서 존속의 경우, 고조부모에 대한 자최삼월복은 시마가 본래 삼월복이므로 상기는 동일하되 상장은 세 단계나 높인 것이 된다. 증조부모의 경우는 상기를 한 단계 낮추는 대신 상장은 두 단계 높인 셈이 된다. 조부모와 부모의 경우는 상기와 상장 모두를 한 단계씩 높인 것이다. 직계비속의 경우 적자와 적손에 대한 참최삼년과 부장기를 예외로 하면, 중자衆子에 대한 부장기복과 서손庶孫에 대한 대공복은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증손은 소공에서 시마로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즉, 직계존속에 대한 복은 명확하게 한 단계 이상 높아지고, 비속에 대한 복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존속과 비속 상호 간의 복에도 특징적인 사실이 나타난다. 고조부모를 위해 하는 복은 자최삼월인데 반하여, 그의 맞짝인 현손에 대해서는 시마삼월복이다. 상장에서 세 단계나 차이가 난다. 증조부모에 대한 복은 자최삼월인데, 그의 맞짝인 증손에 대한 복은 시마삼월복이다. 이도 상장에서 세 단계나 차이가 있다. 조부모에 대한 복은 부장기인데, 그의 맞짝인 서손에 대한 복은 대공구월복이다. 상장과 상기 모두 한 등급의 차이가 있다. 아버지를 위해 입는 복은 참최삼년인데, 중자에 대한 복은 부장기이다. 이도 상장과 상기에서 각각 한 등급의 차이가 있다. 이처럼 직계존속에 대한 복과 비속에 대한 복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방계의 경

우 상대방이 나를 위해 해주는 복으로 동일하게 '되갚아준다[報]'는 상호주의 원칙이 견지되고 있는 것과 구별되는 직계만의 특징이다.

방계이면서 일반 원칙에 따라 복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큰아버지·작은아버지와 곤제의 자식이 그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에 대한 복은 모두 대공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복은 모두 한 등급씩 높다. 그리고 특징적인 사실은 이 둘 사이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직계의 경우와는 달리 존속에 대한 비속의 복과 비속에 대한 존속의 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복이 강화된 것은 직계의 경우와는 다른 요인 때문이어야 한다. 이는 「상복」이 성립될 당시의 가족 구성과 관계가 있다. 즉, 당시는 조부모와 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그리고 나, 즉 조·부·기의 삼대 동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생산에 종사하고, 생산된 재산을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였다. 이들을 방계 친족 중에서도 '대공 이상의 친족'이라 부르고 '공재상조共財相助'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혈연을 매개로 한 유대가 '동거同居'를 통하여 더욱 강화되었으므로 방계이면서도 복을 높여 하는 것이다.

표의 왼쪽은 어머니의 권속[母黨]과 아내의 권속[妻黨]에 대한 복을 표시한다. 이 밖에도 삼부三父(동거계부同居繼父, 부동거계부不同居繼父, 원부동거계부元不同居繼父)와 팔모八母(적모嫡母, 계모繼母, 양모養母, 자모慈母, 가모嫁母, 출모黜母, 서모庶母, 유모乳母)에 대해서도 복을 한다.

특징 및 의의 망자에 대해 복을 하는 사람 가운데 동종同宗의 경우는 바로 전통사회에서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즉 동고조同高祖 8촌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들이 망자에 대하여 친소에 따라 다섯 가지 다른 상복을 한다는 것은 친족 간에 유대감의 차이에 따라 상복을 구분하여 입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때문에 상복은 상례에서 입는 의례복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친족의 멀고 가까움을 구분하는 용어로 대신 사용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家禮, 禮記, 儀禮, 한국의 상례(양승이, 한길사, 2010),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장동우(張東宇)

복합가족
複合家族

정의 이혼 후 재혼을 통해 구성된 가족.

개관 재구성 가족re-constitute family으로도 부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혼인 건수 가운데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가 12.3%, 남자 재혼—여자 초혼이 3.9%, 남자 초혼—여자 재혼이 5.9%로 나타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혼인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초혼 및 재혼 구성 비율 자체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부 중 어느 한 편이 재혼인 경우와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를 합하면 22.1%에 이르는 통계를 통해 복합가족複合家族 비율의 규모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내용 복합가족의 등장은 결혼 및 가족 형성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현상이다. 복합가족의 경우 부부 관점에서는 이혼하였으나 자녀 관점에서는 자신의 친부모 중심으로 '이원 핵가족'을 구성하게 된다는 연구가 있다. 아울러 자녀의 부모 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양부모 혹은 계부모—자녀 관계가 만들어지며, 자녀들 사이에서도 생물학적 부모가 다른 의붓step형제 혹은 부모 가운데 한 편을 공유하게 되는 이복half형제가 발생하게 된다.

복합가족을 바라보는 학자들 사이의 해석은 다양하다. 먼저 근대결혼의 탈제도화에 주목하는 입장이 있다. 여기서 탈제도화란 가족 및 결혼제도가 안정성을 상실한 채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고 규율하는 규범이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결혼의 탈제도화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방식의 결혼제도가 가까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두 번째, 연속적 일부일처제serial monogamy하에서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면서 일시적 비혼 동거 상태에 머무는 등 다양한 결혼 양식을 시도하고 있음은 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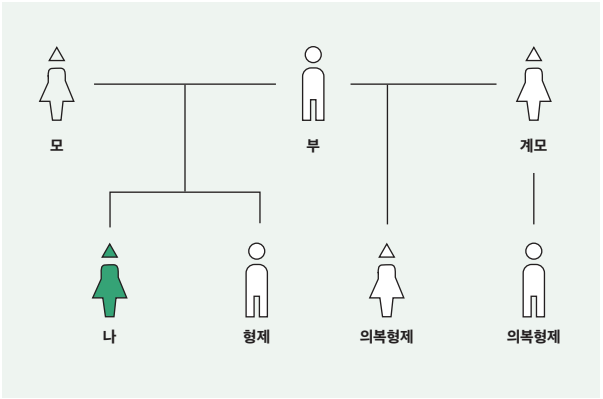

복합가족

화의 지표라기보다는 재제도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제도로서의 결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불행한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이혼을 택한 부부가 재혼하는 비율 또한 상승세에 있음은 재제도화를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다.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역할 및 안정성을 강조하는 제도결혼에서 부부관계의 질質에 초점을 맞춘 우애결혼으로 이행한 것의 뒤를 이어 최근에는 개인의 선택과 자기 계발이 강조되는 '개인화된 결혼'으로 이행해 가고 있다. 이 흐름은 한국에서도 감지되고 있어 생애주기의 필수로 인식되던 결혼이 오늘날은 개인의 선택이자 성취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결혼의 제도적 성격은 유지하면서 방식과 내용이 확장되는 다양화 과정에 주목하면서 현재의 다양화는 탈제도화에 이르는 중간단계로 파악하는 주장이 있다. 오늘날 결혼생활의 실질적 중요성은 감소하였지만 상징적·문화적 의미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결혼은 개인의 업적과 특권의 지표가 되었음 또한 다양화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결혼과 가족은 가족주의와 개인화가 서로 충돌하며 동행하고 있고, 제도적 실리를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와 결혼 및 가족을 둘러싼 문화적 이상理想이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공존하고 있으며, 의식은 전통적 규제를 벗어나려 하나 실천은 여전히 전통적 관행에 머물면서 복잡한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해석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이혼 및 재혼 증가로 인해 복합가족이 증가하면서 한국에서는 자녀의 성姓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고, 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변화하는 가족 현실에 부응하여 가족 관련법이 정비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 주는 실례라 하겠다.

참고문헌 가족을 구성할 권리(김순남, 오월의봄, 2022), 한국가족(이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The Marriage-Go-Round(Andrew J. Cherlin, Alfred A. Knopf, 2009).

필자 함인희(咸仁姬)

본관
本貫

정의 성의 출자지 또는 시조가 난 곳을 통해 부계친족 범위를 나타내는 관습제도.

역사 본래 성씨와 본관제도는 계급적 우월성과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왕실—귀족—일반지배층—양민—천민 순으로 수용되고 일반화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성씨와 본관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된 시기는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로 추정된다.

가장 먼저 신라에서는 박朴·석昔·김金 등 세 성씨에 이어 각 6부에 이李·최崔·정鄭·손孫·설薛·배裵 등 6성을 사여賜與하였다. 이에 진골眞骨과 6두품 계층이 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고려 초기에 와서 호족들의 지역적 배경을 토대로 한 본관本貫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는 신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과 현의 명칭을 바꾸었고, 각 읍의 토성土姓을 나누어 정함과 동시에 유이민流移民을 정착시켰다. 또한 효과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노역을 징발하기 위해 본관제도를 시행하였다. 본관은 그 지역 이름으로 정해 부여하였으며, 이를 토성이라 하기도 하였다. 즉 지역별로 일정한 씨족을 정착시켜 지방통치와 지배체제를 유지·존속하려는 필요에서 본관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내용 본관은 해당 성씨의 선대 조상들이 많이 살던 지방을 일컫는다. 시조가 태어난 곳이나 거주지 또는 성의 출자지出自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본관'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관적貫籍·본적本籍·성관姓貫·본本·관향貫鄕·적관籍貫·원적原籍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시조의 고향이란 의미로 향관鄕貫이라고도 한다. 아버지의 향관인 부향父鄕, 어머니의 향관인 모향母鄕, 처의 향관인 처향妻鄕 등이 그 예이다. 본관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예를 들어 '경주이씨慶州李氏'라고 하였을 때 '경주'가 바로 본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성씨와 본관제도의 초기 모습은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에 보이기 시작한다. 고려 초기에 효과적인 징세와 조역을 위해 본관제도를 시행하기도 하였지만, 폐쇄적인 골품제도를 청산하고 새 왕조의 신분체제를 확립하면서 효과적인 지방통치와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본관제도가 생겼다고 보기도 한다. 효과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부역賦役을 지우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 토착의 강력한 씨족 집단에 그 지역명을 본관으로 부여하였고, 이를 토성이라 하였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현재 전해지고 있는 족보를 보면 각 성관의 시조들이 해당 지역에 식읍食邑을 받았다든지 해당 읍을 사봉賜封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본관제가 일정한 지역에 주민을 정착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지역을 다스리고자 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조선 건국과 군·현의 통폐합, 향·소·부곡의 승격과 소멸 등으로 인하여 토성과 본관의 개편과 변질이 이루어진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를 보면 본관제의 형성과 변천 과정 및 내부구조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성씨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성씨 수는 250개 내외이며, 본관 수는 현縣 이상의 지역만 보더라도 530여 개나 된다. 촌성村姓과 향鄕·소所·부곡部曲·처處·장莊·역驛·수戍의 성씨까지 합하면 15세기 이전에 존속하던 본관 수는 1,500개가 넘었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서 15세기 이전에 있던 본관을 찾아보면 주州·부府·군郡·현縣을 포함한 주읍主邑의 수가 331개, 속현屬縣이 72개, 폐현廢縣이 141개, 부곡이 377개, 향이 130개, 소가 243개, 처가 35개 등이다.

이를 보면 고려시대 지역별 성씨가 본관지라고 파악되지만, 고려 후기 이래 지역적 편제 및 신분 구조의 변동과 함께 다양한 변화를 맞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관의 읍격邑格이 높은 성씨나 가문이 번성한 경우는 그 본관을 명예롭게 생각하였으나 향·소·부곡 또는 역과 진津을 본관으로 한 계층은 기회만 있으면 본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즉 15세기 말부터 폐현과 종래 세분된 촌성·향성·소성·부곡성이 점차 군성·현성에 흡수 통합되어 갔고, 그로 인하여 폐현과 향·소·부곡 등의 성씨가 새로운 소속 읍으로 본관을 삼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까지 있었던 주읍 이외의 본관은 대부분 사라지고 조선 중기에 이르면서 조선 초기 지리지에 없던 새로운 본관이 다수 생겨났다. 조선 중기 이후 후기에는 이거移居, 통혼, 기타 사유로 거주지가 변동되면서 본관과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가 되면서 본관제가 가지고 있던 향촌사회 통제기능은 약화되고 점차 관념적인 혈연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특징 및 의의 본관은 성관으로, '동성동본은 백대지친百代之親'이라는 관념적 혈연의식을 나타낸다. 그리고 신분과 개인이 속한 부계친족집단의 계급적 우월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는 특히 이러한 관념이 강하였다. 그 예로 조선 후기 실학자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유형원은 "풍속이 문벌을 중시하여 사족士族들은 반드시 원조遠祖의 출신지를 본관으로 삼았으며, 비록 자손들이 흩어져 살면서 100대가 지나도 본관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 아래 조선 후기에는 족보 편찬도 활발해졌다. 그리고 근대 호적제도가 시행되어 모든 사람이 성과 본관을 가지게 되면서 본관의 사회적 기능은 점점 약화되었지만 특정 성관들은 여전히 신분 관념의 상징으로 잔존하고 있다.

참고문헌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고려 본관제도의 성립(김수태, 진단학보52, 진단학회, 1981), 고려사의 제문제(변태섭, 삼영사, 1986), 고려시기 본관제의 시행과 지방지배질서(채웅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본관제의 성립과 성격(채웅석, 역사비평15, 역사비평사, 1991), 한국의 씨족제에 있어서의 본관 및 시조의 문제(송준호, 역사학보109, 역사학회, 1986), 朝鮮の姓(善生永助, 朝鮮總督府中樞院, 1934).

필자 이해준(李海濬)

본적
本籍

정의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

내용 본적本籍이란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를 가리키는 말로, 출신지를 나타낸다. 구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장소로 같은 집안[家]에 속한 사람은 본적을 달리할 수 없다. 호적법이 폐지되지 않았을 때 호적에는 반드시 호적의 기준이 되는 장소인 본적이 기재되어야 하였다. 또한 혼인·이혼·출생·사망·인지·입양·파양·친권·후견·귀화 등과 같이 신분이 발생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또 소멸된 경우 등 법률행위와 관련한 사실이 있을 때는 신고서에 반드시 본적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본적을 의미하는 원적도 있으며, 이에 대한 표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본적은 한 개인 혹은 한 개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등이 대대로 살아온 고향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출신 지역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특수한 역사·사회적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적轉籍과 분가 자유 및 이전 자유가 인정되면서 본적의 전통적 의의가 쇠퇴하고 있다.

본적은 한 번 정해지면 끝까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내 범위 안에서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전적할 수 있다. 호주 또는 장남이 아닌 가족은 자유로이 분가分家하여 새 본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였다. 여성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분가가 되고, 아버지의 본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호주로 하는 새로운 본적이 만들어졌다. 또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사는 일이 흔해졌다. 이에 과거 본적은 자신이 나고 자랐으며 현재까지도 살고 있는 지역인 경우가 많았지만 근대사회가 발전한 이후에는 자신의 실제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조상의 묘墓나 본가本家가 있는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호주의 장자·장손이 아닌 자는 혼인에 의한 법정분가나 강제 분가에 의하여 새 본적을 창설한다. 대표적으로 여성이 그러하다. 여자는 호적법상 혼인하면 남편의 집안에 입적하는 존재였으므로 본적에 변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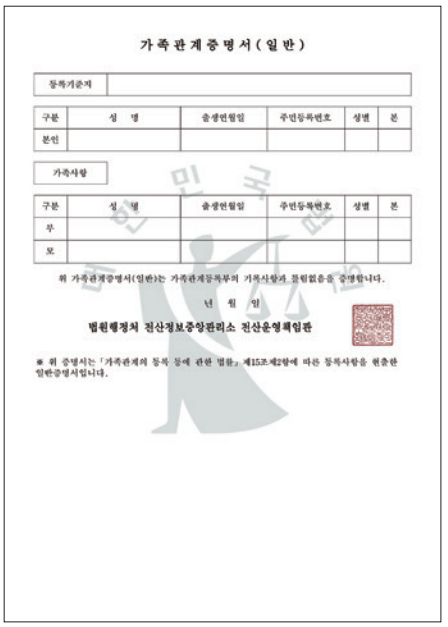
가 족 관 계 증 명 서 (일 반)

등록기준지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가족사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모					

위 가족관계증명서(일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일반증명서입니다.

등록기준지를 명시한 가족관계증명서 양식

생겼다. 특정한 사유로 인해 입적할 집안이 없거나 입적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이 일가를 새로 이루는 일가창립으로 본적을 만들었다. 또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시·읍·면장이 그 사람의 본적을 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적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호주가 본적을 임의로 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호주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이 호적을 정할 수는 없었고, 본적을 옮기는 전적은 호주가 하여야 하였다. 본적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에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등록기준지가 되었다. 〈가족관계등록법〉의 등록기준지는 가족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본적을 변경할 권한이 있었던 〈호적법〉의 본적과 달리 개인별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본래 본적지는 거주지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계로 이어지는 친족 질서에 의해 자손들은 아버지의 본적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상들이 살던 고향을 떠난 출향인들은 거주지와 본적지가 일치하지 않게 되어 본적은 시조의 고향이란 의미 정도로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혈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개인을 파악할 때 그의 집안 등을 살피는 경우가 많다. 이때 본적을

주로 보는데 부향父鄕, 모향母鄕, 처향妻鄕 등을 같이 파악하였다. 또한 부계父系와 모계母系의 고조대에 이르는 8고조의 본적지를 8향八鄕이라 하며, 이를 모두 파악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고려사회사연구(허흥식, 아세아문화사, 1981), 본관제의 성립과 성격(채웅석, 역사비평15, 역사비평사, 1991),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가족제도 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한국법제사고(박병호, 법문사, 1974).

필자 이해준(李海濬)

봉사혼
奉仕婚

정의 신랑이 일정한 기간 신부 집에서 육체적·정신적 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혼인이 성립되는 혼인 형태.

내용 혼인의 성립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신부 집과 신랑 집 사이에 선물이나 재화, 서비스가 상호 교환되는데, 이 중에서 신랑이 신부 집에서 일정한 형태의 서비스를 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혼인을 말한다.

봉사혼奉仕婚에서 봉사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신랑은 일정한 기간 신부 집에서 노동을 포함한 봉사를 제공한 뒤에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즉, 일정한 양의 봉사는 혼인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둘째, 신부 집에서 신랑의 육체적·정신적인 능력을 시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신부 집에서는 육체적·정신적 시험을 통해 신랑의 사람 됨됨이를 검증한 뒤에 신부를 내어 주는 것이다. 전자는 봉사의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후자는 봉사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를 강조한 것인데, 실제로는 두 측면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던 이 봉사혼의 기간은 짧게는 1년 이내일 수도 있고, 10년이나 15년 동안 지속하기도 하였다. 이 동안 미래의 신랑은 신부를 만날 수도, 때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한국에서 이 봉사혼에 대한 민속지적 보고는 손진태孫晉泰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수행하였다. 아키바 다카시는 조선의 하위 계층에 데릴사위제가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 데릴사위제를 봉사혼과 연계시키고 있다. 손진태는 1800년대 말까지 평안도 일원의 농민 계층에 봉사혼이 존재하였다고 보고한다. 그는 데릴사위를 봉사혼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신랑은 보통 5~6년, 길면 십여 년간을 처가에서 노동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신랑은 신부가 여러 명의 자녀를 낳은 후에야 독립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손진태는 고구려의 서옥제壻屋制와 연계시키고 있다. 하지만 서옥제에 관한 기록에 신랑이 신부 집에서 봉사한다는 점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구려 서옥제나 혼인제도를 봉사혼으로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징 및 의의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 집에 일정 기간 머물렀던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은 한국의 전통 혼인을 대표함과 동시에 봉사혼과 일정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봉사혼은 한국의 혼인을 설명할 때 서류부가혼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봉사혼에 대한 연구는 부계부거제와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할 때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인류혼인사(Edward Alexander Westermack, 정동호·신영호 역, 세창출판사, 2013), 조선민속지(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3), 조선민족문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8).

필자 강정원(姜正遠)

봉제사접빈객
奉祭祀接賓客

정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고,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하는 유교적 실천 덕목.

역사 유가儒家에서는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대접하는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을 중요한 과업으로 여겼다. 이는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살던 1970년대까지도 대부분의 집에서 소중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었다. 종가나 반가의 전통을 잇는 집에서는 요즘에도 여

전히 봉제사접빈객이 으뜸되는 실천 덕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사는 조상을 사후 봉양하는 의미의 의례로서 조상의 존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음식을 접대한다는 의식이 지금까지도 비교적 잘 이어지고 있다. 종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대봉사四代奉祀를 기준으로 기제사忌祭祀·불천위不遷位·시제時祭·묘제墓祭·차례茶禮 등 1년에 열두 번 이상의 제사를 지냈으며 이때마다 많은 사람이 참사자로 참여하여 이를 접대하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종가에서는 봉제사가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을 대비하여 봉사조奉祀條를 마련하였다. 봉사조는 조상의 사후 봉양을 위한 재산, 계승 관계 등을 기록해 둔 법적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토지·노비를 승계하게 되어 있다. 제사를 승계받은 사람은 사후 봉양을 위한 재산의 관리·사용·수익권만 있고 처분은 할 수 없었다. 즉 조상의 사후 봉양을 위한 재산은 문중의 소유였다. 그러나 간혹 재산을 종손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예도 있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봉사자가 사당을 독점 상속하고 제전祭田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조선 전기 『경국대전經國大典』「예전禮典」 봉사조奉祀條에서 "적장자에게 후사가 없으면 중자衆子가, 중자에게 후사가 없으면 첩자妾子가 봉사하고, 적장자에게 오직 첩자만 있어서 아우의 아들을 후사로 삼고 싶어 하면 이를 들어준다."라고 한 것처럼 직계주의를 원칙으로 장자를 재산상속에서 우대하면서 제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그리고 『주자가례』에 입각하면 재산상속에서 봉사조의 비율은 1/5이다. 이러한 장자 중심의 재산상속과 봉사는 16세기 중엽에 시작되어 18세기 초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일제강점기 이후 봉사조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관습으로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가에서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며 '봉제사접빈객'의 책무를 계승하고 있다.

한편 서민 가정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와 경제 변동으로 접빈객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었으나 봉제사에 대한 의식은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다. 결국, 가난하게 살던 시기에는 봉제사접빈객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더 중요했지만 다수 사람이 잘살게 되면서 이 덕목은 차츰 잊혀가고 있다.

다과상 | 예천권씨 종가 | 경북 예천 | 농촌진흥청

내용 봉제사접빈객은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고 집안에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종가에서는 이를 잘 실천하고 있는데, 조상제사를 지내는 것은 물론 종가를 방문하는 친족을 비롯한 손님들을 소홀히 대접하는 경우가 없다. 이는 종가의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잦은 제사와 많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기에 종가에서는 봉사조를 마련하여 제사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

1577년 김진金璡(1500~1580)은 유서에 협소한 땅을 자녀들에게 분할상속하지 않고 봉사조를 설정하여 조상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하였으나 1581년 의성김씨義城金氏 문중에서는 제사를 책임지는 종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봉사전奉祀田을 마련하였다. 1566년 이이李珥(1536~1584) 남매의 화회문기和會文記에는 형제 중 1인을 유사로 삼아 종자宗子와 의논하여 제사를 지내되 유고가 생기면 친자는 조제미助祭米 열 되, 친손자녀는 다섯 되, 친증손자와 외손자녀는 쌀 두 되를 내어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1594년 류성룡柳成龍(1542~1607)의 모친 김씨의 허여문기許與文記에는 묘직노墓直奴가 없는 시부모의 제사를 받들기 위해 제전과 재사齋舍를 마련하여 제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했으며, 조부모의 봉사를 위해 묘직노가 위의 전답을 경작하고 자손이 병작竝作하여 그 생산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친정 부모의 제사를 위해서 친정 부모의 봉사조를 친정 조카에 증여하여 그 생산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며, 대가 끊어진 이후에도 묘전으로 삼기 위해 토

지를 팔거나 나누는 것을 금하기도 했다.

종가나 반가에서는 예를 갖추어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는 종부宗婦의 역할이 컸는데, 종부는 이를 평생의 과업으로 여긴다. 종가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 "종부는 종일 밥을 짓는 것이 일이다."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다 보니 정작 본인은 배가 고픈 줄도 몰랐다." "식량이 부족하면 이웃집에 빌려 와서라도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종부들의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종가에는 간혹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이 생기기도 하고, 그 손님의 숫자가 많기도 하였다. 경상북도 경주 최부잣집에서는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이 100여 명이 넘더라도 결코 박절하게 대하는 법이 없고 방이 모자라면 노비의 집에라도 보내어 묵어갈 수 있도록 했다.

종가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평소 '가양주家釀酒'와 '음식'을 마련해 두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대대로 내려와 오늘날까지 종가의 음식문화를 계승하는 전통으로 자리한다. 청송의 심부잣집(송소 고택)에서는 찾아오는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집 안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내외 담에 몇 개의 구멍을 뚫어두었다. 중요한 것은 집안 부녀자는 손님을 볼 수 있지만 내외 담 밖의 손님은 집안 부녀자를 볼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접빈객을 잘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중요했다. 접빈객에는 손님을 잘 예우함으로써 다시 자신도 손님이 되어서 예우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렸으며, 부잣집에서는 모르는 손님에게도 적선積善이라는 차원에서 박대하지 않았다.

한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서민 가정에서는 봉제사접빈객을 위해서 제사용 쌀을 봉지에 담고 누구의 제사 때 쓸 것인지를 적어서 별도로 보관하기도 하였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손님을 위해서 장기 보존이 가능한 식품을 준비해두려고 노력했다.

특징 및 의의 조상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유교적 실천 덕목이다. 그리하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을 지키며, 조상의 유업이나 위상을 잃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한 생활의 지표로 삼았다. 접빈객은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그 실천에서 차이를 보인다.

참고문헌 16세기 봉사재산의 실태(정긍식, 고문서연구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예천 금당실·맛질 마을(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예문서원, 2004), 전통의 맥을 잇는 종가문화(한국국학진흥원, 2008), 한국의 명문 종가(이순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배영동(裵永東)

부계
父系

정의 단계출계의 하나로, 아버지 쪽 혈통을 따르는 출계율.

개관 아버지 쪽 혈통을 따라 혈통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남자 형제,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남자 형제의 아들 등 부계父系 남자들과 함께 혈통집단을 구성한다. 부계로 혈통을 구성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아들의 자녀는 나와 같은 혈통집단에 속하지만 딸의 자녀는 나와 같은 혈통집단이 아니라 사위의 혈통집단에 속하게 된다. 누구나 자기 아버지와 같은 혈통집단에 속하는 것이 부계이다. 부계혈통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회피관계가 만들어진다.

내용 단계출계 중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아버지 쪽 혈통을 따라 혈통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즉 나는 아버지, 아버지의 남자 형제,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남자 형제의 아들 등 부계 남자들과 함께 혈통집단을 구성한다. 또한 내가 속한 혈통집단의 성원권은 아들과 아들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주어지지만 딸의 자녀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부계혈통집단에서 아들과 딸은 모두 아버지의 혈통집단에 속한다. 그러나 아들의 자녀는 나와 같은 혈통집단 구성원이지만 딸의 자녀는 나와 같은 혈통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딸의 자녀는 딸의 남편인 사위의 혈통집단에 속하는 것이다. 즉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혈통을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쪽을 따르는 방식이 부계혈통체계이다.

부계혈통체계(출계율)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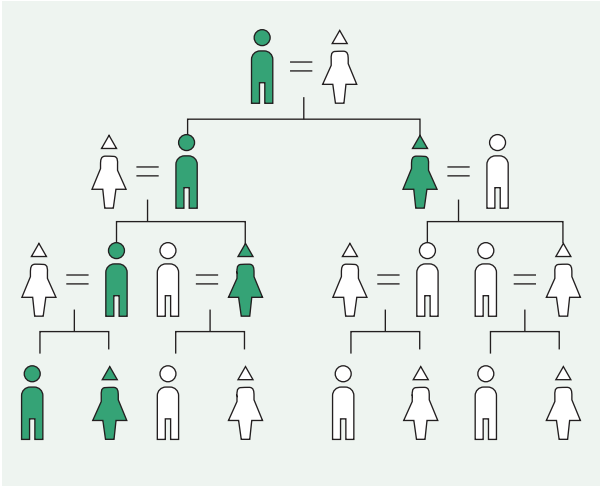

부계

가 가장 중요하다. 혈통집단의 성원권과 사회적 위세, 경제력 등은 아들을 비롯하여 남계 후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혈통집단의 계승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훈육이 강하며, 회피관계가 만들어진다. 인류학자 래드클리프 브라운Alfred Reginald Radcliffe Brown은 친족들 사이의 관계를 농담관계와 회피관계로 분류하였다. 농담관계는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인 반면 회피관계는 거북한 관계를 말한다. 래드클리프 브라운에 의하면 부계혈통체계를 따르는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회피관계가 성립하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농담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숙부나 고모 등 아버지 쪽 친족과는 회피관계가 성립하는 반면 외삼촌이나 이모 등 어머니 쪽 친족과는 농담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이는 혈통집단의 계승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형성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아버지 쪽 친족과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연장되고, 어머니 쪽 친족과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연장되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부계혈통집단은 당내堂內와 문중門中이 대표적이다. 당내는 같은 고조부의 후손들, 즉 8촌 범위 이내의 부계친족집단이다. 이 친족집단은 제사를 함께 지내는 단위이며, 부계를 통하여 성원권을 가진다. 문중은 당내의 범위를 넘어 불천위不遷位를 중심으로 한 부계혈통집단으로, 시제時祭를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계혈통을 따르지만 혈통집단 구성에서 여성의 지위는 특기할 만하다. 원칙적으로 아들과 딸은 모두 아버지의 혈통집단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딸은 결혼하면 사위의 혈통집단에 속하게 되고, 대신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혈통집단에 속하게 된다. 즉 결혼 전까지 여성은 아버지의 혈통집단에 속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혈통집단으로 성원권이 변하게 된다. 출가외인出嫁外人 관습은 혈통집단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특징 및 의의 부계출계율은 가장 흔한 출계율로, 아버지 쪽으로 혈통을 따르는 것이지만 규칙과 실제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즉 부계혈통을 따르는 사회에서도 모계혈통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부계혈통을 따르는 사회에서 조상숭배 의례는 아들을 통해 계승되지만 우리나라의 사례처럼 외손자가 제사를 물려받는 경우도 있다. 즉 부계혈통사회라고 하더라도 모든 행위가 부계로만 이루어지지는 않고, 실제 행동에서는 다양한 변이들이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문화인류학개론(한상복·이문웅·김광억,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현대문화인류학(Roger Martin Keesing, 전경수 역, 현음사, 1985).

필자 김창민(金昌民)

부모
父母

정의 자녀를 둔 부부를 지칭하는 용어이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우르는 호칭.

내용 부모父母는 자녀의 존재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자녀가 없다면 그 호칭은 부모가 아니라 부부이다. 부모의 역할은 생물학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부모성parenthood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생물학적 부모성은 어린이를 양육하는 것이다. 사회학적 부모성은 자녀에게 가족과 친족집단에 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전해 주는 것

이다. 생물학적 부모와 사회적 부모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입양 등으로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 부모의 역할은 생물학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모두 수행한다. 불일치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생물학적 부모가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사회적 부모가 역할을 승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역할에 중점을 두고 서술한다.

삼국시대 이래 한국의 부모는 기본적으로 부계父系 및 가부장제家父長制를 근간으로 하였다. 시대에 따라 모계적母系的 요소가 포착되기는 하지만 부계출계를 부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부모의 역할이나 인식은 시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의 창건설화를 기록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따르면 김대성金大城은 현생과 전생의 부모를 위해 절을 세웠다고 하였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정서적 유대를 넘어 불사佛事를 벌이고 사찰을 창건하는 등의 행동이 미덕으로 여겨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고려 말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의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부모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누어 서술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어머니의 은혜를 지칭하였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조선시대에도 변상도變相圖까지 덧붙여 꾸준히 보급되었으며, 언해본諺解本도 만들어져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부모의 은혜를 되새긴다는 것은 자식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므로 조선시대에 부모의 역할과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 하겠다.

이에 비해 효를 사회의 핵심 덕목이자 군주에 대한 충성과도 연결시켰던 유교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실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상호유대보다 자식의 순종이 강조되었다. 가족 내에서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강상綱常의 윤리를 우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균분상속의 관습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손이 부모, 조부모를 거스른다면 이륜彝倫이 문란해진다.'라며 부모의 처분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조선 전기 내내 유지하였다는 데서 드러난다.

이러한 부모의 권위는 조선 후기 양자 입양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대를 이을 아

불설대보부모은중경 | 가로22 세로34 | 조선 후기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들을 두지 못하여 양자를 들일 때 부모가 생존한 경우에는 부모의 의견이 절대적이었다. 조선 후기 사족층士族層의 경우 친족집단인 종중宗中의 영향력이 증가하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입양 문제에서는 양부모와 함께 친부모의 동의도 필수적이었다. 즉 가계家系 계승이나 운영은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부계에 의한 가계 계승 관념이 확산되면서 가족의 중심축은 부자관계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부모 역시 아버지가 주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종속적인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 이후에도 노부모—장남, 부부—손자녀로 구성된 직계가족이 보편적인 형태로 여겨졌지만 차남 이하를 분가시키는 경향이 이전보다 강해졌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3대 이상의 직계가족보다는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부부가족)이 한국사회의 기본 형태로 변화하였다.

특징 및 의의 근대 자본주의 이념과 산업화는 부모 역할의 분담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아버지는 가정의 소득을 책임지고 어머니는 가계의 운영과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였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 가계 계승과 사회적 지위(신분)의 승계라는 전통적 기능보다 부부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중시하는 변화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측면이 아버지로 편중되면서 오히려 전통사회보다 아버지에게 가족 내의 권력이 집중되는 경향도 생겨났다. 차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교육 수준도 동등해지며, 남녀평등의식 역시 확산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아직은 부모 가운데 아버지에게 가족과 관련된 권위가 편중되는 전통적인 이념이 남아 있다. 연구에 의하면 도시보다는 농어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계층보다는 낮은 계층에서 전통적인 가족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조선 전기 상속법 논의를 통해 본 부모의 위상(박경, 가족과 문화 21-1, 한국가족학회, 2009), 조선후기 가계계승 연구(고민정,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조선후기 입양의 시점과 범위에 대한 분석(권내현, 대동문화연구6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한국 가족 및 친족제도의 이해(최홍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대화(李大和)

부부
夫婦

정의 혼인하여 서로의 배우자가 된 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

내용 부부夫婦는 혼인한 한 쌍, 즉 남편과 아내를 아우르는 말이다. 서로 혼인함으로써 남편에게 아내의 직계가족과 친족은 처가妻家가 되고 아내에게 남편의 직계가족과 친족은 시가媤家가 된다.

1960년대까지도 한국인은 혼인을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두 집안의 결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연애를 통해 혼인을 결정하는 자유혼自由婚보다는 지인이나 친척의 소개를 통해 혼인이 성사되는 중매혼仲媒婚이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은 혼인 당사자의 결단이 아니라 주로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나 부계父系친족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사안이었다. 비슷한 이유로 이혼 역시 부부 사이의 일에 그치지 않았고 집안과 집안의 유대를 끊는 일이므로 대단히 드문 일이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양반과 향리 등 지배계층에서는 유력한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 집안의 사회적 관계와 영향력을 넓히고자 애썼기 때문에 일단 부부가 되면 평생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편 일제강점기까지도 혼인이 남편과 아내가 새로 자신들만의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아내가 남편의 부계가족으로 편입되어 시가의 일원이 되고 친정으로부터는 이른바 '출가외인出嫁外人'으로 취급받는 일이었다. 며느리가 된 아내는 시부모와는 부모—자식 관계를 맺고 '새아기' 또는 '아기'로 불리지만 시가에서 가장 낮은 지위로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며느리는 시부모나 남편과 같은 세대의 연장자는 물론 자신보다 나이 어린 시동생·시누이에게도 말을 높였다. 이러한 며느리의 지위는 자식, 그것도 아들을 낳고 자신의 며느리를 들이는 것으로 점차 향상되었다.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출산함으로써 자기의 혈연자血緣者가 남편의 부계가족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며느리' 자신도 혈연자의 '어머니'로서 친족의 일원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고 여겨졌다. 아들을 둔 부부는 사망한 뒤에는 조상으로서 제사를 받는다.

부부 | 가로42 세로58 두께2 |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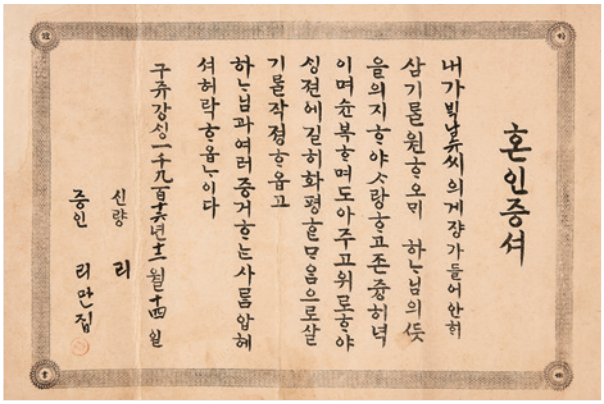
혼인증서

내가 빅남뉴씨의게장가들어안히
삼기로원ᄒᆞ오미 하ᄂᆞ님의ᄭᅳᆺ
을의지ᄒᆞ야ᄉᆞ랑ᄒᆞ고존중히녁
이며순복ᄒᆞ며도아주고위로ᄒᆞ야
싱젼에길히화평ᄒᆞᆯ마음으로살
기ᄅᆞᆷ작정ᄒᆞ옵고
하ᄂᆞ님과여러증거ᄒᆞᄂᆞᆫ사ᄅᆞᆷ압헤
셔허락ᄒᆞ옵ᄂᆞ이다

구쥬강싱일쳔구ᄇᆡᆨ구십ᄉᆞ년ᄉᆞ월십四일

신랑 리
증인 리만집

혼인증서 | 가로39 세로27 | 일제강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부부와 미혼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에서 남편은 가장으로서 외부에 대해 가족을 대표하고 가족원을 통솔·부양하며 재산을 소유·관리하고, 아내는 식사·의복·공간의 사용 등 가정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주부권主婦權'을 행사함으로써 남편의 '가장권家長權'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살림 등을 직접 담당해 줄 식모나 침모가 있다 해도 아내는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역할과 주부로서의 권위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시부모·부부·자녀가 동거하는 3대 가족에서는 시부모인 부부가 가장과 주부 역할을 행사하고, 아들 부부는 부모를 도우며 생활하였다. 현재는 가족 관계에서 부자父子보다는 부부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한국 가족에서 중심이 되는 관계는 부부가 아니라 부자였다. 따라서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과 혼인한 며느리는 집 전체를 통솔하는 시아버지에게 예속된 존재로 생활하였다. 이때 며느리는 남편의 배우자 역할보다는 며느리로서 시부모의 거처와 의복·음식을 정갈하고 정성스럽게 마련하여 잘 봉양하는 역할이 우선되었다. 또한 시부모뿐만 아니라 시가 식구 전원을 위한 식사 준비, 세탁, 청소 등을 하였다. 아울러 어머니로서 자식을 출산·양육하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집을 찾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며느리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현대사회에서는 3대 가족이 감소하고 부부가족이 증가하였다. 과거에도 부부가족이 적지 않았으나 장남 부부는 시부모를 봉양하며 본가를 상속하고 제사를 승계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된 현재에는 장남 부부도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부부가 되는 시기, 다시 말해 혼인 연령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달랐다.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남자 15세, 여자 14세를 혼인 연령으로 정하였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17~19세기 사족士族 계층의 혼인 연령은 남자 16.2세, 여자 17.4세였으며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 남자 17.9세, 여자 17.5세였다고 한다. 이는 같은 시기 중국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근대 지식인들은 조혼早婚 풍습이라며 악습으로 꼽은 바 있다. 조혼 현상은 중국에 공녀貢女를 보냈던 시기나 왕가의 간택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생겨난 선입견이다.

조선시대에는 부부가 혼인한 지 60주년이 되면 회혼례回婚禮를 하기도 하였다. 부부가 혼례복을 입고 혼례식 절차를 되풀이하며, 자손과 친지들로부터 술과 절을 받으며 축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부부 모두가 장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 가운데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가 있으면 회혼례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회혼례는 매우 드물었다. 근대 이후 서양 관습이 전해지면서 결혼기념일, 은혼식銀婚式(25주년), 금혼식金婚式(50주년)을 축하하는 풍습도 생겨났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나머지 배우자는 상복을 입는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3년복을 입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1년복을 입었다. 부부는 사망한 후에 합장合葬하기도 하고 따로 묘를 쓰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인간사회에서 부부는 가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는 특징을 지닌다. 조선시대에는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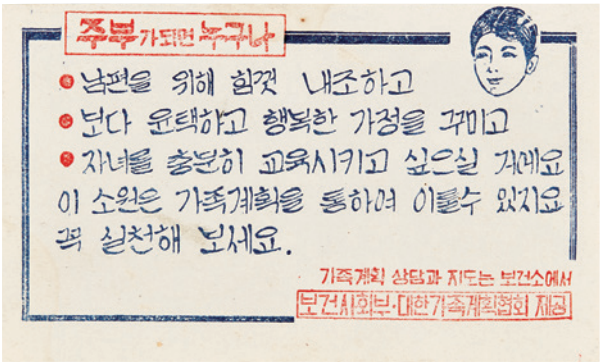

가족계획 홍보 전단 | 가로13 세로8 | 광복 이후 | 국립한글박물관

혼인 60주년 기념 잔치 | 가로25 세로38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식에 해당되는 관례冠禮와 계례笄禮가 결혼에 거의 흡수되었을 정도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성인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가정 내에서 부부의 역할은 뚜렷이 구분되고 남편이 좀 더 주도적인 입장이었음은 분명하지만 상호 간의 지위 격차가 일방적인 지배관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족층의 경우 부부가 상속받은 재산은 그 권리를 각자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이 분재기分財記를 통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후사後嗣 없이 남편이 사망하여 양자를 입양할 때도 부인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즉 부인의 지위가 남편에게 종속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남편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은 근대 자본주의와 함께 일본의 근대 가족제도가 변형, 이식되면서부터라 하겠다. 호주제에 의해 남편의 권한이 강력해졌고, 여성은 가정 내에서 주부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제되었다. 이러한 제도와 관념은 광복 이후에도 거의 그대로 이어졌다.

196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중산층이 형성되고, 가족계획 정책에 의해 소수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남녀 간의 교육 격차가 줄고 사회활동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부 역할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겨났다. 근대 이전에는 남편이 집 외부, 아내는 집안 살림을 담당하였으나 현대 가족에서는 부부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성별에 따른 분업이 약화되고 육아와 가정 경영에 관한 일을 공동으로 의논하여 처리하는 형태로 관습이 변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법과 풍속으로 본 조선 여성의 삶(장병인, 휴머니스트, 2018),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이광규, 일지사, 1975),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한국인의 친족호칭과 친족조직(최재석, 아세아연구6-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대화(李大和)

부성애
父性愛

정의 아버지다움이나 아버지 역할 수행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규범, 가치, 이데올로기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

개관 부성父性과 관련된 규범, 가치관, 이데올로기 등은 문화적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화하면서 함께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다만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사회학과의 랠프 라로사Ralph LaRossa 교수가 "아버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나 아버지를 연구하는 역사가는 거의 없다."라고 주장하였을 정도로 부성애父性愛는 모성애보다 더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내용 전통적 아버지상은 유교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교문화에서는 부자관계가 모든 인간관계 및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데, 이들 관계를 지배하는 규범은 효孝이다. 단 유교문화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성별 격리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유교문화에서는 '남자=밖' '여자=안'의 영역이 명확하고, 부모 역할 구분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유교문화 속의 이상적 부모 역할은 엄부자모嚴父慈母에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아버지에게 엄격함을 요구하였던 이유는 아버지의 주요 책임 가운데 하나가 '자녀 교육 역할의 수행'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머니는 아버지의 엄격함으로 인해 긴장하고 있는 자녀의 마음을 풀어 주는 역할을 하도록 배려되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 놓고 표출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예절과 형식, 지위와 서열을 중시하는 유교문화에서는

개인의 충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자율성의 영역을 제한하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멀리하였다.

유교적 가족관계의 아이러니는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자관계가 심리적으로는 가장 먼 거리감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존경·복종·헌신을 다해야 하지만 실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서로 소원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경우도 있다. 문화적 당위성과 실제 사례 간에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셈인데, 이와 같은 거리감 혹은 모순의 자각이 효라는 규범적 차원의 문화로 표현된 것인지도 모른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버지로서의 '경험 자체'가 연구 주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서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이며,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이다. 부성이 남성 자신의 정체감과 삶의 의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현대사회 부성애의 '재발견'이 시작된 셈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출산 과정에 참여하는 아버지가 늘기 시작하였으며, 자녀 양육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떠오르는 아버지emergent father' '새로운 아버지' '포스트모던 아버지'상이 대중매체에 등장하면서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도 '아버지의 재발견'이 진행됨에 따라 1992년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구성되었고, 1996년 김정현의 소설 『아버지』가 대형 베스트 셀러를 기록하였으며, 1996년 5월에는 월간지 『아버지와 가정』이 창간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부성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던 즈음인 1997년에 외환위기가 시작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부성 역할이 위협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의 위상에 대한 위기의식 또한 고조되었음을 아쉬워하는 의견도 있다.

산업화가 아버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학자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즉 아버지의 권위 약화는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화로 인해 공동체가 붕괴되는 동시에 사회이동 폭이 증대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전통사회에서 아버지 권위의 토대였던 '토지에 기반을 둔 재산권'이 약화되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권위의 물적 토대가 잠식되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아버지의 권위 약화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일부 아버지가 쇠락해 가는 가장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더욱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를 행사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실리는 없고 명분만 남은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자녀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아버지의 위상 변화에 더욱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산업화로 인한 일터와 가족의 분리이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노동 부담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 가장들은 가족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생계책임자 역할'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생활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우선하게 되었다. 한편 어린이의 욕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모성의 중요성이 함께 주목받기 시작하는데, 어머니 역할이 강조될수록 아버지 역할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감퇴하여 갔다.

그러다가 어린 자녀를 둔 주부의 취업률 증가로 인해 아버지 위상과 역할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도구적 역할에 몰입하는 아버지 이미지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버지 역할의 쇠퇴와 함께 남성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부성 역할의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자극한 것은 '자기반성self-reflection'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성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거에는 많은 이들이 공동체의 성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에 가치를 두었지만 현대인들은 절대적이고 내면적인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자신의 솔직한 느낌과 목소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연구 결과는 새로운 아버지상을 모색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이다. 아버지의 가사 및 양육의 참여도가 높고, 부부가 가사와 양육 책임을 철저히 공유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결혼생활의 긴장 혹은 갈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투자가 증가할수록, 나아가 부모 자녀 관계가 친밀할수록 결혼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자녀들과의 친밀한 유대를 통한 아버지로서의 만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기 존중감도 높아지고 있다. 자신이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물론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 또한 높

아진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특징 및 의의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부모가 된다는 의미가 전면적으로 재구성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젊은 세대의 부모들은 새로운 미개척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에 비유되기도 한다. 오늘날의 부부들은 부부 동시 직업에 큰 비중을 두고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 부모가 되며, 평등한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가 결혼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부모라는 역할을 시연해 본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다만 대중매체 속 아버지의 이미지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점과 과중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아버지 역할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은 새로운 아버지상 구현이 만만치 않은 작업임을 암시한다.

참고문헌 남성의 부성 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김혜영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The Modernization of Fatherhood(Ralph LaRoss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필자 함인희(咸仁姬)

부처제
父處制

정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한 다음 남자의 아버지가 사는 곳에 거처를 정하고 생활하는 거주 유형.

역사 한국 사회에서 시대별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이념적 조건이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어떻게 복합되어 부처제父處制를 정립하는 데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존하는 삼국시대 이후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 거주규정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해할 수 있다.

부처제는 삼국시대의 전형적인 거주 유형은 아니었다.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고구려조高句麗條에는 서옥제壻屋制에 대한 언급이 있다. 고구려에서는 남녀 간에 혼인이 성립되면 여가女家에서 집 뒤에 소옥小屋을 세우고 신혼부부가 동숙하였으며, 사위는 처가에 돈과 폐물을 제공하였다. 그들이 자녀를 낳아 성장하면 남편은 처자를 데리고 본가로 가는 거주 관습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고구려의 혼인규정이 모처母處—부처제였음을 나타낸다. 신라·백제·고려에서도 모처—부처제는 혼인 후 널리 행해진 거주 유형이었다. 이 시대 신부는 장기간 자신의 생가에 머무르고, 집이 가난한 신랑은 여가에 거주하다가 자기 집안의 필요에 따라 신부가 빠른 기간 내에 신랑의 부모가 거주하는 곳에 갈 수 있었다. 이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거주규정이 부처제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조선시대의 이러한 모처—부처제 거주규정은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을 지나면서 부처제로 크게 변화하였다. 이 시기에는 지주·대농층에서 소농층 중심의 농업생산체계로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전농업水田農業이 강조되면서 집약적 농업이 실시되었다. 과소농적 농업생산체계 하에서, 특히 양반 가문에서는 농사가 용이한 수전농업 지대로 이주·세거하거나 곡야谷野를 개척한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규범적 장치로, 부처제가 정착되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부처제가 정립된 조선시대에도 모처—부처제의 일부 관습은 지속되었다. 예컨대 주된 혼례식이 여가에서 거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3일을 묵고, 때로는 '해묵이'를 하여 1년 내지 3년을 모처제로 있다가 부처로 거주를 옮기는 관습이 지켜졌다. 조선 후기까지 남귀여가男歸女家 관행이 지속되면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 자신의 집에서 혼례를 진행하는 친영親迎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던 것이 그 예이다. 18세기 중반 이후 결혼한 부부가 처가나 외가에 거주하던 관습이 신랑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이나 그 부근에 거처를 정하는 부처제거주父處制居住로 공고해졌고, 이는 다시 출계제도에 영향을 주어 공계출계에서 부계출계로 변화되었다.

내용 거주규정은 재산·제사·이름·성원권에 대한 적법성과 정통성을 규정짓는 출계원리를 실천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사위가 처가에 오래 머무르는 서류부가婿留婦家와 같은 조선시대 혼속婚俗은 공계체계共系體系적 특성을 나타낸다. 공계체계 하의 거주규정은 선택적이어서 결혼 후 처가에 살거나 신랑 아버지의 집에

거주하는 선처제選處制(선거제選居制)였다.

공계출계共系出系 친족사회에서는 그 구성원 사이에 균분상속이 이루어지다 보니 가내집단이 소유한 토지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양반 농민층의 영세화가 진행되었다. 균분상속제도와 분할된 토지 면적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상속이 적을수록 상속보다 농업경작에 우위를 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상속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거주전략으로 부처제가 행해졌다.

생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야·곡야지대에서 종족촌(동성촌)의 형성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부처제와 수전농업체계, 부계친을 중심으로 한 종족 조직이 상호 조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거주규정과 출계율出系律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주규정을 알면 출계율을 알 수 있다. 거주규정이 부처제인 사회에서는 출계율도 부계출계인 곳이 많다.

부거제父居制라고도 하는 부처제는 단계출계單系出系체계 사회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뒤 신부가 시가媤家에서 살게 됨으로써 재산이나 집을 관리·감독하고 선조 제사를 봉행할 권리를 시부모로부터 승계한 거주규정이다. 이러한 부처제가 시행되는 사회에는 거주지의 다양성이 허용되어 신혼부부는 남편이 마련한 독립적인 집이나 신랑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집, 시부모가 사는 마을, 시부모가 사는 곳과 가깝거나 영향 아래에 있는 지역 등에서 산다.

신부는 친정을 떠나 남편이나 시부모와 관련된 곳에 거주지를 정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함으로써 가계家系 소속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시가로부터 재산상속이나 제사상속 등과 같은 물질적·정신적 유산을 계승·상속할 수 있다. 부처제는 출계체계에 영향을 주어 아버지와 아들을 결합하는 반면에 시집온 여자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게 되어 부계출계를 강화하는 요건이 된다.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부처제 거주규정은 수렵·채취와 같은 생업활동, 전쟁 등에서 남자와 여자의 분업이 요구되거나 신부대新婦代의 관습이 있는 사회, 재산에 대한 부권父權 혹은 가족 통솔을 위한 가장권이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 등에서 행해진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한국의 거주규정은 재산·제사·이름·성원권에 대한 적법성과 정통성을 규정짓는 출계원리의 시행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17세기 중반 이후 부처제가 점차 공고하게 됨으로써 출계율도 공계체계에서 부계체계로 변화하였다, 부처제는 자율성, 의사결정, 재산상속, 제사상속, 생업활동 등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차별화를 야기하는 가부장제적 관습과 관련될 수 있다. 거주규정이 혈통계승 원리나 소속감, 집단 내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명망의 문화정치(박성용, 민속학연구52, 국립민속박물관, 2023), 사회구조론(이광규, 일조각, 1984),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이광규, 일지사, 1975),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9).

필자 박성용(朴晟慵)

분가
分家

정의 가족 구성원이 살림을 차려 주거를 달리하는 행위.

개관 '분가分家'라는 용어는 주로 둘째 이하의 아들이 결혼하여 새로 살림을 차리는 것을 뜻한다. 아들이 결혼 이후에 부모나 맏형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독립하는 것도 분가에 속한다. 딸은 출가하면 바로 시댁 식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분가에 해당되지 않지만, 만일 결혼한 딸 가족이 함께 살다가 독립하여 나가면 이 또한 분가에 해당된다.

분가는 생활상의 영역과 법률상의 영역 변화를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생활상의 분가 형태나 방식이 자료로 확인되는 시기는 조선 전기 이후로, 지방의 사대부 계층이 세거지 인근에 개척한 별업別業을 차남 이하에게 나누어 주는 예를 분가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삼남지방에 다수 남아 있는 동성 촌락은 입향조入鄕祖로부터 분가하면서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별업을 이용한 분동이나 분가의 비중은 줄어들었고, 같은 마을 내에서 분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광복

이후의 분가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된 이후 셋방이나 셋집을 얻어 주고 살림살이 일부를 장만해 주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집을 남성이 마련하는 대신 여성은 살림살이를 혼수로 장만하는 형태가 자리 잡았다.

내용 엄밀히 말하여 분가는 인간이 가족생활을 영위한 직후부터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분가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고, 문서 자료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 시기는 조선 전기부터이다. 이 또한 분가에 관한 상세한 기록보다는 주로 분재기의 형태로 남아 있다. 분재기는 부모 생전 혹은 사후에 상속분을 나누는 문서이므로 상속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분가의 양상을 정확히 추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선 전기에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등장한 사대부는 중소 지주층 출신으로, 성리학과 함께 들어온 이앙법을 통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미간지를 개간하여 경제력을 길렀다. 그리하여 거주지 인근에 이른바 별업을 개척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별업으로 삼은 예가 적지 않았다. 생전 또는 사후에 차남 이하에게 별업을 분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이 분가의 한 형태이다. 그 외에 세거하는 마을 안에 따로 집을 지어 분가시키는 예도 많았다. 이러한 세거지와 분가·분동의 상황은 삼남 지방에 산재한 유력 가문의 족보를 통하여 시기별로 재구성할 수 있다. 도시화가 진전된 1960년대 이후에는 차남 이하가 결혼할 때 셋방이나 셋집을 얻어 주고 살림 일부를 장만해 주는 것이 분가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결혼할 때 남성이 집을 장만하고 여성이 혼수를 마련하여 살림살이를 갖추는 형태가 공고해진 것도 대략 이 시기로 볼 수 있다.

생활상의 분가 이외에 근대에는 법적인 의미의 분가가 등장하였다. 이는 일본의 호적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1909년 〈민적법〉이 시행될 때 도입되었다. 일본의 호적제도를 참고한 것이었다. 이후 1923년의 〈조선호적령〉을 거쳐 1960년 〈호적법〉에 이르기까지 분가는 호주의 권한이었다. 실제 생계를 별도로 꾸린다고 하더라도 분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호로 간주되었다. 1962년 〈민법〉에서 법정분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차남 이하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별도의 호적으로 자동 분가되도록 하였다. 법정분가제도는 2005년 〈호적법〉이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특징 및 의의 분가할 때는 소가족이 살 만한 대지와 가옥, 3~5정보의 농토는 보유해야 자영농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재지사족在地士族이라면 분가할 때 그 이상을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 재산 규모는 각 가문의 경제력과 시대 상황에 따라 제각각이므로 분재기를 통하여 추론할 수밖에 없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별업을 개간할 미간지가 거의 사라졌고, 세대를 거쳐 상속이 반복되면서 개인별 재산 규모가 줄어들었으므로 분동보다는 같은 동네 안에서 분가하는 사례가 늘어 왔다. 분급되는 재산 규모가 지나치게 줄면 모든 자녀의 경제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장남에게 봉제사 명목의 재산을 더 상속시키고 분가 재산을 줄이는 경향도 나타났다.

참고문헌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호적(손병규, 휴머니스트, 2007).

필자 이대화(李大和)

분거가족
分居家族

정의 부부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둘 이상의 가구를 이루어 따로 거주하는 가족.

내용 결혼과 혈연·입양 등 관계로 얽힌 사람들이 하나의 가구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전통적 의미에서 '가족'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상기 조건들 중 '한 지붕 아래 동거'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거가족分居家族, commuter family 또는 비동거가족非同居家族이라고 칭한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는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고려하여 통계청은 30세 미만의 미혼 성인 자녀가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경우를 분거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분거 경향은 2014년 이후 증가 추세여서 2018년에는 분거 가구가 총 가구의 20%를 기록하였다. 배우자와의 분거, 자녀와의 분거로 나누어서 분거 이유를 조사한 2018년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분거는 직장과 가족의 거주지 간 거리 문제로 인한 분거가 전체 분거의 67%를 넘는 등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부부 불화로 인한 분거도 16%를 넘는 등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분거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미혼 자녀의 분거 역시 취업으로 인한 이유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자녀와의 분거 이유 중 57%를 넘는 수준이고, 자녀의 학업으로 인한 분거는 36% 정도에 머물렀다.

한국 가족의 분거 양상은 시대에 따른 변화를 보였다. 산업화 초기에는 교육과 취업을 위해 젊은 층이 도시로 향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 분거가 많았다. 농업 중심 시대가 저물고 산업화 및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농어촌 가족들은 자녀들을 큰 도시에서 교육받게 하고 도시에 정착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계화 물결에 탑승하게 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가족들에게서 외국으로의 조기유학 열풍이 불었다.

전통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부부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한국 사회에 교육을 통해 세대 간 계층 상승을 도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도농 간 분거에서 한국과 외국 간 분거로 확대되었다. 흔히 회자膾炙되는 '기러기가족'이라는 용어는 아내가 자녀와 함께 외국으로 떠나고 남편이 국내에 혼자 남아 돈을 벌어 보내면서 장기간 분거하는 가족을 뜻한다. 어린 자녀를 홀로 유학 보낼 경우 부모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과도하게 주어지는 자유로 인한 일탈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아내와 아이를 함께 떠나보내는 것을 가족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맞벌이가 점차 보편화되고 직장의 소재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양 배우자의 직장 위치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아내가 남편의 직장 소재지에 동반 거주하기 위해 자신의 경제활동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홀벌이 가족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 그래서 맞벌이를 유지하기 위해 분거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도 학령기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가족이 성장기 자녀들을 전학시키면서까지 가장의 직장 소재지로 함께 이동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남편 홀로 직장 소재지로 떠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 대행자를 고용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서도 홑벌이 가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어린 자녀를 멀리 사는 노부모에게 맡겨 키우게 하면서 자신들은 주말이나 매월 한두 번 자녀를 만나러 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한편 미혼 성인 자녀의 결정으로 인한 분거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1인가구를 이루는 것이다.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동거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였으나 만혼晩婚 및 비혼非婚 경향이 나타나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1인가구로 살아가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긴 세월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독립시킨 나이 든 부부가 각자 독립적 삶을 살아가기로 합의하는 졸혼卒婚의 등장이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로,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양 배우자가 각자 독립된 존재로서의 개별성을 찾고자 분거하는 것이다. 졸혼 과정에서의 이성관계라든가 졸혼 기간 각자의 생활비를 누가 제공하는가 등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양 배우자가 미리 합의하고 공정증서화해 두면 졸혼을 시작할 당시엔 예기치 않았던 갈등이 추후에 발생할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어떤 이유로 분거를 선택하였든 분거는 선택 당시에 목표로 삼았던 것 이외의 장점도 있다. 즉 분거를 택함으로써 1인가구를 이루는 쪽으로서는 일상적인 시간 사용에서 동거에 비해 자유롭기 때문에 직업적인 성취감에 몰두할 수 있고, 여가 결정도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매일이 아니라 가끔 만나는 가족들과의 재회가 기다려지고, 새로운 기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가족의 소중함과 그리움에 대해 깨달아서 함께 사는 동안 잊고 지냈던 애

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자주 한다면 분거 기간은 서로를 위한 긍정적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분거로 인한 단점은 장점에 비해 훨씬 많고 다양하다. 첫째, 둘 이상의 가구를 운영하기 위한 지출과 경제적 손실 규모가 만만치 않다. 둘째, 상호의존하면서 상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부부에 비해 아내 혹은 남편과 분거하면서 나머지 가족들과의 생활을 홀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배우자가 감당하는 부담이 절대 가볍지 않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멀리 있고 어린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분거 가구의 경우 해당 배우자는 가사 및 자녀교육과 일상적 결정들을 홀로 행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 반면 홀로 1인가구를 이루고 살아가는 쪽 배우자는 가족들로부터 자신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기 쉽고, 의식주 등의 일상생활이 불규칙적이어서 건강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셋째, 중장년층 부부가 장기간 분거하는 경우 각자는 성생활 욕구 및 정서적 지원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일탈 가능성이 높고, 상대편 배우자의 외도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또한 혼외의 성과 혼외 상대에 대한 정서적 의존은 상호 연관되면서 멀리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일탈이 배우자에게 알려질 경우 가족 해체로 이어지기 쉽다.

넷째,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 활동을 할 기회가 적으므로 가족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분거가족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지내는 기간이 길면 각자는 상대방의 부재에 익숙해지고 독립적 생활의 편리함에 취하게 되어 오랜만에 만나는 배우자의 존재가 오히려 성가시게 느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아내와 어린 자녀를 해외로 보낸 가장은 자녀의 성장기를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결정 역시 아내에게 일임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부양을 위한 고군분투에도 자녀의 마음속에 아버지 자리를 잃어버린 채 남은 세월 내내 가족들과 서먹한 관계로 남기 쉽다.

군복무나 수감생활 혹은 장기적인 시설수용 등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분거는 가족이 목표를 갖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친밀성을 나누고 함께 시간과 활동을 공유하며 애정을 교환함에 분거로 인한 어려움을 상쇄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분거의 여러 가지 단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다만 오늘날의 교통수단과 정보화 첨단 기술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구성원들끼리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를 통해 분거 중에도 가능한 한 자주 접촉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애정을 충분히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가능한 한 분거 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징 및 의의 분거가족의 증가 및 분거 이유의 다양화는 한국인의 가족에 대한 생각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날 분거는 가족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분거가족의 취약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별 가족의 노력과 더불어 분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노력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2018년 사회조사보고서(통계청, 2018), 21세기 한국가족과 문화(이여봉, 박영사, 2022),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한경혜, 한국의 사회동향 2009, 통계개발원, 2009), 탈근대의 가족들(이여봉, 양서원, 2006).

필자 이여봉(李麗峰)

분재기
分財記

정의 전통시대에 재산을 분배하면서 그 배경과 구체적인 내역을 적고 소유주·증인·문서 작성자 등의 서명을 명시하여 법적·사회적 실효성을 나타낸 문서.

내용 '분재기分財記'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기록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의 전통시대에 존재했던 문서 가운데 '분재기'라고 기재된 문서는 드물다. 해당 문서의 특성에 따라 '분급명문分給明文' '도허여都許與' '허여성문許與成文' '분깃기[分衿記]' '화회성문和會成文' '허급문許給文' '별급성문別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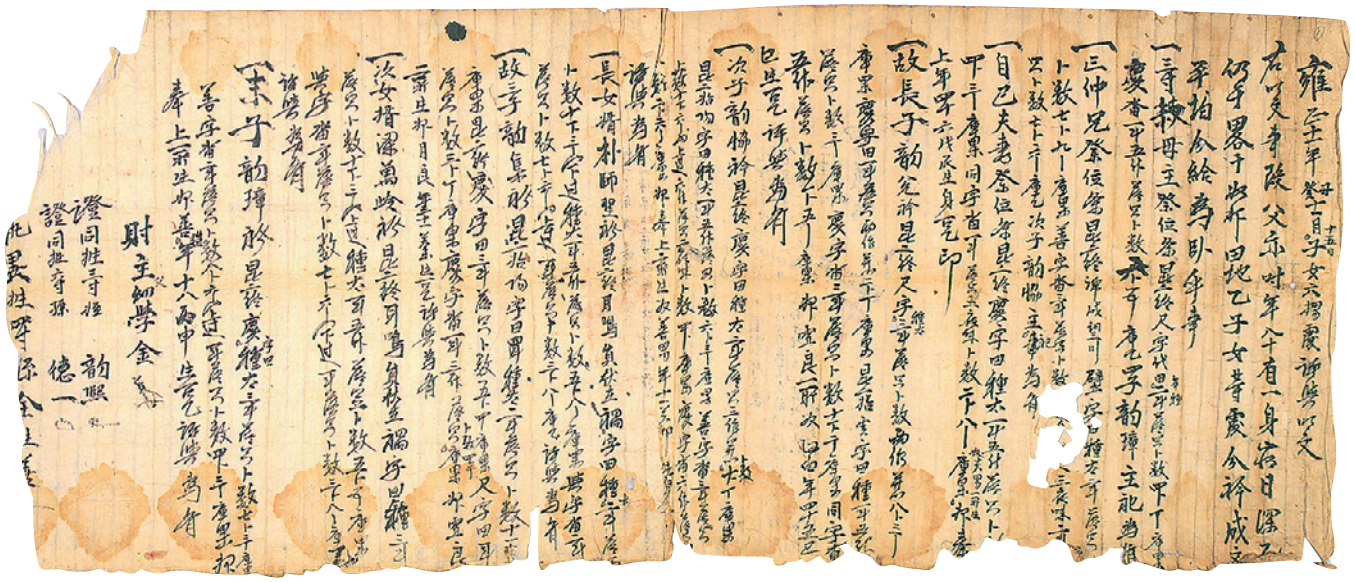

분재기 | 가로97 세로41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장자, 차자, 장녀의 사위 고삼자, 차녀의 사위 말자 등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내용을 기록한 분재기.

成文' 등 다양한 표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분재기'는 전통시대에 작성된 재산 분배와 관련된 제반 문서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분재기는 약 600여 점 내외로 추정되고, 작성 시기는 고려 말기인 1354년(공민왕 3)에 해남윤씨海南尹氏 윤광전尹光琠이 아들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부터 조선 후기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문서의 서식은 일반적으로 문서작성 일자를 첫머리에 적은 다음 이어서 분재 사유, 구체적인 분재물의 내역 명시, 당부의 말, 재주·증인·작성자의 이름과 서명(또는 인장) 등이 기재되었다.

분재라는 행위의 중심에는 재산과 이를 행하는 주체인 '재주財主', 곧 재산의 소유권자가 있다. 전통시대에도 재산의 상속 또는 분배를 하는 주체는 그 소유권자인 재주였다. 따라서 분재 행위는 재주가 살아있을 때 분재를 하였는지 사후에 법적 승계권자가 분재를 행하였는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재주 생존 당시에도 재산 전체를 분재대상자들에게 나눠주는 경우와 특별한 상황에 따라 재산의 일부분만 나눠주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 재산을 한꺼번에 분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허여' '분급' '분깃'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고, 특정인에게 재산의 일부만 분재하는 경우에는 '별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분재는 대부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별급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조카의 과거시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분재한 경우나 고모가 친정 조카를 위해 분재하는 경우 등 부모·자식 관계를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전에 자식들에게 분재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의 상이 모두 지난 후에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합의하여 분재를 하였다. 이것을 '화회和會'라고 지칭하였다.

분재기에 기재된 분재물들은 가옥, 토지, 노비가 일반적이었고, 가재도구나 물품들이 포함된 경우도 간혹 있었다. 가옥은 그 형태나 칸수 등을, 토지는 소재지와 면적을, 노비는 이름과 나이를 명확히 적어 두었다. 이는 분재기 자체가 하나의 증빙문서로서 효력을 띠어서, 기술의 구체성을 담아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주 사후에 분재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경우 분재기는 매우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었다. 그래서 때때로 소송에서 분재기의 진위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분재기 가운데는 전통시대 관청의 공증문서인 입안立案 문서가 분재기와 함께 풀로 연이어진 사례가 많은 편인데, 이는 곧 후일에 있을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분재 당시에 참여한 재주, 증인, 작성자 등의 사실 진술과 분재기를 관청에 제출하여 해당 사실에 대한 공증문서인 입안을 미리 발급

받아 놓았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분재기는 전통시대 재산의 규모와 상속의 실상 등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분재기가 작성될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특히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전승되었는지에 대한 시기별 변화상을 확인할 수도 있다. 분재기에 표기된 '부변父邊' '모변母邊' '처변妻邊' 등의 표기는 재산의 소종래所從來를 명확히 밝혀 놓은 것으로서 재산이 아버지 계통, 어머니 계통, 처가 계통 등 어디로부터 얼마만큼 유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명시해 놓았다. 고려 말과 조선 전기에 아들·딸에게 균등하게 시행되었던 균분상속으로부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차츰 가계를 승계하는 아들 위주, 제사를 받드는 장자우대 상속 등으로 분재 양태가 변화한 모습 또한 분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참고문헌 大典會通,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조선시대의 상속제에 관한 연구(최재석, 역사학보53·54, 역사학회, 1972), 조선왕조시대의 재산상속(이광규, 한국학보2-2, 일지사, 1976),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필자 전경목(全炅穆)

불천위
不遷位

정의 덕망德望이 높고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인물을 영원히 사당祠堂에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위神位.

내용 부조묘不祧廟는 중국의 한대漢代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고려 중엽 이후 사당을 짓게 되면서부터이다. 불천위不遷位가 된 신주는 처음에 묘역墓域 밑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종가 근처에 사당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부조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불천위의 천거는 문묘 종사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성균관 문묘에 배향된 조선의 오현五賢, 즉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1454~1504),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1450~1504),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1482~1519),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1491~1553),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에 대한 추천은 전국 사림과 성균관 생원, 조정 관리들의 상소로 시작되었다. 이들의 문묘 배향은 중종中宗, 선조宣祖, 광해군光海君 때 세 차례나 요청되었지만 조선의 유현이 중국 유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천 년 동안 끊어진 유학의 학통을 조선에서 계승하고 후학에게 길을 열어 놓은 점에서 중국의 학자나 조선의 학자의 공로가 동일하고, 송나라에 6현이 있듯이 조선에도 5현이 있으니 조선이 이제 자주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조선의 5현도 불천위로 받들어졌다.

1547년(명종 2)에 이르러 시조(시봉지군始封之君)를 불천위로 모시고 4대를 봉사하는 5감실의 원묘제가 수용되었다. 또한, 조선 중기부터 정계나 학계에 활약하던 인물들은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후대에 중시조가 되어 사당의 불천위로 배향을 받는다. 이 불천위가 전국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수의 종가에 해당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발전시켜 조선의 독자적 유학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인 시조를 제사의 대상으로서 숭배하는 것이다. 즉, 주로 불천위 인물을 통해서 조선 성리학의 발전과 한국적 생활문화를 실천하는 학통을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7세기 이후 일반화되는데 실천유학은 주로 예서의 저술을 통한 불천위 조상과 혈연적 자손의 맥락을 잇는 전승문화 작업이 되었다.

불천위가 사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사화나 전쟁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인물의 됨됨이가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불천위가 세도정치에 의해 확산된 점도 있다. 해당 인물이 사망한 지 2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불천위가 된 점을 볼 때, 이는 어느 정도 타당한 설명이다.

불천위는 학덕·충절의 공적이 있고, 성인의 삶을 실천한 군자상을 대개 사망 직후 또는 체천遞遷 과정에서 조정에서 시호諡號를 내리고 후손들이 영구히 제사를 모시도록 한 것이다. 불천위가 결정되면 때로 임금이 직접 제관을 보내 장례를 치르게 하거나, 예조에서 제관을 보내 제사를 지낼 전답과 제구 및 제물 혹은 영정을 교지로 하사하였다. 또한, 선조와 후손에게 벼슬을

주기도 하였다. 이에 후손들은 불천위 선조를 위한 별묘를 세우기도 하였다.

이렇듯 불천위는 국가에서 조정의 논의나 임금의 명으로 예조의 심의를 거쳐 국(국천, 국가)불천위로 결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는 성균관과 향교 문묘에 종사된 불천위 인물들을 보면 서원에 먼저 배향되고 나중에 문묘에 종사되었다. 17세기 이후 점차 지역 유림에서 학행과 덕망을 지닌 향촌의 인물도 불천위로 승인해 줄 것을 상소하였다. 조선 말기에는 지역 유림들이 자체적으로 불천위를 정하는 향(향천, 향촌, 유림)불천위란 말이 나타났다.

조선의 폐망으로 조정에서 논의 중이거나 유림에서 천거 중이던 후차 인물들은 불천위로서의 영예를 입을 수 없었다. 한편, 조선 말기에서 한말로 이어져 오면서 사림이나 문중에서 사사로이 불천위로 추대하는 폐단(사불천위, 문중불천위)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나타났다. 일부 문중에서는 전통사회에도 불천위로 가는 길을 공론으로 모으고 있었다. 향불천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연구가 거의 없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불천위의 인물을 구별해 보면 국가의 승인, 서원의 경우 사액, 유림의 지지도 등 봉안 인물의 유명세가 서원과 사우의 격을 말해주는 것과 상응할 때가 많다.

지역사례 전국에서 불천위가 가장 많은 경상북도 안동 지역의 경우를 볼 때 국불천위 못지않게 향불천위도 다수이다. 향불천위는 지역 인물을 문중과 서원이나 향교 유림의 공론을 거쳐 국가에 상소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불천위 배향 인물의 사례를 집계해 보면, 배향의 주요 사유는 충절, 공적, 의병활동, 국가 명신, 실천유학, 민생부귀 실천, 효행, 덕행, 유명 유학자 배출과 후진양성 등이다. 불천위자는 이런 행적을 반복해서 수행하여, 문중은 물론 유림과 전국에 사표가 된 인물이다. 즉, 이들의 업적은 학행과 덕망, 충절로 요약된다. 이들은 대부분 생존했을 때에 실직實職으로 정이품 이상의 관직을 받은 경우보다 사망 후에 추증追贈에 의한 증직으로 불천위 인물이 된 경우이다.

한편, 불천위가 된 인물의 시대를 살펴보면 특정 인물과 세대를 이어 공생한 당대, 학통을 이은 사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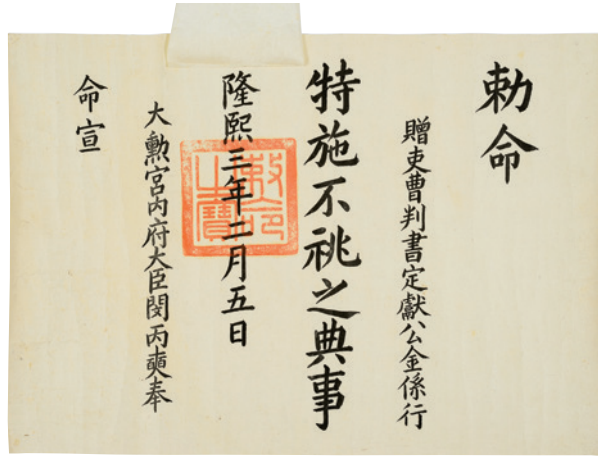
勅命
贈吏曹判書定獻公金係行
特施不祧之典事
隆熙三年三月五日
大勲宮內府大臣閔丙奭奉
命宣

불천위 칙명 | 안동 김씨 보백당 김계행 종가 | 한국국학진흥원
1909년 증 이조판서 김계행을 불천위로 한다는 문서.

한 씨족의 4대조 인물, 서원활동이 잦은 소지역의 지연적 연결권, 안동을 거점지로 향촌사회에 친인척관계, 선조의 가업계승 인물들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유학의 융성기, 외침의 변란기, 당쟁과 사화 등 왕조의 혼란기, 경제적 궁핍기 등 난세에 불천위 배출이 많이 생성되었다.

안동 지역은 불천위 인물로 인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명문 씨족집단이 세거하고 있는 편이다. 불천위 묘우廟宇가 있는 집이면 떳떳하게 종가의 지칭을 받는 '불천위 종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어서 불천위가 가장 많이 배출된 곳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불천위 인물을 원위元位로 하는 '10대성종十代成宗'이란 종가의 원리를 입증해 주어 조선의 종법체계를 자리 잡게 한 점도 있다. 이 불천위들은 거의 모두가 한 곳 이상의 서원에 배향되어 있어 서원이 집성해 있는 곳임은 말할 것도 없다. 말하자면, 불천위로 인한 후학계승으로 조선 유학의 집성지이며, 유학의 고장이 되었다.

결국 전국 14개 성씨와 안동의 50여 불천위 종가가 있는 곳은 불천위로 배향을 받은 인물이며 불천위 종가에서는 그 인물의 기일에 제사를 행하고 있고 지역권에 이 인물이 배향된 서원이 반드시 한 개 이상 있다. 불천위 종가의 종손과 종부는 불천위의 가업을 영예로 알고 계승해 나가며, 후손들은 현조의 덕업을 자긍심으로 여겨 불천위제사뿐만 아니라 서원의 향사, 묘우의 묘제 등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불천위 종가에서는 아직도 집안의 길흉 대소사를 일일이 사당에 고유하며, 방문 손님의 그 지체에 따라

알묘하는 일이며, 심의를 입고 조석, 초하루, 보름에 알묘, 계절의 첫 수확을 천신하는 가장의 태도는 살아 있는 부조에게 대소사를 보고하고, 조석으로 인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되고 있는 증좌라 하겠다.

또 아들이 태어났거나 며느리를 얻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등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사당에 인사드린다. 주인이 먼 길로 출타하거나 돌아왔을 때, 혼인, 출산 등 집안에 큰일이 생겼을 때도 고유한다.

특징 및 의의 불천위의 현조는 조선사회에서 유학의 실천적 삶과 덕망을 통해 헤게모니를 장악한 영웅적 인물로 등장한다. 불천위 종가에서 파생한 사대봉사의 당내 조직은 불천위 종가의 사대봉사를 둘러싼 모든 연결망에 포용되어 있다. 불천위 종가는 상징적 사대봉사의 큰집으로 남아 있고, 불천위의 후손은 범당내친을 포용하여 모든 후손이 '동고조 팔촌'이라는 상징적 혈연관계를 형성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불천위는 종가의 확립과 더불어, 혈연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생물학적 친족관계에 지연적 관계까지 모두 포용한 통합적 씨족집단으로서의 한민족 집단을 형성하려고 하였는지도 모른다. 불천위로부터 부여받는 불천위제사와 같은 의례행위로 인하여, 불천위 후손은 전통사회에서 다양한 지연적·혈연적·학문적·정치적·경제적 생활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문화집단의 발원지 역할을 해 왔다.

한 예로, 불천위 종가의 종손과 종부가 사망하면 그 후손들은 누구나 재최 3월복으로 두건을 쓰는 자격을 입는 종복제宗服制를 따른다. 이 원리는 당내의 동고조 팔촌과 사대봉사의 계열에 근거한 것이다. 즉, 대수가 10대가 지나고 촌수가 30촌이 되어도 항상 팔촌으로 인정하는 불천위 종가의 상징적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도 각 종가의 불천위는 사당에 신주의 형태로 남아 있다. 다른 4대위는 일제강점기나 6·25전쟁 등 피란으로 조매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불천위만 거의 피신한 것으로 보여 그 맥이 유지되고 있다.

참고문헌 常燮通攷, 朱文公家禮, 안동의 제사(안동민속박물관, 2001), 한국의 명문 종가(이순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향촌의 유교의례와 문화(권삼문·김영순, 민속원, 2003).

필자 김영순(金永順)

불천위제사
不遷位祭祀

정의 4대를 넘긴 신주神主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에 영구히 모시면서 지내는 제사.

역사 『예기禮記』「대전大傳」에 따르면 "백세百世가 지나도록 옮기지 않는 종宗이 있고, 5세를 넘기면 옮기는 종이 있다. 백세가 지나도 옮기지 않는 종은 별자別子의 후손(적장자)이니, 별자를 잇는 자의 시조를 종으로 하는 자는 백세토록 옮기지 않는다. 그러나 고조를 잇는 자를 종으로 하는 자는 5세가 되면 옮기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른바 별자종법別子宗法이다. 별자란 중국 주周나라 시대 제후의 차남 이하 아들을 말한다. 즉, 제후의 장남은 제후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고 차남 이하의 아들들은 별자가 되어 독립적인 종을 세웠는데, 이때 별자는 '백세불천百世不遷'의 자격을 부여받아 자손대대로 대종大宗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한편, 별자의 차남 이하 아들들은 소종小宗의 시조가 되는데, 이때 오세즉천五世則遷의 원칙에 의해 5세를 넘기면 조상제사祖上祭祀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대봉사四代奉祀 원칙이다.

이처럼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는 백세불천百世不遷의 자격을 부여받은 신위를 대상으로 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초기에는 공신功臣을 대상으로 자격이 부여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처음으로 공신이 된 자는 제향 대수代數가 지나더라도 불천위로 삼아 따로 일실一室을 세워 계속 봉사奉祀한다."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예기』「대전大傳」에 "별자가 아니더라도 최초로 봉작封爵된 자도 시조가 된다."라고 했으며, 『백호통白虎通』에서도 "제후의 별자가 아니더라도 공功이나 덕德에 의해 대부가 된 사람은 백세불천의 제사를 받는 대종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는 대종의 지파支派인 소파小派에서도 새로이 봉작된 현조顯祖가 있으면, 따로 시조로 삼아 새로운 종宗을 수립하여 종가를 창출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불천위제사는 종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독특한 의례문화라고 할 수 있다.

내용 『가례家禮』에 따르면 사당[家廟]에는 4대조까지의

신주만 모시고, 친진親盡을 다한 5대조의 신주는 조매祧埋를 하거나 최장방最長房에게 체천遞遷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주祭主의 5대조가 되는 인물이 생전에 큰 공훈이 있거나 학덕學德이 높으면 친진을 했다 하더라도 사당에 영구히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불천위제사'라고 한다. 이때 매년 기일에 제사를 받는 신주를 '불천위不遷位' '불천지위不遷之位' '부조위不祧位'라고 하며, 불천위제사는 '불천위대제不遷位大祭' '불천위기사不遷位忌祀'라고 한다.

불천위 조상은 봉안 공간에서도 각별한 대우를 받는데, 우선 4대 조상과 달리 독립된 별묘에 안치된다. 만약 별묘를 세울 형편이 되지 않으면 가묘에 함께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에도 불천위 조상을 우대한다. 즉, '이서위상以西爲上'의 관념에 입각하여 가장 우위로 인식되는 서쪽에 감실龕室을 추가로 마련하여 불천위를 봉안하는 것이다. 심지어 감실이 네 개일 경우에도 가장 서쪽에 불천위 조상을 모시고, 이어 고조·증조·조부를 모신 다음 아버지의 신주는 조부가 자리한 감실(동쪽 끝) 앞에 서향으로 별도의 탁자를 마련하여 안치하는 경우도 있다. 행례行禮를 통해서도 불천위 조상에 대한 우대 경향을 볼 수 있는데, 4대 조상의 기제사와 달리 불천위제례는 '대제大祭'로 불리면서 각별히 인식되며 참제자의 범위도 무척 넓다. 직계손은 물론이고, 방계손과 외손 그리고 불천위 인물과의 학연學緣 등에 의해 인연을 맺어온 다른 가문의 후손들까지도 참여한다.

불천위제사는 엄밀히 말해 기제사의 일종이다. 그러나 타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일반 기제사보다 더욱 엄격하고 성대하게 거행된다. 우선 제관祭官 선정이 중요했다. 불천위제사는 참여자가 많은 만큼 집사분정執事分定의 절차를 거쳐서 제관을 선정한다. 초헌관과 아헌관은 집안의 주인(종손)과 주부(종부)가 수행하지만, 종헌관과 축관, 집사자 등은 천거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개 제사 당일 저녁에 종가로 모인다. 이들은 도유사의 책임하에 작성되는 시도록時到錄에 이름을 올리는데, 여기에 적힌 명단을 중심으로 집사를 선정한다. 집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초헌관·아헌관·종헌관·축관·찬자贊者 다섯 사람을 '5집사'라고 부른다.

출주고사

집사분정

개독

독축

불천위제사 | 농암 이현보 종가 | 경북 안동 | 2003 | 국립민속박물관

불천위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제물의 웅장함에 있다. 일반 기제사에 비해 다양한 제물이 차려지며 고임 제물 역시 높게 쌓는 편이다. 그중에서도 차별화되는 것은 탕湯과 생육生肉이다. 탕의 경우 일반 기제사에서는 3탕이나 단탕單湯이 보편적이지만, 불천위제사에서는 5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류는 육탕肉湯·어탕魚湯·소탕素湯·계탕鷄湯·조개탕[蛤子湯] 등이 있다. 이처럼 일반 기제사와 달리 불천위제사에서 5탕을 올리는 것은 불천위 조상에 대한 위대성을 공식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사실 탕은 『가례』와 『사례편람四禮便覽』을 비롯한 예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제물이다. 다만, 『국조오례의』「속제俗祭」와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제의초祭儀抄」에는 탕이 그려져 있다. 이의조李宜朝의 『가례증해家禮增解』에 "『가례』에서 어육魚肉을 말했는데 이것이 탕인지 고깃덩어리[胾]인지 짐작할 길이 없다. 어육을 탕으로 만들어 올렸는지 생生으로 올렸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추측하건대 어육은 반드시 탕으로 할 필요가 없다. 삶은 후에 건져서 제기에 담아 올려도 무방하다. 또한, 옛날에는 고깃국을 탕으로 부른 적도 없었다. 『예기』「교특생郊特牲」에서 행하는 삼헌섬三獻燂이란 고기를 탕에 넣어 데친 후에 완전히 익히지 않은 상태로 꺼내서 헌작 때마다 올리는 절차이다. 또 『가례의절家禮儀節』「혼례昏禮」에 '탕湯'과 '반飯'이라는 글자가 나타나지만, '국[羹]'을 탕이라고 하여 반飯과 짝 지우는 것은 후세에 생겨난 풍습이다. 고례에서는 태갱太羹(고깃국)·형갱鉶羹(고기와 나물을 넣은 국)을 서직黍稷과 짝지었을 뿐, 어육과 갱을 명시하는 내용은 없다. 『가례』 역시 갱을 반飯에 짝지었기 때문에 어육은 갱이 아님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불천위제사에 사용되는 생육은 도적의 형태로 차려진다. 도적이란 계적·육적·어적을 하나의 적틀[炙臺]에 쌓는 제물이다. 도적의 어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적을 모아놓는다는 의미에서 '도적都炙' '도적都積' '합적合炙'이라고도 하며, 「표준가정의례」 등에는 동물을 도살한다는 뜻에서 '도적屠炙'으로 되어 있다. 『의례儀禮』에는 생육, 곧 희생이 주된 제물로 등장하는데 "교郊에서는 희생犧牲의 피를 올리고, 대향大饗에서는 날고기[腥]를 올리고, 3헌獻의 제사에는 데친 고기[燂]를 올리고, 1헌의 제사에서는 익힌 고기[熟]를 올리는데, 이것은 지극히 공경하는 제사에는 맛으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기氣와 냄새를 귀하게 여기는 뜻이 들어 있다."라고 설명한다. 교郊는 천신에 대한 제사, 대향은 종묘대제, 사직대제, 향교와 서원 향사 등을 일컫고, 3헌이란 초헌·아헌·종헌을 갖춘 제사, 1헌은 단헌單獻으로 거행하는 제사를 뜻한다. 이러한 지침에 근거하여 종묘·향교·서원의 제사에서는 날고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예기』에 명시된 대향이란 국가적 차원의 제사를 의미하지만 이것이 사대부층의 불천위제사에 수용되었던 것이다.

한편, 『가례』의 진설도에 '적炙'이라는 제물이 있다. 『가례』에 따르면 초헌에서는 간肝, 아헌과 종헌에서는 구운 고기[炙肉]를 올린다고 되어 있다. 세 명의 헌관이 술을 드릴 때마다 각각의 적을 올리는 절차를 '진적進炙'이라고 하며, 이들 제물을 '3적' 혹은 '편적片炙'이라고 한다. 이처럼 예서에 근거하면 3적의 형태가 고례古禮에 근접해있으며, 도적은 이를 하나의 제기에 담은 제물이라 할 수 있다. 도적을 적틀[炙臺]에 쌓을 때에는 '우모린羽毛鱗'이라고 해서 하단을 기점으로 어류·육류·조류의 순서로 차리는데, 이것은 바다·육지·하늘로 구성된 우주의 질서를 뜻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도적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기호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신 기호 지역에서는 쇠고기[肉煎]·생선[魚煎]·두부[蔬煎] 등에 밀가루를 묻혀 기름에 지지는 전煎을 차리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역시 도적만큼은 아니지만 고임 방식으로 높게 쌓아 올린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도적을 진설하는 영남지역에서는 전고임 제물을 대부분 차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천위제사에서 도적의 역할은 웅장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높이가 대략 40~70㎝에 이른다. 이때 균형을 잡기 위해 가장 하단에 북어 등을 깔아둔다. 그런 다음 '꼬치[串]'에 꿴 어류와 육류를 차례로 쌓는다. 꼬치는 사리나뭇가지에 육류나 생선을 토막 내어 꿰는 음식으로 나뭇가지가 버팀목 구실을 한다. 아마도 고임의 형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식으로 짐작된다.

불천위제사는 훌륭한 조상의 덕을 기리고 혈족의 정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문중 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불천위제사를 통해 그 지역 유림이 소통함과 동시에 이 기회를 통해 유림의 현

안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능도 한다. 또한, 불천위제사는 다른 문중에게 자기 문중의 위세를 과시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현조顯祖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불천위제사는 타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까닭에 엄격한 격식과 웅장한 제물을 통해 조상의 위대함을 공식화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增解, 經國大典, 白虎通, 四禮便覽, 禮記,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제사와 제례문화(박원재 외, 한국국학진흥원, 2005),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민속원, 2012).

필자 김미영(金美榮)

비혼
非婚

정의 자발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고, 혼인하지 않은 상태.

내용 오래전 서구에서 혼인하지 않고 함께 사는 관계는 도덕적·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고, 처벌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 비혼非婚 관계가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사회는 이를 하나의 생활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오늘날 노동조건 변화, 이혼율 증가, 혼인제도 인식에 대한 복합적인 요인 작용으로 삶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비혼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동거하는 커플은 비혼생활공동체라고 한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56.4%, 자녀 출생과 관련하여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30.3%에 달하였다. 한편 실질적으로 한국은 혼인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이다(2017년 1.9%, 유럽 평균 39.6%).

비혼이지만 함께 사는 커플은 혼인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이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혼事實婚이나 동거 커플도 비혼공동체에 속한다. 비혼 관계도 그들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혼인과 동일한 생활 관계 효과가 발생한다. 동거 커플의 경우 그들의 관계가 복잡한 재정적 장기 상황에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책임 분담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동거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동거 커플이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실상 동거 커플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동생활을 유지할 경우 이들 관계는 '혼인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동거 관계에 대하여 최소한의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팍스PACS제도는 혼인과 동거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혼인에 대한 중압감과 부담을 느끼는 커플에게 좋은 예시가 되고 있다. 이 제도는 혼인은 거부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좁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사회·정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혼 관계에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혼인외의 자'(또는 혼인외자, 혼외자)가 된다.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미·비혼모가 하여야 하고(〈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자녀는 미·비혼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민법〉 제781조 제3항).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모母이지만 부父가 자녀와 친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인지하여야 한다(〈민법〉 제859조,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 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인지强制認知도 가능하다(〈민법〉 제863조). 부의 인지 후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발생한다. 이에 미·비혼모가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 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는 양육비지급의무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다.

특징 및 의의 혼인은 일반적으로 법률혼法律婚을 의미하므로 혼인하지 않은 모든 상태를 비혼이라고 한다. 동거와 사실혼은 모두 비혼공동체이다. 또한 개인의 경우 미혼未婚, 독신獨身, 싱글single은 모두 비혼 상태이다. 미혼이 '혼인은 하여야 하는 것이나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면 비혼은 '혼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오늘날 혼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비혼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혼주의는 혼인할 의사가 현재 그리고 장래에도 없다는 자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비혼 여성이 합법적으로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받아 자녀를 출산할 수 있으며, 혼인하지 않은 이성 및 동성 커플의 경우에도 인공출산을 통해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임부부(2019년 이후 사실혼 부부 포함)에게만 보조생식시술이 허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2018년 사회조사 보고서(통계청, 2018),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한 미혼남녀의 동거의도 예측모형 탐색(오정아·변수정, 사회과학연구30-2,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미성년 미혼모와 그 자에 대한 권리보호(조은희, 법과정책24-2,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혼인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동향(정극원, 세계헌법연구14-1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fowid(fowid.de).

필자 조은희(趙恩嬉)

빈둥지가족

정의 자녀가 모두 출가하여 부부만 남게 된 상태로, 부부 가운데 한 배우자만 남게 되는 경우도 있음.

개관 빈둥지가족이란 말은 새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다가 새끼가 모두 떠난 빈 둥지에 빗대어 자녀들이 뿔뿔이 떠난 후 부모만 집을 지키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부부가 연로하여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엔 1인가구로 남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영어권에서 빈둥지empty nest 또는 빈둥지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이라고 표현한다. 이를 번역하여 '빈둥지가족'이라는 용어가 탄생하였다.

빈둥지증후군은 주로 중년의 여성들에게 나타나며, 우울증을 동반하기에 의사들은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을 위한 대처법을 제안한다. 외국에서는 막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집을 떠나가면 살림만 전담하던 가정주부에게 우울증과 심리적인 병리 현상이 동반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고 한다. 빈둥지증후군은 일종의 허탈감·소외감·외로움이 주요 증상이고, 그대로 두면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가족 전체에도 영향을 주기에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내용 가족 형태는 주기적으로 변화하며, 그에 따르는 삶의 모습도 변모하게 된다. 가족주기는 결혼과 함께 시작된 ①가족형성기 ②가족확대기 ③가족축소기 ④가족해체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주기에 따라 가족축소기에 빈둥지가족이 생겨난다. 가족형성기는 결혼 후 신혼기를 말하며, 첫째 아기를 낳기 시작하면 가족확대기에 들어선다. 이 시기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등 가장 바쁜 시기이다. 반면 가족축소기에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교육, 취업, 결혼 등으로 독립하여 부모 곁을 떠나게 된다. 빈둥지가족은 모든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난 상태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나면 그 가족은 해체된다.

가족주기는 대체로 모든 가족에게 일어나는 과정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주기의 단계별 과정에 변화가 일고 있다.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가족형성기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아 가족확대기가 제외되는 경우, 자녀들이 빨리 독립하여 가족축소기가 빨라지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수명이 연장되면서 가족해체기까지의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빈둥지가족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말하는 지표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30년 사이 가족주기 변화상을 조사한 결과 빈둥지가족 기간이 1979년 이전에 12.05년에서 2000년 이후에는 16.7년으로 약 4년 늘어났다고 한다. 2020년 이후에는 자녀들의 결혼연령이 늦춰졌지만 교육과 취직 등으로 더 일찍 집을 떠나가고 있고, 한국인의 수명도 늘어나고 있어 빈둥지가족 기간은 더욱 길어졌다. 그러므로 오늘날 노후대책이 더욱 절실해졌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의 주요 가족주기 변화상 가운데 하나가 빈둥지가족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이 축소기에 들면서 노부부만 살거나 배우자를 잃고 노년을 홀로 보내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기간

도 길어지고 있다. 이전 세대와는 달리 오늘날 젊은이들은 부모 봉양에 대한 인식이 약해져 있어 부모를 봉양해 온 부모 세대들이 자식들로부터는 봉양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반화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한국의 빈둥지가족은 서양의 경우와는 다른 성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양에서는 중년 이후 빈둥지증후군에 대해 의학적·심리적 치료법으로 중년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심리적인 현상도 있지만 빈둥지가족 기간이 늘어나면서 노인가족의 복지 문제가 심각해진다. 유교적 가족관을 지닌 채 노후대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노후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하고, 국가에서는 시급히 노인복지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가족주기 변화와 정책제언(김유경, 보건복지포럼2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가족관계의 변화(손승영, 젠더연구10,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05).

필자 함한희(咸翰姬)

사당 외부

사당 내부

사당 | 점필재 김종직 종가 | 경북 고령 | 국립민속박물관

사당
祠堂

정의 신주나 위패를 봉안해두는 건축물.

역사 『예기禮記』「왕제王制」에서는 "천자는 칠묘七廟를 세우는데 삼소三昭, 삼목三穆과 태조의 묘를 합쳐서 칠七이 되고, 제후는 오묘를 세우는데 이소二昭, 이목二穆과 태조의 묘를 더해 오五가 되고, 대부는 삼묘를 세우는데 일소一昭, 일목一穆과 태조의 묘를 합쳐서 삼三이 된다. 사士는 일묘一廟를 세우고, 서인庶人들은 침소寢所에서 제사 지낸다."라고 했다. 이처럼 고대에는 사당祠堂이라는 용어 대신에 묘廟를 사용했는데, 오늘날의 종묘宗廟와 문묘文廟, 가묘家廟 등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후 『가례家禮』에서 '사당'이라고 칭함으로써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사당의 설치는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부터 본격화되었다. 당시 조정에서 사당 건립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이유는 사당과 신주가 유교식 상례 및 제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1401년(태종 1)부터 사당을 세울 형편이 되지 않으면 궤櫃를 마련해서라도 신주를 모시도록 했을 정도로 사당 설치와 신주 봉안을 장려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사당 건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사당이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선조대 이후부터이다. 당시 임진왜란의 후유증으로 사회질서가 크게 흔들리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유교의 종법제도를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유교식 의례체계를 대변하는 상징물로서 사당 건립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이다.

내용 『가례』에서는 "정이천程伊川 선생이 제사 지낼 때는 영影자를 쓰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으므로 영당影堂을 사당祠堂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후 『주자가례』가 보급·정착함에 따라 '사당'이라는 용

어가 보편화되었다. 『가례』의 첫 장인 「통례通禮」는 '사당祠堂'과 '심의제도深衣制度' 그리고 '거가잡의居家雜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관혼상제례와 달리 평상시 집에서 매일 행해지는 일상적인 예禮에 해당한다. 주희朱熹는 사당을 가장 첫머리에 놓은 까닭을 "이 장은 본래 「제례祭禮」에 있어야 한다. 지금 보본반시報本反始하는 마음과 존조경종尊祖敬宗하는 뜻을 집안의 명분을 지키는 데 두는 것은 개업전세開業前世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한 집안이 유지되는 근본은 개업전세(가문을 영구히 이어나가는 일)에 있는데 이를 지속시킬 방법은 사당에 있다는 뜻이다. 즉, 조상들의 신주가 모셔져 있고 조상제사는 물론 관·혼·상례가 이루어지는 중심 공간인 사당을 가장 첫머리에 배치함으로써 사당이 가례 행위의 중심이자 출발점이 되도록 했던 것이다.

『가례』에 따르면 "군자가 장차 집을 지을 때는 가장 먼저 사당을 정침의 동쪽에 세운다."라고 했다. 이를 『예기집설禮記集說』에서는 "오른쪽[西]은 음으로 지도地道가 존숭하는 곳이다. 왼쪽[東]은 양이므로 인도人道가 향하는 곳이다. 인도가 향하는 곳에 종묘를 세우는 것은 또한 그 어버이를 죽지 않았다고 여기는 뜻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침의 동북쪽·서북쪽·북쪽의 높은 장소에 사당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형 차이에 따른 결과이다. 산악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배산임수형의 가옥배치구조를 취하는 반면, 중국에는 넓은 평원이 많으므로 산을 등질 수 있는 배산임수의 가옥배치가 흔하지 않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평지에 가옥을 세우다 보니 정침과 사당의 고도高度가 아니라 방향[坐向]을 중시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침의 뒤쪽 언덕이 아니라 좌우의 평지에 사당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마을 입지가 배산임수형에 속하며, 특히 반가班家의 경우 주산의 능선이 끝나는 지점을 길지吉地로 간주하여 가옥을 세움으로써 자연히 산을 등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지대의 높이와 위상의 높이를 동일시하는 관념이 생겨났으며, 더욱 높은 곳에 조상을 모시기 위해 정침의 뒤편 언덕에 사당을 세우는 관행이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당은 세 칸 규모로 세워진다. 사당의 향배向背는 앞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뒤를 북쪽으로 배치한다. 만약 집터가 좁으면 한 칸으로 세우더라도 무방하다. 사당의 내부 바닥에는 나무판자로 마루를 깔고 그 위에 자리를 펴둔다. 또 중간 도리 밑에 문을 만들어 '중문中門'이라 하고, 칸마다 네 문짝을 달아 '분합문分閤門'이라 한다. 분합문 밖에는 섬돌을 두 개 놓아 동쪽을 '조계祚階', 서쪽을 '서계西階'라고 한다. 조계는 주인만이 오르내릴 수 있으며 그 외 사람들은 서계를 이용한다. 사당 주변으로는 담을 쌓아 앞쪽에 외문外門을 낸다. 외문은 사당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사당의 중문과 마주 보게 된다. 외문의 동쪽과 서쪽은 담과 이어지도록 한다.

사당 내부에는 신주를 봉안해둔 감실을 마련하는데, 『가례』에 "사당 안의 북쪽 가까이에 감실당[龕堂] 하나를 길게 만들고, 이를 널빤지로 막아서 네 개의 감실당을 만든다. 감실당마다 안에 탁자 하나를 놓고 가장 서쪽으로부터 고조, 증조, 조부, 아버지의 신주 순으로 한다. 신주는 모두 독櫝 속에 보관하여 탁자 위에 놓고 남향한다. 각각의 감실당 바깥에 작은 발을 드리우고, 발 바깥에는 향탁을 당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그 위에 향로와 향합을 놓는다."라고 했다. 사당에서 서쪽을 우위로 삼는 것은 사후세계에 적용되는 방위 관념 때문이다. 즉, 해와 달이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양계陽界에서는 동쪽이 우위가 되고 해와 달이 서쪽으로 가라앉으므로 음계陰界가 되어 서쪽을 중시하는데, 살아 있는 사람은 양陽에 속하므로 왼쪽[東]을 숭상하고 귀신은 음陰이므로 오른쪽[西]을 숭상한다는 논리이다. 한편, 고대 중국의 사당은 일세일묘一世一廟의 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때 중앙에 위치한 시조를 중심으로 신주들은 동쪽의 소昭와 서쪽의 목穆으로 갈라진다. 그런 다음 부소자목父昭子穆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의 열에는 조부모와 고조부모, 목의 열에는 부모와 증조부모의 신주가 각각 놓이는 것이다. 그러다가 후한後漢 이래 동당이실同堂異室, 곧 같은 사당 내에서 일세一世가 일실을 차지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전승하는 사당 내부의 형태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당 내부의 북쪽 벽면에 교의를 각각 세우고 그 위에 신주를 모신 독을 놓는 형태, 둘째는 북쪽 벽면에 선반을 설치하여 그 위에 신주를

사대봉사
四代奉祀

정의 유교식 제사에서 부모·조부·증조부·고조부까지 4대에 이르는 조상들의 제사를 받드는 일.

내용 사대봉사四代奉祀는 유교식 제사에서 부모로부터 고조부까지 4대에 이르는 조상들의 제사를 받드는 것을 말한다. 고려 말기 우리나라에 처음 유교식 제사가 도입되었을 때는 사대봉사가 아닌 차등봉사제였다. 봉사奉祀에 차등을 준 것은 중국의 종법제도宗法制度에 기반을 둔 것이다. 종법은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구분하여 대종은 제사를 무한히 지속하고, 소종은 4대조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주나라는 봉건제와 함께 『예기禮記』「왕제王制」에서 시조를 제외하고 천자天子는 6대조까지, 제후諸侯는 4대조인 고조까지, 대부大夫는 조고祖考까지, 선비와 서인은 고비考妣만을 봉사하게 했다.

주나라의 붕괴와 함께 종법제도는 사라졌지만, 차등봉사와 적정자嫡長子 중심의 원리는 송나라의 종법인 사대봉사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북송대 사마광司馬光의 『서의書儀』에는 삼대봉사三代奉祀의 기록만 있는데, 정이程伊는 신분과 관계없이 복服을 입는 것이 고조이기 때문에 사대봉사를 주장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주자가례朱子家禮』는 신분과 관계없이 사대봉사를 하도록 했다.

『주자가례』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이전인 고려 말기 1390년(공양왕 2)에는 차등봉사를 규정한 법령에서 대부 이상은 3대, 6품 이상은 2대, 7품 이하 서

사당에 모셔져 있는 사대조 주독(양창독) | 월성 손동만 종가 | 경북 경주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봉안한 독을 놓는 형태, 셋째는 조상마다 각각의 벽감壁龕을 만들어 그 안에 신주를 모신 독을 놓는 형태 등이다. 또 불천위不遷位 신주를 모시고 있는 경우 별묘別廟를 세울 여건이 되지 않으면 가장 서쪽에 감실을 추가하여 사대조상들과 함께 봉안하는 형태도 흔히 나타난다. 사당에 모신 조상의 신주는 사대봉사 원칙에 의해 주제자主祭者로부터 4대를 넘기면 사당을 벗어나 조매祧埋를 한다. 그런 다음 서쪽으로 한 칸씩 나머지 조상들의 자리를 옮기고 동쪽 끝의 감실에 새로운 신주(망자의 신주)를 봉안한다.

사당에는 조상들의 신주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자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예를 차리는 생활을 지속해야 한다. 사당과 관련된 의례에는 신알례晨謁禮·출입례出入禮·참례參禮·천신례薦新禮·고유례告由禮 등이 있다. 신알례는 주인이 새벽에 일어나 사당을 참배하는 것을 말한다. 출입례는 바깥출입할 때 사당에 아뢰는 의례이다. 집 밖 가까운 곳에 나갈 때와 돌아왔을 때의 첨례瞻禮, 집 밖에서 하룻밤 묵기 위해 길을 나설 때와 돌아왔을 때의 경숙례經宿禮, 10일 이상 숙박을 하기 위해 떠날 때와 돌아왔을 때의 경순례經旬禮, 한 달 이상 집을 비우기 위해 떠날 때와 돌아왔을 때의 경월례經月禮 등이 있다. 참례는 정조正朝·동지·초하루·보름에 각각 지내는 제사이며, 천신례는 청명·한식·중양 등에 절식節食을 올리는 제사이다. 고유례는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당에 고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 『가례』에 "홍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나 도둑이 들었을 때는 가장 먼저 사당을 구한다. 신주와 유서遺書, 제기를 옮긴 후에 집안 재물을 옮긴다."고 했다. 이처럼 사당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조상을 존중하는 관념에서 비롯되었다.

특징 및 의의 사당은 신주나 위패를 봉안해두는 건축물을 통칭하는 용어이지만, 일반적으로 가묘家廟를 일컫는다. 또 조상의 신주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장 경건한 장소로 인식되며, 이로 인해 출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家禮, 禮記, 禮記集說,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미영(金美榮)

인은 부모만을 모시도록 했다. 이는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이어져 『경제육전經濟六典』「예전禮典」 가묘봉사조家廟奉祀條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그러나 차등봉사제에 대한 논란은 고려 말기부터 시작되어 1427년(세종 9) 다시 한 번 논의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박연朴堧(1378~1458)이 『주자가례』에 따라 사대부는 4대조까지 봉사할 것을 상소한 것에서 시작하여 신분과 관계없이 복을 입는 4대조까지 봉사를 하자는 주장과 제복의 차등은 물론 국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신분과 관품에 따라 봉사 대수代數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당시 4품 이상의 문신 가운데 사대봉사를 찬성한 사람은 4~5인에 불과하여 성립되지 못했다.

이후 1485년에 반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6품 이상의 관원은 3대, 7품 이하 관원은 2대, 서인은 부모만을 봉사하도록 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주자가례』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국가에서 의례의 정비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삼대봉사를 준수하는 『경국대전』을 반포함으로써 국법으로 제정된 삼대봉사를 실천해왔다. 그러다가 중종대中宗代에 『주자가례』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림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대봉사가 거론되었으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중심으로 하되, 『주자가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림의 사대봉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림은 사화士禍 이후 중앙 정계에서 나와 『주자가례』를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예서禮書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1547년 이현보李賢輔(1476~1555)의 『제례祭禮』, 1577년 이이李珥(1536~1584)의 『제의초祭儀鈔』 등에는 증조曾祖를 기준으로 한 삼대봉사를 규정하고 있어 16세기 초반까지도 삼대봉사를 거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550년 이언적李彦迪(1491~1553)의 『봉선잡의奉先雜儀』에서는 국법을 어길 수 없어 삼대봉사를 원칙으로 제례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나, 일반인들이 삼대봉사를 하는 것을 금하지 않아 사실상 차등봉사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고조高祖에 대한 묘제를 권장하면서 우회적으로 사대봉사를 인정했다. 권호문權好文(1532~1587)은 유서에서 적자든 서자든 모두가 삼대봉사를 하도록 허용했다.

이황李滉(1501~1570) 역시 사대봉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했으나, 모든 사람에게 사대봉사를 요구하지 않아 국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영향을 받은 이황의 문인들은 사대봉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실천하기 시작했다. 김성일金誠一(1538~1593)은 효孝의 논리에 따라 고조의 제사를 허용하였고, 오히려 국법을 핑계로 후손들이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렇게 영남 사림들은 『주자가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대봉사를 수용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18세기 이후 『주자가례』가 서민층까지 확대·보급됨에 따라 사대봉사가 정착되었다. 1973년 〈가정의례준칙〉에는 기제사는 2대에 한하여 봉사하도록 하였다. 최근에 삼대봉사, 이대봉사二代奉祀 등 봉사의 대수를 줄이거나 조상의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는 합사合祀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전통적 관행으로 여전히 사대봉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사대봉사는 전통적으로 부모부터 고조까지 이르는 4대 조상들의 신주를 사당에 모셔두고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사당이 없는 일반 가정에서는 지방紙榜으로 대신하여 사대봉사를 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신분제에 따라 차등을 두어 봉사 대수를 달리했지만, 『주자가례』의 보급과 확산에 따라 조선 후기에는 서민층까지 사대봉사를 하게 되었다. 조상에 대한 봉사를 4대조까지 규정한 것은 생전에 만나서 '얼굴을 아는 조상', 즉 면식조상面識祖上의 최대 범위가 고조까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고조의 후손들은 유복친有服親이라 하여 초상이 나면 상복을 함께 입는 친족의 범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사대봉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최대 범위의 면식조상에 대한 효행의 연장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제사와 제례문화(한국국학진흥원, 2005),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민속원, 2012), 조선전기 사대봉사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고찰(정긍식, 법제연구11, 한국법제연구원, 1996), 주자가례(주희, 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차례와 제사(이영춘, 대원사, 1994),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배영동(裵永東)

사돈
査頓

정의 혼인한 두 남녀의 부모가 상호 간에 부르는 호칭.

개관 전통사회에서는 혼인을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인식한다. 즉, 혼인을 통한 양가의 결합은 양가를 대표하는 사돈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혼인을 일컬어 '사돈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혼인을 통해서 형성되는 사돈관계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분을 중요시하는 전통사회에서는 특정 가족이나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할 때 조상의 이력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도 중요한 평가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지체가 높은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자기 가문의 지체를 드높이려는 의욕이 강하다. 명망이 있는 가문과 통혼하여 자기 가문도 사회적으로 그와 대등한 가문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혼인연대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전통사회에서 혼인은 두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보장하는 장치로서, 또는 정치적·경제적인 공동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협동관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양가의 혼주가 되는 사돈들은 상호 긴밀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두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서로 극진히 예우하며 모든 행동이 예의범절에 어긋남이 없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한다. 그래서 사돈 관계는 매우 긴밀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관계가 된다. 정중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을 '사돈 모시듯 한다'고 표현하거나, 거북한 자리를 '사돈네 안방 같다'고 하는 것은 긴밀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사돈 관계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친한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이 혼인하게 되면 그날부터 서로 높임말을 사용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는 등 사돈으로서의 예를 깍듯하게 갖춘다. 특히 의리명분과 예학을 중시하는 성리학이 널리 보급되고 신분을 과시하는 문중조직이 발달한 조선 후기에 사돈 관계는 더욱 조심스럽고 정중한 관계로 인식되었다.

사돈 관계가 매우 조심스럽고 정중한 관계이지만, 여자가 혼인 후 남자 집에서 시집살이하는 부처제夫處制 아래에서는 며느리의 친정부모인 '며느리네 사돈'을 대하는 태도와 딸의 시댁부모인 '딸네 사돈'을 대하는 태도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딸네 사돈은 꽃방석에 앉히고, 며느리네 사돈은 가시방석에 앉힌다.'는 속담은 딸의 시집살이를 주재하는 '딸네 사돈'을 더욱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민간의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용 사돈이라는 용어는 혼인한 두 남녀의 부모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서 남자 사돈 사이에서는 서로 '사돈' 또는 '사돈어른'으로 호칭하고, 여자 사돈 사이에서는 '사돈' '사부인' '사돈마님' 등으로 부른다. 남녀 사돈 사이는 매우 조심스러운 관계여서 서로 대면할 기회가 극히 적지만, 간접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안사돈' '바깥사돈'으로 부르고, 특히 바깥사돈이 안사돈을 지칭할 때는 '사부인'이라 칭하기도 한다. 사돈의 집안을 일컬을 때는 '사돈댁'이라 하고, 사돈의 자녀를 지칭할 때는 '사돈댁 처녀' '사돈댁 막내도령'같이 '사돈댁'이라는 접두어를 사용하거나 '아들의 처제' '큰딸의 시동생'같이 혼인한 자녀를 관계 지어서 표현한다. 양가 부모 이외의 친족원들 사이, 예를 들면 혼인 당사자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사돈'을 칭하는 것은 표준어법에 맞지 않는다. 이들은 만날 기회가 거의 없거나 접촉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생활용어로서 이들 상호간의 호칭이 발달하지 않은 것이다. 근대에 들어서 양가의 교류가 증가하고 이들이 대면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서로 '사형査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돈의 부모나 부모의 사돈을 부를 때는 '사장어른'이라 한다.

사돈으로 맺어진 양가가 다시 통혼하여 사돈 관계가 중첩될 때, 이러한 관계를 '겹사돈'이라 한다. 형제가 자매를 각각의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가 겹사돈 혼인의 가장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유학자 이휘일李徽逸(1619~1672)과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1627~1704) 형제(양가로는 사촌이 되지만)가 인근 마을 무안박씨務安朴氏 집안의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여 두 집안이 대대로 돈독한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은 겹사돈 혼인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겹사돈 혼인의 극적인 사례는 쌍둥이 형제가 쌍둥이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는 혼인에서 볼 수 있다. 한날한시에 태어나서 같은 사주팔자를 타고난 형제가 한날한시에 태어난 자매와 한날한시에 혼인함으로써 운명을 함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끔 이루어지는 혼인양식이지만, 그 사례는 매우 드물다.

겹사돈 혼인의 또 하나의 전형적인 예로는 '누이바꿈혼'을 들 수 있다. 아들을 장가보내고 그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경우이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딸을 교환함으로써 겹사돈 혼인이 되지만 신랑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누이를 교환하는 '누이바꿈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누이바꿈혼은 주로 빈곤한 계층에서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혼비婚費를 절약하기 위해서 행하는 혼인양식이지만 우정이 두터운 두 집안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인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겹사돈 혼인은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시 자녀를 혼인시켜 사돈 관계가 중첩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혼인이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의식되기 때문에 가까운 혈족 사이에 혼인이 중첩되는 경우에도 겹사돈 혼인이란 용어를 확대해서 적용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겹사돈을 '부찌사돈'이라 하고, 겹사돈 혼인을 '부찌사돈혼인'이라 부른다.

겹사돈과 혼동하기 쉬운 '곁사돈'이란 용어가 있다. 곁사돈은 사돈의 형제나 형제의 사돈을 일컫는 말이다. 사돈 관계가 매우 조심스러운 관계이지만,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돈의 형제들과도 접할 기회는 적지 않다. 이 경우에 사돈의 형제나 형제의 사돈을 지칭하는 용어가 '곁사돈'인 것이다. 곁사돈은 사돈 당사자들 사이보다도 더욱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대해야 할 사이이다.

특징 및 의의 사돈 관계는 한국의 친족제도와 친족 관계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전통사회에서는 혼인을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의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혼인으로 연결된 두 가문은 각기 '혈연적 배타성'과 '신분적 우월감'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족결합'을 이루고 있어서 사돈 관계는 두 가문 간의 대립적·경쟁적인 관계로 나타날 수 있고, 그 결과가 조심스럽고도 정중한 관계로 표출된다. 상대 가문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혼인을 통해서 사돈 가문과 함께 사회적인 신분을 평가받고 정치적·경제적으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가문은 여러 방면에서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며느리네 사돈'을 대하는 태도와 '딸네 사돈'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친족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며느리네 사돈'보다 '딸네 사돈'을 더 정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은 부계의 가부장가족 제도와 부처제夫處制에 기반을 둔 시집살이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사돈(이문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제주도의 친족조직(최재석, 일지사, 1979),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이광규, 일지사, 1975), 한국민속문화대사전(김용덕, 창솔, 2004).

필자 이창기(李昌基)

사례편람
四禮便覽

정의 조선시대 문신 도암陶菴 이재李縡(1680~1746)가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관혼상제의 사례四禮를 적용하는 데에 편의를 주기 위해 편찬한 책.

내용 『사례편람四禮便覽』은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였던 이재가 관례·혼례·상례·제례에 관한 이론의 정리와 실제 적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편람식으로 만든 저술이다. 실제 간행은 이재의 사후에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증손 이광정李光正이 수원유수로 재직하던 1844년(헌종 10)에 이루어졌다. 체재는 전체 8권 4책으로서 권1에는 관례와 계례笄禮, 권2에는 혼례, 권3에서 권7에는 상례, 권8에는 제례가 수록되었다. 현실에서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마다 필요한

사례편람 | 가로20 세로31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서식書式이 제시되었고, 복식·제구·진찬도 등의 도식圖式도 갖춰졌다.

이재는 율곡栗谷 이이李珥(1536~1584),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1548~1631),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1651~1708)으로 이어진 기호학맥을 계승하였다. 『사례편람』을 저술하면서 그는 『주자가례』를 따르고자 했지만, 『주자가례』가 실제 적용하기에 내용상 소략한 면이 많고, 당시 조선에서도 학맥에 따라 이미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자가례』를 비롯한 여러 학자의 제설을 참고하되, 현실적으로 적용에 편의를 줄 수 있는 하나의 통합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다. 상례 부분은 김장생의 『상례비요喪禮備要』를 위주로 정리·보완하였다.

『사례편람』이 간행된 이후 기호 지역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도 이 책을 많이 참고하였고, 이후 발간된 예서들은 『사례편람』의 편찬 방식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또 1900년에는 황필수黃泌秀·지송욱池松旭 등이 『사례편람』을 보정한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이 발간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필자 전경목(全炅穆)

사불천위
私不遷位

정의 문중에서 논의를 거쳐 추대한 불천위.

역사 여말선초 성리학이 수용되면서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조상에 대한 제례가 확대·강화되었다. 한 집안의 사당인 가묘家廟에는 일반적으로 조상의 위패位牌를 봉안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봉사규정에 의하면 6품 이상은 3대代까지 제사를 지내고 7품 이하는 2대, 일반인은 부모에게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특별조항으로 예외를 두었다. 그 특별조항은 다음과 같다. "맨 처음 공신이 된 사람은 대수代數가 다 되었더라도 신주를 치우지 않고 따로 방을 한 칸 차려 놓는다." 이러한 조항은 1457년(세조 3) 조선왕조 개국에 기여한 개국공신開國功臣, 정사공신定社功臣, 좌명공신佐命功臣, 정난공신靖難功臣, 좌익공신左翼功臣의 자손들이 별도의 사당을 만들어 제사를 받들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조에서 왕에게 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경국대전』에 반영되었고, 불천위不遷位의 시작이 되었다.

내용 불천위는 4대 봉사奉祀가 끝나 친진親盡이 되어도 사당에서 신주를 옮겨 매안埋安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영원히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신위를 의미한다. 이를 가리켜 부조위不祧位라고도 한다. 왕실을 제외한 일반 사대부가의 불천위와 관련된 논의는 1457년 예조가 국가에 헌신한 여러 공신들을 불천위 조상으로 모셔 대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왕에게 건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경국대전』 규정으로 제도화해서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조상을 불천위로 대대로 모실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을 수 있는 불천위 자격 요건은 까다롭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향촌 유림과 문중은 불천위 자격을 지역사회 공론을 통하거나 문중 내부 결의를 통해 만들어 갔다. 향촌에서 유현儒賢으로 존경받는 인물을 지역사회 유림들의 논의를 거쳐 불천위로 추대하는 경우는 유림불천위儒林不遷位 또는 향불천위鄕不遷位라 하고, 문중에서 임의로 자신의 조상을 추대한 경우는 사불천위私不遷位 또는 가불천위家不遷位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조선 후기 사족士族들의 향촌 지배가 강화되면서 사회현상으로 불천위 조상을 모시고자 하는 요구

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전통사회에서 사불천위는 지역사회 유림들의 공론을 거치지 않고 해당 문중 내부에서 추대한 불천위라는 점에서 국불천위나 향불천위에 비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사불천위는 영남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불천위를 추대하는 사회현상은 불천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컸음을 방증한다. 조선 후기 가문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가문마다 경쟁적으로 현조顯祖를 내세워 불천위로 삼았는데 그것이 사불천위로 나타났다. 사불천위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문중을 대표할 수 있는 조상을 불천위로 추대함으로써 문중의 구심점으로 삼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무형문화유산 자원조사 연구(강성복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불천위 제례(강성복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불천위 추대 기준에 대한 제도적·담론적 고찰(김미영, 국학연구17, 한국국학진흥원, 2010), 여말선초 상·제례 변동과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이상균, 한국민족문화4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역주 경국대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 1986).

필자 이상균(李相均)

사실혼
事實婚

정의 혼인한 부부와 다를 것이 없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부부.

역사 우리나라에서 혼인은 오랫동안 육례六禮를 거행하는 전통적 의식의 절차였으며, 혼례식을 거친 남녀는 합방하고 공동생활을 시작함으로써 부부로 인정받았다. 형편에 따라 이러한 의식을 거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 혼인으로 인정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적 혼인은 혼례식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인 사실혼事實婚이다. 그러나 1923년 〈조선민사령〉(1912년 공포)에 의하여 일본 민법이 적용되면서 혼인신고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법률혼法律婚이 정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관습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는 법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하게 되었다.

내용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받는다. 〈민법〉에 사실혼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실혼은 법원 판례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사실혼은 약혼이나 동거와도 구별된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당사자들이 부부로 함께 생활한 실질적인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단순한 동거 또는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자녀가 있으나 따로 살면서 간헐적인 정교情交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보았다. 둘째,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혼인의사란 당사자들이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녀가 결혼식을 올렸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중혼적重婚的 사실혼이 아니어야 한다.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맺은 경우 중혼적 사실혼으로 보고 이는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에 위배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이들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범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부부재산제는 부부재산계약제와 법정재산제로 나뉜다. 부부재산계약제는 사실혼의 경우 인정되지 않으나 법정재산제의 경우에는 그대로 유추·적용된다. 부부의 법정재산제는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이며, 별산제는 각자의 재산은 자신이 관리·수용·처분하는 것이다. 또한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831조). 부부의 공동생활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제833조).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한쪽 배우자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사실혼관계 해소 시 한쪽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므560 판결). 재산분할청구는 공동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며, '공동협력'에 있어 일방 배우자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노동의 가치로 인정된다.

특징 및 의의 법률혼의 경우 공적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사실혼의 '사실혼관계증명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쪽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일방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1호)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합의하도록 유도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이들 관계를 사실혼관계로만 있게 하지 않고 법률관계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 사실혼이 확정 판결되더라도 이것으로 혼인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관계 성립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므25).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실익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후일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자子이다. 그러므로 부와 자의 친생자 관계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 사실혼관계가 해결된 후 당사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한 부부처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할 수 있으며, 한쪽 부모가 양육하게 되는 경우 다른 부모 한쪽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다.

사실혼관계에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법률혼관계에서만 인정된다(헌재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또한 사실혼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을 때 생존 배우자가 사실혼관계 기간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지 않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사실혼은 개별법에서 배우자 개념에 포함시켜 이를 보호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는 유족 보상 범위를 정함에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 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임차권의 승계와 관련하여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선원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다.

참고문헌 사실혼·동거 가족의 법률문제와 해결방안(조은희, 법학연구12-2,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친족상속법(김주수·김상용, 법문사, 2022), 친족상속법(조은희, 정독, 2023),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조은희(趙恩嬉)

사위

정의 딸의 남편을 이르는 친족용어.

내용 사위는 딸의 배우자를 지칭하는 친족용어로, 여서女壻라고도 한다. 남의 사위를 높여 말할 때는 서랑壻郞이라고 한다. 이에 대응하여 아들의 아내는 며느리 또는 자부子婦라고 칭한다. 사위는 딸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이므로 인척姻戚에 해당한다.

아내의 아버지에 대한 친족 지칭은 장인丈人 또는 빙부聘父, 어머니는 장모丈母 또는 빙모聘母라고 한다. 처부모妻父母는 사위를 '사위/성+서방' 등으로 부르고 자녀가 생겨도 며느리와 달리 '(자녀 이름)+아범·아비'로 바꿔 부르지 않는다. 사위는 처부모를 장인어른과 장모님으로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법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친족제도는 부계계승父系繼承 원리를 따르고 있어 딸의 자녀는 사위의 부계친족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친손주'에 대응하여 '외손주'라고 한다. 그리고 외손주에게 어머니의 부모는 외조부모外祖父母가 되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라고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내의 친정은 사위에게 처가妻家가 되고 외손주에게는 외가外家가 된다.

질항姪行, 손항孫行 등 아래 세대의 조카딸이나 손녀딸 등의 배우자도 사위[女壻]와 마찬가지로 조카사위[姪壻], 손녀사위[孫壻] 등으로 호칭한다. 한국의 친족용어

체계는 아래 항렬의 여자 친족원과 혼인으로 맺어진 남자를 모두 '사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국의 친족체계는 시간적 경과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적어도 조선 중기 이전 시기인, 즉 17세기 중기 이전까지는 부계혈연친족에 못지않게 모계母系나 처계妻系친족 비중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심지어 부계친족보다도 모계친족 비중이 더욱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 중기까지도 사위가 오랜 기간 처가에서 생활하고 그 결과 외손자가 외할아버지 집에서 길러지고 장성하게 되는 서류부가壻留婦家의 서속壻俗 영향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비부계친족에 대한 강조와 비부계적 원리 아래에서 운영된 17세기 중기 이전 한국의 친족체계는 그들 친족원 간의 상호 호칭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부계적 특징을 보여 준다. 『고려도경高麗圖經』이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의 기록에 따르면 사위와 외손자가 오랜 기간 장인이자 외조부 집에서 생활하고 자랐기 때문에 사위는 장인을 아버지라 부르고 외손자는 그들의 외사촌을 부계사촌과 마찬가지로 그냥 사촌간이라 칭하며 외숙부를 아버지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아저씨[叔父]라 칭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를 모두 할아버지[祖父]라 부르는 등 외가의 친족들에 대하여 부계친족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였다.

한국 속담에는 사위와 관련된 속담이 적지 않은데 이를 통해 사위의 친족적 성격을 살필 수 있다. '사위도 반자식이라'라는 말은 사위도 절반 제 자식이 된다는 뜻으로, 장인·장모에게 사위에 대한 정이 자식에 대한 정에 못지않음을 이른다. 사위도 때로는 처가에 자식 노릇을 할 때는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서류부가의 오래된 풍속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위는 백 년 손이라'라는 속담은 사위는 영원한 손님이라는 뜻이다. 사위는 출가한 딸을 둔 장인·장모에게 언제나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어려운 존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인지 예부터 사위는 백년손님이라 하여 귀한 대접을 받았고, 사위가 오면 아끼고 아끼던 씨암탉을 잡아서 먹일 정도로 융숭하고 후한 대접을 하였다. '사위 반찬은 장모 눈썹 밑에 있다'라는 속담처럼 장모는 사위를 대접하려고 보는 대로 찾아서 차려 주려고 한다. '가을 아욱국은 사위만 준다'는 특별히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사위에게만 먹인다는 음식 관련 속담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위 집 더부살이'라는 속담처럼 장인이나 장모가 출가한 딸네 집에서 더부살이하기란 떳떳하지 못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부계친족사회에서 인척 관계로 맺어진 사위에게 처부모에 대한 효의 의무가 강하지 않으므로 자식 노릇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 주는 속담일 것이다.

지역사례 지역별로 사용되는 딸과 사위에 대한 친척용어를 친척지칭과 친척호칭으로 나눠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친척지칭	친척호칭	비고
경기 양평	딸	아이 이름+에미	혼인 전에는 이름을 부름
	사우	성+서방	
인천 강화	딸		이름 대신 사용되는 정형화된 호칭 형태가 없음
	사위	사위/아이 이름+아버이	
강원 삼척	딸	(이름)	혼인 후 이름을 대신하는 호칭이 발달하지 않았음
	사우	사우	
충북 청주(청원)	딸	출가지명+네/아이 이름+이미	혼인 전에는 이름을 부름
	사위	사위	'성+서방'(호칭)은 안 씀
충남 홍성	여식/딸	(아이 이름)+에미	
	사위	성+서방	
전북 고창	딸	남편 성+실+아	
	사우	성+서방	
전남 진도 조도	딸	아이 이름+넘아	혼전에는 이름을 부름, '넘'은 '네+엄매'의 축약형
	사오	사오/아이 이름+납씨야	'납씨'는 '네+압씨'의 축약형
경북 구미 선산	여식/딸	남편 성+실	혼인 전에는 이름
	사우	성+서방	
경북 영덕 영해	여식	남편 성+실/에미	
	사위	성+서방	
경남 함양	여식	남편 성+집	
	사위	성+서방	

경남 통영 사량도	딸	이름/큰아이 이름/아이 이름+네	
	사오	성+서방	
부산 동래	딸	(아이 이름+어마이)	( ) 안의 호칭은 이름 대신 사용되는, 정형화되지 않은 호칭 형태들임
	사우	성+서방	

출처: 한국의 언어 민속지(2009~2023)

특징 및 의의 사위와 며느리는 각각 딸, 아들과의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 관계이지만 한국의 부계가족적 특성 때문에 기대되는 역할이나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 한국 속담 중에는 사위와 며느리를 대비시켜 이러한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사위는 백 년 손이요, 며느리는 종신 식구라.'라는 말은 사위와 며느리는 모두 남의 자식으로서 제 자식뻘이 되지만 며느리는 제집 식구처럼 되지만 사위는 아무리 스스럼이 없어져도 언제나 예의를 갖추어서 맞이해야 할 손님으로, 며느리와 달리 사위는 장인·장모에게 푸대접하기 어려운 존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사위 사랑은 장모,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속담은 흔히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서 귀염을 받고 사위는 장모에게서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다. 부계친족제도에서 비롯되는 시집간 딸을 걱정하는 부모 입장에서 사위는 잘 대접하고 예의를 갖춰서 맞아야 하는 관계인 것이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朝鮮王朝實錄,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한국의 언어 민속지-강원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기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상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한국의 언어 민속지-서편(왕한석, 교문사, 2009), 한국의 언어 민속지-전라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한국의 언어 민속지-충청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조숙정(趙淑晶)

사진신부
寫眞新婦

정의 1910~1924년 사진결혼 제도를 통해 하와이와 미국 본토로 이주한 한인 여성.

역사 19~20세기 초 유럽 여성들은 신대륙으로 먼저 이주한 유럽 남성들과의 편지 교환을 통해 또는 그들이 낸 광고를 보고 신대륙으로 결혼이민을 떠났다. 당시에는 '편지신부'로 불렸지만 이후 사진 발명으로 사진 교환을 통해 결혼한 유럽 여성들이 사진신부寫眞新婦, picture bride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인·중국인·조선인들은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한 미국법 때문에 현지에서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웠고, 결국 본국에서 배우자를 데려와야 하였다. 한인 사진신부는 '동족혼同族婚, co-ethnic marriage' 형태를 띤 국제결혼의 시초이다.

내용 20세기 초반 하와이 백인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일본인 노동자들의 잦은 파업과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로 일본인 노동자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903~1905년 총 7,226명의 조선인 남성이 저렴한 계약 노동자로 하와이로 유입되었다. 이들 가운데 84%가 20대 남성이었다. 백인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인종 간 성적 결합과 혼인 금지법에 따라 조선인 남성들은 미국 땅에서 결혼할 여성을 찾을 수 없었다. 1907~1908년 미국과 일본이 맺은 신사협정으로 일본인 사진신부의 미국 이민이 허용되었고, 일본 정부는 한인에 대한 식민통치의 하나로 1910년 이후 조선인 여성들 또한 사진신부로 이주하게 하였다. 남성들은 자신들의 사진을 찍어 조선에 보낸 뒤 그를 보고서 결혼하고자 하는 조선 여성들을 찾았고, 결혼을 결심한 여성은 답장으로 자신의 사진을 동봉하여 남성들에게 보내곤 하였다. 이렇게 오랜 기간 주고받은 사진과 편지에 의해 결혼이 성사되면 신랑은 현지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신부가 될 사람이 미국에 올 수 있도록 경비를 부담하였다. 당시 일제강점기 조선 여성들은 일본 정부가 발급한 여권을 받고 미국 정부가 발급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였다. 고향을 떠나 일본을 거쳐 9~15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한 사진신부들은 사진에서 본 모습과 달리 고된 노동으로 까맣게 그을리고 나이 든 남편의 모습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사진신부로 미국에 간 여성들은 서울·경기·부산·경상도 출신이었으며, 나이는 15~24세였다고 한다. 남편과의 평균 나이 차이는

사진신부 | 로버타 장 컬렉션 |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5세였다.

기록에 남아 있는 첫 사진신부는 이래수와 결혼하기 위해 1910년 12월 2일 호놀룰루에 도착한 최사라였고, 그녀는 당시 23세였다. 사진신부들이 하와이로 대거 입국한 동기는 경제적인 이유가 주된 것이었지만 이외에 기독교와의 연관성, 공부에 대한 열망, 봉건적 유교 사회로부터의 해방 욕구 등 다양하였다. 이들 중에는 노동이민자였던 남편보다 근대교육을 받아 계몽된 여성이 많았고, 한국에서 선생·간호사·종교인 등으로 활동한 여성도 있었다. 하지만 사진신부들은 대부분 남편과 마찬가지로 농장을 이동하며 고된 일을 해야 하였다. 한인 가족은 생활조건과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농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해 세탁업, 구두 수선 등 자영업 등에 종사하였다.

당시 사진신부로 하와이에 온 천연희는 하와이 이민 생활을 담은 자필 기록 한글 노트 7권과 영문 육성 녹음테이프를 남겼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 1915년 19세의 나이로 하와이에 온 천연희는 자유로운 미국에서 공부를 더 하겠다는 의지로 결혼 이주를 결심하였다. 천연희는 첫 번째 남편인 길찬록과 혼인한 직후부터 사탕수수 노동자들의 빨래를 해주고 작업복을 만들어 팔면서 가정경제를 꾸려 나갔다. 두 번의 이혼과 세 번의 혼인에 따라 아버지가 다른 6남매의 어머니로서 가장家長 역할을 하고 아이들을 교육하였다. 1941년 미국인과 세 번째 결혼을 했고, 사탕수수 농장에 카네이션을 심어 하와이에서 손님에게 환영의 뜻으로 목에 거는 화환인 레이Lei를 팔았다.

사진신부들은 남편과의 나이 차가 많이 나서 이른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였지만 여전히 남자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재혼하는 경우도 흔하였다. 사진신부들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모험심이 강한 여성들이었다. 사진신부들은 대부분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 피탈被奪 이후 하와이에 왔기 때문에 일본어를 할 수 있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에서부터 기독교 신자였고, 하와이로 이주한 후 한인기독교회에 출석하여 응집력을 유지하였다. 동향 출신 신부들 간의 자매애와 계契 제도를 통해 소수민족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부인회, 대한부인구제회, 영남부인회, 애국부인회 등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한인 사진신부의 정확한 수는 파악할 수 없으나 1,1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중 951명은 하와이제도에, 115명은 미국 본토에 거주하였다고 한다. 1924년 미국 의회는 〈동양인배척법Oriental Exclusion Act〉을 제정하였고, '중매 혹은 사진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경우는 미국으로 이주할 수 없다고 명시한 미국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인과 한인의 사진신부 제도는 종식되었다.

특징 및 의의 1900년대 초 미국의 사탕수수 농장 노역으로 이주한 한인 남성들은 미국에서 돈을 벌어 한국에 돌아가고자 하였던 임시체류자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1910~1924년 한시적으로 이주한 사진신부는 한인 이민 사회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고, 가족을 구성하고 아이를 낳아 미국 내 한인 이민자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한인 가족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1930년대 이후 증가하면서 재외한인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사진신부는 일본 식민주의와 미국인의 아시아인 차별에 맞서 동족혼을 통한 가족 구성과 독립운동을 통해 재외한인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참고문헌 여성과 이주 100년간의 낯선 여행(국립여성사전시관, 2008), 일본의 식민지적 통제와 미국 이민법의 네트워크(노선희, 사회와 역사129, 한국사회사학회, 2021),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문옥표 외, 일조각, 2017), 하와이 한인 여성단체와 사진신부의 독립운동(홍윤정, 여성과 역사26, 한국여성사학회, 2017), 하와이 한인 이민 1세(Wayne Patterson, 정대화 역, 들녘, 2003).

필자 김현미(金賢美)

사촌
四寸

정의 부모의 친형제자매 아들딸과의 촌수 또는 4촌 관계에 있는 종從형제자매를 이르는 친족용어.

내용 촌수寸數는 친족 사이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 또는 그런 관계를 나타낸다. 계촌법計寸法은 한 세대를 1촌一寸으로 계산하며, 나를 중심으로 상대방과 갈린 조상에게로 대수를 세어 올라가서 그 조상에서부터 다시 상대방까지 세어 내려와 그 대수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1촌으로 계산하므로 친형제자매는 2촌二寸이 된다. 부모의 친형제자매는 나와 서로 3촌三寸 관계가 되므로 그들의 아들딸은 나와 서로 4촌四寸이 된다. 이처럼 촌수는 친척 간 멀고 가까운 거리를 수數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다른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제도이다.

계촌법은 논리적으로는 모든 친척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친족 지칭과 같이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 범위, 즉 당내친堂內親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당내堂內는 가장 가까운 친족집단이며 이에 따라 당내친은 상례喪禮에서 상복을 입어야 하는 친족 범위로, 유복친有服親이라고도 한다.

사촌四寸 관계의 형제자매들은 부모 세대 관련 친족원의 속성에 따라 네 범주로 구분한다. ①아버지의 남형제, 즉 친삼촌親三寸 자녀는 친사촌親四寸 또는 간단히 '사촌'이라고 한다. ②아버지의 여형제, 즉 고모姑母 자녀는 고종사촌姑從四寸 또는 내종사촌內從四寸이라고 한다. ③어머니의 남형제, 즉 외삼촌外三寸 자녀는 외종사촌外從四寸 또는 외사촌外四寸이라고 한다. ④어머니의 여형제, 즉 이모姨母 자녀는 이종사촌姨從四寸이라고 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친족제도가 부계계승父系繼承 원리를 따르고 있기에 친사촌은 나와 같은 부계친족집단에 귀속되고, 반면 고종사촌·외종사촌·이종사촌은 각각 다른 부계친족집단에 귀속되므로 이성사촌異姓四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농업 중심의 전통사회에서는 당내친이 지연집단地緣集團을 형성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당내를 넘어선 친족보다 가깝게 느끼고, 더욱 밀접히 협력하게 된다. 이들은 부담 없이 농기구를 빌리거나 생일잔치에 형식적 초청이 없어도 참석해서 일을 해 주며, 허심탄회하게 집안일을 의논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한 동족부락에서의 친족 간 왕래 빈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친사촌 간 왕래 빈도가 형제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촌 간이 당내보다는 가까운 정서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이 제주도의 '고적'이다. 제주도에서 '고적'이란 초상이 났을 때 장사葬事에서 일을 하는 상두꾼들에게 제공하는 떡을 친척들이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고적의 양은 친척 범위에 따라 다르다. 친사촌까지는 메밀쌀 2말 분의 떡을, 친오촌에서 팔촌까지는 메밀쌀 1말 분의 떡을 가져온다. 한편 고종사촌·외사촌·이종사촌까지의 친척들은 메밀쌀 2말 분의 떡을 가져온다. 이성사촌에게 친오촌에서 팔촌까지의 친족보다도 2배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친사촌과 친오촌에서 팔촌까지는 대사大事인 초상初喪에 협력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고종·외종·이종사촌은 의무감이 상대적이고 그리 강하지 않다. 그래서 이성사촌에게는 '수눔장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해 준 만큼 다시 돌려받은 장사란 뜻이며, 빌려주고 받는 사이라는 의미이다. 형제와 친사촌까지의 범위는 자주 왕래하면서 서로 일을 돕기 때문에 면식집단이라 할 수 있으며, 친사촌 범위에서 근친의식近親意識이 더욱 분명한 경향을 보인다.

지역사례 지역별로 사용되는 ①친사촌 ②고종사촌 ③외사촌 ④이종사촌과 그 배우자에 대한 친척용어를 친척지칭과 친척호칭으로 나눠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 해당 친족원과의 연령 및 성별 관계에 따라 (1)남성 화자와 (2)여성 화자의 친척용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숫자로 구분 및 배합하여 손위와 손아래,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경기 양평

친족원	(1) 남성 화자		(2) 여성 화자	
	친척지칭	친척호칭	친척지칭	친척호칭
① 친사촌과 배우자	사춘성(님) (사촌형)	성님	사춘오라버니	오라버님/ 오라버니
	사춘형수	아주머니/ 형수님	사춘(손위)올케	언니
	사춘동생/ 사춘아우	이름	사춘(남)동생	동생

	사춘제수	제수씨	사춘(손아래)올케	올케
	사춘누님/ 사춘누이	누님	사춘언니	언니
	사춘매형	매형	사춘형부	형부
	사춘누이동생	아이 이름+엄마	사춘(여)동생	아이 이름+엄마
	사춘매부	매부	사춘제부	제부
② 고종사촌과 배우자	고종사춘성(님)	성님	고종사춘오라버니	오라버님/ 오라버니
	고종사춘형수	아주머니/ 형수님	고종사춘(손위)올케	언니
	고종사춘동생/ 고종사춘아우	이름	고종사춘(남)동생	동생
	고종사춘제수	제수씨	고종사춘 (손아래)올케	올케
	고종사춘누님/ 고종사춘누이	누님	고종사춘언니	언니
	고종사춘매형	매형	고종사춘형부	형부
	고종사춘 누이동생	아이 이름+엄마	고종사춘(여)동생	아이 이름+엄마
	고종사춘매부	매부	고종사춘제부	제부
③ 외사촌과 배우자	외사춘성(님)	성님	외사춘오라버니	오라버님/ 오라버니
	외사춘형수	아주머니/ 형수님	외사춘(손위)올케	언니
	외사춘동생/ 외사춘아우	이름	외사춘(남)동생	동생
	외사춘제수	제수씨	외사춘(손아래)올케	올케
	외사춘누님/ 외사춘누이	누님	외사춘언니	언니
	외사춘매형	매형	외사춘형부	형부
	외사춘누이동생	아이 이름+엄마	외사춘(여)동생	아이 이름+엄마
	외사춘매부	매부	외사춘제부	제부
④ 이종사촌과 배우자	이종사춘성(님)	성님	이종사춘오라버니	오라버님/ 오라버니
	이종사춘형수	아주머니/ 형수님	이종사춘(손위)올케	언니
	이종사춘동생/ 이종사춘아우	이름	이종사춘(남)동생	동생
	이종사춘제수	제수씨	이종사춘 (손아래)올케	올케
	이종사춘누님/ 이종사춘누이	누님	이종사춘언니	언니
	이종사춘매형	매형	이종사춘형부	형부
	이종사춘 누이동생	아이 이름+엄마	이종사춘(여)동생	아이 이름+엄마
	이종사춘매부	매부	이종사춘제부	제부

전북 고창

친족원	(1) 남성 화자		(2) 여성 화자	
	친척지칭	친척호칭	친척지칭	친척호칭
① 친사촌과 배우자	종형	성(님)	사춘오빠	오빠
	종형제	아짐	사춘오라부덕	성님
	종제	이름	사춘(남)동상	이름/동상
	종제수	제수(씨)	사춘동상아덕	동상아덕
	사춘누님	누님	사춘성(님)	성(님)
	사춘매앙	매앙	사춘성부	성부
	사춘(여)동상	남편 성+실+이	사춘(여)동상	남편 성+실+이
	사춘매제	성+서방/ 매제	사춘진앙	성+서방/ 진앙
② 고종사촌과 배우자	내종형	성(님)	내종사춘오빠	오빠
	내종형수	아짐	내종사춘오라부덕	성님
	내종제	이름	내종사춘(남)동상	이름/동상
	내종제수	제수(씨)	내종사춘동상아덕	동상아덕
	내종사춘누님	누님	내종사춘성(님)	성(님)
	내종사춘매앙	매앙	내종사춘성부	성부
	내종사춘 (여)동상	남편 성+실+이	내종사춘(여)동상	남편 성+실+이
	내종사춘매제	성+서방/ 매제	내종사춘진앙	성+서방/ 진앙
③ 외사촌과 배우자	외종형	성(님)	외사춘오빠	오빠
	외종형수	아짐	외사춘오라부덕	성님
	외종제	이름	외사춘(남)동상	이름/동상
	외종제수	제수(씨)	외사춘동상아덕	동상아덕
	외사춘누님	누님	외사춘성(님)	성(님)
	외사춘매앙	매앙	외사춘성부	성부
	외사춘(여)동상	남편 성+실+이	외사춘(여)동상	남편 성+실+이
	외사춘매제	성+서방/ 매제	외사춘진앙	성+서방/ 진앙
④ 이종사촌과 배우자	이종형	성(님)	이종사춘오빠	오빠
	이종형수	아짐	이종사춘오라부덕	성님
	이종제	이름	이종사춘(남)동상	이름/동상
	이종제수	제수(씨)	이종사춘동상아덕	동상아덕
	외사춘누님	누님	이종사춘성(님)	성(님)
	외사춘매앙	매앙	이종사춘성부	성부
	외사춘(여)동상	남편 성+실+이	이종사춘(여)동상	남 편성+실+이
	외사춘매제	성+서방/ 매제	이종사춘진앙	성+서방/ 진앙

경북 영덕 영해

친족원	(1) 남성 화자		(2) 여성 화자	
	친척지칭	친척호칭	친척지칭	친척호칭
① 친사촌과 배우자	종형	형님	종남	오라배
	종형수	새아지매	사촌댁	새형님
	종제	이름	종남	이름
	종제수	종수씨	사촌댁	새댁
	종자씨	눈님	종형	형님
	종자형	새형님	종형부	새아재
	종매	남편 성+실	종제	남편 성+실
	종매부	성+서방	종제부	성+서방
② 고종사촌과 배우자	고종형	형님	고종남	오라배
	고종(형)수	새아지매	고종의 댁	새형님
	고종제	이름	고종남	이름
	고종(제)수	고종수씨	고종의 댁	새댁
	고종자씨	눈님	고종형	형님
	고종자형	새형님	고종형부	새아재
	고종매	남편 성+실	고종제	남편 성+실
	고종매부	성+서방	고종제부	성+서방
③ 외사촌과 배우자	외종형	형님	외종남	오라배
	외(종)형수	새아지매	외사촌의 댁	새형님
	외종제	이름	외종남	이름
	외종(제)부	외종수씨	외사촌의 댁	새댁
	외종자씨	눈님	외종형	형님
	외종자형	새형님	외종형부	새아재
	외종매	남편 성+실	외종제	남편 성+실
	외종매부	성+서방	외종제부	성+서방
④ 이종사촌과 배우자	이종형	형님	이종남	오라배
	이종(형)수	새아지매	이종의 댁	새형님
	이종제	이름	이종남	이름
	이종(제)수	이종수씨	이종의 댁	새댁
	이종자씨	눈님	이종형	형님
	이종자형	새형님	이종형부	새아재
	이종매	남편 성+실	이종제	남편 성+실
	이종매부	성+서방	이종제부	성+서방

경남 통영 사량도

친족원	(1) 남성 화자		(2) 여성 화자	
	친척지칭	친척호칭	친척지칭	친척호칭
① 친사촌과 배우자	사춘성님/ 사춘셍이	성님/셍이	사춘오래비/ 사춘오랍씨	오래비/ 오랍+아/ 오랍씨
	사춘헹수	헹수	사춘올캐(셍이)	성/셍이
	사춘동숭	이름/동숭	사춘동숭	이름/동숭
	사춘제수	제수씨	사춘올캐	동숭/올캐
	사춘누우/ 사춘누님	누우/누님	사춘셍이	성/셍이
	사춘매형/ 사춘매부	매형/매부	사춘아재	아재
	사춘동숭	이름/동숭/ 큰아이 이름	사춘동숭	이름/동숭/ 큰아이 이름
	사춘제매	제매	사춘지신아재	아재/ 지신아재
② 고종사촌과 배우자	고종사춘성님/ 고종사춘셍이	성님/셍이	고종사춘오래비/ 고종사춘오랍씨	오래비/ 오랍+아/ 오랍씨
	고종사춘헹수	헹수	고종사춘올캐(셍이)	성/셍이
	고종사춘동숭	이름/동숭	고종사춘동숭	이름/동숭
	고종사춘제수	제수씨	고종사춘올캐	동숭/올캐
	고종사춘누우/ 고종사춘누님	누우/누님	고종사춘셍이	성/셍이
	고종사춘매형/ 고종사춘매부	매형/매부	고종사춘아재	아재
	고종사춘동숭	이름/동숭/ 큰아이 이름	고종사춘동숭	이름/동숭/ 큰아이 이름
	고종사춘제매	제매	고종사춘지신아재	아재/ 지신아재
③ 외사촌과 배우자	외사춘성님/ 외사춘셍이	성님/셍이	외사춘오래비/ 외사춘오랍씨	오래비/ 오랍+아/ 오랍씨
	외사춘헹수	헹수	외사춘올캐(셍이)	성/셍이
	외사춘동숭	이름/동숭	외사춘동숭	이름/동숭
	외사춘제수	제수씨	외사춘올캐	동숭/올캐
	외사춘누우/ 외사춘누님	누우/누님	외사춘셍이	성/셍이
	외사춘매헹/ 외사춘매부	매헹/매부	외사춘아재	아재
	외사춘동숭	이름/동숭/ 큰아이 이름	외사춘동숭	이름/동숭/ 큰아이 이름
	외사춘제매	제매	외사춘지신아재	아재/ 지신아재
④ 이종사촌과 배우자	이종사춘성님/ 이종사춘셍이	성님/셍이	이종사춘오래비/ 이종사춘오랍씨	오래비/ 오랍+아/ 오랍씨
	이종사춘헹수	헹수	이종사춘올캐(셍이)	성/셍이
	이종사춘동숭	이름/동숭	이종사춘동숭	이름/동숭
	이종사춘제수	제수씨	이종사춘올캐	동숭/올캐
	이종사춘누우/ 이종사춘누님	누우/누님	이종사춘셍이	성/셍이

이종사촌매헹/ 이종사촌매부	매헹/매부	이종사촌아재	아재
이종사촌동숭	이름/동숭/ 큰아이 이름	이종사촌동숭	이름/동숭/ 큰아이 이름
이종사촌제매	제매	이종사촌지신아재	아재/ 지신아재

출처: 한국의 언어 민속지(2009~2023)

특징 및 의의 현대에 와서는 산업화와 도시화 영향으로 부계친족집단의 소속감을 강조하는 경향이 훨씬 약화되고, 아버지 쪽 친척들과 접촉하는 빈도 못지않게 외가 쪽 친척들과 접촉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사실 전통적인 모계친족 관념도 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대 핵가족 구조에서 어머니를 매개로 외삼촌이나 이모 등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외사촌·이종사촌의 역할이 친사촌 못지않게 나의 친족관계망에서 중요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기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상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한국의 언어 민속지-전라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호칭과 지칭 예절(류재봉,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조숙정(趙淑晶)

사후양자
死後養子

정의 양부가 사망한 후 제사를 받들고 가계 승계를 위해 들이는 양자 또는 그런 행위.

내용 현대사회에서 입양은 친자식 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자식을 양자녀로 삼아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입후立後라고 지칭되는 전근대사회에서의 입양은 선조의 제사를 받들고 가계家系를 잇기 위해 아들이 없는 자가 부계친父系親 중에서 조건에 맞는 사람을 데려와 자기 자식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은 자녀의 양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졌으나 전근대사회에서의 입양은 선조의 사후봉양死後奉養을 중시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입양을 통한 새로운 부자 관계 형성은 기존의 친족관계를 변형시키는 행위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특히 사후양자死後養子는 세종世宗 대에 내려진 "비록 양부養父가 없어도 만약 양모養母가 원하면 국가에 고한 뒤 입후한다."라는 수교受敎에 따라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이 편찬될 때도 이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양부 대신 양모가 사후양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해서 양자의 선정 권한이 양모에게 곧바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성종成宗 대에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경국대전』에서 "양부가 사망하였을 때 양모가 관官에 고한다."라고 한 것은 양부가 살아 있을 때 의논하여 양자를 정하였으나 미처 관에 고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입후할 수 있는 사후양자의 범위는 양부가 생존하였을 때 내정한 자로 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6세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中宗은 연산군燕山君에게 해를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후사를 이어 준다는 명분으로 양부모와 친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입양을 특별히 허가하였다. 또한 성리학적 종법宗法 질서의 영향으로 입양이 널리 유행한 17세기 이후 양모가 사후양자를 들이기 위해 신청한 입양은 양부가 생전에 동의하였느냐와 상관없이 합법적 테두리에서 허가되었다.

그리고 양부와 양모가 모두 사망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제사가 끊어지게 둘 수 없다는 관념이 더 우세함에 따라 국왕의 특별한 허가를 통해 입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이 같은 사례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영조英祖 대에 이르러서는 양부모와 친부모 중 한쪽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사후양자를 허가한다는 수교가 내려졌고, 고종高宗 대에 이르러서는 양부모와 친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사후양자를 허가한다는 수교가 내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18세기 후반부터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여도 사후양자의 입양을 허용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후양자 입양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실학자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양부가 살아 있을 때보다 사망한 뒤에 양자를 들이는 것이

예학적으로 더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례古禮를 근거로 들면서 후사는 죽은 자를 위해 세우는 것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사란 선대先代와 대비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만 후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후양자 도입을 적극 찬성하였다. 또한 사후양자를 통해 입양한 뒤에 친자를 출생한 경우, 또는 입양한 뒤에 양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징 및 의의 양부가 죽고 난 뒤 후사를 잇기 위해 들였던 사후양자는 조선사회에 성리학적 종법이 깊은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가족 및 친족제의 운영방식과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의례적 계승인가 사회적 구휼인가(박종천, 다산학16, 다산학술문화재단, 2010), 조선시대의 가계계승법제(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5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조선후기 가계계승 연구(고민정,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조선후기 입후 절차에 관한 연구(고민정, 사학연구117, 한국사학회, 2015),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필자 고민정(高旻廷)

삼강행실효자도
三綱行實孝子圖

정의 삼강행실효자도에 수록된 중국과 한국 효자의 효행을 도해한 판화.

내용 1434년 4월에 반포된 『삼강행실효자도三綱行實孝子圖』에는 효자들의 효행을 보여 주는 효자도가 효자 한 명당 한 점씩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효자도는 직사각형 종이에 목판으로 인쇄되었다. 『삼강행실효자도』에는 효행 고사故事 제목 111개가 기재되어 있으나 '효신여묘孝新廬墓'는 제목만 있고 글과 그림도 없어서 실제 효자도는 110점이 실려 있다. 중국과 한국 효자도는 각각 88점, 22점이다. 이 중 한국의 효자도는 신라 2점, 백제 2점, 고려 7점, 조선 11점이다. 이 효행들은 평상시·이변시異變時·우환시憂患時·사후死後 효행으로 나뉜다. 평상시 부모를 잘 모시거나 부모가 찾으시는 음식을 공양하는 효행, 재난과 같은 이변 상황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행, 부모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효행, 부모가 돌아가신 후 장례를 정성스럽게 행하거나 묘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삼년상을 지내는 등 여러 효행이 있다.

『삼강행실효자도』에는 부모 사후 효행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 평상시 효행은 47건, 우환시 효행은 38건, 이변시 효행은 24건이다. 한국 효자의 효행은 우환시 효행이 절반 이상으로, 병든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단지斷指·할고割股·상분嘗糞을 행한 예가 대부분이다. 사후 효행 중에는 여묘廬墓 효행이 가장 많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그린 화가에 대해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궤東國新續三綱行實圖儀軌』에 "예로부터 전하기를 안견安堅의 필筆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삼강행실도』가 제작된 지 183년이 지난 뒤의 기록이므로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삼강행실도』에 수록된 그림에 보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지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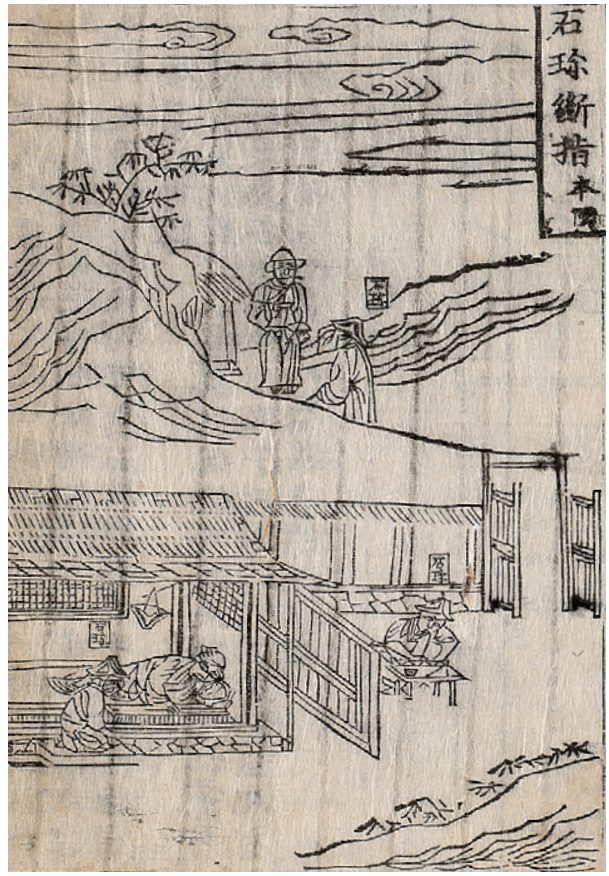

석진단지 | 삼강행실도 중 부분 | 가로24 세로38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왕상부빙 | 삼강행실도 중 부분 | 가로24 세로38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그로 이어지는 산 배치법과 단선점준短線點皴 등에서 안견의 화풍을 간취看取할 수 있어 세종世宗 대부터 세조世祖 대까지 활동한 안견이 제작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징 및 의의 『삼강행실효자도』는 효자 한 명의 효행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도해한 효자도 화면은 한 장면 또는 두 개 이상의 장면으로 나뉘어 있다. 『삼강행실효자도』 화면은 1~8개의 장면으로 구획되어 있다. 〈노래반의老萊斑衣〉나 〈백유읍장伯榆泣杖〉처럼 한 장면으로 표현된 효자도는 21점이다. 이는 효행이 하나만 수록되어 있어 한 장면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2~3개 장면으로 구획된 효자도가 절반 가까이 된다. 다수의 장면으로 화면을 구성한 방식은 중국의 이십사효도二十四孝圖 및 조선의 일반 효자도와 차별화되는 『삼강행실효자도』의 특징이다. 여러 효행을 여러 장면으로 나누어 효행이 행해진 공간에 맞게 산, 언덕, 집, 담, 구름 등으로 화면을 구분한다. 화면 구획물을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해 공간이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지그재그로 놓이는 경우가 많다. 장면을 배치하는 순서는 있지 않으나 대체로 산과 관련된 장면은 위에, 강물이나 바다 관련 장면은 아래에 배치하기도 한다. 그리고 효행 이야기 전개 순서를 따르지 않고 행한 장소가 동일하면 같은 공간에 주인공 효자가 두 번 이상 등장해 각기 다른 효행을 하고 있다. 이는 조선 전기 불화에서도 보이는 공통된 화면 배치 방식이다. 『삼강행실효자도』는 중국의 효자도나 이십사효도 도상과 대부분 유사하다. 〈왕상부빙王祥剖氷〉처럼 전자는 왕상이 망치로 얼음을 깨는 모습이지만 후자는 왕상이 얼음에 누워 얼음을 녹이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등 다른 부분도 있다. 이는 중국과 한국의 효행 고사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효행을 널리 알리고 책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효행을 연상시키는 코끼리·색동옷 등의 상징물을 활용하였다.

참고문헌 삼강행실도 판화에 대한 고찰(정병모, 진단학보85, 진단학회, 1998), 삼강행실도류 판화(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2000), 삼강행실도에 대하여(김원룡,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2), 조선시대 행실도 판본 및 판화에 관한 연구(송일기·이태호, 서지학연구21, 서지학회, 2001), 조선시대 효자도 연구(이수경,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지식의 유통에 있어 삼강행실도 판화의 기능과 특징(윤진영,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8).

필자 이수경(李洙京)

삼년상
三年喪

정의 부모 사망 시에 애도의 의미로 자식이 상복을 입고 3년간 거상居喪하는 것.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고려 초기부터 삼년상三年喪을 지냈다. 그러나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단축하기도 하였다. 실례로, 경종은 삼년상의 달수를 날수로 고쳐 13일에 소상小祥을, 27일에 대상大祥을 치르도록 왕명을 내렸다. 그렇지만 삼년상을 치르는 관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고려 말기에는 정몽주鄭夢周가 부모상

에 3년간 시묘살이를 하면서 더욱 유행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사대부가에 일반화되었다.

내용 삼년상 기간에 자식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일체의 행동을 삼가며 상복을 입고 지냈다. 부모상을 당하면 관직을 그만두었고, 장례 이후에는 묘소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탈상 때까지 생활하였다. 이 기간에는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없으며, 아내와 잠자리도 할 수 없었다.

삼년상은 『의례儀禮』나 『가례家禮』 등에 실려서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예제가 되었다. 게다가 조선에서는 국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시하여 법으로까지 규정하였다. 『가례』는 '관혼상제'를 소개하는데, 상례喪禮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다. 사람이 사망하면 처음 행하는 초종初終에서, 27개월째에 행하는 담제禫祭까지 소개하였는데, 바로 담제의 앞인 25개월째에 이행하는 대상까지가 삼년상의 기간이 된다.

또한 『경국대전』「예전禮典」의 오복조五服條에서는 망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상복을 구분하되, 부모를 위해서는 3년 동안 상복을 입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인의 경우에는 1백 일 동안 복을 입도록 했는데, 삼년상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들어준다고 했다. 이것은 『중용中庸』에서 "일년상은 대부大夫까지 시행하고, 삼년상은 천자에게 시행되지만, 부모의 상은 귀천이 없이 하나이다."라는 말에 근거한 조치였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4일째에 상복을 입는다. 부친의 사망에는 참최삼년斬衰三年, 모친의 사망에는 재최삼년齊衰三年의 복을 입는다. 상喪을 당하고 3개월 만에 장례를, 만 1년이 되는 13개월째에 소상을, 2년이 되는 25개월째에 대상을 지낸 뒤 상복을 벗는다. 그리고 27개월째가 되면 담제를 지낸다. 소상의 날짜는 사망 후 돌이 되는 날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월 1일에 돌아가셨으면 소상일은 그 이듬해 1월 1일이다. 만약 이 기간에 윤달이 끼면 이를 무시한다. 소상을 지낸 뒤에 상주는 조석곡朝夕哭을 그치고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상복 중에서 남자는 수질首絰을, 여자는 요질腰絰을 푼다. 이어서 25개월째, 즉 만 24개월이 지나면 대상을 지낸다. 이때는 수질과 요질을 태우며 상장喪杖을 버리고 탈상脫喪한다. 27개월째에는 담제를 지낸다. 담제를 지낸 뒤에야 비로소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할 수 있다. 이후 다시 1개월 안에 택일하여 길제吉祭를 지낸다. 길제는 상주 부부가 부모를 이어서, 종손 혹은 종부의 역할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제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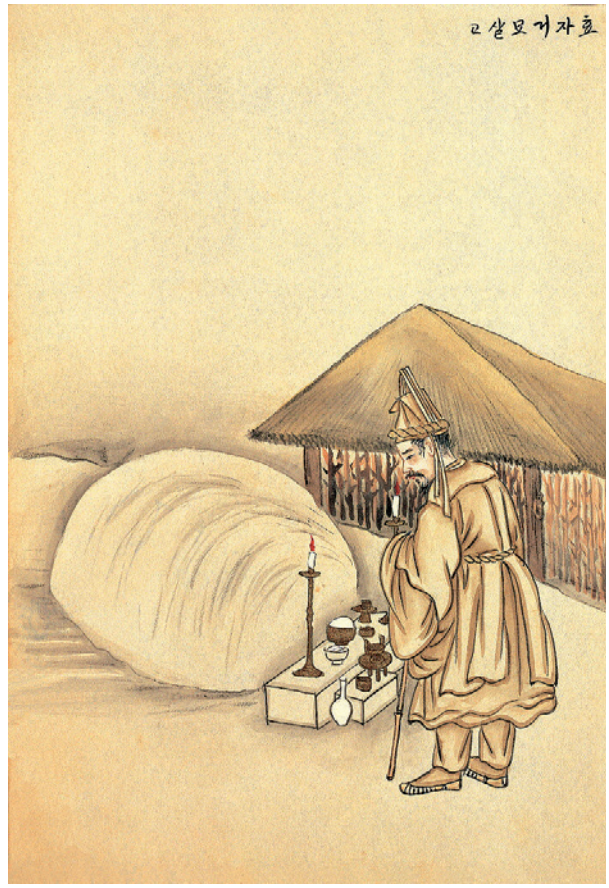

효자 거묘살고 | 김준근 | 조선 후기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특징 및 의의 삼년상은 인간이 태어나서 3년이 되어야만 부모의 품을 떠날 수 있다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즉 삼년상에는 적어도 3년이 될 때까지는, 살아있는 부모를 모시듯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여야 한다는 효사상이 담겨 있다.

참고문헌 家禮, 經國大典, 상례와 시묘살이(김문택, 조선시대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0),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문택(金文澤)

삼불거
三不去

정의 칠거지악에 해당해도 세 가지 경우에는 처를 쫓아내지 못한다는 규범.

역사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칠거지악七去之惡과 함께 나오며, 『소학小學』에도 실려 있다. 일곱 가지 쫓겨날 사유가 있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거나 부모 삼년상을 함께 치른 경우, 전에 가난하였다가 후에 부유하게 되었을 때는 여자를 내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 초기 유처취처有妻娶妻 문제를 해결할 때 잠시 근거로 인용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다. 성종成宗 때 폐비 윤씨를 폐서인廢庶人할 때 옹호론자 쪽에서 삼불거三不去를 근거로 제시한 적이 있다. 조선은 후기로 가면서 가족질서를 더 중시하여 이혼을 금기시하였기 때문에 칠거지악이나 삼불거는 논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용 삼불거는 시부모에게 불손, 자식 없음, 음탕한 행실, 투기, 몹쓸 병, 말이 많음, 도둑질 등 칠거지악의 출처出妻 사유가 있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고 부모 삼년상을 같이하였거나 함께 부를 일군 경우에는 내쫓을 수 없다는 규범이다. 삼불거는 칠거지악에 대한 일종의 보호조치라고 할 수 있다. 1425년(세종 7)에 이미라는 관직자는 아내 최씨를 쫓아내고 새로 강씨를 얻어 탄핵 대상이 되었다. 이미 자신은 최씨가 자식을 낳지 못하였고 삼불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출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국가는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함께 살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장 90대에 처하였다. 이미의 주장대로 삼불거에도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삼불거와 상관없이 가능하면 출처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의도가 들어간 것이다.

성종 때 윤자신도 삼불거 논의 대상이 되었다. 윤자신은 강자녕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첩妾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강씨를 버리고 전씨와 다시 혼인하였다. 이때 국가에서는 조강지처糟糠之妻를 버릴 수 없다는 점, 즉 삼불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강씨와 살게 하였다. 그런데 후에 강씨가 실제 첩의 자식인 것이 밝혀지자 윤자신의 수령 부임을 승인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때 논란이 있었지만 윤자신이 국가가 명한 삼불거를 지킨 것이니 윤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부임을 승인하였다. 기본적으로 이혼을 권하지 않는 조선사회에서는 삼불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삼불거 원칙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성종이 폐비 윤씨를 폐서인할 때도 신하 중에 삼불거를 들어 윤씨를 옹호하고자 한 사례가 있다. 이때의 논리는 윤씨가 삼불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삼불거라는 조항이 있으니 가능하면 윤씨를 폐서인하지는 말고 별궁에 거처하게 하자는 제안이었다. 또 투기는 칠거지악에서도 경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삼불거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출처할 수 있더라도 가능하면 출처나 이혼을 시키지 않으려는 뜻이 명백하다. 삼불거는 이혼을 막는 보호 조항으로 일단 유용하였고, 심지어 이혼을 막기 위해 확대 적용되기까지 하였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혼을 금기시하는 정책은 더 강력해진다. 조선 후기에는 국가가 허락하는 이혼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1713년(숙종 39)에 그 유명한 신태영 사건은 조선이 이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남편 유정기가 부인 신태영이 자신에게 패악悖惡하게 굴었다면서 이혼을 청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여러 날을 두고 의논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혼 찬성 쪽에서는 패악한 것은 '칠거지악'에 해당한다며 이혼을 허락하자고 하였다. 반면 이혼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단지 남편에게 욕설한 것은 엄연히 구타와 다른데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남편을 구타하면 이혼한다'는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동시에 신태영은 적처嫡妻이고 남편의 첩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이혼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긴 논의가 있었지만 끝내 신태영을 이혼하게 할 수 없었다. 유정기와 신태영의 잘잘못을 정확히 따지기 전에 이혼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혼은 아예 법전에도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신태영 사건은 조선의 혼인 보호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난 사례이다. 이처럼 혼인을 보호하고 이혼을 금기시하는 조선으로서는 '칠거지악' '출처' 등이 그렇게 의미 있는 주제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에 '삼불거'는 '칠거지악'과 더불어 잘 거론되지 않았다.

특징 및 의의 조선은 가족질서를 중시하는 만큼 이혼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칠거지악이나 삼불거 등은 별로 거론되지 않았다. 또 조선의 여성들이 유교적 가족윤리를 잘 실천한 것도 이혼이나 칠거지악 논의를 줄게 하였다. "조선에 칠거지악은 없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삼불거'도 논의 주제로 잘 떠오르지 않았다. 또한 조선에서 여자 집안이 대사회적 이익을 얻는 데 중요한 파트너로서 그 집안사람을 쉽게 내칠 수 없는 것도 삼불거 논의가 필요치 않은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孔子家語, 成宗實錄, 世宗實錄, 肅宗實錄, 계녀서의 탄생과 조선식 유교 젠더 규범의 성립(하여주, 조선시대사학보101, 조선시대사학회, 2022), 신태영의 이혼(강명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혼인제와 성차별(장병인, 일지사, 1997).

필자 이순구(李舜九)

삼종지도
三從之道

정의 어려서는 아버지를, 혼인해서는 남편을, 남편 사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여자의 세 가지 덕목.

역사 『예기禮記』「내칙內則」에 '부순婦順'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자는 시부모와 집안과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규범이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서 이 부순 개념이 좀 더 구체화되어 '삼종지도三從之道'로 나타났다. "幼從父兄 旣嫁從夫 夫死從子(유종부형 기가종부 보사종사)."라는 원문으로, '어려서는 아버지와 그 형제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따른다.'는 뜻이다. 집안의 대표성이 남성에게 있음을 보여 준다.

조선 초기에 광평대군 부인 신씨가 마음대로 온천에 가서 삼종지도를 벗어났다고하여 그 아버지 신자수에게 죄를 물은 적이 있다. 그리고 성종成宗 때 인수대비가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 철회를 요청하였을 때 성종이 받아들이려고 하자 신하들이 삼종지도를 들어 대비의 뜻을 막고자 한 사례가 있다. 대비라고 해도 아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성종 때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 신하들은 인수대비에게 삼종지도로 아들의 뜻을 따르라고 하였다. 인수대비가 성종이 왕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왕이 된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 비해 조선 후기 실록에서는 삼종지도를 언급한 사례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유교적 윤리가 정착되면서 여성들이 남편에 앞서 대표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내용 『공자가어』에서 삼종지도의 전제 조건은 '부인은 따르는 존재'라는 것이다. 즉 "여자는 남자의 가르침을 따라야 그 이치가 길러지는 것"이다. 이는 여자에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없고 삼종지도만 있다고 하였다. 『공자가어』의 삼종지도는 기본적으로 『예기』의 부순 항목의 내용과 통한다. 『예기』에서 부순은 부인이 시부모를 따르고 가족과 화합하며 남편에게도 따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집안이 조화롭고, 집안이 조화로워야 오래도록 가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의 역할 분담에서 안을 다스리는 부인에게 요구되는 윤리 덕목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따른다'는 원리가 여성의 남성에 대한 순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전제專制, 즉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해석에도 이르렀다. 위의 인수대비 사례를 보면 인수대비에게 삼종지도는 있어도 전제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삼종지도는 '전제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대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조선 현실에서는 여성에게 전제권, 즉 자기결정권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었다. 재산상속상 자녀균분상속子女均分相續으로 여자들의 상속분이 인정되었고, 또 그 관리권도 있었기 때문이다. 상속 후 매매·증여·

상속 권한이 모두 여성 자신에게 있었다. 거의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입후立後, 즉 양자하는 주체도 맏며느리인 부인이었다. 입후하는 시점이 남편이 사후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입후 결정권은 집안의 다른 남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인에게 있었다. 삼종지도에 의한다면 남편의 형제들에게 권한이 있을 것 같지만 조선에서는 부인, 곧 어머니가 양자하는 주체가 되었다. 입후하는 것은 대부분 맏아들 집안인데 이는 곧 맏며느리가 집안을 대표해서 입양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선의 여성들에게는 남자에 앞서서 집안을 대표하는 권한은 없어도 자신의 재산권을 의지대로 행사하거나 자신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권리는 있었다. 모든 면에서 삼종지도를 따라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다.

또 호적에 호주를 등재할 때도 남편이 죽고 없을 때는 과부인 부인이 호주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호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들이 어리거나 부역을 피하기 위해 여자가 호주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여성이 호주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 여성도 대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에서 열녀는 '삼종지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말해지지만 여기에서도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열녀 되기'의 압박이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최종 결정권은 여성 자신에게 있었다. 수절守節만 해도 되고, 심지어 재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열녀는 여자들에게 도덕성 실천이라는 의미가 컸다. 조선에서 여성 자신의 주체적 도덕성의 내면화가 없었다면 열녀 양산은 불가능하였다. 여성의 순종이 요구되는 지점에서 오히려 여성의 주체성이 드러나는 반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에서 여성들은 재산권 행사에 관한 한 삼종지도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재산권에서 스스로 사고팔고 또 증여를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어머니로부터의 재산'으로 자식에게 상속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 후기로 가면 종손 몫이 커지고 딸의 상속분이 적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경국대전』 상 균분상속 규정은 변한 적이 없으며, 적은 몫이라도 여성의 재산은 여성 자신의 것으로 인정되었다. 경제권에서의 자기결정권은 다른 어떤 권리보다 중요하였으므로 조선의 여성들은 사실상 삼종지도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선에서 기본적으로 여자 집안이 남자 집안과 대등하게 만나고 협력 파트너로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孔子家語, 丙子日記, 成宗實錄, 肅宗實錄, 禮記, 18세기 총부의 입후권(김보람, 한국문화9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계녀서의 탄생과 조선식 유교 젠더 규범의 성립(하여주, 조선시대사학보101, 조선시대사학회, 2022), 열녀 죽음인가 죽임인가(이순구, 한국여성사 깊이읽기, 푸른역사, 2013), 유교 가족 윤리와 여성 정체성(김미영, 철학연구33,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7).

필자 이순구(李舜九)

삼촌
三寸

정의 아버지의 남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친족용어.

내용 삼촌三寸은 아버지의 동기간同氣間 중에 남자 형제를 통칭하는 친족용어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위 형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손아래 남동생을 직접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법이고, 오늘날에 와서는 간접 호칭으로도 사용된다. 이에 대응하여 아버지의 여자 형제는 고모姑母라고 칭한다. 삼촌은 고모와 함께 계촌법計寸法에 따라 나와의 촌수가 3촌三寸인 매우 가까운 부계친족이다. 삼촌에게 나는 조카[姪]가 된다. 한편 어머니의 남자 형제에게는 외삼촌外三寸이라는 구별된 친족용어가 사용된다.

고모의 경우와 달리 삼촌에게는 아버지와의 연령관계에 따라 백부伯父와 숙부叔父로 구분하여 친족 지칭을 사용한다. 백부는 둘 이상의 아버지의 형 중 맏이가 되는 형을 가리키며, 큰아버지라고 부른다. 숙부는 아버지의 손아래 동생을 가리키며 작은아버지라고 부른다. 미혼인 숙부가 결혼한 후에는 삼촌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며, 숙부 혹은 작은아버지라고 한다.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백부와 숙부를 가리켜 삼촌숙三寸叔으로 기록하고 있다. 삼촌은 삼촌숙의 준말이다.

백부의 배우자는 백모伯母 또는 큰어머니라고 하며 숙부의 배우자는 숙모叔母 또는 작은어머니라고 한다. 아버지의 친형제 아들딸은 나와 촌수가 4촌四寸인 형제자매가 되며, 친사촌親四寸 또는 간단히 사촌四寸이라고 한다.

삼촌은 본래 친족 사이의 촌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촌수란 친족 사이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 또는 그런 관계를 뜻하며, 어느 친척이 나와 어떤 거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 준다. 할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아버지의 친형제親兄弟는 나와 3촌 관계가 되고, 증조할아버지의 손자가 되는 아버지의 종형제從兄弟는 나와 5촌 관계가 된다. 그래서 전자는 3촌 아저씨로서 삼촌숙三寸叔이 되고 후자는 5촌 아저씨로서 오촌숙五寸叔이 된다. 그리고 나는 삼촌숙에게는 3촌 조카가 되고 오촌숙에게는 5촌 조카가 된다. 한국의 친족용어 중에는 친족 간 촌수를 나타내는 말이 직접 호칭 및 간접 호칭으로 사용되는 예들이 있는데 삼촌과 사촌이 대표적이다.

부계친족의 삼촌과 달리 모계친족의 삼촌을 외삼촌, 외숙外叔, 외숙부外叔父로 칭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친족제도가 부계 계승 원리를 따르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국의 친족용어체계에서는 '외外'라는 접두어를 붙여 외척外戚, 즉 어머니 쪽 친족을 내가 소속해 있는 부계친족집단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로 구별한다. 이러한 부계친족제도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한국 속담도 여럿 있다. '삼촌 산소에 벌초하듯' '처삼촌 산소에 벌초하듯'이라는 말은 정성을 들이지 않고 마지못해 건성으로 일한다는 뜻이다. '외삼촌 사는 골에 가지도 말랬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외삼촌과 조카 사이란 매우 소원한 관계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아버지 형제를 어머니 쪽 외삼촌과 달리 '내 집단'의 사람, 즉 '진짜' 삼촌이라는 의미에서 친삼촌親三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지역별로 사용되는 ①삼촌과 ②외삼촌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친척용어를 친척지칭과 친척호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친족원		친척지칭	친척호칭	비고
경기 양평	①	백부와 배우자	백부	큰아버지	
			백모	큰어머니	
		숙부와 배우자	숙부	작은아버지/삼촌	혼인 전에는 '아재'로 부름
			숙모	작은어머니	
	②	외숙부와 배우자	외숙부	오삼촌	혼인 전에도 '오삼촌'으로 부름
			외숙모	외숙모	
인천 강화	①	백부와 배우자	큰아부지	큰아부지	
			큰어머니	큰어머니	
		숙부와 배우자	작은아부지	작은아부지	혼인 전에는 '삼촌'으로 부름
			작은어머니	작은어머니	
	②	외숙부와 배우자	오삼촌(외삼촌)	오삼촌/아저씨	
			오삼촌댁	오삼촌댁/아주머이	
강원 삼척	①	백부와 배우자	큰아버지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어머니	
		숙부와 배우자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혼인 전의 지칭 및 호칭은 '삼춘'
			작은어머니	작은어머니	
	②	외숙부와 배우자	외삼춘(외삼촌)	외삼춘	
			외숙모	외숙모	
충북 청주 (청원)	①	백부와 배우자	큰아버지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어머니	
		숙부와 배우자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혼인 전의 지칭 및 호칭은 '삼춘'
			작은어머니	작은어머니/ 작어머이	
	②	외숙부와 배우자	외삼춘/ 오삼춘(외삼촌)	외삼춘/오삼춘	혼인 전의 호칭 및 지칭도 '외삼춘'/ '오삼춘'
			외숙모	외숙모	
충남 홍성	①	백부와 배우자	백부	큰아버지	
			백모	큰어머니	
		숙부와 배우자	숙부	작은아버지	혼인 전의 지칭 및 호칭은 '삼춘'
			숙모	작은어머니	
	②	외숙부와 배우자	외숙/ 외삼춘(외삼촌)	외삼춘	
			외숙모	외숙모	

전북 고창	①	백부와 배우자	큰아부지	큰아부지	
			큰어매	큰어매	
		숙부와 배우자	작은아부지	작은아부지	혼인 전의 지칭 및 호칭은 '아재'
			작어매	작어매	
	②	외숙부와 배우자	외아재	외아재	'외삼춘'으로 변화가 일어남
			외아짐	외아짐	'외숙모'로 변화가 일어남
전남 진도 조도	①	백부와 배우자	큰아배	큰아배	
			큰엄매	큰엄매	
		숙부와 배우자	작은아배	작은아배	혼인 전의 지칭 및 호칭도 동일함
			작은엄매	작은엄매	
	②	외숙부와 배우자	외삼춘(외삼촌)	삼춘	혼인 전도 동일함
			외아짐	아짐	
경북 구미 선산	①	백부와 배우자	백부	큰아배	
			백모	큰어매	
		숙부와 배우자	숙부	작은아배/잔아배	
			숙모	작은어매/잔어매	
	②	외숙부와 배우자	이삼촌(외삼촌)	이아재	
			이숙모(외숙모)	이아지매	
경북 영덕 영해	①	백부와 배우자	백부	맏아배	
			백모	맏어매	
		숙부와 배우자	숙부	작은아배	
			숙모	작은어매	
	②	외숙부와 배우자	외숙	외아재	
			외숙모	외아지매	
경남 함양	①	백부와 배우자	백부	큰아버지	
			백모	큰어머니	
		숙부와 배우자	숙부	작은아버지	
			숙모	작은어머니	
	②	외숙부와 배우자	외숙	외아저씨	
			외숙모	외아주머니	
경남 통영 사량도	①	백부와 배우자	큰아부지	큰아부지	
			큰엄마	큰엄마	
		숙부와 배우자	작은아부지/삼춘	작은아부지/삼춘	혼인 전에는 '삼춘'
			작은엄마/숙모	작은엄마/숙모	
	②	외숙부와 배우자	외삼춘(외삼촌)	외삼춘	
			외숙모	외숙모	
부산 동래	①	백부와 배우자	큰아부지/백부	큰아부지	
			큰엄마/백모	큰엄마	
		숙부와 배우자	작은아부지/숙부	작은아부지	혼인 전의 지칭 및 호칭은 '삼촌'
			작은엄마/숙모	작은엄마	
	②	외숙부와 배우자	외삼촌	외삼촌	
			외숙모	외숙모	

출처: 한국의 언어 민속지(2009~2023)

한편 특이하게도 제주도에서는 남자 친척뿐만 아니라 여자 친척도 삼촌(삼춘)으로 부르는데 '촌수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 어른을 남녀 구별 없이 흔히 삼촌이라 불러 가까이 지내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삼촌은 특히 미혼의 숙부를 부르는 말인데 혼인 후에는 숙부 또는 작은아버지로 호칭을 바꾸는 것이 언어 예절이다. 이것은 결혼 여부가 동일 친족원에 대한 친족용어의 변화를 불러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혼인 여부에 따르는 중요성을 보여 준다. 한편 아버지 쪽 삼촌과 구별하여 어머니 쪽 삼촌을 외삼촌으로 칭한다. 전자가 아버지와의 연령 관계에 따라 백부와 숙부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후자의 경우는 어머니와의 연령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외숙부/외삼촌으로만 통칭한다. 이 또한 한국의 친족용어 및 친족제도가 남성 중심의 부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한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순이 삼촌(현기영, 창비, 2015), 한국의 언어 민속지-강원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기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상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한국의 언어 민속지-서편(왕한석, 교문사, 2009), 한국의 언어 민속지-전라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한국의 언어 민속지-충청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조숙정(趙淑晶)

삼춘

정의 제주도에서 남녀 구분 없이 웃어른을 높여 부르는 말.

내용 삼춘은 가족관계에서 삼촌三寸에 해당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지칭하는 말이다. 제주도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제 항렬行列의 친척 어른에게 '삼춘'이라 하고, 더 확장하여 남녀 구분 없이 친족과 마을의 웃어른을 통칭하여 삼춘이라 부른다. 즉 가족과 친족과 같은 마을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삼춘이라 호칭한다.

제주도에서 친족親族을 아울러 궨당이라고 하는데 더 큰 의미로는 혈연血緣과 지연地緣으로 연관된 사람을 궨당이라 한다. 그 궨당의 범주 속에서도 예우하여야 할 웃어른을 대체로 삼춘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 호칭의 범위는 더 확장되어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어 모든 웃어른을 편하게 '삼춘'으로 부른다. 가족과 친족을 넘어 지연으로 궨당의 호칭이 확장되었듯이 가족과 친족을 넘어 마을 웃어른에게까지 삼춘 호칭이 확장된 것이다.

궨당의 성격은 친척에 대한 지칭이나 호칭에서도 잘 드러난다. 세대별 구별만 뚜렷할 뿐 친족용어가 비교적 단순하다. 곧 손지(손자), 조케(조카), 성님(형님), 삼춘(삼촌), 하르바님(할아버지) 등으로 나뉜다. 같은 세대 안에서의 구별은 거의 없다. 부모 세대에서는 백숙부모, 고모, 고모부, 숙항叔行, 종숙從叔, 재종숙再從叔, 삼종숙三從叔이 모두 삼춘으로 통한다.

촌수 다음에 붙이는 '삼춘'의 의미는 숫자로 3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윗사람이라는 개념이다. 촌수를 따진다면 5촌이나 7촌으로 간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아버지의 형제와 똑같이 삼춘만큼 가깝다는 의미로 '삼춘'이라 부른다. 성가(친가)와 외가 구분도 명확히 하지 않고, 친척 간에도 촌수를 자세하게 따지지 않으려는 의식의 반영이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제를 지칭할 때는 큰삼춘, 족은삼춘(둘째), 말젯삼춘(셋째) 등으로 구분한다.

삼춘은 제주도 방언 가운데 가장 정겨운 호칭이다. 친족 계보를 허물고 촌수 개념도 무시하고 쓰이는 말이다. 문밖에 나가 어른을 만나면 "삼춘 어디 감수과?(삼춘 어디에 가십니까?)" 또는 "삼춘 어떵 지냄수과?(삼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삼춘 정심은 자십디가?(삼춘 점심은 드셨는지요?)"라고 인사치레하면서 마을 어른들을 으레 삼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실은 웃어른에게 '삼춘 어디 가시냐'고 묻는 것도 예절이 아니지만 예절도 그 삼춘이라는 호칭 속에 다 녹아들었든지 허물하지 않아 그렇게 불렀다.

제주도 토박이로 시골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이 삼춘이란 말을 두루 써 온 세대이다. 삼춘은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 모두에게 통용되는 호칭이다. 1978년 현기영의 〈순이삼촌〉이 발표된 이후 제주도의 '삼춘'이 남녀 어른 모두를 칭할 수 있는 호칭임이 널리 알려졌다. 아이가 어른 함자銜字를 함부로 부를 수 없음에도 '아무개 삼춘' 하면서 이름을 넣어 어른을 불러도 되는 것은 이 호칭만이 갖는 특별한 예외였다. 삼촌만이 누리던 이 독특한 어법을 이해하면 이 말이 지닌 정겨움을 알 수 있다.

자주 다니는 음식점이나 상점에 들러 주인을 삼춘이라 호칭하면서 "삼춘이 만든 빵 잘도 맛 좋수다."하고 말을 건네는 것이 제주도의 일상이다. 들길을 가다가도 농사일 하는 웃어른에게 '삼춘'이라고 부르며 말을 건네면 농산물을 맛보게 해 주는 것이 제주도의 접대법이다. 물질하고 있는 해녀들을 향해 '해녀 삼춘'이라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도 있다. 진료가 시작되고 어르신들로 넘쳐나는 복지관에서 가장 많이 들린 말은 '삼춘'이었다. 이처럼 삼춘은 남녀 어른들을 구분하지 않고 편히 부를 수 있는 말이다.

2019년 제주관광공사는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읍·면 단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삼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읍·면 농촌지역에 전문인력(삼춘PD)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다. 관광자원 발굴 및 기획, 지역자원 홍보, 마을사업 연계 및 지원, 유통판로 개척 등에 마을의 웃어른들, 즉 삼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삼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확대하려 하고, 열정적인 삼춘이 그 주역으로 활동하게 하였듯이 제주 문화의 중심에는 삼춘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제주도에는 웃어른을 편안하게 호칭하는 삼춘이라는 말이 있다. 말을 거는 대상이 조금 손위인 경우라면 '삼춘'이라 부르면 만사가 해결된다. 편히 부르

는 말이지만 상대를 존대하는 정신도 담겨 있다. 삼춘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와 생업의 모든 지혜를 잘 알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주역들이다.

제주도는 마을공동체가 아직도 살아 있어 생산과 의례를 함께해 왔다. 관혼상제 공동체는 계와 접으로 서로를 엮어 나가고 있다. 마을 대소사를 위한 그릇계, 소를 함께 방목하고 공동으로 키우는 목장계(쇠접), 장례를 위한 상여계, 마을에 큰일이 났을 때 물을 길어 주는 부조 등 상부상조하는 공동체가 존재한다. 생로병사를 함께하니 친족만 삼춘이 아니고 마을 구성원 전체, 지역 전체 웃어른을 친근하게 삼춘이라 호칭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이창기, 제주사회론, 한울, 1995), 제주도지5(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도, 2006), 제주사회론2(신행철 외, 한울, 1998), 디지털제주문화대전(jeju.grandculture.net),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ijto.or.kr).

필자 허남춘(許南春)

상객
上客

정의 신랑이 장가들기 위해 신부의 집으로 갈 때, 혹은 신부가 혼례를 마치고 시집으로 갈 때, 신랑집과 신부집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어른들.

내용 예로부터 혼례식을 할 때는 신랑이 신부댁으로 가서 치르게 되는데, 이때 신랑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집의 어른들도 동참한다. 혼인은 신랑·신부만이 치르는 것이 아니고 양가 어른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문 대 가문이 인연을 맺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양가를 대표하는 어른들도 참석하게 된다. 혼례식 때에는 신랑 쪽의 상객上客이 참석하게 되고, 우귀于歸 때에는 신부 쪽의 어른들이 참석하게 된다. 이때 동행하여 참석하는 양가의 어른들이 상객이 되는데, 지역에 따라 '상각'이라고도 한다.

상객은 보통 아버지나 백부, 혹은 숙부가 되지만, 조부가 살아계시면 조부가 상객으로 간다. 상객은 체

혼례행렬 | 가로16 세로12 |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통을 세우느라 부채를 들고 가는데, 신부집에 들어갈 때 내외를 하느라고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가는 도중에는 함구하는데, 입을 열면 복이 나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신부집에 이르면 신부집에서 상객을 모실 안내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 일행을 임시 대기처로 안내한다. 이곳을 '정방' 혹은 '사처'라고 하는데, 신부집 근처에 마련되어 있다. 신랑 일행이 도착하면 신부집에서는 바쁘게 움직여 이들이 요기할 음식과 술을 갖다 나른다. 이때 신부집에서는 상객을 맞이할 대반對盤을 파견하는데, 이 대반은 상객과 비슷한 연배의 남자 어른으로 친절하고 예절을 갖춘 사람이 맡는다.

혼례 시간이 되면 신랑과 상객들은 혼례청에 입장하여 엄숙하게 혼례를 지켜본다. 혼례가 끝나면 상객 대반이 와서 상객들을 상객방으로 모셔간다. 그리고 준비한 큰상을 들여와서 대접한다. 그리고 대반이 참석하여 음식과 술을 권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상객은 집이 멀지 않으면 당일에 돌아가지만, 집이 먼 경우에는 하룻밤을 묵어가는데, 이때에는 대접을 극진히 한다.

상객이 떠나기 전에 신랑과 신부는 상객을 찾아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신부댁 어른들도 나와 깍듯이 인사를 나누고 이별한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을 '우귀'라고 하는데, 신랑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우귀'지만, 신부 입장에서는 난생 처음으로 시가에 가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신행간다'고 한다. 신부가 신행갈 때에는 시어른에게 드릴 음식과 폐백을 준비해 간다. 이 행렬에는 신부집의 어른들이 따르게 되는데, 이른바 신부집 상객들이다.

특징 및 의의 혼례 때 따라가는 상객은 아버지나 삼촌 등 신랑댁의 어른이 참례하는 것이 상례이나 대가족제가 성행하던 조선시대에는 할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으레 할아버지도 참석했다. 상객은 가장 큰 손님이기 때문에 신부댁에서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대접했다. 신행 때에는 신부집의 상객들이 따라가는데, 신부의 부모는 가지 않고 삼촌이나 오빠들이 신부를 배행했다. 이들이 돌아올 때는 신부에게 모든 것을 삼가고 삼가서, 시가의 법도에 따라 시집살이 잘 하기를 신신당부했다.

참고문헌 경남지방의 혼속 고(배도식, 민속문화1, 동아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속 한국민속문화연구소, 1978), 한국 민속의 현장(배도식, 집문당, 1993), 한국민속대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의 전통혼례연구(박혜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향토문화지(여증동, 경상남도, 1989).

필자 배도식(裵桃植)

상례
喪禮

정의 사람이 태어나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죽음을 처리하고 가계의 계승을 정상화하는 의례.

역사 고분과 고인돌, 육탈하는 복차장複次葬 등 선사시대부터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일정한 형식의 상례가 있었다. 삼국시대에는 기록으로도 나타난다.「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고구려조高句麗條의 "혼인하면 곧바로 죽어서 입을 옷을 만든다."라는 기록에서 수의襚衣, 널과 덧널의 존재에서 습襲과 염殮, 그리고 장사하는 날의 택일, 집안에 차리는 빈소殯所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이 다르긴 하지만 1년 혹은 3년의 상복제가 있었고, 신라에서는 504년(지증왕 5)에 상복법 제정, 귀족의 예장禮葬을 시행했다. 또한,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과 무열왕武烈王의 상례에는 빈장殯葬도 행했다. 단편적이지만 이러한 기록을 통해 유교식 상례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신라에서는 불교식 화장 중심의 상례가 성행했었다.

고려시대에는 운명하면 집이나 원찰願刹에 빈소殯所를 마련하여 일정 기간 모셨다가 날을 잡아 화장하였다. 그래서 유골을 수습하여 길게는 6년간 권안權安하면서 자손과 승려가 극락왕생을 기원한 후 본장을 하는 불교식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985년(성종 4) 오복제도五服制度를 정하고 오례五禮의 틀 속에 흉례로서 상례를 위치시킨다. 그 결과 삼일장을 금하고 13개월에 소상小祥, 25개월에 대상大祥, 27개월에 담제禫祭를 지내는 유교식 상례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3년이 너무 길다고 하여 달을 날로 바꾸어 계산하는 일역월제日易月制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는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으면서 상례 역시 유교식으로 일원화한다. 초기부터 숭유억불정책에 따라 7품 이하 관료에게 의무적으로『가례家禮』를 시험 보게 하고『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1394)『경제육전經濟六典』(1397)『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경국대전經國大典』(1485) 등의 법전을 편찬하여 모든 제도와 의례를 유교식으로 전환한다. 상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결과 16세기 초반부터 이미 조선식 예서禮書들이 등장하였고, 성리학자의 예학 연구와 실학자의 실천예학 연구 등 유학자의 솔선수범으로 유교식 상례는 점차 일반화하기에 이른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유교식 상례는 완전한 조선의 상례문화로 정착하여 조선 말기까지 이어진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 화장이 도입되고 〈의례준칙〉(1934)이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상복의 변화, 상기의 단축 등 전통의례를 강제하면서 상례의 문화적 전통이 위기에 봉착한다. 그럼에도 1900년에『사례편람四禮便覽』이 증보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출판되어 문화적 전통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1969년 대한민국 최초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과 함께 〈가정의례준칙〉이 공포되고, 1999년 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현재까지 국가가 간소화를 명분으로 일생의례로서 개인의 의례를 '규제'하였지만, 문화적 전통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로 상기의 단축, 상복의 변화 등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장례식장과 상조회사相助會社의 장례지도사가 상례를 대행하면서 의례의 전문직업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내용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죽음이고 이를 처리하는 의례가 상례이다. 그래서 『국조오례의』에서는 길吉·가嘉·빈賓·군軍·흉凶의 오례五禮 중 하나인 흉례凶禮로 상례를 다루었다. 흉례에는 임금이 유언으로 나라의 뒷일을 부탁하는 국휼고명國恤顧命을 비롯하여 총 91개 항목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대부사서인상의大夫士庶人喪儀를 두어 민간의 상례도 제도로 정하였다.

죽음을 보는 종교적 견해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시신을 처리하여 이승과 분리하는 것이 의례의 핵심이 된다. 다른 하나는 죽음을 조상숭배를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견해로, 고인을 조상으로 승화하기 위해 오랜 기간 의례를 치른다. 유교식 삼년상이 이러한 의례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신주神主를 모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유교식 상례는 19개의 대절차로 구성되고 그 안에는 수많은 소절차가 포함되는데, 대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초종의初終儀: 죽음의 확인 및 상례를 준비하는 절차이다.
②습襲: 1일째 의례로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는 시신처리의 첫 단계이다.
③소렴小殮: 2일째 의례로 시신을 베로 싸서 묶는 절차이다.
④대렴大殮: 3일째 의례로 시신을 입관入棺하는 절차이다. 요즘은 목욕과 습, 소렴과 대렴을 한번에 처리하며, 염습殮襲이라 한다.
⑤성복成服: 4일째 의례로, 상주가 상복喪服으로 갈아입고 정식으로 상주가 되는 절차이다.
⑥조弔: 조문을 받는 절차로, 성복 후부터 조문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⑦문상聞喪: 상주가 출타 중 부고訃告를 받았을 때 행하는 의례로 상가로 뛰어가는 분상奔喪을 한다.
⑧치장治葬: 장사葬事할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등 장사 지낼 준비를 하는 절차이다.
⑨천구遷柩: 발인 전날 영구를 옮길 것을 고하고, 다음날 발인 전에 고인을 영원히 보내는 견전遣奠을 지낸다.
⑩발인發靷: 견전을 지낸 후 상여가 장지로 떠나는 일이다. 중간에 노제를 지낸다.
⑪급묘及墓: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는 절차이다. 먼저 방상시方相氏가 광중壙中의 잡귀를 몰아낸다. 하관下棺하고 봉분을 만들며, 신주에 글씨를 쓰는 제주題主를 하고 제주전題主奠을 올린다.
⑫반곡反哭: 새로 만든 신주와 혼백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
⑬우제虞祭: 시신을 보내고 영혼을 맞이하여 편안히 한다는 의미의 제사이다. 처음으로 맏상주가 주인이 되어 지내는 흉제凶祭로,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초우 후 유일柔日, 혹은 다음날에 재우再虞, 그다음 날 혹은 강일剛日에 삼우三虞를 지낸다. 삼우제 때 혼백을 산소에 묻고 성묘한다.
⑭졸곡卒哭: 삼우 후 강일에 지내는 제사로 무시곡無時哭을 그쳐 슬픔의 강도를 줄이는 의례이다.
⑮부제祔祭: 제주한 고인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게 되었음을 고하는 의례이다.
⑯소상小祥: 1주기 제사로 추모와 상주의 슬픔을 경감하는 의례이다. 연복練服이 슬픔이 줄었음을 상징한다.
⑰대상大祥: 운명 후 2주기에 지내는 제사로 빈소를 철거하여 탈상한다. 소복이 슬픔의 감소를 상징한다.
⑱담제禫祭: 탈상 후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한 시절을 더 기다린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로 27개월째에 지낸다. 담복禫服이 이를 상징한다.
⑲길제吉祭: 사당의 신주를 상주의 이름으로 바꾸고, 당일에 개제한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친진親盡한 신주를 체천遞遷하거나 매주埋主하는 상례의 마지막 절차이다. 『가례』에는 없으나 『의례儀禮』「사우례士虞禮」에 따라 『상례비요喪禮備要』와 『사례편람』에서 보충하였다. 길제를 마치면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간다.

신주를 모시지 않으면 신주와 관련된 습과 염의 절차가 통합되고, 천구·부제·길제 등의 대절차가 생략되어 약 15~16개 절차로 진행된다. 또한, 작주作主, 제주, 제주전과 같은 소절차도 생략된다. 그리고 신주를 모실 때는 대렴을 해야 죽음을 인정하고 우제를 지내 조상신으로 인정하지만, 신주가 없을 때는 운명과 동시에 죽음을 인정하고 성복하면 곧바로 조상신으로 인정하는 차이가 있다.

상례는 고인의 시신을 처리하는 의례이지만,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여 가계 계승을 정상화하는 의례적 장치이기도 하다. 초종의에서 급묘까지가 죽음을 처리하는 장사葬事라면, 우제에서 길제까지는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하고, 상주가 일상으로 돌아와 가계를 계승하는 상례喪禮였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삼년이라는 기간을 요구한다.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졸곡卒哭에서 무시곡無時哭을 그치고,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에서 역복으로 상주의 슬픔을 경감하며, 빈소殯所를 철거하여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한다. 또한, 담제를 지내면서 완충 기간을 두고, 길제를 지내면서 상주의 의무를 마친 주손冑孫으로 주인의 역할을 바꾸면서 삼년상을 마무리한다.

지역사례 유교식 상례의 근본은 차이가 없으나, 환경과 상황 및 지역에 따라 그 시행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가례家家禮'라고 하여 집안, 지역, 학자에 따라 의례가 다르지만 세부적인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영남지역에서는 주부主婦가 길제 때 원삼에 족두리를 쓰는데, 이것은 새로운 주손과 집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영남지역에서는 관을 유택幽宅이라고 하여 반드시 맏사위가 준비하는 것으로 여긴다. 경기도 가평 등의 지역에서는 조릿대라는 봉을 들고 '회다지'를 한다. 기호지역에서는 관을 제거하고 매장하는 퇴관退棺 혹은 탈관脫棺을 한다. 서남 해안에서는 초분草墳을 한다.

유교식 상례가 문화적 전통이 되는 과정에서 '사잣밥' '취토' '회다지' 등과 융화하면서 지역 특성으로 진화하기도 한다. 진도의 '진도다시래기', 전라도의 씻김굿, 중부지역과 경상도 및 강원도 영동지역의 오구굿(진오구굿) 등이 그것이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 상례의 특징은 유교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 조선의 고유문화와 융화하여 우리 고유의 유교식 상례로 변화하고, 이것이 상례의 문화적 전통으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상례는 고인, 영혼, 조상신, 상주라는 네 개의 주체가 등장하여 상례를 구성한다는 주체론으로 구조분석을 할 수 있다. 첫째, '고인을 위한 의례'는 시신

천구

견전

상복을 입은 상주들

상례 | 충남 태안 | 1961 | 국립민속박물관

처리를 위한 의례로, 상례의 초반부에 등장한다. 둘째, '영혼을 위한 의례'는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시키는 전 단계의 영혼과 관련된 의례이다. 셋째, '조상신을 위한 의례'는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시키는 의례로 매장 이후에 집중된다. 넷째, '상주와 그의 공동체를 위한 의례'는 전 과정에 걸쳐 나타난다. 이러한 네 개의 주체를 위한 의례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3년간의 대서사시를 엮어나간다.

지금까지 상례는 효의 실천이라는 철학적 의미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상례는 구성원 상실의 위기를 극

복하는 의례로 해석할 수 있다. 상례는 죽음의 충격을 완화하고 죽은 자에 대한 애통과 아쉬움의 여운餘韻을 표현하는 장치이다. 여운은 슬픔이 줄어드는 '점차'와 차마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차마'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여운은 첫째, '3'과 관계 깊다. 초혼할 때 반드시 세 번 불러야 하고, 3일에 걸쳐 시신 처리를 하며, 3일이 지나야 죽음을 인정하고, 세 단계를 거쳐야 조상신으로 승화된다. 둘째, '반복과 추가'의 과정을 거친다. 소상을 지내면 다시 대상을 지내야 하고, 다시 미더워 담제와 길제를 지내 마무리한다. 이처럼 상례는 고인을 보내는 아쉬움, 조상신으로 승화시키는 아쉬움을 여운으로 표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상례는 죽음을 처리하는 의례이기에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적인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종교의 상례 역시 기본 틀은 전통상례와 닮은 것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諺解, 四禮便覽, 士儀, 喪禮備要, 유교의 상제례에 담긴 생사의식(김기현, 유교사상연구15, 한국유교학회, 2001),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Celebrations of death(Richard Huntington·Peter Metcalf,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The rites of passage(Arnold van Gennep, Monika B. Vizedom·Gabrielle L. Caffee, Univ of Chicago Press, 1960).

필자 김시덕(金時德)

상속
相續

정의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

내용 상속相續은 사유재산제도와 함께 발달하여 왔다. 전통시대에는 부모가 생전에 유산을 분재하는 생전분재生前分財가 원칙이었으며, 부모가 분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자손이 분재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자손에게 전해야 하는 '조업祖業'으로 인식하여 같은 피가 흐르지 않은 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불효로 여겨 금하였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가업家業, 가산家産, 재산財産, 재財 등이라고 하였다. 현대에도 상속은 당연히 인정되며, 다만 '부의 세습'에 따른 불평등 보완에 주의하고 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도 상속은 당연히 인정되었는데 당률唐律의 영향을 받은 『고려사高麗史』「형법刑法」 호혼조戶婚條의 "조부모·부모의 생존 시에는 자손은 호적을 달리하고 분재[別籍異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도徒 2년, 복상服喪 중에 별적이재하면 도 1년에 처한다." 라는 규정은 이상법으로 실효성이 없었다.

상속인의 순서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직계자녀, 즉 딸도 출가 여부를 불문하고 아들과 함께 상속하였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손자녀가 대습상속代襲相續하였으며, 자녀에는 수양자녀收養子女·시양자녀侍養子女도 포함되었다. ②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가 망亡 배우자의 재산 등을 상속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의 유산은 아내가 개가改嫁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모두 종신終身 동안 상속하며, 사망 전에 계후자繼後子나 수양자녀·시양자녀를 입양하면 이들이 상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남편과 아내의 유산으로 분리되어 각자의 본족本族이 상속하였다. 본족은 조부를 공통 조상으로 하는 사촌 이내의 자손으로, '사손使孫'이라고 한다. 사손, 즉 상속인이 없으면 유산은 국가에 귀속되었다.

상속재산은 토지·노비·가옥과 동산動産이며, 원칙적으로 남녀균분상속이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전시과田柴科 제도와 관련하여 이론이 있다. 1046년(정종 12)의 판判에 나오는 '제전정연립諸田丁連立'의 규정인데 전정田丁은 적장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설은 "토지는 적장자와 판에서 규정한 순서에 따라 단독 상속하였는데, 고려 중기에 전시과 체제의 붕괴와 농장農莊 성립·확대 그리고 토지의 경제적 가치 증가 등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산되었으며, 드디어 고려 말의 과전법科田法 하에서 분할상속이 공인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반대설은 "고려시대는 초기부터 토지사유제가 확립되어 토지도 자녀균분상속제였으며, 위 판의 규정은 일반 토지가 아닌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토지인 전정의 상속순위에 관한 법적 규정일 뿐"

분급문기 | 가로83 세로59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1690년 3월 15일 어머니 강씨가 2남 3녀에게 전답과 노비 등을 나누어 준 문서.

이라고 한다.

부모가 생전분재를 할 경우에도 심히 차별할 수 없었고, 사후분재인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고려 말에는 차등상속 때문에 분쟁이 폭주하여 따로 임시재판관청을 설치하였고, 이 경험은 조선 초기의 상속법 정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 사천조私賤條에서 노비 상속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토지 등 다른 재산에도 적용되었다. 부와 모의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될 때도 구분되어 부변父邊 전래와 모변母邊 전래 등으로 표시되었다. 상속재산은 우리 고유용어로 '衿[깃]'으로 표현하였는데 '깃'은 '남긴다'의 고어인 '기티다'에서 나온 것이며, '몫'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생전분재가 원칙이어서 부모가 생전에 연로하였을 때나 자녀의 혼인과 과거급제 등을 계기로 수시로 분재를 하였으며, 그때마다 상속문서인 분재기分財記를 작성하였다. 이를 '허여許與'라고 하였다. 생전분재를 하지 않았거나 분재에서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부모 삼년상이 끝난 후에 협의로 분재하였다. 이를 '화회和會'라고 한다. 유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인정되었지만 남녀균분상속 관습과 의식 제한을 강력히 받았기 때문에 법정상속法定相續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의 원칙은 ①혈연상속 ②남녀균분상속 ③적서嫡庶 차별 ④제사祭祀 중시이다. 상속은 '피가 흐르는 곳에 재산이 간다'로 표현되는 혈연상속이었다. 혈연상속의 예외로 제사를 지내는 자에 대해서는 '봉사조奉祀條'로 상속이 인정되었다. 상속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자녀로서 적자녀·첩자녀·양자녀이며,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다. 또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손, 즉 (외)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인정되었다. 적자녀에는 제사를 승계하는 계후자가, 양자녀에는 3세 이전에 거두어 기른 수양자收養子와 3세 후에 거둔 시양자侍養子가 포함되었다.

②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되었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은 처분권이 제한된 종신수익권終身受益權이었다. 배우자 사후에는 본족이 상속하였다. 그러나 주자학 이념과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보급되면서 제사가 중요해짐에 따라 자녀 없이 사망한 처의 재산은 그의 본족보다 봉사자가 상속하는 경우가 후대로 갈수록 늘어났다.

③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 혈족인 사손使孫이 상속하였다. 그 순서는 1)형제자매, 2)3촌 조카, 3)4촌 형제, 4)3촌 숙부·숙모·고모·이모, 5)4촌 형제자매이다.

④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로 귀속되어야 하지만 마을에 재산을 귀속시켜 그 재산으로 망자의 제사를 지냈다.

상속분은 친자녀 여부, 자녀의 신분 그리고 제사 승계의 유무에 따라 달랐다.

①적자녀 사이에는 균등하였으며, 다만 제사를 승계하는 승중자承重子는 봉사조로 1/5을 더 받는 것은 물론 가묘家廟가 있는 집과 제사용 재산을 독점적으로 상속하였다.

②양첩자녀는 적자녀와 1:6, 천첩자녀는 1:9의 비율로 상속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부는 첩자에 대해 법정비율 이상으로 증여하였다. 다만 적자가 없어서 첩자가 제사를 승계할 때는 봉사조로 2분을 가급加給하여 적녀와 각각 1:2, 1:3의 비율이었다. 적자녀가 없는 경우 양첩자녀와 천첩자녀는 4:1의 비율로 상속받았으며, 제사승계인에 대한 봉사조는 적자와 같았다.

③적모와 혈연관계가 없는 양첩자녀는 전체의 1/7,

천첩자녀는 노비 3구 이내에서 1/9을 상속하고 승중첩자에게는 각각 2분을 가급하였다. 나머지는 적모의 본족이 상속하였다.

④전모前母·계모繼母와 후처·전처의 자녀는 혈연 관계가 없는 의자녀義子女로 원칙적으로 상속할 수 없었다. 다만 전모 등에게 자녀가 없으면 의자녀는 본족과 1:4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승중의자는 1: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또 전모 등에게 자녀가 있어도 부의 승중의자는 자녀와 1:8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⑤자녀가 없을 때 수양자녀는 친자녀와 같았고, 시양자녀는 전체의 1/6을 상속받았으며, 나머지는 본족이 상속하였다.

⑥적자녀가 있을 때 수양자녀, 시양자녀는 1:6와 1:9로, 양첩자녀와는 6:1, 천첩자녀와는 3:2, 수양자녀와 시양자녀는 6:1 비율로 상속을 받았다. 계후자는 친자와 같게 상속하였으며, 환관宦官이 환관을 양자녀로 하였으면 수양자와 동일하게 상속하였다.

위 '사천조'의 상속 규정은 고려 이래의 관습을 성문화成文化한 것으로, 실효성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 생전에 별급別給으로 차등이 있었지만 심하지는 않았고, 만약 유언으로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난명亂命'으로 그 효력이 부정되었다. 사후에 화회의 경우 노비는 성별·연령·건강상태, 토지는 지목地目·거리·비옥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균분이었다. 불균분을 이유로 한 소송에서는 '관작재주官作財主'라 하여 관에서 직접 분재를 하였고, 또 상속재산이 침해된 경우에는 5년의 제소기간提訴期間에 구애받지 않고 제소할 수 있었다. 이는 후에 30년으로 제한되었다. 균분상속은 이처럼 의식과 제도에 의해 강력하게 보장받았다.

조선 전기에는 남녀균분상속이 철저하게 준수되었는데 두 차례의 전란을 거친 후 상속 관행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노비제의 붕괴와 토지의 황폐화로 상속 대상 재산이 격감하여 균분상속을 유지하면 재산이 영세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입향조入鄕祖를 중심으로 하는 동성同姓 촌락이 확산되었으며, 지역에서 가문의 위상은 입향조의 현양顯揚과 직결되었고, 이는 가문의 경제력에 좌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균분상속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으며, 그래서 주제자인 종손이 재산을 단독 내지 우대 상속하여 가문의 경제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주자가례』의 보급으로 혼속이 반친영제半親迎制로 됨에 따라 내외관념內外觀念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친조부와 외조부를 차별하였다. 그래서 아들딸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거행하는 전기의 제자녀윤회봉사諸子女輪回奉祀 관행은 남녀차등상속·제자諸子윤회봉사로 변하였다.

윤회봉사는 주제자主祭者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제사를 소홀히 할 우려가 크며, 그래서 주제자인 장자를 상속에서 우대하면서 제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때는 경국대전에 1/5로 규정된 봉사조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장자우대상속·장자단독봉사가 성립하였다. 지역과 가문에 따라 다르지만 16세기 중엽에 그 단초가 보이기 시작하여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일반적으로 되었다.

식민지기

조선총독부는 1912년 〈조선민사령〉을 공포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친족상속에 대해 조선의 관습을 법원으로 인정하였다(제11조). 그리고 상속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감부기부터 전국에 걸쳐 관습조사를 하여 『관습조사보고서』(1910, 1912)를 간행하였으며, 조선총독부 취조국取調局과 중추원中樞院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습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관습은 최종적으로 조선고등법원의 판결로 확립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제사 승계와 재산상속 외에 호주상속제도戶主相續制度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호주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1933년 3월 3일의 조선고등법원판결로 제사승계를 부인하였다. 그리고 그 기본적 원리를 호주상속에 적용함으로써 상속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두 종류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예외 없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함과 동시에 호주가 소유하였던 전 재산도 함께 상속하는 일본의 가독상속家督相續 원리가 이식되었으며, 이는 광복 후 상속법의 기본틀이 되었다.

호주상속의 특징은 가적家籍을 강조하여 원칙적으로 동일 가적에 있는 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기혼녀의 재산상속권은 박탈한 점이다. 즉 호주와 가족의 사망을 구분하고, 남녀를 분리하여 관습을 정립한

것이다.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호주에 국한하고, 관습상 인정된 수양자·시양자와 같은 이성양자異姓養子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상속권을 박탈하였다.

일제강점기의 가장 큰 변화는 딸의 재산상속권 박탈과 장자독점상속화 기도이다. 상속인에게 형제가 있으면 상속분은 장자가 3분의 2, 차남이 3분의 1, 형제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장자가 2분의 1, 차남 이하는 2분의 1을 균분하며, 서자는 적자의 2분의 1로 하였다. 유산은 장자가 일단 독점상속하고 차남 이하는 호적상 분가分家한 후 분재청구권分財請求權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분가동의권은 호주인 장자에게 있으므로 호주가 분가에 동의하지 않는 한 차남 이하는 분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사실상 장자가 영구적으로 유산을 독점하였다.

이러한 관습의 변용은 일본식 호주제도에 따른 장자독점상속을 관철시킴으로써 법의 동화를 촉진하려는 것이었다.

현대

〈민법〉을 제정할 때 전통을 존중하는 '순풍양속론淳風良俗論'과 헌법 이념에 입각한 남녀평등론이 대립되었다. 1958년 전자를 기본으로 하고 후자를 참조하는 보수적 입장에서 절충한 〈민법〉 제5편 상속법이 제정되었다(1960년 시행).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되는 가제도家制度를 기반으로 하여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을 규정하였다. 호주상속은 일제강점기의 호주상속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규정하였고, 재산상속도 기본적으로는 같다.

상속법은 〈민법〉 제정 후 20년인 1977년 법정상속분에 관한 제1009조가 개정되었고, 유류분遺留分제도가 신설되었다. 1990년에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친족법의 일부로 하고, 제정 〈민법〉의 호주의 권리를 폐지하여 호주는 가를 대표하는 형식적인 지위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 또 재산상속이 상속의 유일한 것이 되면서 '상속'으로 용어도 개정되었다. 아울러 여성계의 오랜 노력 끝에 호주승계는 헌법재판소에서 가와 호주제도가 헌법 이념과 불합치하다는 결정과 함께 2005년 〈민법〉(2008. 1. 시행)을 개정하여 폐지되었다.

〈민법〉에서 상속법의 특징과 변천은 다음과 같다.

①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하여 재산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개시되도록 하였다.

②재산상속인의 범위는 제정 〈민법〉에서는 동일호적 내의 유무를 불문하고 8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확대하였다가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4촌 이내로 축소하였다.

③딸의 상속권을 부활시켰지만 차별하였다. 상속분은 제정 〈민법〉에서는 호주상속인, 아들, 동일가적 내에 있는 딸,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은 1.5 : 1 : 0.5 : 0.25로 하였으며, 1977년 개정 〈민법〉에서는 1.5 : 1 : 1 : 0.25로,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모든 자녀의 상속분을 동일하게 하였다.

④유처遺妻의 상속권을 강화하였다. 유처는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제정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남자 상속분의 2분의 1, 남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남자와 균등하며,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 상속하도록 하였다. 1977년 개정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아들 상속분의 5할을 가급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급하게 하였다.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유처를 배우자로 하여 남녀평등을 도모하였다.

⑤혼인 외 출생자인 서자녀庶子女는 재산상속에서 혼인 중 출생자와 차별하지 않았다.

⑥1977년 개정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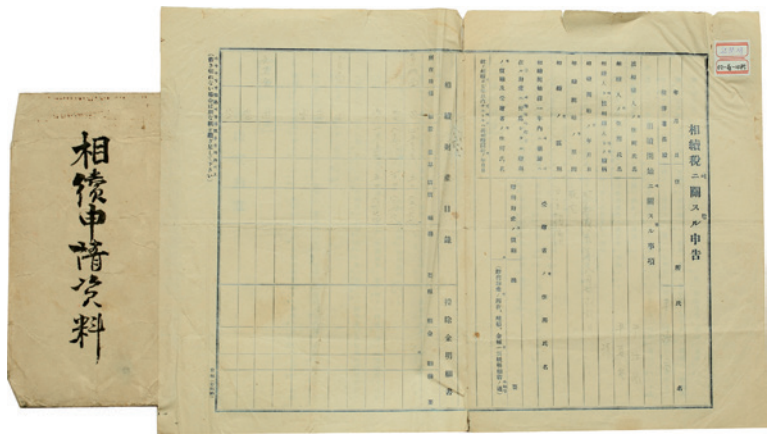

상속신청일괄문서(논산 파평윤씨 명재 후손 윤완식 기증) | 가로39 세로27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상속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상속을 신청한 문서.

하여 직계비속 등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언의 자유와 충돌하여 상속분쟁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현재 폐지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⑦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 대해 우대하는 '기여분제도'와 상속인이 없어서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요양간호를 한 자 등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의 분여를 인정하는 '특별연고자 분여제도'를 신설하여 상속에서 실질적 합리성을 도모하였다.

⑧제사승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제정 〈민법〉에서는 묘토와 금양임야禁養林野 등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게 하였으며,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도록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현행 상속법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확립된 상속관습이다. 이는 호주의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전전戰前 일본 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다. 조선 후기의 상속 관행과 주제자主祭者의 지위는 일본의 호주와 유사할 정도로 강력하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적 상속관습의 형성 내지 확립은 이전의 사회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큰 저항 없이 가능하였다. 그 이전의 관습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할 뿐 제도는 아니었다.

일제강점기의 상속은 사람이 따라야 하는 제도이고 관습이었다. 일제강점기의 유령이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현행 〈민법〉에서는 가부장제에 바탕을 둔 가와 호주제도가 폐지되었고, 재산상속에서도 남녀평등이 규정되었다. 이제 개인을 바탕으로 한 가족과 상속제도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었다. 이제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만 남았다.

남녀균분상속의 법에도 상속에서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장자를 우대하고 딸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수긍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서는 남녀평등의식 강화와 경제적 상황 등으로 상속을 둘러싼 분쟁, 특히 유언과 유류분 관련 소송이 급증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남녀평등의식 강화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가족 해체라는 부정적인 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참고문헌 가족끼리 왜 이래(박민제, 동아시아, 2018), 식민지기 관습법의 형성과 한국가족법(정긍식, 법사학연구40, 한국법사학회, 2009),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조선시대 제사승계의 법제와 현실(정긍식,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친족상속법 강의(윤진수, 박영사, 2022),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한국근대법사고(정긍식, 박영사, 2002), 한국법제사(박병호, 민속원, 2012),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정긍식(鄭肯植)

상주
喪主

정의 상례喪禮를 주관하는 사람.

역사 '상주를 세운다[立喪主]'는 조항은 물론, 상주라는 용어도 고례古禮에는 보이지 않는다. 『서의書儀』를 따라, 『가례家禮』에서는 상주를 세우는 것이 초혼招魂을 마치고 주부主婦와 호상護喪 그리고 사서司書와 사화司貨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진행된다. 이후 『가례의절家禮儀節』과 『명회전明會典』의 「품관상례」 등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반영된다.

내용 예서의 맥락에서 상주에 해당하는 용어는 '주인主人'이다.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서 "군주의 상[大事]인 경우, 상복喪服의 곱고 거친 정도를 가지고 서열을 삼으며, 군주 친족의 상일 때에도 그처럼 하고, 주인

조문객을 맞이하는 상주 | 충남 천안 | 1985 | 국립민속박물관

의 아래에 자리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 정현鄭玄은 "주인은 상을 주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主人 主喪者."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에서 "주인은 빈賓(손님)에게 배례한 다음, 실室로 들어와 시신을 눕혀 놓은 침상尸床 동쪽에 앉는다. 중주인衆主人은 주인의 뒤에 선다. 주인과 중주인 모두 서쪽의 시신을 향한다. 부녀자들은 시상尸床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신을 향해 앉는다."라고 한 것에 대해 정현은 "중주인은 주인의 여러 형제들이다衆主人 庶昆弟也."라고 해설했다. 이에 따르면, 주인은 상을 주관하는 한 사람, 즉 상주이고 중주인은 상주의 형제들을 가리킨다.

『예기』「증자문曾子問」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증자가 물었다. '상에 두 상주喪主가 있고 사당에 두 신주神主가 있는 것은 예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땅에는 두 왕이 없으며, 상嘗·체禘·교郊·사社 등의 제사에서 높이 받드는 대상이 둘인 경우는 없다. 그것이 예에 맞는지는 모르겠다.'" 이에 대해 원대의 진호陳澔는 "두 상주, 두 신주를 둔 경우가 당시에 있어 증자가 예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의심하여 물은 것이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고, 땅에는 두 왕이 있을 수 없다. 상·체·교·사는 제사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각각 높이는 대상이 있으므로 뒤섞어 함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상례에 두 상주를 두고, 사당에 두 신주를 두어서야 되겠는가? 예가 아님이 분명하다."라고 하였다.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고 땅에는 두 왕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예기』「상복사제喪服四制」에도 보이는데, '통일성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以一治之'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다시 말해, 국가와 집안의 전일적 지배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상례와 제례를 주관하는 주체로 한 사람을 설정한 것이라는 말이다. 상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오복친五服親의 범위에서 취하고, 오복친이 없다면 다시 이웃집에서 취한다.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마을의 어른이 주관한다."라고까지 하였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가례』에서는 초종初終의 절차에서 초혼을 마친 뒤에 '상주를 세운다'고 규정한 뒤, 본주本註에서 "무릇 주인은 장자長子를 말한다.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승중하여 궤전饋奠을 받든다."라고 하였다. 『가례』에도 중주인에 대한 언급이 있다. '천구遷柩'의식의 "널을 받들고 조상에게 하직인사를 한다奉柩朝於祖."라는 의절의 본주에 "천구하려고 역자役者가 들어오면 부인은 물러나 피한다. 주인과 중주인이 집장輯杖을 하고 서서 살펴본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례』의 경우도 고례와 마찬가지로 주인과 중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주인에 대해서는 '상주'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주와 인사하는 조문객 | 경남 창녕 | 1993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상주는 대체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세수도 하지 않고, 하늘에 죄를 지었다는 의미로 방립方笠이나 굴갓을 썼다. 또한, 부모상을 당했을 때 성복成服 전까지 상의의 한쪽 팔을 끼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왼팔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오른팔을 끼지 않았던 것이라고 한다. 이런 차림은 죄인임을 뜻할 뿐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신 급박한 상황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할 정도로 상주가 충격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상주는 관과 수의壽衣, 상복喪服 등을 준비하는 한편, 묏자리를 잡고 산역山役 준비를 해야 한다.

〈가정의례준칙〉 제18조에서는 '장자'를 '주상主喪'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복인들을 '상제喪制'라고 표현하고 있다. '주상'이 '상을 주관한다'는 의미의 서술어+목적어 구조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서에 존재한다. 만일 '상을 주관하는 사람', 즉 '상주'의 의미로 사용하려면 '주상자主喪者'가 되어야 한다. 이는 '일을 담당한다'는 뜻의

상주의 장례 행렬 | 서울 | 1995 | 국립민속박물관

'집사執事'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의 의미가 되려면 '집사자執事者'로 표현해야 하는 것과 같다. 다만, 현재의 일상 용례에서 '집사'는 '집사자'의 의미로 전환되어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면, '주상'을 '상주'의 의미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상제'는 예서의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용어로서, 맏상주 이외의 상주를 가리키는 기호 지역의 사투리라는 보고가 있다. 예서는 물론 『가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주인'과 '중주인', 또는 그에 대한 우리말 해석인 '맏상주' '둘째 상주' '셋째 상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참고문헌 家禮, 書儀, 禮記, 가정의례준칙, 전통 상례(임재해, 대원사, 2000), 한국의 상례(양승이, 한길사, 2010),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장동우(張東宇)

상피제
相避制

정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대상자 상호간에 공공 부문에서 사적 인연으로 공적 업무 수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

역사 한국에 도입된 상피제相避制는 중국의 회피제回避制에서 유래되었다. 후한後漢 시기인 2~3세기 무렵에 가까운 친척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는 기록을 통해 매우 이른 시기부터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중국에서는 꾸준히 회피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명나라 시기에는 친족 회피에 이어 같은 출신 지역의 회피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중국의 회피제는 이처럼 일정 범위 이내의 친족이 동일 관청이나 주종관계에 놓인 관청에 근무할 경우를 방지하고 있었다.

또한 관청에서의 상피뿐만 아니라 소송관계에서의 상피도 행하였다. 당나라 시기에는 형사피의자와 사법 관리 사이의 친족관계는 물론 사승관계나 원한관계에서도 상피를 적용하였다. 한편 과거시험의 채점자나 감독관과 수험생 사이에도 상피를 적용하였다. 사적인 관계에 따라 공적인 객관적 평가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피를 적용한 것이다.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관료제官僚制가 정비된 고려시대 때부터 상피제가 확인된다. 고려시대 상피제는 중국과 달리 주로 관료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 적용되었다. 또한 친족관계에서의 상피가 대부분이다. 고려시대는 관료제가 작동한 시기이면서 유력한 문벌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시대에는 집권한 국왕의 변화나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피제가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고려사高麗史』에 나오는 상피제는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 부모와 형제는 물론 동성 친족과 외가·처가 모두 4촌 이내의 범주에 드는 이들을 상피제 적용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 관료가 같은 관서官署나 종속관계에 있는 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을 규제하였다. 다만 이러한 규정적인 상피제가 있었음에도 고려시대에는 상피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정비되면서 이와 연동하여 상피제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조선시대 상피제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우선 관리 임용과 관련된 상피제가 대표적이며, 이어 과거 시험관의 상피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송과 관련된 상피제가 마련되었다.

첫째, 관리의 임용과 관련한 상피제를 마련하였다.

이때 상피의 대상 범위는 친족이었는데 동성 친족의 경우 4촌 이내로 제한되었다. 다만 외가와 처가의 경우 적용 범위가 다소 완화되었다. 또한 당하관堂下官 이하의 모든 관원에 상피를 적용하였지만 당상관堂上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피에서 제외하였고, 군사나 재정 등과 관련한 특별한 경우에만 별도로 상피를 설정하였다. 이는 당상관 이상의 관직자를 상피에 적용할 경우 그 친족들의 관서 배분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만일 상피가 적용되면 더 낮은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서를 옮겨야 하였다. 상피 적용 대상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보다 치밀해지고 세밀하게 정비되었다.

둘째, 과거 시험관과 수험생의 인적 관계가 얽힌 경우 상피제가 적용되었다. 과거시험 장소는 보통 1소所와 2소 등의 명칭에서 보듯이 복수의 공간에 마련해 두었다. 이에 따라 시험관과 수험생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수험생을 다른 시험장으로 옮겨 시험을 보게 하였다. 또한 수험생 상호 간이 친족관계인 경우, 예컨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시험을 보거나 형제가 함께 시험을 볼 때도 공간을 달리하여 시험을 보게 하였다.

셋째, 소송과 관련한 상피제이다. 소송사건은 보통 원고와 피고가 있으며, 또한 재판관이 존재한다. 이들의 인적 관계가 친족으로 얽혀 있다면 공정한 송사訟事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을 맡은 관원의 상피는 자연스럽다. 조선시대에는 형조刑曹, 한성부漢城府, 장예원掌隷院, 사헌부司憲府 등 송사와 관련된 다양한 관서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관과 원고·피고 등이 친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재판관을 다른 관서로 이동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다른 관서로 이관하였다. 다만 이럴 때 소송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이처럼 상피제는 관료들이 상호 간 혈연적인 친밀감으로 인해 공무 수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작되었다. 업무상 관련성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동일한 관서나 종속관계에서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는 관서에는 혈연적으로 무관한 관료들을 임용함으로써 관료들의 사적 이익 추구나 권력 남용 혹은 집단화 등을 방지하였다.

특징 및 의의 상피제는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데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정한 제도였다. 공공 부문으로는 주로 공직 인사와 관련되어 있으나 과거시험 같은 국가시험과 형사·민사소송 같은 사법적 절차에서도 사적인 인연으로 공적 업무 수행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것을 포함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상피 원리였다. 다만 시기나 지역에 따라 상피의 적용 범위나 대상은 달라졌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공직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피제가 치밀하게 작동하였다.

한편 전근대 시기 상피제는 권력기관의 합리적 균형과 견제 원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근대 시기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 신권을 제약할 필요가 있었고, 신하들이 친족 집단으로 결속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피제를 활용한 측면도 있다. 이때의 상피제는 공적인 이해충돌이라는 기능보다는 집권자인 국왕의 정치적 이해에 반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된 것이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17세기 사림정치의 정국동향과 상피제 운영(이기명, 동국사학40,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04), 고려시대의 상피제(김동수, 역사학보102, 역사학회, 1984), 조선왕조 상피제의 역사적 의의(이재룡, 법학연구20-1,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조선전기 상피제 전개와 기능(박천우·이기명, 장안논총20-1, 장안대학교, 2000), 조선초기 상피제의 성립과 그 과정(이기명, 동국역사교육7·8, 동국역사교육회, 199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나영훈(羅榮勳)

서양자
婿養子

정의 가계 승계를 위해 딸을 혼인시킨 뒤 사위를 양자로 들이는 행위 또는 그 양자.

내용 서양자婿養子는 일본 사회에서 유행하던 가계家系 계승 방법으로, 일종의 데릴사위제로 이해된다. 데릴사위제는 전근대 한국 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으나 혼인 후 사위가 처가에서 거주하더라도 처가의 가계를 승계한다는 관념이 없다는 점, 사위가 법률상 양자로 입양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에서 유행

한 서양자와는 차이가 있다.

서양자가 처음 한국 사회에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1930년대 중반 중일전쟁中日戰爭이 발발하기 전부터 일제는 조선인의 전쟁 협력을 유도하고 사상적 단속을 위하여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더욱 강조하였다. 그리고 1939년 조선총독부제령朝鮮總督府制令 제20호 〈조선인의 씨명 변경에 관한 건〉을 공포함으로써 창씨개명創氏改名을 비롯한 이성양자異姓養子와 서양자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서양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양을 신고하는 동시에 혼인을 신고함으로써 그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서양자와 그의 자녀는 처가에 입적하되 혹시라도 서양자가 이혼하거나 파양하여 처가를 떠나더라도 서양자의 직계비속은 처가를 떠나지 않고 남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서양자제도는 이성異姓을 통해서도 가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생성하여 기존에 부계친父系親 중심으로 형성된 조선의 전통적 혈연 관념을 약하게 하고, 조선과 일본의 민족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부각하여 향후 예정된 전시물자 동원에 대한 조선의 반발과 저항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그 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미군정美軍政 때에 이르러 군정법률 제122호 〈조선성명복구령〉이 공포됨으로써 일본식 성명의 사용을 강요하였던 창씨개명은 무효가 되었고, 이와 함께 시행되었던 이성양자와 서양자제도도 함께 폐지되었다. 이로써 광복 이후에는 서양자로서의 혼인과 입양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서양자 입양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처리되었다.

한국에 서양자제도가 다시 등장한 것은 대한민국 〈민법〉을 처음 제정하면서 그 내용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민법〉 제876조(서양자)(일명: 친족법)에 의하면 사위를 양자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양친의 호적에 입적하게 하였다. 또한 입양으로 형성된 부자 관계는 혼인 관계의 발생과 소멸에 영향을 받지만 입양을 무효·취소하거나 파양하더라도 혼인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즉 혼인을 전제로 입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입양 관계보다 혼인 관계를 더 우선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서양자의 본관과 성씨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서양자가 부친의 본관과 성씨를 따라야 한다는 견해와 서양자가 모친의 본관과 성씨를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하였다. 더욱이 남편을 데려와 혼인하는 입부혼인入夫婚姻과 같은 견지에서 서양자를 이해한다면 서양자의 자녀는 모친의 본관과 성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처럼 현대 한국의 법률에서도 서양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실제 서양자를 신고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1990년 〈민법〉이 개정될 때 해당 법규가 전면 삭제되면서 서양자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사위를 양자로 들여 가계를 잇게 한 서양자는 한국의 전통적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식민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한 제도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서양자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살펴봄으로써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을 고찰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일제의 신민화 정책에 관한 연구(최영호, 국사관논총67, 국사편찬위원회, 1996), 친족상속법(김주수, 법문사, 1969), 한국 가족법 읽기(양현아, 창비, 2011), 한국가족법연구(정광현,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현행민법 시행 전 이성양자 및 서양자의 허용여부(이홍민, 가족법연구25-3, 한국가족법학회, 2011).

필자 고민정(高旻廷)

서얼
庶孼

정의 첩의 자식.

역사 서얼庶孼은 첩妾의 자식을 말하는데 첩의 신분이 양인이냐 천인이냐에 따라 서자庶子와 얼자孼子로 나뉜다. 서자는 때로 적자嫡子, 즉 맏아들에 대한 차자次子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예기禮記』「대전大傳」에서 "종자宗子는 제사를 주관할 수 있지만 서자는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할 때는 차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첩의 자식이라는 뜻이다. 주나라 때 유왕幽王이 후궁 포사를 황후로 삼고 그 아들을 서자에서

태자로 세웠는데 후대에 적嫡·서庶를 문란케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대 이래 적·서 구분이 있고, 서자는 신분상 불이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까지 처·첩 혹은 적·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는 구분되고 신분상의 차이도 생겼다.

조선 초기 왕자의 난 때 태종太宗은 세자 방석芳碩을 서자로 규정하였다. 정도전 등이 서얼을 끼고 난을 일으키려 해서 바로잡았다는 것이 왕자의 난의 명분이었다. 그러나 조선 초기까지는 유자광이 논란 속에서도 청요직淸要職인 정랑 자리에 오르는 등 서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뚜렷하지 않았다. 조선에서 적·서 구분이 좀 더 명확해진 것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서자 과거금지 등 규정이 정비되면서부터이다. 성종成宗 조 이후 적자와 서자 구분이 엄격해지고 서자의 신분적 한계가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

내용 『경국대전』「예전禮典」에 "서얼 자손은 문과, 생원·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서얼에 대한 가장 큰 제약이다. 과거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양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조선의 현실에는 수많은 양반 서자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문과를 볼 수 없었다. 서얼들에게는 치명적인 한계였다.

또 혹시 관직에 나아간다 해도 서자에게는 올라갈 수 있는 품계가 한정되었다. "문무관 2품 이상의 양첩자손良妾子孫은 정3품에 한하고 천첩자손賤妾子孫은 정5품에 한하며, 6품 이상의 양첩자손은 정4품에 한하고 천첩자손은 정6품에 한한다. 7품 이하로부터 관직이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의 양첩자손은 정5품에 한하며 천첩자손은 정8품에 한한다."는 『경국대전』「이전吏典」의 한품서용限品敍用 조항은 그 한계를 잘 보여 준다. 아버지의 품계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서자의 품계가 정해져 있었다. 아무리 높아도 2품 이상은 갈 수 없었다. 모든 적자들에게 품계의 한계가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서얼금고庶孼禁錮, 한품서용限品敍用 조항은 곧바로 서얼허통庶孼許通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서얼의 수가 워낙 많은 데다가 서얼들 중에 인재가 있는데 쓰지 못한다면 국가적 손해라는 인식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록 기사에는 명종 대부터 서얼허통 논의가 나타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허통은 잘 실현될 수 없었다. 1613년(광해군 5)에는 '칠서七庶의 옥'이라 하여 양반가 7명의 서자들이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하였다는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계축옥사癸丑獄事로도 불리는데 이때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이 사사賜死되고 영창대군이 유배되었다가 죽었다. 양반가 서자들이 관직에 나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새로운 왕을 옹립하고자 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허통 논의는 1894년 신분제 폐지 때까지 끊임없이 논의되었다. 특히 정조正祖 때는 실제 많은 서얼들을 규장각 학사로 기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들이 관직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서녀들에게도 제약이 따랐다. 서자들이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서녀들은 양반가의 정식부인이 될 수 없었다. 서녀를 양반가에서 부인으로 맞아들이면 어머니 신분에 따라 그 아들이 온전한 양반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춘향전春香傳〉이 걸작이 된 것은 춘향이가 이도령의 정식부인이 됨으로써 이러한 신분적 한계를 깨뜨렸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서녀들은 대개 서자와 혼인하거나 양반의 첩이 되었다.

서얼들은 경제적으로도 제약을 받았다. 『경국대전』에는 노비를 상속할 때 적자녀는 균분, 양첩자손은 7분의 1, 천첩자손은 10분의 1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적자녀에 비해 상속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첩자손에 비해 천첩자손의 몫은 더 적었다.

더구나 얼자, 즉 천인에게서 난 서자의 제약은 더 컸다. 가령 관직자로서 노비에게서 자식을 얻으면 그 자식은 충순위忠順衛에 소속시켜야 하였다. 아버지가 양반이라 해도 어머니 신분이 노비이면 일단 노비이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속신贖身, 즉 비용을 치러야 하였다.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허통운동은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허통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서얼들은 많은 경우 집안관리, 즉 집사 일을 맡아 하였다. 이는 『병자일기丙子日記』에 나오는 천남이와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에 나오는 노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수는 특히 백부의 재단을 운영하는 집사의 역할을 통해 거부가 되어 집안 족

보에서 자신의 '서庶' 자를 빼줄 것을 요구하였다. 신분 상승을 도모한 것이다. 노상추의 통단에도 집안 의견은 '서' 자를 빼 주는 쪽으로 기울었다. 허통과는 또 다르게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서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에서 처첩 구분이 유난히 강하였던 것은 적처 집안의 위상이 높았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여자 집안은 남자 집안과 파트너 관계로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 적처 집안은 집안 내 권리를 전유하기 위해 첩과 서자를 그 권리로부터 배제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중요한 특징이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盧尙樞日記, 明宗實錄, 丙子日記, 禮記, 16·17세기 서얼 허통 상소문 연구(박경남, 한국한문학연구52, 한국한문학회, 2013), 우반동 김씨 가문 내에서 서자의 역할과 활동(전경목, 장서각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조선 초기 서얼의 차대와 신분(최이돈, 역사학보204, 역사학회, 2009), 조선의 가족 천 개의 표정(이순구, 너머북스, 2011).

필자 이순구(李舜九)

서옥제
壻屋制

정의 신랑이 결혼한 이후 처가에 집을 지어 주고 일정 기간 머무르는 혼인 방식.

역사 서옥제壻屋制는 고구려시대에 전형적으로 나타난 혼인제도이다. 혼인한 뒤 사위를 위한 집을 처가에서 마련해 주고, 그 집을 한자어로 서옥壻屋이라고 불렀다. 신라나 백제에도 존재한 혼인 방식으로 짐작되지만, 구체적인 문헌 증거는 매우 빈약하다.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의 다른 표현으로, 조선 중·후기까지 지속되었다.

내용 서옥제는 고구려시대의 혼인과 거주 양식을 규정한 방식이다. 우선 역사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오환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夷傳」을 보면 서옥제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 풍속은 혼인할 때 구두로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에서 (집 안의) 본채〔大屋〕 뒤편에 작은 별채〔小屋〕를 짓는데, 그 집을 서옥壻屋이라고 부른다. 해가 저물 무렵에 신랑이 신부의 집 문 밖에 도착하여 자기 이름을 밝히고 절하면서 신부의 집에 머물기를 청한다. 이렇게 두세 번 거듭하면 신부의 부모는 그때야 서옥에 가서 자도록 허락하고, (신랑이 가져온) 돈과 폐백은 (서옥) 곁에 쌓아 둔다.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其俗作婚姻 言語已定 女家作小屋於大屋後 名壻屋. 壻暮至女家戶外自名跪拜 乞得就女宿. 如是者再三 女父母乃聽使就小屋中宿 傍頓錢帛. 至生子已長大乃將婦歸家."

이 사료를 통해 먼저 고구려의 혼인 방식에 대해 알 수 있다. 당시 고구려에서는 젊은 남녀의 혼인을 서면 대신 구두로 정하였다. 이를 자유혼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자유혼이나 중매혼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 서면보다는 구두를 우선하는 혼인 방식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즉 문서가 아니라 구술로 약속이 명확하게 이루어졌고, 지켜졌음을 보여 준다.

혼례 후 신랑은 신붓집을 방문하여 첫날밤을 치를 수 있도록 인사를 한다. 형식적 허락을 구한 다음 미리 준비한 서옥에서 첫날밤을 치른 후 부인과 함께 처가에서 일정 기간 생활한다. 아이가 클 때까지 부인의 집, 즉 처가에서 생활하다가 자신의 본가로 돌아간다. 이는 장가를 먼저 들고 시집을 후에 가는 순서로 혼인이 진행되는 방식을 잘 보여 준다.

서옥제를 데릴사위제 혹은 초서혼招壻婚[솔서혼率壻婚]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데릴사위제는 처가에서 평생 거주하는 부거제父居制와 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초서혼이나 솔서혼·데릴사위제는 아니고, 20세기 중반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행해진 서류부가혼이다.

특징 및 의의 서옥제는 한국의 문화역사에서 혼인과 거주 양식에 관한 방식으로, 3세기 당시 고구려 주민들의 일상 민속 생활을 설명해 준다. 서옥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류부가혼 방식은 오랜 기간 한민족의 생활 민속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서옥에 쌓아 두는 전백錢帛(돈과 폐백)이나 신랑이 처가에 머물면서 노동하는 것을 통해 서옥제를 매매혼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는 매매혼이라기보다 혼

례에서 일정한 예물을 재물이나 용역으로 바치는 예물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서옥제는 신랑이 결혼하기 위해 신붓집을 방문하고 머물면서 봉사를 우선 행하고, 봉사가 끝난 후 혼인하게 되는 봉사혼과도 구분된다. 서옥제는 혼인한 연후에야 신붓집에 머물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三國志, 고구려 서옥제의 혼인형태(김선주, 고구려발해연구13, 고구려발해학회, 2002), 고구려사 연구(노태돈, 사계절, 1999),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이광규, 일지사, 1975),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박혜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8).

필자 강정원(姜正遠)

선계
選系

정의 상황에 따라 아버지 쪽 또는 어머니 쪽으로 혈통을 선택할 수 있는 출계율.

개관 선계選系, ambilineal descent rule는 남태평양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잘 나타나는 출계율出系律로, 혈통을 부계나 모계 중 어느 하나에 고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출계율이다. 아버지가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는 경우 자녀들은 아버지의 혈통집단에 속하지만 아버지가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 자녀들은 어머니의 혈통집단에 속한다. 또한 생계방식이 상이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생계방식을 따르고자 할 경우에는 아버지의 혈통집단에, 어머니의 생계방식을 따르고자 할 경우에는 어머니의 혈통집단에 속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혈통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 적응력이 뛰어난 출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선계는 단계單系출계율의 일종으로, 혈통이 부계나 모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부계 또는 모계를 선택할 수 있는 출계율이다. 부계와 모계를 다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양계兩系처럼 보이지만 어느 상황에서나 부계 또는 모계 중 하나만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계출계율 성격을 띤다.

남태평양의 사모아섬Samoa Island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혈통집단은 이런 선계를 따른다. 이 사회는 수많은 혈통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혈통집단은 외혼제 단위이다. 모든 개인은 아버지의 혈통집단 또는 어머니의 혈통집단 중 어느 하나에 속할 수 있다. 주로 자기가 살면서 경작하고 있는 땅을 소유한 혈통집단에 속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기가 속한 혈통집단(A 혈통집단)에 토지가 부족하여 결혼과 함께 아내가 속한 혈통집단(B 혈통집단)으로 들어가 그 집단의 토지를 이용하여 생활한다면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의 혈통집단(B 혈통집단)에 속하게 된다. B 혈통집단에 속한 남자가 결혼하여 아내를 데리고 와서 B 혈통집단의 토지를 이용하여 생활한다면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혈통집단인 B 혈통집단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혈통집단이 부계 또는 모계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는 것을 선계라고 한다.

선계는 생계방식에 따라 혈통이 선택되기도 한다. 농업을 하는 혈통집단 소속인 아버지와 어업을 하는 혈통집단 소속인 어머니를 둔 아들이 농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버지의 혈통집단을, 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머니의 혈통집단을 선택할 수 있다. 선계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토지 규모가 작고 혈통집단의 공유 재산이 부족한 곳에서 선계가 잘 나타난다. 선계는 혈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에 대한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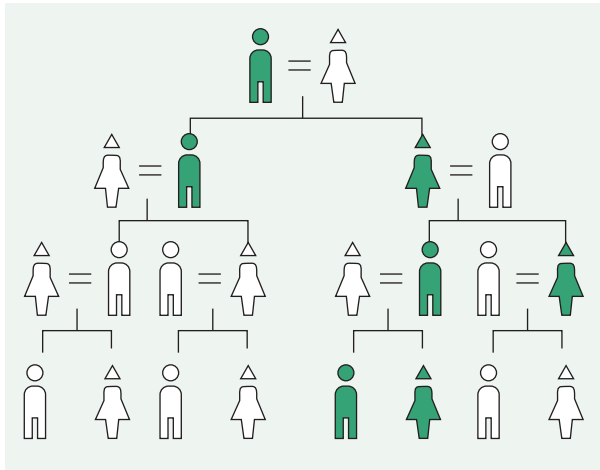

선계

력이 뛰어난 출계율이라 할 수 있다.

선계는 세대에 따라 출계율이 다르게 구성된다. 즉 아버지 세대는 부계로, 자기 세대는 모계로, 아들 세대는 다시 부계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혈통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공통된 조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조 입장에서 보면 어떤 후손은 아들로 이어진 자손이고 또 다른 어떤 후손은 딸로 이어진 후손이지만 이들이 모두 같은 조상의 후손이며, 같은 친족집단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

특징 및 의의 출계율은 규칙이지만 이 규칙이 교과서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부계로 혈통집단을 구성하는 사회라 하더라도 외손봉사外孫奉祀처럼 제사나 재산이 외손, 즉 혈통집단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상속될 수도 있다. 이런 융통성은 선계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부계와 모계 중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있다는 것은 택하지 않은 다른 혈통집단에 대해서도 일정한 발언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선계로 혈통집단을 정하는 콰이오Kwaio 부족의 경우 때에 따라 부계혈통집단 구성원으로서 또는 모계혈통집단 구성원으로서 행동하며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원칙으로서의 출계율과 구체적인 행동으로서의 혈통집단 성원권은 상치하기도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문화인류학개론(한상복·이문웅·김광억,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현대문화인류학(Roser Martin Keesing, 전경수 역, 현음사, 1985).

필자 김창민(金昌民)

선산
先山

정의 선대의 무덤이 있는 산으로, 한 문중의 조상을 모신 산.

개관 무덤을 말할 때 선산先山은 선영·선묘·선롱과 같은 말로 쓰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계 후손들은 조상의 무덤이 모여 있는 일가의 묘산을 선산으로 부르며, 일반 명칭으로는 종산·족산이라고도 한다.

내용 선산은 일가 종친들의 무덤이 대대로 모셔진 곳이다. 대개 동족촌락 부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재실·묘각 등을 설치하여 시제時祭 또는 묘제 때 종친들의 회합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선산은 종산·족산과 같은 뜻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며, 고려 후기에 성리학性理學이 도입되면서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전해졌고, 이와 함께 본격적인 유교식 상장례喪葬禮가 정착되면서 그 유서由緖가 마련되었다고도 본다. 고려 후기 이전에는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화장火葬이 유행하여 장지葬地가 대를 이어 마련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다가 고려 말기에는 종법제도宗法制度에 의해 제사를 모시고 봉사奉祀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후 조선 전기의 과도기를 거쳐 조선 후기에는 종손·종가 의식이 강화되면서 문중門中이 형성되고, 이와 함께 각 문중은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경쟁적으로 선산을 마련하여 문중의 사유지로 변화하게 된다.

선산이 마련되고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문중과 같은 친족집단의 형성 및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종법제도가 시행되고 봉사 범위가 넓어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문중이라는 동성의 친족집단은 문중산·종중산이라고 불리는 선산을 마련하였다. 선산은 묘와 그에 부속된 임야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대부분 선영 근처에 사는 자손들이 의장義莊 성격으로 보존·관리하며, 묘의 기지基地를 제외한 임야에서 나오는 수익이 위토의 일종이 되기도 한다.

종중에서는 종중 사람들에게만 낙엽·마른가지·풀

행주기씨 선산의 묘소 | 경기 고양 | 2002 | 국립민속박물관·최호식

김장생 묘소 일원 | 충남 논산 | 2015 | 이해준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송계松契·금송계禁松契를 만들기도 하고, 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무의 채취량과 벌목 시기를 정하여 무단으로 벌채하는 것을 막기도 하였다. 종가나 종중원들은 이러한 조직적인 운영으로 선산의 종중재산을 관리하였으며, 이를 늘려 나가기도 하였다.

선산 주위에는 재실齋室 등을 마련하여 시제時祭를 지냈고, 묘지 관리비용이나 종중·문중의 제사 비용은 주로 위토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하였으나 간혹 산림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종중 성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또 묘지기를 두어 선산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구한말 이후로는 종중조직의 약화, 제사의 간소화,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의 도입 등으로 종중재산으로서의 선산 기능이 점차 축소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근래에 묘제墓祭를 기제忌祭보다 중요시하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어 여전히 자손들이 선산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선대의 무덤이 있는 산으로, 한 문중의 조상을 모신 산 또는 한 종중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일족의 묘를 쓴 산이다. 선산은 일가 종친들의 무덤이 대대로 모셔진 곳으로, 대개 동족촌락 부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재실·묘각 등을 설치하여 시제 또는 묘제 때 종친들의 회합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선영이라고 해서 선영봉사先塋奉祀라 하여 시제를 모시기도 하는데 이를 모시는 장소가 선산이기도 하다. 선영봉사는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로, 시사時祀·시향時享이라고도 한다. 3월이나 한식, 10월 초하루에는 4대친을 포함해서 선조까지 모든 조상의 묘제를 선산에서 지내기도 한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씨족부락의 구조연구(김택규, 일조각, 1979), 조선시기 촌락사회사(이해준, 민족문화사, 1996), 조선시대 봉건사회의 기본구조(김홍식, 박영사, 198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81), 한국사회풍속사연구(권태원, 경인문화사, 1981), 한국의 세시풍속 1(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의 세시풍속2(국립민속박물관, 1998), 慣習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1910).

필자 이해준(李海濬)

선원보첩
璿源譜牒

정의 조선왕조의 왕과 친인척의 계보를 기록한 왕실 족보.

내용 조선왕조의 태종太宗은 왕위 계승 분쟁을 막고자 1412년 왕들의 직계선조를 기재한 『선원록璿源錄』, 태조太祖와 태종의 적자들을 기록한 『종친록宗親錄』, 적녀嫡女와 서얼庶孼을 기록한 『유부록類附錄』을 작성케 하였다. 초기의 이 왕실 족보는 이후 수정작업이 거듭되다가 숙종肅宗 대 왕의 자녀 후손들을 기록한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을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이 보첩에는 시조始祖 이한李翰으로부터 목조穆祖에 이르는 직계 단선의 계보와 이후 편찬 당시까지의 역대 왕과 세자 및 세손, 이들의 자녀를 기록하고 각 계파를 형성한 가계의 자손보를 기재하였다. 왕실 족보의 계보는 왕을 중심으로 수대에 한해서만 자손을 기록하는데, 이 보첩은 왕의 친손 5대와 외손 3대에 그쳤다. 1681년에는 별도로 『선원록』이 간행되었으며, 이후 각 왕대에 수정이 거듭되어 1931년에까지 이른다. 여기에는 친손 9대와 외손 6대까지 기재하였다.

『돈녕보첩敦寧譜牒』에는 왕친과 왕후 및 세자빈의 친족이 수록되었다. 왕의 친손은 9대, 외손은 6대까지 기재하였다. 왕후는 부모를 기준으로 각각의 사조四祖를 기록하고, 각자의 부계 계보를 기재하였다. 사조는 호적의 호 대표자 부부 각자에게 기재하는 부·조·증조·외조 네 명의 선조를 말한다. 왕후의 부계친족은 선조 4대와 후손 4대까지 기재하고, 외손은 선조 3대와 후손 3대까지 기재한다.

『열성팔고조도列聖八高祖圖』는 왕과 왕비의 팔고조를 기재한 것이다. 왕의 부모와 부모 각각의 부모라는 식으로 고조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이다. 이 선조들의 인신 정보는 호적에 기재되는 사조 기록에서 연유한다. 팔고조는 조부의 조부 및 외조부, 조모의 조부 및 외조부, 외조부의 조부 및 외조부, 외조모의 조부 및 외조부를 말한다. 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조만이 아니라 사조의 사조에 이르는 여러 성씨의 번잡한 선조 기록이 요구된다. 이 정보는 대대로 누적된 호적의 계보 기록에서 얻을 수 있다. 호적의 사조는 신분 확인을 위해 기록된 것인데 왕실에서도 왕비들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왕의 계보는 반드시 부자관계로 계승되지 않는다. 일반 족보는 여러 대에 걸쳐 자손이 연결되지만 왕실 족보에는 왕과 왕비마다 자손의 등재 대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 왕실 족보는 관리기관을 정해 정기적으로 계보를 수정함으로써 왕실의 친인척 범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왕실 족보는 호적의 계보 기록과 같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족보였던 셈이다.

참고문헌 조선왕실의 계보와 구성원(원창애, 세창출판사, 2018), 조선조 왕실정비와 의친(신명호, 청계사학13, 청계사학회, 1997), 한국의 족보(정승모,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손병규(孫炳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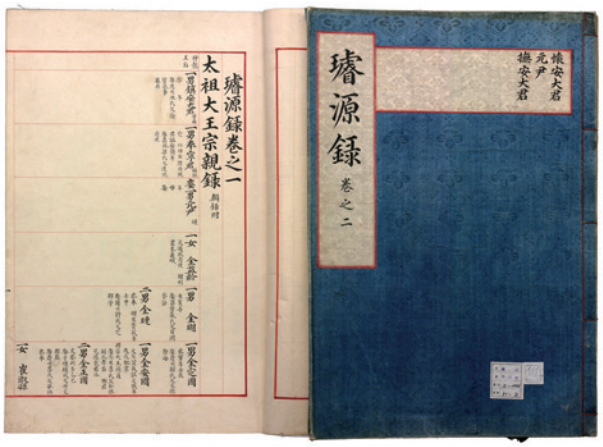
璿源錄卷之一
太祖大王宗親錄
璿源錄
卷之二

선원록 | 가로41 세로62 | 조선 후기 | 국립고궁박물관

성년식
成年式

정의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젊은이에게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규범과 가치,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등을 가르치고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기 위해 행하던 일종의 통과의례通過儀禮.

개관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비마다 치르는 통과의례는 다양한데, 그중 성년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서 치르는 성년식成年式은 동서고금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성년식의 통과의례에서 인간은 대개 육체적 가학을 통한 분리의례에 의해 특정 집단에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거듭난다. 분리의례의 대표적인 것이 '할례割禮'이다. 박혁거세朴赫居世 신화 속의 알영閼英이 북천北川에서 부리를 떨어뜨린 것 역시 일종의 할례의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족국가 마한馬韓에서 소년들이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는 것처럼, 성년식의 통과의례를 암시하는 단면도 발견된다. 특히 965년(광종 16)에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의 예를 행했다는 『고려사高麗史』의 기사가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행한 관례의식冠禮儀式을 처음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 왕실에서 관례의식을 도입했지만, 관례의식이 민간에서까지 통용된 것은 조선시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유교가 널리 보급되면서 성년식은 왕실에서 양반까지 반드시 행하던 통과의례가 되었다. 특히, 고려 말에 도입된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조선조 양반가의 필수적인 의례로 정착되면서, 관례는 관혼상제의 첫 번째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관례는 15세에서 20세 사이의 남자아이에게 땋아 내렸던 머리를 올려 복건幅巾·초립草笠·사모紗帽·탕건宕巾 등을 씌워주는 의식이었는데, 이를 통해 관례를 치른 아이는 성인으로서의 예절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함을 깨닫게 했다. 여자아이도 15세 전후가 되면 쪽을 찌어 올리고 비녀를 꽂아주는 계례笄禮를 행하였는데, 계례는 혼례 속에 흡수되어 관례만큼 보편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는 동안 생긴 조혼 풍습으로 10세 전후에 관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관례의식을 치르지 않은 채 초립이나 복건을 씌우는 풍습까지 생겨나 '초립동草笠童(초립을 쓴 사내아이)'이란 말도 생겨났다. 이렇듯 우리 성년식인 관례는 지역과 가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행해지다가 갑오개혁을 전후하여 그 의미가 퇴색하였다. 1895년의 단발령 이후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오늘날의 성년식 또한 매년 5월에 유교적 의례에 맞춰 행해지고는 있지만, 보편적인 의례가 아니란 점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내용 반 게넵Arnold van Gennep은,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이 처한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혹은 어떤 사회적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통과하거나 전이하는 고비에서 행해지는 의례 체계를 '통과의례'로 정의했다. 그는 통과의례에 분리—전이—통합의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틀을 모든 사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기본적 틀이 공통적인 관습구조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듯 인간이 사회화·문화화의 과정에서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는 데 따른 시련이 통과의례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성인이 되기 위한 '입사의례入社儀禮, initiation'이다. 입사의례의 중심 개념을 '죽음과 재생'으로 파악한 엘리아데Mircea Eliade 역시 인간은 태어날 때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단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불완전한 태아 상태의 인간이 통과의례를 거쳐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비로소 완전하고 성숙해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통합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상적 죽음이 필요한데, 이때 자주 동원되던 것이 육체적 가학과 술이었다. 한편, 우리 전통사회의 관례에서 행해지던 '술 마시기' 의례는 아이의 모습이 없어졌음을 공인하면서 동시에 어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였다.

이런 성년식은 부족사회나 초기 국가사회에서는 사회적 의미가 매우 컸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성년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것은 비로소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년식으로 치러지는 통과의례는 동서고금을 통해 공통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고대국가에서 행해지던 대표적인 성년식인 '할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통과의례에는 신체 일부를 절단·절제하거나 상처를 내는 절차가 따랐다. 입묵入墨, 반흔문신, 발치拔齒(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등), 또는 새끼손가락의 제1·2관절부터 앞부분을 절단(아프리카 남부)하거나, 귓불을 자르거나, 귓불 또는 코의 격벽에 구멍을 뚫는 천공 관습, 머리털을 일정한 형태로 자르는 것 등도 이런 의례에 해당했다. 이처럼 신체에 훼손을 받은 사람은 이에 따른 분리의례에 의해서 일반 세간에서 격리되며, 이후 특정 집단에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며 거듭나게 된다.

한편, 영국의 교육철학자 피터스Richard Stanley Peters는 교육을 성년식에 비유하여 설명했다. 즉, 교육은 새로운 세대에서 기성 문화체제로 입문하게 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년식은 소년기에서 성년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신체적·정신적 성숙을 축하하며, 가족의 일원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재탄생한 개인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성년식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과 의식 절차는 지역이나 부족마다 달랐으나, 대개 10~18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각 부족의 종교적 의식을 빌려 실시되었다. 부족 단위의 큰 행사로 열리는 성년식은 주로 남자를 대상으로 며칠씩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나 오늘날 일부에서는 2차 성징의 신체적 변화를 성년의 구체적 기준으로 보기도 하지만, 종교적 기준으로는 보통 나이로 성인식 시기를 판단한다. 서구사회에서는 대개 16~22세에 도달하면 성년식을 행하며, 유년을 벗어나 법적으로 성년의 권리를 가지는 시기에 성년이 되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년식은 성년이 되는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구성원이 된다거나 어떤 작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과정에서 행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각 지역과 문화권마다 특색 있게 치러지던 성년식이 오늘날에는 하나의 형식으로만 남은 경우가 많다.

지역사례 문화권역마다 각기 다른 성년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승불교에서는 20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에게 단기간 출가하여 승려 체험을 하게 하는 '신분의식'을 통해 성인의식을 치른다. 기독교 사회에서는 청년 스스로 성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 바하이교에서는 15세가 되면 성년으로 간주하여, 바하이 공동체에 남을 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 힌두교에서는 '드비자Dvija'라고 부르는 종교적 재생 의식을 통해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음을 일깨워주는데, 소년들은 가면을 쓰고 종교 의례를 준비하고, 여자는 사리를 입고 의례를 행함으로써 성인임을 인정받는다. 유대교의 경우에는 소년이면 13세에 종교적으로 성숙함을 인정하여 '바르미츠바Bar mitzvah'라는 의식을 치르고, 소녀일 때는 12세에 '바트미츠바Bat mitzvah'라는 의식을 치른다. 아울러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샤리아 율법을 연마하여 알라의 말씀을 듣고 이슬람 전통을 배우도록 하였다가, 성인이 되었다는 증표가 나타나면 샤리아에 따라 예배 참여와 율법적 의무의 이행을 강요한다. 한자문화권의 유교국가에서는 성년식이 통상 15~20세 전후로 이뤄졌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행해진 성년식은 관례와 계례이다. 이 두 의식은 중국에서 도입된 『주자가례』에 근거한 것으로, 각 신분에 따라 의복이나 절차가 달랐다.

특징 및 의의 인간은 집단적인 사회에서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 치르는 통과의례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지닌다. 태어나기 전의 기자祈子 습속에서부터 출생의례와 결혼 및 장례의례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고비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통과의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치르는 성년식은 개인적으로는 독립된 인격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새 구성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성년식은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성년식의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하다.

또한, 통과의례는 분리·통합의 과정에서 과도기가 설정된다. 그 과도기에는 대체로 상징적 죽음이 전제되었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육체적 가학과 술이었다. 따라서 우리 전통사회의 성년식인 관례에서도 술마시기를 통한 분리·통합의 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례의 분리·통합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육체적 가학을 통한 상징적 죽음을 동원하지 않았다. 우리 전통 관례는 엄숙하고 절제된 유교적 의례로만 치르는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朱子家禮, 성과 속(Mircea Eliade, 이동하 역, 역민사, 1983), 통과의례(Arnold van Gennep, 전경수 역, 을유문화사, 1985),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77).

필자 박홍갑(朴洪甲)

성묘
省墓

정의 조상의 묘를 찾아가 살피고 손질하는 일에 배례拜禮가 합해진 것.

역사 성묘는 추석 같은 명절이나 한식寒食 같은 절기에 조상의 묘를 찾아가 살피며 손질하는 일에 배례가 추가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조상의 육체가 묻혀 있는 묘를 관리하는 것은 조상의 영혼을 모셔와 섬기는 제사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원래 한식에 성묘하는 것은 당나라에서 전래되었다. 고려시대 국가에서는 한식에 종묘와 각 능원에 제향하고, 민간에서는 묘소에 올라가 성묘하였다. 『고려사高麗史』에는 기제에 성묘하거나 사시제四時祭에 성묘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묘소 근처에 원찰願刹이나 원당願堂을 지어 묘소를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3월 상순 묘제 때 "무덤 안팎을 다니면서 둘러 슬피 살피며 세 번 돈다. 풀과 가시가 있으면 칼이나 도끼, 호미를 사용하여 자르고 김매어 없앤다. 청소를 마치면 돌아와 재배한다. 또한 무덤 왼쪽의 땅을 소제하고 후토신后土神에게 제사 지낸다."라고 하였다. 겨울이 지나 풀이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때에 조상의 묘를 살피도록 한 것이다. 성묘는 묘제의 한 부분으로 기능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주자가례』가 수용된 이후에는 사당에서 예를 갖추는 것이 강조되었지만, 사당이 없는 민간에서는 조상의 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아, 설·단오·한식·추석의 4대 명절에 묘제를 지내는 것이 허락되었다.

1821년에 간행된 조운종趙雲從(1783~1820)의 『면암집勉菴集』에는 한식에 국가에서 능원과 묘궁에 관리를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하인들도 술과 과일을 마련하여 산소를 찾아 성묘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추석에는 술과 과일을 산소에 올리는 것을 한식 때처럼 하도록 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한식과 추석에 조상의 묘를 살피는데, 이때 머슴이나 거지라도 모두 돌아가신 부모의 무덤을 돌보았다고 할 정도이다. 주인은 머슴에게 새 옷과 신발, 허리띠를 해주기도 했다. 성묘한 이후에는 묘소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성묘에 제례가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차례 성묘 | 충남 홍성 | 2003 | 국립민속박물관

조선 후기까지 설·단오·한식·추석의 4대 명절에 묘제를 지내는 풍속이 계속되었다. 음력 10월에도 묘제를 올렸는데, 10월의 묘제는 사대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조상의 묘를 찾아가 산소를 살피고 예를 올리는 것으로서 '시제時祭' 또는 '시향제時享祭'라고도 한다. 아울러 평상시에도 조상의 묘를 살피고 깨끗하게 청소하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는 『육전六典』에 의해 현임관이 성묘를 갈 때에는 반드시 모두 사직辭職한 이후에 가도록 했으나, 1407년(태종 7)에는 군사들에게 3년에 한 번씩 돌아가 근친하게 하고, 부모가 이미 죽은 사람은 근친하는 예에 의하여 돌아가 분묘를 성소省掃하도록 하는 규정을 세우기도 했다.

지역 혹은 가정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4대 명절 가운데 한식과 추석에 절사節祀를 지내거나 한식과 10월에 시제를 지내는데, 특히 추석에는 사당에서 차례를 지냈다.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는 경우에는 9월 중양절에 제를 지내기도 하고, 10월의 묘제를 큰 제사로 여기고 추석에는 성묘만 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도시

생활로 바쁜 가정에서는 추석 차례 때 묘제와 성묘를 함께 치르는 풍속이 형성되기도 한다.

내용 성묘는 조상의 묘를 손질하고 살피는 일이지만, 사실상 조상의 묘를 손질하는 것과 배례拜禮가 합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로 한식·추석 때 성묘를 하는 것이 정착되었다. 한식인 음력 3월에는 개사초改莎草라고 하여 겨울부터 봄 사이에 생긴 구덩이를 비롯하여 조상의 묘에 생긴 손상을 손질하여 바로잡는다. 이때 부족한 떼(잔디)를 다시 입혀준다.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한식 이후 여름 동안 무성하게 자란 풀과 작은 나무 등을 베거나 깎아주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했다. 10월 묘제를 지내면서 추석에는 성묘만 하기도 했으나, 요즘 일반 가정에서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묘제를 지내는 것이 힘이 들자 추석 차례 때 성묘하면서 묘제를 함께 지내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추석에 성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일 년 동안의 경작으로 수확한 햇곡식을 조상에게 먼저 바친다는 의미가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지역사례 기호지방에서는 전통적으로 설날과 추석에도 성묘하는 전통이 강했다. 그러나 영남지방에서는 전통적으로 설날과 추석에는 성묘하지 않고, 한식에만 성묘하였다. 그런데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이루어진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추석에 성묘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고, 그 밖의 날에는 성묘의 전통이 약화되었다. 묘제를 조상의 묘에서 지내지 않고 재실齋室에서 지내는 사례가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상북도 안동의 퇴계종가에서는 재실에서 묘제를 지내거나 지방으로 합동묘제를 지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2014년에도 옛 전통에 따라서 한식 성묘를 하는 문중도 있다. 흥해배씨興海裵氏 안동 입향조 백죽당栢竹堂 배상지裵尙志(1351~1413)와 그의 배위 묘소(상하 연속 배치)에서는 매년 한식에 성묘하는 전통이 이어진다. 이 문중에서는 가을에 올리는 시향제, 즉 묘제 때에는 제물을 성대하게 갖추어서 올리는 데 반해 한식 성묘를 할 때는 독축讀祝 없이 단헌單獻으로 간단하게 제사를 지낸다. 두 묘소의 상석에 각각 주과포酒果脯와 육적肉炙·어적魚炙으로 이루어진 간소한 제물을 갖추고 한 사람의 창홀唱笏에 따라 상하 연속된 묘소에 참사자들이 나누어 서서 동시에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다.

경북 안동 풍산읍 안교리에서는 한식이 사방팔방의 잡귀가 없는 날, 즉 '손이 없는 날(무방수날)'로 인식되어 무슨 일을 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때 산소에 난 잡풀을 뽑고, 떼를 새로 입히며 주변에 나무를 심는 등 조상의 묘를 두루 손질한다. 설에는 성묘를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경기도 일부지역에서는 '햇세배'라 하여 반드시 성묘한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석에 성묘를 가지 않는 가정이 많다.

특징 및 의의 성묘는 한식과 추석 명절에 조상의 묘를 찾아 손질하고 살피는 일이다. 단순히 묘소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제물과 함께 재배를 하기도 한다. 조상의 영혼만큼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오늘날까지 조상의 묘를 손질하고 살피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

참고문헌 定宗實錄, 太宗實錄, 동국세시기(정승모 역, 풀빛, 2009),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조선대세시기1(국립민속박물관, 2003),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한국세시풍속1(김명자, 민속원, 2005),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배영동(裵永東)

성씨
姓氏

정의 시조가 동일한 부계후손들이 출생의 혈통을 표시하기 위해 공유하는 표식.

역사 한국인이 사용하는 성씨姓氏 제도는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 비록 한국인의 성씨 가운데 족보상 시조가 중국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성씨가 많고 성씨를 표기하는 형식이나 한자는 중국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한국인의 성씨는 중국과 다른 특징을 지니며,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한국인의 성씨 대부분

이 국내에서 시작된 성이고, 성과 결합한 본관本貫이 성씨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은 중국과 다르다.

현재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중국식 한자 성씨는 중국과의 교류 과정에서 삼국의 왕실부터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는 장수왕長壽王(재위 413~490) 때부터 고씨高氏라 칭하였다. 백제는 근초고왕近肖古王(재위 346~375) 때부터 여씨餘氏를, 무왕武王(재위 600~641) 때는 부여씨扶餘氏라 하였다. 신라는 진흥왕眞興王(재위 540~576) 때부터 김성金姓을 썼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고구려나 백제 계통의 중국식 한자 성씨는 후대에 거의 계승되지 못하였고, 신라 계통의 박朴·김金·석昔·이李·최崔·정鄭·손孫·배裵·설薛씨 등의 9성은 현재까지 주요 성씨로 이어지고 있다.

고려시대는 중앙의 왕실과 귀족층만이 아니라 지방 사회로까지 성씨 사용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아울러 성씨와 짝을 이루는 본관의 체제가 형성되고, 성씨 수도 증가하였다. 이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태조 왕건太祖 王建(재위 918~943)이 940년(태조 23) 지방통치체제와 신분제를 재편성하려는 의도에서 전국 군郡·현縣을 개편하고 각지에 산재했던 지배 세력에게 출신지나 거주지를 기준으로 성과 본관을 나눠줬던 토성분정土姓分定이다.

태조 왕건은 전국을 주州·부府·군·현으로 나누고, 특수행정구역으로 향鄕·소所·부곡部曲 등을 설치하였다. 각 군·현에 세거하던 유력층에는 그곳을 본관으로 하는 성이 주어졌고, 군·현 아래의 읍치邑治·직촌直村, 외곽의 임내任內에도 세거지를 본관으로 사용하는 성이 생겨났다. 읍치에는 인리성人吏姓, 직촌에는 백성성百姓姓, 임내의 임내성任內姓이 있어 중층적인 행정구역과 마찬가지로 구역마다 성씨도 차등적으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지방에서도 지배층만이 아니라 양민층 중에서도 성씨를 지닌 집단이 출현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의 성씨는 국가로부터 받은 성과 본, 스스로 정한 성과 본관이 공존하였다.

고려에 이어 조선 초기에 이루어진 지방제도의 정비 또한 성씨와 본관의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15세기 군·현의 행정구획 개편이 추진되면서 속현屬縣과 향·소·부곡 등이 소속 군·현에 폐합되거나 소멸되었다. 이에 본관지가 병합 또는 통합된 성씨는 원래의 본관을 버리고 소속 군·현이나 그 주·읍을 새 본관으로 삼는 경향이 15세기 후반부터 나타났다. 예를 들어 용구이씨龍駒李氏는 용인이씨龍仁李氏로, 승령최씨僧嶺崔氏는 삭녕최씨朔寧崔氏로, 시진송씨市津宋氏는 은진송씨恩津宋氏로 새로운 주·읍에 맞춰 본관을 변경하였다. 종래 세분화된 본관이 점차 주·읍 중심으로 통합된 결과 오늘날 한국인의 본관은 대부분 군·현 단위의 지명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군·현 이하의 지명을 본관으로 했던 성씨라 하더라도 조선 초기에 이미 명망 있는 사족士族으로 성장했다거나 뛰어난 조상을 둔 가문들은 본관을 바꾸지 않았다. 예를 들어 덕수이씨德水李氏, 반남박씨潘南朴氏, 기계유씨杞溪兪氏 등과 같이 조선 초기에 이미 명문사족으로서 기반을 굳힌 일부 성씨는 본관지가 폐합되었다고 해도 기존의 본관을 변경하지 않았고,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조선 전기까지는 성씨의 우열과 가격家格이 대체로 성씨보다는 본관에 따라 정해지므로 본관의 중요성이 매우 컸다. 따라서 문벌의식이 고조된 16세기 이후에는 본관을 변경하거나 통합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당시에는 본관이 다르다 해도 성이 같다면 같은 조상의 후손이라는 관념이 있어서 성과 달리 본관을 바꾸는 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널리 알려진 조상을 두지 못했던 본관의 후손들은 기존의 이름난 성씨에 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본관을 바꾸었다.

타성이나 다름없는 동성이본의 성씨가 동성동본화되는 등 성관姓貫의 통폐합이 대거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경상도에만 15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본관이 다양했던 조씨는 17세기 이후 본관이 창녕으로 통일되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18, 19세기에는 시조가 다르다 해도 같은 지명을 본관으로 쓰는 성씨끼리 합본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였다. 현조顯祖가 있는 계열로 개관改貫하고 서로 합치는 일이 많아지면서 대동보大同譜 성격의 족보가 유행하였으며, 이때 시조가 다르거나 촌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별보別譜나 별록別錄을 만들어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유명 본관인 성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격증하고, 수가 적고 한미한 본관은 계속 감소하였다. 잘 알려진 성씨로의 수렴 현상은 성씨가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성씨가 없던 사람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노비를 포함해 천민층 비율을 볼 때 조선 중기까지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의 성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를 거치며 점차 천민층 가운데 양인화되는 사람이 늘면서 성을 가진 이들도 증가하였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 사이에 성을 가진 호수戶數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성씨를 갖게 된 사람은 새로운 성과 본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성과 본관을 사용하였고, 김씨·이씨·박씨 등 기존 성씨로의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성을 가진 인구는 증가했지만 성관姓貫 수는 늘지 않았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철폐되고 이어 1909년 새로운 〈민적법〉이 실시되면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법적으로 성씨와 본관을 갖게 되었다. 민적에 성명과 본관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새롭게 성씨와 본관을 등록한 사람들은 새로운 성씨를 창설하기보다 김·이·박 등 기존에 많은 이들이 사용하던 성씨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성씨 분포가 일부 특정 성씨로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와 같이 성씨와 본관은 시대에 따라 생성, 소멸, 수렴해 오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고려시대까지는 부계父系의 성씨를 따른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도 왕실 등에서 드물게 존재했지만 조선시대 이후 성씨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성씨는 부계혈통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인 1940년에 단행된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은 한국인에게 매우 생소하였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결혼과 이혼 등 개인의 법적 지위가 변동되더라도 부부 각성各姓의 원칙을 오랫동안 지켜 왔다. 성은 부계혈통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식 씨氏는 부계혈통이 아니라 가호家戶 표식이므로 결혼, 이혼, 입양, 파양 등의 신분 변동에 의해 바뀌었다. 일본의 가족관습에 의한 창씨개명은 한국인 입장에서는 '성을 갈아치운다[改姓].'라고 여겨져 커다란 반발을 불러왔으며, 광복 직후 폐지되었다.

현재 한국인 대부분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으나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혼가정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재 성씨를 개변改變하는 것이 일부 허용되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게 되었다. 일단 정해진 성은 일생 변하지 않는 성 불변의 원칙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내용 성씨는 성姓과 씨氏가 합쳐진 말이다. 현재는 성과 씨를 의미상 구분하지 않지만 본래 성과 씨는 의미가 다른 용어였다. 중국 상고시대에 남자는 씨를 호칭하고 여자는 성으로 호칭했다가 후대에 성씨로 합해졌다고도 하고, 천자가 제후에게 출생 지명을 따라 준 것이 성이고 봉封한 지명을 따라 준 것이 씨이며, 천자는 성과 씨를 줄 수 있지만 제후는 씨만 줄 수 있어 성은 천자에게서 생기고 씨는 제후에게서 생긴다고 구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이미 한나라(기원전 206~220) 때부터는 성과 씨를 구분하지 않고 성姓으로 불렀기 때문에 성씨제도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때도 성과 씨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한국의 성씨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성과 본관이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본관은 본관지本貫地, 관향貫鄕, 본적本籍, 관적貫籍, 향관鄕貫, 족본族本, 본本, 씨관氏貫, 본향本鄕이라고도 하는데 해당 성씨가 출발한 지역 또는 그 시조나 조상이 살았던 지역을 의미한다. 사실 호적제도가 정비된 고려 초부터 조선시대까지는 특수한 천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성이 없는 천민층이라 해도 모두 본관이 있어 호적에 기입되었다. 이러한 본관이 성씨와 결합하면서 조선시대까지 성씨와 본관은 동족同族과 이족異族을 구별하고 해당 인물 개인의 정체성, 출신 배경, 사회적 지위 등을 보여 주는 지표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성씨와 본관을 기준으로 보면 성과 본관이 모두 같은 동성동본同姓同本이 있고, 경주김씨慶州金氏와 김해김씨金海金氏와 같이 성은 같으나 본관이 다른 동성이본同姓異本, 연안이씨延安李氏와 연안김씨延安金氏와 같이 성은 다르나 본관이 같은 이성동본異姓同本, 밀양박씨密陽朴氏와 청주한씨淸州韓氏와 같이 성과 본관이 모두 다른 이성

이본異姓異本의 4종이 존재한다. 그런데 사성賜姓·합본合本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동성동본이라 해도 동족이 아닐 수 있고 동성이본·이성동본·이성이본이라 해도 동족인 경우도 있어 현실에서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예를 들어 동성동본은 대체로 동족이지만 동성동본인 남양홍씨南陽洪氏에는 시조를 달리하는 토홍土洪과 당홍唐洪 두 계통이 있어 일부에서는 이족異族으로 보기도 한다. 동성이본인 경주김씨와 강릉김씨江陵金氏는 둘 다 김알지의 후손으로 동족이지만 동성이본인 연안이씨·한산이씨韓山李氏·광산이씨光山李氏는 이족이다. 이성동본인 안동김씨安東金氏와 안동권씨安東權氏는 원래 동성이었으나 사성 등에 의해 한쪽이 개성改姓한 경우로 동족이라 할 수 있지만 이성동본인 경주최씨慶州崔氏, 경주이씨慶州李氏, 경주김씨는 이족이다. 또한 이성이본인 김해허씨金海許氏와 인천이씨仁川李氏는 시조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 계보상 동족이므로 통혼하지 않는다.

한편 성씨의 시조 중에는 고려시대와 조선 중기까지도 영험을 지닌 지역수호신으로서 지역민의 숭배와 민간신앙의 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 혈연적 의미만이 아니라 지연적으로도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밀양손씨密陽孫氏의 중시조 손긍훈孫兢訓은 밀양 지역의 성황신으로 모셔졌고, 한산이씨의 시조 이윤경李允卿은 그의 목상木像이 성황묘城隍廟에 모셔졌으며, 순천김씨順天金氏의 시조 김총金摠 역시 순천부의 성황신이었다. 그 밖에 순천박씨順天朴氏의 시조 박영규朴英規는 해룡산신, 그 후손인 박란봉朴蘭鳳은 인제산신으로 모셔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성씨별 동족의식과 문중조직이 발달하면서 성씨의 시조는 지역민의 신앙 대상이라는 위상은 퇴색되고 특정 성씨와 혈연의 유교적 제의의 존숭 대상으로 바뀌어 갔다.

특징 및 의의 한국사회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사회구조로부터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성씨와 관련된 관습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현재까지 남아 있는 특징이라면 동성동본을 기초로 하는 종중조직과 동성동본불혼 규정을 들 수 있다. 현대 도시사회에서 동성동본의 씨족이 결성한 화수회 또는 종친회는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며, 씨족원의 소식을 전하는 종보宗報를 발행하거나 씨족원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벌이고, 주기적으로 족보를 편수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씨족원 간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조직으로서의 씨족집단을 외부에 과시하여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을 금하는 관습은 조선시대에 생겨났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역시 이를 관습법으로 인정하면서 법적 효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촌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혈연관계가 먼 경우가 많아 1930년대부터 그 존속 여부나 금혼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결국 2005년 동성동본불혼 규정이 사라지고 8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만 혼인할 수 없도록 〈민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는 근친혼만 금지되지만 관습적으로는 여전히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만들어진 전통으로서의 동성동본금혼제와 식민정치(소현숙, 대동문화연구9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6), 부계혈통주의와 건전한 국민 사이의 균열(소현숙, 법과 사회51,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성관 시조의 지방 토착적 기원과 기념활동의 양상(권기석, 조선시대사학보65, 조선시대사학회, 2013), 한국 성과 본관(정진영, 역사비평53, 역사비평사, 2000), 한국의 성씨와 족보(이수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의 족보(정승모,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한국친족의 사회인류학(이광규, 집문당, 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대화(李大和)

세배
歲拜

정의 설날 아침[元旦], 집안 어른들께 큰절로 인사드리는 것.

내용 설날의 차례가 끝나면 집안의 어른들께 웃어른부터 순서대로 절을 하고 새해 첫 인사를 드린다. 농가에서는 차례를 지내고 난 뒤, 집안의 어른들에게 먼저 세배하고, 일가친척들에게는 성묘를 한 후에 세배한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에게 세배를 한다. 세배를 초닷새 안에만 하면 실례는 면한다. 세배를 하면서 손아랫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어른들은 손아랫사람들에게 "새해는 소원성취하게." 하는 등 처지와 환경에 알맞은 말을 한다. 이것을

세배 | 경북 안동 | 황헌만

덕담이라고 한다.

마을에 상청喪廳을 모신 집이 있으면 찾아가서 상청에 조문하고 상주에게 인사를 한 다음에 일가친척들 중에 나이가 많고 항렬이 높은 어른부터 시작하여 그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 이어 나이 차례, 항렬 차례로 세배를 한다. 상喪을 당한 사람은 보름까지 집 안출입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섣달 그믐날 밤에 묵은 해를 보내는 뜻으로 인사하는 것을 따로 '묵은세배'라고 한다.

세배하러 온 이에게 대해서는 어른에게는 주식(떡국이나 술)을 내놓는 것이 상례이겠으나 아이들에게는 술을 주지 않고 약간의 돈 또는 떡과 과실을 준다. 세뱃돈은 '복돈'이라고 하여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많은 돈을 주지 않고 조금 주더라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근래에 농가에서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경로의식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마을 어른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청년회에서 단체로 세배를 올리기도 한다. 그리고 부녀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어른들을 대접하고 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것은 마을 주민 전체가 모여 정담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다. 흔히 설은 개인적이고 폐쇄적이며 소극적인 혈연 중심의 명절이라 하고, 대보름은 집단적이고 개방적이며 적극적인 마을공동체의 명절이라고 한다. 즉, 설이 혈연을 중시하는 명절이라고 한다면, 대보름은 지연을 중시하는 명절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설날에 청년회와 부녀회의 주도로 마을 어른들을 모셔 놓고 단체 세배를 하는 것은 혈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연적인 유대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동마을의 경우 55세 전까지는 세배를 다니는 편이고, 55세 이상이 되면 집에서 세배를 받게 된다고 한다. 여타 지방도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새해 첫 인사말은 세배나 덕담이나 언어주술이 포함된 것으로 언령사상言靈思想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새해에 복을 받으라는 인사는 예축적豫祝的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새해에 복을 기원해 줌으로써 한 해 동안 아무 탈 없이 그리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축하해 주는 의미를 가진다. 이때의 복은 인사를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당사자 혹은 가정의 복일 수도 있으나 주로 개인 지향의 복이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복이다.

참고문헌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최인학 외, 민속원, 2001), 한국의 세시풍속(최상수, 홍인문화사, 1960), 한국의 세시풍속(장주근, 형설출판사, 1984).

필자 최인학(崔仁鶴)

세습
世襲

정의 한 집안에서 후손에게 신분, 재산, 직업, 기예 따위를 세대에 걸쳐서 물려주는 행위.

개관 세습世習은 상속과 유사하다고 생각되지만 엄연히 서로 다른 개념이다. 세습은 일반적으로 한 집안에서 자신의 자식 혹은 그 후손에게 재산, 신분, 직업 등을 물려주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상속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상속을 통해 세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세습은 가문의 후계자에게 승계하는 것이고, 학문이나 기예 세습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내용 우리 전통사회에서 세습은 가문의 후계자에게 신

분·재산·직업·기예·생활양식 및 각종 규범 등을 전수·승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양한 의미들을 담은 세습은 포괄적인 생활언어로 '대물림' 또는 '대이음'이라고도 하는데, 대개 혈연·지연·학연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거나 같은 방식들이 결합하여 행해진다. 이 중 혈연에 따른 세습이 가장 일반적인 세습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을 세습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말로 표현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재산을 세습하는 것은 '상속相續'이라 하고, 기술이나 예술 분야 또는 학문의 세습은 '사사師事'라고 하였다. 또한 세습적으로 계승되는 신분은 세습신분, 대물림된 재산은 세습재산, 신들림 없이 무업을 이어받은 사람은 세습무라고 하였다.

세습은 사람들 사이에서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관습으로 정착되거나 국법에서 규정되기도 하였다. 독특한 관습으로 정착된 경우는 주로 학문·기술·예술·직업 등의 세습으로, 그 전승 집단의 문화적 규칙에 의해서이다. 국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신분·권력·재산상속 또는 장인匠人 세습과 같은 것으로, 이는 『경국대전經國大典』(1485)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국대전』「예전禮典」 제과조諸科條에는 신분 세습에 대한 엄격함이 잘 나타나 있다. 왕이 특정 가문의 노비와 토지는 세습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노비와 토지는 함부로 훼손할 수 없었다. 또 『속대전續大典』(1746) 공장조工匠條에는 "사옹원司饔院 사기장인沙器匠人의 아들은 다른 일에 취역시킬 수 없다."고 하여 공장에 대한 직업 계승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신분이나 권력, 직업 등의 세습에 대한 근거가 국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학문의 세습은 학연에 따라 이루어져 일정한 학통學統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한 학자의 학통을 보면 그의 가문과 학문적 성향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그의 학문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였다. 예컨대 안동문화권에는 퇴계문도를 줄여서 '계문溪門'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학통과 학맥이 계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 학통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를 보면 학문 세습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세습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의 재산상속 방식은 시대나 가문, 지역에 따라 상이하였다. 적자嫡子 균분상속과 장자長子 상속이 행해지기도 하였으나 적자 중심의 혈연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공통된다.

조선시대에 기술 세습은 도제제도徒弟制度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공장은 법률에 의해 세습되었으나 사장私匠은 국가의 법률에 의해 강요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민간의 수공업 수준은 가업에 해당하여 가족 외의 노동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혈연에 의해 세습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점차 혈연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어릴 때부터 고용하여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생기게 된 이유는 19세기 말에 민간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혈족 중심으로 직업을 전수할 때 가족에게만 의지하기에는 노동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기예가 세습되는 무속에서도 세습무世襲巫라 하여 집안 대대로 사제권司祭權을 계승받아 무업巫業을 대물림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호남지역 무巫인 '단골'과 영남지역 무인 '무당'은 세습무이다. 이처럼 혈연적 유대를 통하여 무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세습무라 한다. 이들은 굿의 과정이나 무악, 그와 관련된 악기 연주, 판소리 등을 어릴 때부터 배운다. 이처럼 세습무는 악기, 춤, 노래 등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무속 의례뿐만 아니라 판소리 등과 같은 전통 공연문화를 예술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세습무 집안 출신의 판소리 명창이 많았다. 이러한 능

순종왕세자수책시 책례도감의궤 | 가로33 세로39 | 조선 후기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연구원
고종 때 펴낸 왕세자 책봉에 대한 책례도감의 의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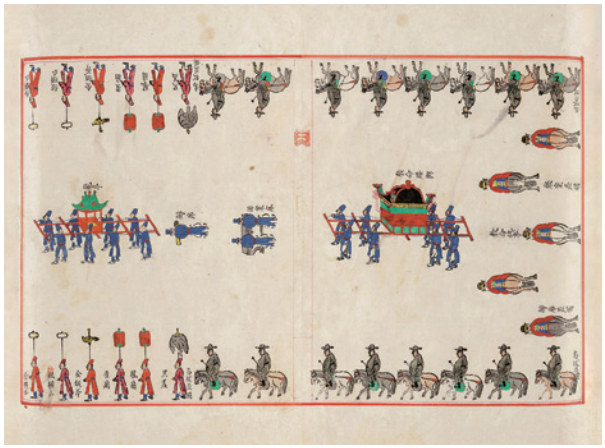

반차도 | 순종 왕세자책례도감의궤 | 조선 후기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연구원

력과 예술에 대한 학습은 혈연에 의해 교육·학습·전수될 수 있었다. 그 밖에 음악·미술·건축과 같은 기술·예술 분야에서도 세습이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재능 있는 사람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식이었다.

특징 및 의의 세습은 일반적 의미로 한 집안에서 후손에게 신분, 재산, 직업, 기예 따위를 세대에 걸쳐서 물려주는 것을 뜻한다. 조선시대 세습 방식은 지역이나 가문,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그 밖에 음악, 미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여러 기예가 세습되었다. 이러한 기예 세습은 대체로 혈연에 의한 것보다는 재능 있는 사람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식으로 이뤄졌다.

조선시대 전통사회의 세습 원리는 대체로 혈연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본주의와 서구 가치관이 유입되고, 도시화와 공업화 등 사회변동이 일어나면서 세습 방식이 변화하였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습 방식을 보면 혈연에 따른 세습은 대체로 가정 중심의 재산상속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신분·직업·기예·생활양식에 대한 세습은 개인의 능력이나 자발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續大典, 동족부락의 생활구조연구(김택규, 청구대학출판부, 1964), 한국 무속의 이해(최길성, 예전사, 1994), 한국기술교육사(이원호, 서문당, 1974), 한국의 전통연희(전경욱, 학고재, 2004).

필자 이해준(李海濬)

소목
昭穆

정의 신주를 배열하는 방식의 일종으로, 왼쪽[東]의 소昭와 오른쪽[西]의 목穆을 일컫는 용어.

역사 소목제도昭穆制度는 중국 상고시대부터 유래한 것인데, 주나라의 주공周公이 예禮와 악樂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주례周禮』에 의하면 제1세의 시조를 중앙에 모시고, 이를 중심으로 동쪽의 소묘昭廟에는 아버지 항렬인 2세·4세·6세의 신주를 배치하며, 서쪽의 목묘穆廟에는 아들 항렬인 3세·5세·7세의 신주를 모신다. 그리고 천자天子의 경우에는 소묘에 2세·4세·6세를, 목묘에 3세·5세·7세를 각각 봉안하여 삼소삼목三昭三穆의 칠묘七廟를 세운다. 제후는 소묘에 2세와 4세, 목묘에 3세와 5세를 봉안하여 이소이목二昭二穆의 오묘五廟를 세우며, 대부大夫는 일소일목一昭一穆의 삼묘三廟를 세우도록 규정하였다.

내용 소목昭穆은 신주를 배열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신주 배열의 일반적 방식은 '이서위상以西爲上'이라 하여, 가장 서쪽에서부터(불천위 조상) 고조, 증조, 조부, 부모의 신주를 일렬로 배치하는 것이지만, 중국 고대사회에서는 소목계서昭穆繼序에 입각하여 봉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소昭는 '밝다'의 의미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한 위치를 가리키고, 목穆은 '어둡다'의 의미로 남쪽에서 북쪽을 향한 위치를 일컫는다. 소목계서의 원칙에 의해 사당에 모신 신주의 경우 제1세인 시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상들의 신위는 주제자主祭者가 바뀜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지만, 이때에도 소목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소목계서에 따르면, 본문의 〈그림〉처럼 좌소우목의 원칙에 따라 중앙(북쪽)에 놓인 태조(시조, 불천위 조상)의 신위를 중심으로 좌측(동쪽)의 소묘昭廟에 두 분의 신위를 모시고 우측(서쪽)의 목묘穆廟에 다시 두 분의 신위를 봉안한다. 그런 다음 부소자목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버지 항렬이 소묘에 오도록 하고 아들 항렬이 목묘에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대교체에 의해 자리를 이동할 때에도 소목의 질서를 반드시 준수하면서 실시

한다.

한편, 『가례家禮』에 따르면 "제후의 묘제廟制에 태조는 북쪽에 거처하여 남향하고 소묘昭廟 둘은 동쪽과 남쪽에 있으며, 목묘穆廟 둘은 서쪽과 남쪽에 있어 모두 남북으로 중첩한다."라고 했다. 이처럼 조상의 신주가 소목의 질서에 합당하게 배열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제사를 모실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가례』에서 4대조의 신주만 봉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당에서는 소목계서에 따른 신주배열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소목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신라의 제31대 신문왕 때 이미 5묘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는 5대가 넘으면 신주를 거두어 태조실에 두었다가 5년이 지난 뒤 은제殷祭를 지내고 매주埋主했는데, 뒷날 제도가 퇴색하면서 역대 왕의 신주를 종묘에 그대로 봉안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 사대부 가정에서는 『가례』의 지침에 따라 4대의 신주만을 모셨으며 그 윗대 조상의 신주는 매안하는 풍습을 따랐다. 또 『가례』에 "옛날에는 사당에 소와 목의 차례가 있어서 소는 항상 소가 되고 목은 항상 목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 죽은 사람을 조부의 사당에 부제祔祭할 때 조부에게 마땅히 다른 사당으로 옮겨야 함을 아뢰고 새로 죽은 사람에게는 이 사당에 들어갈 차례임을 아뢴다. 지금 공사公私의 사당이 모두 동당이실同堂異室에 서쪽을 우위로 삼는 제도를 만들어 좌소우목左昭右穆의 질서가 사라졌다. 한번 체천遞遷하면 여러 실이 모두 옮겨지고, 새로 죽은 사람은 그 아버지의 옛 실에 들어간다. 이것은 예禮의 큰 절목이 옛날과 같지 않은 것인데, 예를 행하는 자가 오히려 조부에 부제라 하면서 고집하니 의의가 없는 듯하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사당에 부제하고자 한다면, 또한 예를 아껴 양羊을 살려 두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당의 형태가 동당이실에 서쪽을 우위로 삼게 됨으로써 신주의 배열방식에서 소목계서의 원칙은 사라졌지만, 관념상으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부제祔祭이다. 부제는 사당에 새로운 신주를 모시기 위해 사당에 봉안된 조상신에게 고하는 의례인데, 이때 그 대상은 새로운 신주의 아버지가 아니라 조부가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주가 사당에 들어가면 소목계서의 원칙에 의해 격대隔代의 관계인 조부와 같은 묘[穆廟]에 놓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양자관행이다. 소목은 항렬行列, 곧 세대에 의해 부자父子·원근遠近·장유長幼·친소親疏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으로, 종법질서를 수립하면서 세대의 중복 및 격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혈통시스템이다. 특히 소목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제사계승은 봉제자를 선정하는 중대한 작업이다. 고조—증조—조—부로 이어지는 혈통체계에서 반드시 아들(적장자)이 조상제사를 계승해야만 소목의 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 혈통을 이어나가는데, 이때에도 소목의 질서를 적용하여 부계친족의 아들 항렬 중에서 양자를 물색한다. 즉, 양자의 대상에서 존속尊屬은 물론 형제의 항렬 및 손자의 항렬에 있는 사람은 양자로 삼을 수 없고, 아들 항렬에 있는 사람만을 양자로 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특정 인물을 양자로 지목했는데, 손자 항렬에 해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처럼 격세대의 양자는 소목계서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백골양자白骨養子라는 습속이 생겨났다. 즉, 이미 죽은 아들 항렬의 사람을 가양자假養子로 삼아 그 가양자의 아들, 즉 손자 항렬의 사람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가양자는 사망한 상태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백골양자라고 불렀다.

제후의 5묘(五廟)

특징 및 의의 소목은 신주를 배열하는 방식의 일종이다. 중앙(북쪽)의 시조를 기점으로 삼아 왼쪽[東]의 소묘昭廟, 오른쪽[西]의 목묘穆廟를 중심으로 소목계서昭穆繼序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주를 모시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당의 형태가 동당이실에 서쪽을 우위로 삼아 신주를 일렬로 모시게 됨으로써 소목계서의 원칙은 더는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참고문헌 家禮, 三國史記, 周禮, 가족과 친족의 민속학(김미영, 민속원, 2008),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주자가례(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필자 김미영(金美榮)

소문중
小門中

정의 중시조 이하 세계世系에서 명조나 현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법인체 집단으로서 당내를 포괄하며 분절된 지파와 동일하거나 드물게 파보다 적은 사회적 단위를 구성하는 하위 종족집단.

역사 소문중小門中의 초기 형태는 16세기에 출현했으며, 세부적으로 조직된 것은 17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부계혈연집단의 문중 규모는 대체로 조선 후기로 내려올수록 커졌다. 조선 후기로 내려올수록 파조派祖 중심으로 파派의 단결과 다른 파와의 구별을 뚜렷이 하기 위해 소문중이 분화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파조 이름 대신 시호나 관직명의 파명派名이 일반화되었으며, 파보派譜 간행이 더욱 보편화되었다. 조선 말기로 올수록 파 내부에 파를 구성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러한 종족의 분절화 경향은 높은 씨족의식, 조상의 관직 시위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소문중을 형성하였다.

내용 당내나 파류派流가 법인체적 조직, 즉 문중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종인宗人들이 의례 수행이나 농업 노동 교환 등과 같은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집단적 정체감, 선조의 관작官爵과 명망, 법인체적 자산, 문규文規 등이 필요하다. 파의 구성원이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사회 조직과 사당, 법인체 자산을 마련하고 종원宗員들이 제정된 족규族規를 통해 활동할 경우 소문중이 될 수 있다. 소문중은 파종派宗으로, 마을이나 지역 차원에서 관련된 부계친으로 조직된다. 이것은 혈족의 원근에 따라 분파 양상이 뚜렷하여 지파支派 간 구별이 분명하다.

종족이 분파할 때 파조 자격이 고려된다. 후손들이 파조나 하위 파조를 모실 때는 추존할 종원들이 그들의 자격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파조나 하위 파조가 관직이나 추증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하면 내세우려는 파조에 대한 유림儒林의 공식·비공식적 인정이 필요하다. 하위 파족派族의 선조가 파조로 모셔지기 위해서는 향안鄕案에 입록入錄되어 있어야 하고, 지역 유림으로부터 양반 가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거주 지역과 관련 없는 선조가 파조로 모셔지게 되면 종원들 사이에 갈등이 일 수도 있다.

각파에서는 파조를 모시기 위해 구성한 제사집단이 있는데 이를 종중宗中 또는 문중門中이라 한다. 종중이나 문중은 최소 8촌 범위 이상의 부계혈연자로, 중시조中始祖 이후 몇 세대를 지난 뒤 명조名祖나 현조顯祖 중심으로 구성된 종족 조직이다. 이 집단은 부계 공동 조상의 제사를 위하여 조직되었다. 문중마다 파조의 시호諡號나 연고지명緣故地名 등을 취하여 '○○종중'이라 칭한다. 파조로부터 당내堂內 이상의 천이遷移된 모든 조상의 제사를 거행하기 위한 조직을 소문중 혹은 소종중小宗中이라 한다.

한편 지역 종족원들은 그들의 인구수가 부족하고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며, 명조·현조가 부재하여 법인체적 집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문중을 조직할 수 없더라도 분파·통합된 종족의 크기에 따라 소문중을 대문중의 상대적인 사회적 범주로서 인식하기도 한다. 족세가 아주 약한 종족의 경우, 마을 차원에서 당내를 기반한 15촌 내외의 혈친들이 소문중과 대문중을 구별하지 않고 입촌조(입향조)에 대한 제의 봉행을 위해 문중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사례 소문중으로서 지파가 분파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천전리 의성김씨義城金氏 종족이나 청도군 밀성박씨密城朴氏 참의공파와 밀직부사공파 종족의 경우 선조가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을 갖거나 시호諡號, 불천지위不遷之位, 사후의 증직贈職, 현조의

자손으로서 음보蔭補를 받은 경우와 같이 다섯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면 분파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이 같은 요건은 한 개인이 종족의 중시조가 될 자격을 말하는 것이다. 즉 종족의 분파성은 종족의 공동 재산에 의해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조의 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소문중으로서의 지파로 분파하기 위해서는 부나 관직, 학식, 혼반婚班, 조상의 명망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사 봉사와 서원·재실 등을 건립할 성원들의 재력 등이 부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구비한 종족일수록 다양한 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경제적 위상이 높고 문중 성원의 유대가 강한 소문중에서는 대문중은 아니지만 규약을 정해 두고 종원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소문중에서는 임원으로서 문중 대표인 문장門長과 이사·유사·감사를 두고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종물宗物 관리, 종중 문서의 기록·보존, 묘사墓祀 준비, 선영先塋 벌초, 재정회계 등을 행한다.

특징 및 의의 소문중은 분파된 지파 단위로 구성되며, 대개 마을이나 지역에서 형성된 지파를 종중 혹은 사파私派 등으로 부른다. 소문중으로서 파의 갈림은 파조의 사회적 위상에 영향을 받는다. 그 분파에는 정치적 지위나 학문적 명성이 뛰어난 인물이 중심이 된다.

참고문헌 명망의 문화정치(박성용, 민속학연구52, 국립민속박물관, 2023), 문화의 정치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김광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사회공간적 범주화와 양반다움의 문화정치적 구성(박성용, 한국문화인류학54-1, 한국문화인류학회, 2021), 종족조직과 생활문화(문옥표 외,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백산서당, 2004),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9),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Ancestor Worship and Korean Society(Roger L. Janelli·Dawnhee Yim Janelli,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Kinship and Lineage in Korean Village Society(Sunhee Song, Ph.D Thesis, Indiana University, 1982).

필자 박성용(朴晟慵)

손주

정의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친족용어.

내용 손주는 자녀의 아들딸을 통칭하는 친족용어이다. 손자녀孫子女라고도 한다. 손주는 아래로 2대이며 촌수는 2촌이고, 나의 3세가 된다.

한국의 전통적인 친족제도가 부계계승父系繼承의 원리를 따르고 있기에 아들의 자녀는 나와 같은 부계친족집단에 귀속되지만 딸의 자녀는 사위의 부계친족집단에 귀속된다. 그래서 손주에 대한 친족용어는 아들의 자녀와 딸의 자녀를 구분한다. 아들의 자녀는 친손親孫 또는 '친손주'라고 하는 반면에 딸의 자녀는 외손外孫 또는 '외손주'라고 한다. 그리고 손주의 성별에 따라 아들의 아들은 손孫 또는 손자孫子, 아들의 딸은 손녀孫女라 하고 딸의 아들은 외손자外孫子, 딸의 딸은 외손녀外孫女라고 한다. 손주 기준에서 내가 부계친족이면 성별에 따라 조부祖父 또는 조모祖母가 되고, 모계친족이면 외조부外祖父 또는 외조모外祖母가 된다. 조부·조모는 할아버지·할머니, 외조부·외조모는 외할아버지·외할머니로 직접 호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자의 아내는 손부孫婦 또는 손주며느리·손자며느리라 하며, 손녀의 남편은 손서孫壻 또는 손주사위·손녀사위라고 한다.

아래로 3대가 되는 아들의 손자 세대에는 '증曾'을 붙여 아들이면 증손曾孫 또는 증손자曾孫子, 딸이면 증손녀曾孫女라고 한다. 아래로 4대가 되는 아들의 증손자, 다시 말해 증손자의 아들 세대는 '현玄'을 붙여 아들이면 현손玄孫 또는 현손자玄孫子라 하고 딸이면 현손녀玄孫女라고 한다. 증손자에게 나는 증조부曾祖父·증조모曾祖母가 되며, 현손자에게는 고조부高祖父·고조모高祖母가 된다.

4대손, 즉 현손 또는 현손자는 고손高孫 또는 고손자高孫子라고도 한다. 지역에 따라 4대손에 대한 친족 지칭으로 현손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고손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현손과 고손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직계존속인 4대조에게 고조 또는 고조부라고 하는데 직계비속인 4대손에게 '높을 고高' 자를 쓰는 것이 외람되다고 하여 멀다는 뜻의 '현玄' 자를 써서 현손 또는 현손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언어 예절로 여겨진다. 한편 현실적으로 위로 4대인 고조부모와 아래로 4대인 현손자녀가 함께 생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과거 대가족제도 아래의 안채와 사랑채가 있는 가옥구조에서는 젖먹이인 때는 어머니 품 안이라 해도 젖 떨어진 뒤의 유아기인 손자는 할아버지, 손녀는 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기거하며 조부모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다. 밥상도 맏손자[長孫]는 으레 할아버지와 겸상하였다. 손녀에게 여자로서의 일상적인 예의범절을 가르쳐 주고 익히게 하는 이도 어머니보다 할머니였다. 대가족제도에서 손자녀는 조부모를 따르며 유아기를 보내게 된다. 오늘날 핵가족화된 현대 가족관계에서 조부모와 한집에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손자녀는 조부모가 사랑을 주는 대상임에는 변함이 없기에 친밀한 유대감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사례 지역별로 사용되는 ①손자와 손녀 및 그 배우자 ②외손자와 외손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친척용어를 친척지칭과 친척호칭으로 나눠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친척호칭 표에서 '(·)'는 이름 대신 사용되는 정형화된 호칭형태가 없음을 표기.)

지역	친족원		친척지칭	친척호칭	비고
경기 양평	①	손자와 배우자	손주	이름	
			손주며누리	(·)/아가	
		손녀와 배우자	손주딸	이름	
			손주사우	손주사우	
	②	외손자와 배우자	외손주	이름	
			외손주며누리	(·)/아가	
		외손녀와 배우자	외손주딸	이름	
			외손주사우	손주사우	
인천 강화	①	손자와 배우자	손주(아들)	(·)	
			손주메누리	(·)	
		손녀와 배우자	손주딸	(·)	
			손주사위	(·)	
	②	외손자와 배우자	외손주(아들)	(·)	
			외손주메누리	(·)	
		외손녀와 배우자	외손주딸	(·)	
			외손주사위	(·)	
강원 삼척	①	손자와 배우자	손자	이름	
			손자며누리	손자며누리	
		손녀와 배우자	손자딸	이름	
			손자사우	손자사우	
	②	외손자와 배우자	외손자	이름	
			외손자며누리	(외)손자며누리	
		외손녀와 배우자	외손자딸	이름	
			외손자사우	(외)손자사우	
충북 청주(청원)	①	손자와 배우자	손자	이름	
			손자며누리	(·)	
		손녀와 배우자	손자딸	이름	
			손자사위	손자사위	
	②	외손자와 배우자	외손자	이름	
			외손자며누리	(·)	
		외손녀와 배우자	외손자딸	이름	
			외손자사위	외손자사위	
충남 홍성	①	손자와 배우자	손주/손자	이름	
			손부	(·)	
		손녀와 배우자	손녀	이름	
			손서	성+서방	
	②	외손자와 배우자	외손주/외손자	이름	
			외손부	(·)	
		외손녀와 배우자	외손녀	이름	
			외손서	성+서방	
전북 고창	①	손자와 배우자	손지	이름	
			손부/손지메나리	손부	
		손녀와 배우자	손녀/손지딸	남편 성+실+아	
			손서/손지사우	성+서방	
	②	외손자와 배우자	외손지	이름	
			외손부/외손지메나리	손부	
		외손녀와 배우자	외손녀/외손지딸	남편 성+실+아	
			외손서/외손지사우	성+서방	
전남 진도 조도	①	손자와 배우자	손지	(·)	
			손지메느리	(·)	
		손녀와 배우자	손지	(·)	
			손지사오	(·)	
	②	외손자와 배우자	외손지	(·)	
			외손지메느리	(·)	
		외손녀와 배우자	외손지	(·)	
			외손지사오	(·)	
경북 구미 선산	①	손자와 배우자	손자	이름	
			손부	손부	

		손녀와 배우자	손녀	남편 성+실	혼인 전에는 이름
			손서	성+서방	
	②	외손자와 배우자	이손자(외손자)	이름	
			이손부(외손부)	손부	
		외손녀와 배우자	이손녀(외손녀)	남편 성+실	
			이손서(외손서)	성+서방	
경북 영덕 영해	①	손자와 배우자	손자	이름	
			손부	새사람/(아이 이름+)에미	
		손녀와 배우자	손녀	남편 성+실	
			손서	성+서방	
	②	외손자와 배우자	외손자	이름	
			외손부	외손부	
		외손녀와 배우자	외손녀	남편 성+실	
			외손서	성+서방	
경남 함양	①	손자와 배우자	손자	이름	
			손부	손부/아이 이름+에미	
		손녀와 배우자	손녀	남편 성+집	
			손서	성+서방	
	②	외손자와 배우자	외손자	이름	
			외손부	손부	
		외손녀와 배우자	외손녀	남편 성+집	
			외손서	성+서방	
경남 통영 사량도	①	손자와 배우자	손지	이름	
			손지메늘	(·)	
		손녀와 배우자	손지딸	이름	
			손지사오	성+서방	
	②	외손자와 배우자	외손지	이름	
			외손지메늘	(·)	
		외손녀와 배우자	외손지딸	이름	
			외손지사오	성+서방	
부산 동래	①	손자와 배우자	손지	(·)	
			손지메늘	(·)	
		손녀와 배우자	손지딸	(·)	
			손지사우	성+서방,	
	②	외손자와 배우자	외손지	(·)	
			외손지메늘	(·)	
		외손녀와 배우자	외손지딸	(·)	
			외손지사우	성+서방	

출처: 한국의 언어 민속지(2009~2023)

특징 및 의의 가부장제 부계가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자父子 관계로 여겨진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기초로 가장권家長權이 계승되고 재산과 제사 의무도 전해진다. 아버지는 아들이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교육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하게 대해야 한다.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전통적인 부모 역할 속에서 부자관계는 권위에 바탕을 둔 어려운 관계가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조부 입장에서 손자 역시 집안의 대를 이을 자손이지만 아들과는 다르게 권위보다 애정에 바탕을 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자녀의 아들딸을 통칭하는 친족용어로서 '손주'는 현대 한국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일면이 있다. 전통적인 한국의 부계친족구조 아래서 남성형 '손자孫子'가 대표형이 되어 손녀의 경우는 '손녀딸/손자딸'로도 지칭된다. '손주'는 본래 '손자'의 비표준어로 여겨졌으나 어형상 남성의 자질이 부각되지 않아 성性 중립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손자녀孫子女'를 통칭하는 의미로 그 사용이 확장되어 온 것 같다. 2011년에 국립국어원에서는 '손주'가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손자'와 뜻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참고문헌 한국의 언어 민속지-강원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기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상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한국의 언어 민속지-서편(왕한석, 교문사, 2009), 한국의 언어 민속지-전라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한국의 언어 민속지-충청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현대 한국가족의 이해(이광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호칭과 지칭 예절(류재봉,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조숙정(趙淑晶)

수양자
收養子

정의 3세 이하의 아이를 거두어 기른 경우 그 양자 혹은 양자녀를 지칭하는 명칭.

개관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양자녀 유형으로 수양收養 자녀와 시양侍養 자녀가 있었다. 부부의 동성·이성 친족뿐만 아니라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수양 자녀나 시양 자녀로 삼을 수 있었으며, 입양 목적도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 법제적으로 3세 이하의 아이를 거두어 기른 경우 수양 자녀, 3세가 넘은 자를 양자녀로 삼는 경우 시양 자녀로 구분하였다. 이는 3세 이하의 아이를 거두어 길러 어려서부터 양부모에게 양육의 은혜를 입은 수양 자녀와 그 외 양자녀의 법제적 지위를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수양자收養子의 '자子'는 아들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자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교적 제사 형태가 정착되면서 남편의 동성 친족 중 아들 항렬行列의 친족으로 봉사자奉祀子 역할을 하였던 수양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수양자와 수양녀 역할에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수양자와 수양녀를 함께 서술한다.

내용 수양과 시양은 법적 규제나 사회적 제한 없이 사사로이 맺어졌던 만큼 양부모와 양자녀 양측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그 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부모가 기를 수 없는 어린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라거나 노후 봉양과 사후 제사를 맡기고자 하는 등 가족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였지만 때로는 경제적 이익이나 이권을 얻기 위해 양부모—양자녀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수양과 시양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조선 전기에는 딸이나 외손이 제사를 지내는 일이 흔하였지만 유교식 제사를 정착시키고자 한 조선의 지배층은 아들이 없으면 남편의 동성 친족을 양자로 삼아 대를 잇게 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기존 양자녀인 수양 자녀와 시양 자녀의 법적 지위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대명률大明律』에서는 이성 양자 입양을 금하면서도 3세 이하의 유기아遺棄兒를 거두어 기른 경우 이성이라 하더라도 금지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당률唐律』을 수용한 고려의 법에도 이러한 규정이 있었다. 더구나 부모가 기르기 어려운 3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수양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길러 준 수양 부모에게 은혜를 입었고, 수양 부모도 강보襁褓(포대기)에 있을 때부터 기른 수양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이에 따라 조선 건국 초기에 3세의 나이를 기준으로 수양 자녀와 시양 자녀의 법적 지위를 차별화하는 정책을 폈다.

수양승적일기 | 가로21 세로34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시대 예조에서 수양 및 첩자 봉사 사실을 인증해주고 기록한 장부.

자녀가 없는 양부모가 재산을 나누지 않고 사망하면 수양 자녀에게는 양부모의 재산을 모두 주도록 하였다. 시양 자녀의 상속분은 시기에 따라 달랐다. 1397년(태조 6)에는 1/2, 1405년(태종 5)에는 동성은 1/3 및 이성은 1/4,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1/7을 주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양부모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수양 자녀라도 양부모의 재산을 모두 받지는 못하였다. 적실嫡室에게 자식이 있으면 1/7만 주도록 하였으며 첩자녀妾子女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분이 제한되었다. 시양 자녀 역시 적실에게 자식이 있으면 1/10만 주도록 하는 등 그 상속분이 감소되었다.

입후법立後法이 제정되면서 수양 자녀와 시양 자녀 외에 계후자繼後子가 출현하게 되었다. 양부모에게 자식이 없으면 수양 자녀에게는 재산을 모두 주도록 하였지만 친자가 있으면 상속분이 대폭 축소되는 데 반해 계후자는 어느 상황에서든 적장자 대우를 받았다.

시양 자녀는 법적으로 양부모에 대한 복상服喪의 의무가 없었던 데 반해 수양 자녀는 친자식과 똑같이 삼년상을 치러야 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수양 자녀에게 양부모상에 자최齊衰 3년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다. 친아버지상일 때 참최斬衰 3년복을 입는 데 비해 양부

상에는 자최 3년복을 입도록 하여 복상 등급을 낮추었지만 수양 부모와 수양 자녀의 부모—자식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계후자에게는 양부모와 양가養家 친족에 대해 친가 친족이 입어야 할 복服을 입고 자기 친족에게는 강복降服하도록 하였지만 수양 자녀에게는 친부모와 친가·친족의 상복 등급을 낮추도록 하지 않았다. 또 친부모가 살아 있으면 수양 부모상에는 강복하여 기년복朞年服을 입고 심상心喪 3년을 하도록 하였다. 법적으로 수양 자녀에게는 양부모와의 관계보다 친부모와의 관계를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특징 및 의의 수양 부모와 수양 자녀 관계는 양측의 필요에 따라 대상이나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맺어졌다. 그리고 조선 조정에서는 양부모가 어려서부터 데려다 길러 은의恩誼가 돈독하다는 이유로 수양 부모와 수양 자녀 관계를 친부모—친자녀 관계에 버금가는 관계로 인정하여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민간에서는 3세 이전에 들인 양자녀뿐만 아니라 계후자 외의 양자녀를 '수양아들' '수양딸'로 두루 칭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3세전 수양의 함의 변천을 통해 본 조선의 법 제정과 운용(박경, 조선시대사학보82, 조선시대사학회, 2017),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박경, 혜안, 2011), 조선후기 평민층 입양 관행의 변화와 그 의미(이종서, 고문서연구47, 한국고문서학회, 2015),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필자 박경(朴景)

수정가족
修正家族

정의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고자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기존의 가족 원리를 일부 수정한 모습의 가족.

개관 수정가족修正家族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정확대가족을 들 수 있다. 수정확대가족은 3세대가 한 지붕 아래 동거하던 전통적 가족의 이상 및 부계혈연 중심의 직계가족直系家族 원리를 그대로 수용하되 오늘날은 거주지를 분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정확대가족은 가족의 고유 기능이라 할 양육과 부양이 여전히 가족에게 중요한 책임으로 부과된 상황에서 가족 기능 완수를 위해 유연한 적응력을 발휘하는 과정에 나타난 현상으로 여겨진다.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와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면서 손자녀 양육에 적극 도움을 주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노부모나 홀로 된 부모의 부양을 위해 자녀가 가까운 거리에 거주지를 조성하는 사례도 수정확대가족의 또 다른 실례라 하겠다.

부계혈연주의를 근간으로 하던 친족관계가 양계제적兩系制的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도 넓은 의미에서는 수정가족의 실례라 할 수 있다. 양계제적 경향을 띤 가족 간 연대는 혈연 중심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 가부장제 부계가족과는 일정 부분 구분된다는 점에서 핵가족의 이상과 직계가족의 현실이 병존하는 현상인 '신가족주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내용 가족은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다양한 역사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가족은 다양한 적응 전략을 발휘함으로써 정상가족이라는 범주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뛰어난 적응력을 보인다. 이에 우리가 정상이라 생각하는 '그런 가족은 없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수정가족을 더욱 폭넓게 정의한다면 결혼 적령기를 넘긴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은 채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기생적 싱글 가족', 부부가 각자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공동부모 가족co-parenting' 등도 가족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수정가족의 실제 사례로 볼 수 있다.

1인가구를 가족으로 볼 것이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의식 측면에서 가족과 분리된 고립적 삶을 상상하기는 어려운 한국적 상황에서 싱글(독신)들이 모여 그룹 홈(공동생활가정)을 구성한 사례도 수정가족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싱글 그룹 홈에서는 1인가구의 장점이라 할 사생활 유지와 가족의 장점이라 할 공동체적 유대를 균형 있게 결합하여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징 및 의의 한국에서 수정가족의 등장은 가족의 구성원

리나 가족 규범 및 가치관 등에 대한 비판이나 반성, 이와 더불어 변화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기보다 개별 가족과 개인 차원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발적 다원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다양한 가족 양식이 시도되고 있음은 기존 가족제도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거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정작 어떤 가족을 지향해 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생략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족 형태의 변화가 젠더 평등 및 민주화를 지향한다거나 개인의 행복을 높이는 등 일정한 방향을 갖고 진행되기보다는 개별적 상황에 맞춰 실용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임기응변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자발적 무자녀 가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화와 함께 LTBT(living together but apart, 동거는 하지만 주거를 공유하지 않는) 커플 같은 새로운 수정가족 형태의 출현도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새롭게 출현할 경우 각 가족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누가 변화를 이끄는 주체인지, 새로운 수정가족의 한계나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김혜경 외, 다산출판사, 2023), 에이징 솔로(김희경, 동아시아, 2023), 한국 가족의 위기(함인희, 가족과 문화14-3, 한국가족학회, 2002).

필자 함인희(咸仁姬)

승중
承重

정의 상주가 신주를 받드는 행위를 통해 가계를 승계하고 그에 수반된 포괄적 권리를 물려받는 것.

내용 승중承重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중重을 이어받다.'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중'을 받는다는 뜻을 지닌 수중受重, '중'을 가진다는 뜻을 지닌 지중持重, '중'을 전한다는 뜻을 지닌 전중傳重과 유사한 의미로 쓰였다. 여기서 말하는 '중'이란 고대 중국에서 임시 신주神主를 지칭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신주는 죽은 자의 혼을 의탁하기 위해 만든 위패를 말하는데, 이것은 우제虞祭를 지내기 위해 제작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우제 전까지 죽은 자의 혼을 의탁할 물건이 필요하였는데, '중'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은 반함飯含한 뒤 남은 쌀로 죽을 쑤어서 항아리에 담아 나무막대기에 매달아 만든 것으로, 죽은 사람의 식량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중'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나무막대기에 항아리가 중첩되어 매달려 있는 형태를 띠었기 때문이다. 이때 나무막대기의 길이는 신분에 따라 차등을 주어 사士는 3척尺, 대부大夫는 5척, 제후諸侯는 7척으로 제작되었다. '중'은 임시로 만든 신주였기 때문에 정식 신주가 만들어져 그 쓰임을 다하면 빈묘殯廟에 두거나 매안埋安하였다. 은나라에서는 빈소를 설치한 직후 '중'을 빈묘의 묘정에 두었다가 우제가 지난 후에는 죽인 이의 빈묘에 엮어 두었고, 주나라에서는 '중'을 철거한 후 이를 매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처럼 '중'은 정식 신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임시 신주로 사용되었으므로 승중은 신주를 이어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더욱이 신주를 이어받는 행위는 상주喪主의 몫이었고, 신주로는 사망한 자의 장자長子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승중이라 하면 장자가 부친 사망 후 그 권한을 계승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대를 잇는다는 포괄적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사망한 자의 후사를 이을 적장자가 없을 때는 손자에 의한 계승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경우를 적손승중嫡孫承重이라 하였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제시한 상장례의 절차를 살펴보면 죽음을 확인한 후에 곡哭과 복復을 하고 상주를 세우도록 하였다. 이때 상주는 장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자가 없는 경우 장손長孫이 승중하고 궤전饋奠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적손승중은 조부보다 부친이 먼저 사망하였다는 전제가 있을 때 조부에서 손자로 가계家系를 승계하는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적손이 승중하면 상복이 더해지는 가복加服이 이루어졌다. 즉 손자가 조부를 위해 입는 상복이 아니라 장자가 부친을 위해 입는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의례儀禮』에서는 손자가 조부모를 위해 기년복朞年服을 입

어야 하나, 부친이 먼저 죽어 승중하게 되면 자최齊衰·참최斬衰의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실제로 17세기 후반에 실성한 부친을 대신하여 장손이 조부를 승중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민신閔愼의 대복代服 사례에서도 손자 민신은 조부 민업閔業을 위해 참최복을 입었다.

또한 적자嫡子가 없고 첩자妾子만 있어 첩자에 의한 계승이 이루어질 때는 이를 첩자승중妾子承重이라 하였고, 세대를 뛰어넘어 증손자曾孫子에 의한 계승이 이루어질 때는 증손승중曾孫承重이라 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승중은 피계승자 사망 후 계승자가 피계승자의 권한을 승계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행위 주체에 따라 계승 형태를 각기 구분할 수 있다. 즉 행위 주체가 아들이면 부자계승父子繼承을 의미하며 손자이면 조손계승祖孫繼承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승 형태의 변화는 가족의 유지와 존속이라는 측면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가족제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참고문헌 17~18세기 적손승중에 관한 일고찰(고민정, 조선시대사학보67, 조선시대사학회, 2013), 조선후기 가계계승 연구(고민정,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필자 고민정(高旻廷)

시묘살이

정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식이 묘 옆에 움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탈상할 때까지 묘소를 돌보는 일.

역사 공자孔子가 사망하자, 그의 제자들이 3년간 심상心喪을 지내고 돌아갔는데, 제자 중에서 자공子貢은 6년 동안이나 공자의 묘 곁에서 여막을 짓고 추모하였다고 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의종대에 손응시孫應時, 명종대에 장광부張光富, 고려 말기에 하광신河光臣 김광재金光載, 하윤원河允源 등이 3년의 여묘廬墓 생활을 하였다. 또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의하면 최누백崔累伯은 아버지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잡아서 복수하고 3년 동안 여묘에서 살았다. 경주에 살던 손시양孫時揚은 부모를 위해 각각 3년간 묘 옆에 여막을 짓고 살았으므로, 국가에서 그에게 정문旌門을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성리학의 대가인 정몽주鄭夢周는 부모의 상에 각각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후 조선시대가 되자 시묘살이는 사대부에게 널리 유행하였다.

내용 시묘살이는 유학의 유행과 함께 널리 실행되었다. 유학은 효를 지상으로 하는 이념이므로, 유학자는 돌아가신 부모를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셔야만 했다. 그 때문에, 시묘살이 중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하면 생명을 잃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묘살이는 유가의 보편적인 예서인 『가례家禮』 등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럼에도 조선시대에 시묘살이가 사대부가에 유행하게 된 것은 옛날 공자의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서 한 일이 중국에서 계승되었고,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대부가의 풍속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시묘살이는 의례의 실천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시묘살이는 『가례』에 언급되지 않았음은 물론, 국가 의례서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도 없는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편람四禮便覽』의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다만 '반곡反哭'에서 이황李滉의 의견을 소개하는 정도였다.

이처럼 시묘살이가 예서에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가례』에서 규정한 상례의 일정과 어긋나는 면이 있기 때문이었다. 즉, 장례가 끝나면 혼백을 집으로 모셔 와야 하고, 그런 다음에 망자의 신주를 사당에 들이게 된다. 그런데 상주가 묘소 옆에 거주하게 되면 혼백을 모셔오는 '반혼返魂'을 삼년상 이후로 미루어야 해서 예서의 일정과 어긋나게 된다. 예학자의 입장에서는 시묘살이를 명쾌하게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사례편람』의 인용문에 의하면, 퇴계 이황은 시묘살이에 대해서 "지금 여묘의 풍속은 성하고 반혼하는 예는 없어졌으니 한탄스럽다. 다만, 말세에 예법이 무너져 집으로 부모의 혼백을 모셔와 근신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면, 여묘를 행하여 혼잡을 피하는 것보다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누백포호 | 오륜행실도 중 부분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광신여묘 |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중 부분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또한, 이이李珥는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지금 장례 후에 반혼하는 일이 많은데, 이는 정말 바른 예이다. 다만, 세속 사람들이 잘못 본떠 여묘하는 풍속을 폐하되, 반혼 후에는 각기 제집으로 돌아와 처자와 한데 거처하면서 예법을 크게 무너뜨리니 심히 한심하다. 무릇 어버이 상을 당한 이는 스스로 헤아려보아 일일이 예를 따라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니, 마땅히 예에 따라 반혼하고,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면 옛 풍속에 따라 여묘살이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이황과 이이는 원칙적으로 반혼을 바른 예라고 규정하면서도, 만일 반혼으로 인해 효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시묘살이를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들은 시묘살이가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풍속을 현실로 인정하여, 시묘살이를 일부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이는 자신의 의견대로 현실에서도 시묘살이를 이행하였다. 본인의 연보年譜에 의하면, 그는 16세 때에 어머니 신사임당申師任堂이 별세하자 3년간 여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이황의 경우에는 본인의 연보에서 여묘와 관련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례편람』 이후로 시묘살이를 언급한 예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19세기에 유장원柳長源은 『상변통고常變通攷』에서 이를 소개하였다. 그는 '반곡'에서 '여묘의 잘못[廬墓之非]'라는 항목을 별도로 소개하면서, 주자와 이황의 말을 빌려 여묘가 잘못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의하면, 반혼은 본래 고인이 평시에 거처하며 편안히 여기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조금이라도 신혼神魂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인데, 요즘 사람들은 체백體魄을 무겁게 여기고 신혼을 가볍게 여기니 무지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여묘가 풍속이 되면서 반혼의 예가 마침내 폐기되었으니 통탄스럽다고 하였다. 결국, 앞서 성리학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중국의 주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이황, 이이, 이재李縡, 유장원 등은 시묘살이를 명쾌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시묘살이는 부모를 위한 최상의 효행으로 인식되면서 계속 이행되었다.

그런데 시묘살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많이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사대부가 남긴 몇몇 일기에서 일부 내용만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살았던 이정회

李庭檜와 서울 서소문에 살았던 이문건李文楗의 경우에는 그들의 일기를 통하여 일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정회는 1578년 5월 1일에 모친상을 당하여 만 2년 동안 상제喪制의 몸으로 생활하였다. 그는 장사 후에 여막에 거주하면서 초하루와 보름에는 항상 삭망제朔望祭를 지냈다. 그러면서 여막에서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였고, 틈틈이 농사일을 돌보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조상을 위한 사업에 몰두하였으니, 추수가 끝난 겨울에는 묘역에 표석標石이나 상석床石을 조성하는 일에 열중하였다.

이문건은 1535년 1월 5일 모친상을 당하여 시묘살이를 하였다. 당시 그의 집은 서울 서소문에 있었는데, 모친이 돌아가시자 양주 인근에 모셨다. 이문건도 상중에 묘역을 돌보는 일에 열중하면서, 사회적·경제적인 활동도 동시에 하였다. 그는 평상시처럼 전답을 관리하는 일이라든지, 소속된 노비를 관할하는 일 등을 이행하였다. 물론 일상생활의 하나인 봉제사奉祭祀와 접빈객接賓客도 거르지 않았다. 이문건은 시묘살이 중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는 상중 내내 감기 기침에 시달리곤 해서 간혹 조석곡朝夕哭을 생략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몸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삼이나 약을 복용하였고, 간혹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이처럼 상중에 금기시되는 술을 마신 것은 극도로 약화된 체력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주자朱子는 상중에 어른이 억지로 술을 권할 때, 만약 사양하기 어려우면 그 뜻을 따르는 것 또한 해로움이 없다고 하면서, 다만 술에 흠뻑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예기禮記』의 「상대기喪大記」에서도 거상 중에 병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고기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이문건이 약과 술을 복용한 것은 몸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었으며, 예서에서도 제한적으로 용인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문건의 사례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중에 철저하게 소식素食하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매우 고통스럽게 생활하였다.

상중인 이들은 관직생활을 할 수 없었음은 물론, 먼 길조차 떠나지 못했을 정도로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을 계기로, 상제의 몸으로 생활하는 동안 학문에 몰두하여 저술활동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안동의 김성일金誠一은 43세 때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시묘살이를 하면서 부친의 행장, 묘지문를 작성하였으며, 1년이 지난 뒤에는 『상례고증喪禮考證』을 편찬하였다. 또한, 류성룡柳成龍은 60세 때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이때에 그는 『신종록愼終錄』 『영모록永慕錄』 『상례고증喪禮考證』 등 여러 편의 저술을 남겼다. 후대의 일이기는 하지만, 독립운동가인 이상룡李相龍도 15세 때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이때에 수많은 장서를 탐독하였고 천문天文, 지지地誌 등을 연구한 바 있다. 이처럼 상중임에도 면학에 몰두하는 이들이 있었으며, 그 외에 이전에 하지 못했던 조상들의 자료 및 문집 정리, 조상의 묘소를 돌보는 일 등에 열중한 이들도 있었다.

특징 및 의의 시묘살이는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묘 옆에 움막을 짓고 생전에 못다 한 효도를 지속한다는 의미가 있다. 시묘살이는 『가례』나 『국조오례의』 등의 예서에는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의례행위라기보다는 사대부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전통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擊蒙要訣, 四禮便覽, 常變通攷, 사대부의 의례와 제사(김문택, 조선사회 이렇게 본다, 조선사회연구회, 2010), 상례와 시묘살이(김문택, 조선시대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0),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7).

필자 김문택(金文澤)

시아버지

정의 남편의 아버지를 일컫는 호칭.

내용 전통적 가족·친족제도에서 여성이 결혼하여 남편의 가족 및 친척과 새롭게 형성하는 가족관계에 시댁을 뜻하는 '시媤' 자를 붙여 여성의 결혼 전 가족·친족과 구분하였다. 결혼한 여성 입장에서 시아버지는 매우 어려운 존재이다. 가부장으로서의 권위와 더불어 남녀 간의 성별 차이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아버지는 가계家系를 계승시킬 후계자를 출산하는 며느리에게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

는 며느리를 훈육할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데서도 기인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 관념은 현재까지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권력관계는 호칭에도 반영되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직접 부를 경우에는 '아버님'을 많이 사용한다. 아들이나 딸이 사용하는 호칭보다 높이는 셈이다. 반면 제3자가 어떤 여성의 시아버지를 간접적으로 지칭할 때는 '시아버님'이나 '시아버지'를 사용한다. 여성의 친정 부모가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는 '시어른'이나 '바깥시어른'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사돈댁을 존중하는 의미이다. 법적으로는 '시부媤父'가 주로 사용된다.

조선 전기에는 사위가 처가에 1년 이상 머무르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 훨씬 많았으나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부거제夫居制가 강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오늘날 한국인 대부분이 연상하는 시댁과 며느리 관계, 시댁과 처가 관계는 이 시기에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남 부부가 부모를 부양하며 제사를 모시고, 가산家産 상속에서도 우대받는 관행도 확립되었다. 따라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봉양하는 의무와 규범 역시 강화되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개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부계가족과 또 다른 부계가족의 사회적 연대였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될 사람은 문중 친척이나 향교鄕校, 서원書院, 향약鄕約 등 혈연 및 지역사회에서 형성한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하여 자기 집안의 며느리로 적합한 인물을 물색한 뒤 아들의 혼사를 치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혼맥婚脈은 사회적 지위 유지 혹은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근대로 이행하면서 한국의 가족제도는 서서히 부자관계 중심의 부계 계승 관념으로부터 부부관계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하였다. 최재석의 연구에 따르면 이미 1960년대부터 도시와 농촌의 가족 관념이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 거주자 185명, 농촌 거주자 142명을 설문조사하면서 결혼 후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물었다. 동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도시에서는 24.1%, 농촌에서는 76.4%였다. 별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은 도시 73.8%, 농촌 21.8%로 나타났다. 당시 도시지역 조사 대상으로 서울에서조차 흔치 않았던 아파트 거주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서구적 가족 관념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시부모와의 별거를 선호하는 변화는 당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화가 진전되고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면서 도시의 주거 형태 또한 부모와 장남 부부가 동거하는 유형에서 별거하는 양식으로 바뀌어 나갔다. 최근 사례를 연구한 김주희에 따르면 부거제를 선호하는 관습 때문에 결혼한 아들의 주거를 마련할 때 시댁에서 비용을 부담하되 시댁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경향은 남아 있다고 하였다.

아들 혼사, 다시 말해 며느리를 들이는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미치는 영향력도 감소하였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들끼리의 중매 네트워크도 생겨났고, 자녀 양육과 출가 과정에 어머니의 역할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개입할 여지가 감소하였다. 또한 결혼 방식이 중매혼에서 연애혼으로 바뀌면서 자녀의 결혼이 '집안끼리의 만남'에서 '사랑하는 개인의 만남'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을 '결정'하는 역할에서 아들이 선택한 며느리에 대해 '동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과거의 관습을 고수하는 아버지는 며느리에 대해 가부장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려 들거나 아들이 과거에 맡았던 문안, 봉양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남아 있다. 재산상속이나 경제적 지원과 결부시키는 극단적인 경우도 간혹 언론매체에 보도되곤 하는데 시대와 세대 변화에 부응하여 가족관습이 변화하였다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징 및 의의 시아버지는 전통적 가족구조에서 며느리를 선택하는 데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다. 또한 시아버지는 며느리에 대해 가장권을 행사하는 권력관계를 형성하였지만 부자관계보다는 권력관계가 약했고, 가계를 계승할 손자를 낳는 며느리에 대해 시아버지는 정서적으로 너그러운 경우가 많았다. 가족 관행의 변화에 따라 시아버지의 결정권과 권력관계가 약화되고 의례적인 관계로 변모하였다.

참고문헌 한국 가족과 친족의 인류학(정향진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한국가족연구(최재석, 민중서관, 1966),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한국인의 친족호칭과 친족조직(최재석, 아세아연구 6-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대화(李大和)

시어머니

정의 남편의 어머니를 일컫는 호칭.

내용 전통적 가족·친족제도에서 여성이 결혼하여 남편의 가족으로 편입되었을 때 남편의 어머니는 시어머니 지위를 획득한다. 이광규는 결혼한 여성의 지위를 생득지위가 아닌 성취지위라고 보았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주부권主婦權을 이양받기 위한 훈육을 받고 아들을 낳아 양육하면서 가족의 주부권을 승계하고, 아들이 결혼하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훈육하여 주부권을 물려 주는 과정을 일종의 성취 과정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며느리에게 가장 어려운 존재가 바로 시어머니이며, 소위 '시집살이'는 주부권을 이양하는 훈육인 셈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다른 부계가족으로부터 결혼을 통해 편입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아들과의 정서적 관계에서는 일종의 경쟁관계라는 것이다. 전통적 가족구조의 핵심이 부자관계인 만큼 결혼만으로는 남편의 친족집단에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 계승자인 아들을 낳아야 한다. 친자를 두지 못한다면 양자를 들여야 한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차단되었던 전근대사회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결혼을 통해 아들과 새로운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일종의 경쟁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광규의 해석은 현재의 고부관계姑婦關係를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직접 부를 때는 '어머님' 또는 '어머니'를 주로 사용한다. 그에 비해 타인이 누군가의 시어머니를 지칭할 때는 '시어머니'나 '시어머님'으로 부를 때가 많다. 여성의 친정 가족들이 시어머니를 지칭할 때는 '안시어른'이나 '사돈댁' 정도로 칭한다.

시어머니는 그 가족에서 주부主婦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 가족구조에서 가장권家長權을 행사하는 아버지나 시아버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죽을 때까지 보유한다. 현재는 폐지된 호적법에서도 호주승계는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시어머니로서의 지위는 사망할 때까지 유지되지만 집안의 살림을 관장하는 주부권은 생전에 며느리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가계家計를 상징하는 곳간의 열쇠를 물려준다거나 주부권의 상징적 공간인 안방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시어머니는 다른 방으로 옮기는 '안방물림' 같은 관행이 이를 상징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훈육이 필요하다. 첩과 침모, 식모 등을 지휘하고 시부모의 시중을 들며 시댁의 가족을 돌보는 이른바 '시집살이'는 다른 가족에서 편입된 며느리가 새 가족의 관행에 익숙해지고 주부권을 승계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배계층 관행의 영향을 받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서도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키며 일꾼처럼 대하는 것이 시어머니의 권리인 것처럼 만연되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군림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위에 부합하는 책임도 요구되었다. 출산과 양육에 익숙하지 않은 며느리를 도와 손자녀의 양육과 훈육을 적절히 분담하고, 엄격하되 예의를 갖춰 자녀와 며느리를 대하도록 조선시대의 여러 여훈서女訓書에서 강조하였다. 당시 여훈서는 가부장적 가족·친족제도에 복종하고 여성에게 내면화시키는 목적에서 편찬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유교적 덕목은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 상하 간의 사회질서를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쌍방 모두에게 당위적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근대 이후 유교적 덕목에 관한 이데올로기는 급격히 약화된 반면 아들을 둘러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경쟁관계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습과 실생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였다. 산업사회로 변모하면서 농업사회에 기초한 전통적 가족·친족구조는 형식화되었다. 이에 따라 가산 계승을 의미하는 주부권 역시 약화 내지 소멸되어 갔다. 그리하여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역시 '시집살이'라는 행위가 과다표상되는 면이 강해졌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및 가족계획에 따라 자녀를 적게 두게 되면서 어려운 시어머니 대신 친정어머니와의 정서적·실질적 유대가 강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특히 자녀 양육에서는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김주희가 지적한 바 있다. 2000년대 후반에 외동딸로서 결혼한 여성 14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한 결과 시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는 1건에 불과했으며, 친정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가 5건이었다. 거주지는 부거제父居制 의식이 아직 강하게 작용하며, 부부가 부모 세대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 시댁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았다. 친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는 며느리의 소득이 남편에 필적할 정도로 안정적인 경우에 한하였다. 즉 현재 한국의 가족관계에서 시어머니는 과거의 관습에 따라 가족 내에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할 뿐 실제 생활 영역에서는 시어머니 역할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시어머니는 전통적 가족에서 주부의 지위를 겸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시어머니 지위와 달리 주부 지위와 권한은 며느리의 훈육 과정을 거쳐 이양하는 것이 주된 관행이었다. 자녀 양육에서는 며느리에게 조언하거나 보조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현대로 오면서 이러한 전통적 역할은 약화되고, 부부 및 핵가족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변화하면서 시어머니의 지위 역시 실생활과 달리 형식화되었다.

참고문헌 한국가족연구(최재석, 민중서관, 1966),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한국인의 친족호칭과 친족조직(최재석, 아세아연구6-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대화(李大和)

시조신화
始祖神話

정의 시조의 탄생과 득성得姓 과정을 통해 씨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

역사 시조신화는 시조의 탄생과 득성 과정을 통해 씨족집단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이다.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시조신화는 건국신화와 순차적 과정과 혼재를 거쳐 오늘날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시조신화이자 환씨桓氏 씨족의 신화이며, 〈동명왕신화〉는 고구려의 시조신화이자 고씨高氏 시조신화이다. 〈박혁거세신화〉 〈김알지신화〉 〈석탈해신화〉 역시 신라의 시조신화이며, 동시에 각각 경주박씨慶州朴氏, 경주김씨慶州金氏, 경주석씨慶州昔氏 시조신화이다. 또한 〈김수로왕신화〉는 가락국의 시조신화이자, 김해김씨金海金氏 및 김해허씨金海許氏의 시조신화이며, 신라 육성인 이씨李氏·최씨崔氏·손씨孫氏·배씨裵氏·정씨鄭氏·설씨偰氏 신화 역시 각각의 씨족집단에 의해서 향유된 시조신화·씨족신화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국신화와 시조신화의 긴밀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데, 씨족집단이 국가의 형태로 발전하면 시조신화가 건국신화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그 자질과 기능면에서 건국신화와 시조신화의 차별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 원류는 같다. 고대 씨족 단위의 시조신화가 국가체제 속에서는 자연 건국신화가 되는데, 그에 반해 건국신화가 되지 못한 시조신화는 씨족집단에 의해 신화적 문맥을 지속하면서 전승된다. 따라서 시조신화는 건국신화적 자질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신화로, 후대의 역사의식의 개입으로 변이를 거듭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시조신화는 소규모 씨족 단위로 전승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국신화보다 쉽게 망각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 일부 시조신화는 씨족집단의 존망存亡에 따라 씨족의 범주 안에서 신성시되고 중간에 가계기록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 신성성의 관념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시조신화를 통해 역사시대에 적합한 신화적 질서를 찾을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조신화는 결코 고대의 상고시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시기마다 각각의 시대적 사실과 문화를 수용하면서 오늘날까지 현전한 것임을 살필 수 있다.

내용 건국신화와는 달리 시조신화는 이야기 전개가 간략하다. 시조가 탄생하고 그로 인해 성씨가 부여되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이다. 시조의 탄생이 신화 전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시조신화의 분류

가 가능하다. 〈단군신화〉 〈주몽신화〉 〈박혁거세신화〉 〈석탈해신화〉 〈김수로신화〉 〈삼성신화〉 등의 건국신화는 건국에 초점을 두고 시조의 탄생에서부터 혼인, 이적, 죽음 등에 이르기까지 영웅일대기적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시조는 죽어서도 산신이 되거나 시조신격으로 숭앙되고 있다. 물론 〈주몽신화〉 〈박혁거세신화〉 〈석탈해신화〉 〈삼성신화〉는 성씨의 기원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성씨시조신화의 면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건국시조로서의 양상을 보이는 신화 외에 시조의 탄생과 득성 과정을 통해 씨족집단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는 〈김알지신화〉의 경주김씨慶州金氏, 남평문씨南平文氏, 하음봉씨河陰奉氏, 파평윤씨坡平尹氏, 달성배씨達城裵氏, 창녕조씨昌寧曺氏, 충주어씨忠州魚氏, 평강채씨平康蔡氏 시조신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시조신화는 해당 성씨집단에서 족보와 같은 가계기록을 통해 그 신화적 기능과 의미가 지속되고 있어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신화는 크게 상생담箱生譚과 이류교혼담異類交婚譚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생담은 금궤金櫃, 석함石函, 궤櫃, 금합金榼과 같은 상자를 매개로 하여 성씨시조가 탄생하는 신화로서, 성씨시조가 태어나기까지 부모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비일상적인 예조만이 강조된 뒤, 상자와 같은 신체神體를 통해 신이한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는 이야기이다. 상생담에서는 성씨시조를 이 세상에 보낸 하늘[天]의 존재가 강조되며, 왕이나 노파, 단군은 하늘이 보낸 시조를 발견하고 양육하며 성씨를 주어 지상에서 권위를 부여하는 대행자이다. 한편, 이류교혼담은 특정한 공간에서 인간과 이류와의 교혼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성씨가 부여되는 공통의 줄거리를 갖는다. 이런 신화에 등장한 인물들의 관계는 각각 혈연관계, 배우관계, 개입관계라는 구도 속에서 파악되며, 여성과 동물, 즉 지모신地母神과 수부신水父神,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수평적, 수직적인 대립 관계를 맺고 있다.

그동안 성씨를 중심으로 한 시조신화의 연구는 미흡했다. 시조신화는 건국신화나 무속신화에 부분적으로 언급되거나 몇 개의 시조신화를 〈야래자설화〉 유형 속에 다룬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 김광순을 필두로 허경회, 성기열, 장장식, 이수봉, 이영수 등에 의해서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 가운데 논자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발견되지만, 특정 성씨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상세한 의미 분석과 문학적 의의를 규명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궉씨 시조, 청주궉씨淸州鵝氏, 하음봉씨 신화가 그 대상이다.

특징 및 의의 시조신화는 고대적 산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날에도 신화적 기능을 실현하면서 전승되고 있다. 역사문화적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조신화는 오늘날 과거의 시조와 현재의 자신 그리고 미래에 있을 후손의 관계를 긴밀하게 맺어 주는 연결고리이며, 동시에 시조가 있기에 자신이 존재하고 자신이 있기에 후손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씨시조신화는 특정 성씨의 범위에서 신성시되는 신화이며, 오늘날 성씨라는 제한된 혈연적 지속성 위에 존재한다. 성씨시조신화의 전승자는 그 성씨를 지닌 특정의 씨족집단이다. 신화를 통해 씨족의 신화적 연원을 밝히고 있고 나아가 이를 통해 자기 조상을 신격화함으로써 조상에 대한 신성성과 성씨에 대한 당위성을 표출하기 때문에 시조신화는 신화적 질서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한 시조신화는 성씨 제도와 족보 편찬, 시조신 제의 등과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며 오늘날까지 신화적 기능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성씨 제도는 단지 혈통의 표시에 끝나지 않고, 사회조직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 사상·문화·도덕·관습의 근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 성씨시조의 근원과 성씨의 유래를 이야기하는 시조신화 역시 우리 민족의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다. 따라서 시조신화는 성씨 제도의 사회성, 족보의 역사성, 시조신 제의의 종교성 등의 복합관계 속에 위치하며 이러한 문화적 인식이 신화를 거듭나게 하고 있다.

참고문헌 궉씨 시조설화의 형성과 신화성(장장식, 한국민속학보9, 한국민속학회, 1998), 청주궉씨가문신화의 변증고(이수봉, 설화문학연구-하,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하음 봉씨 성씨시조설화 연구(이영수, 한국학연구1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한국구비전승의 문학(김광순, 형설출판사, 1988), 한국설화의 연구(성기열, 인하대학교출판부, 1988), 한국씨족설화연구(허경회, 전남대학교출판부, 1990), 한국의 성씨시조신화 연구(서해숙,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서해숙(徐海淑)

시집

정의 혼인한 여성의 남편과 남편 가족이 살아온 집.

내용 시집은 혼인한 여성의 관점에서 의미화된 말로, 시가媤家 또는 시댁媤宅으로도 쓴다. 높임말인 시댁이 더 익숙한 것은 시집살이 혼속婚俗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시집살이 혼속은 신부가 혼인 후 남편의 집, 곧 시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혼인 풍속으로, 조선왕조가 친영례親迎禮로의 개혁을 추진한 것을 계기로 이 땅에 정착하였다. 이렇게 혼인한 여성은 시(조)부모, 시동생, 시누이, 시숙, 동서 등으로 구성된 남편의 가족 집단에 이른바 '새 식구'로 편입된다. 혼자 물설고 낯선 시집으로 들어가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의리義理의 가족관계를 맺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친영은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르고 그대로 시집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르고 처가에서 머물러 사는 남귀여가男歸女家 전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조선왕실의 부단한 노력에도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혼례는 신부 집에서 치르되 처가 거주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절충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시집살이가 본격화되었다. 시집살이가 기혼 여성의 보편적인 존재방식이 됨으로써 여성들은 시집의 울타리 안에서 혼입내자婚入內者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시집은 서서 들어가서 누워서 나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혼인한 부부에게 처가가 더 중요하거나 처가와 시가가 대등하게 중요하였던 사회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남귀여가혼의 전통 속에서 혼인 후에도 주로 친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딸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다. 혼인 후 친정에서 더 많은 기간을 살면서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던 신사임당이나 딸과 며느리 역할을 균등하게 해내면서 남편에게 당당하였던 송덕봉의 삶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편 유희춘이 남긴 『미암일기眉巖日記』에 의하면 송덕봉은 혼인 이후 친정인 담양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며, 시집은 대소사가 있을 때 왕래하였을 뿐이다. 오랜 기간 딸 가족과 동거하였던 송덕봉은 처가에서 거주하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서도 섭섭함이 전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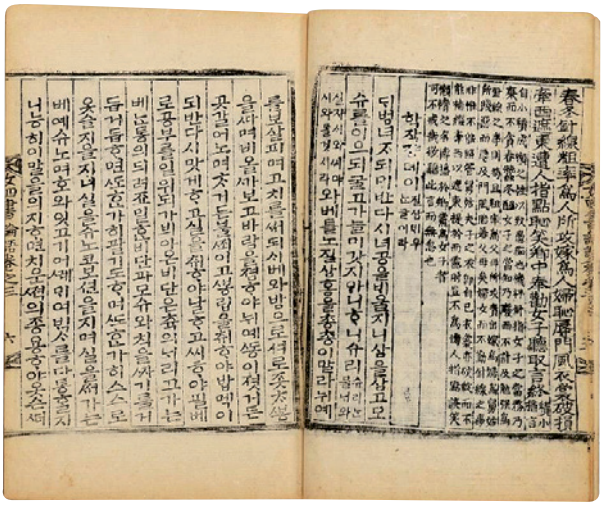

여사서 | 가로21 세로33 | 대한제국 | 국립민속박물관
박만환이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전해져 내려오는 종가 법도 전승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 적은 교화서.

17세기는 변화 속에서도 이러한 처가 거주가 지속되는 한편으로 점차 부계夫系 가족과 문중에 대한 추구가 확산하여 간 시기이다. 조선조 성리학자인 퇴계退溪 이황은 16세기에 이미, 처가에 사는 아들 준과 종가를 비우고 자주 처가에 가 있는 종손에게 염려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있다. 안동 천전마을처럼 현달顯達한 사위의 성씨를 중심으로 한 부계父系 동성촌들이 여러 지역에서 형성되는 것도 이 시기이다. 경주 양동마을은 사위로 마을에 들어온 손소와 그 외손 이언적이 문명文名을 드러내면서 경주손씨慶州孫氏와 여주이씨驪州李氏의 양대 세력이 공존하는 부계친족 마을이 된 경우이다. 부계친족 마을로 전환되는 이러한 변화는 조선왕조가 추구하였던 부계종법의 가부장제가 혼인 및 가족관계, 나아가 친족조직에까지 관철되어 그 전형적 형태로 가시화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일체의 권력 구조에서 배제되고 가계 계승과 재산 및 제사상속에서 점차 소외됨으로써 남성 가부장과 시집에 종속된 존재가 된다. 그 대신 여성에게는 부계 적장자를 출산하는 책무와 더불어 시집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그 친족의 결속을 도모하는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을 비롯하여 시집의 가사 전반을 성실히 수행하는 가모家母의 책임과 역할이 주어졌다. 지위는 낮아지고 권리는 사라진 대신 책임과 역할은 배가된 것이다. 무엇보다 그 자리가 시집의 중

문 안으로 제한됨으로써 자아실현이나 개인적 성취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 조선조 사회에서 여성이 교화와 통제 대상이 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왕실 또는 가문에서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훈서女訓書류의 간행이 이어졌다. 신숙주와 윤형로는 가훈을 쓰면서 교녀敎女·형녀刑女 항목을 따로 두었고, 한원진의 『남당선생한씨부훈南塘先生韓氏婦訓』, 이지수의 『가녀계사嫁女戒辭』처럼 가부장이 직접 여훈서를 저술한 경우도 있다. 시부모와 남편에 대해서는 효순과 복종을, 시동생·시누이·동서 등의 수평적 관계에서는 화목의 도리를 강조하는 등 성리학적 이념에 기반을 둔 가정의 이상과 함께 여성의 덕목과 그 실천지침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특히 수평적 가족관계의 화목 여부에 대한 책임을 며느리, 특히 며느리의 '말'에 전가하는 담론이 지배적이다.

혼인을 기점으로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 변화를 겪게 된 여성들은 이러한 가부장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시집의 진정한 일원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친정 부친의 장례에 간 딸이 부친의 장지가 명당이라는 말을 듣고 속임수로 빼앗아 시아버지의 묘터로 쓴 후로 시집 가문에서 삼정승이 났다는 내용의 〈친정 명당을 빼앗아 온 며느리〉 이야기는 친정보다 시집의 융성을 더 바랄 정도로 출가외인의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시집이라는 공간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두게 된 여성들은 종사從死 열녀 사례들에서 보듯이 죽음으로써 시집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까지 나아간다. 게다가 사족士族 남성들은 이런 며느리의 자살을 가치 있는 죽음이라 칭송하며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드높인다.

오늘날에는 도시화와 더불어 아파트가 보급되고 핵가족화가 이루어지면서 장자도 부모를 모시지 않는 추세이다. 안부 전화를 하고 용돈을 보내드리고 명절과 생신에 찾아뵙는 것으로 시집과 시부모를 배려하는 정도인데, 이것조차도 내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시집이나 시집 식구는 며느리에게 어렵고 불편한 대상이지만,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집의 위상이 달라졌다. 도시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아기 양육을 이유로 친정 부모와 함께 살거나 가깝게 이웃하고 사는 경향도 나타난다. 시집을 밀어낸 처가살이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볼 일이지만 흥미로운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특징 및 의의 조선조 사회는 아내나 어머니보다 며느리의 정체성에 대한 추구가 더 강한 것이 특징이다. 부계종법의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책무가 그만큼 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혼인한 여성들은 시집의 온전한 혼입내자가 되기 위해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는 며느리로서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삶을 살았다. 시집 안에서 자기 존재 증명을 해야 했던 며느리들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극에 달한 조선 말기에는 시집 가문을 위해 종사從死 열녀의 길을 택하기까지 하는데, 시집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잔혹한 여성사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16세기 송덕봉의 삶과 성리학적 지향(이성임, 역사학연구45, 호남사학회, 2012), 농촌 여성 생애담의 주제와 생애인식 양상(천혜숙,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조선 전기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 변화와 재산권(이순구, 여성과 역사23, 한국여성사학회, 2015), 조선시대 딸에서 며느리로 살아가기(이미진, 대동한문학53, 대동한문학회, 2017), 조선조 사회와 가족(이이효재, 한울아카데미, 2003).

필자 천혜숙(千惠淑)

시집살이

정의 여자가 혼인 후 시집 식구들과 살면서 심신 양면으로 겪는 고된 생활.

역사 고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를 드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 일반적이었지만, 조선왕조는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친영제親迎制로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왕실의 혼례를 친영의 예로 거행하면서 그 시행을 추진했지만, 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선 중기 이후 반친영半親迎의 절충안이 제시되고 여러 가지 변통과 변례를 거치면서 신부의 신행(우귀)이 빨라지는 변화 속

에서 시집살이가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근대 이후 산업화와 핵가족화 등의 사회문화적 변동과 더불어 시집살이 전통도 급격히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내용 시집살이는 혼인을 통해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여자가 남편의 집에 들어가 사는 거주 방식과 그 과정에서 겪는 힘든 경험과 고된 삶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말이다. 신랑이 혼인 후 처가에서 장기간 머무르는 남귀여가와 달리, 시집살이는 신부가 홀로 자신의 가족을 떠나 남편 가족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고초가 따르기 마련이다. '시집생활'이 아니라 '시집살이'라고 한 것에서도 고난의 의미가 드러난다.

일제강점기까지도 한국인들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일정한 지역에서 영세소농 공동체이자 부계 중심의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경향이 강하였다. 장남과 맏며느리가 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며, 차남 이하는 혼인 후 분가하더라도 대부분 멀지 않은 곳에서 부모의 통제를 받고 살았다. 따라서 기혼 여성들은 대부분 시집의 반경 안에서 직간접으로 시집살이의 경험을 하게 된다. 시집살이 혼속에서 여성은 한 사람의 아내 또는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는 시부모 봉양, 후사後嗣 출산,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과 같은 책무가 부여되었는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쫓겨날 수도 있었다.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다언多言 또는 도벽 같은 허물이 있는 며느리는 쫓아내도 좋다는 '칠출七出'의 관행까지 있었다. 게다가 혼인한 딸들은 친정에서 출가외인出嫁外人으로 취급되었으므로, 기혼 여성들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잘 수행해서 시집의 진정한 식구, 곧 혼입내자婚入內者가 되어야만 했다.

시집살이에는 다른 가문에서 시집 온 며느리를 '자기 집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엄격하고 혹독한 훈련이 포함된다. 며느리에 대한 훈육은 주로 시어머니의 소임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부 간 갈등이 며느리의 시집살이를 더욱 힘들게 하였다. 며느리에게는 오로지 순종과 인내의 미덕이 요구되었다. 친정 부모들은 시집가는 딸에게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으로 살라."든가, "개한테도 '예'하고 소한테도 '예'하라."고 가르쳤다. 시집에서 며느리의 지위는 남편과 동등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시집의 어떤 식구보다 낮았다. 며느리들이 자기보다 더 어린 시동생이나 시누이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삼종지도三從之道나 여필종부女必從夫란 말은 남성 가부장에 대한 복종의 미덕을 강조하는 가부장 담론이다. 경제적 빈곤이나 과중한 노동으로 시집살이의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경상도에서는 며느리를 '정지꾼'이라 불렀는데, '부엌일하는 일꾼'을 의미하는 말이다. 조혼早婚이 흔하던 시절에는 시조부모까지 모시는 일이 다반사였던 만큼, '층층 시집'이란 말도 있었다. 며느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시어머니가 연로하여 주부권을 이양받게 되면 시집살이는 한결 수월해진다. 그러나 자신이 며느리를 맞게 되면 지난날 자신이 겪은 시집살이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다시 호된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근대기 농촌으로 시집와서 고된 시집살이를 겪은 한 촌로는 '안 태어난 요량으로 살았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죽은 듯이 살았다.'는 말보다 더 심한 표현이다.

여성의 시집생활에서 고부는 시집의 치가사 책임을 공유하는 관계이면서도 이것이 상호 간의 도움이 아니라 시모의 일방적 통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다. 시집살이 경험담들이 고부 간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여성들은 민요와 규방가사閨房歌辭에도 시집살이의 고통을 담아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진 1970년대 이후로 시집살이의 풍속과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보급되고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남아선호도 시집살이도 이제는 빛바랜 말이 되어가고 있다. 여권이 신장되고 여성교육 수준이 높아진 오늘날은 오히려 며느리의 권력이 더 세져서 '며느리 시집'이란 말이 있을 정도이다. 처가 부모를 직접 모시거나 처가 가까이 사는, 이른바 '신처가살이' 문화도 나타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 후기 이래로 한국 여성 대다수가 겪어야 했던 시집살이는 한국 여성사를 특징지을 만한 독특한 문화이다. 다른 선택지가 없이 부계종법과 가부

장제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시집의 안채에서 며느리 정체성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했던 당시 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상황이 한국 특유의 고부갈등과 시집살이 문화가 이루어진 배경이다. 이것은 아들과 딸을 대등하게 배려했던 남귀여가 전통과는 배치되는 가족질서를 형성함으로써 대체로 여성의 책무는 커지고 그 지위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근대기 이후의 여성사가 이러한 시집살이 전통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은 당연하다. 그 과정에서 〈시집살이노래〉, '규방가사'와 같은 탁월한 여성문학이 창출되기도 했다. 시집살이에 관해서는 유교적 가족연구 외에는 이러한 문학담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근래 시집살이에 대한 여성 구술생애사나 사족층의 기록 또는 출토 유물의 한글편지 등에 대한 미시적 독해를 통해 친정살이의 지속과 '느슨한 시집살이'의 국면을 읽어낸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집살이에 대해서는 문헌의 가부장 담론이나 특정 텍스트를 중심으로 일반화해온 경향을 반성하고, 미시사적 탐구를 더 보완하여 내실있는 여성사 연구의 장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8세기 여성의 친정 시집과의 유대 또는 거리에 대하여(김경미, 한국고전연구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시집살이 노래와 말하기의 욕망(이정아, 혜안, 2010), 조선후기 양반 여성의 친정살이와 새로운 생활환경의 모색(하여주, 여성과 역사37, 한국여성사학회, 2022).

필자 천혜숙(千惠淑)

시집살이노래

정의 혼인한 여성이 혼인 생활을 겪으며 생기게 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노래.

개관 시집살이노래는 며느리나 아내로 살게 된 여성이 시부모와 시누이, 남편 등 새로운 가족과 관계를 맺으면서 생긴 갈등과 감정을 담고 있다. 여성 민요를 대표하는 노래군으로서 전국적 분포를 보이며, 문예학적으로는 시집살이라는 여성적 체험을 공감하는 여성들

길쌈 | 김홍도 | 가로24 세로28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사이에서 향유·전승되어온 생활 문예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시집살이노래에 속하는 노래는 〈형님 형님 사촌형님〉〈중이 된 며느리〉〈진주 낭군〉〈누명 쓰고 자결한 며느리〉〈그릇 깬 며느리〉〈홍글소리〉〈시집 식구 비유〉〈친정 모친 죽은 소식〉 등으로 모두 시집 식구와의 갈등을 담고 있다. 한편 〈삼 삼는 소리〉〈밭매는 노래〉〈길쌈노래〉처럼 기능과 관련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남 지역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한 서영숙은 시집살이노래는 본래 전문적인 소리꾼이 부르는 노래가 아닌 여성이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이며 혼인한 여성의 공통적 경험인 '시집살이'를 공유한다고 보았다. 시집살이노래는 본래 일을 할 때 불렸던 노래인데, 길쌈·빨래·바느질·취사·밭매기 등 여자들이 담당한 일들은 오랜 시간 혼자서 계속해야 하는 단조로운 작업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시집살이노래는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에서 개별적으로 불렸는데, 현장조사에 따르면 남성이나 다른 연령대의 여성이 끼어 있을 때 이 노래가 잘 불리지 않는 것은 이

런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노랫가락은 부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읊조리는 식이어서 다채로운 변화가 적은 편이며,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을 하는 긴 시간 동안 계속 부를 수 있도록 사설은 길고 다양하다.

이정아는 시집살이노래가 여성의 발언권이 억압된 사회에서 내면의 욕망을 해갈하기 위해 부른 노래라고 하였다. 가부장제가 생겨나면서 여성적 삶의 한 형태로 존재했던 시집살이는 조선 후기 종법제가 정착하면서 여성의 보편적인 삶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집살이와 관련된 갈등이 시집살이노래의 주된 소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서영숙과 이정아 모두 시집살이노래는 여성의 전 생애, 즉 큰아기 시절, 며느리 시절, 시어머니 시절을 통해 불렸다고 보았다. 큰아기 시절에는 유희적·교육적·예방적 기능으로 불렸고, 며느리 시절에는 정서적 치유와 억압된 욕망의 해소를 위해 불렸으며, 시어머니 시절에 이르러서는 자기 회고나 영웅적 욕망을 과시하기 위해 불렸다.

시집살이노래는 담화 양식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감정을 토로하는 서정적 담화 양식이 주를 이루는 〈흥글소리〉 〈세 원수〉 〈시집 식구 비유〉 〈잠노래〉, 시집살이에 대한 불만과 힘듦을 대화로 제시해나간 〈형님 형님 사촌 형님〉 〈형님 쌀 한 되〉 〈아이고 답답 감 장사야〉, 그리고 서사적 담화 양식이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중이 된 며느리〉 〈그릇 깬 며느리〉 〈누명 쓰고 자결한 며느리〉 〈친정 모친 죽은 소식〉 〈진주 낭군〉 〈송사 당한 며느리〉 〈꼬댁 각시〉 등이 그것이다.

시집살이노래는 화자의 말하기 방식을 통해서도 분류할 수 있다. 하나의 목소리로 직접 말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는 〈흥글소리〉 〈세 원수〉와 같은 노래,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되 돌려 말하는 〈시집 식구 방귀〉 〈시집 식구 비유〉 같은 노래, 여러 명의 목소리로 대화나 극적 발화로 말하는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세 원수〉와 같은 노래, 서술자가 등장하지만 다양한 인물의 시점에서 노래가 진행되는 〈중이 된 며느리〉 〈진주 낭군〉 〈그릇 깬 며느리〉 〈꼬댁 각시〉 같은 노래로 나눌 수 있다.

시집살이노래 속 화자는 일방적으로 며느리의 처지를 지지하며 며느리 의식 외에 다른 의식에는 관심이 없다. 시집살이노래 화자 의식에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없거나 약화되고 있으며, 오직 신입자 며느리로서의 의식과 친정 시절 딸로서의 의식이 나타난다.

시집살이노래는 시집살이를 겪은 누구나 부를 수 있었던 노래이다. 시집살이노래를 불렀던 여성 수만큼이나 노래는 다양하게 존재했을 것이다. 자신의 고유 경험이 덧입혀진 시집살이노래는 오늘날 남아 있는 한정된 노래를 통해 유추하거나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시집살이노래'라는 협소한 개념보다는 확장된 문화적 용어로서 '시집살이노래'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징 및 의의 시집살이노래에는 발언권이 억압된 현실에서 내면의 욕망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주체적 삶과 행복한 생활을 소망했던 여성 의식이 담겨 있다. 다양한 방식의 말하기를 선택하고 조합하여 기존 남성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 의식을 담고 있다. 시집살이노래는 여성의 말하기 욕망이 통제된 현실에서 더욱 발전하고 확대해나갔던 문화적 산물이자 문화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서사민요연구(조동일, 계명대학교출판부, 1979), 서사민요의 구조적 성격과 의미(서영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8), 시집살이노래연구(서영숙, 박이정, 1996), 시집살이노래와 말하기의 욕망(이정아, 혜안, 2010), 한국부요연구(임동권, 집문당, 1982).

필자 이정아(李靜娥)

시집살이담

정의 여성 생애담 중 결혼을 매개로 형성된 가족관계나 사회·문화적 문제로부터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형상화된 이야기.

개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가정에서 며느리에게는 정당한 권리보다는 불합리한 의무가 많이 지워졌다. 불합리한 의무 속에서 며느리가 시댁에서 자기 가족 내

지위를 가장 쉽게 확보하는 방법은 아들을 생산하는 일이었다. 태어난 아들은 며느리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였으며, 이런 측면은 부계父系가족 체계에서 특수한 모자母子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계가족에서의 모자 관계는 시댁에서 며느리의 의무를 완성하고, 어머니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며, 어머니의 투사체로서 아들이 기능하는 우리 가족 체계의 특징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체계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어 새로운 며느리를 대할 때 기본적으로 아들의 배우자로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며느리를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험난할 수밖에 없었다. 아들에게 가지는 애정의 정도만큼 며느리에 대한 적의敵意와 불신不信이 증대되는 심리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제적 가난과 가문 차별 등의 문제가 겹치거나 시부모 개인의 정서적 특성까지 중첩되면 며느리의 시집살이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다. 딸에서 아내로, 며느리에서 어머니로, 다시 시어머니로 점철되는 우리의 여성 생활 전통에서 여성의 '시집살이'는 이런 방식의 보편성과 전형성을 지닌 삶의 국면이었다.

내용 시집살이담의 유형에는 첫 번째로 며느리와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이야기를 거론할 수 있다. '시부모 시집살이는 누워서 하고, 남편 시집살이는 앉아서 하고, 자식 시집살이는 서서 한다.'는 말이 있다. 보통 시집살이 하면 며느리와 시부모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 시집살이는 시부모와의 관계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은 며느리 입장, 아내 입장, 어머니 입장에서 평생 시집살이를 한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만큼 며느리로서 여성이 느끼는 삶의 질곡桎梏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여성의 결혼생활에 동반하는 제반諸般 사항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가난과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시집살이이며, 며느리의 가문이나 용모와 태도 등 때문에 심한 시집살이를 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시집살이담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축'과 인간 생활의 '사회·문화적인 축'이 존재하며,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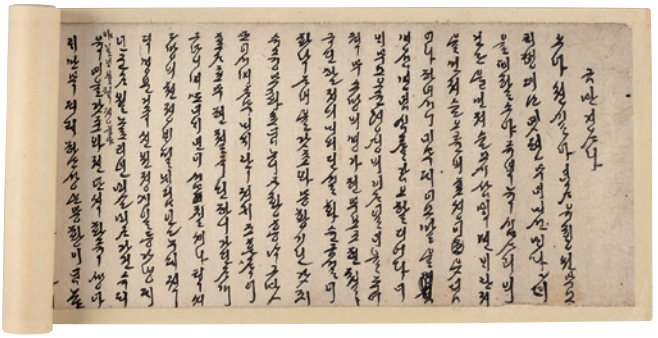

금반경사 | 가로194 세로22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여자의 시집살이 및 행동거지에 대해 노래한 장편가사.

연히 두 축이 혼합된 유형도 존재한다.

먼저 '가족 층위의 시집살이담' 중 '시어머니 시집살이담'은 순전히 시어머니 탓으로 시집살이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시어머니와 가난 혹은 시어머니와 사건이 관련되는 경우인 혼합형도 많다. 하지만 순전히 시어머니의 개인적 성격과 성향 탓에 며느리가 힘든 시집살이를 한 경우도 많다. '시아버지 시집살이담'은 시어머니 시집살이와 비슷하게 순전히 시아버지의 개인적 특성 탓에 시집살이를 한 경우와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가문이나 태도를 문제 삼는 혼합형이 있다. '남편 시집살이담'은 주로 남편의 무능, 도박, 외도 등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순전히 남편의 개인적 행동 특성 때문에 며느리인 아내가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자식 시집살이담'은 주로 사건이 자식과 결부되는 혼합형이 많고, 다른 이유 없이 자식의 행동 특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자식이 서로 결합한 최악의 시집살이를 한 사례도 종종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시집살이가 동시에 겹치기보다는 통시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가족 층위의 네 가지 항목이 동시에 작용하는 유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주로 남편과 아들 시집살이는 시부모 시집살이 이후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화자는 고통의 시집살이를 과거에도 살았고, 현재에도 살고 있다. 시부모와 남편 시집살이를 모두 겪은 뒤 자식 시집살이로 여전히 고통받는 현재진행형 시집살이담인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문화 층위의 시집살이담'에서 '가난'으로 인한 시집살이담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생활고로 인한 이야기지만 시집살이 자료

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인간관계로부터 비롯된 갈등이 시집살이를 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한 정서적 충격이나 심리적 상처를 안고 있는 화자가 아니라는 점이 이 유형의 특징이다. 가난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과거에 가난으로 인해 시집살이를 한 것은 현재의 화자들에게 추억 정도로 남아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역사적·개인적 '사건'으로 인한 시집살이담은 아무래도 6·25전쟁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개인적 사건으로는 출산이나 간병 등의 경험이 다수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 시집살이담'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와 사회·문화적인 것이 서로 혼합되는 양상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이는 시집살이가 온전히 시어머니 때문만도 아니고, 어떤 사건이나 며느리 자신의 태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선후의 문제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요소가 혼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살이이기 때문이다. 혼합형 시집살이담 중 사회·문화적 층위의 '가난'이나 '사건'이 '시어머니'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한국 시집살이의 대표 격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사건은 주로 역사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인 것으로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며느리 개인사에서 특별한 사건이 시어머니의 분노를 사고, 시댁의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며느리와 결부되면서 시집살이가 본격화되거나 심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아버지'와 '사건'이 결합하는 혼합형에는 6·25전쟁이나 일제강점기의 어떤 사건으로 시아버지가 비교적 안정적인 지위에서 추락하거나 신체상의 해를 입어 가세가 기울고, 그에 따라 며느리의 힘든 생활이 전개되는 이야기가 있다. 더불어 '가문'과 시아버지가 결합하는 경우와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특정 '태도'를 문제 삼아, 심한 시집살이를 시킨 이야기도 있다. '남편'과 '가난', '남편'과 '사건'이 혼합된 유형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시집살이 후속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남편 시집살이는 시부모 시집살이의 후속편격으로 여인의 일생에 개입하게 된다. '남편'과 '가난'이 결합한 시집살이담의 경우 생활고의 원인이 남편인 경우가 많기에 시집살이의 원인이 가난보다는 남편으로 귀결되는 이야기가 많다. '남편'과 '사건'이 결합한 경우는 개인적 사건보다 역사적 사건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는 시아버지 시집살이담의 경우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였다.

'자식'과 '가난'이 혼합된 유형은 자신이 가난해서라기보다 자식이 가난해서 오는 삶의 고단함이 더욱 드러난다. 이 경우 자식 시집살이를 덤으로 더한다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연들이 많다. '사건'이 '자식'과 관련된 유형은 현대로 올수록 격변의 역사적 사건이 적고, 아직 어린 나이인 자녀들이 그런 사건과 결부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개인적인 사건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자식의 투병이나 사고 등이 포함되고, 자식의 사망도 그 심리적인 후폭풍이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특징 및 의의 여성들의 이야기판에서 시집살이담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야깃거리이다. 지난 시절의 삶의 역정을 진솔하고도 감동적으로 담아낸 여성들의 시집살이담은 현대의 이야기 현장에 아직 살아 숨 쉬는 구비문학이자 언어민속이다. 딸에서 아내로, 며느리에서 어머니로, 다시 시어머니로 점철되는 우리의 여성 생활 전통에서 여성의 시집살이는 여성 삶의 보편성과 전형성을 지닌 삶의 국면이었다. 그러므로 시집살이담은 나의 할머니와 어머니 이야기이면서 나의 이야기 혹은 내 아내 이야기이다. 특히 전통적 생활방식의 연장선에서 결혼생활을 해 온 노년기 여성들의 시집살이담은 각별한 의의를 지닌다.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이 겪은 삶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이 그 속에 짙게 배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성의 삶을 넘어 우리 생활사 전반에 걸친 소중한 문학적·사회적 유산이 된다. 따라서 시집살이담은 여성 생애담의 중핵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시집살이 이야기 집성1~10(신동흔 외, 박이정, 2013), 시집살이담의 담화적 특성과 의의(신동흔, 구비문학연구32, 한국구비문학회, 2011), 시집살이담의 유형과 전승 양상(김경섭, 시학과 언어학20, 시학과언어학회, 2011), 여성생애담으로서 시집살이담의 의의와 구연 양상(김경섭, 겨레어문학48, 겨레어문학회, 2012), 여성생애담의 구술사례와 그 의미 분석(천혜숙, 구비문학연구4, 한국구비문학회, 1997).

필자 김경섭(金鏡燮)

식게

정의 조상을 추모하며 지내는 기제사의 제주어.

역사 한자어 식가式暇의 뜻이 관원官員에게 주는 규정規定된 휴가休暇로, 특히 집안의 기제사忌祭祀 같은 때에 받는 휴가를 지칭하는데 제주어에는 이렇듯 한자어가 생활화된 조선 시대 선비 문화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어사전』에서는 식게에 '기제사'란 정의 이외에 '조상제사 후 음복하는 일'이란 의미를 덧보태 설명하였다.

내용 제주도에서 기제사를 모시는 대상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4대 봉사奉祀였는데, 근래에 와서는 3대 봉사(증조부까지)를 주로 한다. 처갓집 제사의 경우에는 처가 부모 제사까지 참석한다. 식게날에는 '식게 먹으러 가는 날'이라 하여 모든 자손이 함께 제사음식을 먹으면서 친족의 만남을 기대하게 되는데 해당 표현에서는 만나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의 의미가 겹쳐진 것을 연상할 수 있다. 식게는 제사의 의미는 물론 제사 후 음식을 함께 음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조상제사에 앞서서 제주도에서는 문전제門前祭를 지낸다. 본 제상祭床 옆에 진설해 두었던 문전상을 상방(마루방) 끝에서 밖을 향해 옮겨 놓고 제주祭主 혼자서 지낸다. 절차는 단헌단작單獻單酌으로, 본 제사의 축소형이다. 제가 끝나면 제사음식을 손톱으로 조금씩 떼어내 숭늉 그릇에 넣은 잡식을 지붕 위에 던지거나 올레(큰길로 나가는 좁은 골목길) 한쪽에 덜어낸다. 이 제상을 부엌으로 넘겨 조왕신에게 제를 지내는 집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문전상과 더불어 부엌 신을 위한 조왕상을 따로 차리기도 한다. 조왕상은 여성 주인이 주가 되어 치르는 의례상으로, 남성이 주가 되는 문전상과 대비된다.

문전제는 무속신화인 〈문전본풀이〉를 연원으로 한다. 남선비와 여산부인 사이에 일곱 아들이 있었고 남선비에게 노일제대귀일의 딸이라는 첩이 있었는데 이들이 죽어 가택신이 된다. 남선비는 정낭의 신, 여산부인은 조왕신, 첩은 측간신이 되고, 첫째에서 다섯째 아들은 각각 집안 5방위의 신이 되고, 여섯째는 뒷문전신, 일곱째인 녹디생이는 앞문전신이 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막내아들의 지혜와 용기 덕분에 집안이 지켜졌기 때문에 막내아들이 집안의 중심인 상방의 신이 된 것이고, 모든 가택신 중 문전신을 가장 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무속신화에 바탕을 둔 집안 수호의 신이 아직도 유교적인 조상신 제사 속에서 모셔지고 있다.

제주의 식게 제물은 육지의 제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특이점이 있는데 해어海魚로 옥돔을 중시하고 우럭과 벤자리 등을 쓴다. 탕쉬(나물)로 고사리를 중시하고, 3채로 고사리에 더해 콩나물과 미나리를 올린다. 떡의 진설陳設은 매우 특이하다. 땅을 상징하는 침떡 혹은 시루떡, 하늘을 상징하는 인절미 혹은 세미떡, 해를 상징하는 절변, 달을 상징하는 솔변, 별을 상징하는 우찍(기름떡) 순으로 올린다. 이는 우주를 형상화한 것으로, 무속적 세계관이 담겨 있다. 그러니 제주의 식게는 유교적 기제사와 무속적 조상제사 의례가 습합習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주도에서는 평소에는 잘 접하지 못하는 식게 음식을 두고 여러 속담이 전한다. '식겟집 아인 몹신다(제삿집 아이는 사납다).'거나 '식겟집 아인 코 나도 곱나(제삿집 아이는 코가 나와도 곱다).' 등의 속담은 제삿날 평상시 먹을 수 없는 곤밥(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어 제삿집 아이가 친구들에게 으스대기 때문에 나온

식게(기제사) | 제주 제주시 | 2022 | 허남춘

추석날 차례에 앞서 지내는 문전제 | 제주 제주시 | 1971 | 제주학연구센터·이토 아비토

술잔과 음식을 지붕위에 올리기(잡식코시) | 제주 제주시 | 1971 | 제주학연구센터·이토 아비토

추석 상차림 | 제주 제주시 | 1971 | 제주학연구센터·이토 아비토

것이라고 한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에게 식게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속담이다.

또 다른 속담도 전하는데, '까마귀 모른 식게'는 까마귀도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주로 대를 이을 후손이 없는 상황에서 시집간 딸이 친정 부모 제사를 모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식으로서 부모 제사를 모르는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댁 사람들에게 드러내 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어려운 것이 시집살이이다. 따라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지내는 제사를 '까마귀 모른 식게'라 한다.

제주4·3사건 이후 제주도의 많은 남자가 희생당한 상황에서 딸들이 시집살이하면서도 몰래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명절날 시댁 제사를 지낸 후 제사음식 일부를 부엌 뒤에 진설하여 놓고, 몰래 죽은 친정 부모와 형제 제사를 지냈던 그 숨죽인 사연 속에 제주도의 비극이 녹아 있다.

특징 및 의의 식게는 조상을 추모하며 지내는 기제사여서 유교적 의례의 전반을 따르고 있지만 제물의 진설 절차를 보더라도 기존의 무속적 세계관이 의례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특히 기제사에 앞서 지내는 문전제는 제주만의 독특한 가신의례인데 문전제와 기제사를 이어서 지낸다는 것은 무속과 유교가 결합한 조상제사가 제주도에 남아 있다는 상황을 말해 준다. 기제사와 함께 제사를 지내는 모든 의례를 '식게·멩질'이라 통칭한다. 예전에는 단오와 한식에도 제사를 올렸으나 일찍 중지되었고, 현재의 멩질(명절)은 정월 멩질과 팔월 멩질(구슬 멩징)을 지칭한다.

참고문헌 제주도 가족과 궨당(김혜숙, 제주대학교출판부, 1999),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음식생활문화사(오영주, 제주특별자치도, 2017), 디지털제주문화대전(jeju.grandculture.net).

필자 허남춘(許南春)

식구
食口

정의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을 말하며, 일상생활 공동체를 뜻함.

내용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뜻하는 용어는 식구食口·식솔食率·가정家庭·가구家口 등으로, 각각의 용어는 용처가 조금씩 다르면서도 대치가 가능한 유사어로 취급한다. 한편 '가족'에 해당하는 용어가 시대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가家, 호戶, 족族 등이 오늘날의 '가족'에 해당하는 말이

었다. 성리학에 기초하여 가족제도가 만들어졌고,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집안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례를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조선시대의 가家, 즉 가족은 조상을 중심으로 자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일컬었다. 오늘날의 가족과는 다른 개념과 구성이었다는 뜻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가족을 구口라고도 하였다. 여기에 식食을 붙여 합성명사가 된 식구食口도 같은 뜻이다. 예전에는 큰 가마솥을 걸고 불을 때어서 밥을 지어 나누어 먹던 시절이어서 한솥밥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표현이다. 이처럼 식구는 생활공동체성이 강조된 용어라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대화할 때 '가족' 못지않게 '식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혈연과 혼인 등의 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제도와 법 차원에서 만들어져서 사용된다면 식구는 생활 속에서 감성이 담긴 용어로, 더욱 친근한 느낌을 전달한다. 두 용어가 물론 동의어 내지는 유사어로 규정되지만 때로는 전혀 달리 사용되기도 한다. 먼저 동의어 또는 유사어로 사용되는 경우의 예를 들어본다.

한국인들에게 가족이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상대방의 답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다섯 식구입니다." 또는 "우리 식구는 다섯 명입니다." 이때 식구란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을 말하며, 공식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을 일컫는다. 이때 식구는 가족과 동의어로 사용한 것이다. "우리 식구는 모두 생선을 잘 먹는다." "그 많은 식구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이 힘들다." 등처럼 식구의 용례는 가족과 동의어이면서도 살림살이에 관한 언급을 할 때 자주 사용된다.

식구가 가족과 다른 개념으로 사용될 때도 있다. 고모·삼촌이나 외삼촌·이모도 식구가 된다. 식구가 지칭하는 친족 범위는 가족보다 넓다. 그런가 하면 같은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식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 부서에 새 식구가 들어왔다."고 할 때는 직장 분위기가 가족 같다는 뜻을 은연중에 풍기는 말이다. 또한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지칭할 때 식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 식구가 지금 딸네 집에 가 있네."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안사람' '내자' '처' '식구' 등도 모두 '아내'와 동의어이지만 낮춤말이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의 연령·지위 등을 고려해서 자기 부인을 낮추어 부르는 예의禮儀 차원에서 사용되었다. 부인의 낮춤말 가운데에서도 식구는 가장 겸손한 표현으로 여겨진다. 부인을 직접 지시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나온 식구는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의 집합임을 강조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식구는 부모와 친자 외에도 조부모, 아버지의 형제자매인 삼촌과 고모, 조카 등 한집에 사는 구성원을 식구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머슴, 노비도 식구로 포함하기도 했다.

가족 및 가족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제도·법·구성·이념 등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식구라는 용어는 이러한 변화에 크게 좌우되지 않은 채 여전히 폭넓은 의미와 유연성을 지닌 채 사용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식구는 가족과 동의어 또는 유사어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혈연·비혈연을 막론하고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은 식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가족이라는 근대에 만들어진 용어만큼 식구라는 용어도 자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식구가 대화체에서 익숙해진 용어이기도 하고, 연상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족은 학술적·법률적으로 정의되어서 보다 분명한 개념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모호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다. 가족과 연관된 일 가운데 자녀 양육, 부모 봉양, 제사 봉행, 명절 지내기, 재산 분배, 상속 문제, 이혼 등을 떠올리면 가족은 연상하기 어려운 용어가 된다. 그러나 식구는 그러한 복잡한 일과 연루되지 않은 채 실제 생활공동체성을 드러내는 용어여서 한국인들에게 더 친근하게 사용된다.

참고문헌 도시 중산층에서의 핵가족화와 가족 내 위계관계 변형의 문화적 분석(김은희, 한국문화인류학25, 한국문화인류학회, 1994),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Martina Deuchler, 이훈상 역, 아카넷, 2003).

필자 함한희(咸翰姬)

쌍둥이

정의 한 번의 임신에서 태어난 두 명 이상의 신생아.

내용 쌍둥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쌍둥이의 비일상성을 강조하여 신성한 존재로 보기도 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출산 방식에서 벗어난다고 하여 금기시하기도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계층이나 신분에 따라 이러한 상반된 인식이 나타났는데 지배층에서는 쌍둥이의 출산을 긍정적인 것으로 본 반면 민간에서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나라의 쌍둥이에 대한 신화적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은 삼태성三台星 설화가 대표적이다. 제주도 지역민과 옌볜延邊 지역의 조선족 사이에서 주로 채록採錄된 이 이야기는 각 편의 화소나 서사 전개는 차이를 보이지만 쌍둥이 삼형제가 하늘의 삼태성이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쌍둥이 설화를 통해 자연과 우주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쌍둥이가 지닌 신성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에도 쌍둥이에 대한 기록이 여럿 등장한다. 기록 수는 『삼국사기』 9건, 『고려사절요』 1건, 『조선왕조실록』 42건 등이다. 대개는 나라에서 쌍둥이의 양육에 필요한 곡식과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지부漢祇部 여자가 한꺼번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으므로 벼 200섬을 주었다."
>
> 『삼국사기』「신라본기新羅本紀」

> "정해일에 왕이 장원정長源亭에 나가 있었다. 이날 가는 도중에 어떤 부녀가 쌍둥이를 안고 노상에서 배알하므로 왕이 그에게 베[布] 20필을 주었다."
>
> 『고려사절요』

> "양근楊根 사람 한금韓金의 아내가 한꺼번에 세 아들을 낳으니, 전례에 의하여 상을 주었다."
>
> 『조선왕조실록』

위의 기록에는 두 쌍둥이에서 네 쌍둥이에 이르기까지 출산한 쌍둥이의 수도 다양하며, 출산 형태도 일란성과 이란성이 모두 나타난다. 이는 조선시대까지 그 수나 형태와 무관하게 쌍둥이의 출생은 지배층의 축하와 후원 대상으로 여겨졌음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는 지배층의 현실적인 세계관이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향후 국가를 위해 군역과 부역, 조세 등의 의무를 지게 될 다수의 백성을 한 번에 확보하였기에 위정자에게 쌍둥이 출산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백성에 대한 사랑과 생명에 대한 편견 없는 인식 등이 전제되었기에 가능한 지원과 포상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민간에서는 쌍둥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우세한 편이다. 이는 주로 출산과 관련된 금기를 통해 확인된다. 경상남도 거제나 충청남도 태안 지역에서는 쌍둥이의 출산을 막기 위한 속신俗信이 있다. 임신부가 쌍동雙童밤과 뿌리가 두 갈래인 무를 먹으면 쌍둥이를 낳게 된다고 하여 먹지 못하게 한다. 또한 쌍둥이가 태어난 집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그 산부의 속옷을 입으면 똑같이 쌍둥이를 낳는다며 금기시한다.

민간에서 쌍둥이의 출산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산모는 출산의 고통을 두 번 이상 겪어야 하며,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과거에는 출산 중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를 더욱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은 동시에 많은 아이의 육아를 책임지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가중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쌍둥이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민간에서 전승되는 설화에서는 쌍둥이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둥이 설화는 신이담神異譚·기피담忌避譚·희화담戱化譚·발복담發福譚 등으로 전승되는데 신이담에서는 쌍둥이의 신성성이 주목된다. 기피담에서는 쌍둥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조되며, 주로 민담 형식으로 전승되는 희화담에 등장하는 쌍둥이는 서로 닮은 외모로 상대방을 착각하게 하거나 기만하여 웃음을 자아내는 인물로 묘사된다. 발복담은 쌍둥이의 속성 중 다산과 풍요라는 의미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형성된 이야기이다.

특징 및 의의 비일상적인 현상은 인간에게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쌍둥이의 출산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에 대한 경외심은 삼태성과 같은 신화로 형상화되었고 공포심은 본능적 기피로 이어져 쌍둥이를 금기시하는 속신을 낳았다. 여기에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현실적 상황인식이 더해져 쌍둥이 출산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형성하였다. 현대에는 인공수정이나 제왕절개 등 임신과 출산 방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면서 쌍둥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출산의 한 형태로 수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한국민속의 현장(배도식, 집문당, 1993), 한국의 쌍둥이설화 연구(김자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필자 오세길(吳世吉)

씨받이

정의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약탈혼의 일종으로, 본처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앞으로도 아기를 낳을 희망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아기를 얻기 위해 특정한 여건으로 데려와서 함께 사는 여성.

역사 조선시대인 17세기에 들어와 특정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여자를 들여 아들을 생산하였다. 남성이 생식에 결함이 있어 부부가 자녀를 갖지 못할 때 남편을 대신할 다른 남성을 데려와 여자에게 아이를 배게 하는 일도 있었다. 이때 들인 여자는 '씨받이'라 하고 데려온 남자는 '씨내리'라 한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씨받이나 씨내리를 두기도 하였다. 씨내리를 취하는 것은 단지 문중의 후사를 얻기 위한 편법이었다.

내용 예전에는 며느리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씨받이나 씨내리를 두기도 하였다. 자손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혈통 계승 차원에서 다른 남성을 불러 아이 씨를 배게 하였다. 씨받이가 자녀를 낳으면 적당한 때에 기회를 잡아 약속된 금전이나 재물로 보상하고 내보낸다. 이 경우 이웃이나 지인들에게는 본부인이 낳은 아이처럼 포장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들어온 씨받이는 대개 신분 낮은 여성이거나 곤궁한 과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관상 조건과 신체 적합성을 지녔거나 아들을 여럿 낳은 여성들이었다.

씨받이도 신체 조건에 따라 몸값과 예우가 달랐다. 속신적인 측면이 있지만 교합 과정에 피부색이 보랏빛을 띠고, 입술 색이 진홍빛에서 자줏빛으로 바뀌면서 입술 모양이 굳어지는 여자는 갑절의 보상을 받았다. 씨 받는 날이 정해지면 소복 재계하고 삼신에게 빈 다음 신방에 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실제로 씨받이로 들어가면 달거리에 알맞은 날, 합방 길일의 오행五行이 잘 맞는 날을 골라 일을 치렀다.

흔히 달거리 보기에 적합한 시기는 월경이 그치는 날로부터 28~29시간이 지난 때이다. 또 흰 면포에 월경 피를 받아 피 색깔이 금빛일 경우 잉태의 적기라 보았다. 반면에 선홍빛일 때는 미정未精, 청담빛일 때는 태과太過라 하여 합방을 피하였다. 정실부인은 합방의 장지문 밖에서 지켜 앉아 기도하거나 무당과 법사가 경 읽기로 정성을 다하였다. 만약 씨받이가 딸을 낳았을 때는 대개 논밭 서너 마지기 또는 곡식 몇 섬을 주어 씨받이 어머니에게 양육을 맡겼다. 씨받이의 직업도 모계 상속하는 측면이 있어 그 딸이 자라면 씨받이 색시로 대를 잇는 경우가 있었다. 남편을 두고 있는 여성이 씨받이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주로 아이만 챙기고 생모의 존재는 지워졌다. 이러한 편법이 언제부터 관행화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첩을 거느릴 수 없는 일반 계층에 있었던 행위 전승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씨받이 실행은 반드시 정실부인의 합의나 양해를 구해야 이루어졌다. 현실적으로도 오로지 아이를 낳기 위해 다른 여자를 데려오고, 아이만 챙기고 생모는 내보낸다는 상황 자체가 모순적인 면이 있었다. 정실부인의 합의를 얻은 뒤 본부인을 대리해서 자식을 낳아 줄 여성을 물색하였고, 성공한 사례가 많았다.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 준 여자를 단지 본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쫓아낸다는 것도 모호하였다. 출산에 성공하였을 때 간혹 본처가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 씨받이

통용은 거래상 단순 착취 대상이 아니라 집안 권력, 체통, 혈통 대물림과 관련되기에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특징 및 의의 후사가 없으면 양자를 들이는 것이 사회 통례였으나 혼인 후 아이가 없는 경우 아들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였다. 씨받이 또는 씨내리 풍습은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할 때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대신 낳게 하고자 몰래 씨내리 남성을 받거나 씨받이 여성을 고용하던 시절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풍습은 가문 잇기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민속지(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3), 조선민족문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8), 조선총독부 기관지 일어판 조선지의 민속·국문학 자료(이복규·김기서, 민속원, 2004),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이광규, 일지사, 1975),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창식(李昌植)

씨족
氏族

정의 신화적 공동 선조의 후손으로 간주되는 혈족 전체.

내용 한국의 씨족氏族은 종족의 공동 선조인 중시조中始祖를 넘어 신화적 조상에 이르는 혈족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조선 후기 이후 씨족은 부계의 계보가 신화적 존재인 공동 조상에서 후손으로 이어지는 부계출계율父系出系律과 외혼제外婚制 집단으로서 조상의 이름과 관련된 혈연집단이다. 이러한 씨족은 중시조 하계下系에서 분파된 출계집단으로, 다수의 종족들로 구성된다. 규모와 수준에서 차이가 있지만 몇 개의 종족이 하나의 씨족을 구성하며, 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화된 것은 아니다. 출계 원리, 외혼제 단위, 성원권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보면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에서 씨족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규명된 바 없다. 먼저 신라시대에 씨족이 존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혼인제도와 상속제도이다. 왕족 간에는 숙질간, 4촌에서 6촌 이내의 근친혼과 이러한 촌수를 넘는 범주의 동성혼同姓婚이 행해졌다. 그리고 왕위 계승에서 아들과 딸·사위, 친손과 외손 구별은 없었다. 또한 딸과 사위가 오랫동안 처가에 거주하는 서류부가婿留婦家 관습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신라시대에는 공계출계共系出系 제도가 행해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체계를 보았을 때 외혼제 단위로서 부계체계의 씨족이 사회조직으로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씨족이나 동종同宗·근친近親의 양자제도, 종손 우대, 상속에서 차녀 차등, 제사의 적장자 우대, 외가나 처가 차대差待와 같은 상속관습은 존재하지 않았다. 즉 부계혈연으로만 구성된 조직 혹은 집단이나 동종지자同宗支子의 양자관행, 부계 적장자우대불균등상속 등이 보편화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고려시대 역시 신화적 조상에 이르는 범위의 혈족들을 묶은 씨족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근친금혼近親禁婚, 동성불혼同姓不婚, 동성동본불혼同姓同本不婚 등은 고려 이후 조선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온 혼인규제이다. 고려 말에는 동성을 동본과 이본異本으로 구별하여 전자만을 금혼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의식이 싹텄다. 조선 초기에는 『대명률大明律』에 따라 동성끼리 혼인한 자는 각각 장 60대의 형에 처하고, 이혼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17세기 초만 하더라도 동성동본을 포함한 동성혼은 아주 드물지만 행해졌고, 동성이본同姓異本 간 혼인도 이루어졌다.

씨족은 동성동본불혼의 혼인금지 규칙이 행해지는 집단이다. 조선 후기로 오면 동성동본의 남계男系혈연간에는 혼인금지가 하나의 규제로 정착한다. 동성동본불혼은 남계친男系親 쪽으로의 혼인금지 범위를 공동의 조상을 둔 씨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입가入家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아주 가까운 핏줄 관계에 있는 이도 한 집에 시집올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입가한 여성의 관계가 자매간, 고모와 질녀 간, 재종자매 간이라 해도 한 집안에 입가할 수 있었다. 즉 입가한 여성의 촌수가 2촌이 넘으면 한 집안에 시집올 수 있었다. 여가女家의 가까운 친척이 한 집안에 입가하는 것은 혼인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씨족은 이러한 동성동본불혼의 금지 규칙이 정착되는 과정과 더불어 혈족의 구체적 범주로 씨족집단의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소속되는 문화적 원리의 실천 과정과도 관련한다. 씨족원은 계통적으로 그들이 추정하는 공동 조상과 관계를 맺고 규범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구성원의 남녀 간에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 씨족이 법인체적 단위는 아닐지라도 부계씨족의 외혼제 규칙과 부거제父居制를 통해 각 지역에 산거散居하여 왔다. 공식적 활동에서 여성은 배제되었다. 17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공계체계共系體系였던 한국의 씨족은 이 시기 이후 부계체계로 이행하였다. 공계출계는 혈통 계승, 재산상속, 이름 계승, 친족 성원권 실행에 성性이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출계체계이다. 이 체계에서 특정한 한 개인의 후손들은 한 종족이 아니라 여러 종족에 속하는 성원권을 가지며, 이름·재산·제사상속도 친가·외가·처가 등에서 상속·계승할 수 있으며, 거주규정도 선택적이다.

이러한 공계출계의 정의와 속성에 비추어 보면 이 시기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씨족은 공계출계집단 성향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남귀여가혼이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속과 제사상속도 부계와 외가·진외가로 계승되었으며, 이주도 대개 처향妻鄕·외향外鄕을 택하였다. 공계출계가 행해진 사례는 경상북도 청도의 소요당逍遙堂 박하담朴河淡(1479~1560) 가문이 소유하였던 토지는 병조판서를 지낸 진외조부 김철성金哲誠으로부터, 그리고 노비는 외조부인 경절공敬節公 하숙부河叔溥로부터 상속받았다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세기 전반까지 가산家産을 자녀에게 균등분배하던 공계출계 친족집단에서 적장자불균등상속을 중시하는 부계씨족이 형성되는 것은 어려웠다. 비록 이 시기 이전 공계출계 친족집단의 경우 종족조직이 부재한 것은 아니었지만 동성동본의 혈족들이 유교적 이념을 구체화하는 사당과 족산族産, 족규, 족권族權, 족보 등을 갖춘 씨족이 전국적으로 형성돼 있던 것은 아니다.

17세기 중반 이후 재경관료在京官僚나 재지사족在地士族은 자녀 차등, 봉사위奉祀位 증대에 따른 적장자우대 불균등상속제를 행하였다. 특히 자녀균분상속제의 해소, 자녀윤회봉사子女輪廻奉祀에서 제자윤회봉사諸子輪廻奉祀 혹은 단독봉사제單獨奉祀制 시행, 남귀여가관행男歸女家慣行의 변화 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사회제도 변화로 부계출계집단이 자리 잡게 되었고, 지역을 넘어 형성된 씨족이 증가하게 되었다. 결혼한 부부가 처가나 외가에 거주하던 관습이 신랑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이나 그 부근에 거처를 정하는 부처제거주父處制居住로 변화하고, 이는 다시 출계제도에 영향을 주어 공계출계에서 부계출계로 변화되었다. 눈여겨볼 점은 이러한 부계출계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공계출계적 요소가 일부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까지 남귀여가관행이 지속되면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 자기 집에서 혼례를 진행하는 친영親迎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던 것이 그 예이다.

특징 및 의의 씨족은 단계출계율單系出系律에 따라 범주화된 친족의 혈통관계 혹은 집단이다. 우리나라 친족체계의 경우 17세기 초 이전에는 공계체계였다. 성원권이 비제한적인 공계체계 하에서는 공동 조상을 중심으로 한 부계혈통집단이 두루 형성될 수 없었다. 이 시기 이후 출계체계는 공계체계에서 부계체계로 전환되었다. 씨족원은 제사권·재산권·가독권家督權을 부계출계집단의 적장자 중심으로 승계하였다. 씨족은 관념상 동성동본불혼의 족외혼 단위이다. 오늘날 부계씨족은 신화적 조상에서 분화된 지역별 출계집단의 후손들이 시조에 대한 제의 수행, 친목 등과 같은 공동 활동을 하기 위해 대종중大宗中들을 망라한 전국 연합체를 조직하여 통합 운영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소요당일고(박하담, 이원윤 역, 선암서당, 1987), 조선전기의 사회변동과 상속제도(이수건, 역사학보129, 역사학회, 1991), 친족과 혼인(정승모,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2006),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9).

필자 박성용(朴晟慵)

부록

Ⅰ. 가족의 호칭과 관계　Ⅱ. 가족을 그리다　Ⅲ. 가족과 친족의 안부를 묻다　Ⅳ. 색인　Ⅴ. 필자

가족의 호칭과 관계

I

연번	친족어	내용	이칭(호칭+지칭+지역어)
1	**고조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이르는 말.	고조부(高祖父)
2	**고조할머니**	할아버지의 할머니를 이르는 말.	고조모(高祖母)
3	**증조할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증조부(曾祖父)
4	**증조할머니**	아버지의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증조모(曾祖母)
5	**할아버지**	부모의 아버지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조부(祖父), 할아버님, 할배탕구, 하르방, 할배, 할버이, 할아버니, 할아버이, 할바시, 할버지, 할방이, 할부이, 할바이, 할부레, 한아부지, 한아버지, 하네, 할압시, 한나부니, 하나씨, 한압씨
6	**할머니**	부모의 어머니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조모(祖母), 할머님, 할머이, 할무니, 할매, 할마시, 할망, 할무이, 할마이, 큰어매, 함무니, 함씨
7	**외할아버지**	어머니의 친정아버지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외옹(外翁), 외왕부(外王父), 외조부(外祖父), 외할아버님, 외할아비, 외하네, 외한아씨, 외한압씨, 외할부지, 외할아버이, 위할부지, 외한아부지, 웨하르방, 웨하르버지
8	**외할머니**	어머니의 친정어머니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외왕모(外王母), 외조모(外祖母), 외할머님, 외할미, 외함마니, 웨할망, 웨할머니
9	**어머니**	자기를 낳아 준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엄마, 아미(阿嚲), 성선(聖善), 모친(母親), 어머님, 어미, 어멈, 엄머이, 어머이, 어마이, 엄니, 어무니, 엄매, 엄메, 우매, 오매, 어망이, 어매, 어무이, 오마씨, 오마이, 어먼, 오만, 오모니, 어마씨, 어멍
10	**아버지**	자기를 낳아 준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부친(父親), 부공(父公), 아버님, 아비, 아바니, 아바시, 아버니, 아부지, 아버이, 아바이, 아방이, 아배, 아바, 아바시, 아부이, 아베, 아뱀, 아부니, 아방
11	**아내**	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	안소실, 밑바탕, 집사람, 안사람, 규실(閨室), 내권(內眷), 처(妻), 처실(妻室), 가속(家屬), 밑짝, 여편네, 처속(妻屬), 권속(眷屬), 계집, 마누라
12	**남편(男便)**	혼인하여 여자의 짝이 된 남자.	남핀, 남펜, 냄핀, 스나, 이정내, 양반(兩班), 바깥양반, 영감(令監), 부서(夫壻), 장부(丈夫), 부자(夫子), 서방님, 서방(書房)
13	**아저씨**	부모와 같은 항렬에 있는, 아버지의 친형제를 제외한 남자를 이르는 말.	아이씨, 아주방, 아잼, 아재, 아재비, 아주비, 아자씨
14	**아주머니**	남자가 같은 항렬의 형뻘이 되는 남자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부모와 같은 항렬의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아주머님, 아주미, 아지매, 아재, 아주마씨, 아주머이, 아주마이, 아지미, 아지마시, 아저매, 아짐, 아짐씨, 아주망, 아지망, 아주매, 아점마, 아지맴, 아줌니
15	**큰아버지**	둘 이상의 아버지의 형 가운데 맏이가 되는 형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백부(伯父), 큰아버님, 큰아비, 세부(世父), 큰아부지, 큰아배, 큰아바지, 큰아방, 맏아버지
16	**큰어머니**	아버지 맏형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백모(伯母), 큰어머님, 큰어미, 큰어멍, 큰엄매, 맏삼촌어머니, 클매, 큰옴마, 맏어머니
17	**작은아버지**	아버지의 남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숙부(叔父), 숙숙(叔叔), 제숙(弟叔), 작은아비, 잔아버지, 족은아방, 족은아바지, 아재, 아재비
18	**작은어머니**	아버지 동생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숙모(叔母), 작은어미, 아재, 족은어머니, 족은어멍, 잘매, 작을매, 자을매, 작엄마, 작은마, 작은매
19	**고모(姑母)**	아버지의 누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고무, 고낭(姑娘), 고자매(姑姊妹)
20	**고모부(姑母夫)**	고모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고숙(姑叔), 고부(姑夫), 인숙(姻叔), 고모부님, 아저씨

연번	친족어	내용	이칭(호칭+지칭+지역어)
21	**이모(姨母)**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새아주머니, 아지매, 이모님
22	**이모부(姨母夫)**	이모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새아재, 이모부님, 이숙, 아저씨
23	**외삼촌(外三寸)**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외삼춘, 외아재, 오삼촌, 오삼춘, 외숙(外叔), 웨삼촌, 웨삼춘
24	**외숙모(外叔母)**	외삼촌의 아내.	외숙모님, 외아지매, 외아주머니, 구모
25	**딸**	여자로 태어난 자식.	똘, 딸내미, 딸년, 딸자식, 여식
26	**아들**	남자로 태어난 자식.	아덜, 아돌, 아들내미, 아들놈, 아들자식
27	**누나**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남자가 손위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누우, 눙우, 누부, 누야, 누비
28	**형(兄)**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남자가 손위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성, 헹, 세이, 헤이, 힝, 히아, 행이, 성가, 셍이, 시이, 힝이, 히, 시야, 싱아, 싱
29	**언니**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여자가 손위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언가, 성님, 성, 언니
30	**오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여자가 손위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오라버니, 오라비, 오라바니, 오라바님, 오라방, 오라방이, 오래비
31	**동생**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동숭, 동셍, 동승, 동싱, 동싱, 동성, 동숭에
32	**사촌(四寸)**	아버지의 친형제자매의 아들이나 딸과의 촌수.	
33	**고종사촌(姑從四寸)**	고모의 자녀를 이르는 말.	내종사촌(內從四寸)
34	**이종사촌(姨從四寸)**	이모의 자녀를 이르는 말.	이종(姨從)
35	**외사촌(外四寸)**	외종사촌으로 외삼촌의 자녀.	표종(表從), 외종(外從), 외종사촌(外從四寸)
36	**종형제(從兄弟)**	사촌 관계인 형과 아우.	당형제(堂兄弟), 동당형제(同堂兄弟)
37	**조카**	형제자매의 자식을 이르는 말. 주로 친조카를 이른다.	유자(猶子), 유녀(猶女), 여질(女姪), 조카딸, 종자(從子), 질녀(姪女), 질아(姪兒), 질자(姪子), 현질(賢姪)
38	**종숙(從叔)**	아버지의 사촌 형제.	당숙(堂叔)
39	**종숙모(從叔母)**	종숙의 아내.	당숙모(堂叔母)
40	**종질(從姪)**	사촌 형제의 아들.	당질(堂姪)
41	**종질녀(從姪女)**	사촌 형제의 딸.	당질녀(堂姪女)
42	**재종형제(再從兄弟)**	육촌 형제.	
43	**재종숙(再從叔)**	아버지의 육촌 형제.	재당숙(再堂叔)
44	**재종질(再從姪)**	육촌 형제의 아들.	재당질(再堂姪)
45	**재종질녀(再從姪女)**	육촌 형제의 딸.	재당질녀(再堂姪女)
46	**팔촌(八寸)**	아버지 육촌의 자녀와의 촌수.	삼종(三從)

연번	친족어	내용	이칭(호칭+지칭+지역어)
47	**삼종손(三從孫)**	칠촌 조카의 아들.	
48	**장인(丈人)**	아내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장인어른, 자인, 재인, 자언, 가시아방, 쟁인
49	**장모(丈母)**	아내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장모님, 쟁모, 갓어미, 가시어멍
50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시모, 시어머님, 존고, 시어미, 시어마시, 시어무이, 어머님
51	**시아버지**	남편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시부, 엄구, 시아버님, 존구, 시아비, 시아바시, 시하르방, 시하르바님
52	**며느리**	아들의 아내를 이르는 말.	식부(息婦/媳婦), 자부(子婦), 미늘, 절무이, 절문이, 새아기, 며늘아기
53	**사위**	딸의 남편을 이르는 말.	여서(女婿), 사우, 사외, 백년손님, 반자식(半子息), 백년지객(百年之客), 반자(半子), 교객(嬌客), 一서방
54	**아주버니**	남편과 항렬이 같은 사람 가운데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아재, 아재비, 아주비, 아주버님, 아즈바시, 아지뱀, 아지부이, 아지방, 아지바님
55	**형님**	아내의 오빠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손위 시누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헤임, 힝이
56	**형수(兄嫂)**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에 항렬이 같은 남자들 사이에서 형의 아내를 이르는 말.	형수님, 성수
57	**제수(弟嫂)**	남자 형제 사이에서 동생의 아내를 이르는 말.	제수씨, 계수씨
58	**동서(同壻)**	시아주버니의 아내를 이르는 말. 시동생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퍼형이나 처제의 남편을 이르는 말.	동세
59	**처남(妻男)**	아내의 손아래 남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의제(義弟)
60	**처남댁(妻男宅)**	처남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주로 손아래 처남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른다.	
61	**처형(妻兄)**	아내의 언니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처아지마님, 처아지망, 외자매
62	**처제(妻弟)**	아내의 여자 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처아지망, 외자매
63	**매제(妹弟)**	손아래 누이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계매, 一서방, 매부, 동싱
64	**매형(妹兄)**	손위 누이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미향, 매행, 매향, 매헹, 매양, 인형, 자부, 자서, 자형
65	**형부(兄夫)**	언니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형랑, 매부(妹夫)
66	**제부(弟夫)**	언니가 여동생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제랑, 매부(妹夫)
67	**시동생**	남편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	도련님, 서방님, 시아주비
68	**시누이**	남편의 누나나 여동생.	아가씨, 형님, 숙매, 소고, 시누, 시뉘, 시누부, 씨누
69	**올케**	오빠의 아내를 이르는 말. 남동생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새언니, 성님, 성, 언니, 올케언니, 오라부덕, 올키, 올게, 올께, 월키, 오라버니댁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 사전(각, 2018)
안동지역의 친족어 연구(서보월, 안동학2, 한국국학진흥원, 2003)
전남 지역의 친족어(오청진, 방언학7, 한국방언학회, 2008)
한국어의 호칭용어 어휘 연구(최규일, 국어교육55, 한국어교육학회, 1986)
제주도방언의 친족어 연구(김미진, 영주어문22, 영주어문학회, 2010)

가족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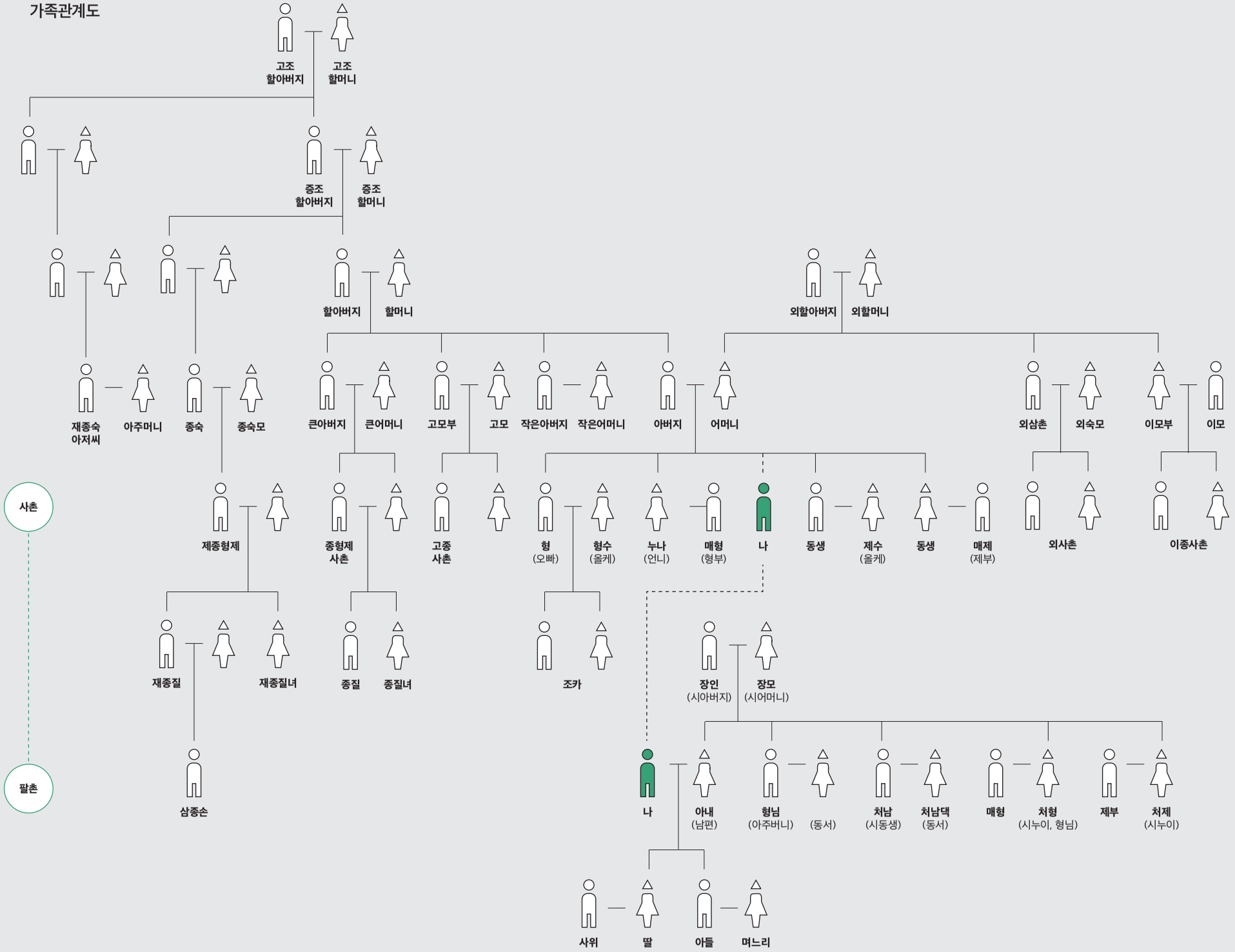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재종숙 아저씨
아주머니
종숙
종숙모
큰아버지
큰어머니
고모부
고모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외삼촌
외숙모
이모부
이모
사촌
제종형제
종형제 사촌
고종 사촌
형 (오빠)
형수 (올케)
누나 (언니)
매형 (형부)
나
동생
제수 (올케)
동생
매제 (제부)
외사촌
이종사촌
재종질
재종질녀
종질
종질녀
조카
장인 (시아버지)
장모 (시어머니)
팔촌
삼종손
나
아내 (남편)
형님 (아주버니)
(동서)
처남 (시동생)
처남댁 (동서)
매형
처형 (시누이, 형님)
제부
처제 (시누이)
사위
딸
아들
며느리

가족을 그리다

II

회갑연도

도문도

평생도 10폭 병풍 중 부분

채용신 | 가로32 세로83 | 국립중앙박물관

혼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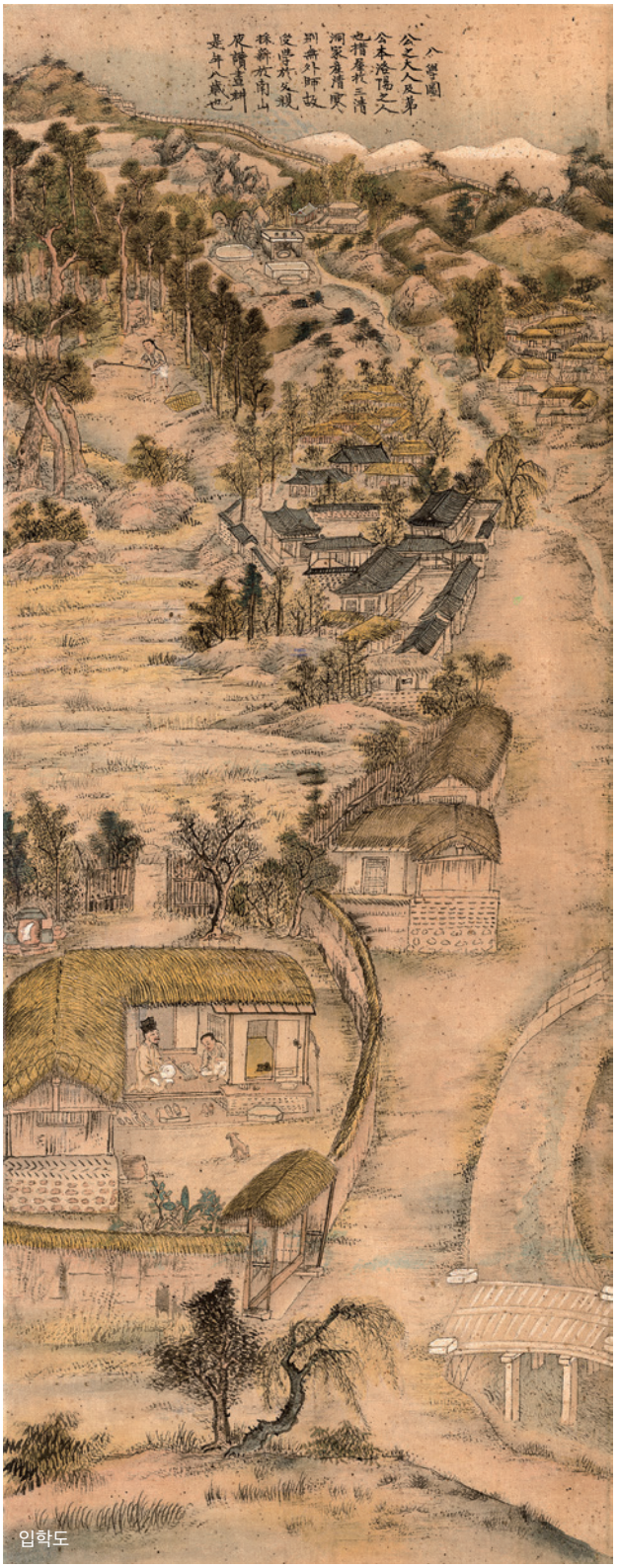

입학도

쌍수회근

단계추정

평생도 8폭 병풍 중 부분

가로37 세로72 | 조선 후기

육예영상

초도관희

평생도 10폭 병풍 중 부분

가로50 세로211 | 광복 이후

親迎嘉儀
신랑이 백마라고 신부집으로
장가들러 가는데 뒤에는 유모
와 후행이 따르고 있다

試周抓盤
첫돌날 가족들이 모여 앉아
돌상에서 무엇을 잡는가 보고
있고 뜰에는 동네사람들이 구
경하고있다

풍속도 10폭 병풍 중 부분

김윤보 | 가로564 세로201 | 일제강점

황향선침도

자로부미도

효자도 6폭 병풍 중 부분

가로286 세로197 | 조선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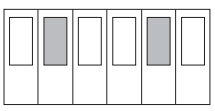

양향액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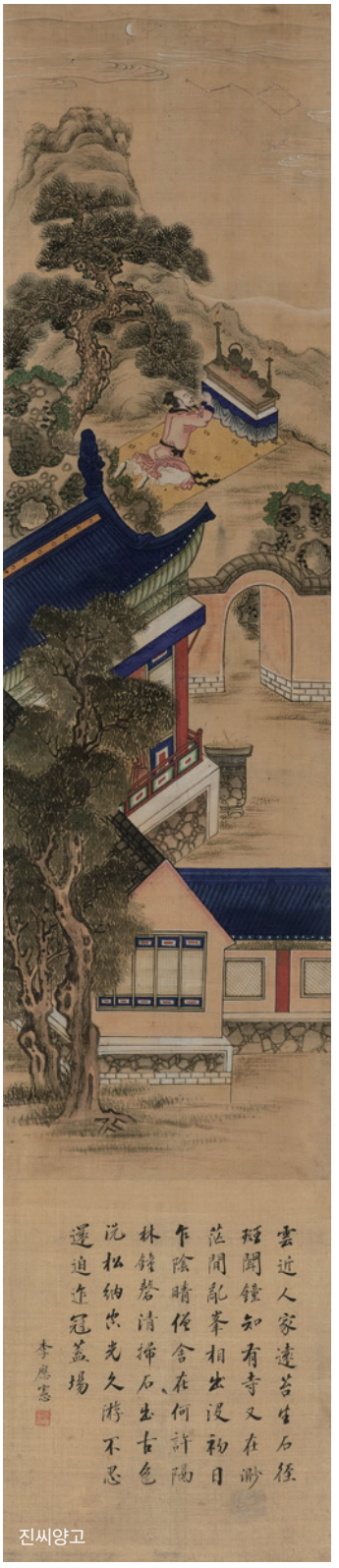
진씨양고

오륜행실도 4폭 중 부분

안중식 | 가로55 세로195 | 대한제국

평생도 8곡병 병풍 중 부분

가로32 세로57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평생도 8폭 병풍 중 부분

가로50 세로130 | 광복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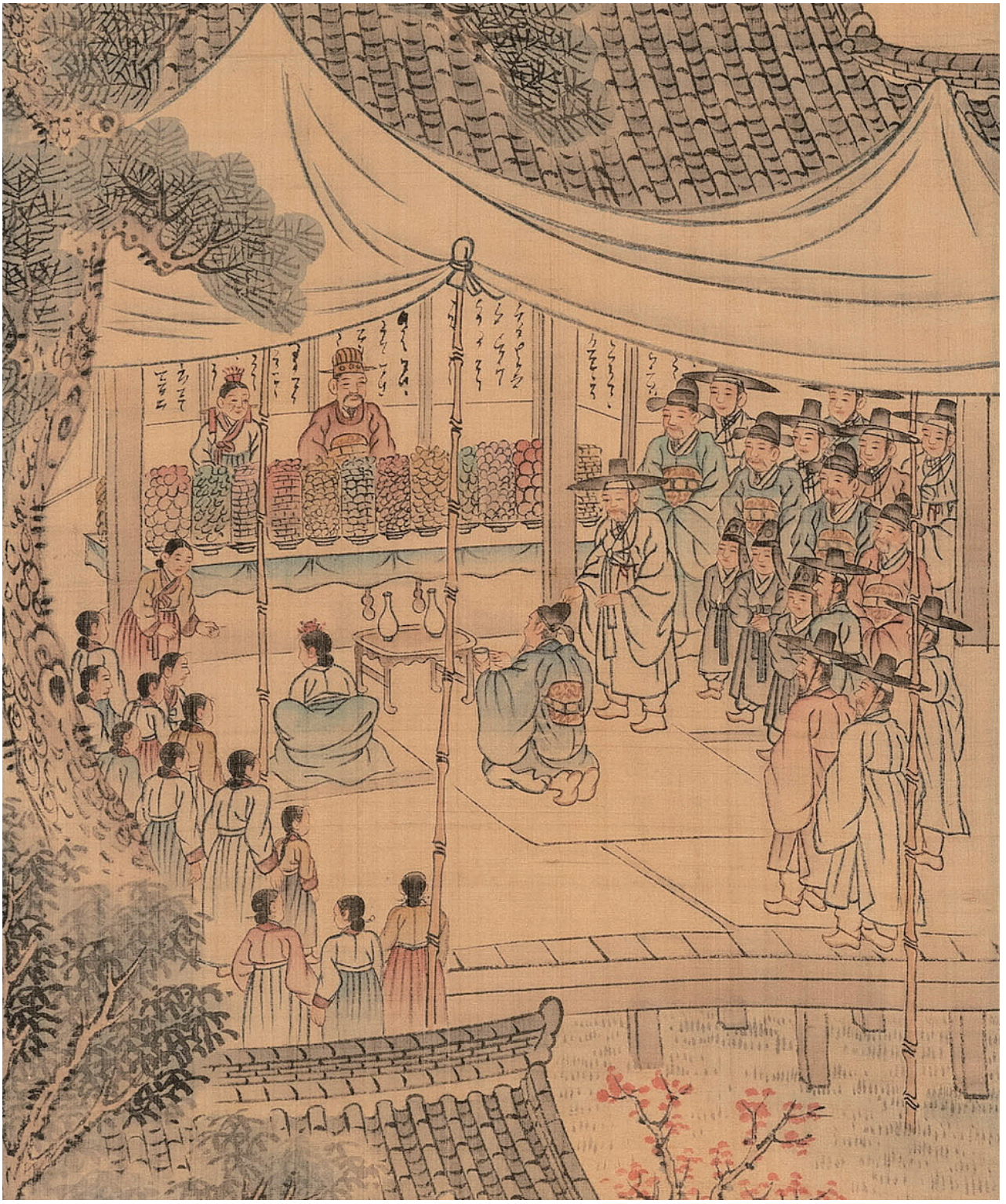

문관평생도 10폭 병풍 중 부분

가로34 세로101 | 광복 이후

경직도

김우범 | 가로38 세로63 | 대한제국

풍속도

가로149 세로98 | 조선 후기

문자도 8폭 병풍

가로31 세로45 | 일제강점

문자도 10폭 병풍

가로35 세로89

天人心性
合一之圖 太極
東
西

문자도 6폭 병풍

가로34 세로64 | 조선 후기

문자도 8폭 병풍

가로33 세로94 | 조선 후기

문자도 6폭 병풍

가로28 세로60

보건 포스터

엘리자베스 키스 | 가로39 세로45 | 일제강점

두 명의 한국 아이들

엘리자베스 키스 | 가로18 세로27 | 일제강점

정월 초하루 나들이

엘리자베스 키스 | 가로45 세로58 | 일제강점

석가탄신일

엘리자베스 키스 | 가로19 세로25 | 일제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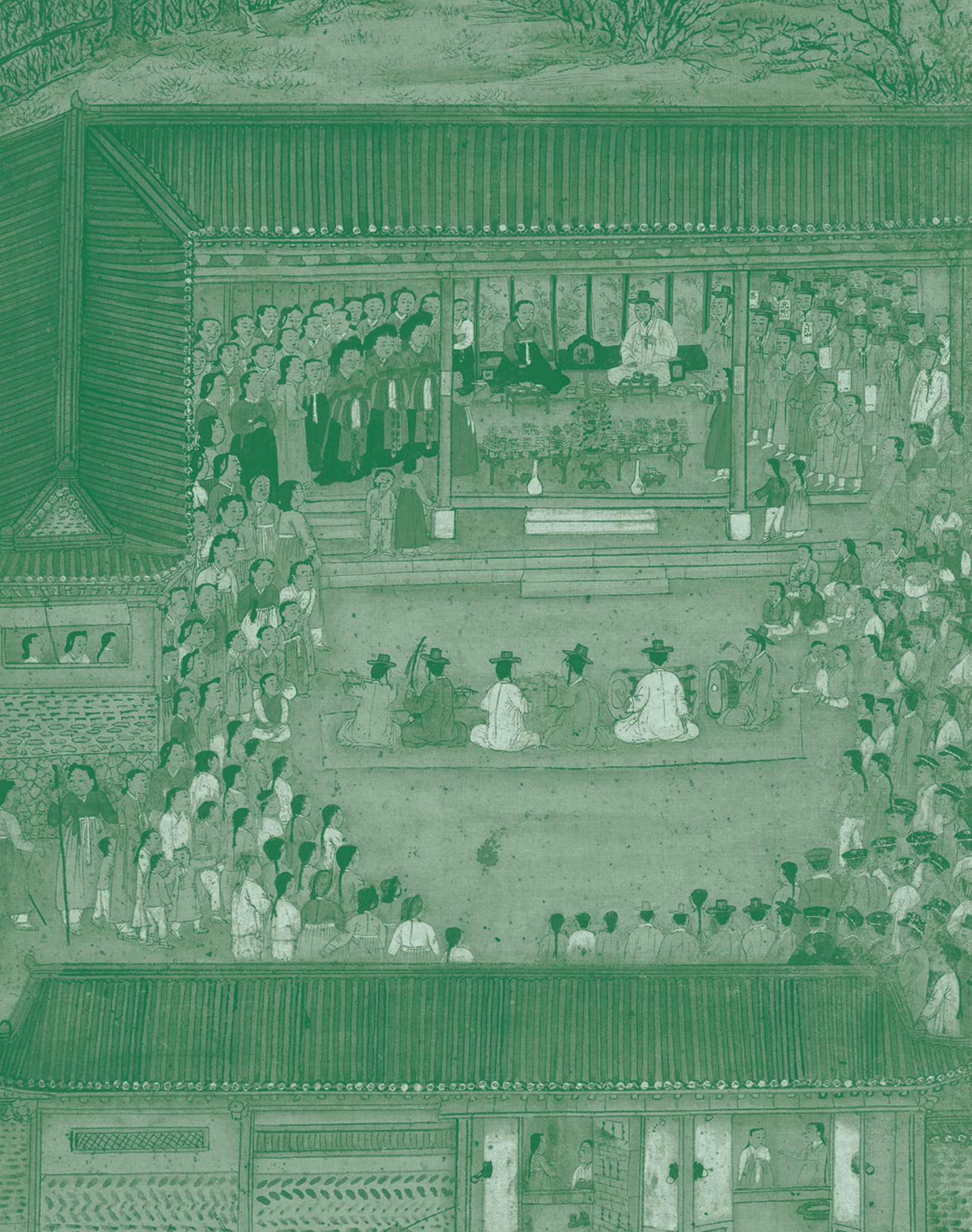

가족과 친족의 안부를 묻다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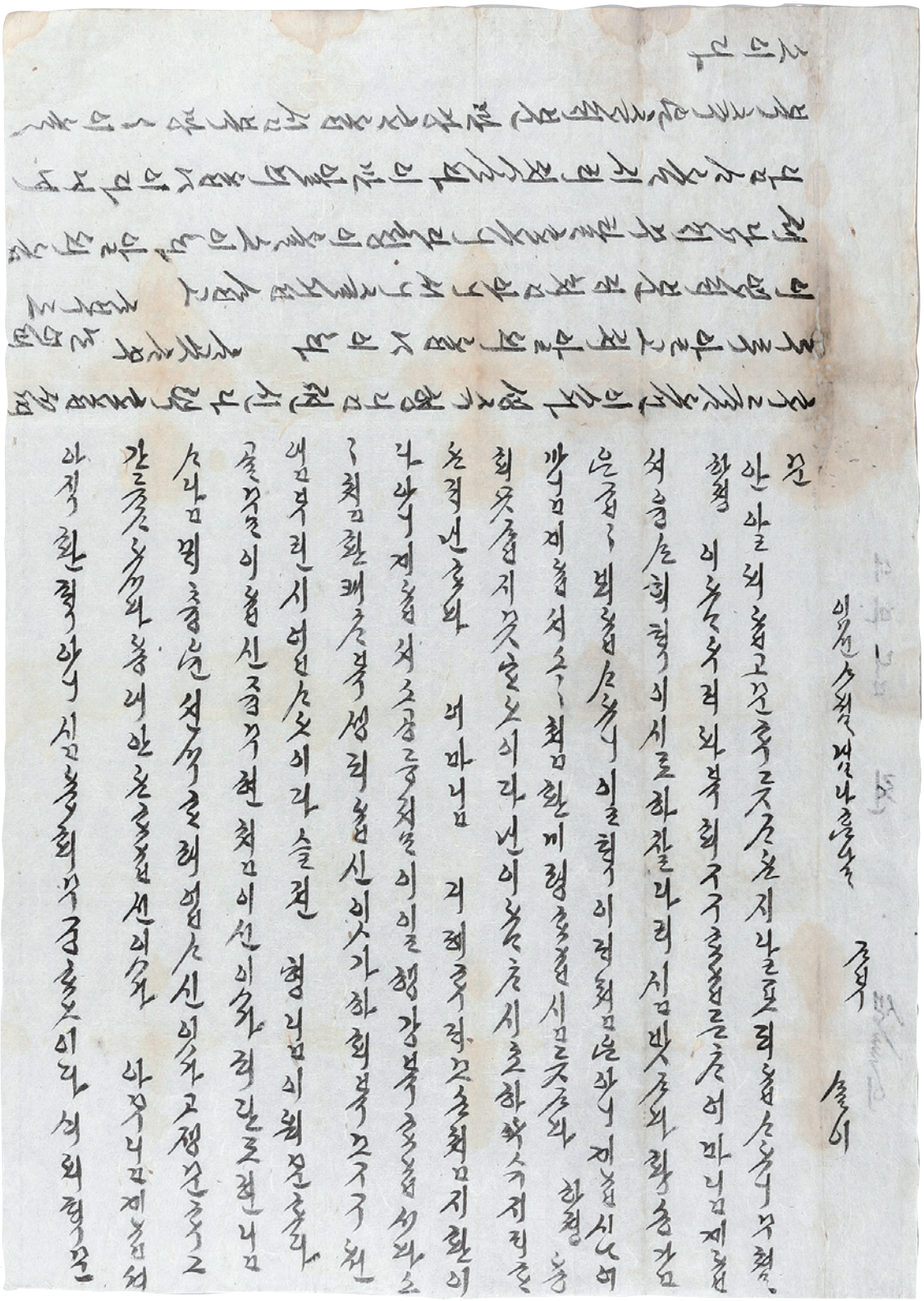

1872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58 세로41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남편 형제들의 안부를 두루 묻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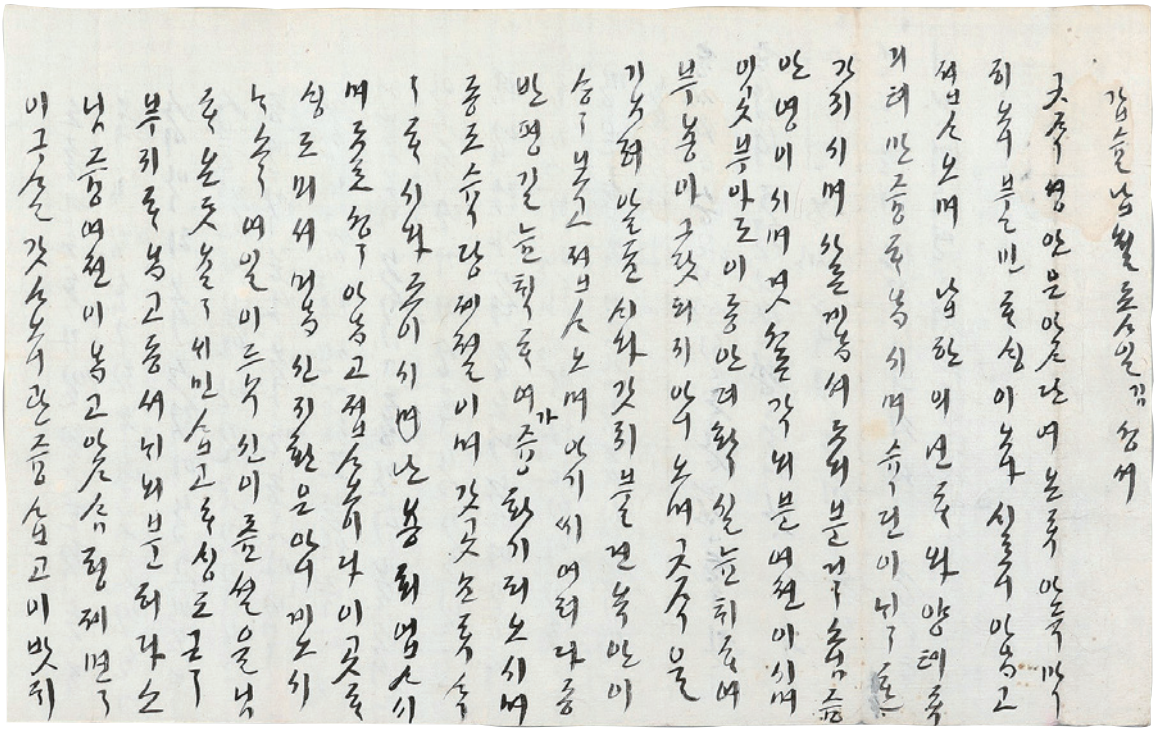

1874년 사돈 김씨가 사돈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0 세로25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사돈 김씨가 사돈의 안부를 묻는 말, 곁사돈의 안부를 묻는 말 등을 적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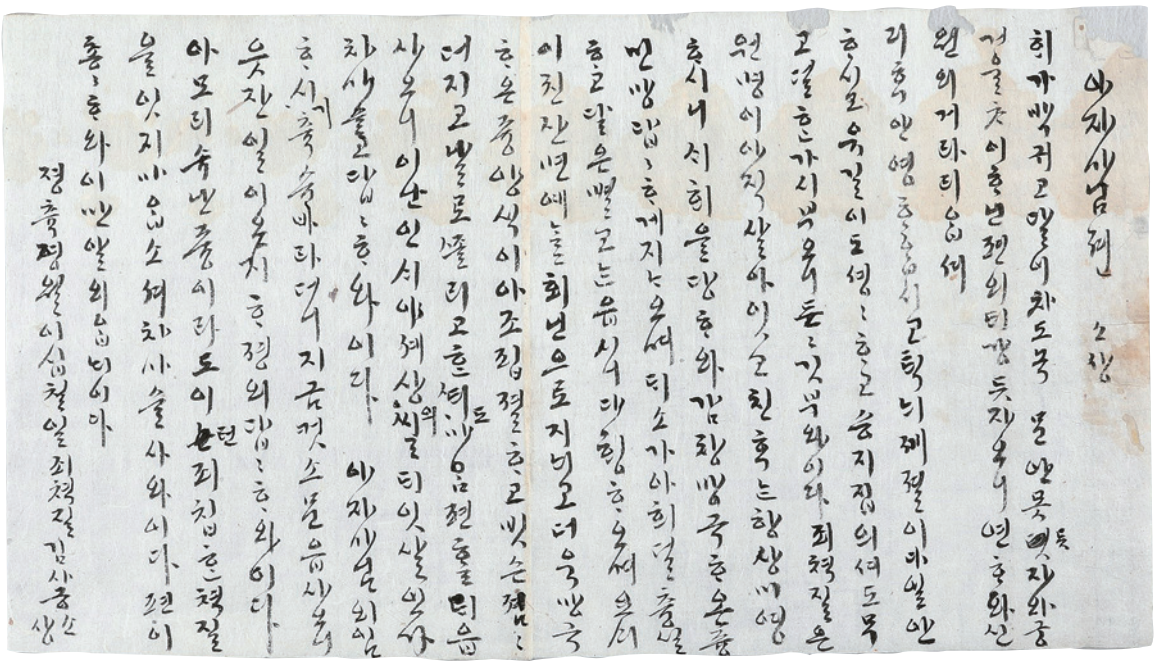

1877년 김사긍이 아주버님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3 세로24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가족들의 안부를 두루 전하며, 아주버님께서 외임하시기를 바란다는 말 등을 전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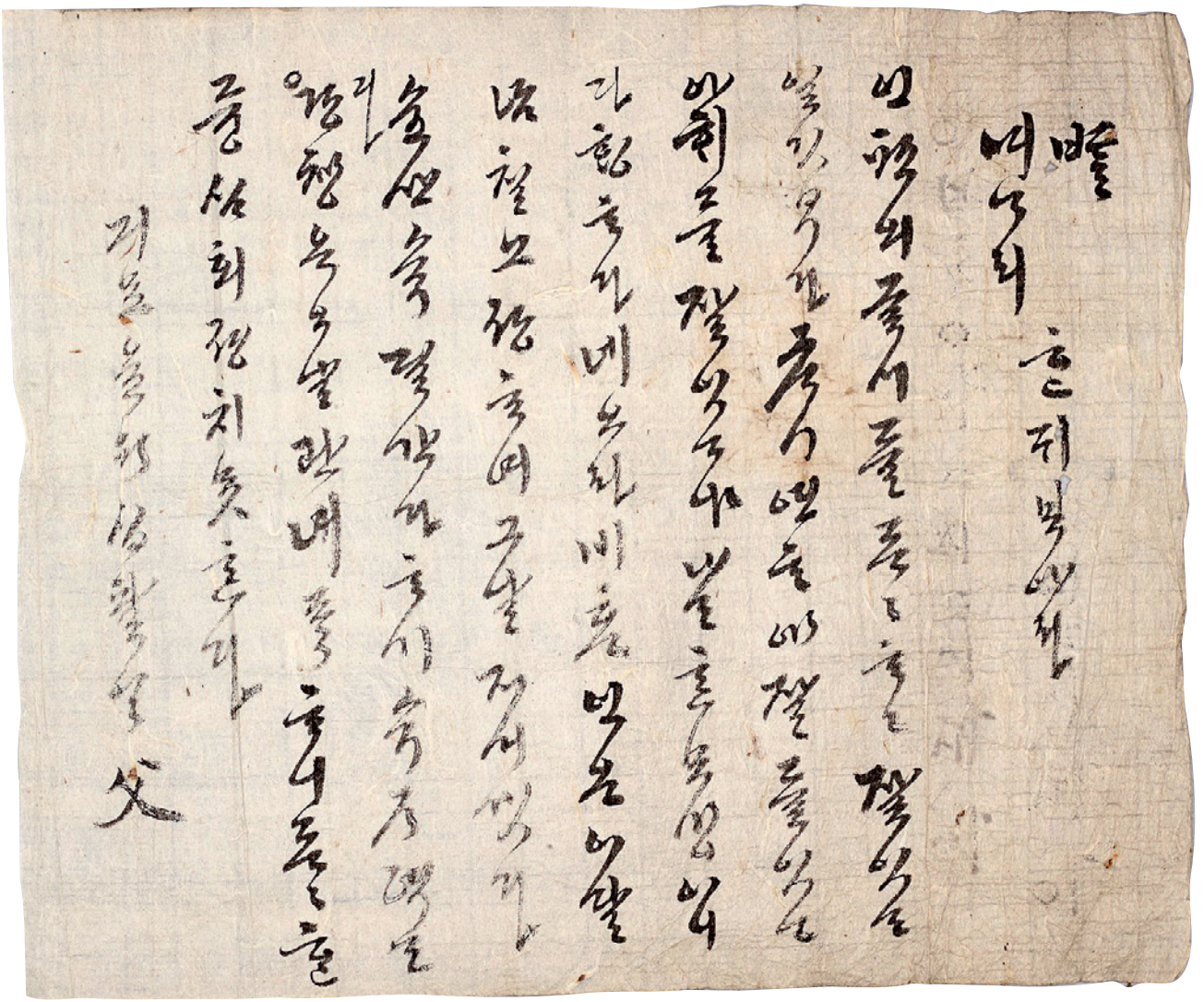

1879년 아버지가 딸과 며느리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28 세로24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아버지가 아들 '경창'의 결혼을 딸과 며느리에게 알리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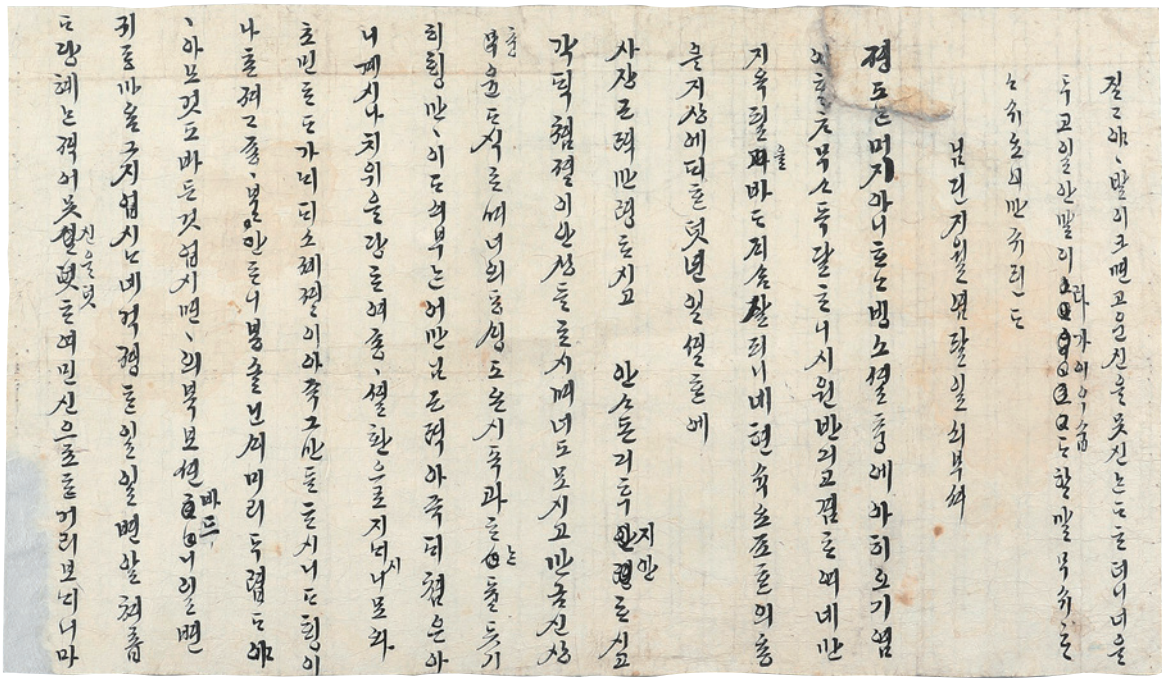

1892년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4 세로25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편지를 반기며 사돈댁의 안부를 묻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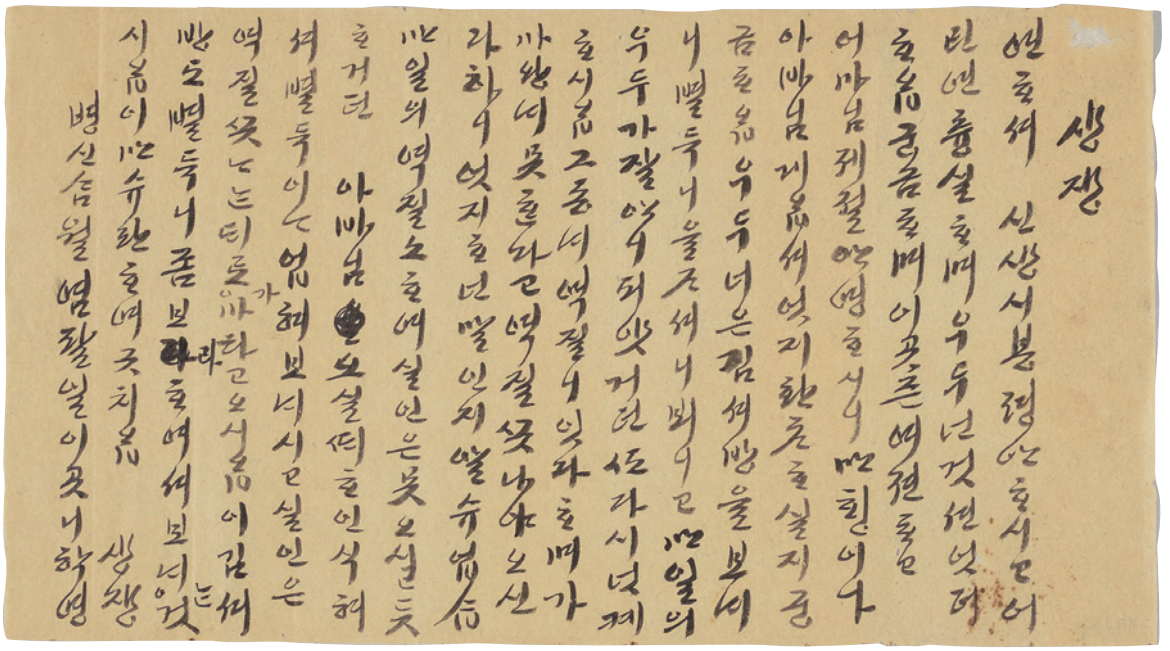

1896년 이학영이 아내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0 세로16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우두를 넣는 김서방을 보냈다고 전하며 그 동네에 역질이 있어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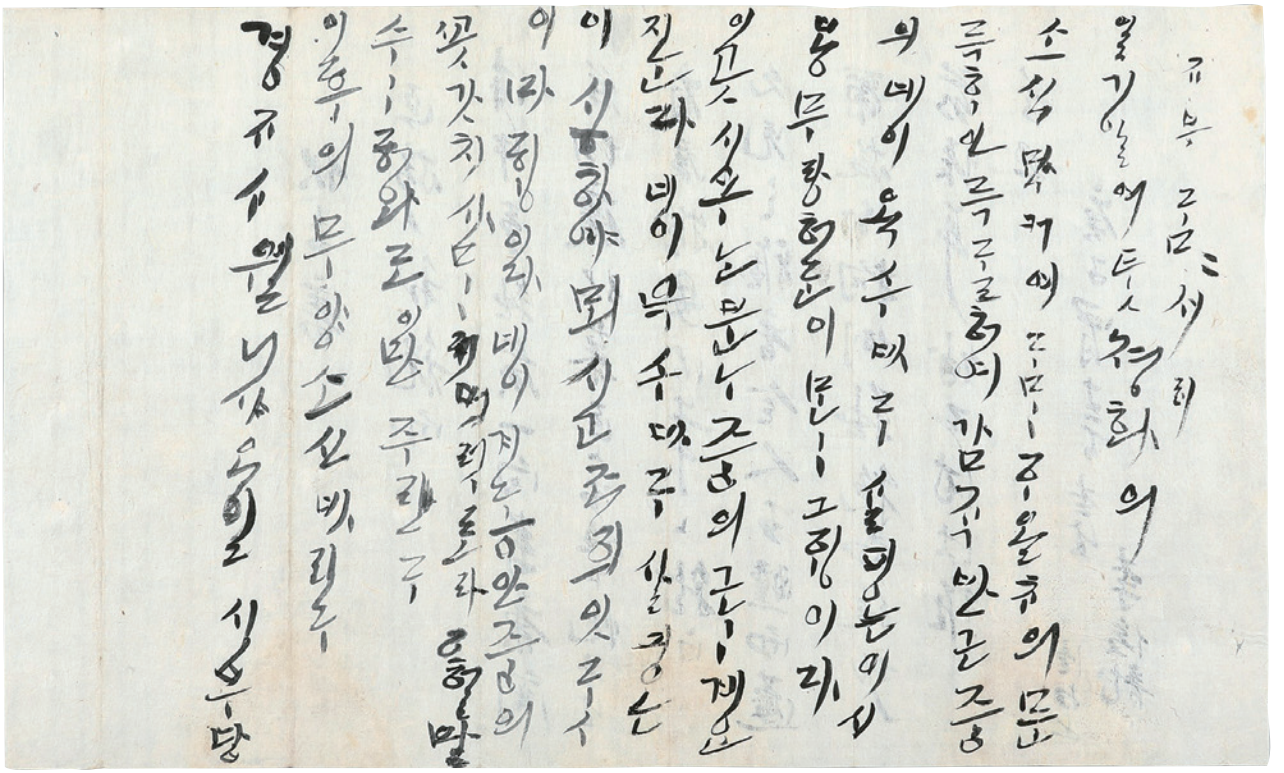

1900년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2 세로25 | 대한제국 | 국립한글박물관

며느리가 보내 온 편지에 대해 반가운 마음을 담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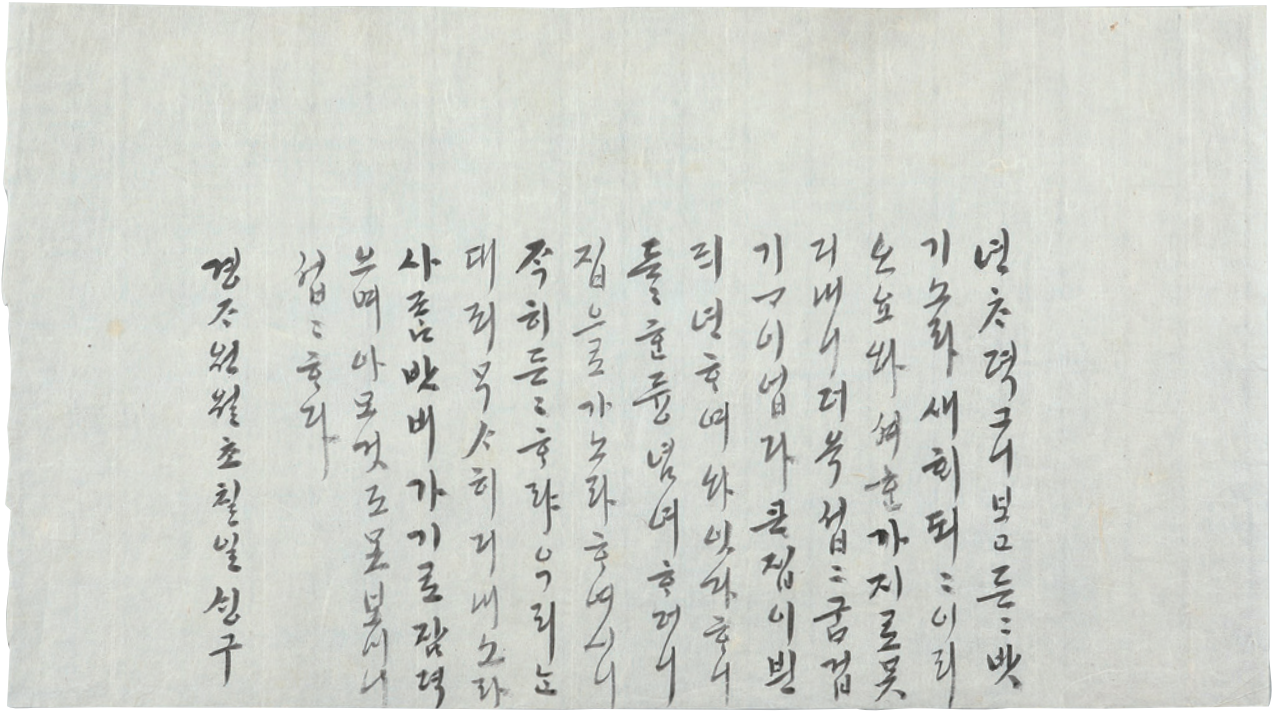

1900년 장인이 사위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7 세로26 | 대한제국 | 국립한글박물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위에 대한 아쉬운 마음과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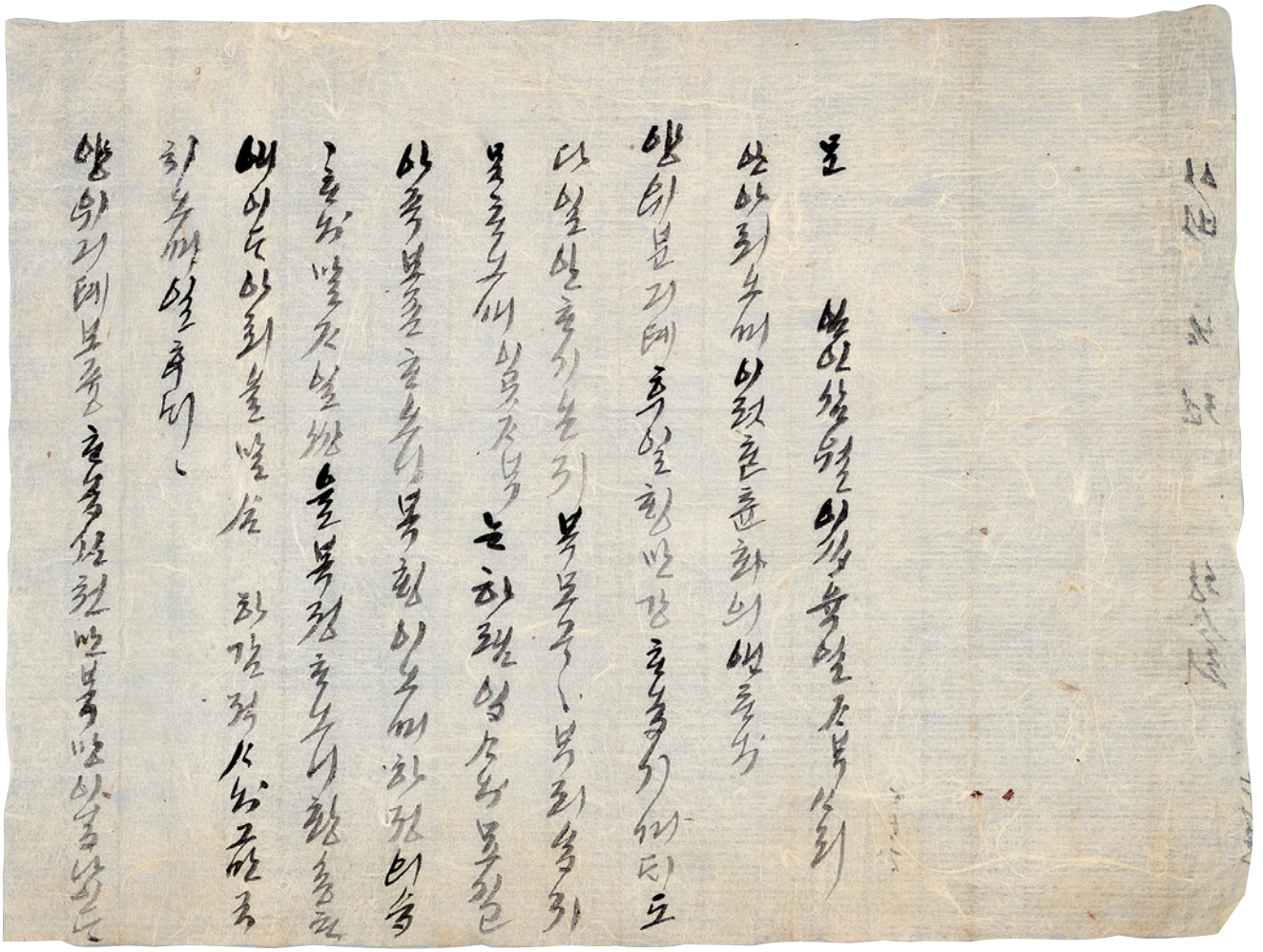

1902년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0 세로21 | 대한제국 | 국립한글박물관

문안을 묻고 안부를 전한 뒤 만복을 비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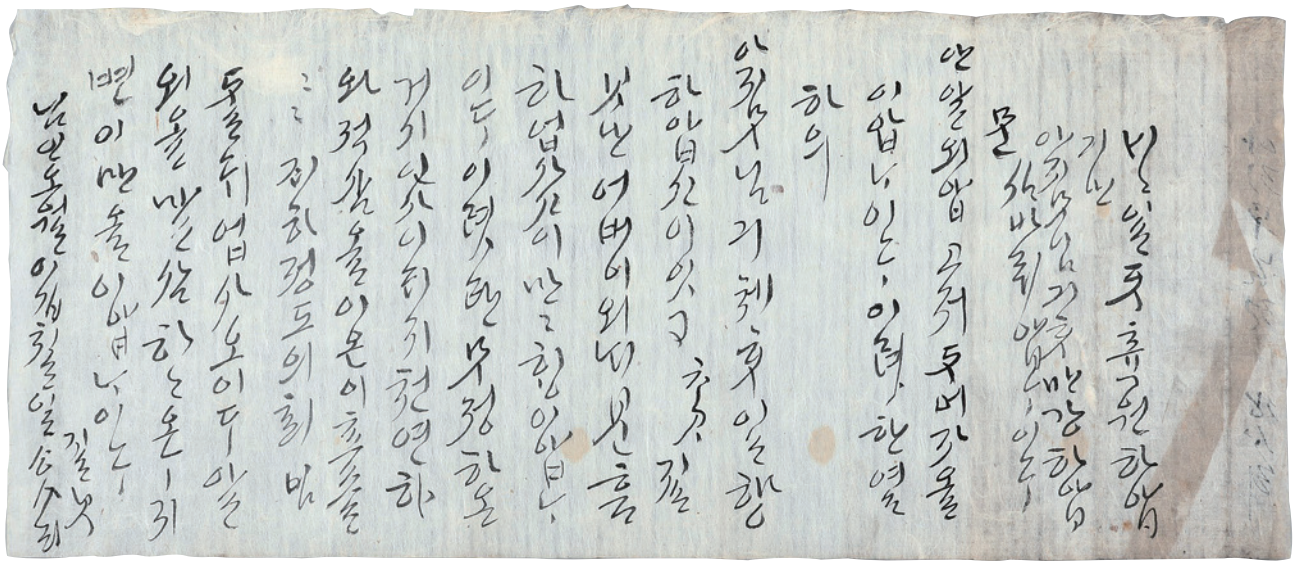

1902년 조카며느리가 시숙모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55 세로24 | 대한제국 | 국립한글박물관

조카며느리가 시숙모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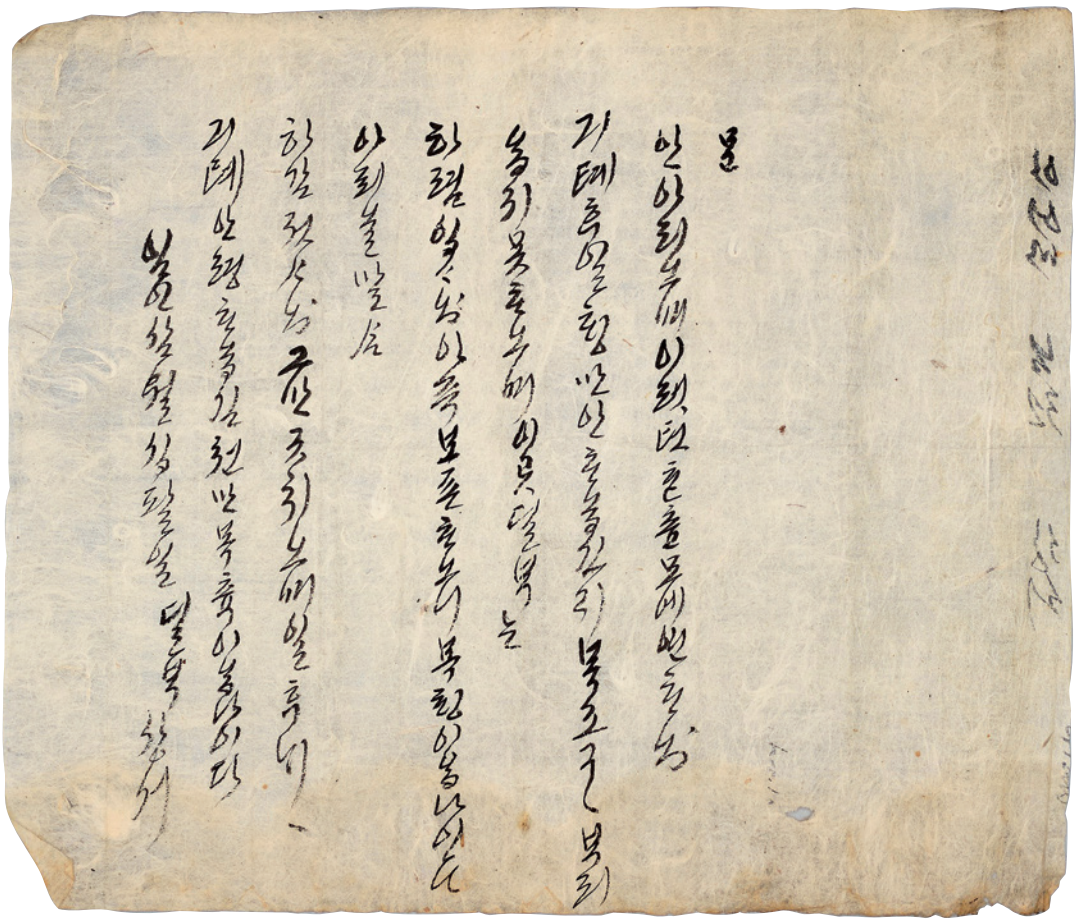

1902년 질부가 시숙모에게 보낸 한글편지

가로31 세로26 | 대한제국 | 국립한글박물관

문안을 묻고 안부를 전한 뒤 안녕과 만복을 비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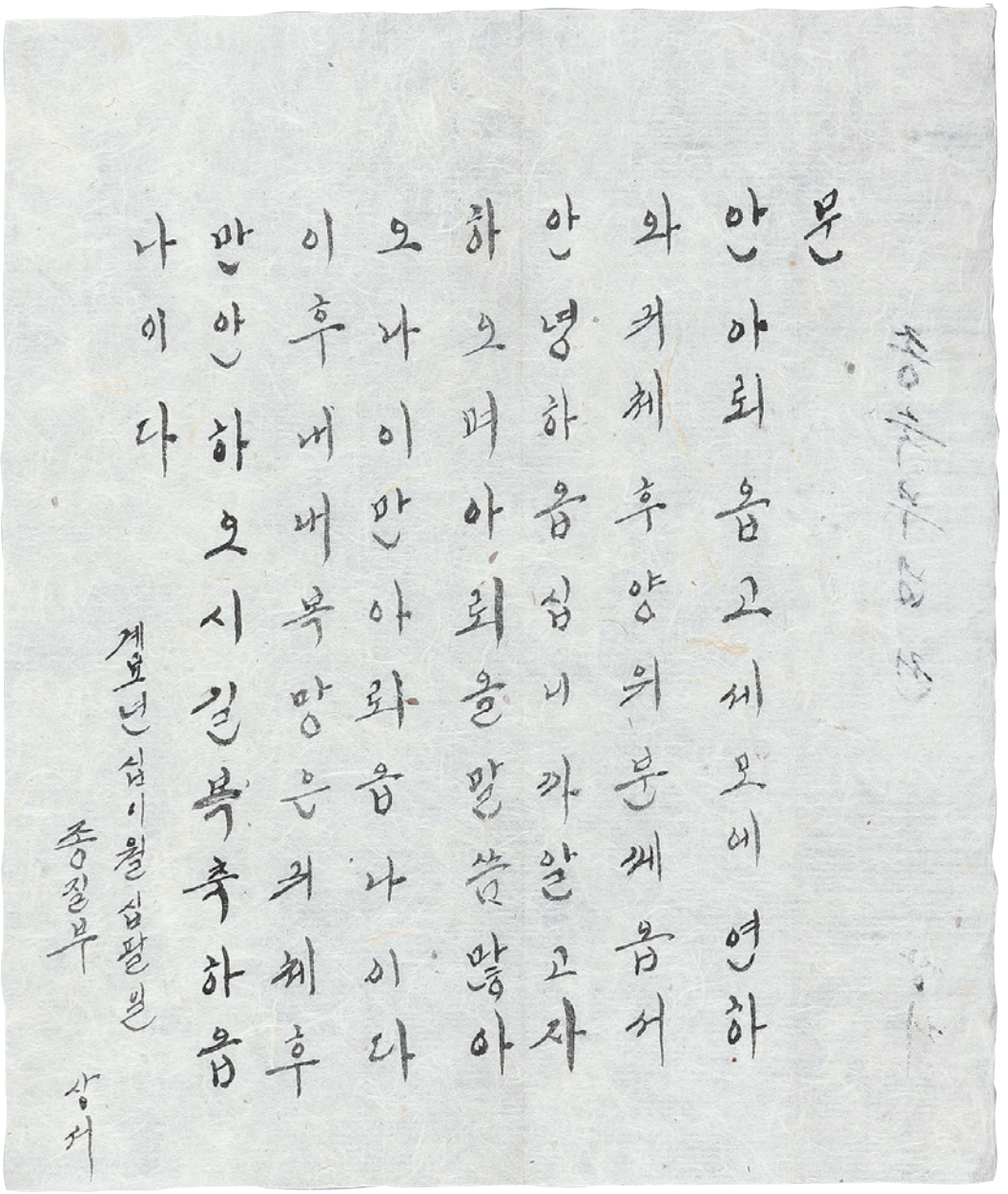

1903년 종질부가 종숙부와 종숙모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4 세로29 | 대한제국 | 국립한글박물관

종질부가 종숙부와 종숙모의 안부를 묻고자 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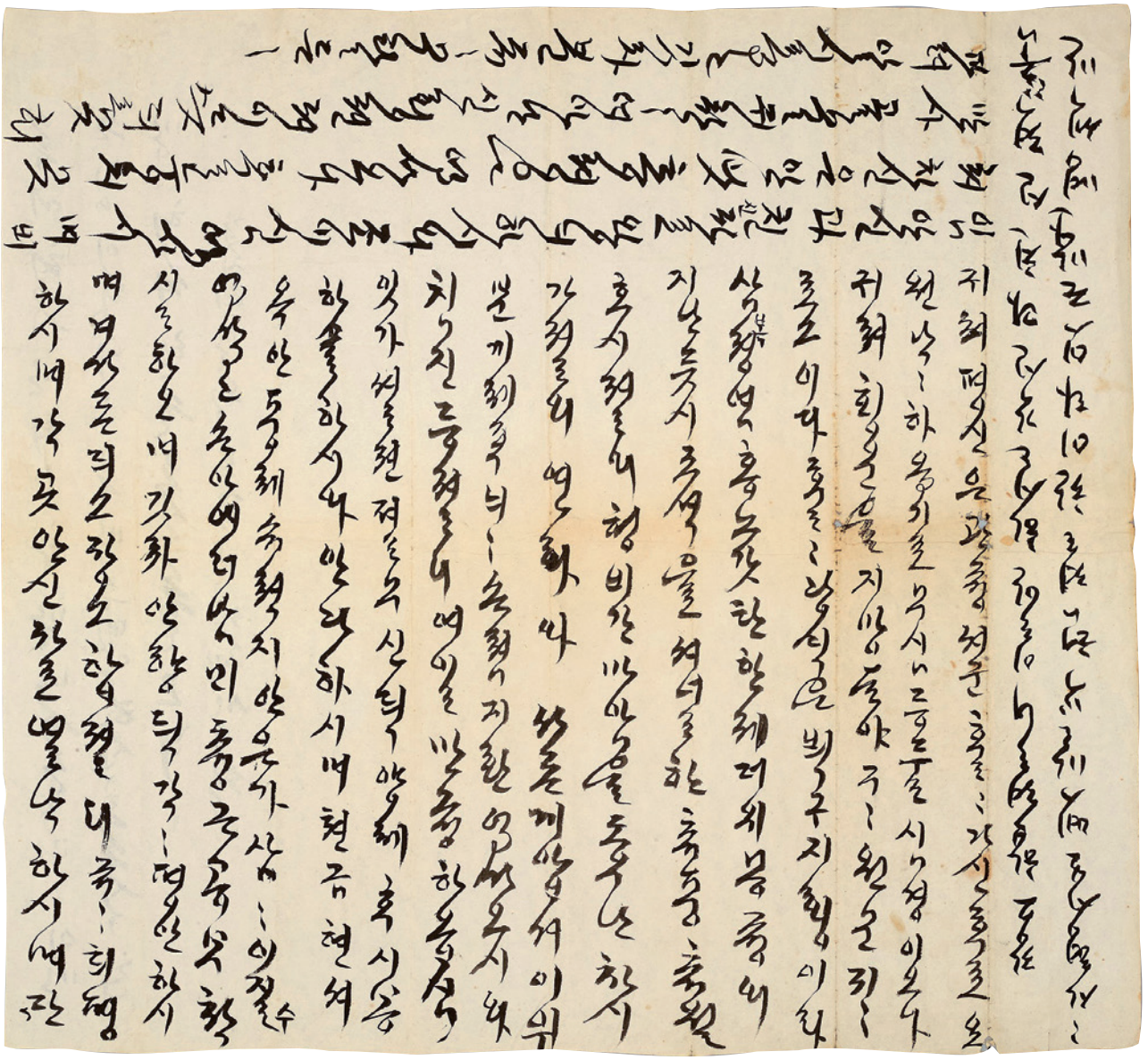

1904년 암사돈이 수사돈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3 세로40 | 대한제국 | 국립한글박물관

암사돈(안사돈)이 수사돈(안사돈)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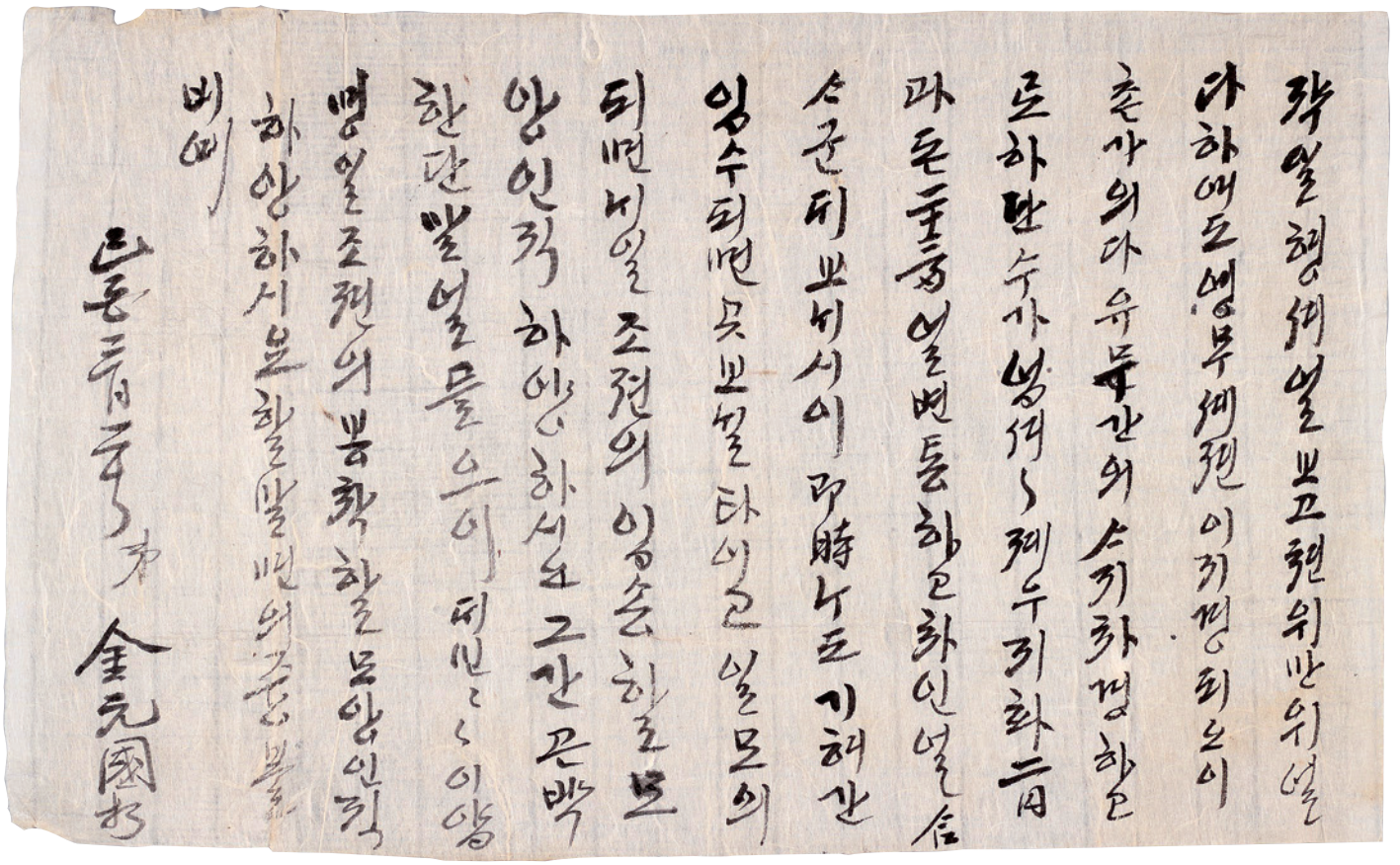

1909년 아우가 형님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6 세로22 | 대한제국 | 국립한글박물관

아우가 형님에게 보낸 답장으로, 돈을 변통하고 일손을 보내니 쓰라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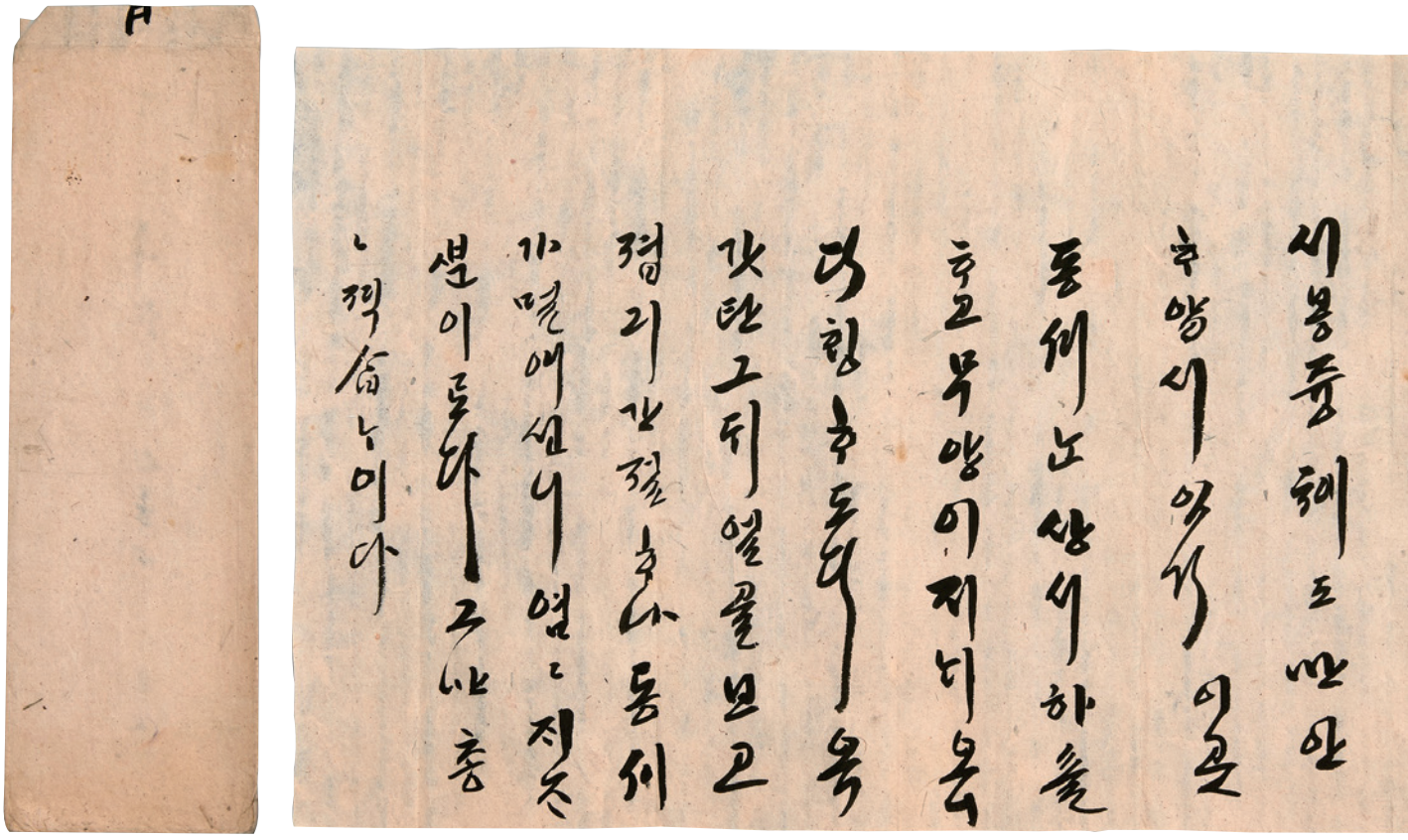

1910년 손아랫동서가 손윗동서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0 세로21 | 대한제국 | 국립한글박물관

자신의 안부와 손윗동서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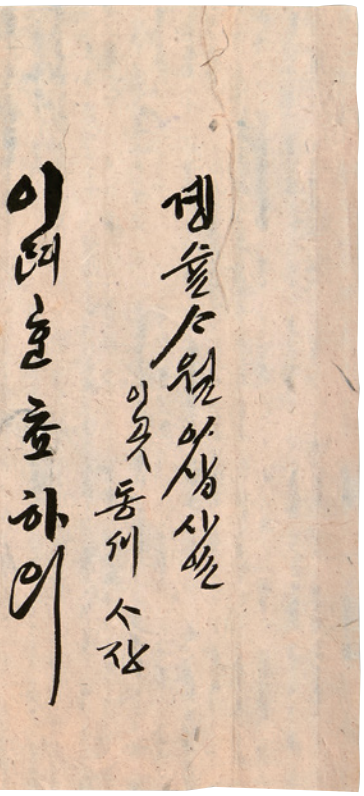

1911년 시집간 딸이 아버지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1 세로22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시집 간 딸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안부를 물으며 '명주 한필, 고운모시 한필, 굵은모시 한필, 가는 바늘, 붓' 등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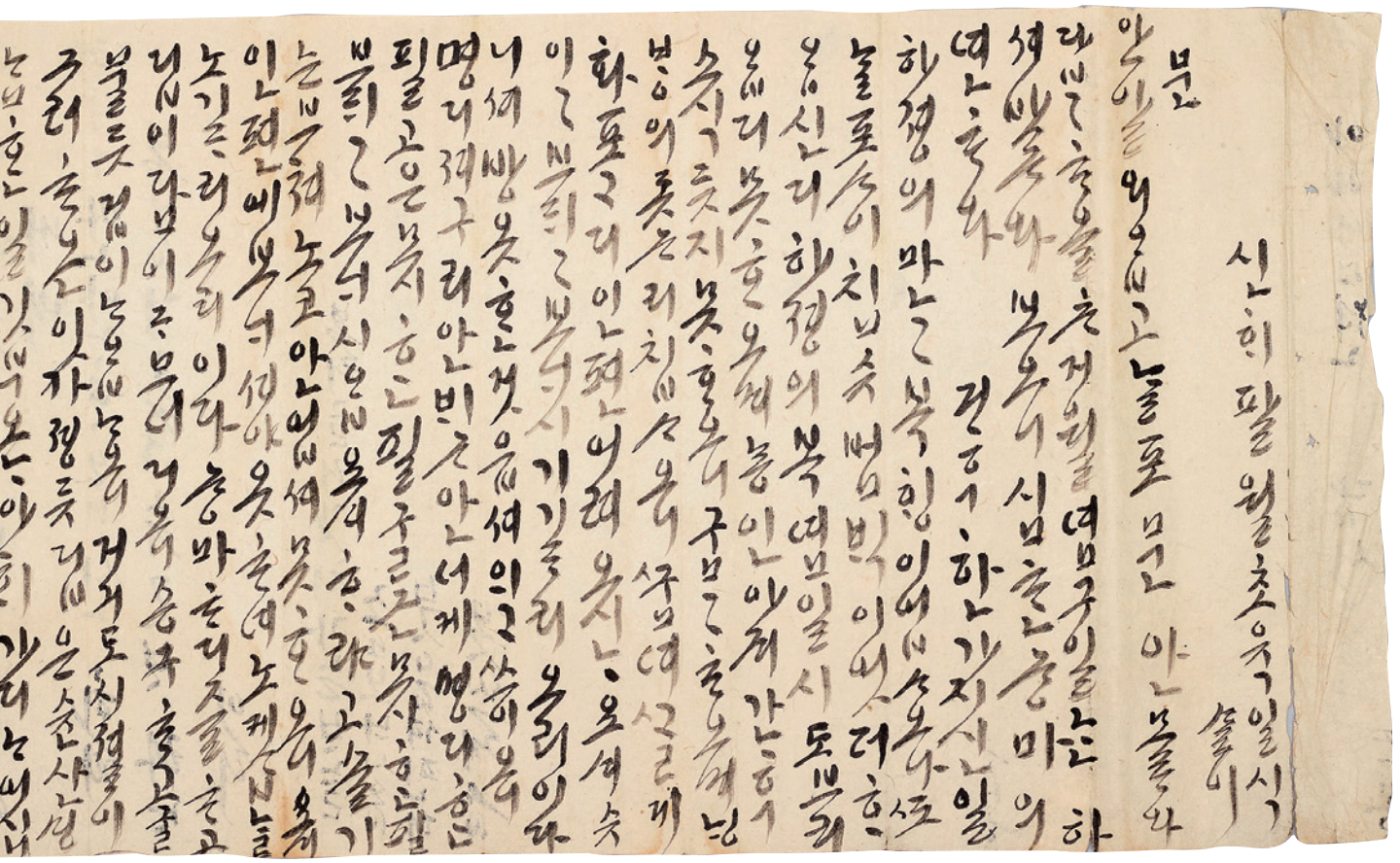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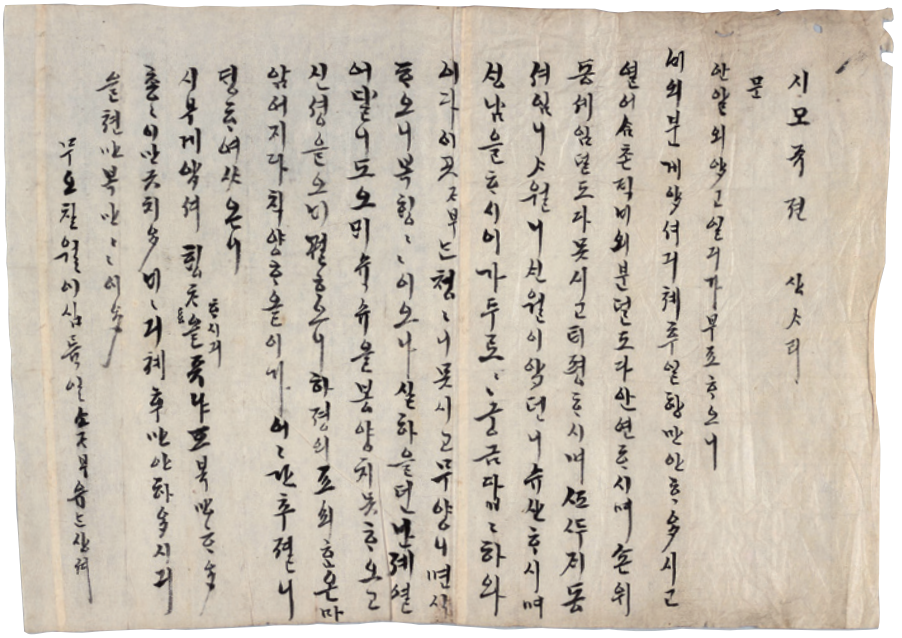

1918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4 세로24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시부모님, 여러 삼촌 내외, 손윗 동서들에 대한 안부 인사를 차례로 적으며 이어 자신의 소식을 적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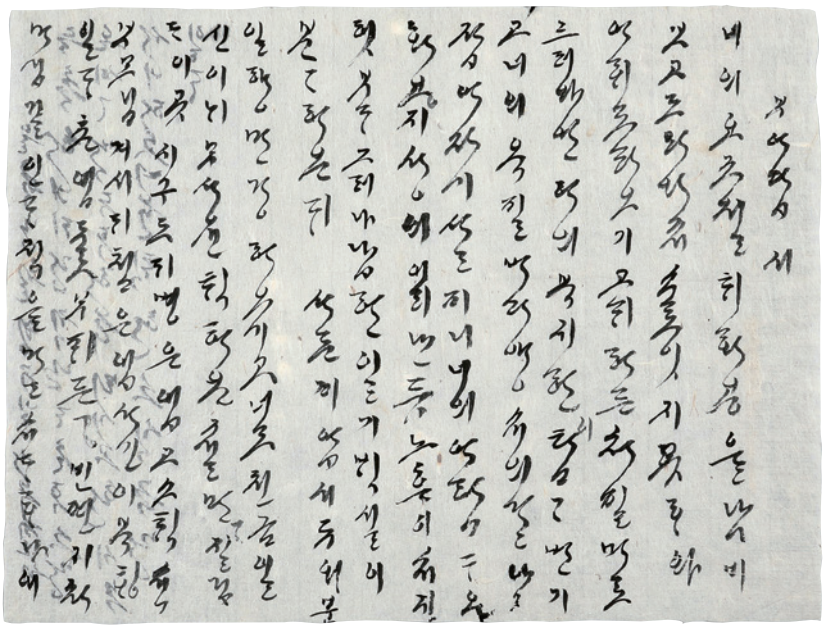

1925년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6 세로27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시아버지가 혼례를 치른 후 친정에 머무르고 있는 며느리에게 보낸 답장으로 사돈댁의 안부를 두루 묻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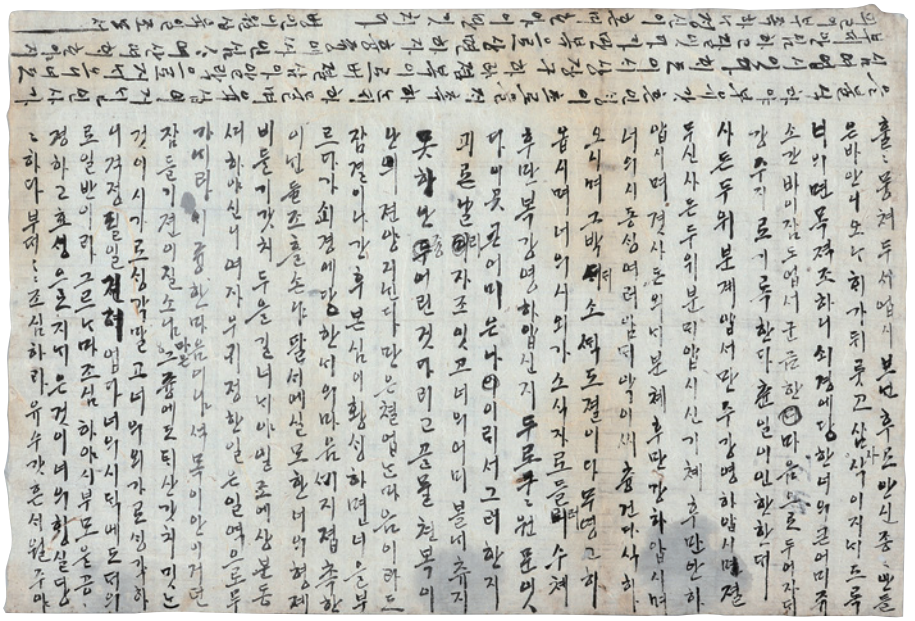

1926년 할머니가 시집간 손녀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0 세로27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할머니가 8살에 어머니를 잃은 손녀를 키워 시집을 보낸 후, 손녀를 그리워하며 안부를 전하고 만나 보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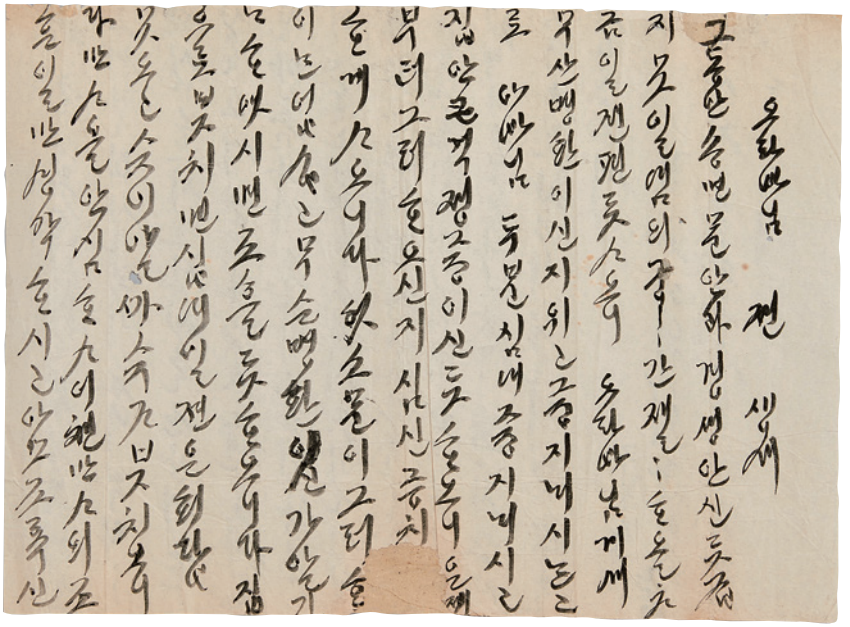

1929년 여동생이 오빠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3 세로24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오빠가 병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좋은 것만 생각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라는 말 등을 적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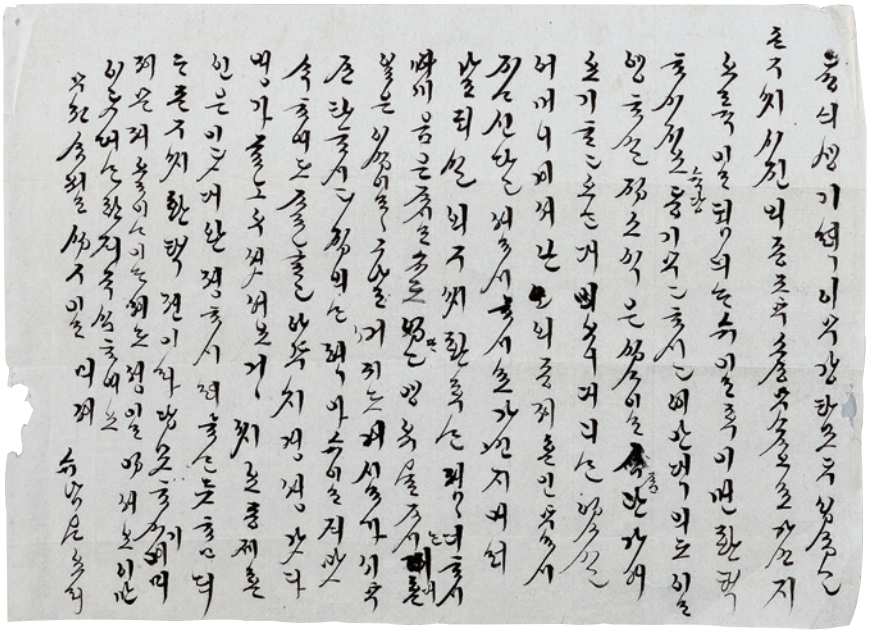

누이동생이 오빠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3 세로24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친정가족들의 안부와 본인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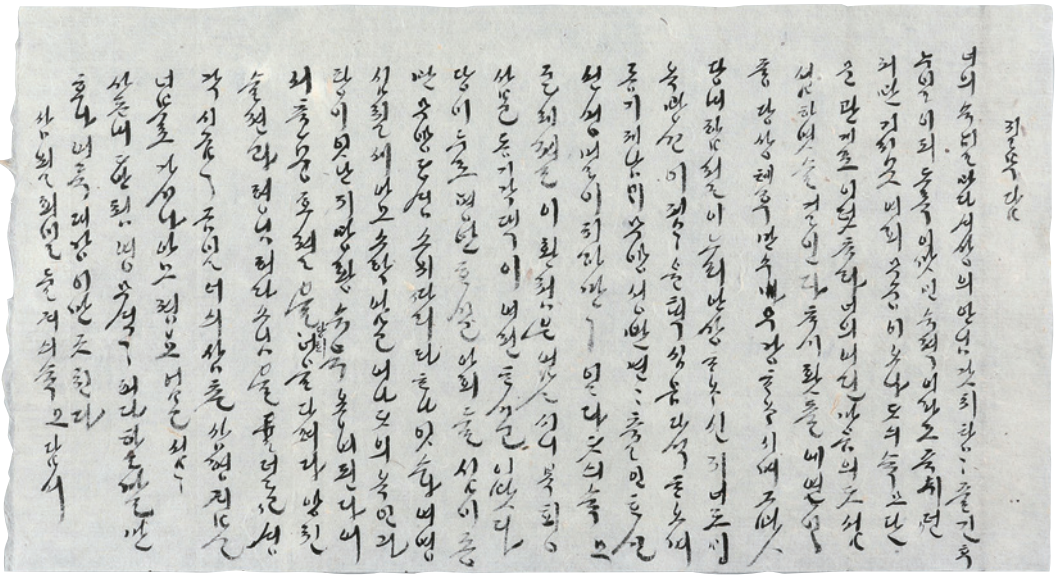

둘째 시숙모가 조카며느리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6 세로25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전하며 시삼촌 삼형제가 수신자를 보러 갔으나 아무 말이 없어 서운하다는 말 등을 적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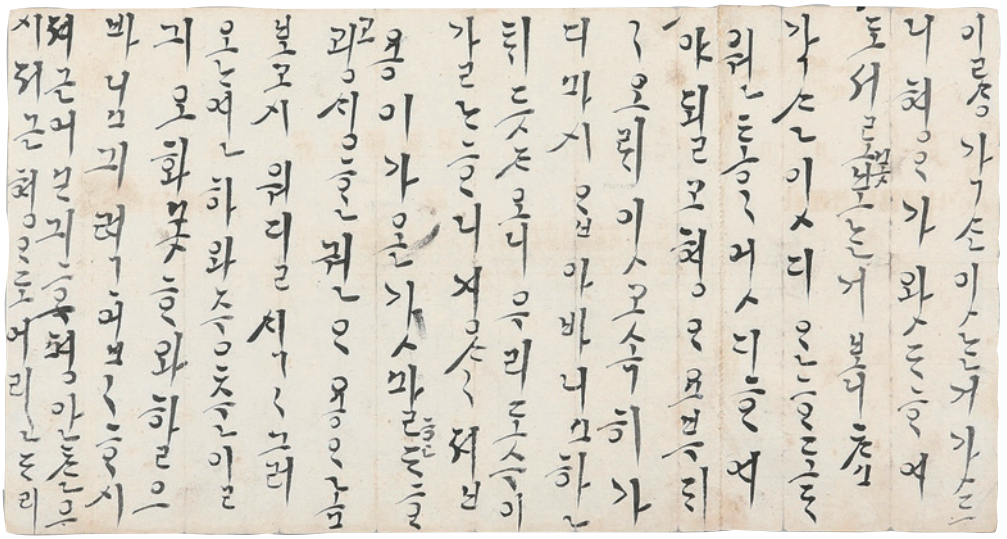

동생이 언니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15 세로28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어느 해 동생이 언니에게 보낸 편지로 언니가 친정에 왔다고 하여도 보지 못하니 원통하다며 빨리 가지 말라고 전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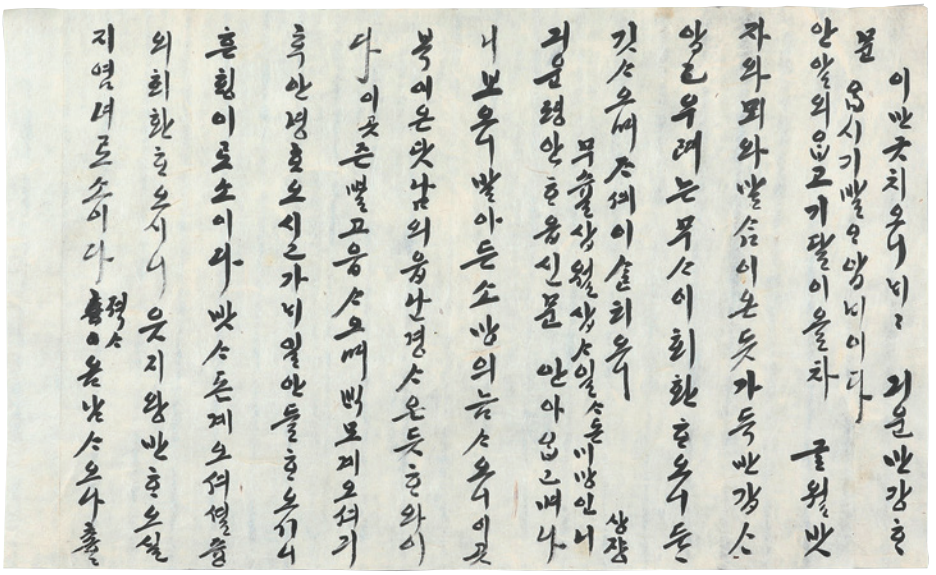

무술년 수사돈 이씨가 암사돈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9 세로24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이씨가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사돈댁의 안부를 물으면서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깥사돈의 회환을 걱정하는 내용.

사위가 장모댁에 보낸 한글 편지

가로30 세로29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서방을 장모 뵐 겸하여 보내니 잘 먹이고 하루만 묵게 하여 보내라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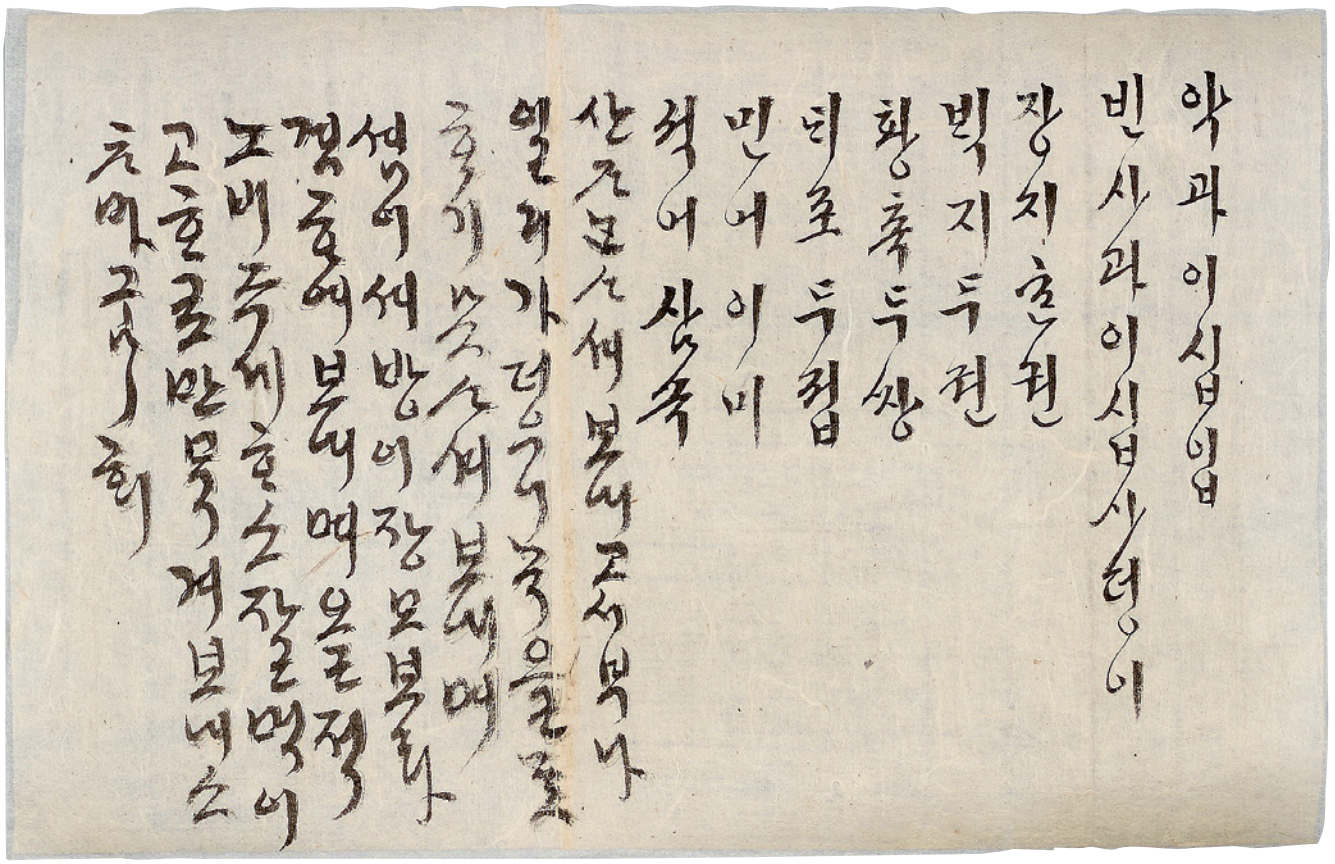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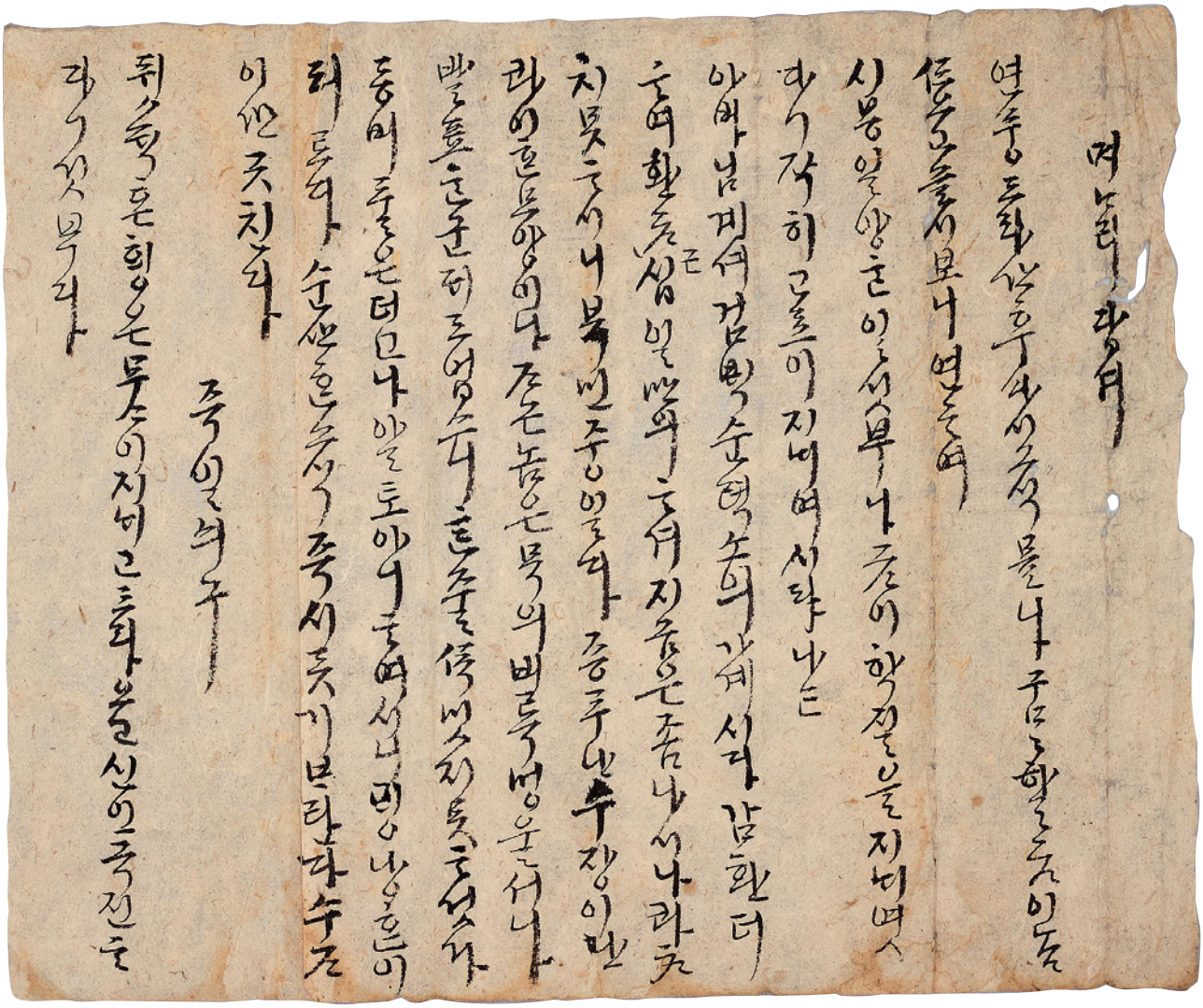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보낸 편지

가로31 세로26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시아버지가 출산을 앞둔 며느리에게 보낸 답장으로, 며느리가 순산하기를 바라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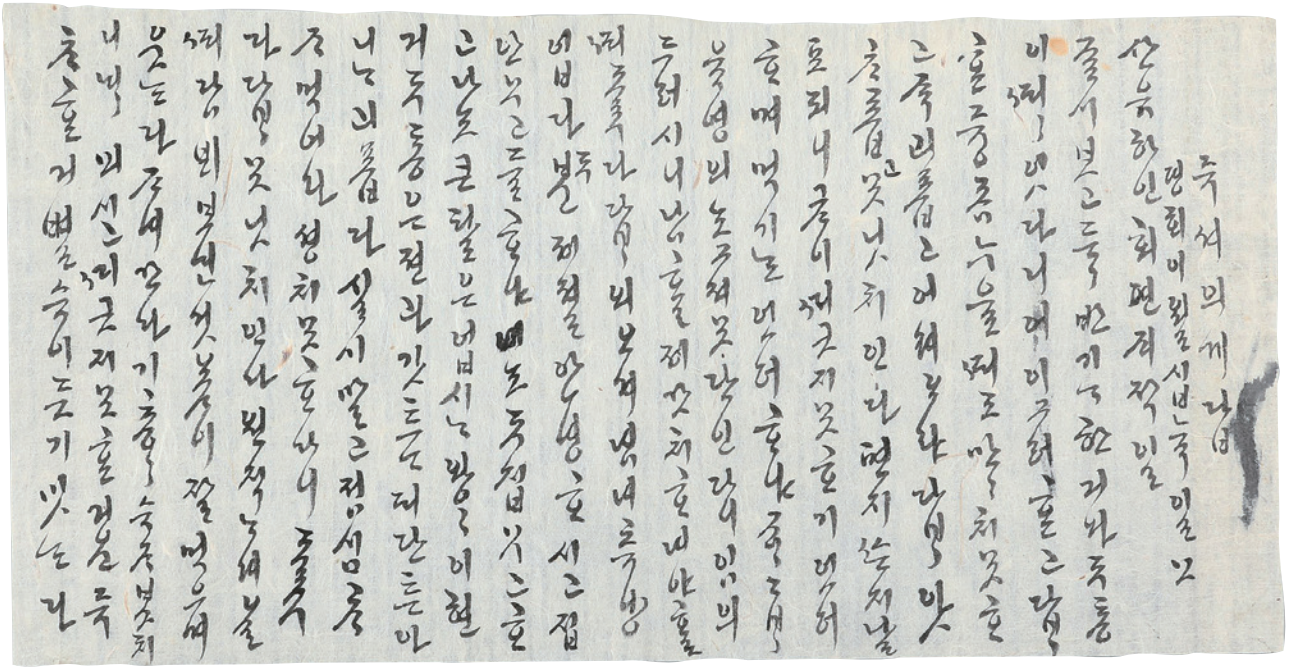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4 세로22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아들에 대한 건강과 안부를 묻고 전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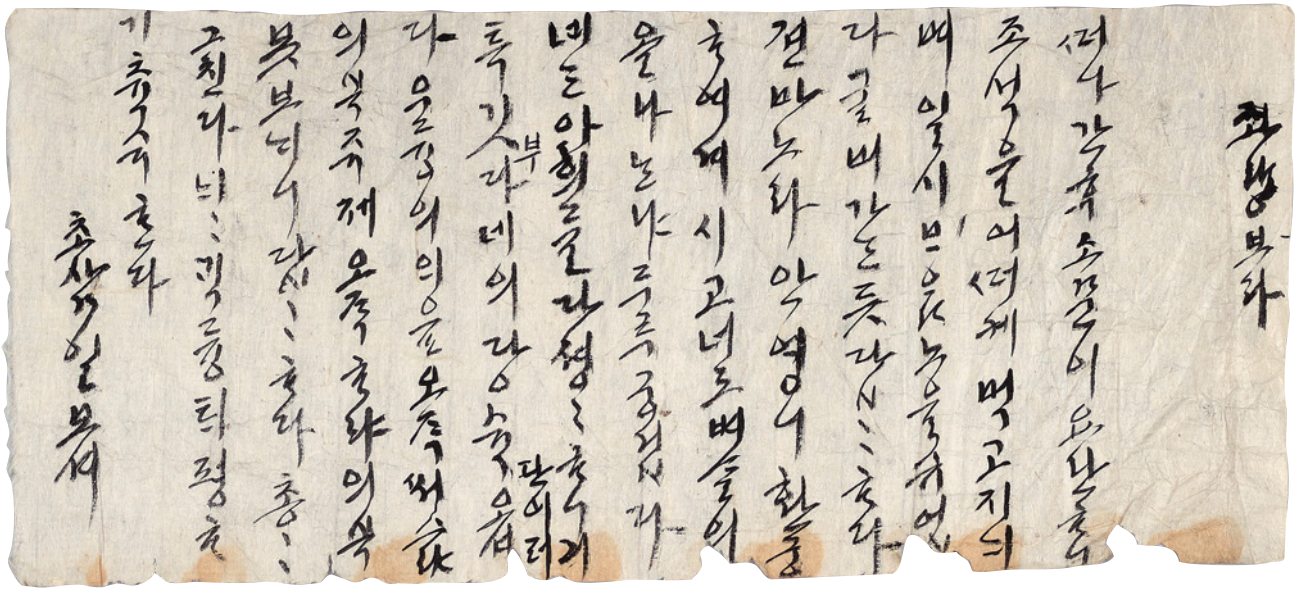

어머니가 좌랑 벼슬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6 세로16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아들이 서울로 간 후 요란한 소문으로 인해 걱정이 많다는 어머니의 심경을 적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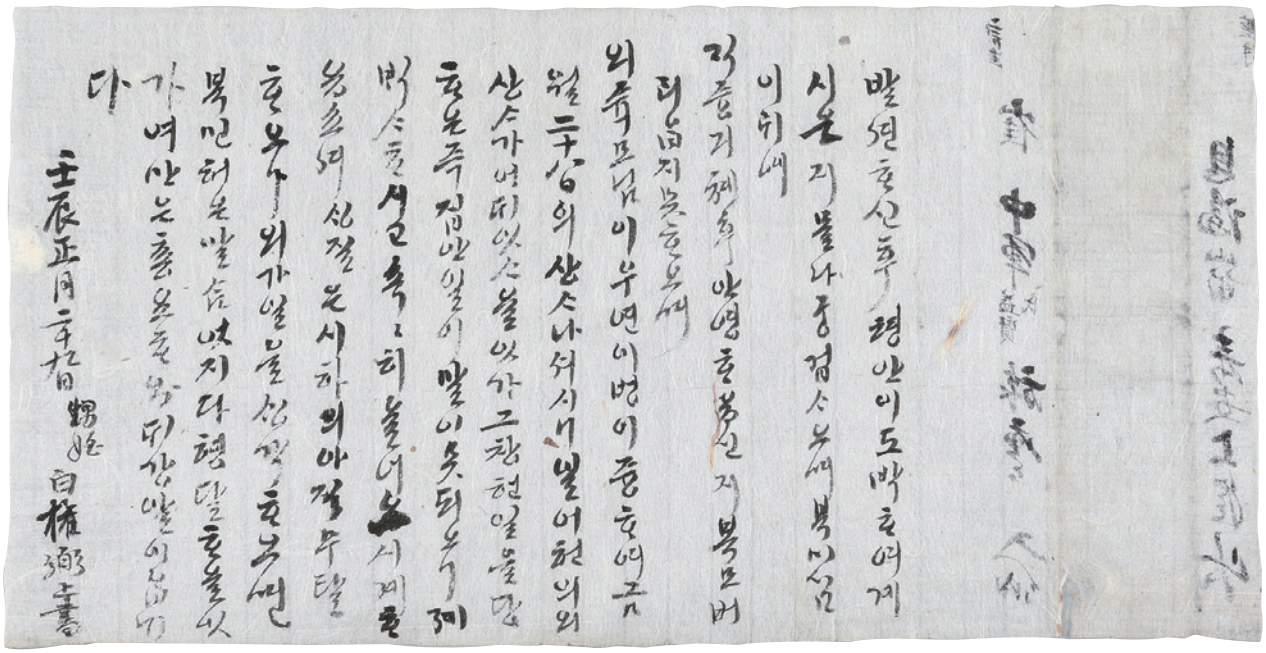

임진년 백권필이 외숙부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1 세로21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갑작스런 외숙모님의 상사와 외숙부님의 안부를 전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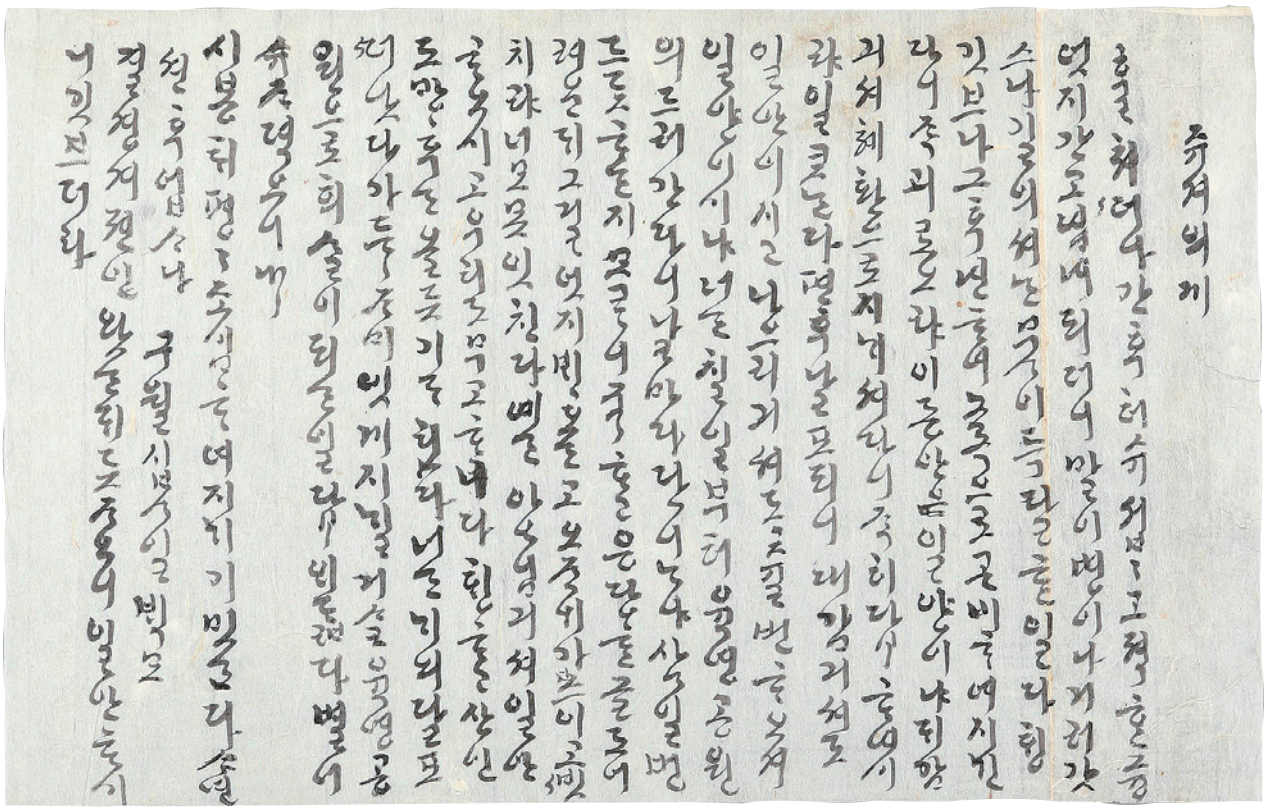

큰어머니가 조카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8 세로24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조카가 학교에 들어간다 하니 염려하면서 안부를 챙기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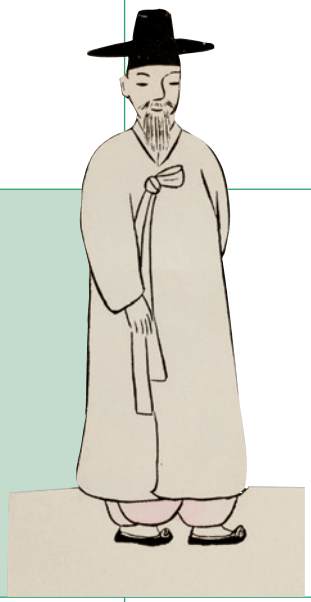

가족과 친족의

안부를 묻다

색인

IV

기역 ㄱ

가계	021, 022, 033, 035, 050, 079, 116, 118, 137, 143, 154, 165, 177, 201, 202, 234, 247, 255, 256, 280, 283, 284, 285, 403, 415, 421, 435, 442, 449, 468, 471, 510, 517, 525, 529, 534, 543, 546, 547, 549, 556, 589, 598, 601, 608, 617, 619, 624, 639
가구	020, 026, 027, 051, 122, 137, 138, 157, 158, 180, 183, 209, 296, 411, 476, 513, 655, 660
가문	028, 029, 042, 064, 067, 068, 070, 081, 084, 117, 143, 215, 223, 224, 271, 272, 289, 293, 294, 410, 413, 422, 438, 440, 477, 492, 495, 524, 525, 526, 528, 530, 543, 544, 545, 556, 587, 589, 590, 600, 611, 649, 650, 666
가부장제	030, 031, 032, 038, 043, 084, 167, 289, 399, 432, 549, 616, 637, 652
가사	031, 032, 044, 065, 497, 597
가신	045, 046, 047, 506, 510, 511
가장	037, 038, 042, 053, 119, 126, 159, 403, 405, 410, 419, 420, 432, 505, 571, 582, 597, 640, 644
가정	025, 034, 039, 040, 041, 046, 050, 056, 070, 072, 077, 078, 149, 159, 272, 292, 296, 419, 421, 422, 431, 484, 496, 499, 566
가족	020, 026, 027, 030, 031, 032, 033, 034, 035, 037, 038, 039, 040, 041, 045, 047, 051, 052, 056, 059, 062, 064, 065, 069, 070, 072, 073, 074, 075, 092, 102, 109, 118, 119, 126, 138, 152, 153, 154, 155, 157, 167, 168, 183, 185, 186, 193, 194, 200, 202, 204, 207, 208, 209, 210, 218, 230, 243, 271, 277, 279, 280, 281, 283, 284, 285, 286, 288, 293, 296, 297, 399, 403, 404, 410, 411, 417, 418, 419, 421, 424, 427, 428, 433, 434, 435, 453, 459, 473, 474, 475, 481, 496, 497, 499, 504, 505, 506, 507, 512, 513, 514, 521, 523, 543, 548, 549, 551, 558, 559, 561, 562, 579, 581, 582, 584, 585, 587, 589, 595, 597, 598, 601, 605, 606, 615, 616, 625, 632, 637, 638, 639, 642, 643, 644, 648, 651, 655, 660, 661, 671, 675
결혼	020, 074, 075, 091, 092, 101, 127, 138, 139, 157, 165, 193, 194, 230, 396, 406, 422, 427, 458, 462, 511, 512, 520, 524, 543, 550, 552, 553
계자	021, 079, 080, 522, 601
고모	083, 084, 200, 231, 240, 243, 249, 406, 407, 419, 441, 451, 452, 460, 476, 514
고부	084, 085, 086, 290, 504
관례	204, 224, 263, 264, 402, 463, 472, 585, 627
국조오례의	216, 222, 246, 281, 283, 479, 527
권당	029, 076, 094, 095, 243, 461, 501
근친	100, 146, 300, 524, 575, 614, 637
근친혼	060, 101, 143, 460
기제사	106, 108, 295, 296, 446, 467, 498, 500, 501, 505, 525, 534, 536

니은 ㄴ

남매	114, 115, 116, 140, 141, 198, 446, 476, 502, 626
남아선호	401, 403, 475, 637
남편	027, 031, 038, 039, 040, 050, 065, 074, 080, 084, 085, 087, 088, 096, 118, 126, 141, 159, 160, 164, 203, 204, 207, 229, 230, 238, 239, 240, 248, 256, 283, 285, 286, 288, 290, 293, 294, 299, 398, 399, 400, 414, 415, 419, 425, 426, 427, 441, 451, 452, 457, 458, 461, 462, 465, 467, 468, 469, 478, 490, 511, 514, 517, 526, 527, 529, 530, 547, 550, 553, 555, 556, 563, 567, 579, 582, 597, 601, 615, 622, 624, 625, 641, 656, 657, 665, 666
누나	124, 125, 153, 419, 432, 475, 620, 621, 626

디귿 ㄷ

동생	140, 396, 437, 438, 592, 624, 626, 671

동성동본 132, 137, 143, 144, 145, 146, 195, 268, 269, 300, 460, 524, 619, 637

딸 030, 077, 078, 096, 097, 124, 137, 151, 152, 156, 158, 164, 178, 185, 199, 227, 228, 229, 240, 248, 251, 252, 255, 260, 275, 278, 284, 290, 300, 399, 415, 422, 426, 429, 434, 435, 438, 441, 445, 446, 461, 470, 473, 474, 475, 482, 485, 486, 487, 490, 491, 514, 517, 529, 538, 550, 554, 563, 565, 567, 597, 664

미음

며느리 075, 076, 084, 085, 086, 151, 156, 160, 162, 179, 182, 202, 203, 214, 223, 229, 283, 284, 285, 286, 289, 290, 292, 293, 294, 299, 396, 399, 400, 410, 411, 429, 430, 442, 460, 503, 526, 529, 531, 549, 554, 563, 567, 575, 579, 597, 611, 614, 615, 624, 665, 675, 677

모계 023, 024, 028, 067, 094, 186, 197, 259, 260, 405, 415, 418, 432, 433, 436, 469, 527, 547, 556, 563, 564, 565, 585, 619, 654

묘제 169, 170, 171, 172, 176, 177, 178, 222, 261, 265, 266, 446, 448, 463, 466, 467, 498, 499, 505, 525, 534

문중 028, 042, 090, 122, 128, 134, 147, 149, 174, 175, 176, 177, 178, 190, 198, 216, 217, 226, 260, 261, 266, 274, 401, 415, 416, 436, 465, 466, 470, 471, 476, 477, 492, 502, 508,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3, 534, 538, 539, 557, 576, 577, 589, 590, 592, 600, 601, 649, 650

비읍

방계 053, 066, 183, 184, 193, 477, 521

배우자 037, 091, 092, 118, 127, 203, 209, 210, 218, 226, 398, 453, 459, 492, 519, 558, 643

봉제사접빈객 190, 197, 198, 526, 535, 537

부거제 031, 083, 207, 284, 286, 301, 481, 482, 553, 554, 586

부계 022, 023, 024, 032, 053, 054, 067, 083, 086, 094, 117, 128, 155, 186, 197, 199, 241, 259, 260, 262, 268, 274, 284, 398, 415, 418, 433, 436, 438, 469, 482, 502, 512, 520, 523, 527, 545, 549, 556, 559, 560, 563, 564, 565, 595, 600, 615, 619, 622, 629, 642, 650, 654, 655

부모 027, 038, 040, 041, 048, 049, 051, 052, 054, 059, 060, 065, 072, 074, 077, 081, 082, 097, 098, 114, 122, 124, 131, 140, 151, 152, 153, 155, 158, 184, 188, 189, 193, 200, 201, 202, 204, 208, 209, 221, 223, 224, 235, 236, 237, 238, 245, 248, 249, 250, 253, 262, 265, 272, 277, 279, 281, 282, 283, 284, 286, 290, 296, 301, 400, 401, 405, 406, 408, 412, 413, 414, 415, 418, 422, 423, 424, 425, 426, 431, 434, 435, 436, 438, 442, 444, 457, 466, 468, 470, 472, 473, 474, 475, 478, 480, 484, 485, 486, 487, 491, 492, 498, 501, 502, 503, 506, 512, 513, 517, 521, 526, 527, 528, 543, 544, 546, 547, 548, 554, 555, 556, 558, 559, 561, 563, 564, 571, 572, 579, 581, 591, 595, 602, 604, 606, 608, 611, 615, 616, 617, 619, 620, 626, 627, 640, 642, 659, 666, 668, 670, 671, 672, 673, 674

부부 032, 039, 040, 051, 052, 056, 063, 105, 118, 120, 150, 151, 158, 202, 203, 204, 205, 206, 218, 226, 239, 262, 278, 286, 296, 399, 400, 411, 425, 433, 436, 439, 444, 457, 458, 459, 464, 467, 469, 473, 475, 496, 497, 504, 517, 520, 527, 548, 549, 553, 560, 579, 594, 595, 596, 598, 599, 605, 617, 637, 640, 644, 645, 656, 658, 660

부인 033, 051, 079, 110, 118, 124, 151, 159, 164, 182, 204, 240, 253, 257, 297, 398, 435, 461, 529, 550, 579, 625, 658

부처제 206, 207, 224

분재기 187, 204, 210, 211, 212, 249, 433, 444, 445,

	485, 486, 487, 500, 502, 610, 659
불천위	089, 090, 177, 200, 212, 213, 214, 215, 221, 225, 226, 499, 502, 522, 524, 525, 532, 536, 539, 560, 590, 593, 600, 650
불효	121, 187, 457, 507, 547, 673, 675

시옷 ㅅ

사당	089, 214, 219, 221, 222, 401, 499, 505, 536
사돈	030, 075, 076, 094, 460, 576
사위	066, 076, 132, 136, 142, 156, 185, 186, 284, 300, 399, 460, 481, 482, 483, 487, 499, 511, 518, 520, 547, 550, 552, 553, 597, 657
사촌	101, 124, 223, 228, 231, 241, 418, 559, 560, 620
삼강행실도	235, 281, 425, 474, 494
삼촌	083, 240, 241, 242, 243, 245, 297, 432, 476, 514, 559
삼춘	242, 243, 244
상례	224, 237, 245, 246, 247, 248, 252, 253, 281, 441, 448, 464, 465, 466, 467, 477, 479, 498, 504, 505, 510, 518, 559, 577, 586
상속	054, 061, 098, 148, 157, 187, 207, 208, 239, 240, 248, 249, 250, 251, 252, 260, 270, 271, 284, 285, 297, 300, 415, 440, 469, 470, 486, 490, 491, 511, 512, 547, 552, 553, 560, 561, 610, 611, 620, 636, 642, 659
서얼	256, 257, 262, 489, 522, 619, 651
서자	022, 079, 117, 222, 251, 256, 257, 258, 401, 430, 518, 522, 555, 556
선계	259, 260, 546, 564, 565
선조	022, 024, 035, 036, 066, 067, 122, 133, 175, 185, 212, 262, 433, 444, 467, 471, 509, 518, 521, 522, 523, 600, 619, 620
손녀	141, 275, 276, 277, 469, 598
손자	079, 080, 191, 192, 241, 243, 273, 275, 276, 277, 280, 281, 412, 413, 423, 424, 429, 430, 441, 476, 503, 504, 533, 576, 642, 677
손주	160, 275, 277
시가	075, 083, 202, 399, 452, 578, 601
시댁	100, 164, 182, 207, 283, 284, 285, 288, 293, 400, 481, 482, 483, 611, 615
시아버지	086, 164, 229, 283, 284, 285, 289, 293, 294, 399, 429, 611, 613, 614, 665, 666, 674
시어머니	084, 161, 162, 285, 286, 290, 293, 294, 396, 399, 410, 411, 430, 531, 611, 613, 615, 665, 666, 674, 677
시조	022, 065, 068, 132, 190, 196, 214, 266, 269, 273, 286, 471, 502, 505, 521, 524, 528, 534, 544, 545, 589, 617
시집	288, 290, 429, 575, 611
시집살이	085, 086, 162, 288, 289, 291, 292, 294, 396, 554
신랑	029, 030, 088, 110, 136, 197, 258, 259, 288, 290, 301, 427, 433, 465, 477, 487, 488, 489, 553, 572, 573, 586, 611, 615, 645, 646, 647, 648, 655
신부	029, 030, 087, 100, 110, 112, 197, 229, 258, 288, 301, 427, 465, 487, 488, 489, 553, 572, 573, 586, 611, 613, 645, 646, 647, 648, 655, 658
신붓집	030, 088, 112, 151, 185, 258, 259, 433, 574, 611
신주	089, 214, 215, 219, 280, 281, 536
씨족	286, 287, 300, 301, 507, 524, 578, 616, 617, 625

이응 ㅇ

아내	027, 030, 031, 040, 050, 065, 074, 077, 084, 118, 160, 207, 223, 227, 237, 238, 248, 259, 289, 290, 293, 297, 398, 399, 400, 406, 407, 419, 426, 427, 432, 433, 441, 461, 462, 463, 465, 467, 481, 482, 483, 529, 552, 553, 597, 618, 641
아들	030, 066, 078, 079, 080, 081, 082, 084, 085,

097, 105, 116, 117, 129, 132, 136, 151, 152, 157, 158, 160, 161, 162, 178, 184, 199, 207, 214, 224, 229, 239, 241, 255, 258, 260, 272, 273, 275, 277, 278, 284, 285, 293, 299, 399, 400, 401, 402, 404, 415, 420, 421, 423, 425, 429, 430, 434, 435, 436, 441, 445, 446, 457, 460, 468, 469, 470, 473, 474, 475, 486, 501, 514, 527, 538, 546, 547, 554, 555, 564, 576, 579, 591, 593, 597, 666, 675

아버지 038, 039, 077, 079, 083, 125, 129, 140, 165, 191, 192, 199, 200, 202, 205, 206, 211, 220, 227, 228, 231, 234,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53, 255, 257, 259, 260, 268, 272, 273, 277, 283, 285, 401, 402, 403, 404, 405, 406, 409, 411, 412, 417, 418, 420, 429, 430, 431, 432, 437, 441, 451, 452, 470, 472, 473, 477, 482, 483, 502, 508, 519, 527, 538, 554, 557, 559, 560, 564, 565, 566, 567, 569, 573, 592, 594, 597, 598, 599, 617, 618, 619, 622, 627, 652, 658, 664, 665, 666, 671, 672, 674

양계 036, 259, 411, 412, 566

양육 031, 032, 044, 048, 049, 051, 065, 092, 150, 184, 203, 209, 234, 278, 279, 284, 285, 286, 418, 419, 420, 431, 469, 474, 475, 497, 508, 512, 513, 514, 554, 615

양자 079, 080, 137, 149, 184, 185, 201, 234, 235, 240, 255, 256, 273, 277, 278, 285, 300, 414, 415, 416, 424, 426, 427, 469, 473, 510, 516, 530, 549, 550, 556, 579, 590, 591, 592, 598, 617, 618, 620, 657

어머니 056, 057, 077, 078, 079, 083, 092, 124, 126, 140, 151, 165, 167, 168, 202, 203, 211, 227, 231, 234, 240, 241, 242, 243, 253, 257, 259, 268, 276, 282, 285, 289, 290, 293, 400, 402, 404, 411, 412, 417, 418, 420, 429, 430, 431, 432, 441, 451, 452, 470, 473, 477, 481, 509, 519, 531, 565, 566, 568, 575, 585, 594, 597, 598, 615, 618, 619, 637, 638, 641, 652, 658, 664, 674

언니 125, 153, 418, 419, 432, 475, 620, 621, 626

열녀 087, 240, 400, 425, 426, 494, 495, 607

오빠 125, 153, 419, 431, 432, 475, 578, 620, 621, 626, 658

외가 028, 029, 185, 227, 243, 254, 255, 432, 433, 434, 472, 553, 560, 568, 569, 570, 573, 595, 618, 620

육아 536

이모 200, 231, 249, 297, 406, 407, 419, 451, 452, 460, 476, 514, 573

이혼 044, 048, 049, 050, 074, 076, 118, 193, 194, 238, 297, 398, 400, 439, 457, 458, 459, 460, 463, 489, 512, 513, 550, 579, 580, 595, 596, 638, 658

인척 094, 160, 229, 459, 501, 518, 569, 576, 577, 618

입양 021, 026, 040, 044, 048, 051, 073, 079, 150, 201, 208, 234, 235, 256, 278, 400, 414, 429, 438, 467, 468, 469, 471, 473, 511, 512, 516, 550, 590, 591, 598, 604, 617, 619

입후 022, 079, 080, 081, 082, 083, 234, 240, 415, 416, 468, 469, 470, 546, 547, 557, 579, 590, 601, 624

지읒 ㅈ

자녀 027, 030, 034, 037, 039, 040, 041, 042, 044, 049, 051, 052, 053, 056, 059, 060, 065, 072, 074, 078, 098, 102, 136, 137, 150, 151, 152, 153, 155, 188, 193, 199, 200, 204, 205, 209, 210, 217, 218, 227, 248, 256, 259, 262, 275, 277, 278, 279, 285, 286, 296, 400, 403, 404, 413, 414, 415, 417, 418, 420, 424, 432, 433, 434, 435, 446, 458, 461, 467, 473, 474, 475, 485, 486, 487, 490, 491, 500, 501, 502, 512, 514, 516, 517, 519, 521, 526, 527, 531, 547, 548, 558, 570, 571, 572, 590, 595, 596, 597, 615, 618, 625, 637, 641, 645, 656, 659

자매 083, 141, 223, 224, 396, 423, 435, 451, 475,

	476, 559, 560, 618, 622, 626
자손	040, 089, 176, 177, 198, 245, 248, 299, 417, 421, 444, 472, 476, 477, 501, 508, 520, 522, 534, 546, 555, 640
자식	077, 131, 153, 155, 211, 219, 281, 293, 294, 296, 408, 473, 476, 554, 555, 559, 560, 564, 600, 602, 616, 617, 668, 673, 674, 675
장례	186, 212, 237, 253, 281, 463, 464, 466, 477, 478, 479, 480, 481, 549, 608
장모	227, 228, 229, 435, 438, 457, 460, 481, 482, 552
장인	185, 227, 228, 229, 433, 435, 438, 460, 482, 483, 550, 552
장자	031, 097, 148, 157, 250, 251, 252, 253, 271, 401, 414, 435, 440, 469, 474, 484, 485, 491, 514, 528, 529, 546, 547
적자	222, 249, 256, 401, 500, 522, 531, 556, 557
제례	175, 220, 222, 224, 253, 448, 463, 464, 466, 467, 497, 498, 499, 500, 509, 510, 511, 532, 546, 577, 591, 608
제사	021, 050, 073, 074, 077, 079, 080, 089, 096, 106, 108, 122, 129, 148, 158, 169, 170, 171, 190, 197, 198, 199, 203, 213, 214, 216, 253, 256, 265, 275, 284, 288, 295, 296, 297, 300, 301, 399, 409, 410, 415, 416, 427, 433, 434, 435, 440, 441, 442, 444, 445, 452, 466, 467, 468, 469, 470, 471, 474, 483, 484, 485, 487, 490, 491, 497, 499, 500, 502, 503, 504, 506, 507, 508, 509, 510, 514, 518, 522, 525, 527, 528, 529, 532, 543, 546, 549, 557, 559, 560, 561, 570, 575, 590, 591, 592, 600, 617, 624
조상	022, 024, 028, 039, 040, 042, 046, 068, 069, 089, 090, 102, 106, 108, 129, 131, 134, 144, 148, 169, 175, 176, 177, 178, 186, 187, 188, 190, 197, 203, 215, 216, 221, 222, 225, 231, 246, 248, 260, 261, 265, 266, 268, 269, 273, 274, 275, 283, 287, 295, 296, 300, 399, 401, 410, 440, 444, 445, 465, 466, 467, 471, 472, 476, 477, 483, 485, 487, 490, 497, 498, 499, 500, 502, 503, 504, 505, 506, 507, 509, 510, 518, 525, 526, 528, 532, 534, 536, 537, 539, 543, 544, 545, 546, 547, 551, 556, 557, 560, 562, 564, 565, 578, 585, 589, 590, 593, 594, 615, 617, 619, 620, 660, 670
조카	082, 083, 297, 514, 516
족내혼	101, 144, 146, 519
족보	022, 023, 031, 066, 067, 068, 116, 117, 131, 132, 133, 143, 154, 155, 195, 287, 433, 471, 520, 521, 522, 523, 525, 527, 534, 539, 544, 545, 546, 589, 590, 591, 595, 600, 633, 634, 656
족외혼	089, 101, 144, 165, 179, 301, 519, 520, 523, 524, 564, 652
종가	084, 106, 135, 136, 147, 177, 190, 199, 212, 213, 214, 401, 518, 524, 525, 526, 528, 529, 530, 531, 532, 533, 535, 560, 592, 593, 594, 600, 650
종법	037, 116, 129, 135, 151, 152, 190, 219, 221, 400, 401, 402, 431, 434, 436, 468, 469, 471, 472, 473, 475, 477, 484, 502, 510, 524, 527, 528, 529, 530, 533, 535, 538, 539, 545, 546, 552, 553, 554, 557, 589, 592, 594, 624, 655
종부	237, 525, 526, 530, 531, 533, 624
종손	178, 237, 240, 260, 441, 477, 522, 525, 526, 528, 529, 530, 532, 533, 600
종족	074, 115, 131, 134, 174, 175, 177, 274, 301, 424, 518, 527, 532, 553, 576, 577, 616, 620
종택	526, 535, 536, 537
주부	046, 050, 205, 285, 286, 597
주자가례	068, 069, 089, 174, 198, 221, 222, 224, 225, 249, 250, 260, 263, 264, 265, 280, 440, 448, 463, 464, 477, 479, 482, 484, 490, 502, 517, 527, 531, 544, 644, 646, 653, 668
중자	500, 556, 557
지칭	084, 094, 118, 120, 204, 227, 243, 400, 404, 417, 451, 473, 514, 516, 559, 582, 626
직계	053, 067, 260, 262, 477, 529, 533, 546, 548, 549, 600

치읓 ㅊ

차남	053, 119, 201, 208, 214, 251, 290, 589, 660
차자	031, 256, 500, 528, 529, 546, 619
처가	028, 031, 097, 136, 185, 186, 202, 227, 228, 254, 255, 256, 258, 284, 288, 290, 398, 415, 433, 436, 438, 445, 446, 469, 472, 481, 483, 487, 488, 489, 511, 552, 553, 554, 563, 570, 601, 620, 629, 655
첩	079, 087, 256, 257, 258, 461, 462, 463, 469, 470, 487, 522, 547, 555, 556
촌수	083, 122, 144, 146, 231, 419, 431, 451, 459, 460, 514, 518, 559, 560, 561, 591, 621
출계	040, 185, 424, 564, 565, 619
친가	029, 083, 185, 243, 432, 433, 434, 452, 554, 560, 569, 570, 574, 575, 578, 590, 591, 601, 618, 620
친정	043, 075, 076, 083, 084, 100, 182, 284, 285, 286, 399, 452, 485
친족	026, 027, 029, 031, 038, 040, 060, 061, 063, 064, 065, 082, 083, 089, 093, 094, 122, 124, 127, 128, 132, 143, 144, 155, 175, 183, 185, 193, 200, 228, 231, 241, 243, 248, 254, 255, 269, 278, 283, 285, 297, 301, 405, 410, 411, 412, 414, 415, 416, 418, 419, 422, 423, 424, 429, 431, 432, 438, 441, 451, 452, 459, 461, 468, 469, 478, 481, 502, 511, 512, 514, 516, 519, 522, 530, 531, 547, 549, 552, 559, 560, 561, 564, 569, 571, 575, 576, 577, 578, 585, 591, 592, 595, 601, 610, 611, 615, 622, 625, 636, 648, 651
친척	048, 077, 080, 094, 096, 101, 231, 234, 241, 242, 243, 254, 283, 405, 406, 419, 427, 431, 451, 453, 461, 472, 516, 518, 520, 523, 559, 576, 617, 619

티읕 ㅌ

통혼권	094, 521, 523, 573, 587, 589, 651

히읗 ㅎ

할머니	275, 276, 458, 508, 597, 598, 599, 618
할아버지	192, 228, 241, 243, 245, 275, 276, 409, 423, 424, 429, 441, 500, 508, 554, 559, 597, 598, 618, 658
항렬	021, 080, 131, 132, 149, 174, 191, 243, 273, 405, 406, 408, 414, 469, 516, 518, 591, 600, 601, 619, 620, 622, 624, 627
핵가족	040, 052, 054, 063, 071, 074, 166, 183, 279, 284, 286, 496, 497, 548, 549, 595, 605, 606, 660, 661
현구고례	111, 488, 573, 611, 614, 615, 647, 654
혈연	022, 026, 040, 051, 073, 076, 093, 094, 095, 256, 269, 270, 271, 272, 284, 297, 406, 416, 441, 460, 471, 509, 510, 511, 513, 514, 547, 549, 576, 590, 616, 617, 618, 624, 639
혈족	060, 094, 184, 274, 300, 412, 459, 460, 461, 518, 519, 524, 526, 575, 577, 617, 618, 619, 643, 657
혈통	022, 024, 068, 199, 200, 259, 266, 273, 301, 411, 457, 459, 501, 502, 512, 520, 525, 564, 565, 566, 578, 620
형	125, 140, 153, 240, 406, 419, 432, 436, 437, 438, 460, 475, 546, 620, 621, 622, 624, 625, 626, 658
형제	077, 079, 080, 141, 223, 224, 239, 240, 243, 251, 255, 273, 396, 408, 423, 424, 430, 434, 435, 436, 437, 438, 451, 475, 476, 518, 522, 559, 560, 565, 576, 601, 618, 626, 640, 671, 672
호구	542, 543, 629, 630, 631, 633, 635, 639

호적 066, 196, 248, 262, 268, 433, 512, 520, 521, 540, 543, 550, 551, 594, 595, 606,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2, 657

호주 058, 196, 250, 251, 285, 511, 512, 550, 638, 641, 642, 643, 656, 657

호칭 118, 155, 160, 200, 223, 228, 243, 244, 398, 400, 403, 404, 417, 448, 451, 472, 473, 481, 482, 511, 516, 551, 569, 597, 598, 622, 627

혼례 030, 112, 224, 244, 245, 263, 288, 301, 402, 448, 464, 465, 487, 488, 543, 549, 555, 572, 573, 574, 625, 644, 645, 646, 647, 652, 653

혼반 076, 095, 519

혼인 022, 026, 028, 031, 040, 051, 053, 054, 058, 060, 073, 075, 076, 084, 085, 089, 091, 094, 111, 115, 136, 137, 138, 139, 145, 150, 160, 178, 179, 180, 182, 185, 189, 196, 197, 202, 217, 218, 223, 289, 290, 291, 297, 300, 398, 399, 401, 419, 422, 425, 426, 429, 432, 433, 438, 445, 446, 448, 452, 457, 459, 460, 462, 463, 465, 467, 473, 474, 475, 477, 487, 489, 492, 493, 494, 511, 512, 517, 518, 519, 520, 521, 523, 524, 526, 529, 531, 538, 543, 544, 547, 553, 555, 561, 563,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2, 585, 586, 587, 594, 617, 618, 619, 621, 625, 629, 638, 641, 645, 646, 649, 650, 651, 652, 653, 655, 656, 657

확대가족 040, 053, 131, 404, 537, 548, 605, 606, 660, 661

효 064, 065, 222, 228, 281, 404, 418, 420, 466, 474, 477, 500, 505, 508, 561, 575, 615, 616, 665, 670, 673, 674, 675, 677

효녀 494, 609, 664, 665

효부 575, 615, 665, 666, 677

효자 235, 236, 402, 494, 495, 607, 608, 667, 668, 671

효제 042, 134, 671, 673

후손 023, 024, 036, 069, 090, 122, 128, 131, 134, 162, 190, 212, 215, 260, 262, 269, 270, 272, 287, 296, 301, 412, 427, 433, 435, 441, 444, 466, 471, 472, 476, 477, 497, 499, 502, 503, 504, 505, 506, 508, 510, 518, 521, 522, 525, 532, 534, 539, 547, 548, 564, 565, 570, 575, 578, 589, 590, 592, 600, 617, 619, 660

훈육 043, 165, 166, 200, 285, 286, 290, 418, 483, 508, 598, 599

필자

V

강정원(姜正遠) 서울대학교

교환혼 088
근친혼 101
민며느리제 179
봉사혼 197
서옥제 258
형사취수제 625

강혜경(姜惠卿)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종부 529
종손 531

고민정(高旻廷) 강원대학교

계후등록 080
계후입안 082
백골양자 184
별급문기 187
사후양자 234
서양자 255
승중 280
양아록 412
양자문기 416
파양 590
허여문기 610
형망제급 624
화회문기 659

권순형(權純馨)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혼 457
재혼 489
조혼 517

권익기(權益棋) 대한성명학연구원

아명 402
이름 448
태명 581

김경섭(金鏡燮) 을지대학교

계모담 077
시집살이담 292

김광순(金光淳)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남매 114
누나 124
언니 418
오빠 431
자매 475
형 620
형제 626

김귀옥(金貴玉) 한성대학교

이산가족 453
초국적가족 558

김대숙(金大琡)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열녀담 424
효행담 673

김명자(金明子) 전 안동대학교

가정신앙 045
기자의례 102
조상신 509

김문택(金文澤) 전 서울역사박물관

삼년상 236
시묘살이 281

김미영(金美榮) 한국국학진흥원

가문 028
가장 037
가족 051
가통 067
가풍 068
납골당 120
당내친 128
둥지양자 149
문벌 173
보종 190
불천위제사 214
사당 219
소목 272
안방물림 410
유복친 441
제사분할 500
제사상속 501
택호 582

김성희(金聖姬) 순천대학교

가사노동 032
가정주부 050
맞벌이 158

김시덕(金時德) 을지대학교

묘제 169
반보기 181
상례 245
오복제도 429
제례 497
조상 504

김영수(金榮洙)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추도식 561

김영순(金永順) 용인민속촌

불천위 212

김지영(金志榮)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동생 140
딸 150
막내 153
맏이 155
아들 400
외동 434
자녀 473

김창민(金昌民) 전주대학교

겹사돈 075
내롱 122
데릴사위제 136
말자상속 157
모계 165
부계 199
선계 259
양계 411
인척 459
일부다처제 461
일부일처제 462
족내혼 519
족외혼 523
처가 552
처가살이 553
출계 564
친영 572
혈족 618

김현미(金賢美) 연세대학교

국제결혼 091
사진신부 229

나영훈(羅榮勳) 한국국학진흥원

상피제 254
연좌제 423

도민재(都民宰) 청주대학교

가정의례준칙 049
건전가정의례준칙 073
의례 447
의례경전통해 447
의례준칙 448

박경(朴景) 건양대학교

수양자 277
양자 414
움딸 438
입양 467
중자봉사 546
첩자봉사 556

박동철(朴東喆) 한국국학진흥원

연애혼 422
절충혼 492
중매혼 543

박성용(朴晟慵) 전 영남대학교

가계부 025
대 130
대문중 133
부처제 206
소문중 274
씨족 300
유훈 443
족계 518
친족 575
해동속소학 601
혈연 616
혈통 619

박종오(朴宗吾) 전남대학교

명당설화 162
우애담 436

박주(朴珠)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과부 087
정려 494
효녀 664
효부 665
효자 666
효제 671

박홍갑(朴洪甲) 전 국사편찬위원회

성년식 262

배도식(裵桃植) 부산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

상객 244

배영동(裵永東) 안동대학교

기제사 105
대종가 134
벌초 186
봉제사접빈객 197
사대봉사 221
성묘 265
종가 524
종택 535
종회 538
파종가 592

배은경(裵恩慶) 서울대학교

가족계획사업 054

서해숙(徐海淑) ㈔남도학연구소

시조신화 286

서호철(徐浩哲)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적법 180
조선호적령 511
호구조사규칙 631
호적법 636
호적부 637
호적표 639

성정현(成晶鉉) 협성대학교

가정위탁제도 048
양육비 413

손병규(孫炳圭) 성균관대학교

가첩 065
대동보 132
만성보 154
선원보첩 262
족보 520
준호구 542
촌수 559
팔고조도 594
항렬 600
호구단자 629
호적 632

송재용(宋宰鏞) 전 단국대학교

근친 100

신옥주(申玉珠) 전북대학교

위자료 438
주민등록법 540
친권 571

신호림(申虎林) 안동대학교

제사설화 502
희생효설화 675

오세길(吳世吉) 동아대학교

가훈 070
쌍둥이 298
업둥이 421

오세정(吳世晶) 충북대학교

남매혼설화 115

이길표(李吉杓) 전 성신여자대학교

현구고례 611

이대화(李大和) 한국학중앙연구원

남편 118
부모 200
부부 202
분가 207
성씨 266
시아버지 283
시어머니 285
아내 398
아버지 403
어머니 417
장모 481
장인 482
종안 534
창씨개명 549
할머니 597
할아버지 598
호 627

이상균(李相均)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국불천위 089
문장 174
문회 177
사불천위 225
입향시조 471
자손 476
중시조 544
파시조 589

이수경(李洙京) 국립중앙박물관

삼강행실효자도 235
행실도 607
효자도 668

이순구(李舜九) 전 국사편찬위원회

계자 079
남아선호사상 116
내외 123
삼불거 238
삼종지도 239
서얼 256
첩 555
칠거지악 579
혼외자 651

이여봉(李麗峰) 강남대학교

가부장제 030
가족주의 064
결손가정 074
분거가족 208
정상가족 496
조손가족 512
한부모가족 595

이용범(李龍範) 안동대학교

영혼결혼식 427

이정아(李靜娥) 가천대학교

시집살이노래 291

이창기(李昌基) 전 영남대학교

균분상속 097
문중 175
사돈 223
윤회봉사 445
장자봉사 483
재산상속 485
적장자우대상속 490
통혼권 587

이창식(李昌植) 전 세명대학교

물레혼 178
보쌈 189
씨받이 299

이필영(李弼泳) 전 한남대학교

일생의례 463
출생의례 566
태교신기 580

이해준(李海濬) 전 공주대학교

기일비망기 102
당호 129
동성동본 143
동성촌 146
본관 194
본적 196
선산 260
세습 270
자 472
종법 527
천인천자문 554

장동우(張東宇) 대진대학교

무복친 172
복인 191
상주 252

장병인(張炳仁) 전 충남대학교

남귀여가혼 110

전경근(田慶根) 아주대학교

가정법원 044
가족관계등록법 058
가족법 059
모자보건법 168

전경목(全炅穆)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계녀서 076
국조오례의 093
당내 127
분재기 210
사례편람 224

정구태(鄭求兌) 조선대학교

가족법개정운동 061
호주상속 641
호주제 642

정긍식(鄭肯植) 서울대학교

동성동본불혼 144
상속 248
위토 440
유언 442
증여 547
혼인신고 656

정종수(鄭鍾秀) 전 국립고궁박물관

장례 477

조성실(趙聖實) 전북대학교

가족사진 062

조숙정(趙淑晶) 서울대학교

고모 083
동서 141
며느리 160
사위 227
사촌 231
삼촌 240
손주 275
아가씨 396
아저씨 405
아주머니 406
이모 451
조카 514
형님 622

조은희(趙恩嬉) 제주대학교

독거 137
독신 138
동거 139
비혼 217
사실혼 226

진미정(陳美靜) 서울대학교

1인가구 020
가구 026
건강가정기본법 072
다문화가족 126

천혜숙(千惠淑) 전 안동대학교

가정교육 041
고부 084
시집 288
시집살이 289
재행 487
정략결혼 493
혼례 644
혼반 649
혼인 652

최길성(崔吉城) 전 히로시마대학교

조상숭배 507

최은숙(崔恩淑) 경북대학교

규방가사 095

최인학(崔仁鶴) 전 인하대학교

세배 269
혼주 658

최종호(崔鍾浩) 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회갑 662

하도겸(河度慊) 국립민속박물관

기휘 109

하여주(河如株) 부산대학교

남녀칠세부동석 112
백년손님 185
엄부자모 420
출가외인 563
친정 574
현모양처 615

한기범(韓基範) 전 한남대학교

예기 428

한상우(韓相祐) 아주대학교

가계 021
가계도 022
외가 432
친가 569

한양명(韓陽明) 안동대학교

외손봉사 435

함인희(咸仁姬) 이화여자대학교

모성애 166
방계가족 183
복합가족 193
부성애 204
수정가족 279
직계가족 548
핵가족 605
확대가족 660

함한희(咸翰姬) 무형문화연구원

가업 035
가정 039
딩크족 150
빈둥지가족 218
식구 296
통과의례 582
해외입양 603

허남춘(許南春) 전 제주대학교

가문잔치 029
권당 093
삼춘 242
식게 295
안거리·밖거리 408

자문위원 김미영(한국국학진흥원)
김일권(한국학중앙연구원)
김창민(전주대학교)
박성용(전 영남대학교)
손병규(성균관대학교)
오세길(동아대학교)
이대화(한국학중앙연구원)
이창식(전 세명대학교)
이해준(전 공주대학교)
함인희(이화여자대학교)
합한희(무형문화연구원)
허남춘(전 제주대학교)

감수위원 김명자(전 안동대학교)
이창기(전 영남대학교)
이해준(전 공주대학교)
합한희(무형문화연구원)